

어촌·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용역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795-14

어촌·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용역

2011. 03

제 출 문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귀하

-어촌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용역-

귀 부와 계약 체결한 “어촌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용역”에 대하여
계약서와 용역 과업지시서에 의거 완료하고 그 성과 보고서를 작성 제
출합니다.

2011년 03월

(특)한국어촌어항협회

회 장 심 호 진

연구책임자 : 황 철 민

연 구 진 : 남 광 훈

박 경 국

참여연구기관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구 진 : 신 승 식

박 주 삼

김 민 진

김 유 미

소 애 립

XING YAN

요약문

I.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목적

- 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어촌·어항개발사업과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효과를 조사·분석하고 문제점 도출
 - 어촌·어항개발사업 및 다기능어항사업의 성과 및 효율성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정책방향 제시
- 기획재정부 주관 각종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개별사업의 성과지표로 제시한 고객만족도 등의 도달여부를 분석·파악하고, 필요시 대상사업에 대한 지표설정이 적정한지 여부 검토 및 새로운 지표 제시

2. 과업의 주요 연구내용

- 어촌·어항개발사업
 - 어촌·어항개발 일반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 어촌·어항개발 사업에 대한 이용자만족도 조사·분석
 - 어항개발사업 효과분석
 - 사업권역내 사업대상지의 연평균 어가소득증가율
 - 어촌·어항개발사업의 문제점 도출
 - 어선안전수용율 산정
 - 향후 사업개선방안 및 추진방향 제시
 - 어항개발사업 성과지표 제시 등
-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 다기능어항개발 일반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 선진국 다기능어항 개발사례 조사(문헌 등)
 - 다기능어항사업 시행 전·후의 사회·경제적 현황 및 효과분석
 - 앞으로 사업추진 방향 및 발전방안 제시

II. 어촌·어항개발사업의 주요지수 변화 산정

1. 어선안전수용을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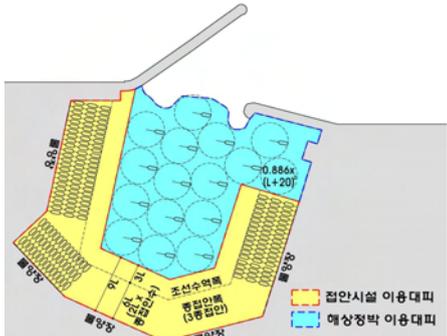
□ 어선안전수용율의 개요

- 기상 악화 시 어항이 어선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어항 수역시설의 확보규모를 산정하는 것

□ 어선안전수용율 주요 검토내용

- 시·군·구별 평균 톤급의 어선 규모를 산정하여 전국 어항에서 어느 정도의 어선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

<표-1> 주요 검토내용

주요 검토내용	항내 선박 수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대상 어선척수 결정 - 어선수용 시설규모 조사(계류시설, 항내박지면적) - 어선의 대피방법 결정 - 어선의 안전수용율 검토 	

□ 수용대상 어선척수 결정

- 전국 총 어선은 77,607척이나, 내륙지역인 충청북도와 대구광역시의 어선을 제외하였으며, 또한 나머지 지역의 어선 중에서도 무동력선, 원양어선, 내수면어선을 제외하였고, 여기서 나온 결과에 외래어선수를 포함하면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73,117척임

※ 전국 총어선 : 농림수산식품부 정보화담당관(2009년 12월 말 등록어선 기준)

□ 수용가능 어선척수 산정

- 수용대상 어선 73,117척 중 54,359척이 기존의 국가어항(56%), 지방어항(15%), 무역항 및 연안항(29%)에 수용 가능함

□ 어선안전수용율 산정결과

- 2010년 말 시설 기준으로 어선안전수용율이 100%이상의 초과 어선안전수용율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전국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각각 73,117척,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54,359척으로 어선안전수용율을 74.3%로 산정됨
- 연도별 전국 어선안전수용율 검토결과 어선척수는 수산업 여건변화에 따라 어선감척 등으로 매년 감소하지만, 국가어항 개발에 따라 어선을 수용할 수 있는 계류시설, 항내박지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어선안전수용율은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따라서, 국가어항 개발을 통해 충분한 어선안전수용율 확보가 필요



<그림-1> 연도별 전국 어선안전수용율

- 분담율을 적용한 항종별 어선안전수용율은 국가어항이 41.61%, 지방어항이 11.15%로 나타남

<표-2> 항종별 어선안전수용율

구 분	계	국가어항	지방어항	비 고
분담률		56%	15%	항만은 29%임
어선안전수용율	74.3	41.61	11.15	항종별 분담율 적용

2. 사업권역내 사업대상지의 연평균 어가소득증가율

□ 연평균 어가소득증가율 검토 개요

- 연평균 어가소득 증가율 검토대상은 2009년에 검토한 9개 권역, 40개 어촌계를 포함하고, 2002년~2004년에 사업이 투자되어 완공된 6개 권역, 32개 어촌계를 신규로 추가하여 총 15개 권역, 72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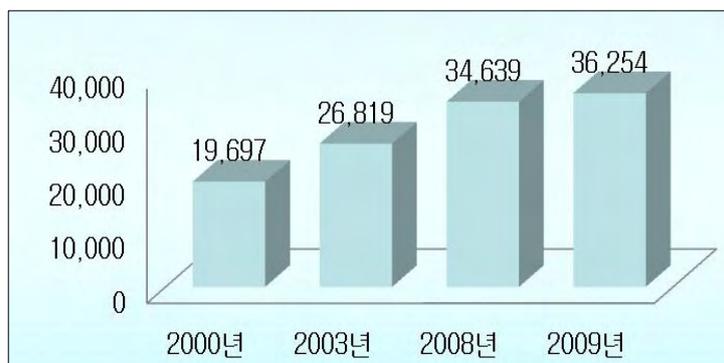
□ 연평균 어가소득 증가율 증대효과

- 사업권역내 사업대상지의 연평균 어가소득증가율 증대효과는 조사결과 어촌종합개발사업 대상지의 사업 완공 후 해당 평균 소득의 연평균증가율은 4.7%로 나타나 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표-3> 사업권역내 사업대상지의 연평균 어가소득증가율

구분		호당 평균소득(천원)			
		2000년	2003년	2008년	2009년
사업 대상지역 연평균 어가소득 증가율	평균(μ)	19,697	26,819	34,639	36,254
	표준편차(σ)	16,047	14,953	25,113	6,653
	연평균 증가율	-	10.8%	5.3%	4.7%

※ 2009년 : 통계청(어가소득), 수협중앙회 어촌계분류평정(2009.12.31) 기준



<그림-2> 사업대상지역 연평균 어가소득

Ⅲ. 어촌개발사업 모니터링 조사 결과·분석

1. 어촌종합개발사업

가. 어촌종합개발사업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링 대상의 선정

-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이루어진 대상권역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특히 완공된 권역을 주 대상으로 함
- 2001~2004년에 이루어진 15개 권역(72개 어촌계)을 대상으로 선정

□ 모니터링 표본의 선택

- 2001~2004년 사업 대상지인 15개 권역(72개 어촌계)의 지역주민 500명과 시군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예상 성과 모니터링과 프로그램 모니터링 수행

나.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모니터링 지표

□ 성과 모니터링 지표

- 본 사업의 성과모니터링 지표는 계량적 성과와 비계량적 성과로 나눔
 - 계량적 성과지표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따른 투자가 완료된 이후에 나타나며, 이러한 계량적 성과의 지표는 어가구의 변화, 어업인구의 변화, 호당 평균소득의 변화, 어업 생산성에 대한 영향 등을 조사
 - 비계량적 성과지표는 방문객 변화, 자연재해 방지 그리고 사회/문화/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조사

□ 프로그램 모니터링 지표

-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여 계획 및 시행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프로그램 모니터링의 지표는 크게 사업의 인식도, 사업의 적합도, 그리고 사업의 유효도 등으로 구분

다. 어촌종합개발사업 모니터링 결과

□ 성과 모니터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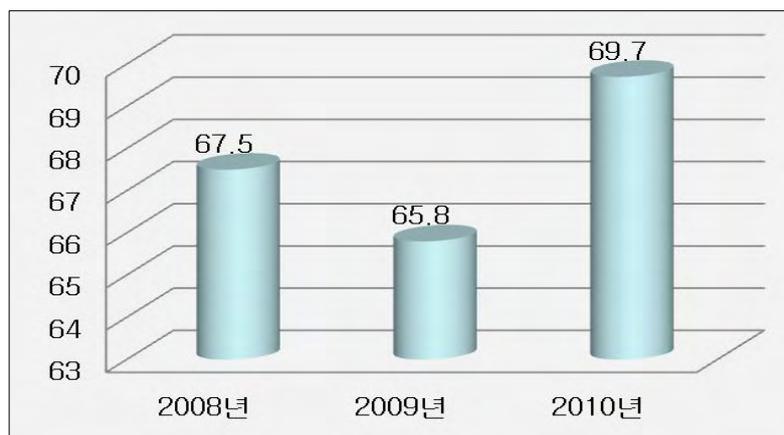
-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한 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
 - 어가소득 증대효과 조사결과, 어촌종합개발사업 대상지의 사업 완공 후 해당 평균 소득의 연평균증가율은 4.7%로 나타남
-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어업인구 감소 추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 완공 전 어업인구는 연평균 3.2% 감소하였지만, 사업 완공 후 어업인구는 연평균 4.1% 감소하여 어업인구감소 추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음
- 어촌종합개발 사업의 비계량적 지표는 5점 척도로 평가하여 점수화하였으며, 자연재해 방지, 사회·문화·환경 개선에서 50점을 상회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경우 높지만, 지역주민의 경우 주민 간 갈등과 도입시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낮게 조사됨
- 사업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사업의 목적은 대체로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이라 평가하고 있었지만, 지역 주민의 참여도를 나타내는 연계성이 낮게 나타남
 - 어가소득 증대와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대상지의 지속적이고 내발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고, 지역 특색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의 유효도를 살펴보면 예산 규모는 지역주민과 공무원 모두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 지역 주민은 낮게 평가
 - 사업추진의 효율성은 모든 단계에 있어서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이용자만족도 결과

-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전체 이용자만족도 결과 69.7점으로 본 사업에 대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됨
- 연도별 이용자 만족도 결과를 2010년도 만족도 결과가 69.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 대상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이용자만족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3> 연도별 어촌종합개발사업 이용자 만족도 결과

2.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링 대상의 선정

- 어촌개발사업 중 2007년~2009년도에 추진된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지역은 2007년 11개 마을, 2008년 8개 마을, 2009년 7개 마을 등 총 26개 마을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표본의 선택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모니터링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대상은 각 체험마을사업을 집행하는 지역공무원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지역공무원 설문조사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대상지(26개 어촌체험마을)의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
 - 어업인 설문조사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대상지(26개 지역)의 어촌계장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각 어촌계 당 5개 이상의 표본을 선정하여 설문조사 실시

나.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모니터링 지표

□ 성과 모니터링 지표

- 본 사업의 성과모니터링 지표는 계량적 성과와 비계량적 성과로 나눔
 - 계량적 성과지표는 방문객, 체험소득, 간접소득 등을 조사
 - 비계량적 성과지표는 삶의 질 개선, 지역 이미지 개선, 주민 자긍심, 전통문화 발굴보존, 생활환경 개선 등을 조사

□ 프로그램 모니터링 지표

- 본 사업의 계획과 집행이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
- 프로그램 모니터링의 지표는 크게 사업의 인식도와 더불어 사업의 적합도, 그리고 사업의 유효도 등으로 구분

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모니터링 결과

□ 성과 모니터링 결과

- 26개 마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역주민들은 본 사업을 통하여 외부 방문객 증가와 함께 어촌의 소득이 증대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계량적 지표의 분석결과, 방문객 증가율의 기대치는 46.0%, 수산물 판매액은 43.2%, 어업 외 소득 증가율은 41.7%인 것으로 나타나 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통한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사전적으로 평가한 결과, 생활환경개선은 69.5점, 삶의 질 개선은 63.7점, 주민 자긍심 고취는 65.1점, 지역 이미지 개선은 69.6점, 전통문화 발굴 및 보전 효과는 66.3점으로 나타남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통한 비계량적 성과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역주민들은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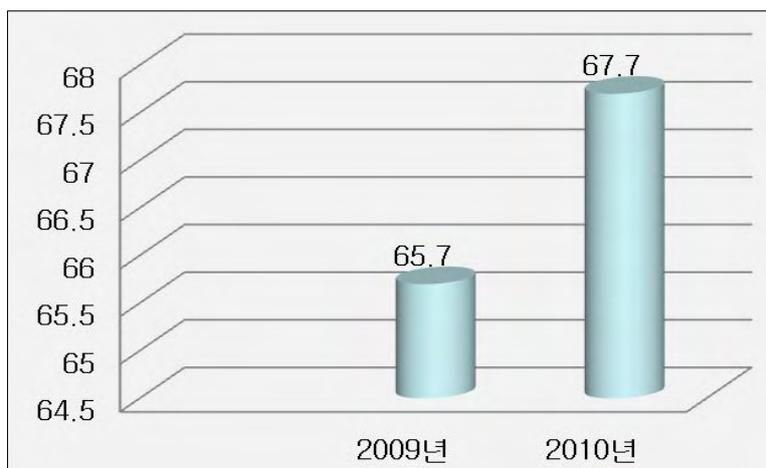
- 지역주민들은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자체는 인지하고 있지만 이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본 사업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참여활성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의 목적성에 대한 지역 공무원 조사결과에서는 관광기반시설의 확충과 정주환경의 개선에 모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 사업의 유효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는 지역주민과 공무원 모두 5억 원이라는 현재의 사업예산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높게 나타남
- 사업집행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은 비교적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75점 이상으로 평가하여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집행에 대한 평가에서 지역주민의 평가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은 지역주민의 참여기회가 비교적 제한적인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운영 및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관련된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리운영 주체의 지정율은 84.6%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관리 담당자의 지정율은 100%로 나타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체제는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이용자만족도 결과

- 어촌종합개발사업 성과 모니터링과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는 전년보다 2.0점 상향된 67.7점으로 나타나 본 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삶의 질 향상, 지역 이미지 향상, 지역 주민 자긍심 향상, 전통문화 발굴보존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66.8점, 관광기반시설 확충효과, 정주환경 개선 효과 등에 대한 공무원의 만족도는 68.6점으로 조사되어 전체적인 만족도는 67.7점으로 나타남



<그림-4> 연도별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만족도 결과

3. 어촌관광개발사업

가. 어촌관광개발사업의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링 대상의 선정

- 어촌관광개발사업이 시행중인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대상지역은 전국 10개 시·도, 15개 시·군·구임
 - 대항(부산 강서구), 초지(인천 강화군), 일산항(울산 동구), 대송(울산 울주군), 안목항(강원 강릉시), 대진(강원 동해시), 무창포(충남 보령시), 야미도(전북 군산시), 마량항(전남 강진군), 방축(전남 신안군), 대진(경북 영덕군), 전촌(경북 경주시), 맥전포(경남 고성군), 학림(경남 통영시), 모슬포(제주도 서귀포시), 법환(제주도 서귀포시)

□ 모니터링 표본의 선택

- 지역주민 209명과 시군 공무원 13명을 대상으로 예상 성과 모니터링과 프로그램 모니터링 실시

나. 어촌관광개발사업의 모니터링 지표

□ 성과 모니터링 지표

- 본 사업의 성과모니터링 지표는 계량적 성과와 비계량적 성과로 나눔
 - 계량적 성과지표는 지역소득, 방문객, 수산물 판매액 등을 조사
 - 비계량적 성과지표는 삶의 질 개선, 이미지 개선, 주민 자긍심, 전통문화 발굴·보존, 생활환경 개선 등을 조사

□ 프로그램 모니터링 지표

- 사업의 목적에 따라 계획 및 시행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
- 프로그램 모니터링의 지표는 크게 사업의 인식도와 더불어 사업의 적합도, 그리고 사업의 유효도 등으로 구분

다. 어촌관광개발사업 모니터링 결과

□ 성과 모니터링 결과

- 사전적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지역 주민들은 어촌관광개발사업을 통한 도시민의 어촌방문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어촌간 교류활성화 및 어가소득의 증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어촌관광개발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문객, 어업외소득의 증가율, 수산물 판매액 증가율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치는 약 41% 수준으로 조사
- 어촌관광개발사업의 사회문화적 효과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항목이므로 5점 척도로 평가하여 점수화하였으며, 모든 항목에서 50점을 상회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이 생활환경 개선을 포함한 삶의 질 개선 효과에 대한 사전적 평가에 지역주민은 66~70점을 책정
 - 지역 주민 및 외지인이 해당 지역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 개선 효과에 대한 사전적 평가는 69~71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됨
 - 본 사업이 지역의 전통문화 발굴 및 보전에 미치는 영향은 63.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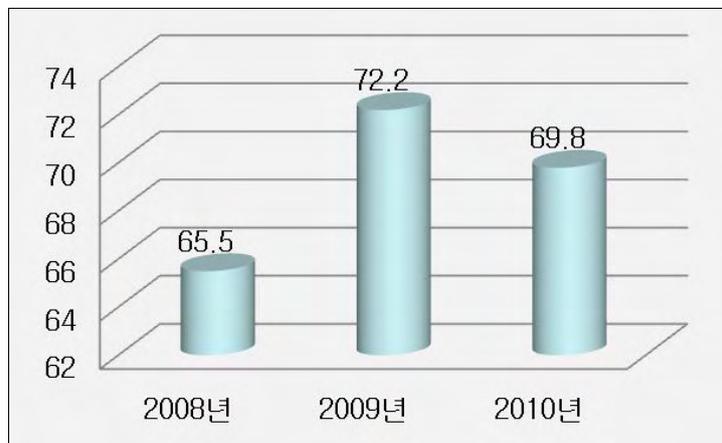
- 어촌관광개발사업의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업의 전반적인 인지도는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공무원의 경우 높지만, 지역 주민은 낮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사업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사업의 목적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경우 대체로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이라 평가하고 있었지만, 지역 주민의 경우 사업의 목적성과 참여도를 나타내는 연계성이 낮게 나타남
 - 어촌관광개발사업을 통해 어가소득 증대와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달성되겠지만, 대상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고, 지역 특색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의 유효도를 살펴보면, 예산 규모는 지역주민과 담당 공무원 모두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 지역주민은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됨

- 사업추진의 효율성은 모든 단계에 있어서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리운영 주체는 현재 지정(76.9%)되어 있거나 향후 지정할 예정(23.1%)인 것으로 조사

□ **어촌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이용자만족도 결과**

- 어촌관광개발사업 성과 모니터링과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는 69.8점으로 나타나 본 사업에 대한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됨
 -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68.1점, 공무원의 만족도는 71.6점으로 조사되어 전체적인 만족도는 69.8점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2.4점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공무원 대상 조사결과 관광기반시설 확충효과나 정주환경 개선효과가 전년도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림-5> 연도별 어촌관광개발사업 만족도 결과

4. 어촌개발사업의 문제점 도출

가. 어촌종합개발사업

- 주민참여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
 - 사업의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도입가능 시설에 대한 이해도 또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어촌·어항지역을 찾는 방문객 증가에 대한 어촌지역사회의 대응 부족
- 사업 및 프로그램이 우수한 권역에 대한 지원 부족
- 도입되는 시설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사업인지 부족

나.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 사업평가의 연속성을 위해 모니터링 실시지역의 체계적 관리 부족
 - 향후 실제 사업의 진행에 따른 만족도와 더불어 사업 추진 후 나타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대한 검토 필요
-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주민참여 기반 부족
- 예산지원의 부족
- 대상지 선정단계, 집행단계, 완료/운영단계 별 사업점검 및 관리부족
-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이 미흡

다. 어촌관광개발사업

- 지역주민의 참여 및 도입시설에 대한 이해 부족
- 대상지의 특색 강화 부족
- 지역 주민간의 갈등 해소 필요
- 공무원의 사업추진 내용 및 과정에 대한 교육 필요
- 예산 지원을 상향 조정 또는 직접 집행 필요
 - 균특예산으로 추진 중인 타 사업에 비해 지방비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방비의 확보가 늦어져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IV. 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조사 결과·분석

1. 국가어항 개발사업

가. 국가어항 개발사업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링 추진방향

- 국가어항 개발사업 모니터링의 추진 방향은 크게 다음 4단계로 구분
 - 1단계 : 모니터링의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법론 및 지표의 개발
 - 2단계(성과 모니터링) : 사업대상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제·사회적 조사 (공간적 성과모니터링) 및 국가어항 개발전·후 경제·사회적 효과분석(과거추세에 의한 성과모니터링)
 - 3단계(프로그램 모니터링) : 사업대상지역의 공무원 및 어업인들의 사업 인식도 조사
 - 4단계(고객 만족도 조사) : 사업의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어업인과 어항을 찾는 방문객들의 만족도 조사
-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효과 평가 즉 성과 모니터링은 공간적 성과모니터링과 과거 추세에 의한 성과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실시
 - 공간적 성과모니터링 : 어항개발의 효과를 공간적으로 비교. 즉 어항이 개발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성과모니터링을 통한 효과평가를 실시
 - 과거추세에 의한 성과모니터링 : 어항개발 전·후의 목적 달성도 및 효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평가

□ 모니터링 대상 및 표본의 선정

- 공간적 성과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대상 및 표본
 - 전국 110개 국가어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1,166명과 시군 공무원 90명을 대상으로 공간적 성과 모니터링과 프로그램 모니터링 수행
- 과거추세에 의한 성과 모니터링 대상
 - 국가어항 개발전·후 효과 분석상의 제한을 고려할 때 샘플로 분석할 수 있는 국가어항은 상당히 제한적

- 첫째, 착공년도가 2000년 이후의 어항으로 완공된 어항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공기가 짧으면서도 2000년 전과 비교하므로서 어느 정도 분석상의 유의성 확보
- 둘째, 분석결과의 유의성 확보를 위해 어촌계분류평정표상의 통계가 비교적 정확한 어촌계가 있는 어항을 선택
- 인천의 선진포항, 강원도의 공현진항, 충남의 삼길포항, 남당항, 전라남도의 여호항과 회진항, 남양항, 원전항, 호두항, 하효항의 10개 국가어항을 대상으로 선정

나. 국가어항 개발사업 효과분석을 위한 성과모니터링 지표

□ 공간적 성과모니터링 지표

- 성과지표는 어항개발의 합목적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어항개발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사업진척도, 어촌지역 발전정도, 정주여건, 소득분석, 수산업 발전정도 등을 분석

<표-4>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공간적 성과 모니터링 지표

지표	항목
사업진척도	시도별 예산 집행비율(%), 항별 예산 집행비율(%), 시도별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완공율(%), 항별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완공율(%)
어촌지역 발전정도	어촌계 유형(%)
정주여건	가구/어업가구(호), 인구/어업인구(명)
소득분석	어가당 평균소득(천원)
수산업 발전정도	연평균 수산물 생산량(톤), 연평균 수산물 생산고(백만원), 재적어선척수(척)

□ 과거추세에 의한 성과모니터링 지표

- 어항개발 전·후의 목적 달성도 및 효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평가
- 성과지표는 어항개발의 과거 추세를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서 가구(호), 인구(명), 평균소득(천원), 어선세력(척), 수산물 생산실적(톤/백만원) 등을 분석

다. 국가어항 개발사업 모니터링 조사 결과

□ 공간적 성과모니터링 효과분석 결과

- 국가어항의 2009년 말 기준으로 총 집행예산액 3조 4,943억원 중 2조 5,198억원이 집행되어 투자예산 집행율은 약 72.1%로 나타남
 - 외곽시설 완공율은 91.2%로 이중 방파제 완공율은 91.2%
 - 계류시설 완공율은 87.0%로 이중 물양장 완공율은 93.5%
- 국가어항을 배후로 하고 있는 어촌계와 그렇지 않은 어촌계 지역의 발전 정도를 보면, 발전정도가 가장 높은 복지어촌계의 비율이 국가어항지역 어촌계가 25.4%로 비사업지역의 7.4%보다 월등히 높으며, 자립어촌계가 42.2%로 비사업지역의 26.2%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국가어항의 정주여건을 보면 국가어항, 지방어항 등을 배후로 하지 않는 기타 어촌계와 비교할 때 가구수와 인구수가 2.4~2.6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정주여건이 비사업지역보다 좋은 것으로 분석됨
- 어가당 평균소득을 보며 국가어항 배후 어촌계의 경우 평균소득은 2,638만원으로 비 사업지역의 2,594만원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국가어항 배후어촌계의 연평균수산물 생산량은 582톤으로 비 사업지역 296톤보다 약 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산물생산액은 약 16억 원으로 비 사업지역의 12억원보다 1.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
- 재적어선척수 역시 67척으로 비 사업지역 38척보다 약 1.8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수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결론적으로 국가어항 개발사업을 통해 사업진척도, 어촌지역 발전정도, 정주여건, 소득수준, 수산업 발전정도 등의 효과가 향상되어 어항개발의 합목적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어항은 어촌의 핵심 기반 시설로서 지속적인 시설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과거추세에 의한 성과모니터링 효과분석 결과

- 과거추세변화에 의한 국가어항개발 전·후 효과분석은 어항개발기간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져 단순하게 개발전후를 비교하면 오류가 발생될 확률이 높아 2000년 중에 착공된 10개 어항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
- 과거추세에 의한 성과모니터링 분석결과 착공전보다 전체 가구 수의 증가율이 상승된 곳은 6개 어항인 것으로 분석
- 평균소득 증가율은 7개 지역이 보다 상승된 곳으로 분석되었고, 어선세력이나 수산물생산량은 다소 크게 증가된 것으로 분석
- 국가어항 개발사업이 시작이 되면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나, 완공이후의 경우 분석기간이 짧아 유의적인 분석을 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 국가어항 개발사업에 대한 인식도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경우 지역주민보다 다소 높지만, 지역주민의 경우 주민 간 갈등과 도입시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낮게 조사됨
- 사업의 인정도를 살펴보면 사업의 목적은 대체로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이라 평가하고 있었지만, 공무원들의 사업수준에 대한 적절성에서 다소 낮게 나타남
 - 본 사업을 통해 어가소득 증대와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대상지의 지속적이고 내발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고, 지역 특색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의 유효도를 살펴보면, 예산 규모는 지역주민과 공무원 모두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 지역 주민은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낮게 평가함
- 어업활동의 편리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는 국가어항 개발을 통해 많이

개선되었다고 공감을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보다 공무원이 체감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사업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및 공무원 모두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강화에 대해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가어항 개발사업에 대한 이용자만족도 결과

- 국가어항 개발사업에 대한 이용자만족도는 전년대비 1.1점 상향된 65.9점으로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본 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제주를 제외한 육지지역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평균 이용자만족도는 61.7점, 제주지역의 평균 이용자만족도는 66.2점으로 전체 평균 이용자만족도는 65.9점으로 본 사업에 대한 보통이상의 이용자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6> 연도별 국가어항개발사업 이용자 만족도 결과

2. 지방어항 개발사업

가. 지방어항 개발사업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링 추진방향

- 지방어항 개발사업 모니터링의 추진 방향은 크게 다음 4단계로 구분
 - 1단계 : 모니터링의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법론 및 지표의 개발
 - 2단계(성과 모니터링) : 사업대상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제·사회적 조사
 - 3단계(프로그램 모니터링) : 사업대상지역의 공무원 및 어업인들의 사업 인식도 조사
 - 4단계(고객 만족도 조사) : 사업의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어업인과 어항을 찾는 방문객들의 만족도 조사

□ 모니터링 대상 및 표본의 선정

- 전국 285개 지방어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및 이용자(어업인) 103명을 대상으로 예상 성과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수행

나. 지방어항 개발사업 효과분석을 위한 성과모니터링 지표

- 성과지표는 어항개발의 합목적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어항개발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사업진척도, 어촌지역 발전정도, 정주여건, 소득분석, 수산업 발전정도 등을 분석

<표-5> 지방어항 개발사업의 공간적 성과 모니터링 지표

지표	항목
사업진척도	시도별 예산 집행비율(%), 항별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완공율(%)
어촌지역 발전정도	어촌계 유형(%)
정주여건	가구/어업가구(호), 인구/어업인구(명)
소득분석	어가당 평균소득(천원)
수산업 발전정도	연평균 수산물 생산량(톤), 연평균 수산물 생산고(백만원), 재적어선척수(척)

다. 지방어항 개발사업 모니터링 조사 결과

□ 성과 모니터링 효과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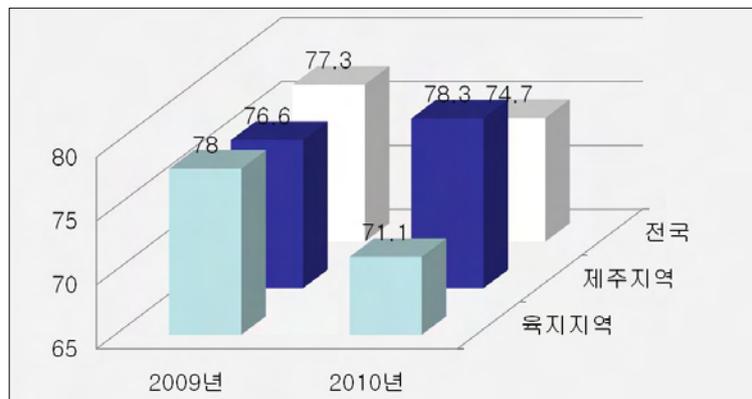
- 지방어항의 2009년말 기준으로 예산완공율은 약 56.2%로 사업진척도가 매우 더딘 것으로 분석
 - 외곽시설의 완공율은 63.7%, 계류시설 완공율은 평균 67.3% 임
 - 시도별로 보면 예산완공율은 전북이 35.4%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외곽시설 완공율 역시 전북이 48.0%로 가장 낮음
 - 계류시설은 대부분 50%이상이나 전북이 46.6%, 전남이 47.1%로 완공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어항의 배후어촌계의 발전정도가 비 사업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
 - 지방어항을 배후로 하고 있는 어촌계 지역의 발전정도를 보면 가장 발전도가 높은 복지어촌계가 전체 16.9%로 비 사업지역의 복지어촌계 비율 7.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립어촌계 역시 41.1%로 비 사업지역의 26.2%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
- 지방어항의 정주여건을 보기 위하여 비 사업지역의 가구 수, 어업가구 수, 인구, 어업인구 수와 비교한 결과 지방어항 배후 어촌계의 가구 수와 인구수는 비 사업지역 어촌계보다 각 1.11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어업가구도 1.1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어업인구는 비 사업지역의 8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지방어항 배후 어촌계의 수산업발전정도를 보면 어촌계당 평균 수산물생산량이 549톤으로 비 사업지역의 296톤 보다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산고는 비 사업지역의 90%인 것으로 나타남
 - 지방어항 배후 어촌계의 수산물단위당 생산가치가 낮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한편으로는 통계상의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 지방어항 개발사업에 대한 인식도에서 이해도는 89.3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사업의 명확성은 68.8점으로 다소 낮게 조사됨
- 사업의 인정도를 살펴보면 사업의 목적은 대체로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이라 평가됨
 - 본 사업을 통해 어가소득 증대와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대상지의 지속적이고 내발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고, 지역 특색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의 유효도를 살펴보면, 예산의 가용성 면에서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어업활동의 편리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는 국가어항 개발을 통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사업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2.9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방어항 개발사업에 대한 이용자만족도 결과

- 지방어항 개발사업의 이용자만족도 조사결과 74.7점으로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산의 규모나 집중도에서 국가어항에 비해 떨어짐으로 해서 전년대비 2.6점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프로그램모니터링을 통해 본 사업에 대한 육지지역의 이용자 만족도는 71.1점, 제주지역의 이용자 만족도는 78.3점으로 조사되어 전체 평균 만족도는 74.7점으로 나타나 본 사업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7> 연도별 지방어항개발사업 이용자 만족도 결과

3. 어항개발사업의 문제점 도출

□ 국가어항개발사업

- 국가어항개발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계획의 미수립
 - 과거에는 지역별로 분산투자를 하고 있었고, 2006년 국가어항심층평가사업 이후에는 집중투자형식으로 변경하였지만 여전히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분산투자 방식을 취하고 있음
- 기본시설 완공에 치우친 개발
 - 현재 국가어항개발은 다기능어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본시설 완공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임
- 어업인의 소득증가 미약
 - 수산업이 쇠퇴되면서 국가어항이 어촌지역의 어업인 소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 국가어항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부족
- 국가어항 개발사업에 대한 가용 예산 부족

□ 지방어항 개발사업

- 한정된 예산대비 과도한 어항 지정
 - 지방어항은 1972년 최초로 255개 지정된 이후 251개가 추가 지정되고 222개가 해제되어 2010년 12월 현재 285개의 어항이 지정되어 있음
- 우선투자 순위 계획의 미수립
 - 과학적 또는 경제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투자우선순위에 의거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따라 배분하여 투자를 시행하고 있음
 - 2006년 이후 정부에서는 과거 분산방식에 의한 투자보다는 집중적인 투자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여전히 모호한 입장임
- 낮은 사업의 유효도
 - 지방어항 개발에 대한 지연으로 인해 어업인들이 만족도가 낮으며, 적은 예산에 대한 집행 효율성에 대한 만족도도 낮음을 알 수 있음

V.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모니터링 조사 결과·분석

1.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링 추진방향

- 다기능어항 모니터링의 추진 방향은 크게 다음 3단계로 구분
 - 1단계 : 모니터링의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법론 및 지표의 개발
 - 2단계(성과 모니터링) : 다기능어항 건설 전·후의 해당 지역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성과평가
 - 3단계(프로그램 모니터링) : 사업대상지역과 인근 주민의 설문 조사를 통한 다기능어항 만족도 및 인식도 조사
- 성과 모니터링에 의한 효과분석
 - 다기능어항의 성과평가 방법은 과거추세에 의한 성과모니터링을 위주로 수행
 - 다기능어항의 경우 13개항 가운데 8개항이 완료되고 5개항이 시행중이므로, 공사 전후 경제·사회 지표의 변화를 위주로 다기능어항 성과평가를 실시
- 프로그램 모니터링
 - 다기능어항의 주체인 어업인, 숙박 및 관광시설,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기능어항의 인식도, 인정도, 만족도 등을 조사
 - 다기능어항의 이용 주체인 인근 중소도시 주민에 대해 다기능어항의 인식도, 인정도, 만족도 등을 조사

□ 모니터링 범위

- 전국의 다기능어항 13개항을 대상으로 함
 - 대변항(부산 기장군), 어유정항(인천 강화군), 정자항(울산 북구), 대포항(강원 속초시), 강릉항(강원 강릉시), 흥원항(충남 서천군), 격포항(전북 부안군), 마량항(전남 강진군), 국동항(전남 여수시), 양포항(경북 포항시), 지세포항(경남 거제시), 맥전포항(경남 고성군), 모슬포항(제주 서귀포시)의 13개항
-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의 프로그램 모니터링 조사는 다기능어항을 사용하는 사용주민(어항부근)과 다기능 어항을 이용하는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선정

2. 다기능어항사업 전·후 효과분석을 위한 성과모니터링 지표

□ 수산업 지원 기능

- 권역별 어촌의 발전 잠재력, 수산업 잠재력을 조사하여 다기능어항의 수산업 지원 기능 파악

<표-6> 수산업 지원기능 성과지표

세부과제	용도별	지표
어촌발전 잠재력	수혜대상	총세대(가구), 총인구(명), 어가(호), 어가인구 (명)
	성장성	청장년인구 (명), 65세 이상 고령자 (명) 어가 비율 (%), 어가인구 비율 (%)
수산업 잠재력	자원잠재력	어획량 (M/T), 어획금액(백만원)
	시설소요	어업권수(건), 어업권면적(ha), 어선척수 (척)
	유통가공시설	수산물 유통시설(m ²), 공동시설 보유수 (개)

□ 관광·유통·문화 복지 등 복합기능

- 권역별 어촌관광 지원시설, 관광·교통·복지·문화 등 어촌기반시설을 조사하여 다기능어항의 관광·유통·문화·복지 등 복합기능을 파악

<표-7> 관광·유통·문화 복지 등 복합기능 조사 지표

세부과제	용도별	지표
어촌관광 지원시설	숙박 및 음식점	업체수 (개소), 종사자 수 (명)
	유흥, 오락시설	업체수 (개소), 종사자 수 (명)
	공원	자연공원 (개소), 어린이공원 (개소) 근린공원 (개소), 도시자연공원 (개소)
관광·교통·복지 등 복합기능	관광	사업체수(개소), 관광객수(명), 자원수(개)
	교통	주차장 용지 (m ²)
	복지	복지시설 (개소)
	문화	노인여가복지시설 (개소), 문화공간 (개소)

□ 어업인 소득창출 기능

- 권역별 어업소득을 조사하여 다기능어항의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파악

<표-8> 어업인 소득창출 기능 조사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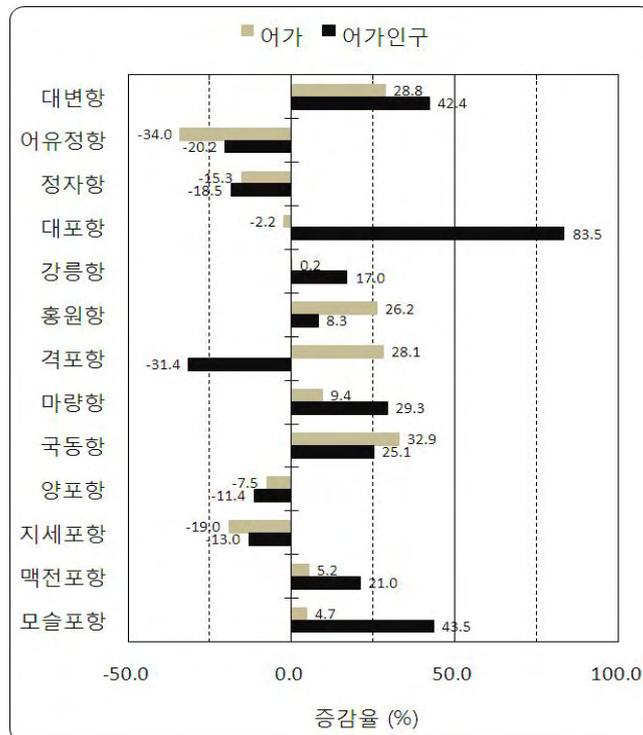
세부과제	용도별	지표
어업소득	소득	호당 어가소득(천원)
	어촌계유형	발전수준 (성장/자립/복지) 입지유형 (취약지구/연안촌락/도시근교) 종사유형 (어선어업/양식어업/복합어업)

3.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모니터링 조사 결과

□ 성과모니터링에 의한 효과분석 결과

○ 수산업 지원기능

- 전체 어촌에서 어가가 6.5%감소하고 어가인구가 20.0%감소한 반면 다기능어항 권역의 어촌에서는 전체 어촌보다 감소율이 적어 어촌 발전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사업 후 다기능어항 권역 어촌의 총 세대와 총 인구는 증가한 반면, 어가는 사업 시행 전·후에 4,564호로 동일하였고, 어가인구는 사업 시행 전 9,551명에서 사업 시행 후 8,509명으로 10.9% 감소
- 전체 어촌의 어가는 사업 시행 전 163,127호에서 사업 시행 후 152,559호로 6.5%감소하였고, 어가인구는 사업 시행 전 314,582명에서 사업 시행 후 251,519명으로 20.0%감소



<그림-8> 항별 어가 및 어가인구 증감율

- 어가 및 어가인구가 감소하는 어항은 주변의 관광상품 개발에 따라 어촌 발전 잠재력이 수산업에서 관광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다수의 주민이 관

광관련 산업으로 유입되어 어가 및 어가인구가 감소하게 되었고, 이러한 어항에서는 어획량 및 어획금액도 감소함

- 전체 어촌의 어가 및 어가인구의 증감율을 기준으로 다기능어항 권역의 어가 및 어가인구의 증감율을 살펴본 결과 어유정항, 정자항, 격포항, 양포항, 지세포항의 어가 및 어가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총 세대 및 총 인구는 증가한 반면 어가 및 어가인구가 감소한 다기능어항으로는 어유정항, 정자항, 강릉항, 격포항, 양포항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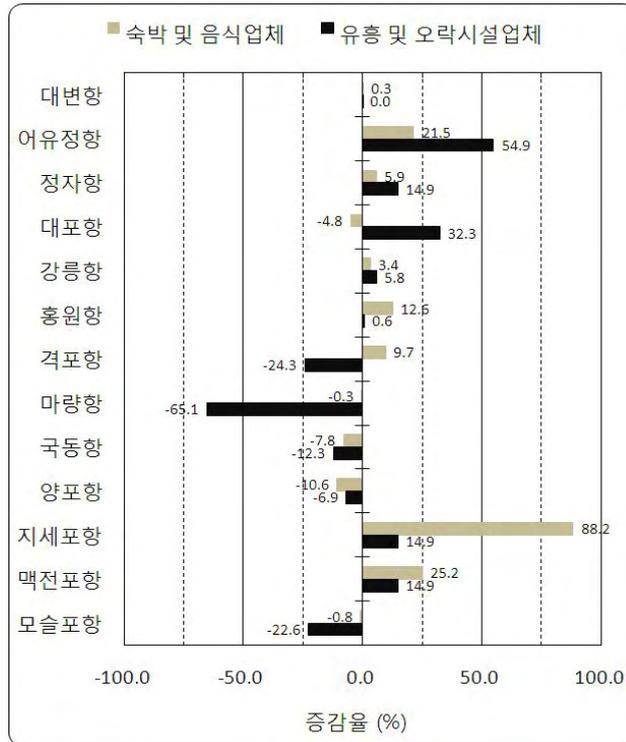
- 어획량과 어획금액은 사업 후 각각 4.6%, 15.7% 감소
 - 어획량 및 어획금액의 감소원인은 어항 주변의 관광상품 개발에 따른 다수 주민의 관광관련 산업으로 유입과 비계통판매에 의한 누락이 주요원인으로 판단됨
- 어선은 사업 후 10.4% 감소
 - 격포항, 지세포항, 모슬포항 등 대부분 관광기능이 발달하였거나 발달이 기대되는 어항에서 어선이 감소
- 어업권수와 어업권 면적이 각각 사업 시행 후 6.0%, 21.0% 증가
- 수산물 유통 시설 및 공동시설도 각각 277.4%, 18.4% 증가
- 어업권, 공동시설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수산업 지원으로 다기능어항의 수산업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음

○ 관광·교통·문화·복지 등 복합 기능

- 다기능어항 권역 어촌은 전 사업체에서 숙박 및 음식점, 유흥·오락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와 종사자 수가 다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 후 어촌관광 지원시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시행 후 숙박 및 음식점의 업체수는 2.6% 증가, 종사자 수는 2.3% 증가
 - 사업시행 후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는 17.7% 감소, 종사자는 29.9% 감소
 - 2009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사업체 중 숙박 및 음식점의 업체수와 종사자 수의

비율은 각각 19.1%, 10.4%이었으며,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와 종사자 수의 비율은 각각 3.1%, 1.9%이었으나, 다기능어항 권역 어촌의 숙박 및 음식점의 업체수와 종사자의 비율은 각각 29.6%, 20.1%이었으며 와 종사자 수의 비율은 각각 9.8%, 8.4%임

- 어촌관광 지원시설의 지표로 사용된 공원 역시 사업 시행 후 16.6% 증가



<그림-9> 항별 숙박 및 음식점업체, 유흥 및 오락시설업체 증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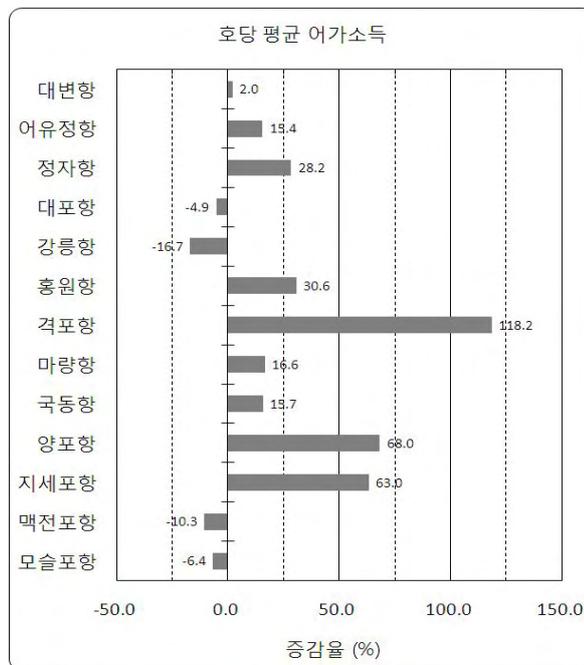
- 숙박 및 음식점, 유흥·오락시설 중 숙박 및 음식점이 어촌관광 지원시설의 지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전국 숙박 및 음식점의 업체수,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의 증감율 -2.4%, -14.9%를 기준으로 다기능어항 권역의 숙박 및 음식점의 업체수,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의 증감율을 살펴본 결과 어유정항, 정자항, 강릉항, 홍원항, 격포항, 지세포항, 맥전포항에서 증감율이 커 어촌관광 잠재력이 큰 어항으로 판단됨
- 사업 시행 후 관광업체 수, 관광객 수, 문화재 자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다기능어항 권역 어촌이 관광 복합어항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음

- 주차장 용지는 사업 시행 후 133.5%로 급증하여 교통편의가 사업 시행 전보다 좋아졌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음
- 복지시설과 노인여가 복지시설, 문화공간이 사업 시행 후 큰 폭으로 증가
- 성과조사를 수행한 2009년에는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시작단계에 있던 어항이 대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항목이 증가하여 관광·교통·문화·복지 등 복합 기능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음

○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 사업 시행 후 다기능항 권역 어촌계의 호당 평균 어가소득은 21,410천원에서 27,790천원으로 5,380천원(24.0%) 증가하여 어업인의 소득 창출 기능이 향상됨
- 다기능어항 권역의 호당 평균 어가소득 증감율을 살펴본 결과 대포항, 강릉항, 맥전포항, 모슬포항을 제외한 전 어항에서 어가소득이 증가
- 어촌계의 경영기반이 향상되거나 어촌계의 입지유형이 도시형으로 변화되면서 어업인의 소득 창출기능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냄



<그림-10> 항별 호당 평균 어가소득 증감율

- 어촌계의 종사유형은 사업 시행 후 어선어업이 증가하였고, 이는 어항의 순수기능이 확대됨으로서 어선어업이 발달한 것으로 판단됨
- 입지유형은 사업 시행 전·후 비슷하여 대부분 도시근교와 연안촌락에 입지하여 있음을 알 수 있음
 - 취약지구로 분류되어 있던 인천광역시 강화군 어유정항 권역의 매음어촌계가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연안촌락으로 분류되어 다기능어항 사업 이후 크게 발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새롭게 만들어진 흥원항 권역의 공암어촌계와 맥전포항 권역의 춘암리어촌계의 입지유형이 연안촌락인 것을 감안하면 2개의 어촌계가 연안촌락에서 도시근교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발전수준별 어촌계의 유형에서는 경영기반이 취약한 성장어촌계가 26.3% 감소한 반면, 경영기반이 취약단계를 벗어난 자립어촌계가 33.3%, 경영기반이 우수한 복지어촌계가 80.0% 증가하여 다기능어항 권역의 어촌계가 크게 발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어촌계의 호당 어가소득의 증가, 어촌계 유형의 변화로부터 다기능어항은 어업인 소득 창출기능이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 사업의 인식도를 살펴보면 사업의 이해도 면에서 다기능 어항개발로 인하여 어촌의 소득증대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사업의 목적성은 관광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어업소득 증대 등의 어업활성화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의 유효도를 살펴보면, 예산규모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추진의 효율성은 모든 단계에 있어서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

-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50.0점으로 본 사업에 대한 보통정도의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됨
- 연도별 이용자 만족도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0년도 만족도 결과가 50.0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6.8점 낮게 나타남
 - 2009년도에는 이용자 만족도조사 대상을 인근 지역주민으로 한정하였고, 2010년에는 도시지역 및 인근 사·군에서 다기능어항을 실제 이용하는 원거리이용자를 조사대상에 추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 즉, 2009년도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만족도 결과는 실제 다기능어항을 이용하는 이용대상자가 아닌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만족도 결과의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 2010년에는 좀 더 객관적인 자료획득을 위해 대상표본을 전년도와 상이하게 실제 이용하는 원거리 이용자를 조사대상에 추가하였고, 향후 다기능어항개발사업의 이용자만족도는 금년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광 후의 여러 사항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만족도 불만족도 아닌 보통 정도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휴게시설의 경우 다소 불만족인 사람이 많았고, 휴양 및 여가를 즐긴 경험에 대해서는 만족인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VI. 결론 및 향후 추진방향

1. 어촌개발사업

가. 어촌종합개발사업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모니터링 조사 결과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모니터링 조사는 사업 성과와 연관을 갖는 성과 모니터링과 사업추진에 대한 프로그램 모니터링으로 나누어서 실시
 -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어가구의 변화, 어업인구의 변화, 어가 소득의 변화, 어업 생산성에 대한 영향 등의 계량적 지표가 조사되었으며, 방문객 변화에 대한 영향, 자연재해 방지에 대한 기여, 사회문화환경에 대한 영향 등의 비계량적 지표 조사
 -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사업의 인지도, 적합도, 유효도 등이 각각 조사
 - 어촌종합개발사업 성과 모니터링과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는 전년보다 3.9점 상승된 69.7점으로 나타나 본 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67.6점, 공무원의 만족도는 71.7점으로 조사되어 전체적인 만족도는 69.7점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만족도는 성과 모니터링의 계량적 지표를 산출함에 있어 앞서 과거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1단계 권역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지역주민들과 담당 공무원의 만족도가 조금 낮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됨
 - 앞으로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대상권역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포함되어 사업이 실행되므로 이용자의 만족도는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프로그램모니터링은 본 사업에 대한 인지도,

적합도, 사업의 유효도를 지역주민과 공무원으로 분리하여 조사한 결과, 모두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남

- 따라서,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연차적인 지표산출 및 분석을 통해 본 사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향후 사업개선방안 및 추진방향 제시

-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설 활용방안을 모색
 - 계획수립이 완료된 지역에 있어서는 도입시설에 대한 주민 대상의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시행 시에도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
- 중심어촌계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 원동력 확보
 - 해당 권역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만한 또는 개발 여건이 되는 중심어촌계를 선정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가치를 제고하도록 함
- 완공 위주의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조정
 - 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비를 배분하는데 있어서 어촌계별(또는 마을별)로 예산을 할당할 것이 아니라 완공 위주의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조정 필요
- 지역주민의 어업 외 소득확보를 위한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검토 필요
 - 소득사업에 대한 운영 및 관리계획이 타당할 경우의 지원책으로는 종장기 저금리 융자, 일부 사업비 보조 또는 어업인 공동을 위한 사업과 공동분배라는 전제하의 사업비 지원 등 다각적이고도 현실적인 검토가 요구
- 시설과 프로그램이 우수한 권역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모색
 -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하여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촌계 단위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우수 사례지역으로 선정된 어촌계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후속으로 계획하는 수산업, 어업은 물론 어촌관광 분야 등 각종 분야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강구

나.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모니터링 조사 결과
 -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사업의 성과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발전방안에 대한 모색을 위하여 이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며, 모니터링 작업은 본 사업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성과 및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결과 방문객 증가와 더불어 어가소득 증가에 긍정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본 사업에 대한 기대성과를 측정
 - 어촌종합개발사업 성과 모니터링과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는 전년보다 2.0점 상향된 67.7점으로 나타나 본 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삶의 질 향상, 지역 이미지 향상, 지역 주민 자긍심 향상, 전통문화 발굴보존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66.8점, 관광기반시설 확충효과, 정주환경 개선 효과 등에 대한 공무원의 만족도는 68.6점으로 조사되어 전체적인 만족도는 67.7점으로 나타남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대한 프로그램모니터링은 본 사업에 대한 인지도, 적합도, 사업의 유효도를 지역주민과 공무원으로 분리하여 조사한 결과, 모두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남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향후 사업개선방안 및 추진방향 제시
 - 사업평가의 연속성을 위해 모니터링 실시지역의 체계적 관리
 - 금차에 조사 분석된 대상지역에 대한 기대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실제 사업의 진행에 따른 만족도와 더불어 사업 추진 후 나타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대한 검토 필요
 - 사업에 대한 홍보와 주민참여 기반 강화
 - 본 사업에 대한 관계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설명회, 간담회)를 통하여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역주민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
 -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교육과 각종 컨설팅을 통하여 참여역량을 키우는 작업의 병행도 요구
 - 지역여건에 따른 예산지원 범위의 다양화
 - 일괄적인 예산의 증액보다는 지역의 여건에 따른 탄력적 예산지원과 더불어 타 부문의 지원 사업비를 연계하는 방안, 모니터링을 통하여 우수지역을 발굴하고 추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
 - 중심테마 및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지역 간 차별화 강화
 - 사업지침에 따라 선정된 중심테마가 운영단계에서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새로운 체험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발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인접지역간의 차별성을 확보
 -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기능 강화
 - 관리기능 및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로는 방문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 홍보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시설관리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 등을 지표에 포함시키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

다. 어촌관광개발사업

- 어촌관광개발사업의 모니터링 조사 결과
 - 어촌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관련하여 계획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도입시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계획수립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계획수립이 완료된 지역은 도입시설에 대한 주민 홍보와 사업 운영시 구체적인 주민참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어촌관광개발사업 성과 모니터링과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는 69.8점으로 나타나 본 사업에 대한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됨
 -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68.1점, 공무원의 만족도는 71.6점으로 조사되어 전체적인 만족도는 69.8점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2.4점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공무원 대상 조사결과 관광기반시설 확충효과나 정주환경 개선효과가 전년도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어촌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모니터링의 계량적 지표를 산출함에 있어 각종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는 대신 설문조사를 통해 예상 기대치를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점이 본 과업의 한계점이었으나, 이러한 기대치는 향후 본 사업의 완료 후 실적치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할 때 비교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어촌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연차적인 지표산출 및 분석을 통해 본 사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어촌관광개발사업의 향후 사업개선방안 및 추진방향 제시
 - 도입시설에 대한 이해 및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 대상 지역 공무원이 도입시설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주민 참여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유도
 - 동·서·남해 지역별 대상지의 특색 강화 필요
 - 동·서·남해의 특성을 살리되, 기존 어촌체험마을사업으로는 실시할 수 없었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어촌지역의 문화, 음식, 축제 개발에 집중함으로써 어항개발사업과의 차별성을 강화
 -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통한 지역 주민간의 갈등 해소 필요
 -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과정에서 특정 관계주인이 아닌 대상지의 모든 주민에게 사업의 내용을 공지 및 설명하고, 가능하다면 주민이 개발계획뿐만 아니라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관리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공무원의 사업추진 내용 및 과정에 대한 교육 강화
 - 어촌어항복합공간으로 선정되었던 지역의 공무원의 경우 사업추진 내용 및 과정에 대한 이해가 타 사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진행 중인 어촌관광개발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간다면 이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됨
 - 예산 지원을 상향 조정 또는 직접 집행 필요
 - 국고지원율을 현행 보다 상향 조정하거나 국가 직접시행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자체 및 일부 어업인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적정 투자규모는 향후 몇 년 성과를 측정한 후 전문가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임

2. 어항개발사업

가. 국가어항개발사업

-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해 공간적 성과모니터링과 과거 추세에 의한 성과모니터링을 병행하여 실시
 - 공간적 성과모니터링 : 어항이 개발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성과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평가를 실시
 - 과거추세에 의한 성과모니터링 : 어항개발 전·후의 목적 달성도 및 효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평가

○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모니터링 조사 결과

- 첫째, 국가어항 개발사업은 투자예산에 비해 어항개발의 진척도가 매우 높아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국가어항개발사업의 공간적 성과모니터링 결과, 2010년말 기준으로 투자예산 집행율은 약 77.6%를 집행하였고, 외곽시설 완공률은 91.2%, 계류시설 완공률은 87.0%로 투자예산에 비해 어항개발의 진척도가 매우 높음
- 둘째, 국가어항 배후지 어촌계의 경우 발전도가 높은 복지 또는 자립어촌계의 비율이 비사업지역 어촌계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국가어항 개발사업을 통해 배후지 어촌계의 발전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어항을 배후로 하고 있는 사업지역 어촌계의 복지 또는 자립어촌계의 비율이 전체 67%인데 비해 비사업지역은 33.6%로 국가어항이 있는 지역의 어촌계의 발전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셋째, 국가어항 배후지역의 어업가구 및 어업인구 등이 비사업지역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정주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국가어항이 있는 어촌계의 어업가구는 평균 140가구로 기타어촌계의 평균 71가구보다 약 두배 정도 많았으며, 어업인구의 경우 평균 269명으로 기타어촌계의 112명에 비해 2.4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넷째, 국가어항 배후어촌계의 연평균수산물 생산량은 비사업지역보다 약 2배, 수산물 생산액은 약 1.3배, 재적어선척수는 약 1.8배 정도 높은 것

- 으로 조사되어, 수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국가어항 배후어촌계의 연평균수산물 생산량은 582톤으로 비사업지역 296톤보다 약 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산물생산액은 약 16억원으로 비사업지역의 12억원보다 1.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재적어선척수 역시 평균 67척으로 비사업지역의 38척보다 약 1.8배 높은 것으로 분석
- 다섯째, 2000년대에 건설한 국가어항 10개항을 대상으로 과거추세에 의한 성과모니터링을 분석한 결과 국가어항 개발로 인하여 착공이후 가구수, 어가소득, 수산물 생산량등의 증가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2000년대에 건설한 10개 국가어항에 대하여 국가어항 개발전후 효과 분석해본 결과 어항 착공이전보다 착공 이후 전체 가구 수의 증가율이 상승된 곳은 6개 어항인 것으로 분석됨
 - 소득 증가율은 7개 지역이 상승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어선세력이나 수산물 생산량은 착공이후 증가율이 다소 크게 나타남
- 여섯째,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공무원, 어업인 모두 국가어항에 대한 예산의 가용성 부분에서 예산지원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예산가용성에 조사결과 어업인은 43.4점, 공무원은 46.8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일곱째, 어선안전수용율 검토결과 어선척수는 수산업 여건변화에 따라 어선감척 등으로 1,245척 감소하였지만, 국가어항 개발에 따라 어선을 수용할 수 있는 계류시설, 항내박지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어선안전수용율은 74.3%로 전년도 대비 1.5% 증가됨
- 수용대상어선척수는 2009년 74,362척에서 2010년 73,117척으로 1,245척 감소
 - 전국 어선안전수용율은 2009년 72.8%에서 2010년 74.3%로 1.5% 증가됨
 - 항종별 분담율을 고려한 국가어항의 어선안전수용율은 2009년 40.76%에서 2010년 41.61%로 0.85% 증가됨

- 여덟째,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이용자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대비 1.1점 상향된 65.9점으로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본 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제주를 제외한 육지지역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평균 이용자만족도는 61.7점, 제주지역의 평균 이용자만족도는 66.2점으로 전체 평균 이용자만족도는 65.9점으로 본 사업에 대한 보통이상의 이용자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됨
 - 결론적으로 국가어항 개발사업을 통해 사업진척도, 어촌지역 발전정도, 정주여건, 소득수준, 수산업 발전정도 등의 효과가 향상되어 어항개발의 합목적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어항은 어촌의 핵심 기반 시설로서 지속적인 시설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어항개발사업의 향후 사업개선방안 및 추진방향 제시
- 효율적인 예산집행 강구
 - 국가어항이나 지방어항의 개발계획 또는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경제성 평가와 과학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이 필요
 - 기능시설과 편의시설의 확충
 - 어항은 어업의 기반시설의 기능보다는 수산물의 가공, 유통, 관광시설 등으로서의 기능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어항개발을 기본시설 위주에서 기능시설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전환 필요
 - 사후관리체계 구축
 - 어항관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명시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배포할 필요가 있으며, 어항관리청도 어항의 효율적인 사후활용을 위해 어항이용세칙을 만드는 등 노력이 필요 할 것임
 -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홍보체계 및 피드백 구축
 - 팸플릿 등 홍보지 발행, 인터넷을 통한 개발정보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홍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지역어업인들의 의견을 어항개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피드백체계를 구축
 - 어항을 둘러싼 여건 변화를 향후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에 반영
 - 금번 용역에서 도출된 어항개발의 문제점과 어항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대하여 향후에 수립되는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에 반영
-

나. 지방어항 개발사업

- 2010년의 지방어항 개발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해 지방어항 개발사업이 수행된 지역과 수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비교 평가를 통해 사업효과를 모니터링 함

○ 지방어항 개발사업의 모니터링 조사 결과

- 첫째, 지방어항 개발사업은 투자예산에 비해 어항개발의 진척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국가어항 개발사업보다 사업진척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방어항 개발사업의 완공율은 2009년 말 기준으로 285개의 지방어항중 158개의 어항이 완공되어 62.2%의 완공율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집행율은 약 56.2%로 국가어항 개발사업에 비해 사업진척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둘째, 지방어항 배후지 어촌계의 경우 발전도가 높은 복지어촌계의 비율이 비사업지역의 어촌계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지방어항 개발사업을 통해 배후지 어촌계의 발전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방어항을 배후로 하고 있는 어촌계의 발전도가 높은 복지어촌계 비율이 16.9%로 비사업지역 복지어촌계 비율 7.4%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셋째, 지방어항의 가구수, 어업가구 등의 정주여건이 비사업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국가어항에 비하여 정주여건 개선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수는 비사업지역보다 1.11배, 어업가구 수는 비사업지역보다 1.1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넷째, 지방어항 배후어촌계의 수산물 생산량이 비사업지역보다 1.9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수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다섯째,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육지지역, 제주지역 모두 지방어항에 대한 예산의 가용성 부분에서 예산지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예산가용성에 조사결과 육지지역은 30.3점, 제주지역은 28.6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여섯째, 지방어항 개발사업의 이용자만족도 조사결과 74.7점으로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산의 규모나 집중도에서 국가어항에 비해 떨어짐으로 해서 전년대비 2.6점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해 본 사업에 대한 육지지역의 이용자 만족도는 71.1점, 제주지역의 이용자 만족도는 78.3점으로 조사되어 전체 평균 만족도는 74.7점으로 나타나 본 사업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지방어항 개발사업을 통해 사업진척도, 어촌지역 발전정도, 정주여건, 수산업 발전정도 등의 효과가 향상되어 어항개발의 합목적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어항 개발사업에 비하여 어항개발 효과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예산의 규모 및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다기능어항개발사업

- 다기능어항 건설사업 전·후의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성과조사 대상지역과 관련어촌계를 분류
 - 다기능어항의 행정구역은 최소단위인 동·리 까지 분획하여 다기능어항의 행정 구역을 체계화
 - 자료 수집은 최소단위의 법정동, 법정리 기준
 - 관련어촌계는 대상지역에 주소를 둔 어촌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사업 시행 후 새로 분리되어 만들어진 어촌계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조사함
 - 어항으로서의 기능(수산업 지원 기능), 관광·유통·문화 복지 등 복합 기능, 어업인 소득창출 기능에 대해 각 지자체 및 수협이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통계자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 해당 지역주민, 어항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다기능어항의 건설 사업 전·후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은 사업의 설계 이전인 2004년(2005년 통계자료)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사업 시행 후는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09년(2010년 통계자료)을 기준으로 함
-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모니터링 조사결과
- 첫째, 다기능어항은 13개 어항별로 공사 진행 정도, 인근 관광지 여부, 지역 어촌계의 의지, 지역적 수산업 집중 정도 등에 따라 다기능어항의 3대 기능 가운데 한·두가지로 특화되어 발전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조사를 통해 다기능어항에 대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어항을 기능별로 구분하고 각각 특화된 기능의 발전방향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13개 다기능어항 중 대변항, 대포항, 마량항, 국동항, 맥전포항, 모슬포항 등 6개 어항은 수산업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흥원항은 수산업 기능의 강화가 기대되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정자항, 강릉항, 격포항, 양포항, 지세포항 등 5개 어항은 어촌체험 등 관

광 지원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어유정항은 관광 복합 기능을 확대시켜 개발하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됨

<표-9 > 성과조사시 다기능어항의 모니터링 단계

모니터링 단계	다기능어항
도입단계	어유정항
실행단계	대변항, 대포항, 강릉항, 흥원항, 격포항, 국동항, 지세포항, 맥전포항, 모슬포항
사후단계	정자항, 마량항, 양포항

<표-10 > 성과조사에 따른 다기능어항의 발달 기능

발달 기능	다기능어항
수산업 기능 활성화	대변항, 대포항, 마량항, 국동항, 맥전포항, 모슬포항 (※ 흥원항 : 수산업 기능 강화 기대)
복합 기능 활성화	정자항, 강릉항, 격포항, 양포항, 지세포항 (※ 어유정항 : 복합 기능 확대 개발이 효과적)

- 둘째,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이 어가 및 어업인구 감소의 억제 효과로 작용하고, 지역 수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어 수산업 본래의 기능인 수산업 잠재력을 크게 제고시키는 것으로 판단됨
 - 다기능어항 지역의 어가 수는 사업 전후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어가인구는 사업 후 10.9% 감소함. 이는 우리나라 전체 어촌계의 어가수 6.5% 감소, 어가인구 20.0% 감소에 비해 낮게 나타나므로 다기능 어항의 건설에 따른 어가와 어가인구 감소의 억제 효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어항별로 보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어유정항(-20.2%), 관광기능의 활성화로 어가인구의 관광업 전환이 촉진되었던 정자항(-18.5%), 격포항(-31.4%), 지세포항(-13.0%) 등 5개 다기능어항을 제외한 8개 다기능어항에서 어가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어업권 수(6.0%)와 어업권 면적(21.0%), 수산물 유통가공시설(277.4%) 등은 다기능어항의 건설에 따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다기능어항이 지역 수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셋째, 다기능어항은 지역의 관광지역과 결합하여 해양 친수공간, 마리나

기지, 음식점과 유흥오락공간등을 제공하여 어촌지역의 소득증가 및 복지를 개선함으로써 어촌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13개 다기능어항의 건설로 인해 유흥·오락시설의 업체 수(-17.7%)와 종사자수(-29.9%)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에서 다기능어항 건설 후 경제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다기능어항의 건설 이후 관광 사업체수가 39.6%, 해당 어항 관광객 수가 31.3%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어촌관광 개선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항시설의 개선으로 주차용지 133.5%, 복지시설 31.9% 등 문화·복지 복합시설이 크게 개선되어 어촌 지역의 소득 증가 및 복지 개선에 큰 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됨

- 넷째, 다기능어항은 수산업 기능 강화와 관광객 유입 증가 등과 같은 요인을 통해 어업인의 어가소득을 크게 개선시킨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전후 다기능어항의 어촌계는 어가소득이 평균 24.0% 증가하여 어업인 소득 창출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대포항(-4.9%), 강릉항(-16.7%), 맥전포항(-10.3%), 모슬포항(-6.4%) 등 4개 다기능어항을 제외한 전 어항에서 어가소득이 증가하였으며, 격포항이 118.2%로 가장 높은 어가소득 증가율을 기록함

- 또한, 어가소득이 감소된 4개 다기능어항도 어촌계의 경영기반 향상과 어촌계 입지유형 변화로 어업인 소득창출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됨

- 다섯째, 다기능어항 건설을 통해 어촌계 종사유형인 어선어업의 증가와 경영기반이 우수한 복지어촌계로의 빠른 변화에 따라 어촌계의 기반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다기능어항 건설을 전후하여 어촌계의 종사유형은 어선어업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어항 순수기능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업환경에 긍정적 요인으로 판단됨

- 또한, 다기능어항 건설지역의 어촌계 발전 정도를 살펴보면, 경영기반이 취약한 성장어촌계가 26.3% 감소한 반면, 취약한 경영기반을 벗어나 자립어촌계로 성장한 어촌계가 33.3%, 경영기반이 우수한 복지어촌계가 80% 증가하여 다기능어항 권역의 어촌계가 대부분 복지어촌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을 통해 어촌발전 잠재력과 수산업 잠재력의 향상, 어촌관광 지원시설과 교통·복지·문화시설의 개선, 어가소득과 어촌계의 발전수준 향상 등으로 수산업 지원기능, 관광·교통·문화·복지 등 복합기능, 어업인 소득창출 기능 등의 효과가 크게 개선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의 앞으로 사업추진방향 및 발전방안 제시
 - 다기능어항개발사업의 앞으로 사업추진방향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으며, 효율적인 예산집행 강구와 사후관리체계 구축,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홍보체계 및 피드백 구축 등에 대해서는 어항개발사업의 향후 발전방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음
 - 성과모니터링 체계 구축
 - 다기능어항의 경우 국가어항이나 지방어항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건설된 항이기 때문에 적절한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 시점에서 다기능어항 특유의 올바른 평가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다기능어항과 연결된 기반시설의 확충
 -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와 인근 어항지역의 어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과 주차장 마련 등 다기능어항과 연결된 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다기능어항의 특성별 발전 정책 수립
 -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된 복합기능의 어항 건설 정책에서 진일보하여 이제는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는 다기능어항의 특성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다기능어항과 마리나, 해양·해중공원,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기능을 연계·포함될 수 있는 제도적·학술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목 차

제 I 편 개 요

- 제1장 과업의 목적3
- 제2장 과업의 범위3
 - 2.1 조사대상3
 - 2.2 주요 연구내용4
- 제3장 과업수행 흐름5
 - 3.1 과업수행 방법5
 - 3.2 과업수행 조직6
- 제4장 모니터링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7
 - 4.1 행정서비스와 모니터링7
 - 4.2 모니터링의 개요7
 - 가. 모니터링의 기본 모형8
 - 나. 모니터링의 중요성10
 - 다. 모니터링의 수행 단계11

제 II 편 일반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 제1장 어촌개발 일반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15
 - 1.1 어촌개발 정책의 변천과정15
 - 1.2 일반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16

- 가. 어촌종합개발사업16
- 나.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17
- 다. 어촌관광개발사업18
- 제2장 어항개발 일반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30
 - 2.1 어항개발 정책의 변천과정30
 - 2.2 일반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31
- 제3장 다기능어항개발 일반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33
 - 3.1 다기능어항의 개념33
 - 3.2 다기능어항의 기능 및 유형33
 - 3.3 일반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34
- 제4장 선진국 다기능어항 개발사례 조사40
 - 4.1 일본의 사례40
 - 가. 나가시키향 나가시키향의 신 나가시키향 (특정 제3종 어항)42
 - 나. 효고현 고베시의 타루미어항 (제3종 어항)46
 - 다. 피셔리나 어항50
 - 4.2 유럽의 사례56
 - 가. 영국56
 - 나. 벨기에57
 - 다. 이탈리아58

제 III 편 어촌·어항개발 사업의 주요지수 변화

- 제1장 어선안전수용율 산정61
 - 1.1 어선안전수용율의 개요61
 - 1.2 어선안전수용율 산출의 주요 변수 설정62
 - 가. 수용대상 어선척수 결정62

나. 계류시설 연장 길이64
 다. 항내 수면적66
 라. 수용가능 어선척수 산정방법68
 1.3 전국 어선안전 수용율 산정70
 가. 수용대상 어선척수70
 나. 수용가능 어선척수71
 다. 어선안전수용율 산정결과72

제2장 사업권역내 사업대상지의 연평균 어가소득증가율77
 2.1 연평균 어가소득증가율 검토 개요77
 2.2 사업권역내 사업대상지의 연평균 어가소득증가율 산정78

제Ⅳ편 어촌개발사업 모니터링 조사

제1장 어촌종합개발사업83
 1.1 모니터링 조사 방법83
 가. 모니터링 목적83
 나. 모니터링 대상 및 표본의 선택84
 다. 모니터링 내용86
 1.2 어촌종합개발사업 모니터링 조사89
 가. 성과 모니터링89
 나. 공무원 대상 프로그램 모니터링95
 다.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모니터링102
 1.3 모니터링 조사 결과106
 가. 성과 모니터링 결과106
 나.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107
 1.4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이용자만족도 조사·분석109

제2장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111
 2.1 모니터링 조사 방법111
 가. 모니터링 목적111
 나. 모니터링 대상 및 표본의 선택111
 다. 모니터링 내용114
 2.2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모니터링 조사117
 가. 성과 모니터링117
 나. 프로그램 모니터링122
 2.3 모니터링 조사 결과135
 가. 성과 모니터링 결과135
 나.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136
 2.4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대한 이용자만족도 조사·분석139

제3장 어촌관광개발사업141
 3.1 모니터링 조사 방법141
 가. 모니터링 목적141
 나. 모니터링 대상 및 표본의 선택142
 다. 모니터링 내용144
 3.2 어촌관광개발사업 모니터링 조사147
 가. 성과 모니터링147
 나. 프로그램 모니터링152
 3.3 모니터링 조사 결과165
 가. 성과 모니터링 결과165
 나.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166
 3.4 어촌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이용자만족도 조사·분석168

제4장 어촌개발사업의 문제점 도출170
 4.1 어촌종합개발사업170
 4.2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171
 4.3 어촌관광개발사업172

제 V 편 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조사

제1장 국가어항개발사업175

1.1 국가어항개발사업 효과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조사방법175

가. 모니터링 목적175

나. 모니터링 대상 및 표본의 선택175

다. 모니터링 내용177

1.2 국가어항개발사업 효과분석182

가. 성과 모니터링에 의한 효과분석182

나. 프로그램 모니터링207

1.3 모니터링 조사 결과213

가. 성과모니터링에 의한 효과분석 결과213

나.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215

1.4 국가어항 개발사업에 대한 이용자만족도 조사분석217

제2장 지방어항 개발사업219

2.1 지방어항 개발사업 효과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조사방법219

가. 모니터링의 목적219

나. 모니터링 대상 및 표본의 선택220

다. 모니터링 내용221

2.2 지방어항개발사업 효과분석225

가. 성과 모니터링에 의한 효과분석 결과225

나. 프로그램 모니터링233

2.3 모니터링 조사 결과236

가. 성과 모니터링에 의한 효과분석 결과236

나.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237

2.4 지방어항 개발사업에 대한 이용자만족도 조사분석238

제3장 어항개발사업의 문제점 도출240

3.1 국가어항개발사업240

3.2 지방어항 개발사업244

제 VI 편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모니터링 조사

제1장 다기능어항 효과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조사 방법249

1.1 모니터링 개요249

가. 모니터링의 목적249

나. 모니터링의 내용250

1.2 모니터링의 추진 방향250

가. 성과 모니터링에 의한 효과분석250

나. 프로그램 모니터링251

제2장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모니터링 방법252

2.1 지역별 모니터링 범위 및 표본252

가. 지역별 모니터링 범위252

나. 프로그램 모니터링 표본258

2.2 성과 모니터링 조사방법259

가. 성과 모니터링 방법론259

나. 다기능어항 성과평가 방안270

2.3 프로그램 모니터링 조사방법272

제3장 다기능어항사업 시행 전후의 사회경제적 현황 및 효과분석274

3.1 사회·경제적 현황 및 효과분석을 위한 성과모니터링 지표274

가. 수산업 지원 기능275

나. 관광·유통·문화 복지 등 복합기능276

다.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278

3.2 항별 성과 모니터링에 의한 사회경제적 현황 및 효과분석280

가. 대변항280
 나. 어유정항287
 다. 정자항294
 라. 대포항301
 마. 강릉항309
 바. 흥원항317
 사. 격포항325
 아. 마량항332
 자. 국동항339
 차. 양포항346
 카. 지세포항353
 타. 맥전포항360
 파. 모슬포항367
 3.3 프로그램 모니터링374
 가. 근거리 사용자(어항부근) 대상374
 나. 원거리 이용자(인근지역) 대상376
 다. 개선 의견378
제4장 모니터링 조사 결과379
 4.1 성과 모니터링에 의한 효과분석 결과379
 가. 다기능어항 성과 모니터링379
 나. 다기능어항별 개발전후 경제적 지표 분석380
 다. 다기능어항 전체의 개발 전후 경제지표 종합 평가388
 4.2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395
제5장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에 대한 이용자만족도 조사·분석 ..396

제Ⅷ편 결론 및 향후 추진방향

제1장 결 론401
 1.1 어촌개발사업401
 가. 어촌종합개발사업401
 나.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403
 다. 어촌관광개발사업404
 1.2 어항개발사업406
 가. 국가어항 개발사업406
 나. 지방어항 개발사업409
 1.3 다기능어항 개발사업411
제2장 어촌·어항개발사업의 향후 사업개선방안 및 추진방향 ..415
 2.1 어촌개발사업 향후 사업개선방안 및 추진방향415
 가. 어촌종합개발사업415
 나.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417
 다. 어촌관광개발사업419
 2.2 어항개발사업 향후 사업개선방안 및 추진방향421
제3장 다기능어항개발사업의 앞으로 사업추진방향 및 발전방안426
제4장 어항개발사업의 성과지표 제시430

부 록

부록-1. 시·도별 어선안전수용율

가. 부산광역시437

나. 울산광역시440

다. 인천광역시443

라. 경기도446

마. 강원도449

바. 충청남도452

사. 전라북도455

아. 전라남도458

자. 경상북도463

차. 경상남도466

카. 제주도469

타. 년차별 어선안전수용률472

부록-2. 만족도 조사 설문지

▣ 어촌개발사업 관련 설문지477

가. 어촌종합개발사업 이용자(공무원) 만족도 설문조사477

나. 어촌종합개발사업 이용자(지역주민) 만족도 설문조사481

다.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이용자(공무원) 만족도 설문조사486

라.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이용자(지역주민) 만족도 설문조사490

마.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이용자(공무원) 만족도 설문조사495

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이용자(지역주민) 만족도 설문조사500

▣ 어항개발사업 관련 설문지505

가. 국가어항 관리자(공무원) 만족도 조사 설문지505

나. 국가어항 이용자(지역주민) 만족도 조사 설문지509

다. 다기능어항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설문지516

라. 지방어항 이용자(지역주민) 만족도 조사 설문지523

부록-3. 다기능어항개발 성과 모니터링 및 성과지표 개발 조사표

부록-4. 만족도 조사 통계표

표 목 차

<표 I-1> 모니터링의 기능 10

<표 II-1> 어촌종합개발사업 일반현황 16

<표 II-2> 1단계(160개 권역) 투자 실적('94~'07) 17

<표 II-3> 2단계(70개 권역) 투자 실적 및 계획('07~'13) 17

<표 II-4> 시·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17

<표 II-5>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실적(2009까지) -1 18

<표 II-6>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실적(2009까지) -2 19

<표 II-7>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실적(2009까지) -3 20

<표 II-8>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실적(2009까지) -4 21

<표 II-9>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실적(2009까지) -5 22

<표 II-10>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실적(2009까지) -6 23

<표 II-11>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 24

<표 II-12>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수 25

<표 II-13> 년도별 어촌체험마을조성 실적 25

<표 II-14> 년도별 투자실적 및 장래계획 25

<표 II-15> 어촌관광개발사업의 주요 내용 26

<표 II-16> 모델 유형별 추진방안 27

<표 II-17> 세부사업별 투자실적 및 계획(국비기준) 28

<표 II-18> 어촌·어항관광조성 사업별 투자실적 및 계획 29

<표 II-19> 어항의 종류 및 현황 31

<표 II-20> 지자체별 어항지정 및 완공현황 32

<표 II-21> 투자현황 32

<표 II-22>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의 주요 내용 35

<표 II-23>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의 추진사항 36

<표 II-24> 다기능어항의 시설계획 및 시설현황 37

<표 II-25> 항별 투자현황 38

<표 II-26> 항별 투자현황 39

<표 II-27> 일본의 특정 제3종 어항 42

<표 II-28> 타쿠미어항 PFI 사업 요약 48

<표 II-29> 일본 피셔리나 제원 55

<표 II-30> Fleetwood Harbour Village Marina, Padstow Harbour 56

<표 II-31> Penzance Harbour, Troon Harbour 57

<표 II-32> Zeebrugge Port, Oostende 57

<표 II-33> Cetraro, Acciaroli 58

<표 III-1> 어선수용이 가능한 어항 및 항만현황 61

<표 III-2> 2008년 시·도별 수용대상 어선척수 62

<표 III-3> 2009년 시·도별 수용대상어선척수 62

<표 III-4> 2010년 시·도별 수용대상어선척수 63

<표 III-5> 어선 톤급별 제원 63

<표 III-6> 2010년 해역별 대표어선의 제원 64

<표 III-7> 2010년 시·도별 대표어선의 제원 64

<표 III-8> 시·도별 국가어항의 계류시설 연장 65

<표 III-9> 시·도별 지방어항의 계류시설 연장 65

<표 III-10> 시·도별 항만의 계류시설 연장 66

<표 III-11> 시·도별 국가어항의 정온 수면적(㎡) 67

<표 III-12> 시·도별 지방어항의 정온 수면적(㎡) 67

<표 III-13> 수용대상 어선척수 70

<표 III-14> 연도별 해역별 수용가능 어선척수 71

<표 III-15> 2010년도 항종별 수용가능 어선척수 71

<표 III-16> 2008년 전국 어선안전수용율 73

<표 III-17> 2009년 전국 어선안전수용율 74

<표 III-18> 2010년 전국 어선안전수용율 74

<표 III-19> 연도별 전국 어선안전수용율 75

<표 III-20> 2010년 전국 수용어선 항종별 분담률 76

<표 III-21> 항종별 어선안전수용율 76

<표 III-22> 연평균 어가소득 증가율 검토 대상지 77

<표 III-25> 사업대상지역 연평균 어가소득 증대효과 78

<표 III-26> 해역별 어촌소득 증대효과 79

<표 IV-1>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모니터링 대상 표본 85

<표 IV-2>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성과 모니터링 지표 86

<표 IV-3>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프로그램 모니터링 지표 87

<표 IV-4> 어업인구 증가효과 89

<표 IV-5> 사업대상지역 연평균 어가소득 증대효과 90
 <표 IV-6> 어촌종합개발사업 진행단계별 의견사항(공무원) 101
 <표 IV-7> 어촌종합개발사업 의견사항(지역주민) 105
 <표 IV-8> 사업대상지역 연평균 어가소득 증대효과 106
 <표 IV-9> 어업인구 증가효과 106
 <표 IV-10> 어업인구 증가효과 107
 <표 IV-12>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 지역주민 108
 <표 IV-13>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 공무원 108
 <표 IV-14> 어촌종합개발사업 만족도 결과 110
 <표 IV-15> 2007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만족도 조사 대상 112
 <표 IV-16> 2008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만족도 조사 대상 112
 <표 IV-17> 2009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만족도 조사 대상 113
 <표 IV-18>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조사 개요 113
 <표 IV-19>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성과 모니터링 지표 114
 <표 IV-20>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프로그램 모니터링 지표 115
 <표 IV-21> 성과 모니터링 조사 개요 117
 <표 IV-22> 프로그램 모니터링 조사 개요 122
 <표 IV-23>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의견사항(지역주민) 134
 <표 IV-24>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계량적 성과 135
 <표 IV-25>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비계량적 성과 136
 <표 IV-26>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 지역주민 138
 <표 IV-27>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 공무원 138
 <표 IV-28>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만족도 결과 140
 <표 IV-29> 어촌관광개발사업 모니터링 대상-1 142
 <표 IV-30> 어촌관광개발사업 모니터링 대상-2 143
 <표 IV-31> 어촌관광개발사업의 조사 개요 143
 <표 IV-32> 어촌관광개발사업의 성과 모니터링 지표 145
 <표 IV-33> 어촌관광개발사업의 프로그램 모니터링 지표 145
 <표 IV-34> 성과모니터링 설문조사 개요 147
 <표 IV-35> 프로그램 모니터링 조사 개요 152
 <표 IV-36> 어촌관광개발사업 의견사항(지역주민) 164
 <표 IV-37> 어촌관광개발사업의 계량적 성과 165

<표 IV-38> 어촌관광개발사업의 비계량적 성과 165
 <표 IV-39>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 지역주민 167
 <표 IV-40>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 공무원 167
 <표 IV-41> 어촌관광개발사업에 대한 만족도 결과 169
 <표 V-1> 국가어항 모니터링 대상 176
 <표 V-2>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모니터링 대상 표본 177
 <표 V-3>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공간적 성과 모니터링 지표 179
 <표 V-4>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과거추세에 의한 성과 모니터링 지표 180
 <표 V-5> 국가어항 프로그램 모니터링 지표 181
 <표 V-6> 시도별 예산집행율 182
 <표 V-7> 국가어항별 예산집행비율-1 183
 <표 V-8> 국가어항별 예산집행비율-2 184
 <표 V-9> 국가어항별 예산집행비율-2 185
 <표 V-10> 시도별 외곽시설 완공율 186
 <표 V-11> 국가어항 계류시설 완공율 187
 <표 V-12 > 어항별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현황-1 188
 <표 V-13 > 어항별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현황-2 189
 <표 V-14 > 어항별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현황-3 190
 <표 V-15 > 어항별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현황-4 191
 <표 V-16> 국가어항 개발 지역 어촌계의 발전정도 유형 192
 <표 V-17> 국가어항의 정주여건 비교, 단위 : 호, 명 193
 <표 V-18> 지역별 정주여건 비교 분석, 단위 : 호, 명 193
 <표 V-19> 국가어항 배후 어촌계의 어가 소득, 단위 : 천원, % 193
 <표 V-20> 수산업 발전정도의 비교, 단위 : 톤, 백만원 척 194
 <표 V-21> 지역별 수산업 발전정도, 단위 : 톤, 백만원, 척 194
 <표 V-22> 과거추세에 의한 성과 모니터링 대상항 196
 <표 V-23> 공현진 어항의 개발전·후 효과분석 197
 <표 V-24> 남양항의 개발전·후 효과 분석 198
 <표 V-25> 선진포 어항의 개발 전·후 효과분석 199
 <표 V-26> 삼길포항의 개발전·후 효과분석 200
 <표 V-27> 남당항의 개발전·후 효과 분석 201
 <표 V-28> 여호항의 개발전·후 효과 분석 202

<표 V-29> 회진항의 개발전후 효과 분석 203
 <표 V-30> 원전항의 개발전후 효과 분석 204
 <표 V-31> 호두항의 개발전후 효과 분석 205
 <표 V-32> 하효항의 개발전후 효과 분석 206
 <표 V-33> 권역별 국가어항 개발사업 평가 208
 <표 V-34> 권역별 국가어항 만족도 210
 <표 V-35> 국가어항에 대한 주요 개선 요망사항 210
 <표 V-36> 국가어항 개발 개선사항(공무원) 212
 <표 V-37>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 지역주민 216
 <표 V-38>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 공무원 216
 <표 V-39> 2010년 국가어항개발사업의 이용자만족도 조사 결과 218
 <표 V-40> 2009년 국가어항개발사업의 이용자만족도 조사 결과 218
 <표 V-41> 지방어항개발사업의 총사업비 219
 <표 V-42> 지방어항 모니터링 대상 220
 <표 V-43> 지방어항 개발사업의 조사 개요 221
 <표 V-44> 지방어항 개발사업의 성과 모니터링 지표 222
 <표 V-45> 지방어항 프로그램 모니터링 지표 224
 <표 V-46> 지방어항 완공현황 226
 <표 V-47> 지방어항 완공현황(계속) 227
 <표 V-48> 지방어항의 시도별 예산집행율 228
 <표 V-49> 시도별 외곽시설 완공율 229
 <표 V-50> 지방어항 계류시설 완공율, 단위 : m, % 230
 <표 V-51> 지방어항 개발 지역 어촌계의 발전정도 유형 231
 <표 V-52> 지방어항의 정주여건 비교 231
 <표 V-53> 수산업 발전정도의 비교, 단위 : 톤, 백만원 척 232
 <표 V-54> 지역별 수산업 발전정도, 단위 : 톤, 백만원, 척수 232
 <표 V-55> 지방어항 개선 요망사항 235
 <표 V-56>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 지역주민 237
 <표 V-57> 2010년 지방어항 개발사업의 이용자만족도 조사 결과 239
 <표 V-58> 2009년 지방어항 개발사업의 이용자만족도 조사 결과 239
 <표 V-59> 국가어항 배후어촌계 단기, 중기, 장기 소득증가율 242
 <표 V-60> 지방어항 지정 변화 244

<표 VI-1> 다기능 어항 모니터링 대상 252
 <표 VI-2> 다기능어항 사업의 대상지역과 관련 어촌계 258
 <표 VI-3> 프로그램 모니터링 표본 258
 <표 VI-4> 다기능어항 개발 도입단계 사전 모니터링 방향 262
 <표 VI-5>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모니터링 성과 평가 지표(예시) 267
 <표 VI-6>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성과 모니터링 지표 271
 <표 VI-7>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프로그램 모니터링 지표 272
 <표 VI-8> 수산업 지원 기능 조사 지표 276
 <표 VI-9> 관광·유통·문화 복지 등 복합기능 조사 지표 278
 <표 VI-10>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조사 지표 279
 <표 VI-11> 어촌 발전 잠재력 281
 <표 VI-12> 수산업 잠재력 282
 <표 VI-13> 어촌관광 지원시설 284
 <표 VI-14> 어촌관광 지원시설 285
 <표 VI-15>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286
 <표 VI-16> 어촌 발전 잠재력 289
 <표 VI-17> 수산업 잠재력 290
 <표 VI-18> 어촌관광 지원시설 291
 <표 VI-19> 어촌체험 기반시설 292
 <표 VI-20>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293
 <표 VI-21> 어촌 발전 잠재력 295
 <표 VI-22> 수산업 잠재력 296
 <표 VI-23> 어촌 관광 지원시설 298
 <표 VI-24> 어촌체험 기반시설 299
 <표 VI-25>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300
 <표 VI-26> 어촌 발전 잠재력 303
 <표 VI-27> 수산업 잠재력 304
 <표 VI-28> 어촌관광 지원시설 306
 <표 VI-29> 관광·교통·복지 등 복합기능 307
 <표 VI-30>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308
 <표 VI-31> 어촌 발전 잠재력 311
 <표 VI-32> 수산업 잠재력 312

<표 VI-33> 어촌관광 지원시설 314
 <표 VI-34> 어촌체험 기반시설 315
 <표 VI-35>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316
 <표 VI-36> 어촌 발전 잠재력 319
 <표 VI-37> 수산업 잠재력 320
 <표 VI-38> 어촌관광 지원시설 321
 <표 VI-39> 어촌체험 기반시설 323
 <표 VI-40>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324
 <표 VI-41> 어촌 발전 잠재력 327
 <표 VI-42> 수산업 잠재력 328
 <표 VI-43> 어촌관광 지원시설 329
 <표 VI-44> 어촌체험 기반시설 330
 <표 VI-45>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331
 <표 VI-46> 어촌 발전 잠재력 333
 <표 VI-47> 수산업 잠재력 334
 <표 VI-48> 어촌관광 지원시설 336
 <표 VI-49> 어촌체험 기반시설 337
 <표 VI-50>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338
 <표 VI-51> 어촌 발전 잠재력 340
 <표 VI-52> 수산업 잠재력 342
 <표 VI-53> 어촌관광 지원시설 343
 <표 VI-54> 어촌체험 기반시설 344
 <표 VI-55>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345
 <표 VI-56> 어촌 발전 잠재력 347
 <표 VI-57> 수산업 잠재력 349
 <표 VI-58> 어촌관광 지원시설 350
 <표 VI-59> 어촌체험 기반시설 351
 <표 VI-60>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352
 <표 VI-61> 어촌 발전 잠재력 354
 <표 VI-62> 수산업 잠재력 355
 <표 VI-63> 어촌관광 지원시설 357
 <표 VI-64> 어촌체험 기반시설 358

<표 VI-65>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359
 <표 VI-66> 어촌 발전 잠재력 361
 <표 VI-67> 수산업 잠재력 363
 <표 VI-68> 어촌관광 지원시설 364
 <표 VI-69> 어촌체험 기반시설 365
 <표 VI-70>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366
 <표 VI-71> 어촌 발전 잠재력 368
 <표 VI-72> 수산업 잠재력 369
 <표 VI-73> 어촌관광 지원시설 371
 <표 VI-74> 어촌체험 기반시설 372
 <표 VI-75>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373
 <표 VI-76> 어항별 다기능어항 개발 후 변화 375
 <표 VI-77> 주요 개선 사항 의견 378
 <표 VI-78> 수산업 지원 기능 389
 <표 VI-79> 관광·교통·복지·문화 등 복합 기능 392
 <표 VI-80> 어업인 소득창출 기능 조사 지표 394
 <표 VI-81>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395
 <표 VI-82>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만족도 결과 397
 <표 VII-1 > 성과조사 시 다기능어항의 모니터링 단계 412
 <표 VII-2 > 성과조사에 따른 다기능어항의 발달 기능 412
 <표 VII-3 > 어항개발사업 투자현황 421
 <표 VII-4 > 일본 북해도의 어항관리제도 424

그림 목 차

<그림 I-1> 과업수행 흐름도 5
 <그림 I-2> 연구의 조직도 6
 <그림 I-3> 모니터링의 모형 8
 <그림 II-1> 한국의 어촌개발 정책의 변천과정 15
 <그림 II-2> 한국의 어항개발 정책의 변천과정 30
 <그림 II-3> 신 나가사키어항 토지이용 현황 46
 <그림 II-4> 고베시 타루미어항의 전경 49
 <그림 II-5> 마리나시설 50
 <그림 II-6> 바다낚시공원 50
 <그림 II-7> 일본의 전국 공용 피셔리나 위치 51
 <그림 II-8> 어항과 어장의 이용구역 조성도 52
 <그림 II-9> 미우라·미야가와 피셔리나 53
 <그림 II-10> 히라쓰카(平塚) 피셔리나 54
 <그림 II-11> 다네이치 피셔리나 전경 54
 <그림 II-12> 다네이치 피셔리나 어항구역 54
 <그림 III-1> 연도별 전국 어선안전수용률 75
 <그림 III-2> 사업대상지역 연평균 어가소득 78
 <그림 IV-29> 연도별 어촌종합개발사업 이용자 만족도 결과 109
 <그림 IV-62> 연도별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이용자 만족도 결과 139
 <그림 IV-92> 연도별 어촌관광개발사업 이용자 만족도 결과 168
 <그림 V-6> 연도별 국가어항 이용자 만족도 결과 217
 <그림 V-10> 연도별 지방어항개발사업 이용자 만족도 결과 238
 <그림 VI-1>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의 모니터링 조사 과정 251
 <그림 VI-2> 대변항의 범위 253
 <그림 VI-3> 어유정항의 범위 254
 <그림 VI-4> 정자항의 범위 254
 <그림 VI-5> 대포항의 범위 254
 <그림 VI-6> 강릉항의 범위 255

<그림 VI-7> 홍원항의 범위 255
 <그림 VI-8> 격포항의 범위 255
 <그림 VI-9> 마량항의 범위 256
 <그림 VI-10> 국동항의 범위 256
 <그림 VI-11> 양포항의 범위 256
 <그림 VI-12> 지세포항의 범위 257
 <그림 VI-13> 맥전포항의 범위 257
 <그림 VI-14> 모슬포항의 범위 257
 <그림 VI-15>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의 성과 모니터링 수행 절차 260
 <그림 VI-16> 다기능어항 건설사업의 연도별 성과 모니터링 수행 절차 266
 <그림 VI-17> 제3안의 성과 모니터링 방안 269
 <그림 VII-1>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의 성과모니터링 수행 절차 426



제 I 편 개 요

제1장 과업의 목적

제2장 과업의 범위

제3장 과업수행 흐름

제4장 모니터링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 1 편 개 요

제1장 과업의 목적

- 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어촌·어항개발사업과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효과를 조사·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
 - 어촌·어항개발사업 및 다기능어항사업의 성과 및 효율성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정책방향 제시
- 기획재정부 주관 각종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개별사업의 성과 지표로 제시한 고객만족도 등의 도달여부를 파악·분석하고, 필요시 대상사업에 대한 지표설정이 적정한지 여부 검토 및 새로운 지표 제시

제2장 과업의 범위

2.1 조사대상

가. 어촌·어항개발사업 고객 만족도 등 사업효과 분석

-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어항이용자 만족도 조사
 - 국가어항 110개항 중 완공항 대상
 - 지방어항 284개항 중 완공항 대상
- 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권역 내 이용자만족도 조사
 - : 전체어촌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09년까지 완료한 어촌개발사업 권역 및 마을수
 - 어촌종합개발사업 : 230개 권역중 170권역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 112개 마을 중 102개마을
 - 어촌관광개발사업 : 17개소 중 5개소

- 어항개발사업의 효과 분석
 - 국가 및 지방어항 대상

나. 어선안전수용률 산정

- 국가어항 110개항, 지방어항 284개항

다. 사업권역내 사업대상지의 연평균 어가소득 증가율

- 어촌종합개발사업 대상권역

라. 다기능어항 모니터링 : 국가어항 중 다기능어항 13개항

2.2 주요 연구내용

가. 사업목표

- 어촌·어항개발사업의 분야별 성과 제시
- 다기능어항개발사업의 성과 제시
- 어항개발사업의 새로운 성과지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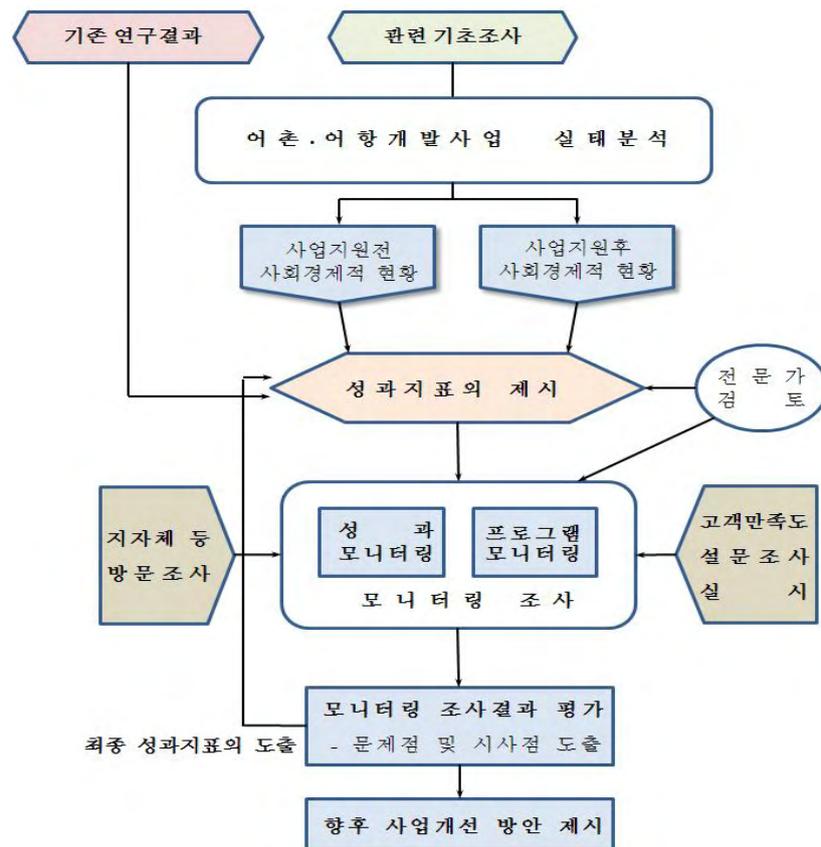
나. 주요 연구내용

- 어촌·어항개발사업
 - 어촌·어항개발 일반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 어촌·어항개발사업에 대한 이용자만족도 조사 분석
 - 어항개발사업 효과 분석
 - 사업권역내 사업대상지의 연평균 어가소득증가율
 - 어촌·어항개발사업의 문제점 도출
 - 어선안전수용률 산정
 - 향후 사업개선방안 및 추진방향 제시
 - 어항개발사업 성과지표 제시 등
-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 다기능어항개발 일반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 선진국 다기능어항 개발사례 조사(문헌 등)
 - 다기능어항사업 시행 전·후의 사회·경제적 현황 및 효과 분석
 - 앞으로 사업추진 방향 및 발전방안 제시

제3장 과업수행 흐름

3.1 과업수행 방법

- 본 연구는 크게 첫째, 주요지표의 변화부분과 둘째, 어촌·어항개발사업의 만족도 조사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 우선 주요지표의 변화부분은 주요 지수¹⁾를 어항의 어선수용율, 어가소득변화로 선정하고 이의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어촌개발사업과 어항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으로, 어촌개발사업은 각 사업의 만족도 위주로 조사가 되었으며, 어항개발사업은 인지도, 적합도, 유효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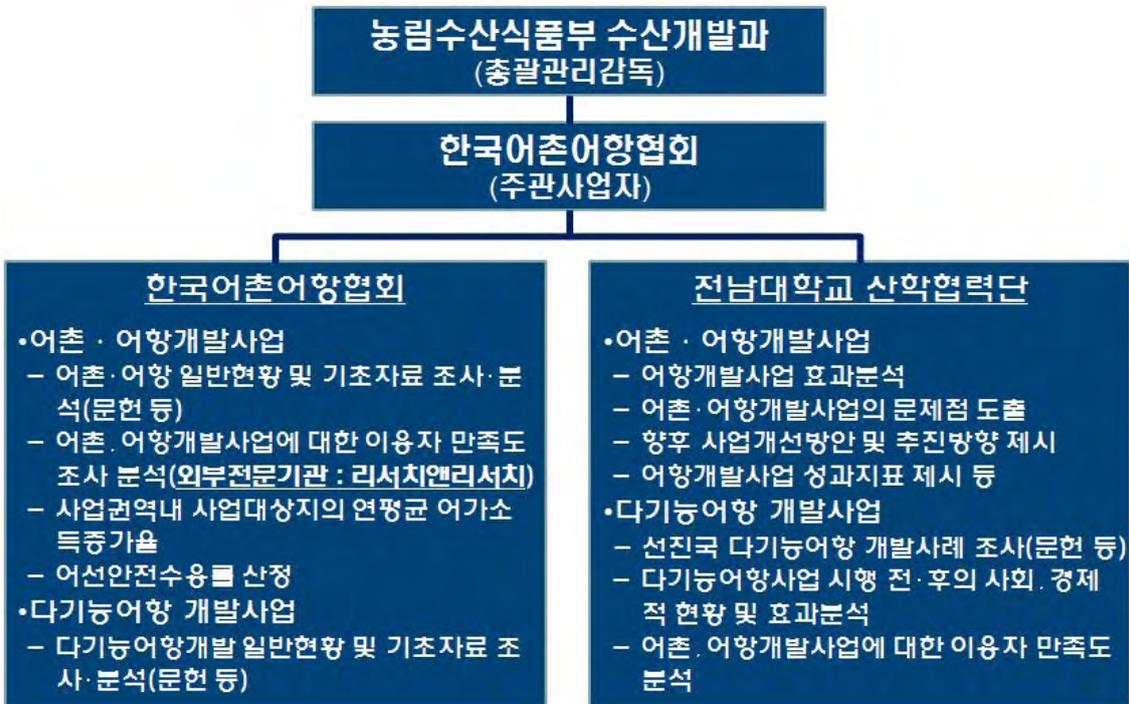


<그림 1-1> 과업수행 흐름도

1) 주요 지수로는 어항의 어선안전수용율, 어가소득 증감률, 인구 증감률, 지역별 어업인구 증감률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지수 중 어선안전수용율, 어가소득 증감률을 변화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2 과업수행 조직

- 본 연구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연구의 흐름 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시행되는데, 어촌·어항개발사업의 주요지수 변화분석 부분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의 흐름에 비추어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 우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국어촌어항협회로 조사용역을 위탁한 후,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는 어촌·어항개발사업의 주요지수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하였으며, 만족도 조사의 대상선정, 설문지 작성 등 설문·설계를 담당하였다. 이후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전문업체인 R&R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되었으며, 설문결과 분석과 최종 결론 도출 역시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담당하였다.



<그림 1-2> 연구의 조직도

제4장 모니터링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

4.1 행정서비스와 모니터링

- 행정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김동건(2000)²⁾에 따르면 행정서비스는 통상적으로 “공공재(public good)라고 할 수 있으며, 민간재(private good)와 구별되는 말로서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한다.
- W. H. Lucy는 “정부가 수행하는 행정 현상의 하나로 한 사회내의 편익을 배분하는 정부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노시평 등(2000)³⁾은 “사회에 필요한 적정한 양의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과거의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관점에서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행정서비스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최호준(2002)⁴⁾은 “시민으로부터 행정의 대행을 위탁받은 정부가 행정의 주체인 시민에게 당연히 제공해 주어야 할 행정서비스”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따라서 정부의 행정서비스는 행정의 주체인 시민으로부터 어느 정도 정책의 실효성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모니터링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2) 김동건(2000). 「현대재정학」, 박영사.

3) 노시평 등(2000). 「신공공부문 행정서비스 마케팅」, 법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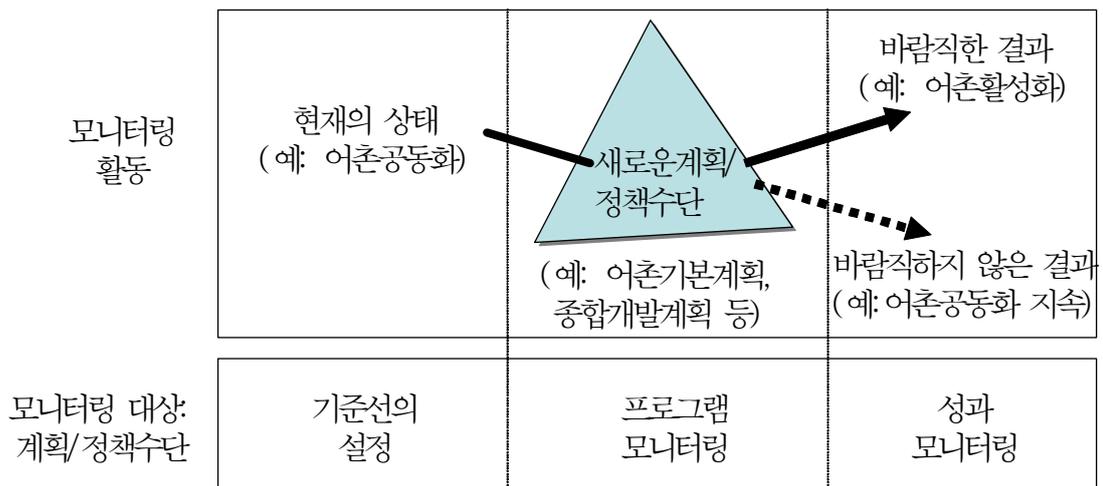
4) 최호준(2002). 「시민행정학」, 디자인네트.

4.2 모니터링의 개요

- 모니터링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모니터링으로 구분된다. 좁은 의미의 모니터링은 정책에의 순응여부를 검사한다든지 혹은 제공된 용역을 추적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광의의 의미는 김명수(2002)의 정의와 같이 “기존 사업의 존립 필요성을 재검토한다든지, 혹은 사업 운영체의 변화나 활성화를 제안하는 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 모니터링의 기본 모형

- 일반적으로 정책결정과정은 상당히 동적인 것으로서 모니터링의 기본적 모형은 다음 그림과 같다. 실제로 정책결정과정은 수많은 사회적, 정치적 외부의 힘이 존재하는 가운데 현재의 추세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통하여 목표를 추구하는 동적인 과정이다.
- 일반적으로 모니터링 모형은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성과 모니터링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림 1-3> 모니터링의 모형

(1) 프로그램 모니터링

- 프로그램에 대한 투입들과 프로그램 활동들을 측정하고, 측정된 프로그램에의 투입과 프로그램 활동들이 사전에 설정되었거나 또는 기대되고 있는 것들과 비교하는 것이다. 이들 프로그램이 본래 구상한 대로 정확하고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결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예컨대 어촌종합개발계획이 어촌공동화의 대안으로 적합한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를 정확성(적합성) 평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2) 성과 모니터링

-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투입, 활동 및 결과들을 측정하고, 그 프로그램의 성과들을 사전에 설정하였거나 기대했던 성과들과 비교하고, 본래 의도하였던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아 이를 시정함으로써 의도한 성과를 가져오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노화준, 2003: 125).
- 성과모니터링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첫번째는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성과모니터링(prospective outcome/performance monitoring)이다. 이는 정부의 다양한 계획들이 실제 채택되기 이전에 이들이 성장관리 목표를 향하여 현재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한다.
 - 두번째는 과거추세에 의한 성과모니터링(retrospective outcome/performance monitoring)이다. 이는 어떤 특정한 시점에 과거의 몇 년 동안을 관찰하여 정책목표를 향한 진척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한다.
 - 세번째는 지속적인 성과모니터링(continuous outcome/performance monitoring)이다. 이는 정기적 또는 주기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 바람직한 모니터링 방법은 계획의 착수 이전에는 i)의 미래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기존의 계획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가

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iii)의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특정 시점에 사업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ii)의 과거추세에 의한 모니터링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 한편, 모니터링에 의해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이 집행되기 이전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미래의 새로운 측정치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기준 또는 기준선(benchmark 또는 baseline)이라 한다. 기준의 설정은 시간적 설정과 공간적 설정이 모두 가능하다. 시간적 설정은 정책이 집행되기 이전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공간적 설정은 정책이 집행되지 않는 타지역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나. 모니터링의 중요성

- 모니터링의 중요성은 다음 세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 첫째는 책무성(accountability) 차원이다. 정부와 국민은 지속적으로 사업의 수혜자가 누구이고,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려고 한다.
 - 두번째는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차원이다.: 사업의 실패가 사업의 비효과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수행의 실패나 불완전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평가하게 된다.
 - 마지막으로 정보평가의 차원이다. 정보는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지속시키거나 확장시키고 또 중단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W. Dunn(1994)은 모니터링의 기능을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바 각 기능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1> 모니터링의 기능

기능	내용
순응(compliance) 기능	프로그램의 집행자, 담당자, 기타 관련자들이 입법부, 규제기관, 전문단체 등에 의해서 제시된 기준과 절차에 얼마나 잘 순응하여 행동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제공
감사(audit) 기능	모니터링은 어떤 대상 집단이나 수혜자들을 위해 마련된 자원과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달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제공
회계(accounting) 기능	모니터링은 공공정책과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집행하는데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제공
설명(explanation) 기능	모니터링은 공공정책과 프로그램의 결과들이 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

다. 모니터링의 수행 단계

- Pivo and Rose(1991)는 모니터링의 수행을 다음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 첫째가 자료수집(data collection) 단계이다. 이는 목표를 향한 성과와 정책집행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자료는 통계자료나 행정자료 등 기존의 자원 중에서 수집하게 된다. 효과적인 모니터링의 체계는 자료의 유용성 특히, 시간적·공간적 범위, 정확도, 그리고 정시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 두번째 단계는 자료 분석(data analysis) 단계이다. 조사시점의 측정치를 정책집행이전이나, 과거의 자료가 있을 경우 모니터링의 시점에서 측정된 기준치(benchmark condition)와 비교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준치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확보하여 목표달성 시에 기대되는 목표치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세번째 단계는 보고(reporting) 단계이다. 자료의 분석결과에 따라 정책집행으로 얻어진 성과의 정도와 성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고서

를 작성하게 된다.

- 네번째 단계는 대응(action)단계이다. 분석결과에 대한 공적토론과 적절한 정책대응을 포함하는 토의를 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정책의 채택에 관여했던 정책결정자나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된다.



제 II 편 일반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제1장 어촌개발 일반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제2장 어항개발 일반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제3장 다기능어항개발 일반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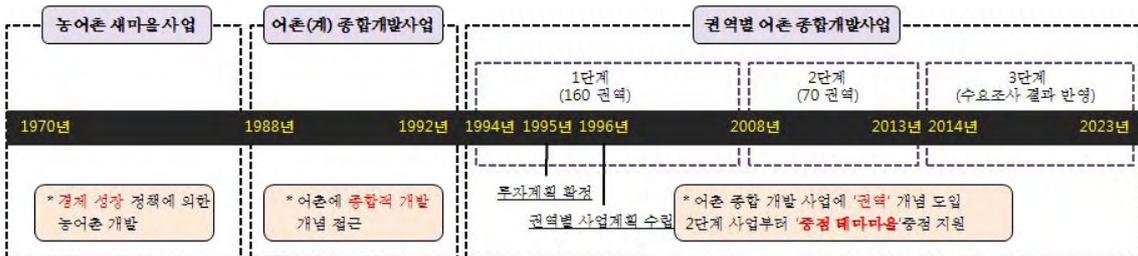
제4장 선진국 다기능어항 개발사례 조사

제II편 일반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제1장 어촌개발 일반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1.1 어촌개발 정책의 변천과정

- 한국의 어촌정책은 어항 건설을 기반으로 발전해왔으며, 크게는 어촌개발과 어항개발 정책으로 구분된다.



<그림 II-1> 한국의 어촌개발 정책의 변천과정

- 어촌개발사업은 1970년대 농·어촌 새마을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되다가 1980년대 중반 어촌에 대한 종합적 개발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1990년대 중반 들어 어촌개발을 ‘권역’의 개념으로 재접근하면서 어촌개발사업의 일개 전환점이 되었다. 이는 기존 80년대 중반 추진된 어촌개발사업이 개별 시군 위주로 이루어지다보니 주변 시군과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정책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주요내용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득·생산기반시설, 생활환경개선시설, 편익·복지·문화시설 개발 등으로 모두 3단계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총 160개 권역을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며, 2단계 사업은 기존 권역개념에 ‘중심 테마마을’이라는 개념을 더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 효과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2단계 사업은 2008년 현재 총 230개 권역 중 176개소가 완공되었고, 2013년까지 나머지 54개소에 대해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나머지 3단계 사업은 각 지역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

1.2 일반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가. 어촌종합개발사업

- 정부는 낙후된 어촌지역의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득원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간, 계층 간 소득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어촌의 작업환경 및 어촌 정주환경개선, 노동생산성 및 편의성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2008년부터는 집중 권역 개념을 도입하여 어촌의 역사, 문화, 자연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별 특화개발과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중심권역을 선정 어촌교류형, 수산물유통판매형, 어촌관광레저형, 어촌문화학습형 등으로 유형화하여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권역 당 50억 원 이내의 예산이 집중투자 된다. 또 대상권역별 투자방식·투자규모·대상 권역 규모 등의 변경과 함께 중앙 정부에서 수립하던 기본계획을 지자체에서 직접 수립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이 확정된 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표 II-1> 어촌종합개발사업 일반현황

구분	사업개요				
1994~2013	- 1단계(1994~2007) : 160개 권역(권역 당 35억 원) - 2단계(2008~2013) : 70개 권역(권역 당 50억 원 이내)				
제원별	총사업비	2006년 누적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권역수	230	152	24	(24)	54
사업비(억 원)	8,795	5,265	355	387	2,788
-국고(80%)	5,404	2,858	285	309	1,952
-지방비(15%)	3,007	2,172	69	69	697
-자담(5%)	384	235	1	9	139

<표 II-2> 1단계(160개 권역) 투자 실적('94~'07)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계	'94	'95	'96	'97	'98	'99	'00
권역수	160	10	11	17	23	16	8	8
금 액	554,531	13,170	52,500	56,000	55,500	42,100	34,940	37,352

사업명	'01	'02	'03	'04	'05	'06	'07	'08
권역수	16	6	15	4	1	17	8	-
금 액	34,968	34,980	43,140	50,418	32,817	38,646	14,000	14,000

<표 II-3> 2단계(70개 권역) 투자 실적 및 계획('07~'13)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계	'07	'08	'09	'10	'11	'12	'13
계획권역수	70	14	-	10	11	16	11	12
실적권역수		14	-	10	6(3)			
금 액	325,000	21,750	24,789	25,831	26,090	58,876	41,049	126,615

<표 II-4> 시·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권역, 백만원

시·도	총 계획		실 적 ('94~2009)		계 획			
					'10		'11 ~ '13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230	879,531	186	626,682	18	26,090	28	226,759
부 산	3	11,528	2	7,528	1	200		3,800
인 천	7	22,417	6	19,417	-	0	1	3,000
울 산	4	14,577	3	10,577	1	800		3,200
경 기	4	18,270	2	9,270	1	3,866	1	5,134
강 원	17	60,972	15	50,563	-	0	2	10,409
충 남	13	49,257	11	38,757	1	1,500	1	9,000
전 북	10	38,487	8	28,487	1	1,500	1	8,500
전 남	87	336,103	68	226,095	6	9,250	13	100,758
경 북	22	82,573	18	61,394	1	1,994	3	19,185
경 남	47	185,899	38	126,046	4	5,823	5	54,030
제 주	16	59,448	15	48,548	(2)	1,157	1	9,743

※ '10년 국토부 편성 포함

어촌·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용역

<표 II-5>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실적(2009까지) -1

시도	권역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어촌 계수	사업량	주요시설명	
계	176개 권역	67	123,710	180	571		
부산	소 계	2	7,528	12	39		
	1)기장 일광	00~02	4,028	6	29	공동작업장, 어구창고, 방파제, 물양장, 어항진입도로	
	2)기장 기장	07~08	3,500	6	10	어업인복지회관, 호안,방파제,어구창고,해안산책로 등	
인천	소 계	6	19,417	30	134		
	3)옹진 덕적	94~95	2,518	7	32	선착장, 물양장, 횃집, 양식장, 운반선, 급수시설, 진입로	
	4)옹진 백령	96	3,500	6	36	선착장, 건조기, 다시마, 미역, 육상양식, 중요방류,	
	5)옹진 연평	97	3,500	2	19	진입로, 급수시설, 처리장, 숙박, 목욕탕, 가로등	
	6)강화 삼산	00~02	3,197	4	23	선착장보강, 진입도로포장, 어항부지포장, 물양장, 선착장	
	7)강화 길상	01~03	3,202	9	19	선착장, 진입로, 공동화장실, 물양장, 급수시설, 해안조명등	
	8)옹진 북도영흥	05~06	3,500	2	5	산지가공처리시설, 어장진입로, 어업인회관 등	
	울산	소 계	3	10,577	19	43	
9)울산 강동		96	3,500	8	19	해안도로, 선착장, 물양장, 방파제, 투석, 중요방류,	
10)울주 서생1		98~00	3,500	4	14	해안도로, 복지센터, 방파제, 전복방류, 오수관정비	
11)울주 서생2		01~03	3,577	7	10	방파제, 물양장, 암준설 등	
경기	소 계	2	9,270	9	66		
	12)화성 서신	95, 01	5,770	6	50	선착장, 물양장, 횃집, 직판장, 화장실, 급수시설, 소각로, 체험어장	
	13)화성 우정	96	3,500	3	16	물양장, 선착장, 소각로, 어민회관, 공동작업장, 화장실	
강원	소 계	14	49,972	64	212		
	14)삼척 근덕	94~95	2,210	6	25	방파제, 선착장, 어초, 가리비, 전복살포, 진입로,	
	15)양양 현북손양	95	3,500	2	12	방파제, 방사제, 물양장, 부업시설, 가리비, 전복살포	
	16)고성 토성	95	3,500	5	25	해안도로, 진입로, 어민회관, 주차장, 가로등, 중요방류,	
	17)강릉 강동옥계	96	3,500	5	19	선착장, 물양장, 가로등, 횃집, 숙박, 어업인대기소, 중요방류	
	18)속초 속초	96~97	3,500	2	16	방파제, 공동작업장, 물양장, 어초, 종합회관, 중요방류	
	19)고성 죽왕	97	3,000	1	29	해안도로, 종합회관, 활어판매장, 복지회관, 가로등, 중요방류	
	20)동해 동해	97~98	3,500	4	29	방파제, 해안도로, 식사, 공동작업장, 중요방류	
	21)양양 강현	98~00	3,500	3	7	활어회센터, 취수관, 방파제, 방사제, 물양장, 낚시선	
	22)강릉 연곡사천	99~00	3,500	3	7	종합관광시설, 활어회센터, 낚시어선, 물양장, 진입로	
	23)고성 거진현내	00~02	3,048	6	6	어업인종합수산센터, 물양장, 수산물직판장	
	24)삼척 동부	01~03	5,189	8	10	방파제, 어구보수보관장, 공동화장실, 암준설 등	
	25)양양 현남	03~04	3,525	6	8	방파제, 수산물위판장, 물양장, 방사제 등	
	26)강릉 강릉동부	05~06	3,500	5	5	방파제, 파제제, 공동작업장, 복지회관, 어장관리선 등	
	II	27)삼척 원덕	07~09	5,000	8	14	공동화장실, 어민복지회관, 간이위판장, 방파제, 호안 등
	II	28)춘천 북부내수면	09~11	5,000	8	12	문화센터, 어촌체험관, 낚시 체험장, 선착장 등

<표 II-6>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실적(2009까지) -2

시도	권역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어촌 계수	사업량	주요시설명
충남	소 계	11	40,257	68	172	
	29)보령 오천	94~95	2,582	10	16	선착장, 호안, 식사숙박, 유람선, 진입로, 냉동냉장
	30)태안 안면	95	3,500	2	31	선착장, 해안도로, 호안, 공동작업장, 종묘배양장, 어민회관, 건조작업장,
	31)보령 관당	96	3,500	3	8	선착장, 물량장, 부업시설, 공동작업장, 냉동냉장
	32)태안 근소	97	3,500	8	24	물량장, 공동작업장, 도로, 체험어장, 산지가공
	33)당진 당진	97~98	3,500	4	7	해안도로, 선착장, 유람선, 공동작업장, 사업센터
	34)보령 외연	98~00	3,500	3	16	건조장, 냉동냉장, 진입로, 크레인, 관리선, 활어장, 도로, 호안
	35)태안 태원이	99~01	3,038	6	20	진입로, 선착장, 해안도로, 공동작업장, 김처리장, 어민회관
	36)홍성 홍성	01~03	4,528	8	12	해안도로포장, 해안도로, 갯벌로, 수산물유통시설, 선양기 등, 선착장
	37)서산 가로림만	03~04	3,453	9	10	선착장, 어장진입로, 등
	38)서천 서천	05~06	4,156	4	5	갯벌진입로, 공동작업장, 수산물유통시설, 선양기 등
II	39)태안 태안2	07~09 (07~10)	5,000	11	23	어장진입로, 공동작업장, 해안친수공원, 간이위판장, 해안도로 등
전북	소 계	8	28,487	52	85	
	40)고창 고창	94~95	2,648	9	14	진입로, 식사숙박, 양식장, 냉동냉장, 전기시설, 횃집, 종묘배양장
	41)부안 변산	95	3,500	4	6	호안, 선착장, 방파제, 가공공장, 축제식양식장
	42)부안 위도	97	3,500	6	19	진입로, 선착장, 특산물전시관, 냉동냉장, 횃집, 산지가공, 어민회,
	43)고창 고창2	97~98	3,500	10	9	식사숙박, 축제식, 육상수조식양식, 산지가공,
	44)군산 옥도	98~00	3,500	3	14	바지선, 공동작업장, 선가장, 크레인, 해안도로, 건조선별장
	45)군산 염섬	01~03	3,260	6	6	공동창고, 선착장진입로, 선가대시설, 마을회관, 해안도로
	46)군산 선유	03~04	3,579	6	8	방파제, 선착장, 호안도로, 물양장 등
II	47)고창 남부	07~09	5,000	8	9	어촌종합센터, 해안소공원, 해안산책로, 냉동냉장시설 등
전남	소 계	63	226,027	412	978	
	48)고흥 풍남	94~95	3,105	5	15	어류축양장, 가공시설, 호안도로, 횃집, 숙박, 종묘방류
	49)완도 신지	94~95	3,105	3	19	방파제, 해안도로, 종묘배양장, 투석, 어류양식, 주차장
	50)여수 남면	95	3,500	8	21	방파제, 선착장, 준설, 어류, 전복양식, 사료저장고
	51)신안 대둔도	95	3,500	4	11	물량장, 용수시설, 사료저장고,
	52)진도 금계초사	96	3,500	2	17	방파제, 선양장, 물량장, 숙박시설, 해안도로, 건조장, 어류양식장
	53)해남 만호	96	3,500	4	16	선착장, 물량장, 해안도로, 어민회관, 패류양식, 육상양식
	54)장흥 득량중부	96	3,500	9	18	해안도로, 창고, 자반공장, 냉동냉장, 공동작업장, 숙박시설, 회관
	55)보성 여자만	96	3,500	9	20	물량장, 도로, 식사숙박, 어민회관, 소각로
	56)강진 대구	97~98	3,500	6	22	선착장, 방파제, 해안도로, 냉동창고, 공동작업장, 횃집, 유어선,
	57)영광 낙월	97~98	3,500	2	8	물량장, 호안도로, 방파제, 숙박시설, 전복양식
58)순천 순천만	97~98	3,500	6	15	선착장, 해안도로, 갯벌로, 저온저장, 횃집, 숙박, 공동창고, 선별기, 어민회관	

<표 II-7>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실적(2009까지) -3

시도	권역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어촌 계수	사업량	주요시설명
전남	59)완도 보길	97~98	3,500	5	8	방파제,물량장,해안도로,
	60)신안 임자	97~98	3,500	2	5	방파제,물량장,
	61)고흥 득량	97~98	3,500	5	13	방파제,진입로,어민회관
	62)목포 총무	97~98	3,500	2	24	방파제,선착장,물량장,도로,휴게시설,목욕시설,회관,종 묘배양장
	63)무안 흥통	98~00	3,500	6	19	물량장,선착장,진입로,식사숙박,도로,육상양식장
	64)여수 돌산	98~00	3,500	7	18	선착장,물량장,가로등,식사숙박,해안도로
	65)진도 금갑죽림	98~00	3,500	6	23	선착장,공동작업장,진입로,종합어민센터,해안조명
	65)해남 북평	98~00	3,500	7	18	물량장,방파제,진입로,해안도로
	66)장흥 득량남부	98~00	3,500	5	16	해안도로,선착장,회관경목욕탕,인양기,급수시설
	67)보성 득량동	99~01	4,022	7	36	선착장,바지선및선별기,물양장및작업장,해안가로등,어 민회관,호안
	68)강진 신전도암	99~01	3,272	6	16	선착장,물양장,진입로,방파제,해안도로
	69)완도 생일	99~01	3,270	4	12	선착장및방파제,해안조명
	70)함평 함평만	00~02	3,213	7	16	생태학습장,방파제,진입로,포장,어민회관,선착장,공동작 업장
	71)고흥 금산동	00~02	3,198	8	9	방파제,해안사방시설,진입로,해안도로,물양장,갯벌로
	72)무안 남촌	01~03	3,200	13	23	선착장,선양장,진입로,물양장,수산물인양기
	73)여수 삼산	01~03	3,227	8	9	냉동냉장시설,호안도로,부잔교
	74)신안 지도	01~03	3,519	6	12	선착장,물양장
	75)진도 하조도	01~03	3,502	9	11	선착장,물양장,진입로,방파제,수산물냉동창고
	76)해남 북일	01~03	3,255	13	30	해안도로,방파제,진입로,선착장,공동작업장,어민회관
	77)장흥 득량북	01~03	3,288	11	14	물양장,교량,어업인복지회관,선착장,해안도로
	78)보성 득량서	02~04	3,504	12	22	물양장,선착장,방파제,어업인창고,어민회관
	79)영광 염산	02~04	2,840	4	7	선착장,물양장,선양장
	80)완도 금당	02~04	4,120	10	12	방파제,선착장,물양장,상수도수원지
	81)고흥 두원	03~04	3,515	14	22	공동작업장,어장진입로,선착장
	82)여수 가막만	03~04	3,694	10	17	어장진입로,선착장,방파제,물양장,진입도로
	83)신안 암태	03~04	3,500	7	7	선착장,물양장,인양기
	84)진도 가사도	03~04	3,836	9	12	방파제,진입도로,선착장,물양장,해안도로
	85)해남 황산	03~04	3,526	10	13	어장진입로,선착장,방파제,물양장
	86)완도 청산	03~04	3,518	7	13	선착장,해안도로,진입로,물양장
	87)고흥 봉래	03~04	3,575	9	11	어장진입로,물양장,선착장,방파제
88)여수 화정	05~06	3,500	7	8	경로당신축,방파제,물양장,해안도로,인양기	
89)여수 남면2	05~06	3,500	6	7	방파제,어민회관,어업용창고,물양장,진입도로	
90)고흥 동일	05~06	3,500	5	7	진입도로,복지회관,물양장,공동화장실	

<표 II-8>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실적(2009까지) -4

시도	권역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어촌 계수	사업량	주요 시설 명
전남	91)고흥 여자남부	05~06	3,500	6	13	선착장, 어장진입로, 해안도로, 공동화장실, 냉동냉장창고 등
	92)해남 송지1	05~06	3,500	5	7	진입로, 물양장, 호안시설, 선착장
	93)무안 월두	05~06	3,500	5	7	물양장, 선양기, 진입도로, 방파제, 해안제방
	94)완도 소안	05~06	3,725	10	15	선착장, 인양기, 어민편의시설, 공동작업장, 창고
	95)완도 고금	05~06	3,275	-	-	
	96)진도 남동세포	05~06	3,500	5	7	진입로, 산지가공시설, 인양기, 수산물건조장
	97)진도 전두	05~06	3,500	4	7	호안도로, 선착장, 인양기, 물양장, 특산물판매장, 방파제
	98)신안 자은	05~06	3,500	6	13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선양기, 해안제방
	99)신안 안좌	05~06	3,500	5	17	선착장, 어장진입로, 어업인복지회관, 호안, 물양장 등
	100)여수 여자	07~08	3,500	10	27	방파제, 마을진입로, 어장진입로, 부잔교, 인양기, 물양장 등
	101)신안 팔금	07~08	3,500	2	18	선착장진입로, 물양장, 선착장, 인양기, 마을안길포장 등
	102)진도 관매거차	07~08	3,420	6	17	선착장, 마을진입로, 어업인복지회관, 공동작업창고, 파제제등
	103)완도 약산	07~08	3,500	5	23	공동작업창고, 선착장, 물양장, 인양기, 부잔교, 다시마건조장
	104)완도 금일	07~09	5,000	11	27	선착장, 부잔교, 물양장, 공동작업장, 어업인복지회관, 호안 등
105)고흥 여자만	07~09	4,300	7	25	인양기, 선착장, 방파제, 어업용창고, 어장진입로, 어업인쉼터	
106)고흥 지죽	07~09	5,000	10	29	냉동냉장시설, 인양기, 부잔교, 물양장, 해안도로, 어업인대기소	
107)장흥 남부	07~09	4,050	6	22	선착장, 어장진입로, 공동작업장, 방파제, 부잔교, 준설 등	
108)신안 장산	07~09	4,953	4	31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여객선대합실, 조명시설, 공동화장실	
109)영광 대신	07~10	5,000	-	1	대지조성 등 기반시설, 해안시설, 오수처리시설 등	
110)여수 군내	09~11	4,000	4	21	어업인 쉼터, 어장진입로, 방파제, 인양기, 부잔교, 해안도로 확장 등	
111)신안 비금	09~11	3,000	3	11	선착장, 어민대기소, 인양기, 진입로포장, 복지센터 등	
112)완도 완도	09~11	5,000	10	13	방파제 연장 및 보강, 선착장, 어업인 복지회관, 해안산책로 등	
113)완도 군외	09~11	5,000	8	20	방파제 연장 및 보강, 물양장, 공동작업장, 특산물판매장, 해안 소공원 등	
114)고흥 포두	09~11	5,000	5	17	선착장, 친수공간조성, 물양장, 인양기, 어장진입로 등	
경북	소 계	18	65,573	119	305	
	115)포항 영일만	94~95	2,320	9	25	물량장, 선양장, 호안, 도로, 방파제, 암준설, 공동작업장,
	116)울진 후포	95	3,500	5	12	방파제, 물량장, 식사숙박, 가로등, 산지가공, 중요방류, 공동작업장
	117)영덕 축산	96	3,500	7	36	방파제, 암제거, 숙박시설, 중요방류, 향준설, 공동작업장
	118)울릉 울릉서부	96~97	3,500	4	23	도로, 낚시터, 용수시설, 가로등, 가공시설, 부업시설, 식사숙박
	119)경주 감포	97	3,500	7	13	제방, 방파제, 진입로, 수산물직판장, 중요방류
	120)포항 모포	97~98	3,500	6	17	방파제, 해안도로, 주차장, 공동작업장,
	121)울진 오산	98~00	3,500	6	16	방파제, 물량장, 어민종합센터
	122)영덕 강구	98~00	3,500	8	28	방파제, 물량장, 식사숙박, 전복중요방류, 암제거,

<표 II-9>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실적(2009까지) -5

시도	권역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어촌 계수	사업량	주요 시설명
경북	123)경주 양남	99~01	4,350	2	25	냉장시설,종합센터,선양장,방파제,활어유통센터,공동작업장
	124)울릉 울릉북	00~02	3,499	6	13	종합센터,화입건조장,어장관리선,회의실,물양장,해안소공원
	127)울진 구산	02~04	3,308	7	8	물양장,방파제,진입교량,공동작업장,복지회관,진입도로
	128)영덕 대진	03~05	3,446	11	14	방파제,진입도로,공동위판장,어장진입로
	129)울릉 울릉	04~05	2,438	8	14	어업인회관,복지회관,공동작업장,화입건조시설,선가시설
	130)포항 월포	05~06	3,500	4	4	안길포장,방파제
	II 131)울진 죽변	07~09	5,000	8	21	어민복지회관,공동작업장,방파제,호안,선양기,건조시설 등
	II 132)포항 하정	07~09	5,000	7	15	공동작업장,방파제,물양장,해안소공원,과메기광장 등
	II 133)영덕 삼사	07~09	5,000	2	8	다목적인양기,공동작업장,TTP보강,부잔교,해상산책로 등
경남	소 계	35	126,048	293	671	
	134)사천 사천	94~95	3,076	12	49	선착장,호안도로,종묘살포,공동작업장,패각분쇄기,회관,
	135)남해 앵강만	94~95	3,076	11	29	방파제,호안,진입로,식사,종묘방류,투석
	136)거제 저구만	95	3,500	7	29	선착장,물양장,공동작업장,종묘방류,회관,숙박,
	137)통영 한산만	95	3,500	8	17	방파제,선착장,종묘배양장,해상가두리,식사,숙박,종묘배양 장
	138)사천 사천도서	96	3,500	7	12	선착장,작업대,관리선,횃집,숙박,특산물매장
	139)고성 거류동해	96	3,500	9	16	물양장,선착장,목욕탕,횃집,숙박,회관,저온저장
	140)통영 산양	96	3,500	9	22	물양장,선착장,횃집,냉동냉장,도로,활어판매,회관
	141)거제 장목만	97	3,500	7	21	선착장,물양장,방파제,횃집,숙박,창고,종묘방류,작업대
	142)마산 구산만	97~98	3,500	5	27	방파제,선착장,물양장,객도,도로,냉동냉장,패각처리장,뉴시 터
	143)남해 남미조	97~98	3,500	9	17	물양장,종묘방류,횃집,숙박,활어판매장,선양기,냉동냉장,창 고
	144)사천 사천3	97~98	3,500	4	11	해안도로,선착장,소형어초,뉴시터,
	145)고성 자란만	97~98	3,500	7	22	선착장,물양장,방파제,숙박,저온저장,종묘방류,축제식양식, 횃집,
	146)통영 사랑	98~00	3,500	1	15	선착장,도로,물양장,관광지원시설,선박건조
	147)통영 용남	98~00	3,500	8	15	방파제,선착장,도로,냉동냉장,다목적생산시설
	148)남해 설천	98~00	3,500	7	19	해안도로,진입로,선별기,바지선,선착장,공동작업장
	149)고성 당항	98~00	3,500	5	17	선착장,활어횃집,숙박시설,관광활어회센터
	150)거제 사등	99~01	3,272	8	16	선착장,물양장,호안시설,어선간이수리소,활어유통시설
	151)남해 삼동	00~02	3,928	12	32	선착장,방파제,준설,파도막이,물양장,준설,해안도로,수산물 판매장,
	152)통영 옥지	01~03	3,500	9	15	물양장,선착장,어항진입로,방파제,어민회관
	153)진해진해만	01~03	3,198	8	9	물양장,선착장,방파제
	154)하동 대교동	01~03	3,198	13	20	해안도로,선착장,진입로,물양장,선양장,어선수리소
	155)남해 서면	02~04	3,500	12	16	방파제,선착장,해안도로,수산물유통시도로부잔교,인양기
	156)통영 도산	03~04	3,500	12	21	어업인창고,해안도로,선착장,어촌계회관,방파제

<표 II-10>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실적(2009까지) -6

시도	권역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어촌 계수	사업량	주요 시설명
경남	157)거제 학동만	03~04	3,500	8	15	물양장,선착장,방파제
	158)통영 노대	03~04	3,500	8	12	호안도로,물양장,방파제,어촌계회관
	159)통영 산양2	04~05	3,500	10	13	물양장,선착장,호안정비,어업인창고,방파제,오폐수처리시설
	160)거제 거제만	04~05	3,950	11	24	물양장,선착장,호안도로
	161)남해 고현	04~05	3,500	10	15	어업인창고,선착장,방파제,물양장,진입도로,공동작업장
	162)통영 한산2	05~06	3,500	7	12	방파제,해안도로,진입로,선착장,어민회관,물양장
	163)마산 진동만	07~08	3,500	8	18	선착장,공동작업장,선양기,공동작업장,어업인복지회관 등
	164)남해 강진만	07~08	3,500	15	39	선착장진입로,인양기,폐류선별기,호안도로,수산물하역시설 공동창고,해상친수공원,어업인회관 등
	165)사천 사천해안	07~08	3,500	12	17	공동작업장,공동화장실,폐유저장시설,해안소공원 등
	166)통영 통영육지	07~09	4,850	5	16	어업인복지회관,물양장,선착장,인양기,해안산책로 등
	167)남해 남면서부	07~09	5,000	9	22	해안가로등,어업인회관,물양장,방파제,인양기,해안산책로
168)남해 지족	07~10	5,000	-	1	토공,우수공,상수공,포장공,건축공,조경공,구조물공 등	
169)마산 진동만2	09~11	4,000	3	16	복지회관,해상낚시터,어촌문화공원,특산물판매장 등	
170)통영 용남광도	09~11	5,000	10	19	방파제 및 선착장 연장, 인양기 설치 등	
171)거제 서부	09~11	5,000	7	11	레포츠계류장, 갯벌진입로, 중앙광장, 방파제, 선착장 연장 등	
제주	소 계	14	49,448	93	231	
	172)북군 구좌	94~95	2,530	4	15	축양장,유어시설,체험어장,해중림,수중투시선
	173)남군 모슬포	95	3,500	5	26	선착장,진입로,관리선,회관,창고,탈의장,종합판매장,산지가 공,해중림
	174)북군 한경	96	3,500	7	22	민박,낚시선,가로등,축제식,횃집,공동작업장,냉동창고,회관, 증식장
	175)북군 추자	96	3,500	5	19	숙박,공동작업장,창고,회관,종묘방류,낚시선,냉동냉장,
	176)남군 성산동	97	3,500	4	8	유어시설,종합센터,축제식양식,수산물직매장
	177)남군 남원서	97~98	3,500	5	11	종합센터,바다목장화,낚시선,공동작업장,탈의장,직매장
	178)북군 애월	98~00	3,500	7	14	진입로,작업장,낚시선,전복양식,직매장,관광종합센터
	179)남군 성산서	99~01	3,454	5	14	어촌종합센터,전복육상양식장,소규모항,직판장
	180)남군 남원동	00~02	3,174	8	19	물양장,공동작업장,위판장,소규모항정비,해양소공원
	181)북군 조천	01~03	3,940	13	23	소규모어항정비,해조류공동창고,관광안내센터,어촌계사무 실,
	182)북군 표선	02~04	3,350	11	16	소규모항정비,어촌계,사무실,잠수탈의장
	183)북군 우도	03~04	3,500	8	25	소규모항정비,잠수탈의실,복지회관,방파제
	184)북군 한림서	05	3,500	5	10	방파제,복지회관,물양장,공동작업장
	185)제주 구좌서부	07~09	5,000	6	9	해안소공원,어항부지포장,방파제,휴게정자,공동화장실 등
	186)서귀포 대정	09~11	4,000	7	15	어업인 쉼터,어장진입로, 방파제, 인양기, 부잔교, 물양장 등

나.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도시인에게 여가 휴양 공간을 제공,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증대, 도시와의 교류 확대를 추진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 이 사업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3년간 총사업비 731억 원을 투입 112개 마을(2008년 현재 95개 마을 조성완료)을 조성하게 된다. 주로 관광안내소, 진입로, 주차장, 샤워장, 화장실 등 관광기초 기반 시설 및 소프트웨어 사업(컨설팅, 실시설계비, 주민 교육훈련, 팸플릿 제작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이 사업은 개소 당 5~10억 원의 소규모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어업인이 직접 어업현장에서 체험 중심으로 운영하므로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2008년을 기준 총 610만여 명이 체험마을을 방문하여 200여 만 명이 어촌체험을 즐겼으며 이를 통한 소득개발도 475억7,200원(직접소득+간접소득)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

<표 II-11>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추진방향	관광객들이 선택하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편안하고 정감 있는 관광어촌 조성
사업기간	2001 ~ 2013(13년간)
총사업비	708억 원(개소 당 5억 원)
사업규모	112개소(2010년 말 현재 105개소 완공)
지원조건	Matching Fund(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사업내용	관광안내소, 진입로, 주차장, 샤워장, 화장실 등 관광기반시설 및 소프트웨어사업(컨설팅, 주민교육훈련 등)

※ 2008말 기준 체험마을 방문객수 6,105천명, 체험객수 2,014천명, 직접소득 18,274백만 원, 간접소득 29,298백만 원(체험객 1인당 약 9,074원 지출)

1) 농림수산식품부, 어촌체험마을 관리대장, 2009

<표 II-12>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수

단위 : 개소

구 분	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까지	102	2	5	9	9	8	4	31	7	18	9
2010계획	3					1	1		1		
장래조성계획	7	-	-	1		2	1		2	-	1
합 계	112	2	5	10	9	11	6	31	10	18	10

<표 II-13> 년도별 어촌체험마을조성 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1	9	1		2	1	1		1	1	1	1
2002	8	-	-	1	1	1	1	1	1	1	1
2003	11	1	1	1	1	-	1	2	1	2	1
2004	12	-	1	1	1	1	1	3	1	2	1
2005	18	-	1	2	1	3	1	5	2	2	1
2006	18		1	1	1	1		8	1	4	1
2007	11				1			6		4	
2008	8		1	1	1			3		2	
2009	7				1	1		2			3
2010계획	3					1	1		1		
계	105	2	5	9	9	9	5	31	8	18	9

<표 II-14> 년도별 투자실적 및 장래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기 시행										'10년	'11년 이후	
		'01시범 사업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09까지			
사업량	112	9	8	11	12	18	18	11	8	7	102	3	7	
사업비	계	73,110	9,422	4,000	5,500	6,000	11,000	13,800	8,100	5,988	4,300	68,110	2,100	2,900
	보 조	36,555	4,711	2,000	2,750	3,000	5,500	6,900	4,050	2,994	2,150	34,055	1,050	1,450
	지방비	32,900	4,240	1,800	2,475	2,700	4,950	6,210	3,645	2,695	1,935	30,650	945	1,305
	자부담	3,655	471	200	275	300	550	690	405	299	215	3,405	105	145

※ 총사업비는 증감 가능

다. 어촌관광개발사업

- 어촌관광개발사업은 어촌지역의 체험관광시설 도입과 체계적인 개발로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어가소득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 기존 생산기반 위주의 소규모 지원에서 탈피, 관광분야의 성장잠재력이 있는 어항 또는 어촌을 새로운 모델로 개발하고자 사업대상지 18개소를 선정,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개년에 걸쳐 총 1,791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 각 개소 당 60~150억 원 투입되는 이 사업은 주로 어촌마을 정비, 관광안내센터, 민박시설, 청소년야영장, 생태체험장, 낚시터, 해수욕장, 경관전망대, 담수생태공원, 휴양림, 해안산책로, 해안자전거 도로, 주차장, 조형물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표 II-15> 어촌관광개발사업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추진방향	기존어항에 관광기능 부여하여 관광중심의 복합 공간 창출, 관광잠재력이 높은 지역 집중 개발
사업기간	2005 ~ 2013(9년간)
총사업비	1,791억 원(개소 당 60~150억 원)
사업규모	18개소(9개소 진행 중, 2010년 말 현재 9개소 완공)
지원조건	Matching Fund(국고 50%보조, 지방비 50%)
사업내용	마을 정비, 관광안내센터, 특산품 판매장 민박시설, 청소년야영장, 생태체험장, 낚시터(잔교), 해수욕장, 전망대, 해안산책로, 주차장, 조형물, 해안자전거도로 등 관광기반시설

<표 II-16> 모델 유형별 추진방안

구 분	I형(복합공간)	III형(어촌관광단지)
개 념	◦기존어항·어촌 + 관광기능 ⇒ 어촌·어항복합공간	◦기존어촌 + 관광기능 ⇒ 어촌관광단지
사업대상지	◦7개소('04.12.15선정) 어유정항(인천시 강화군) 정자항(울산시 북구) 안목항(강원도 강릉시) 마량항(전남 강진군) 양포항(경북 포항시) 맥전포항(경남 고성군) 모슬포항(제주도 남제주군)	◦11개소('04.12.15선정) 대항(부산시 강서구) 초지(인천시 강화군) 대송(울산시 울주군) 전곡(경기도 화성시) 대진(강원도 동해시) 무창포(충남 보령시) 야미도(전북 군산시) 방축(전남 신안군) 전촌(경북 경주시) 학림(경남 통영시) 법환(제주도 서귀포시)
재 원	◦어항부문 : 농특회계 ◦어촌부문 : 광특회계	◦광특회계
사업기간	◦6개년('04~'09)	◦6개년('04~'09)
사업규모	◦총 1,089억원 -개소당 150억원 ·어항부문:100억원 (어항건설사업비) ·어촌부문:50억원 (Matching Fund) ·)국비:25억원 ·)도비:25억원 -기본및실시설계비 29억원	◦총 702억원 -개소당 60억원 ·어촌부문:60억원 (Matching Fund) ·)국비:30억원 ·)도비:30억원 - 기본설계및홍보비등 36억원
주요내용	◦배후어촌과 연계되는 국가어항 을 대상으로 어항과 어촌의 특 색을 연계하여 통합개발	◦어촌 자체만으로 관광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집중개발

<표 11-17> 세부사업별 투자실적 및 계획(국비기준)

단위 : 백만원

사업별	항별, 부문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이후	
어촌어항 복합공간 (Ⅰ모델)	소 계	계	11,012	6,510	16,572	21,694	6,156	10,677	14,265
		어항	11,012	6,010	13,000	17,751	3,346	8,267	10,000
		어촌	0	500	3,572	3,943	2,810	2,410	4,265
	마량항 (전남)	계	11,012	500	500	250	1,250	-	-
		어항	11,012	-	-	-	-	-	-
		어촌	-	500	500	250	450	800	-
	대진항 (경북)	계	-	3,000	7,867	1,633	-	-	-
		어항	-	3,000	7,000	-	-	-	-
		어촌	-	-	867	1,633	-	-	-
	정자항 일산 (울산)	계	-	3,010	4,580	3,316	460	-	-
		어항	-	3,010	3,000	2,856	-	-	-
		어촌	-	-	1,580	460	460	-	-
	안목항 (강원)	계	-	-	3,000	7,794	1,000	500	-
		어항	-	-	3,000	6,794	-	-	-
		어촌	-	-	-	1,000	1,000	500	-
	모슬포항 (제주)	계	-	-	625	4,101	2,455	4,040	1,575
		어항	-	-	-	4,101	1,900	3,740	-
		어촌	-	-	625	-	-	300	1,575
	맥전포항 (경남)	계	-	-	-	4,600	2,346	5,337	190
		어항	-	-	-	4,000	1,446	4,527	-
		어촌	-	-	-	600	900	810	190
어유정항 (인천)	계	-	-	-	-	-	-	12,000	
	어항	-	-	-	-	-	-	10,000	
	어촌	-	-	-	-	-	-	2,500	
어촌관광 단지 (Ⅲ모델)	소 계	0	3,000	8,400	4,039	4,324	2,634	10,428	
	대항(부산)	-	-	-	971	-	-	2,029	
	초지(인천)	-	-	-	955	1,255	790	-	
	대송(울산)	-	500	1,500	500	500	-	-	
	전곡(경기)	-	-	-	-	-	-	3,000	
	대진(강원)	-	1,000	2,000	-	-	-	-	
	무창포(충남)	-	-	3,000	-	-	-	-	
	야미도(전북)	-	-	-	400	650	400	1,050	
	방축(전남)	-	1,500	500	250	406	344	-	
	전촌(경북)	-	-	1,100	363	613	550	374	
	학림(경남)	-	-	-	600	900	300	1,200	
	법환(제주)	-	-	300	-	-	250	2,775	

<표 II-18> 어촌·어항관광조성 사업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계
계(18개소)	0	3,500	11,972	7,982	7,134	5,044	7,203	4,199	3,291	50,325
마량항(전남)	-	500	500	250	450	800				2,500
대진항(경북)	-	-	867	1,633	-	-				2,500
일산항(울산)	-	-	1,580	460	460	-				2,500
강릉항(강원)	-	-	-	1,000	1,000	500				2,500
모슬포항(제주)	-		625	-	0	300	600	720	255	2,500
맥전포항(경남)	-	-	-	600	900	810	190			2,500
어유정항(인천)	-	-	-	-	-	-	1,000	1,000	500	2,500
대항(부산)	-	-	-	971	-	-	1,000	1,029		3,000
초지(인천)	-	-	-	955	1,255	790				3,000
대송(울산)	-	500	1,500	500	500	-				3,000
전곡(경기)	-	-	-	-	-	-	1,000	1,000	1,000	3,000
대진(강원)	-	1,000	2,000	-	-	-				3,000
무창포(충남)	-		3,000	-	-	-				3,000
야미도(전북)	-	-	-	400	650	400	1,050			2,500
방축(전남)	-	1,500	500	250	406	344				3,000
전촌(경북)	-	-	1,100	363	613	550	374			3,000
학림(경남)	-	-	-	600	900	300	1,200			3,000
법환(제주)	-	-	300	-	0	250	789	450	1,536	3,325

제2장 어항개발 일반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2.1 어항개발 정책의 변천과정

- 한국의 어항 건설 또는 개발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그 동안 담당 조직의 변화, 시대적 요구사항들이 반영되어 오늘날의 어항정책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변화를 살펴보면 크게 2005년 어촌·어항법의 제정을 전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전 시기는 수산 기반 구축 및 확충에 역점이 주어졌다면 이후는 기존 수산 기반의 활용과 어촌과 어항과의 연계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림 II-2> 한국의 어항개발 정책의 변천과정

- 시대별 어항개발 정책을 살펴보면 1950년대부터 어항법이 제정되는 1969년까지는 주로 전후 복구를 포함한 어항 건설이 시작된 시기로 어항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자리 잡게 된 때라고 할 수 있다. 1969년 이후 1993년 동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항의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때로 수산업의 양적 발전과 함께 수산 기반 시설의 절대 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의 조성에 주된 정책목표를 두게 된 시기다.
- 특히 이 시기에 개발된 어항의 예로써 울릉도 저동항, 전남 신안군의 가거도항(舊 소흑산도항)이 어업전진기지로 조성되었다. 이후 동법이 재개정된 2001년까지는 어항에 대한 투자가 과거에 비해 대폭으로 증가하였고, 기존 일부 지역에 한하여 어항관리가 되어오던 것이 어항관리소 등 조직의 정비를 통해 전국적인 단위의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확립되었다.
- 2001년 이후는 어항에 대한 인식이 전환된 시기라 볼 수 있다. 어항

을 바라보는 시각이 수산업의 기반 시설에서 어촌사회의 중심의 역할을 하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필요로 인해 2005년 기존 어항법을 대신할 어촌·어항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그 동안 대규모로 이루어진 어항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어촌과 어항의 연계를 통해 관광, 유통 등 어항이 가지는 기능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2.2 일반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 한국은 어항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으로 구분 개발하고 있는데²⁾ 국가어항은 완공위주의 집중 투입으로 완공시기를 단축하는 등 투자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어항과 어촌정주어항도 완공위주의 집중 투자 뿐만 아니라 최근엔 피싱피어(fishing Pier), 마리나 시설, 조형물 등 다양한 관광 기능을 부가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맞춰 어업인들의 노동 생산성 향상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표 II-19> 어항의 종류 및 현황

구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정의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지정권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개발주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 시장·군수	시장·군수·구청장
관리청	광역시장, 시장·군수	광역시장, 시장·군수	시장·군수·구청장
지원조건	국비 100%	국비80%, 지방비20%	국비80%, 지방비20%
항수	110개항	285개항	576개항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2010년 말 어항지정 기준

2) 국가어항은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지방어항은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어촌정주어항은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을 말한다.

어촌·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용역

- 어항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67년~'10년까지 4조 8,177억 원을 투자하여 395개항을 완공(완공율 41%)하였으며, 국가어항은 2조 7,992억 원을 투자하여 93개항 완공(완공율 85%), 지방어항은 1조 1,840억 원을 투자하여 160개항 완공(완공율 56%), 어촌정주어항은 8,345억 원을 투자하여 142개항 완공(완공율 25%)하였다.

<표 II-20> 지자체별 어항지정 및 완공현황

시·도	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비고 (완공률)
	지정	완공	지정	완공	지정	완공	지정	완공	
합계	971	395(41%)	110	93(85%)	285	160(56%)	576	142(25%)	
부산	21	13	3	2	13	10	5	1	61.9%
인천	51	25	5	5	15	10	31	10	49.0%
울산	15	13	2	2	4	4	9	7	86.7%
경기	15	10	1	-	5	5	9	5	66.7%
강원	52	29	14	13	14	7	24	9	55.8%
충남	52	23	8	5	29	18	15	-	44.2%
전북	24	9	6	5	12	4	6	-	37.5%
전남	203	70	31	27	91	43	81	-	34.5%
경북	46	25	15	14	23	11	8	-	54.3%
경남	422	163	19	15	61	38	342	110	38.6%
제주	70	15	6	5	18	10	46	-	21.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2010년 말 어항지정 기준

<표 II-21> 투자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총투자계획	'10까지 투자액	잔사업비	투자율
계	69,446	48,177	21,269	69.4%
국가어항	36,049	27,992	8,057	77.6%
지방어항	20,148	11,840	8,308	58.8%
어촌정주어항	13,249	8,345	4,904	63.0%

제3장 다기능어항개발 일반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3.1 다기능어항의 개념

- 다기능어항은 수산업 지원기능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항별 고유한 기능을 특화하여 개발함으로써 물류유통, 관광, 휴양, 문화복지 등 어촌정주 생활거점 어항으로서 연안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어항을 의미한다.
- 즉 어업활동에 의한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기본으로 하고 획득한 어획물에 대한 신속한 가공 및 물류 유통기능, 관련산업기능, 육상·해상 교통의 기능, 관광·휴양기능, 정주생활거점기능 등 수산업이외의 부가기능을 겸비하여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어항을 의미한다.
- 우리나라에 다기능어항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EEZ로 대변되는 신해양질서 정착 및 WTO/DDA로 대변되는 개방화가 우리나라 어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탈 어촌현상 가속과 함께 어업인의 이어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 다기능 어항은 이러한 어촌경제의 어려움을 어촌관광으로 해결하자는 의지에서 등장하였으며, 여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주 5일 근무법안의 통과로 어촌에 대한 도시민의 관광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항을 다기능화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이를 통하여 어촌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목적에서 등장하였다.

3.2 다기능어항의 기능 및 유형

- 다기능어항의 기능은 어항의 기능성 증진, 해양 관광의 명소화, 지역 문화의 선도자 역할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 어항의 기능성 증진 : 낙후되고 노후화된 어항의 어업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이를 확충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높이는 기회
 - 해양 관광의 명소화 : 어항 내 해양 관광 기반시설을 갖추고 주변 관

광자원과의 연계된 관광 상품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역할 수행

- 지역 문화의 선도자 역할 : 어촌지역의 다양한 문화 요구도에 부응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문화를 선도
- 또한 다기능어항은 광의적 개념으로 어업활동과 함께 교통, 유통, 가공, 관광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어항을 말한다. 따라서 이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교통어항형, 유통어항형, 관광형, 복합다기능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그리고 이러한 다기능 어항의 개발이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어항의 다목적 활용 및 실질적 개발을 이루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3 일반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 과거 어항은 어선의 안전한 수용과 수산물의 양륙 등 수산업의 기반 시설로만 인식되어왔지만 최근엔 관광, 교통, 수산물 유통·가공 등의 다양한 기능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 수요에 부응하는 어항을 개발하게 되었다.
- 다기능어항은 수산업 지원기능을 기본으로 하고 물류·유통, 관광, 휴양, 문화 복지 등 어촌 정주 생활거점 기능을 갖춘 어항으로서 연안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어항³⁾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에 다기능어항 13항을 선정하고, 개소 당 약 90~300억 내외(총 2,476억 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3) 김정봉 외, 「다기능어항시설에 대한 민자 유치 활성화 방안」, 해양수산개발원, 2006.

<표 II-22>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추진방향	어항을 수산업 기반시설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소득창출 기회제공, 해양관광, 유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을 갖춘 어항으로 개발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처
사업기간	2004 ~ 2013
총사업비	2,476억 원(개소 당 90~300억 원 내외)
사업규모	13개소(4개소 진행 중, 2010년 말 현재 8개소 완공)
지원조건	국고 지원, 민간투자부문 추가
사업내용	어항기본시설, 친수 공간 및 조경시설, 민간의 수익사업을 위한 기능시설, 어항편익시설(수산물 저장·판매시설, 음식점, 및 숙박시설, 레저시설 등) 등

- 사업내용은 어항기본시설, 친수 공간 및 조경시설, 민간의 수익사업을 위한 기능시설, 어항편익시설(수산물 저장·판매시설, 음식점, 및 숙박시설, 레저시설 등)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현재 13개 다기능어항 중 8개 어항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4개 어항은 아직 공사 중에 있으며, 1개 어항은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어촌·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용역

<표 II-23>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의 추진사항

항명	어항공사 착공일	다기능어항			추진사항	완공 유무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공사기간		
대변항 (부산 기장)	'71.12.21	2005	2006	08~11	'95~'06(기본시설완공) '08.07~'11.06(다기능어항공사중)	공사중
어유정항 (인천 강화)	'71.12.21	2002	2005	'11년이후	'07.07~'14.06(정비공사중)	공사중
정자항 (울산 북구)	'71.12.21	2005	2006	06~08	'90(기본시설완공) '06~08(복합공간공사완료)	완공
대포항 (강원 속초)	'71.12.21	2003	2003	06~10	'72(기본시설완공) '03~'09(비관리청어항시설공사) '06~'11(대포항개발사업, 다기능)	완공
강릉항 (강원 강릉)	'91.01.01	2006	2006	07~09	'91~'06(기본시설완공) '08~'09(복합공간개발공사)	완공
홍원항 (충남 서천)	'91.01.01	2005	2006	07~10	'07.09~'12.09(공사중)	공사중
격포항 (전북 부안)	'86.03.01	2005	2006	07~10	'96(기본시설완공) '07.06~10.12(다기능어항완공)	완공
마량항 (전남 강진)	'71.12.21	2004	2004	05~06	'94(기본시설완공) '05~'06(복합공간공사완료)	완공
국동항 (전남 여수)	'79.01.20	2005	2006	07~12	'92(2단계기본시설완공) '03(정비계획완료) '08~'11(다기능어항건설공사중)	공사중
양포항 (경북 포항)	'71.12.21	2005	2006	06~07	'89(기본시설완공) '06.11~08.10(복합공간공사완료)	완공
지세포항 (경남 거제)	'71.12.21	2005	2006	08~12	'88~'06(기본시설완공) '08~'12(다기능어항공사중)	공사중
맥전포항 (경남 고성)	'75.04.01	2006	2007	07~10	'89(기본시설완공) '05(정비공사완료) '08~'11(복합공간공사완료)	완공
모슬포항 (서귀포)	'71.12.21	2006	2006	08~10	'91(기본시설완공) '08.06~09.12(복합공간공사완료)	완공

※ 2010년 말 기준 13개 다기능어항 중 8개항 완공

- 13개 다기능어항 중 대표항의 시설계획 대비 시설현황이 가장 미진하여 계류시설은 54.4%, 외곽시설은 78.3% 건설되었다. 대변항은 계류시설 71.1%, 외곽시설 97.0%가 건설되었다. 흥원항은 계류시설 69.2% 시설되었지만 외곽시설은 100% 건설되었다.

<표 II-24> 다기능어항의 시설계획 및 시설현황

항명	시설계획(전체계획)				'09년까지 시설현황			
	계류시설(단위:m)		외곽시설(단위:m)		계류시설(단위:m)		외곽시설(단위:m)	
	계	물양장	계	방파제	계	물양장	계	방파제
대변항 (부산 기장)	1,355	1,355	1,669	810	964	964	1,619	810
어유정항 (인천 강화)	398	280	343	300	398	280	343	300
정자항 (울산 북구)	795	795	878	780	795	795	878	780
대표항 (강원 속초)	1,158	740	1,200	620	630	630	940	360
강릉항 (강원 강릉)	708	401	1,314	1,074	708	401	1,314	1,074
흥원항 (충남 서천)	1,135	605	1,001	1,001	786	445	1,001	1,001
격포항 (전북 부안)	937	591	990	990	937	591	990	990
마량항 (전남 강진)	771	466	790	790	771	466	790	790
국동항 (전남 여수)	3,639	2,960	676	200	3,369	2,794	450	200
양포항 (경북 포항)	1,030	720	1,250	700	950	720	1,150	700
지세포항 (경남 거제)	966	728	1,140	450	1,030	728	1,140	450
맥전포항 (경남 고성)	700	595	871	605	741	595	871	605
모슬포항 (서귀포)	1,338	1,338	1,967	1,967	1,338	1,338	1,967	1,967

<표 II-25> 항별 투자현황

항명	투자현황								
	총계획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228,822	11,012	13,955	37,229	51,119	30,758	41,390	21,102	22,257
대변항 (부산 기장)	25,012	-	-	-	4,000	4,500	8,000	8,602	
어유정항 (인천 강화)	10,000	-	-	-	-	-	-	-	10,000
정자항 (울산 북구)	8,825	-	2,987	2,992	2,846	-	-	-	-
대포항 (강원 속초)	31,731	-	8,000	8,500	8,500	2,547	4,184	-	-
강릉항 (강원 강릉)	9,394	-	-	3,000	4,794	1,600	-	-	-
흥원항 (충남 서천)	25,214	-	-	4,140	6,042	5,500	9,532	-	-
격포항 (전북 부안)	26,733	-	-	12,000	5,687	2,000	7,045	-	-
마량항 (전남 강진)	11,012	11,012	-	-	-	-	-	-	-
국동항 (전남 여수)	35,748	-	-	-	7,000	7,000	7,000	7,500	7,248
양포항 (경북 포항)	9,596	-	2,968	6,597	-	-	-	-	-
지세포항 (경남 거제)	20,009	-	-	-	2,000	4,000	4,000	5,000	5,009
맥전포항 (경남 고성)	7,075	-	-	-	4,000	1,446	1,629	-	-
모슬포항 (서귀포)	8,415	-	-	-	6,250	2,165	-	-	-

※ 민자사업비 미포함, 시설비 기준

<표 II-26> 항별 투자현황

항명	투자현황								
	총계획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228,822	11,012	13,955	37,229	51,119	30,758	41,390	21,102	22,257
대변항 (부산 기장)	25,012				4,000	4,500	8,000	8,602	
어유정항 (인천 강화)									10,000
정자항 (울산 북구)	8,825		2,987	2,992	2,846				
대포항 (강원 속초)	31,731		8,000	8,500	8,500	2,547	4,184		
강릉항 (강원 강릉)	9,394			3,000	4,794	1,600			
홍원항 (충남 서천)	25,214			4,140	6,042	5,500	9,532		
격포항 (전북 부안)	26,733			12,000	5,687	2,000	7,045		
마량항 (전남 강진)	11,012	11,012							
국동항 (전남 여수)	35,748				7,000	7,000	7,000	7,500	7,248
양포항 (경북 포항)	9,596		2,968	6,597					
지세포항 (경남 거제)	20,009				2,000	4,000	4,000	5,000	5,009
맥전포항 (경남 고성)	7,075				4,000	1,446	1,629		
모슬포항 (서귀포)	8,415				6,250	2,165			

제4장 선진국 다기능어항 개발사례 조사

4.1 일본의 사례

- 2010년 7월 1일 현재 일본에는 2,914개 어항이 있다. 이들 항은 중요도의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특정 제3종 어항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제3종어항과 동일), 또한 어업진흥에 특히 중요한 어항. 전국 13개 어항
 - 제3종 어항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전국 101개 어항
 - 제2종 어항 : 이용범위가 제1종보다 넓고, 제3종에 속하지 않는 어항. 전국 496개 어항
 - 제1종 어항 : 지방어선이 주로 이용하는 어항. 전국 2,205개 어항
 - 제4종 어항 : 섬과 그 주변역에서 어장을 개발한다거나 피난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어항. 전국 99개 어항
- 이중 특정 제3종 어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에는 특정 제3종 어항인 하치노헤어항(八戸漁港)이 있다. 어항구역은 4구역이고 어시장은 3개가 있다.
- 미야기현에는 특정 제3종 어항이 3개 있다. 켄센누마시에 있는 켄센누마어항(気仙沼漁港)은 세계3대 어장의 하나인 산리쿠(三陸)해안의 근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주요한 물양항으로 이용되며 일본 원양어업(주로 다랑어)의 기지 중 하나로 이용된다. 이시노마키이시의 어촌에 위치에 있는 이시노마키어항(石巻漁港)은 물양량이 일본에서도 알아주는 큰 어항다. 시오가마시에 위치해 있는 시오가마어항(塩釜漁港)은 1971년 시오가마항센다이항구(塩釜港仙台港区)로 개항한 후 센다이(仙台)시 외항으로서의 역할은 시오가마항에서 센다이항으로 이전하고 시오가마항은 특정 제3종 어항이 되었다.
- 지바현 조우시시에는 특정 제3종 어항인 조우시어항(銚子漁港)이 위치해 있다. 연간 물양량이 일본에서 가장 높다.
- 가나가와현 미우라시에는 특정 제3종 어항인 미사키어항(三崎漁港)이 위치해 있다. 어항 주변에는 다랑어요리 등의 점포가 줄지어 있어 동

경에서 하루 코스로 쉽게 찾아오는 관광지로 인기가 있다.

- 시즈오카현 야이쯔시에는 특정 제3종 어항인 야이쯔어항(焼津漁港)이 위치한다. 물동량이 연간 385억엔(2005年)으로 전국 3위를 차지했다.
- 토도리현 사카이시에는 특정 제3종 어항인 사카이어항(境漁港)이 위치해 있다. 홍게의 어획물양량이 전국의 60%를 차지한다.
- 시마네현 하마다시에는 특정 제3종 어항인 하마다어항(浜田漁港)이 위치해 있다. 보통의 경매와 달리 상의 내측에 손을 감추어 경매를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 야마구찌현 시모노세키시에는 특정 제3종 어항인 시모노세키어항(下関漁港)이 위치해 있다. 주변해역에서는 주로 끌그물과 건착망에 의해 어류를 어획하고 있다.
-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주오쿠에는 특정 제3종 어항인 하카타어항(博多漁港)이 위치해 있다. 주변해역에서는 주로 선망과 주낙에 의해 어류를 어획하고 있다.
-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에는 특정 제3종 어항인 나가사키어항(長崎漁港)이 위치해 있다. 나가사키항내에 위치해 있으며, 나가사키항과 구별하기 위해 신 나가사키어항이라 부르고 있다.
- 카고시마현 마쿠라자키시에는 특정 제3종 어항인 마쿠라자키어항(枕崎漁港)이 위치해 있다.

<표 II-27> 일본의 특정 제3종 어항

어항이름	지역	지정년월일	조합원수	물동량
하치노헤(八戸)	青森県 八戸市	1951.10.17	472명 (2001.12)	142,000톤(2004년) 【전국4위】
켄센누마(気仙沼)	宮城県 気仙沼市	1951.7.10	419명 (2001.12)	86,000톤(2004년) 【전국8위】
이시노마키(石巻)	宮城県 石巻市			178,239톤(2006년) 【전국3위】
시오가마(塩釜)	宮城県 塩釜市			
조우시(銚子)	千葉県 銚子市	1951.7.10	205명 (2001.12)	261,000톤(2006년) 【전국1위】
미사키(三崎)	神奈川県 三浦市	1951.10.17	940명 (2001.12)	49,084톤(2003년) 【전국18위】
야이쯔(焼津)	静岡県 焼津市	1960년	1,335명 (2001.12)	230,106톤(2005년) 【4년연속 전국1위】
사카이(境)	鳥取県 境港市	1953.12.28	258명 (2001.12)	110,000톤(2004년) 【전국6위】
하마다(浜田)	島根県 浜田市	1952.5.28	545명 (2001.12)	
시모노세키(下関)	山口県 下関市	1951.10.17	257명 (2001.12)	
하카타(博多)	福岡県 福岡市	1952.7.29	22명 (2001.12)	
나가사키(長崎)	長崎県 長崎市	1951.9.7	227명 (2001.12)	120,205톤(2003년) 【전국9위】
마쿠라자키(枕崎)	鹿児島県 枕崎市	1951.9.7	1,395명 (2001.12)	69,000톤(2004년) 【전국10위】

가. 나가시키�현 나가시키키시의 신 나가시키키어항 (특정 제3종 어항)

- 일본에서 다기능을 갖고 있는 대표적 어항으로는 나가시키키 현의 신 나가시키키 어항(미에지구)을 들 수 있다. 신 나가시키키 어항은 나가시키키 어항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입지해 있으며 어항구역내 육역시설 용지면적은 329,973m², 수역면적은 222,318m²에 이른다.
- 나가시키키 시가지내에 있는 나가시키키 어항은 1948년부터 개발되기 시

작하여 1960년도에 특정 제3종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나가사키시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어항 물동량 급증, 계류시설 부족, 항내 수면적의 한계, 항만과의 이용 상충, 수질오염의 악화, 배후 용지의 부족 등 제반문제점을 야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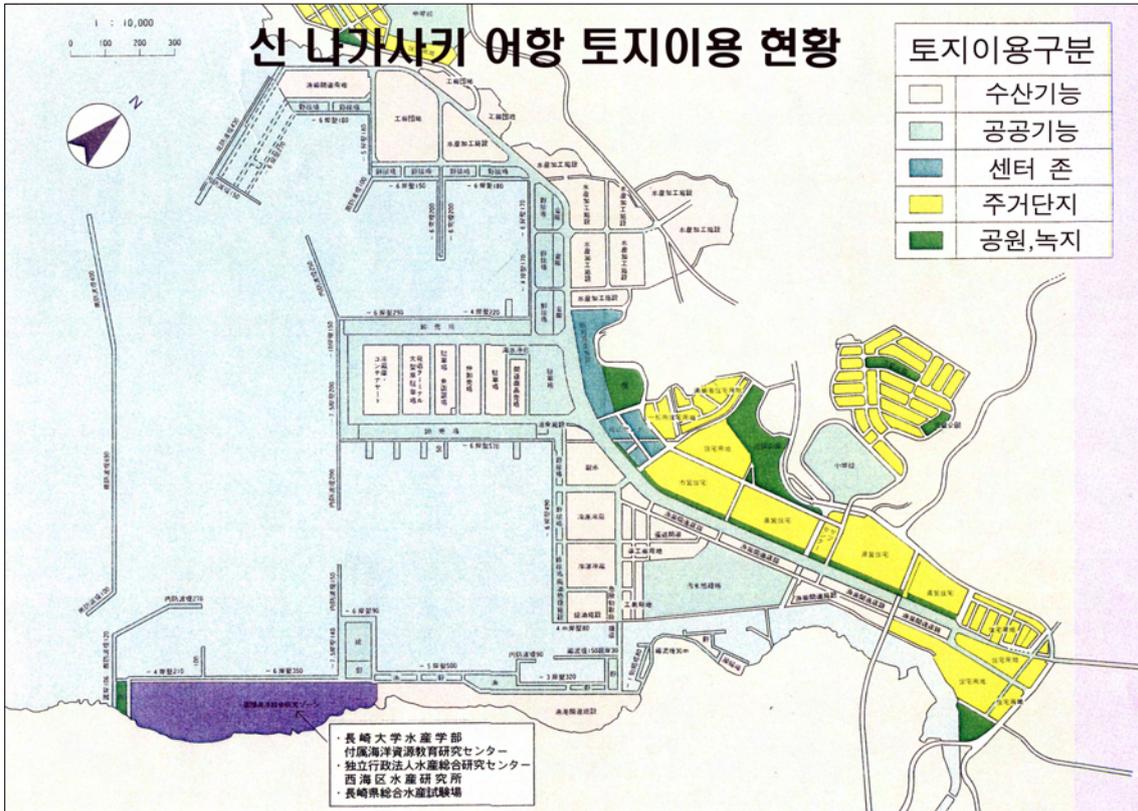
- 이러한 문제점 해소와 함께 어항관련기능의 통합, 어항시설의 일체화,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교통여건의 개선, 수산시장 경영체제의 쇄신 등을 1차 목표로 새로운 어항 개발을 시도하게 되었다.
- 새로운 어항적지는 지형, 지질, 나가사키 어항과의 관계 및 지역개발의 기여도, 배후시장과의 유통등 연계성, 육역 및 해역에서의 교통여건, 가공산업 용지의 확보가능성, 어항도시개발에의 잠재력, 타 산업진흥과의 연계성, 환경오염연관성, 노동력의 확보여부, 지역주민의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 이 과정을 거쳐 선정된 신 나가사키 어항은 일본의 제5차 어항정비 장기계획에 의거, 1973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1988년에 개항하였는데,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 등의 확충과 함께 기르는 어업과 관련된 정온수역 확보에도 역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 1973년부터 지금까지 신 나가사키 어항개발에 투자된 총 사업비는 2003년말 기준 1,599억엔이다.
- 신 나가사키 어항의 개발방향은 수산물 양육, 유통, 가공, 수송 등 어항의 수산업적 기능을 통합하여 신 나가사키 어항을 수산업의 기점으로 발전시켰다.
- 수산업 관련기능으로 동지나해, 황해의 해양환경보전과 어업관리에 관한 연구 및 한국, 중국 등과의 수산정보 기술교류를 수행하는 R&D 기관의 집적·입지를 추진하여 국제마린도시를 형성하였다.
- 수산업 외적기능으로 배후지역에 쾌적성과 편리성을 갖춘 새로운 어항도시를 개발, 주민의 정주환경을 제고시켰다.
- 해변공원, 다목적광장, 마리나, 유어선 부두, 횃집, 특산품 판매장 등

이 포함된 워터프론트 개발로 시민, 관광객이 어항을 친숙한 관광-휴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 신 나가사키 어항의 개발현황은 다음과 같다.
 - 계류시설, 외곽시설 및 기능시설의 확충과 시장, 배후지역과의 유통 및 연계여건의 개선
 - 가용지의 확보와 어항의 역외(域外) 접근도로 개설
 - 국제 마린도시의 건설 : 어항도시의 성격을 갖는 국제 마린도시를 건설함. 이는 일본수산청의 마리노베이션 정책전개의 일환으로 나가사키현의 연안종합정비 개발사업의 하나로 시행함
 - 배후 주거지역의 조성
- 신 나가사키 어항은 국제 마린 도시구상에 따라 어항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한 어항구역내 수산유통·가공단지 조성과 수산관련연구시설의 집중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배후지역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개발함으로써 연안 지역균형개발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 신 나가사키 어항의 특징 중 하나는 구 나가사키 어항과 달리 수산물의 수출입등 국제 어항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갖고 있다는 점이다. 2003년 신 나가사키 어항의 수산물 양륙량 중 1/10은 중국산으로 집계되었으며, 수출입 과정에 있어 정보교환 및 어획자원관리를 위한 상호보완적 노력과 수산기술 제휴 등 다기능 어항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도 함께 향유하고 있다.
- 신 나가사키 어항 주변에는 수산관련 R&D기능이 집적·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는 다기능어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나가사키현 종합수산시험장은 1997년부터, 나가사키 대학 수산학부 부속 해양자원교육연구센터는 1999년부터, 수산종합연구센터 서해구 수산연구소는 2003년부터 연구임무를 시작하였다.
- 또한 동지나해·황해 자원관리기구, 국제자원정보관리센터 등도 함께 입지시켜 수산관련 R&D업무의 집적효과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 R&D 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국제 해양종합연구 Zone의 3개 연구기관은 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구협의체인 연락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10월에는 연구결과의 지역사회환원의 일환으로 수산과학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2004년에는 수산관련 공무원등 공직자, 수산업 종사자, 지역 어업후계자 등을 상대로 교육연수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다.
- 현재 3개 연구기관이 공동연구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은 동지나해, 황해의 어족자원고갈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수산자원 관리 방안 project로 한국과 중국의 적극적 참여를 바라고 있다. 참여방식에 있어서는 한국, 일본, 중국이 공동으로 R&D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한편 유통의 중심이 되는 수산물 도매시장은 1988년에 완공되었는데 전체 면적은 221,482m²이고 주요 건축물로 4개동이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수산가공단지는 분양면적기준 135,050m²규모로 26개 업체가 가동중인데 가공용수나 해수공급시설을 신 나가시키 어항 수산가공단지 협동조합에서 공동이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신 나가시키 어항과 주변지역이 어항도시로 발전하면서 인구규모는 1973년 당시 약 5,100명에서 2003년말 현재 17,300명으로 약 3.5배가 증가하였다. 세대수는 약 5배가 늘어 6,000세대에 이르는데 이는 핵가족인 젊은층의 대거 유입에 의한 것이며 고령화 비율이 나가시키 시 전체 20.8%보다 낮은 1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다.
- 배후지역 주거단지는 주거, 상업, 업무,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의료기능 등의 적정배치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다양한 욕구와 필요성(Wants & Needs) 수용을 위한 토지이용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제적 수준의 도시로 발전하였다.
- 어항의 관광기능 활성화와 관련, 내방객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어항구역내 수산물 도매시장에만 8,000명 이상의 관광

객이 내방하였다. 특히 수산물의 양륙, 유통, 가공의 전 과정은 본 어항의 훌륭한 산업관광자원으로 정착되었다.



<그림 II-3> 신 나가사키어항 토지이용 현황

나. 효고현 고베시의 타루미어항 (제3종 어항)

- 타루미 어항은 고베항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고베시 타루미구 남부 연안에 입지해 있다. 타루미구 인구는 2003년말 현재 고베시 전체인구 약 147만명의 15%인 22만명이며 주변에 인구 250만명의 일본 제2의 도시 오사카가 인접해 있다
- 타루미 어항 주변에는 세토내해 국립공원, 메이지노 모리미노 국정공원, 곤고이코 마키센 국정공원을 비롯하여 다수의 관광지가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연안 수변공간에는 마린피아 고베를 포함, 히라이소 바다낚시 공원, 스마 바다낚시 공원, 스마 해수욕장 등 10개의 유명 관

광지가 위치해 있다.

- 타루미 어항은 세토내해의 정온성과 아카시 카이교오 대교 주변 해역의 풍부한 어장 형성으로 인해 어획량과 양륙량(10,293M/T)이 매우 많으며, 2001년 어획고는 전국 어항중 18위를 차지하는 7,431백만엔에 달하였다.
- 타루미 어항은 제3종 어항으로 어선세력에 있어 2001년 현재 현지어선 119척, 외래어선 311척으로 외래어선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 타루미 어항은 활어의 축양기지 및 수산물 유통, 가공의 거점으로 배후 대도시에 대한 수산물 공급의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어선어업과 함께 김양식 어업 또한 활발한데 2001년말 현재 고베지역에서는 7,986만장의 김을 생산했다.
- 이와 같이 타루미 어항은 고베연안의 6개 어항 중 가장 우수한 수산업적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이나 1992년~2002년간 고베지역 어선어업의 어획량이 9,180M/T에서 5,990M/T으로 연평균 4.2%씩 감소하는 등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 일본정부에서는 수산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마리노베이션 정책과 관련하여 타루미 어항을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하기로 한바 수산세력의 우위성은 물론 다양한 해양관광자원과 함께 당해지역에 JR 산요 본선, 사철 산요 전철 및 국도 2호선이 관통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기성시가지 등 배후지역이 넓어 향후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기 때문이다.
- 타루미 어항개발은 신 나가시키 어항과 달리 시가지와 연접하고 있어 도시정비와 병행 추진하였으며 주변에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이를 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양관광기능 창출에 역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 개발 방향
 - 도시와 어항과의 조화로운 개발
 - 도시·어촌 통합문화공간의 창출

- 주변 관광자원 활용의 극대화
-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기능의 수용
- 연안해역 환경의 보전
- 개발전략 :
 - 물양장, 안벽, 야적장, 호안 및 축양시설, 해양목장의 증설을 통한 수산기능의 확충
 - 도시·어촌 교류기능의 부여를 위한 도시·어촌교류추진지구 지정 및 사업 추진
 - 수산물의 유통, 가공 등 도시형 수산업의 기반확대와 해상, 해안 등 해양관광기능과의 연계
- 고베시는 타루미어항의 개발에 민자유치를 적극 활용하였다.
 - 해수욕장을 민간과 함께 50:50 투자방식으로 조성
 - 해양목장, 수산회관, 고베시어업협동조합의 본부사무소 등을 민간투자에 의해 개발
 - 상업시설인 포토바자(Porto Barzar)는 15년간의 사업용 정기 차지방식(事業用定期借地方式)으로 미쯔비시부동산(三井不動産株式會社)을 통해 개발하여 1㎡당 250엔에 임대

<표 II-28> 타루미어항 PFI 사업 요약

사업기간	20년
사업방식	BOO
사업형태	독립채산형
PFI 사업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 정비공사, 공사감리 ◦유지관리 - 보수점검, 수리, 경비, 경계, 청소 ◦운영업무 - 이용모집, 이용수집, 계선사용료 징수, 안전 강습

자료 : 고베시 내부자료, 마린피아고베 시설정비 등 사업계획, 2006

- 어항개발 민자유치 사례를 통하여 도출된 몇 가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어항의 개발을 위한 민자유치에 어촌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우선 사업의 제안과정에서부터 사업자의 선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고 있으며, 사업체 운영에 지역주민의 경영 참여 및 개발한 사업체의 운영 시 지역주민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지역특산물을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 어촌이 지니고 있는 자연자원과의 조화를 통해 어촌의 전통과 문화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관광객에게도 친숙함이 느껴지는 장소를 창조하고 있다.
- 어항개발과 운영계획의 매뉴얼화를 통해 사전적으로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의 제안에서부터 사업실행에 이르는 10단계의 절차를 통해 추진되며, 특히, 사업의 타당성과 자금계획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 수익성 보장을 위한 각종 지원이 주어지고 있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비의 지원에서부터 어항의 각종 기반시설 사업, 편익시설, 관광레저시설 등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그림 II-4> 고베시 타루미어항의 전경



<그림 II-5> 마리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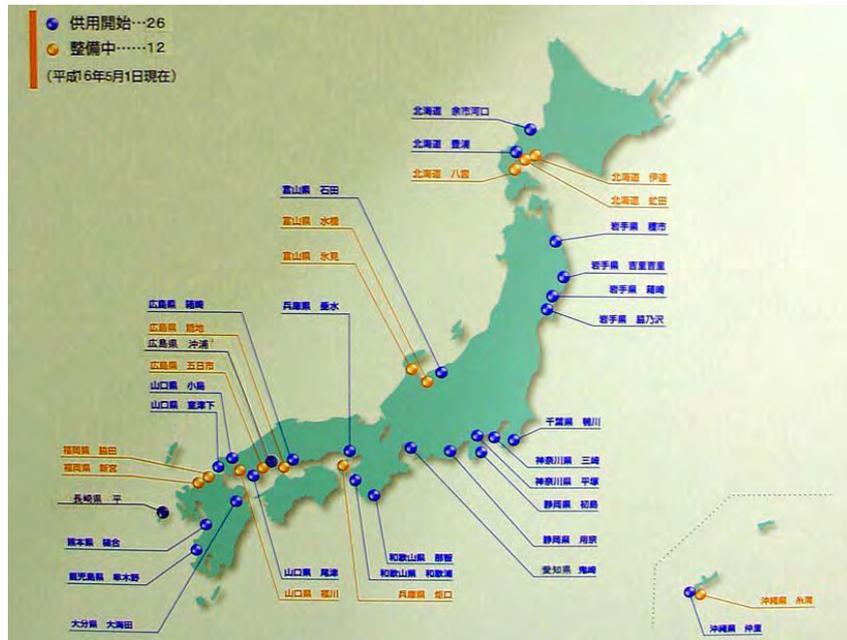
<그림 II-6> 바다낚시공원

- 타루미 어항의 개발효과는 「도시·어촌 교류사업」의 효과로 축약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추진결과 수산업의 진흥을 근간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쾌적한 도시환경의 창출, 매력적 도시경관의 형성 등 도시의 삶의 질을 제고시킴. 또한 레크리에이션, 문화, 교양이 융화된 주민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창출하게 됨

다. 피셔리나 어항

- ‘피셔리나’란 어류(fish)와 장소(arena)를 조합시킨 단어로 어항·어촌이라고 하는 무대 안에서 풍부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하여 수산업 자원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인 공간을 의미한다.
- 일본에서는 해양 및 어촌관광의 활성화에 따라 레저 선박과 유어선의 전용시설을 정비하고 어업 활동을 위한 구역과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의 기지로서의 구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피셔리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피셔리나란 어항 및 어항 주변 해역에서의 어업과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공존을 목표로 한 종합시설로 마리나의 한 형태이다.
- 사업의 추진목표
 - 어항 내의 어선과 레저용 보트, 유어선의 이용 조정을 도모하고 어업과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한다.

- 2005년 현재 일본에는 전국적으로 27개의 공용 피셔리나가 조성되어 있으며 13개가 조성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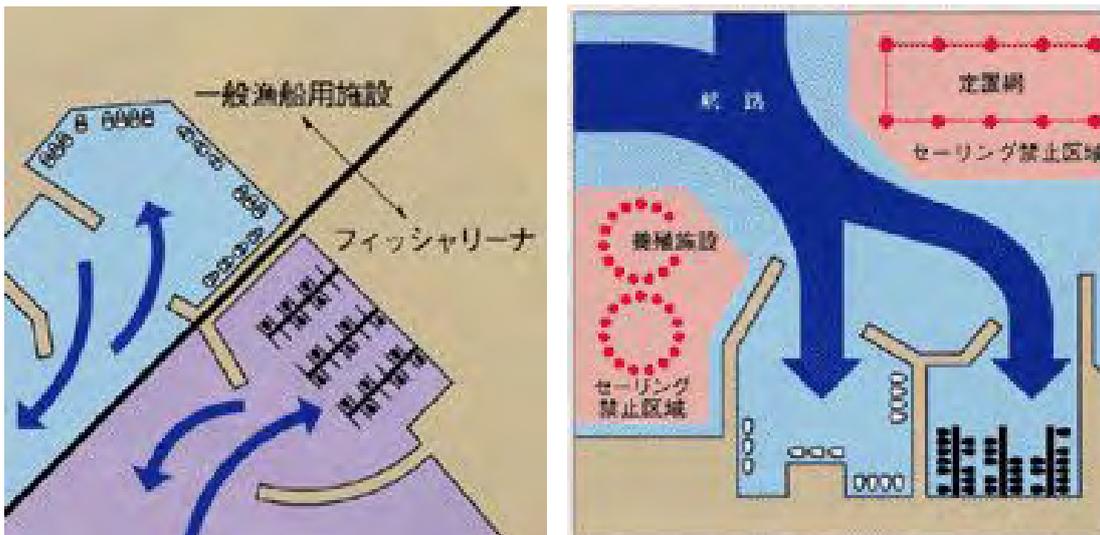


<그림 II-7> 일본의 전국 공용 피셔리나 위치

- 어항·어촌의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피셔리나 정비사업의 세부 추진목적은 살펴보면 어업의 진흥, 어업과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의 공존, 어항·어촌지역의 활성화이며 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어업활동의 개선 : 어촌 및 해양관광의 활성화 정책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 레저 선박 및 유어선 등이 어업활동과 마찰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 어항이나 어장 이용의 도모가 요구됨. 어업활동 측면을 강조하여 레저 선박이나 유어선 등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경우 어촌의 새로운 소득향상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므로 상호 대립적 위치에 놓일 수 있는 어업활동과 관광활동을 상호보완적 관계로 유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항구역 내의 유어선과 관광객의 관광활동을 보장하고 어업인과 관광객 간의 이해 및 신뢰를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어업인과 관광객 각 주체의 활동성 보장을 위한 구역 조정이 필요하다.

- 어업과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의 공존 : 어업과 해양레저활동의 공존을 도모한다는 것은 어업인과 관광객의 교류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즉 어촌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방문지역의 어촌과 수산업 여건을 이해하고 어항 및 어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업인들은 방문객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이들의 관광활동을 배제시킬 것이 아니라 어촌관광을 어업진흥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즉 어업과 해양레저 활동의 공존은 어업인과 관광객 간의 상호이해 및 어업활동과 관광활동의 조화로운 발전을 의미한다.
- 어항과 어촌지역의 활성화 : 피셔리나 정비사업의 핵심은 해양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한 도시주민과 어업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매력 있는 어항·어촌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어항시설의 관광자원화와 함께 배후지역을 대상으로 해산물 식당, 피셔맨즈 와프(Fisherman's Wharf) 등을 정비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어업인 스스로 피셔리나의 경영에 참가하도록 한다.



<그림 11-8> 어항과 어장의 이용구역 조성도

- 피셔리나의 소유권은 정부에 있으나 관리·운영은 지역의 어협에 위탁하고 있다. 어협에 위탁 경영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가 다소 발생하며, 어항 사용자가 사용료를 현(縣)에 지불하면 현은 이 가운데 일부를 어협 등 어항/피셔리나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단체에 지급하여 어업인에게 간접적인 소득원으로 이어진다.
- 주요 수입원은 보관료이며 그 외 방문객 선석(visitor berth) 이용료로 수입을 얻고 있다. 관리비용은 관리자 1~2명에 대한 인건비 외에는 거의 들지 않아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막대한 규모의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정도는 되지 않아 경제성이 높지는 않다. 보관료는 25피트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레저선 소유자들이 선호하는 도시 인근 피셔리나의 경우 보관료가 높다.
- 최근에는 민간사업유치(PFI: Private Financial Incentive)로 이러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II-9> 미우라·미야가와 피셔리나



<그림 II-10> 히라쓰카(平塚) 피셔리나



<그림 II-11> 다네이치 피셔리나 전경



<그림 II-12> 다네이치 피셔리나 어항구역

<표 II-29> 일본 피셔리나 제원

고베 피셔리나(효고 현)		
	수용규모	수역 : 142척 육지 : 0척 합계 : 142척
	연간 보관료 계류	278,000엔 육지보관 : -엔
	시설/서비스	계류 시설, 박지, 선양장, 급유 시설, 급수시설, 상하수도시설, 화장실, 주차장
피셔리나 와카포(와카야마 현)		
	수용 규모	수역 : 97척 육지 : 0척 합계 : 97척
	연간 보관료 계류	269,000엔 육지보관 : -엔
	시설/서비스	계류 시설, 박지, 선양장, 급유 시설, 급수시설, 상하수도시설, 화장실, 주차장
기자키 피셔리나(아이치 현)		
	수용 규모	144척 육지 : 67척 합계 : 211척
	연간 보관료 계류	106,000엔 육지보관 : 23,000엔
	시설/서비스	계류 시설, 박지, 선양장, 급유 시설, 급수시설, 상하수도시설, 화장실, 주차장
우즈미 피셔리나(히로시마 현)		
	수용 규모	수역 : 80척 육지 : 56척 합계 : 136척
	연간 보관료 계류	310,000엔 육지보관 : 256,000엔
	시설/서비스	계류 시설, 박지, 선양장, 급유 시설, 급수시설, 상하수도시설, 화장실, 주차장
이시다 피셔리나(도야마 현)		
	수용 규모	수역 : 17척 육지 60척 합계 : 77척
	연간 보관료 계류	163,000엔 육지보관 : 110,000엔
	시설/서비스	계류 시설, 박지, 선양장, 급유 시설, 급수시설, 상하수도시설, 화장실,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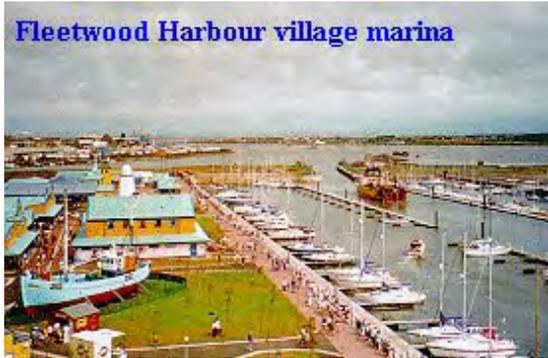
4.2 유럽의 사례

- 유럽에서 조성되는 다기능 어항의 사례조사 범위
 - 유럽에서는 어항 내의 마리나 조성에 있어 구분된 개념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기존의 어항에 마리나 시설을 설치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유럽 다기능 어항의 특징
 - 관광지 부근에 있는 천연의 기존 어항에 소규모 마리나 시설을 조성하여 단기간 체류
 - 어선·여객선·화물선 등의 터미널과 함께 대규모의 마리나를 조성
 - 시설면에 있어 어시장 등 기존의 부대시설과 어촌 및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관광과 휴식 및 해양 레크리에이션의 장소로 활용

가. 영국

- 아래 그림은 영국에서의 다기능 어항 사례를 소개한 것이다.

<표 II-30> Fleetwood Harbour Village Marina, Padstow Harbour

Fleetwood Harbour Village Marina		Padstow Harbour	
			
해상 계류	300 척	해상 계류	80 척
육상 보관	-	육상 보관	-
시설 및 서비스	클럽하우스, RO-RO선 부두, DRY DOCK(1,050톤), 어선 부두(Max. 1,200 dwt)	시설 및 서비스	계류, 정박지, 양륙장, 급유, 급수, 상하가 시설, 화장실, 주차장, 선박 수리소

<표 II-31> Penzance Harbour, Troon Harbour

Penzance Harbour		Troon Harbour	
			
해상 계류	50 척	해상 계류	400 척
육상 보관	-	육상 보관	-
시설 및 서비스	계류, 정박지, 양륙장, 급유, 급수, 상하가 시설, 화장실, 주차장, 선박 수리소	시설 및 서비스	클럽하우스, RO-RO선 부두, DRY DOCK, 어선 부두, 컨테이너 부두

나. 벨기에

- 아래 그림은 벨기에에서의 다기능 여항 사례를 소개한 것이다.

<표 II-32> Zeebrugge Port, Oostende

Zeebrugge Port		Oostende	
			
해상 계류	100 척	해상 계류	200 척
육상 보관	-	육상 보관	-
시설 및 서비스	클럽하우스, RO-RO선 부두, DRY DOCK, 어선 부두, 컨테이너 부두, 화물선 부두	시설 및 서비스	클럽하우스, RO-RO선 부두, 어선부두, 컨테이너 부두, 화물선 부두, Car-Ferry 선 부두

다. 이탈리아

- 아래 그림은 이탈리아에서의 다기능 어항 사례를 소개한 것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지중해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기존 어항을 이용한 마리나 시설을 아래 그림과 같이 조성하였다.

<표 II-33> Cetraro, Acciaroli

Cetraro		Acciaroli	
			
해상 계류	-	해상 계류	-
육상 보관	-	육상 보관	-
시설/서비스	단기 체류지로 사용되는 어항	시설/서비스	헤밍웨이 방문지



제Ⅲ편 어촌어항개발 사업의 주요지수 변화

제1장 어선안전수용을 산정

제2장 사업권역내 사업대상지의 연평균 어가소득증가율

제III편 어촌·어항개발 사업의 주요지수 변화

제1장 어선안전수용율 산정

1.1 어선안전수용율의 개요

- 어선의 안전수용율이란 기상 악화 시 어항이 어선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어항 수역시설의 확보규모를 산정하는 것이라 이야기 할 수 있다.
- 현재 어항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 산정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별 평균 톤급의 어선 규모를 산정하여 전국 어항에서 어느 정도의 어선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용대상 어선 결정
 - 어선수용 시설규모 조사(계류시설, 항내박지면적)
 - 어선의 대피방법 결정
 - 어선의 안전수용율 검토
- 한편 우리나라의 어선 수용이 가능한 어항 또는 항만은 총 434개로 어항이 394개, 항만이 40개로 나타났다.

<표 III-1> 어선수용이 가능한 어항 및 항만현황

구 분	계	어 항			항 만		
		계	국가어항	지방어항	계	무역항	연안항
계	434(443)	394	110	284	40(52)	19(28)	21(24)
부 산	17(18)	16	3	13	1(2)	-(1)	1(1)
인 천	23(23)	20	5	15	3(3)	1(1)	2(2)
경 기	6(7)	6	1	5	-(1)	-(1)	-
울 산	6(7)	6	2	4	-(1)	-(1)	-
강 원	32(34)	28	14	14	4(6)	3(5)	1(1)
충 남	39(42)	36	8	28	3(6)	1(4)	2(2)
전 북	19(19)	18	6	12	1(1)	1(1)	-
전 남	132(136)	122	31	91	10(14)	3(4)	7(10)
경 남	87(87)	80	19	61	7(7)	7(7)	-
경 북	42(42)	38	15	23	4(4)	1(1)	3(3)
제 주	31(31)	24	6	18	7(7)	2(2)	5(5)

주 : ()는 전체 항수임

1.2 어선안전수용율 산출의 주요 변수 설정

가. 수용대상 어선척수 결정

- 수용대상어선척수는 전국 총어선에서 내륙지역인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어선수를 제외하고 원양어선, 무동력어선, 내수면어선을 제외한 연근해에서 활동 중인 어선과 외래어선을 수용대상으로 한다. 아래의 표는 2008년, 2009년, 2010년 각각의 시·도별 수용대상어선을 나타낸 것이다.

<표 III-2> 2008년 시·도별 수용대상 어선척수

구 분	총어선	무동력	원양	내수면	외래	수용대상	비 고
전 국	80,776	2,486	448	4,040	1,114	75,417	
부산광역시	4,621	52	430	287	58	3,910	
인천광역시	2,119	40	9	7	20	2,083	
울산광역시	1,227	380	-	1	33	929	
경 기 도	2,095	359	-	613	14	1,137	
강 원 도	3,254	86	-	300	130	2,998	
충청남도	6,346	72	-	229	89	6,134	
전라북도	3,831	93	-	60	8	3,686	
전라남도	33,682	602	-	871	202	32,411	
경상북도	4,119	254	8	129	258	3,986	
경상남도	16,421	452	1	581	127	15,514	
제 주 도	2,464	8	-	2	175	2,629	

<표 III-3> 2009년 시·도별 수용대상어선척수

구분	총어선	무동력	원양	내수면	외래	수용대상	비 고
전 국	77,871	364	445	3,592	1,114	74,362	
부산광역시	4,481	7	427	255	58	3,850	
인천광역시	2,005	25	8	7	20	1,985	
울산광역시	1,273	94	-	-	33	1,212	
경 기 도	2,122	88	-	845	14	1,203	
강 원 도	3,140	23	-	334	130	2,913	
충청남도	6,051	3	-	257	89	5,880	
전라북도	3,728	8	-	86	8	3,642	
전라남도	32,682	30	1	798	202	32,055	
경상북도	3,863	12	8	150	258	3,951	
경상남도	15,830	6	1	661	127	15,289	
제 주 도	2,212	3	-	2	175	2,382	

<표 III-4> 2010년 시·도별 수용대상어선척수

구분	총어선	무동력	원양	내수면	외래	수용대상	비 고
전 국	77,607	2,078	416	3,110	1,114	73,117	
부산광역시	4,459	30	405	253	58	3,829	
인천광역시	1,986	33	4	9	20	1,960	
울산광역시	1,273	94	0	0	33	1,212	
경 기 도	2,049	323	0	729	14	1,011	
강 원 도	3,141	81	0	348	130	2,842	
충청남도	6,064	70	0	131	89	5,952	
전라북도	3,682	87	0	98	8	3,505	
전라남도	33,180	764	0	768	202	31,850	
경상북도	3,864	213	7	154	258	3,748	
경상남도	15,701	378	0	618	127	14,832	
제 주 도	2,208	5	0	2	175	2,376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정보화담당관(2009년 12월 말 등록어선 기준)

- 한편, 대표어선의 경우 수용대상 어선의 평균톤수를 산출하여 결정하게 되는 데, 본 연구에서는 전국 총어선수 중 무동력어선과 원양어선 및 내수면 어선을 제외한 수용대상어선을 대상으로 산출하였다. 2010년 산출 결과 이들 어선의 평균 톤급은 5.01톤이며 대표어선의 제원은 어선의 표준선형의 길이와 폭을 적용하였다.

<표 III-5> 어선 톤급별 제원

톤급별	1	3	5	7	10	13	15	20	30	50	60	70	100	120	200
길 이	6.2	8.4	10.5	11.9	13.8	15.1	15.7	17.5	18.7	22.9	25.2	25.5	25.8	33.1	38.3
너 비	1.8	2.7	3.1	3.4	3.7	4.1	4.2	4.3	4.3	5.2	5.5	6.4	6.4	7.1	7.4
만재흘수	0.4	0.8	1.0	1.1	1.2	1.3	1.4	1.5	1.6	1.8	2.0	2.1	2.5	2.5	2.9

자료 : 어항수요 및 지정기준산정 용역(해양수산부, 2005. 12)

- 이러한 산출결과를 바탕으로 시·도별 대표어선의 제원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으며, 해역별 평균톤수는 동해 6.26톤, 서해 4.13, 남해

5.21톤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6> 2010년 해역별 대표어선의 제원

구 분	평균톤수 (ton)	대표톤수 (ton)	길이(m)	폭(m)	비 고
동 해	6.26	7.0	11.9	3.4	
서 해	4.13	5.0	10.5	3.1	
남 해	5.21	7.0	11.9	3.4	

<표 III-7> 2010년 시·도별 대표어선의 제원

구 분	평균톤수 (ton)	대표톤수 (ton)	길 이(m)	폭(m)	비 고
전 국	5.01	7.0	11.9	3.4	
부산광역시	6.87	7.0	11.9	3.4	
인천광역시	6.73	7.0	11.9	3.4	
울산광역시	3.95	5.0	10.5	3.1	
경 기 도	23.72	30.0	18.7	4.3	
강 원 도	4.26	5.0	10.5	3.1	
충청남도	2.82	3.0	8.4	2.7	
전라북도	3.59	5.0	10.5	3.1	
전라남도	3.71	5.0	10.5	3.1	
경상북도	8.62	10.0	13.8	3.7	
경상남도	3.55	5.0	10.5	3.1	
제 주 도	8.18	10.0	13.8	3.7	

나. 계류시설 연장 길이

- 국가어항, 지방어항 및 항만에 시설된 계류시설 연장과 시설계획을 조사하여 어선안전수용을 검토 시 적용하였으며, 시·도별 계류시설 연장은 다음과 같다.

<표 III-8> 시·도별 국가어항의 계류시설 연장

구 분	총 계획	2008년	2009년	2010년	비 고
합 계	65,223	55,566	56,852	58,434	
부산광역시	2,913	1,884	2,178	2,279	
인천광역시	928	560	560	560	
울산광역시	1,889	1,669	1,669	1,669	
경 기 도	340	310	310	310	
강 원 도	7,918	7,318	7,698	7,788	
충청남도	5,013	3,962	4,146	4,481	
전라북도	2,033	1,853	1,853	1,853	
전라남도	18,470	15,106	15,534	16,010	
경상북도	10,543	9,399	9,399	9,959	
경상남도	11,540	10,090	10,090	10,110	
제 주 도	3,636	3,415	3,145	3,415	

<표 III-9> 시·도별 지방어항의 계류시설 연장

구 분	총 계획	2008년	2009년	2010년	비 고
합 계	50,038	30,582	30,791	31,262	
부산광역시	3,000	2,537	2,537	2,537	
인천광역시	2,282	2,002	2,002	2,002	
울산광역시	600	580	580	580	
경 기 도	854	719	719	749	
강 원 도	2,956	2,098	2,098	2,439	
충청남도	3,750	2,301	2,325	2,325	
전라북도	3,138	1,448	1,511	1,461	
전라남도	14,935	6,779	6,901	7,029	
경상북도	2,890	2,169	2,169	2,191	
경상남도	10,434	6,398	6,398	6,398	
제 주 도	5,199	3,551	3,551	3,551	

<표 III-10> 시·도별 항만의 계류시설 연장

구 분	총 계획	2008년	2009년	2010년	비 고
합 계	41,169	37,581	38,191	38,191	
부산광역시	4,342	4,342	4,342	4,342	
인천광역시	2,645	1,695	1,695	1,695	
울산광역시	0	0	0	0	
경 기 도	0	0	0	0	
강 원 도	3,976	3,661	3,976	3,976	
충청남도	2,634	2,306	2,306	2,306	
전라북도	1,312	1,312	1,312	1,312	
전라남도	9,331	8,557	8,652	8,652	
경상북도	5,771	5,511	5,511	5,511	
경상남도	6,300	5,519	5,719	5,719	
제 주 도	4,858	4,678	4,678	4,678	

다. 항내 수면적

- 항내 수면적은 항내 전체 수면적과 정온 수면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한편 항내 정온수면적이 제시되지 않은 항에 대하여는 국가어항 전체 비율에 의거 추정하였다.
- 정온수면적 산정은 방파제 여부를 근거로 적용하였는데 방파제가 완료된 항에 대해서는 100%를 적용하였으며, 공사 중인 항에 대해서는 방파제 공정률을 고려하여 정온수면적을 산정하였다.

<표 III-11> 시·도별 국가어항의 정온 수면적(㎡)

구 분	계 획	2008년	2009년	2010년	비 고
합 계	13,700,149	13,442,418	13,655,559	12,901,377	
부산광역시	388,400	344,207	344,207	344,207	
인천광역시	365,000	307,171	333,571	333,571	
울산광역시	296,000	296,000	296,000	296,000	
경 기 도	78,000	66,444	66,444	66,444	
강 원 도	1,013,900	919,850	977,053	984,638	
충청남도	1,243,400	1,136,127	1,136,127	1,147,231	
전라북도	861,961	829,652	832,524	832,524	
전라남도	4,627,888	4,432,004	4,507,525	4,507,525	
경상북도	1,709,600	1,430,817	1,461,218	1,430,391	
경상남도	2,567,700*	3,143,148	3,157,864	2,415,820	
제 주 도	548,300	536,997	543,025	543,025	

*지세포항 대기능어항 실시설계에 따른 정온수면적 재산정으로 축소(1,200,000㎡→416,000㎡)

<표 III-12> 시·도별 지방어항의 정온 수면적(㎡)

구 분	계 획	2008년	2009년	2010년	비 고
합 계	8,611,903	6,201,587	6,256,768	6,337,303	
부산광역시	361,070	300,724	303,676	303,676	
인천광역시	433,400	367,951	369,309	334,933	
울산광역시	47,400	47,400	47,400	47,400	
경 기 도	137,432	94,100	94,100	137,432	
강 원 도	231,368	191,368	191,368	196,007	
충청남도	808,089	615,823	628,381	631,536	
전라북도	713,020	326,725	327,737	356,414	
전라남도	3,164,966	2,154,390	2,191,691	2,179,820	
경상북도	304,875	249,945	249,945	257,469	
경상남도	1,977,031	1,525,092	1,525,092	1,525,092	
제 주 도	433,252	328,068	328,068	367,524	

라. 수용가능 어선척수 산정방법

- 어선의 대피 시 국가어항 및 항만 내에서의 정박은 통상 2~3척이 연결된 종접안을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선간의 여유 폭(1.35B)을 고려한 3중 접안으로 설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에 따라 추정이 진행되었다.
 - 척당 폭 : 1.35B
 - 길이 : 9L(해양수산부,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2000)
 - 계류시설 사용 시 척당 점유면적 = 척당 폭 × 길이
- 지방어항은 항내 수면적이 협소하고 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어선 대피 시 1열 종접안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항내 정온수면적에서 계류시설 사용 수면적을 제외한 해상정박 수면적은 일본어항협회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 해상정박 시 척당점유 면적 = $0.886 \times (L + 20)^2$
-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계류시설 연장에 어선이 3중 접안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류시설 사용 수면적을 제외한 항내 정온수역에는 해상정박하는 것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정하였다.

수용가능척수 = 계류시설을 이용한 대피어선척수 + 해상정박에 의한 대피어선척수

$$= \frac{\text{계류시설} \times (1 - \text{계류시설 손실률})}{\text{점유 폭}(1.35B)} \times 3 + \frac{\text{해상정박지 면적}}{\text{해상정박지 척당점유면적}} \times \text{실질률}$$

- 1) 손실률 : 수용가능척수 산정 시 계류시설 연장은 직선거리이며, 우각부, 굴곡부 등의 효과를 감안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접안가능척수는 줄어들게 되는데, 그 줄어드는 비율을 손실률이라 함.
- 2) 실질률 : 정온수역 내 해상묘박에 의한 정박 시 정박이 불가능한 수역이 생기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박가능한 수역의 비율을 실질률이라 함.

- 계류시설을 이용한 대피어선척수는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의 계류시설 연장을 조사하여 선간 여유 폭(1.35B)을 고려한 3중 접안방식으로 계산하였으나 계류시설 연장은 직선상의 거리이며, 굴곡부 등의 효과

를 감안하지 않았으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전국 국가어항에 대하여 접안이 불가한 연장을 구하여 계류시설의 손실률을 구하고 임의의 10개항을 대상으로 실제 어선을 배치하여 계류박지 손실률(13%)을 추정하여 기초자료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상황과 근접한 결과를 도출코자 하였다. 해상정박에 의한 대피어선척수는 해상정박면적을 해상 정박 시 척당 점유면적을 나눈 값으로 산정하였으며, 척당 점유면적은 시·군·구별 평균톤급어선을 이용하였다.
- 해상정박면적은 항내 정온수면적에서 계류박지면적을 제외하고 해상정박 면적의 실질비율을 곱하여 산출하였음. 여기서, 해상정박면적의 실질비율이란 계산상으로 나오는 값은 실제와 큰 차이가 있고 조선수역 등을 감안하지 않았으므로 임의의 10개항을 계획평면도에 배치하여 해상정박면적의 실질비율(56%)을 구하여 적용하였다¹⁾.
 - 해상정박면적 = (항내 정온수면적 - 계류박지면적) × 실질비율(0.56)

1) “전국어항개발 투자효과 분석 및 개발방안보고서, 2001”의 내용을 추정에 참고함

1.3 전국 어선안전 수용율 산정

- 어선안전수용율은 기상 악화 시 어항이 어선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능력 즉, 어항 수역시설의 확보 규모이다.
- 기상 악화 시 어선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어항 개발계획은 계류박지 및 해상박지를 포함하여 계획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해상정박대피를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 어선안전수용율은 수용대상 어선척수에 대한 수용가능 어선척수의 비로 산정하여 검토하면 다음의 식이 된다.

$$\text{어선안전수용율} = \frac{\text{수용가능어선척수}}{\text{수용대상어선척수}} \times 100\%$$

가. 수용대상 어선척수

- 수용대상 어선척수 = 총어선-(무동력선+원양어선+내수면어선)+외래어선
- 전국 총 어선은 77,607척이나, 내륙지역인 충청북도와 대구광역시의 어선을 제외하였으며, 또한 나머지 지역의 어선 중에서도 무동력선, 원양어선, 내수면어선을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나온 결과에 외래어선수를 포함하면 73,117척이다.

<표 III-13> 수용대상 어선척수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총어선	수용대상 어선척수	총어선	수용대상 어선척수	총어선	수용대상 어선척수	
전 국	80,776	75,417	77,871	74,362	77,607	73,117	
부산광역시	4,621	3,910	4,481	3,850	4,459	3,829	
인천광역시	2,119	2,083	2,005	1,985	1,986	1,960	
울산광역시	1,227	929	1,273	1,212	1,273	1,212	
경 기 도	2,095	1,137	2,122	1,203	2,049	1,011	
강 원 도	3,254	2,998	3,140	2,913	3,141	2,842	
충청남도	6,346	6,134	6,051	5,880	6,064	5,952	
전라북도	3,831	3,686	3,728	3,642	3,682	3,505	
전라남도	33,682	32,411	32,682	32,055	33,180	31,850	
경상북도	4,119	3,986	3,863	3,951	3,864	3,748	
경상남도	16,421	15,514	15,830	15,289	15,701	14,832	
제 주 도	2,464	2,629	2,212	2,382	2,208	2,376	

나. 수용가능 어선척수

◦ 수용가능 어선척수를 각 해역별로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4> 연도별 해역별 수용가능 어선척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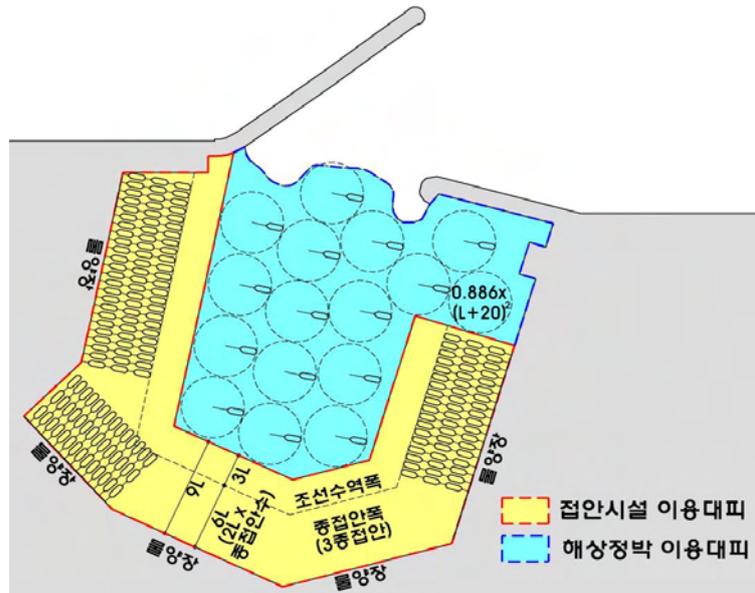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비 고
계	54,276	54,164	54,359	
접안시설 이용	46,106	45,982	46,712	
동 해	7,743	7,635	7,418	
서 해	13,391	13,493	13,646	
남 해	24,972	24,854	25,648	
해상정박 이용	8,170	8,182	7,647	
동 해	409	401	332	
서 해	2,923	2,923	2,901	
남 해	4,838	4,858	4,414	

주 : 국가어항 : 110개, 지방어항 : 284개, 항만(무역 19개, 연안 21개) : 20개

<표 III-15> 2010년도 항종별 수용가능 어선척수

구 분	계	국가어항	지방어항	항만	비 고
계	54,359	30,611	8,091	15,657	
접안시설 이용	46,712	25,999	5,057	15,657	
동 해	7,418	4,712	561	2,145	
서 해	13,646	6,803	1,709	5,135	
남 해	25,648	14,485	2,787	8,377	
해상정박 이용	7,647	4,612	3,034		
동 해	332	248	84		
서 해	2,901	1,808	1,093		
남 해	4,414	2,556	1,858		

주 : 국가어항 : 110개, 지방어항 : 284개, 항만(무역 19개, 연안 21개) : 20개



<그림 III-1> 항내 선박 수용도

다. 어선안전수용율 산정결과

- 2008~2010년 말 시설 기준으로 어선안전수용율이 100%이상의 초과 어선안전수용율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전국 수용 대상 어선척수는 각각 75,417, 74,362척, 73,117척,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54,276, 54,164척, 54,359척으로 어선안전수용율 72%, 72.8%, 74.3%로 산정되었다.
- 지역별 어선안전수용율이 100%이상 되는 초과 어선안전수용율을 모두 포함하는 개발실태 고려 시 전국 어선안전수용율은 92~95%로 산정되어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와 20~23%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이용을 감안할 때 시도별로는 강원도, 경상북도, 제주도에서 100%의 어선안전수용율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도는 33%로 가장 낮은 어선안전수용율을 보이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48%, 경상남도 80%, 전라남도 64% 등으로 동해에 비해 서해, 남해가 상대적으로 낮은 어선안전수용율을 보이고 있다.
- 해역별 전국 어선안전수용율에서 동해 지역의 경우 2009년 92.6%에서 92.3%로 0.3%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설계파의 상향, 수위의 상승, 파향 및 파고의 변화에 따라 일부 항에서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정온수면적의 축소로 인하여 소폭 감소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 여기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는 어선안전수용율이 100% 초과 시에는 수용가능어선척수가 수용대상어선척수를 초과하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수용가능어선척수를 시군단위에서 시도단위나 전국단위로 합산할 때 수용대상 어선척수만큼 수용가능어선으로 간주하고 계산하였다.
- 이와 같이 계산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제주도의 어선수용 시설이 여유가 있더라도 인천광역시의 재적어선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도단위나 전국단위로 합산할 때 이러한 실제 이용 상황을 감안하기 위한 것이다.

<표 III-16> 2008년 전국 어선안전수용율

구 분	개발 실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율(%)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율(%)	
합 계	75,417	69,490	92.0	54,276	72.0	
시도별	부산광역시	3,910	2,834	72.5	1,888	48.3
	인천광역시	2,083	1,891	90.8	1,470	70.6
	울산광역시	929	1,110	119.5	562	60.5
	경 기 도	1,137	397	34.9	397	34.9
	강 원 도	2,998	6,741	224.8	2,998	100.0
	충청남도	6,134	5,368	87.5	4,926	80.3
	전라북도	3,686	2,919	79.2	2,919	79.2
	전라남도	32,411	21,183	65.4	20,158	62.2
	경상북도	3,986	8,170	205.0	3,986	100.0
	경상남도	15,514	13,993	90.2	12,343	79.6
제 주 도	2,629	4,884	185.8	2,629	100.0	
해역별	동 해	8,519	17,042	200.0	8,152	95.7
	서 해	21,997	17,475	79.4	16,314	74.2
	남 해	75,417	34,973	77.9	29,810	66.4

※ 2007년말 전국어선 등록현황 기준

어촌·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용역

<표 III-17> 2009년 전국 어선안전수용율

구 분	개발 실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율(%)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율(%)	
합 계	74,362	70,930	95.3	54,164	72.8	
시도별	부산광역시	3,850	2,985	77.5	1,844	47.9
	인천광역시	1,985	1,910	96.2	1,464	73.8
	울산광역시	1,212	1,110	91.6	568	46.9
	경 기 도	1,203	397	33.0	397	33.0
	강 원 도	2,913	7,087	243.3	2,913	100.0
	충청남도	5,880	5,506	93.6	4,875	82.9
	전라북도	3,642	2,936	80.6	2,936	80.6
	전라남도	32,055	21,653	67.5	20,573	64.2
	경상북도	3,951	8,295	209.9	3,951	100.0
	경상남도	15,289	14,138	92.5	12,261	80.2
제 주 도	2,382	4,913	206.3	2,382	100.0	
해역별	동 해	8,680	17,664	203.5	8,036	92.6
	서 해	21,690	17,821	81.9	16,416	75.7
	남 해	43,992	35,445	80.6	29,712	67.5

※ 2008년말 전국어선 등록현황 기준

<표 III-18> 2010년 전국 어선안전수용율

구 분	개발 실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율(%)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율(%)	
합 계	73,117	71,933	98.4	54,359	74.3	
시도별	부산광역시	3,829	2,990	78.1	1,834	47.9
	인천광역시	1,960	1,888	96.3	1,425	72.7
	울산광역시	1,212	1,167	96.3	568	46.9
	경 기 도	1,011	441	43.6	441	43.6
	강 원 도	2,842	7,165	252.1	2,842	100.0
	충청남도	5,952	5,740	96.4	5,081	85.4
	전라북도	3,505	2,944	84.0	2,944	84.0
	전라남도	31,850	21,988	69.0	20,684	69.0
	경상북도	3,748	8,767	233.9	3,748	100.0
	경상남도	14,832	13,908	93.8	12,416	83.7
제 주 도	2,376	4,935	207.7	2,376	100.0	
해역별	동 해	8,394	18,323	218.3	7,750	92.3
	서 해	21,211	18,075	85.2	16,547	78.0
	남 해	43,512	35,535	81.7	30,062	69.1

※ 2009년말 전국어선 등록현황 기준

<표 III-19> 연도별 전국 어선안전수용율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비 고	
전 국	72.0%	72.8%	74.3%		
시도별	부산광역시	48.3%	47.9%	47.9%	
	인천광역시	70.6%	73.8%	72.7%	
	울산광역시	60.5%	46.9%	46.9%	
	경 기 도	34.9%	33.0%	43.6%	
	강 원 도	100.0%	100.0%	100.0%	
	충청남도	80.3%	82.9%	85.4%	
	전라북도	79.2%	80.6%	84.0%	
	전라남도	62.2%	64.2%	69.0%	
	경상북도	100.0%	100.0%	100.0%	
	경상남도	79.6%	80.2%	83.7%	
	제 주 도	100.0%	100.0%	100.0%	
해역별	동 해	95.7%	92.6%	92.3%	
	서 해	74.2%	75.7%	78.0%	
	남 해	66.4%	67.5%	69.1%	



<그림 III-1> 연도별 전국 어선안전수용율

- 전국 수용대상 어선의 항종별 분담률은 국가어항 56%, 지방어항 15%, 항만 29%로 국가어항의 분담률이 가장 높았으며, 국가어항 분담률은 울산광역시 88%, 강원도 65%, 전라북도 58%, 경상북도 59%로 국가어항의 분담비중은 크나 지방어항은 적게 분포하였다. 그리고 항만 분담률의 경우 부산광역시 38%, 인천광역시 45%, 제주도

어촌·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용역

50% 등으로 이 지역의 연안항, 무역항의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0> 2010년 전국 수용어선 항종별 분담률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항 만	비 고
전 국		56.4%	15.0%	28.6%	100.0%
시도별	부산광역시	42.4%	19.7%	37.9%	
	인천광역시	26.2%	28.9%	44.9%	
	울산광역시	87.6%	12.4%	0.0%	
	경 기 도	50.1%	49.9%	0.0%	
	강 원 도	64.6%	7.5%	27.9%	
	충청남도	59.9%	14.4%	25.7%	
	전라북도	57.7%	17.1%	25.3%	
	전라남도	61.3%	14.3%	24.5%	
	경상북도	59.4%	5.6%	35.1%	
	경상남도	57.7%	17.2%	25.1%	
	제 주 도	36.3%	14.2%	49.5%	
전국	동 해	64.0%	8.3%	27.7%	
	서 해	52.0%	16.9%	31.0%	
	남 해	56.7%	15.4%	27.9%	

- 따라서, 전체 어항의 어선안전 수용율은 2010년 시설 기준 74.3%이고, 항종별 어선안전 수용율은 국가어항 41.61%, 지방어항 11.15%로 나타났으며, 이는 항종별 분담률을 적용한 결과이다.

<표 III-21> 항종별 어선안전수용율

구 분	계	국가어항	지방어항	비 고
분담률		56%	15%	항만은 29%임
어선안전수용율	74.3	41.61	11.15	항종별 분담률 적용

제2장 사업권역내 사업대상지의 연평균 어가소득증가율

2.1 연평균 어가소득증가율 검토 개요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요소는 크게 어촌소득 증대효과, 어업인 만족도, 인구 증가효과, 투자의 효율성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는 평가요소 중 어촌소득 증대효과를 토대로 어촌개발사업의 평가 지표로 사용하고자 한다.
- 계량적 성과의 지표인 호당 평균소득의 증가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된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완공되기 전의 당해 어촌계의 어촌소득과 완공 후의 기초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증가율을 산출한 결과를 검토하였다.
- 연평균 어가소득 증가율 검토대상은 2009년에 검토한 9개 권역, 40개 어촌계를 포함하고, 2002년~2004년에 사업이 투자되어 완공된 6개 권역, 32개 어촌계를 신규로 추가하여 총 15개 권역, 72개 어촌계로서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I-22> 연평균 어가소득 증가율 검토 대상지

시·도	권역명	어촌계	개발년도
인천	강화 길상	동검, 선두, 초지	2001~2003
울산	울주 서생2	강양, 대송, 진하, 송정, 평동	2001~2003
강원	삼척 동부	후진, 정라, 오분, 증산	2001~2003
	양양 현남	남애, 인구, 동산	2002~2004
충남	홍성 홍성	궁리, 상황, 어사, 죽도	2001~2003
	서산 가로림만	오지, 웅도, 팔봉, 가로림, 고파도, 왕산, 중왕	2002~2004
전북	군산 염섬	비안도, 관리도, 명도, 말도, 방축도	2001~2003
전남	무안 남촌	구로, 성내, 신월, 동암, 압창	2001~2003
	고흥 두원	금성, 풍류, 영오, 대전, 신흥 성두, 예회, 용신, 외로, 도야	2002~2004
경북	포항 방석	지경리, 화진1리, 화진2리, 방석리, 조사리	2001~2003
	울진 구산	구산리, 봉산1리, 기성리	2002~2004
경남	진해 진해만	수치, 우도, 행암, 잠도	2001~2003
	통영 도산	오륜동, 오륜, 저산, 법송, 용호	2002~2004
제주	북제주 조천	신촌, 조천, 북촌, 함덕, 신흥	2001~2003
	북군 우도	천진, 서광, 오봉, 조일	2002~2004

※ □ : 2009년 검토 대상지, ■ : 2010년 추가 검토 대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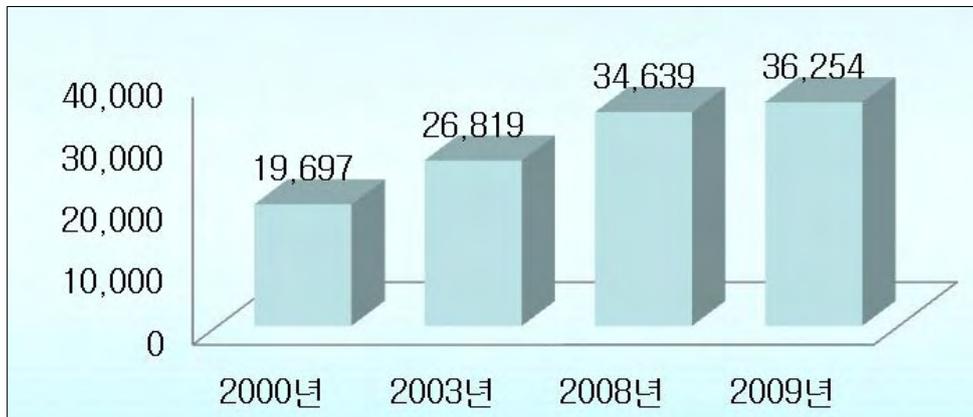
2.2 사업권역내 사업대상지의 연평균 어가소득증가율 산정

- 사업권역내 사업대상지의 연평균 어가소득증가율 증대효과는 조사결과 어촌종합개발사업 대상지의 사업 완공 후 해당 평균 소득의 연평균증가율은 4.7%로 나타나 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25> 사업대상지역 연평균 어가소득 증대효과

구분		호당 평균소득(천원)			
		2000년	2003년	2008년	2009년
사업 대상지역 연평균 어가소득 증가율	평균(μ)	19,697	26,819	34,639	36,254
	표준편차(σ)	16,047	14,953	25,113	6,653
	연평균 증가율	-	10.8%	5.3%	4.7%

※ 2009년 : 통계청(어가소득), 수협중앙회 어촌계분류평정(2009.12.31) 기준



<그림 III-2> 사업대상지역 연평균 어가소득

- 사업 대상지역의 연평균 어가소득 증가율을 해역별로 살펴보면, 서해안 지역의 호당평균소득의 연평균증가율이 9.4%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표 III-26> 해역별 어촌소득 증대효과

해역별	구분	호당 평균소득(천원)			
		2000년	2003년	2008년	2009년
서해안	평균(μ)	19,079	26,532	35,012	38,305
	표준편차(σ)	2,202	3,764	6,435	4,055
	연평균증가율	-	11.62%	5.70%	9.4%
남해안	평균(μ)	20,174	28,447	41,040	33,222
	표준편차(σ)	-	-	-	3,558
	연평균증가율	-	10.49%	7.61%	-19.0%
동해안	평균(μ)	20,757	27,297	32,168	31,996
	표준편차(σ)	2,020	970	7,726	11,265
	연평균증가율	-	9.56%	3.34%	-0.5%
제주	평균(μ)	18,509	24,905	35,970	37,043
	표준편차(σ)	-	-	-	1,868
	연평균증가율	-	10.40%	7.63%	3.0%



제Ⅳ편 어촌개발사업 모니터링 조사

제1장 어촌종합개발사업

제2장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제3장 어촌관광개발사업

제4장 어촌개발사업의 문제점 도출

제Ⅳ편 어촌개발사업 모니터링 조사

제1장 어촌종합개발사업

1.1 모니터링 조사 방법

가. 모니터링 목적

- 모니터링은 영리조직인 기업이든 비영리 조직인 정부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절차이다. 즉 기업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과 만족도, 혹은 소비자의 기호에 대한 이를 통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정책 수립과 투자 사업에 대한 국민 또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 결과는 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투자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 기업이나 정부의 모니터링은 통계자료를 이용하거나 설문조사를 이용하기도 한다. 동일한 모니터링의 경우에 통계자료와 설문조사를 병행하기도 한다. 통계자료는 과거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미래의 전망이나 예측에 있어서 편차가 클 가능성이 있지만, 객관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상품이나 투자사업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만족도에 대한 모니터링에 많이 사용된다.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성과 모니터링과 프로그램 모니터링도 통계자료에 의한 모니터링과 설문조사에 의한 모니터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 계량적 성과의 지표인 어가구수, 어업인구수, 호당 평균소득 등의 증가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된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완공되기 전의 당해 어촌계의 어촌소득과 완공 후의 기초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증가율을 산출하여 비교한 계량

적 분석과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앞으로 증가율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조사하였는데, 이러한 성과 모니터링의 결과는 향후 동 사업이 완성되었을 경우의 통계자료에 의한 실제 성과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프로그램 모니터링의 대상 또한 성과 모니터링의 대상과 같이 하였는데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동 사업의 인지도, 사업규모의 적정성, 선정 및 집행과정의 효율성, 지역주민의 참여도, 지역에 대한 사업의 기여도 등을 전화로 설문조사하였다.
- 한편 설문조사는 지역 대학교 또는 연구소, 그리고 전문 설문조사기관 등을 설문조사대행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지역 대학교와 연구소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할 경우에는 직접 대면조사가 가능하지만, 설문조사자로 대학생을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설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문적인 설문조사기관의 조사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전문 설문조사기관에 위탁 수행하도록 하였다.

나. 모니터링 대상 및 표본의 선택

(1) 모니터링 대상권역

- 이 조사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이루어진 대상권역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특히 완공된 권역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완공된 권역을 주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개발사업의 완공 이후 어촌지역의 변화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완공 이후 약 2~3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사업의 성과에 대한 조사와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한편 2009년까지의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실적(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에 의하면 이미 완공되었거나 추진 중인 권역은 총 176개 권역(1,171개 어촌계)이며, 이 실적을 바탕으로 2005년까지 개발사업이 완료된 권역만을 추출한 결과는 135개 권역(919개 어촌계)이었다.
-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2010년 현 시점에서 개발사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고자 할 때, 2년~3년 이전에 완공된 권역을 대상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충족시키는 권역은 2001~2004년에 이루어진 15개 권역(72개 어촌계)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2) 모니터링 표본의 선택

- 2001~2004년 사업 대상지인 15개 권역(72개 어촌계)의 지역주민 500명과 시군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예상 성과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으며, 프로그램 모니터링의 대상 또한 성과 모니터링의 대상과 같이 하였다.
- 표본추출은 사업별 유의표집법을 사용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주로 전화설문조사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공무원의 경우 팩스를 통한 지면설문방법도 병행하였다.

<표 IV-1>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모니터링 대상 표본

구 분	공무원	지역주민	비 고
모집단	어촌개발사업 담당 공무원	대상 지역 주민	
표본수	20	500	
표본추출	사업별 유의표집	사업별 유의표집	
조사방법	전화 및 팩스조사	전화조사	
조사일자	2010.12.08~22(15일간)	2010.12.08~22(15일간)	

다. 모니터링 내용

(1) 성과 모니터링 조사

- 동 사업의 성과는 계량적 성과와 비계량적 성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계량적 성과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따른 투자가 완료된 이후에 나타나며, 이러한 계량적 성과의 지표는 어가구의 변화, 어업인구의 변화, 호당 평균소득의 변화, 어업 생산성에 대한 영향 등을 열거할 수 있다.
- 비계량적 성과 또한 계량적 성과만큼 중요한데, 이는 비계량적 성과는 지역 주민의 사기양양과 동기부여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비계량적 성과는 지역 주민의 기뻐함으로 측정하였는데 비계량적 평가 지표는 방문객 변화, 자연재해 방지 그리고 사회/문화/환경에 대한 영향 등이다.
- <표 IV-2>은 동 사업의 계량적 성과와 비계량적 성과를 모니터링 지표를 나타낸다.

<표 IV-2>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성과 모니터링 지표

구분	지표	응답척도
계량적 지표	어가구의 변화	증가율
	어업인구의 변화	증가율
	호당 평균소득의 변화	증가율
	어업 생산성에 대한 영향	5단계
비계량적 지표	방문객 변화에 대한 영향	5단계
	자연재해 방지에 대한 기여	5단계
	사회/문화/환경에 대한 영향	5단계

(2) 프로그램 모니터링 조사

-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여 계획 및 시행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프로그램 모니터링의 지표는 크게 사업의 인식도, 사업의 적합도, 그리고 사업의 유효도 등으로 나눈다. <표 IV-3>는 동 사업의 프로그램 모니터링 지표를 요약한 것이다.

<표 IV-3>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프로그램 모니터링 지표

구분	지표	응답척도	대상자
사업의 인식도	사업의 인지도	2점	지역주민
	사업의 이해도	5점	지역주민 공무원
	사업의 투명도	5점	지역주민
사업의 적합도	사업의 목적성	5점	지역주민 공무원
	사업의 연계성	5점	지역주민
사업의 유효도	예산의 가용성	5점	지역주민 공무원
	집행의 효율성	5점	지역주민
	사업추진 효율성	5점	공무원

- 사업의 인식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사업의 인지도, 사업의 이해도 사업의 투명도 등으로 구성된다.
 - 사업의 인지도(2점 척도)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여부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한다.
 - 사업의 이해도(5점 척도)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는 도입시설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사업내용 인지정도 및 추진방법 인지 여부를 조사한다.
 - 사업의 투명도(5점 척도)는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 여부를 조사한다.
- 사업의 적합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사업의 목적성, 사업의 적절

성, 사업의 연계성 등으로 구성된다.

- 사업의 목적성(5점 척도)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어려운 어촌 현실 해소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를 조사한다.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관광기반시설 확충 정도, 지역 정주환경 및 수산업 기반시설 개선정도를 조사한다.
- 사업의 연계성(5점 척도)은 지역주민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충분히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조사한다.
- 사업의 유효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예산의 가용성, 집행의 효율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으로 구성된다.
 - 예산의 가용성(5점 척도)은 예산규모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조사로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 집행의 효율성(5점 척도)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선정과 집행과정의 효율성을 조사한다.
 - 사업추진의 효율성(5점 척도)은 사업추진 과정을 4단계(대상지 선정단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 시공단계,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단계별 효율적 추진 정도를 조사한다.

1.2 어촌종합개발사업 모니터링 조사

가. 성과 모니터링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성과 모니터링에 대한 평가요소는 크게 어촌소득 증대효과, 어업인 만족도, 인구 증가효과, 투자의 효율성 등으로 구성된다.

1) 계량적 지표

- 계량적 성과의 지표인 어가구수, 어업인구수, 호당 평균소득, 어업 생산성 등의 증가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된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완공되기 전의 당해 어촌계의 어촌소득과 완공 후의 기초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증가율을 산출하여 비교한 계량적 분석과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앞으로 증가율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조사하였다.

(1) 어가구 및 어업인구의 변화

-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사업 대상지의 어업인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업 완공 전 연도의 어업인구와 사업 완공 5년 후의 어업인구를 비교한 결과, 사업 완공 전 어업인구는 연평균 3.2% 감소하였지만, 사업 완공 후 어업인구는 연평균 4.1% 감소하여 어업인구감소추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IV-4> 어업인구 증가효과

구 분	2000년도		2003년도		2008년도	
	어가구	어업인구	어가구	어업인구	어가구	어업인구
평균(μ)	78	164	75	149	71	121
표준 편차(σ)	27	110	25	62	23	39
연평균 증가율	-	-	-1.1%	-3.2%	-1.11%	-4.10%

(2) 호당 평균소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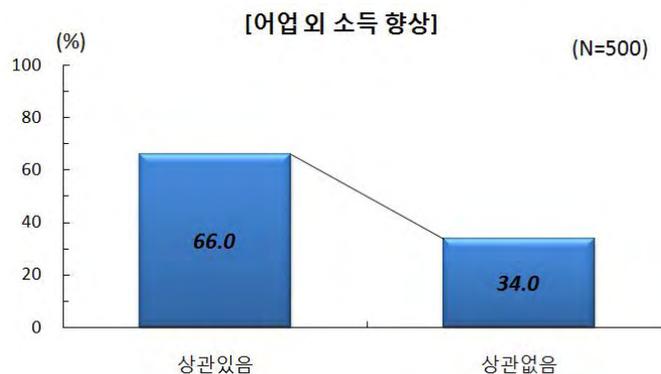
- 어가소득 증대효과는 조사결과 어촌종합개발사업 대상지의 사업 완공 후 호당 평균 소득의 연평균증가율은 4.7%로 나타나 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5> 사업대상지역 연평균 어가소득 증대효과

구분	호당 평균소득(천원)			
	2000년	2003년	2008년	2009년
평균(μ)	19,697	26,819	34,639	36,254
표준편차(σ)	16,047	14,953	25,113	6,653
연평균 증가율	-	10.8%	5.3%	4.7%

※ 2009년 : 통계청(어가소득), 수협중앙회 어촌계분류평정(2009.12.31) 기준

-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지역 내 어업 소득증가와 상관관계를 지니는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상관있다’는 응답이 66.6%, ‘상관없다’는 응답은 34.0%로 ‘상관있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 한편 ‘상관있다’는 응답자(N=500)는 평균적으로 44.9% 정도의 소득증가가 있다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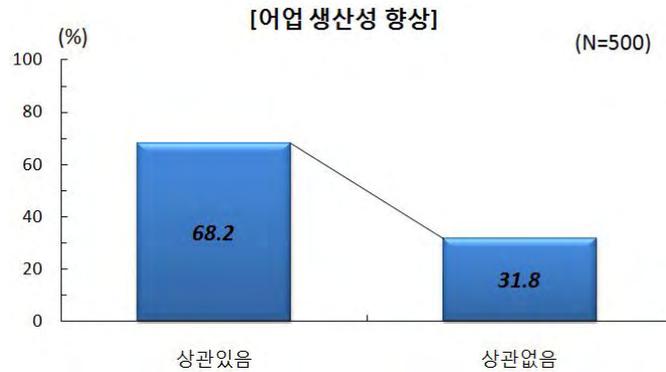


(3) 어업 생산성에 대한 영향

-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지역 내 어업 생산성 향상과 상관관계를 갖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상관있다’는 응답이 68.2%, ‘상관없다’는 응답

은 31.8%로 ‘상관있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 한편 ‘상관있다’라고 응답한 지역주민(N=500)은 평균적으로 약 47.4% 정도의 생산성 향상 정도가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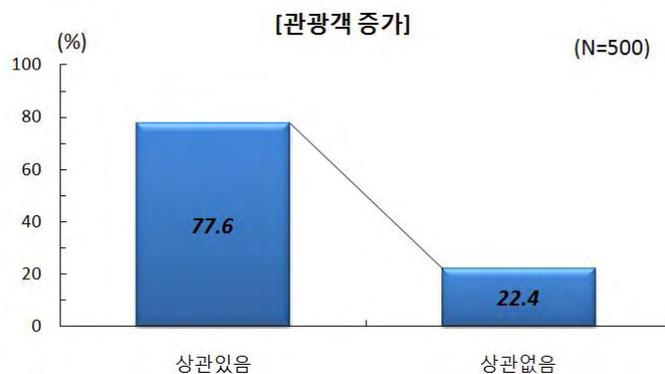


2) 비계량적 지표

- 비계량적 지표는 지역 주민의 기댓값으로 측정하였는데 비계량적 평가지표는 방문객 변화, 자연재해 방지 그리고 사회/문화/환경에 대한 영향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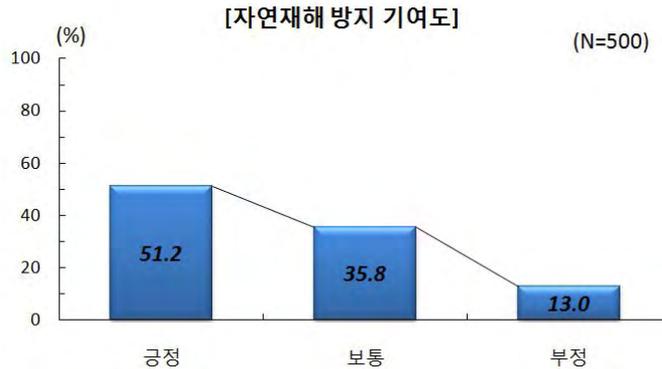
(1) 방문객 변화에 대한 영향

- 지역 내 관광객 증가와의 상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상관있다’는 응답이 77.6%, ‘상관없다’는 응답은 22.4%로 ‘상관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한편 ‘상관있다’라고 응답한 주민(N=500)은 평균 약 43.5%의 관광객 증가가 있다고 답하고 있다.



(2) 자연재해 방지에 대한 기여

-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지역의 자연재해 방지에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여한다.’는 응답이 51.2%, ‘기여 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13.0%로 나타났는데, 100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는 63.3점이었다.



(3) 사회/문화/환경에 대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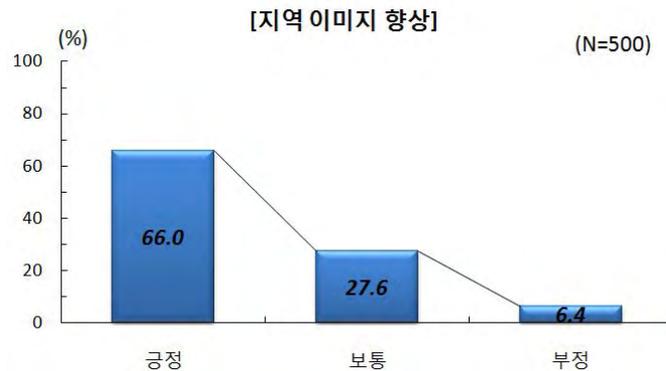
① 삶의 질 향상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사회·문화·환경에 대한 질문 중 사업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60.6%, ‘아니다’는 응답은 9.0%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68.2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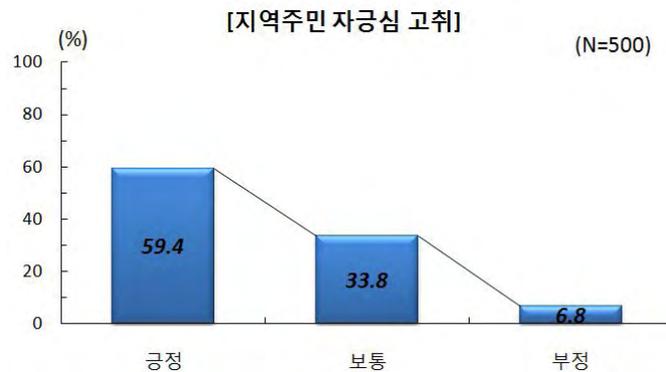
② 지역 이미지 향상

-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 이미지 향상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66.0%, ‘아니다’는 응답은 6.4%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70.5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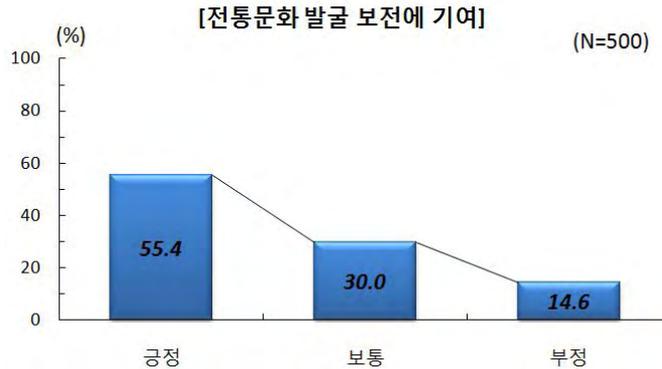
③ 지역 주민 자긍심 향상

-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지역주민의 자긍심 향상에 기여하는가 여부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59.4%, ‘아니다’는 응답은 6.8%로 ‘그렇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에 대한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68.9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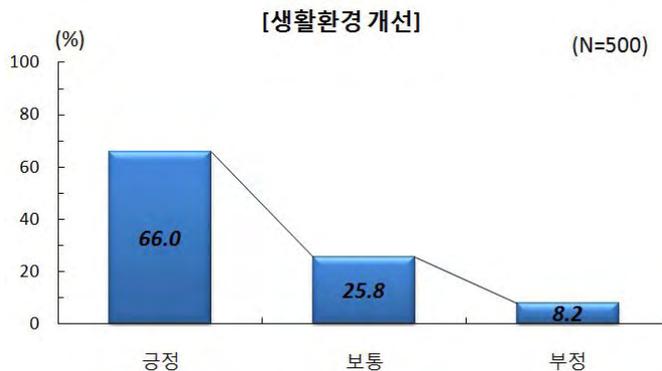
④ 전통문화 발굴·보존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마을 전통문화 발굴 보전에 대한 기여도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 55.4%, ‘아니다’ 14.6%로 나타났다. 한편 이에 대한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64.5점이었다.



⑤ 마을 생활환경 개선

-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한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 여부를 질문한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는 응답이 66.0%, ‘아니다’는 응답은 8.2%로 ‘그렇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70.5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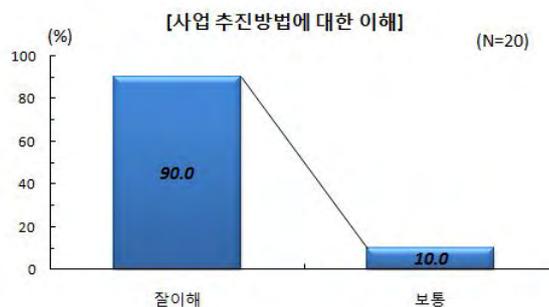
나. 공무원 대상 프로그램 모니터링

- 본 프로그램 모니터링 조사는 전국 어촌지역에 실시되었던 다양한 개발사업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후 현실을 반영한 개선된 어촌지역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삼기 위함이다.
- 한편 리커드 5점 척도로 의견을 묻는 경우에 있어서는 100점 환산 점수를 통하여 어촌개발종합사업에 대한 의견 분포와 함께 강도를 판단하였다.

1) 사업 인지도

(1) 사업의 이해도

-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방법에 대한 이해 정도는 ‘잘 이해’ 90.0%, ‘보통’ 10.0%로 나타났다. 즉 ‘이해하고 있음’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는데 100점 환산 평균점수로는 86.3점이었다.



2) 사업의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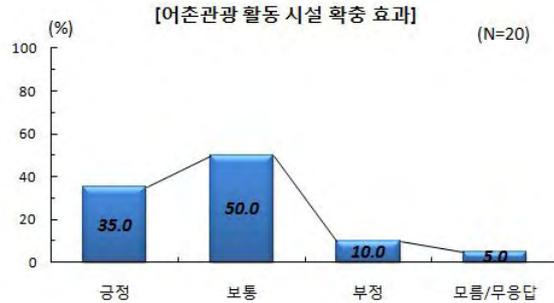
(1) 사업의 목적성

① 관광기반시설 확충효과

- 어촌관광 활동시설 확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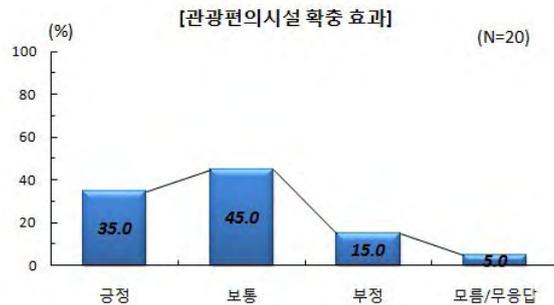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관광기반시설(낚시, 체험, 해양레저 등) 확충에 대한 사항 중 어촌관광 활동 시설의 확충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50.0%이었으며, ‘그렇다’는 응답이 35.0%,

‘아니다’는 응답이 10.0%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59.2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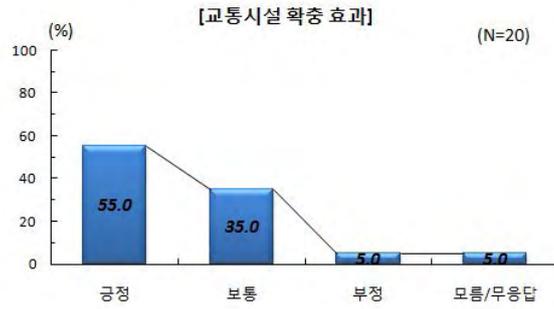
- 관광편의시설 확충 효과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관광편의시설(숙박, 식사, 휴게실 등) 확충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다’는 응답이 45.0%인 가운데, ‘그렇다’는 응답이 35.0%, ‘아니다’는 응답은 15.0%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59.2점으로 나타났다.



- 교통시설 확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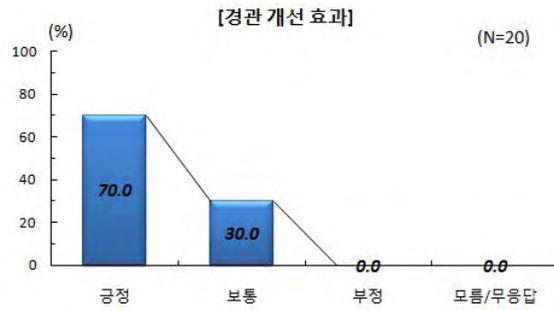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교통시설(도로, 주차장 등) 확충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55.0%, ‘아니다’는 응답은 5.0%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69.7점이었다.



② 정주환경 개선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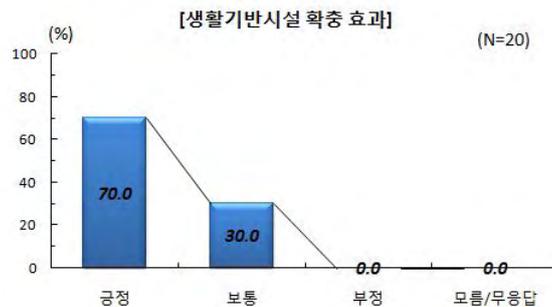
- 경관 개선 효과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정주환경 및 수산업기반시설 개선에 대한 사항 중 경관 개선 효과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70.0%, ‘아니다’는 응답은 0.0%로 ‘그렇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환산 평균점수는 76.3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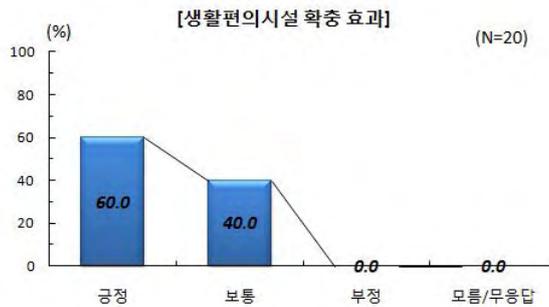
- 생활기반시설 확충 효과

- 생활기반시설(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에 대한 확충 효과로는 ‘그렇다’는 응답이 70.0%, ‘아니다’는 응답은 0.0%로 ‘그렇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환산 평균점수는 78.8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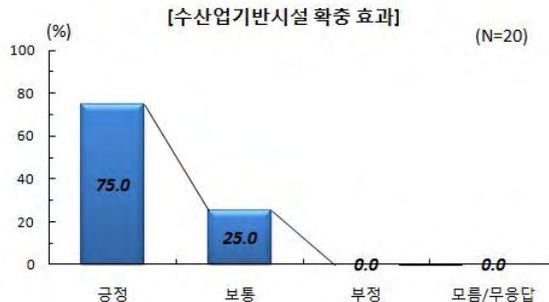
- 생활편의시설 확충 효과

- 생활편의시설(도소매점, 문화복지시설 등) 확충 효과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60.0%로 ‘아니다’는 응답은 0.0%로 그쳤는데, 환산 평균점수는 77.5점이었다.



③ 수산업기반시설 개선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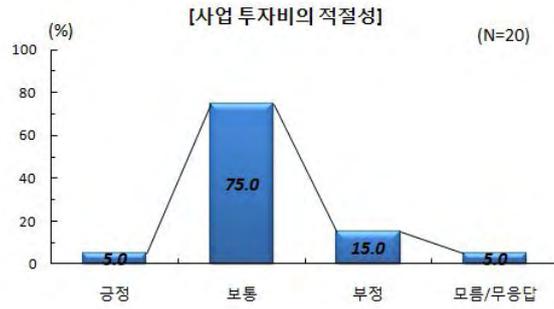
- 수산업기반시설(선착장, 물양장, 인양기 등) 개선 효과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75.0%인 반면에 전혀 ‘아니다’는 응답은 없었다. 환산 평균점수는 81.3점이었다.



3) 사업의 유효도

(1) 예산의 가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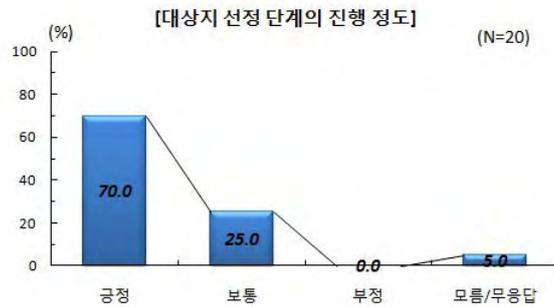
- 투자비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적당하다’는 응답이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부족하다’는 응답은 15.0%, ‘많다’는 응답은 5.0%로 ‘적당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에 대한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46.1점이었다.



(2) 사업추진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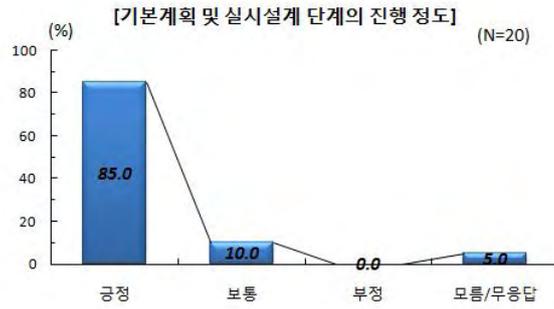
① 대상지 선정단계의 진행 정도

- 어촌종합개발사업 진행상황 중 대상지 선정 단계의 진행이 잘 진행되는지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70.0%, ‘아니다’는 응답은 0.0%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78.9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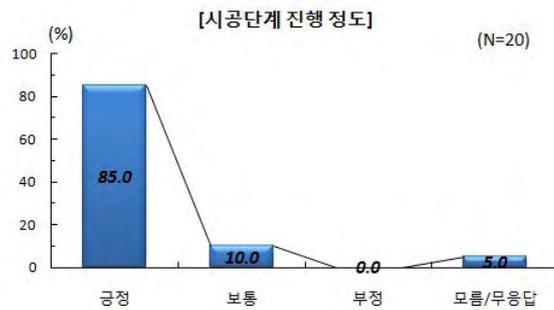
②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의 진행 정도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의 진행이 잘 진행되는지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85.0%, ‘아니다’는 응답은 0.0%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86.8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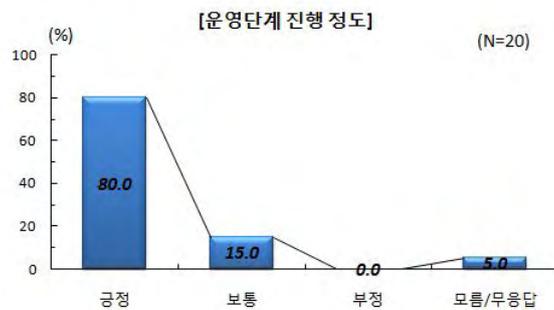
③ 시공단계의 진행 정도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공단계의 진행이 잘 진행되는지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85.0%, ‘아니다’는 응답은 0.0%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환산 평균점수는 90.8점이었다.



④ 운영단계의 진행 정도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의 진행이 잘 진행되는지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80.0%, ‘아니다’는 응답은 0.0%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환산 평균점수는 82.9점이었다.



4)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제언 및 의견사항

-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진행단계별 의견사항을 살펴보면, 대상지 선정단계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통일이 안되거나 주민요구와 기본시설비용의 부족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조사 용역팀과의 의사소통 문제와 사업변경에 따른 애로점 등이 있었고, 시공단계에서는 공유 수면매립 단계의 허가부분, 인허가 문제 등이 있었으며, 운영단계에서는 운영주체의 인식부족 및 운영비 부족 등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표 IV-6> 어촌종합개발사업 진행단계별 의견사항(공무원)

단계별	의견사항
대상지 선정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의 의견통일이 안되어 어렵다 · 주민요구와 기본시설비용이 부족하다 · 각 어촌계마다 주장하는 내용이 상이해서 조율이 어려웠다 · 기본계획 수정 시 받은 권역별로 해야 하는데 바뀐 권역으로 세부사업계획을 세울시 중앙부처 의견조율 어려움 · 주민들의 지역 편의주의적 관점이 있다 · 주민간 이해관계에 대한 설득 · 권역이 늘어나서 권역당 사업비가 분산되는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용역팀과의 의사소통이 안되어 어렵다 · 개인 소득시설분야 사업이 안 맞아 변경할 때 승인이 잘 안 되어 기간이 오래 소요 된다 · 각 어촌계마다 주장하는 내용이 상이해서 조율이 어려웠다 ·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과의 의견수렴도출이 어려웠다 · 주민 간 이해관계에 대한 설득
시공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 수면매립단계인 허가부분의 절차가 복잡하다 · 건축물 주위의 조망권을 가려서 지역민과의 충돌이 있었다. · 인허가 문제가 있다
운영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주체가 지역어업인인데 실질적인 인식이 부족하다 · 수익사업을 수행 시 어촌계 판로개척이 어렵다 · 건물(어업인 복지회관 및 공동작업장) 관리운영 시 운영비가 부족하다

다.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모니터링

- 본 프로그램 모니터링 조사는 전국 어촌지역에 실시되었던 다양한 개발사업에 대해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후 현실을 반영한 개선된 어촌지역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삼기 위함이다.
- 한편 리커드 5점 척도로 의견을 묻는 경우에 있어서는 100점 환산 점수를 통하여 어촌개발종합사업에 대한 의견 분포와 함께 강도를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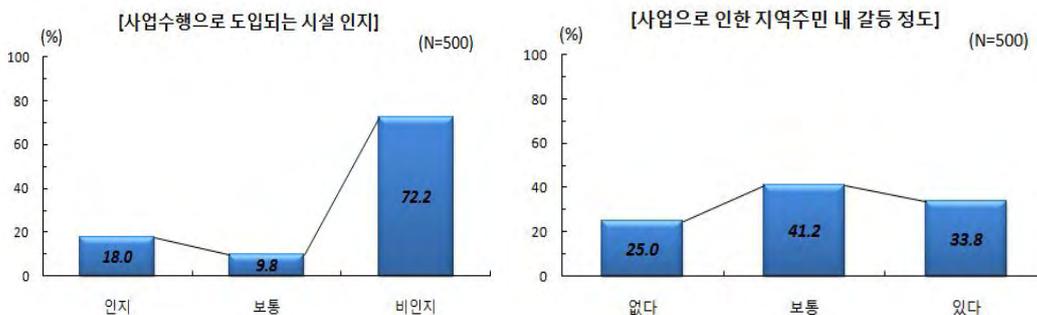
1) 사업의 인지도

(1) 사업의 인지도

-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도입되는 시설에 대한 인지도를 질문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18.0%, ‘모른다’는 응답이 72.2%로 ‘모른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23.8점이었다.

(2) 사업의 투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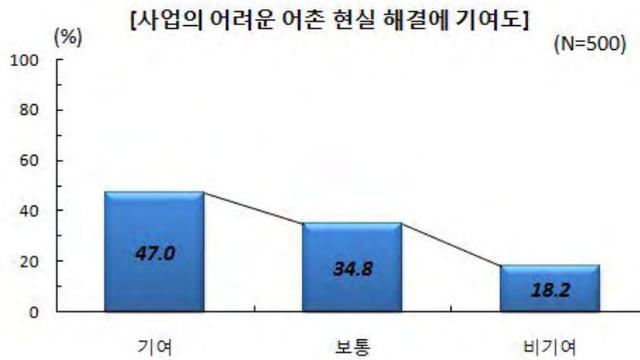
- 사업으로 인한 지역 주민 내 갈등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있다’는 응답이 25.0%, ‘없다’는 응답은 33.8%로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낮을수록 유리한 환산 평균점수(전혀 없다=0점)는 44.4점이었다.



2) 사업의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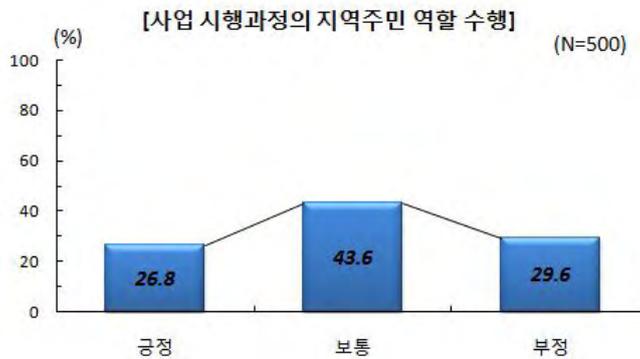
(1) 사업의 목적성

-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어촌의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 결과, ‘기여한다’는 응답이 47.0%, ‘기여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18.2%로 ‘기여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환산 평균점수는 60.4점이었다.



(2) 사업의 연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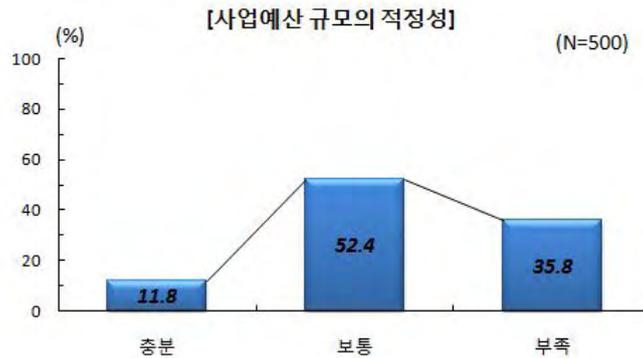
- 사업시행에 있어 지역주민의 역할 수행에 대한 질문 결과,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26.8%,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9.6%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오차 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50.3점으로 나타났다.



3) 사업의 유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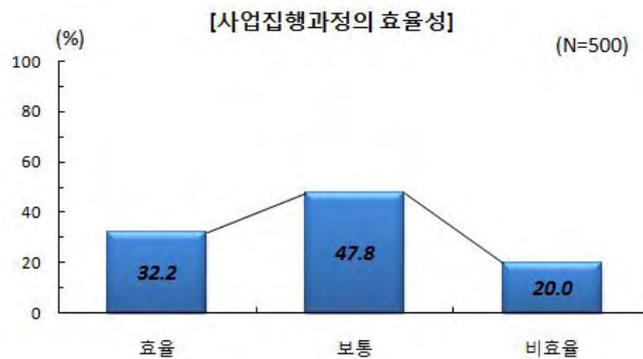
(1) 예산의 가용성

- 예산규모(권역별 30~50억)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충분하다’는 응답이 11.8%, ‘부족하다’는 응답은 35.8%로 ‘보통이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40.9점이었다.



(2) 집행의 효율성

- 사업 선정 및 집행 과정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보통이다’가 47.8%인 가운데, ‘효율적이다’는 32.2%, ‘비효율적이다’는 20.0%로 ‘효율적이다’는 응답이 근소하게 높게 나타는데, 환산 평균점수는 54.3점이었다.



4) 지역주민의 의견사항

-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사항을 정리하면, 예산지원 부분에서 분배 문제와 예산부족 등을 제시하였으며, 기본시설 부분에서는 지역에 맞는 다양한 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기타의견으로는 조속한 시공, 관광 및 홍보 요청과 사업진행시 지역주민 의견을 잘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표 IV-7> 어촌종합개발사업 의견사항(지역주민)

구분	주요 개선 사항 의견
예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고루 분배되어야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친다. •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사업비를 증액했으면 좋겠다. • 사업으로 인한 개선의 효과가 조금 미흡하다. 가시적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 자금충분지원바람 • 어촌 복지에 좀 더 협조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예산을 좀 더 늘려 주었으면 좋겠다.
기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사업을 했으면 • 마무리를 잘해주고 구름다리를 놓아주면 관광객이나 낚시꾼이 많이 올 것 같다 • 방파제 시설을 다시 건설해야 한다. • 굴 양식 등을 할 수 있게 해서 어민들 소득 증가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 • 대대적으로 개발사업해서 소득향상 했으면 • 도로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 선착장 해안도로를 늘려 달라 • 선착장의 확장 개선이 필요하다. • 자연을보존하는방향에서자연을위한개발을했은바람
공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을 빨리 완공해야 한다. • 개통이 빨리되어야 한다.
관광·홍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주민이 잘살았으면 한다. • 어촌개발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라. • 홍보와 사업활성화 필요 • 해양과 생태계사업에 관심을 가질것, 인재양성
의견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민의견이 반영이 적다 • 특정지역민의 의견수렴 하에 진행해야하는데 행정적으로 진행하려 한다 • 지역주민이 개방적이면 좋겠다. • 주민들이 서로 양보해서 개발을 잘 해야 된다.

1.3 모니터링 조사 결과

가. 성과 모니터링 결과

-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계량적 분석결과, 어가소득 증대효과는 조사결과 어촌종합개발사업 대상지의 사업 완공 후 호당 평균 소득의 연평균증가율은 4.7%로 나타나 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8> 사업대상지역 연평균 어가소득 증대효과

구분	호당 평균소득(천원)			
	2000년	2003년	2008년	2009년
평균(μ)	19,697	26,819	34,639	36,254
표준편차(σ)	16,047	14,953	25,113	6,653
연평균 증가율	-	10.8%	5.3%	4.7%

※ 2009년 : 통계청(어가소득), 수협중앙회 어촌계분류평정(2009.12.31) 기준

-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사업 대상지의 어업인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업 완공 전 연도의 어업인구와 사업 완공 5년 후의 어업인구를 비교한 결과, 사업 완공 전 어업인구는 연평균 3.2% 감소하였지만, 사업 완공 후 어업인구는 연평균 4.1% 감소하여 어업인구감소추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IV-9> 어업인구 증가효과

구분	2000년도		2003년도		2008년도	
	어가구	어업인구	어가구	어업인구	어가구	어업인구
평균(μ)	78	164	75	149	71	121
표준편차(σ)	27	110	25	62	23	39
연평균 증가율	-	-	-1.1%	-3.2%	-1.11%	-4.10%

<표 IV-10> 어업인구 증가효과

구 분	어촌소득증가	어가구	어업인구	어업생산성
기초통계자료	연평균증가율 4.7%	연평균증가율 -1.11%	연평균증가율 -4.10%	-
설문결과	증가율 기대치 : 44.9%	-	-	47.4점

- 어촌종합개발 사업의 비계량적 지표는 아래 표와 같이 5점 척도로 평가하여 점수화하였으며, 50점을 상회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점수는 사업 실시 이후 성과를 측정하는 사후적 모니터링 결과 분석 시 비교치로 활용할 수 있다.

<표 IV-11>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비계량적 성과

구 분	방문객 증가	자연재해 방지	사회·문화·환경
환산점수	43.5점	63.3점	68.2점

나.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경우 높지만, 지역주민의 경우 주민 간 갈등과 도입시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 사업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사업의 목적은 대체로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이라 평가하고 있었지만, 지역 주민의 참여도를 나타내는 연계성이 낮게 나타났다. 즉 본 사업을 통해 어가소득 증대와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대상지의 지속적이고 내발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고, 지역 특색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어촌·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용역

- 사업의 유효도를 살펴보면, 예산 규모는 지역주민과 공무원 모두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 지역 주민은 낮게 평가하였다. 한편 사업추진의 효율성은 모든 단계에 있어서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2>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 지역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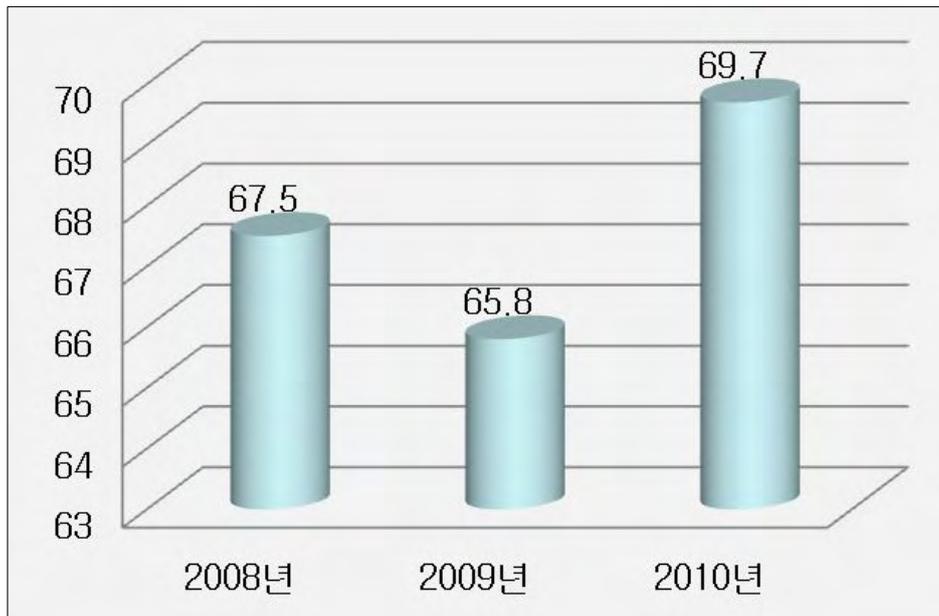
구분	항목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사업의 인지도	사업의 인지도	100.0	100.0	100.0	
	사업의 이해도	52.8	42.9	23.8	
	사업의 투명도	38.8	43.2	44.4	
	소계	63.9	62.0	56.1	
사업의 적합도	사업의 목적성	61.3	56.3	60.4	
	사업의 연계성	53.9	50.9	50.3	
	소계	57.6	53.6	55.3	
사업의 유효도	예산의 가용성	37.2	44.1	40.9	
	집행의 효율성	56.0	53.4	54.3	
	소계	46.6	48.8	47.6	
평균		56.0	54.8	53.0	

<표 IV-13>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 공무원

구분	항목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사업의 인지도	사업의 이해도		89.7	93.3	92.5		
	소계		89.7	93.3	92.5		
사업의 적합도	사업의 목적성	관광기반 시설확충	어촌관광활동 시설 확충	63.2	55.4	59.2	
			관광편의시설 확충	58.8	48.2	59.2	
			교통시설 확충	63.2	58.9	69.7	
		정주환경 개선	경관 개선	73.3	64.3	76.3	
			생활기반시설 확충	68.8	73.2	78.8	
			생활편의시설 확충	70.6	69.7	77.5	
	수산업 기반시설 개선		80.1	76.8	81.3		
	소계		68.3	63.8	71.7		
사업의 유효도	예산의 가용성		41.2	34.6	46.1		
	사업추진의 효율성	대상지 선정 단계	73.4	82.7	79.0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	75.0	84.6	86.8		
		시공단계	76.6	82.7	90.8		
		운영단계	71.2	78.8	82.9		
소계		67.5	72.7	77.1			
평균		75.2	76.6	80.4			

1.4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이용자만족도 조사·분석

-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평균 만족도는 67.6점으로 나타났다으며, 공무원들의 평균 만족도는 71.7점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전체 만족도는 69.7점으로 본 사업에 대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특히,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한 수산업기반시설 개선측면에서 공무원들은 81.3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연도별 이용자 만족도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0년도 만족도 결과가 69.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 대상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이용자만족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IV-29> 연도별 어촌종합개발사업 이용자 만족도 결과

<표 IV-14> 어촌종합개발사업 만족도 결과

대 상	이용자만족도 항목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지역 주민	사회·문화 ·환경	삶의 질 향상	67.2	70.9	68.2	
		지역 이미지 향상	69.1	70.5	70.5	
		지역 주민 자긍심 향상	68.9	71.1	68.9	
		전통문화 발굴·보존	59.1	61.9	64.5	
		마을 생활환경 개선	70.8	71.1	70.5	
	자연재해 방지		64.6	61.3	63.3	
지역주민 평균 이용자만족도			66.6	67.8	67.6	
공 무 원	관광기반 시설확충 효과	어촌관광활동시설 확충	63.2	55.4	59.2	
		관광편의시설 확충	58.8	48.2	59.2	
		교통시설 확충	63.2	58.9	69.7	
	정주환경 개선효과	경관 개선 효과	73.3	64.3	76.3	
		생활기반시설 확충	68.8	73.2	78.8	
		생활편의시설 확충	70.6	69.6	77.5	
	수산업기반시설 개선 효과		80.1	76.8	81.3	
공무원 평균 이용자만족도			68.3	63.8	71.7	
전체 이용자만족도			67.5	65.8	69.7	

제2장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2.1 모니터링 조사 방법

가. 모니터링 목적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모니터링은 성과모니터링과 프로그램모니터링의 2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며 모니터링 방법으로는 통계자료의 분석과 더불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모니터링 대상은 2007년 11개 마을, 2008년 8개 마을, 2009년 7개 마을 등 총 2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 모니터링 대상인 26개 마을은 대부분 2009년에 시설사업을 준공하였거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모니터링을 위한 계량적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 이에 따라 조사대상인 26개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대한 성과모니터링은 각 해당 어촌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예상되는 성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한다.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프로그램모니터링은 26개 대상지역의 어업인과 더불어 사업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의 추진과정, 사업 인지도,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을 분석하도록 한다.

나. 모니터링 대상 및 표본의 선택

(1) 모니터링 대상

- 본 조사는 전국 어촌지역에 실시되었던 다양한 개발사업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후 현실을 반영한 개선된 어촌지역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 본 조사는 어촌개발사업 중 2007년~2009년도에 추진된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지역은 2007년 11개 마을, 2008년 8개 마을, 2009년 7개 마을 등 총 26개 마을을 대상으로 만

어촌·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용역

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각 마을의 응답 대상은 지역주민의 경우 어촌계장 또는 사무장 등을 포함하여 선정하였으며, 이러한 선정은 설문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체계적인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표 IV-15> 2007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만족도 조사 대상

사업연도	시/도	시·군·구	마을명	어촌계명	비고
2007 (11개)	강원	강릉	강동면 정동진 정동마을	정동1리	
	전남	여수	남면 안도리 안도마을	안도	
		고흥	두원면 풍류리 풍류마을	풍류	
		보성	회천면 동율리 우암마을	동율	
		강진	대구면 사당리511 백사마을	백사	
		진도	진도읍 수유리 청용마을	청용	
		신안	암태면 추포리 추포마을	추포	
	경남	통영	산양읍 삼덕리 궁항마을	궁항	
		사천	대포동 대포마을	대포	
		거제	남부면 탑포리 쌍근마을	쌍근	
		남해	서면 노구리 유포마을	유포	

<표 IV-16> 2008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만족도 조사 대상

사업연도	시/도	시·군·구	마을명	어촌계명	비고
2008년 (8개)	인천	중구	무의동 포내마을	포내	
	경기	화성	서신면 백미리 329-1 백미리	백미리	
	강원	고성	현내면 초도리 초도마을	초도	
	전남	여수	화정면 적금마을	적금	
		고흥	대서면 안남리 안남마을	안남	
		신안	자은면둔장마을	둔장	
	경남	거제	장목면 시방리 이수도마을	이수도	
		남해	미조면 향도마을	향도	

<표 IV-17> 2009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만족도 조사 대상

사업연도	시/도	시·군·구	마을명	어촌계명	비고
2009년 (7개)	강원	속초	속초시 대포동 외옹치마을	외옹치	
	충남	태안	태안군 근흥면 용신리 용신마을	용신	
	전남	무안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목서마을	목서	
		진도	진도군 의신면 금감리 접도마을	접도	
	제주	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마을	하도	
		구엄	제주시 애월읍 구엄마을	구엄	
		사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마을	사계	

(2) 모니터링 표본의 선택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모니터링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대상은 각 체험마을사업을 집행하는 지역공무원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 지역공무원 설문조사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대상지(26개 어촌체험마을)의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
 - 어업인 설문조사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대상지(26개 지역)의 어촌계장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각 어촌계 당 5개 이상의 표본을 선정하여 설문조사 실시
- 표본추출은 사업별 유의표집법을 사용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주로 전화설문조사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공무원의 경우 팩스를 통한 지면설문방법도 병행하였다.

<표 IV-18>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조사 개요

구 분	공무원	지역주민	비 고
모집단	어촌개발사업 담당 공무원	대상 지역 주민	
표본수	17	260	
표본추출	사업별 유의표집	사업별 유의표집	
조사방법	전화 및 팩스조사	전화조사	
조사일자	2010.12.08~22(15일간)	2010.12.08~22(15일간)	

다. 모니터링 내용

1) 성과 모니터링 조사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성과 모니터링조사는 어촌체험마을조성에 따른 각 지역별 방문객 숫자와 체험시설/프로그램 이용자, 체험상품의 운영에 따른 체험소득, 기타 간접소득 등의 계량적 지표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참여, 지역이미지 개선, 지역의 자긍심 개선 등 비계량적 지표를 조사하도록 한다.
- 한편, 모니터링의 과정에서 설명한 것처럼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는 26개 어촌체험마을 모두 현재까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적 지표를 생산 할 수 없으므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를 분석하도록 한다.

<표 IV-19>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성과 모니터링 지표

구분	지표	응답척도
계량적 지표	방문객	증가율
	체험소득	증가율
	간접소득	증가율
비계량적 지표	삶의 질 개선	5단계
	지역 이미지 개선	5단계
	주민 자긍심	5단계
	전통문화 발굴·보존	5단계
	생활환경 개선	5단계

2) 프로그램 모니터링 조사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프로그램 모니터링 조사는 본 사업의 계획과 집행이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역공무원과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대상지역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하도록 한다.
- 프로그램 모니터링의 지표는 본 사업에 대한 인식도와 더불어 사업의

적합도, 그리고 사업의 유효도 등으로 나눈다.

<표 IV-20>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프로그램 모니터링 지표

구분	지표	응답척도	조사대상
사업의 인식도	사업의 인지도	2점	지역주민
	사업의 이해도	5점	지역주민/공무원
	사업의 투명도	5점	지역주민
사업의 적합도	사업의 목적성	5점	지역주민/공무원
	사업의 적절성	5점	지역주민
	사업의 연계성	5점	지역주민
사업의 유효도	예산의 가용성	5점	지역주민/공무원
	집행의 효율성	5점	지역주민
	사업추진 효율성	5점	공무원
	사업운영 효율성	2점	공무원

- 사업의 인식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사업의 인지도, 사업의 이해도 사업의 투명도 등으로 구성된다.
 - 사업의 인지도(2점 척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체험마을사업의 수행여부를 인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 사업의 이해도(5점 척도): 지역주민에게는 도입시설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하고, 공무원에게는 사업내용의 인지정도와 추진방법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 사업의 투명도(5점 척도): 체험마을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간의 갈등 발생여부를 조사한다.

- 사업의 적합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사업의 목적 부합성, 사업의 적절성, 사업의 연계성 등으로 구성된다.
 - 사업의 목적 부합성(5점 척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어촌의 제반문제를(소득, 고령화 등)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조사한다. 공무원에게는 관광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정주환경의 개선정도를 조사한다.

- 사업의 적절성(5점 척도):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이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 사업의 연계성(5점 척도): 지역주민이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 o 사업의 유효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예산의 가용성, 집행의 효율성 등으로 구성된다.
 - 예산의 가용성(5점 척도): 예산규모의 적정 정도를 지역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 집행의 효율성(5점 척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의 선정과 집행과정의 효율정도를 조사한다.
 - 사업추진의 효율성(5점 척도) : 사업추진 과정을 4단계(대상지 선정단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 시공단계,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단계별 효율적 추진 정도를 조사한다.
 - 사업운영의 효율성(2점 척도)은 :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리운영주체 지정 여부와 관리조직 및 담당자 지정 여부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2.2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모니터링 조사

가. 성과 모니터링

1) 조사개요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도시와 어촌의 상호교류를 토대로 하여 어촌 문화를 체험하고 어업인의 실질적인 참여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기존 관광지원 관련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성과모니터링은 26개 모니터링 대상지 지역주민이 본 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지를 계량적 지표와 비계량적 지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IV-21> 성과 모니터링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모 집 단	▪ 사업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지역주민
유효표본	▪ 260명
표본추출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대상지(26개 마을)별 유의 표집
조사방법	▪ 전화 설문조사
조 사 일	▪ 2010.12.08~22(15일간)
조사내용	▪ 계량적 지표 : 방문객, 체험소득, 간접소득 ▪ 비계량적 지표 : 삶의 질 개선, 이미지 개선, 주민 자긍심, 전통문화 발굴·보전, 생활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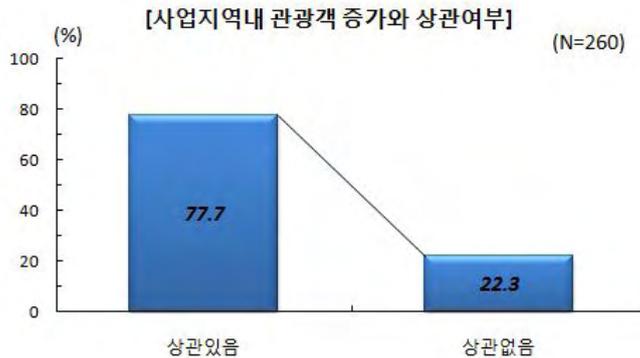
- 한편, 26개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모니터링 대상지역은 현재 시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지역소득이나 방문객 숫자 등의 실적치는 분석할 수 없으므로 본 사업을 통한 기대치를 측정하도록 한다.
- 비계량적 성과에 대해서는 본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삶의 질 개선, 이미지 개선, 주민 자긍심, 전통문화 발굴·보전, 생활환경 개선 등의 기대효과를 측정하도록 한다.

2) 성과 모니터링 결과분석

(1) 계량적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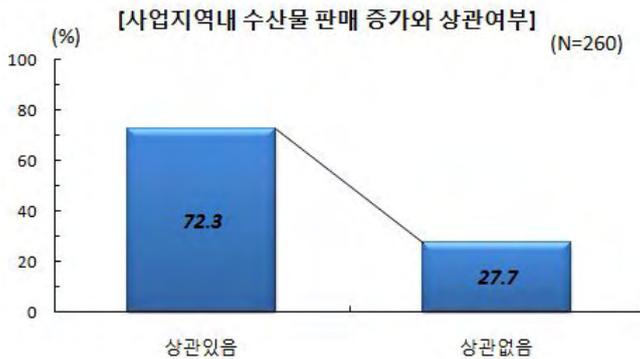
① 방문객

- 본 사업을 통한 관광객 증가효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응답자의 77.7%가 관광객이 증가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46.0%정도 방문객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② 체험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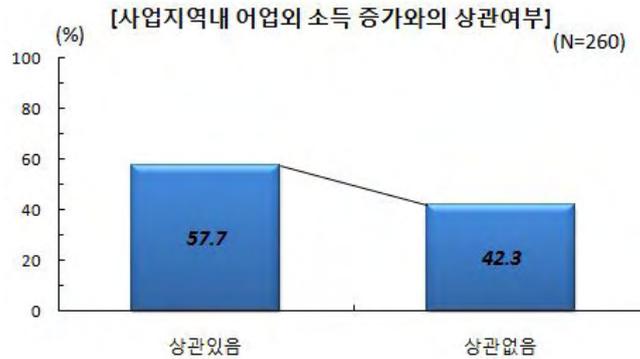
- 본 사업을 통한 지역 내 수산물판매 증가효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응답자의 72.3%가 증가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43.2%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③ 간접소득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1차적 목표는 어가소득 증대에 있다. 본 사업과 어업소득 증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57.7%가 어가소득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 그리고 어가소득의 증가와 상관이 있다고 응답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소득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어업 외 소득은 평균 41.7%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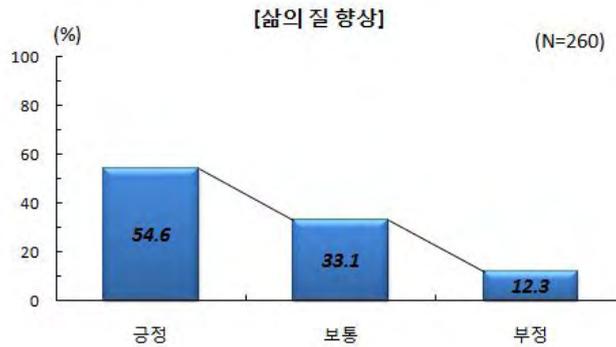


(2) 비계량적 지표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어업인의 소득증대 이외에도 정주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와 어촌의 교류활성화를 통하여 어촌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한다.
- 한편, 어촌사회의 정주환경개선, 삶의 질 향상, 지역이미지 개선 등의 사회·문화적 효과는 계량적으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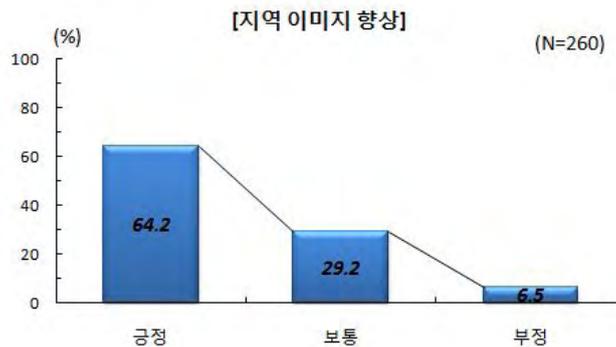
① 삶의 질 개선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통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54.6%를 차지하였으며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면 63.7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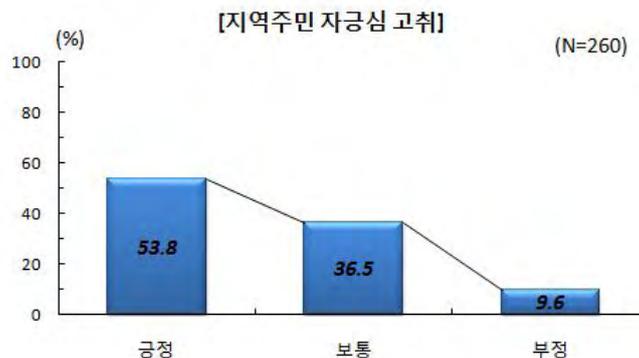
② 지역 이미지 개선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통한 지역이미지 개선효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응답자의 64.2%가 지역의 이미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69.6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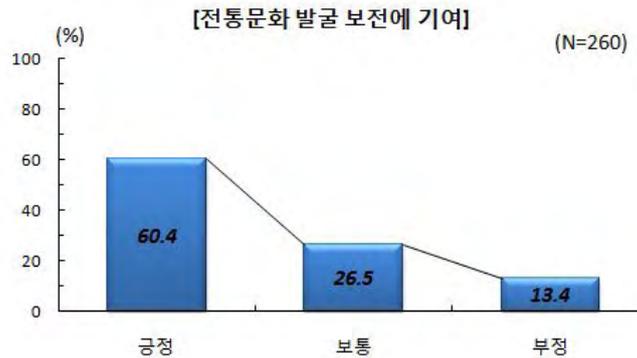
③ 주민 자긍심

- 그리고 지역주민의 자긍심 향상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8%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65.1점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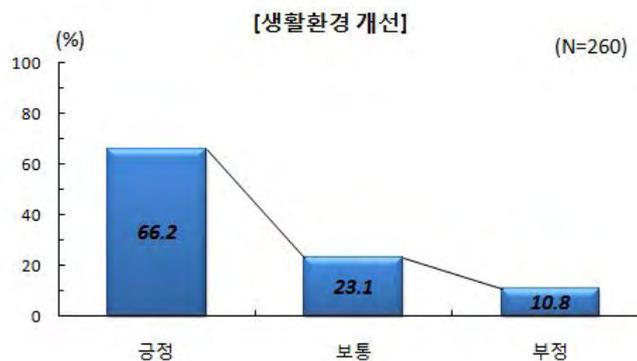
④ 전통문화 발굴·보존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이 전통문화 발굴 및 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60.4%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66.3점으로 나타났다.



⑤ 생활환경 개선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통한 지역의 생활환경개선효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66.2%가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여 생활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69.5점으로 나타났다.



나. 프로그램 모니터링

1) 조사개요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모니터링은 본 사업이 추진 목적과 진행과정 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적합도, 유효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 프로그램 모니터링조사는 26개 어촌체험마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더불어 각 지역별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별 조사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V-22> 프로그램 모니터링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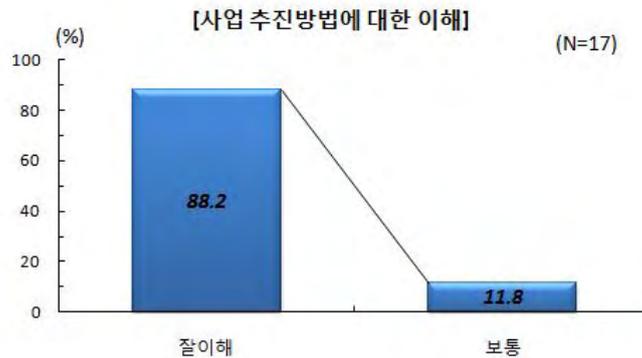
구 분	공무원	지역주민
모 집 단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담당 공무원	▪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지역주민
유효표본	▪ 17명	▪ 260명
표본추출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대상지 담당 공무원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대상지(26개 마을)별 유의 표집
조사방법	▪ 전화 설문조사	▪ 전화 설문조사
조 사 일	▪ 2010.12.08~22(15일간)	▪ 2010.12.08~22(15일간)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인지도 : 이해도 ▪ 사업의 적합도 : 목적성 ▪ 사업의 유효도 : 예산의 가용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사업운영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인지도 : 인지도, 이해도, 투명도 ▪ 사업의 적합도 : 목적성, 적절성, 연계성 ▪ 사업의 유효도 : 예산의 가용성, 집행의 효율성,

2) 공무원 대상

(1)사업의 인지도

① 사업의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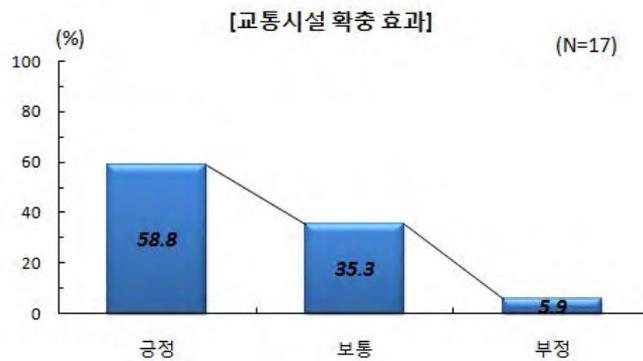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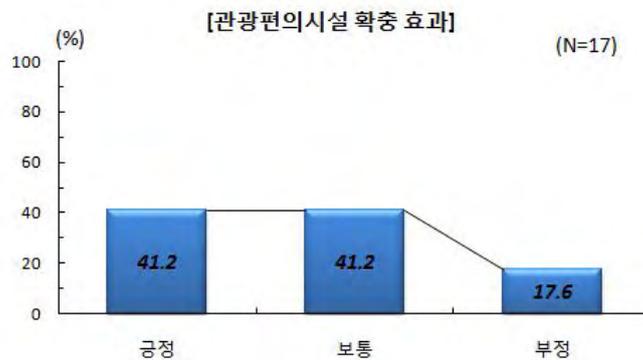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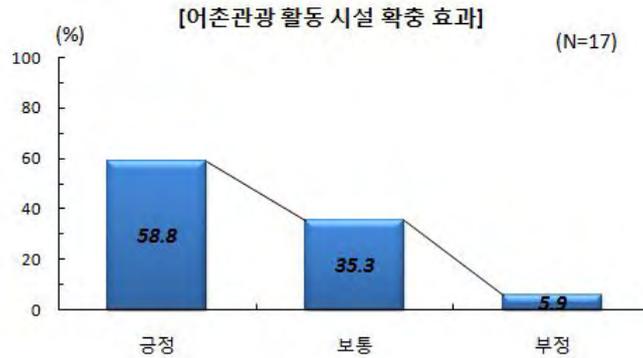
-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공무원의 도입시설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88.2%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에 대한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89.7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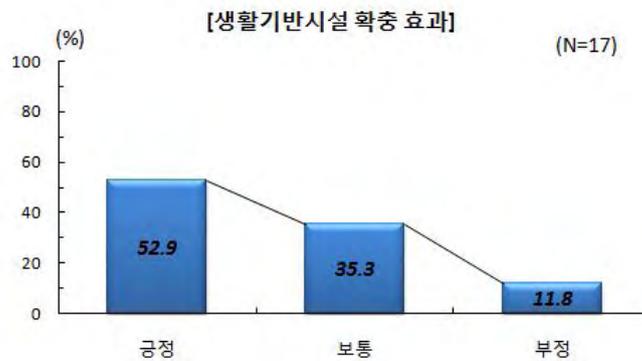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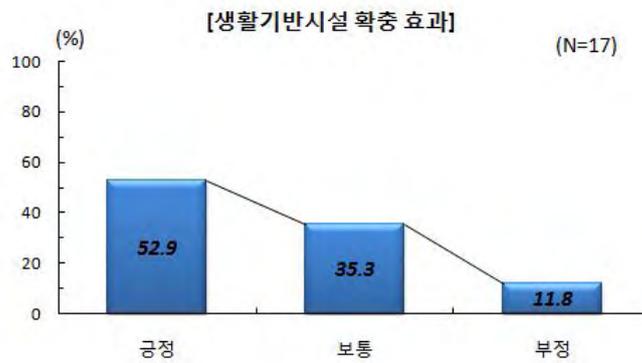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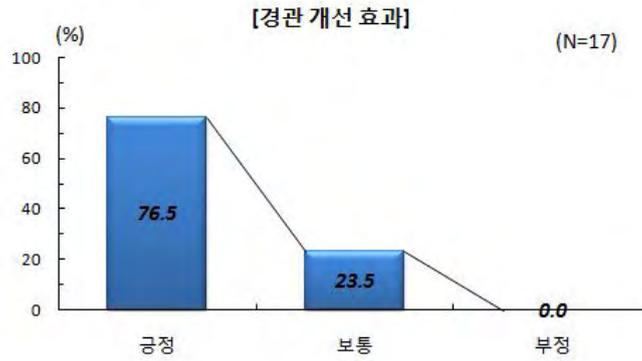
(2) 사업의 적합도

① 사업의 목적성

- 사업의 목적성은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이 본래의 추진목적(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진행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지역공무원에게는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효과, 관광기반시설 확충 효과, 정주환경 개선 효과 등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 사업의 목적성 중 관광기반시설 확충 효과는 어촌관광시설(체험, 해양레저, 낚시 등), 관광편의시설(숙박, 식사, 휴게시설 등), 교통시설(도로, 주차장 등)의 도입효과에 대하여 지역공무원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 분석결과, 어촌관광활동시설에 대해서는 58.8%(환산점수 73.5점), 관광편의시설에 대해서는 41.2%(환산점수 57.4점),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58.8%(환산점수 73.5점)가 확충효과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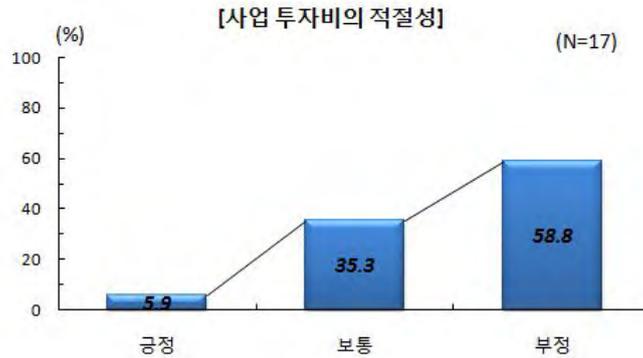
- 정주환경 개선 효과는 경관 개선, 생활기반시설(상·하수도 시설과 통신 및 전기), 생활편의시설(도소매점과 문화복지시설)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 정주환경 개선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경관개선효과에 대해서는 76.5%(환산점수 82.4점), 생활기반시설 확충효과에 대해서는 52.9%(환산점수 67.6점), 생활편의시설에 대해서는 35.3%(환산점수 57.4점)가 확충효과에 대하여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사업의 유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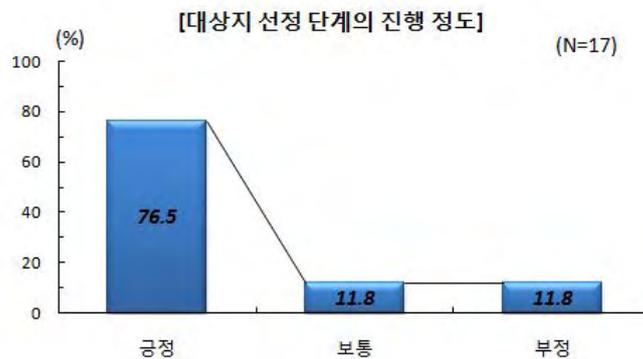
① 예산의 가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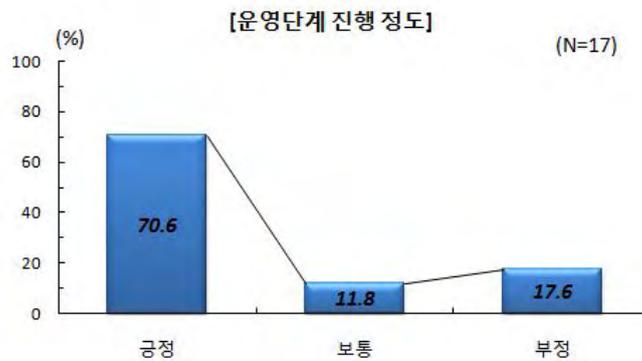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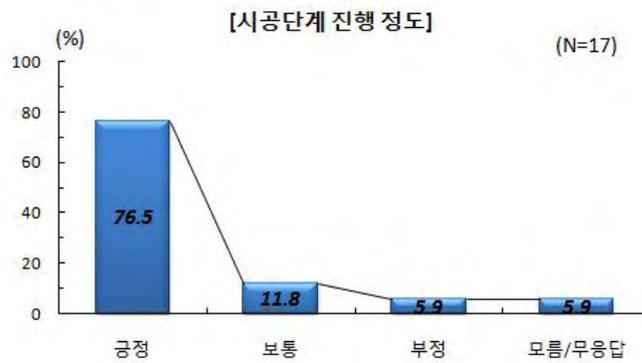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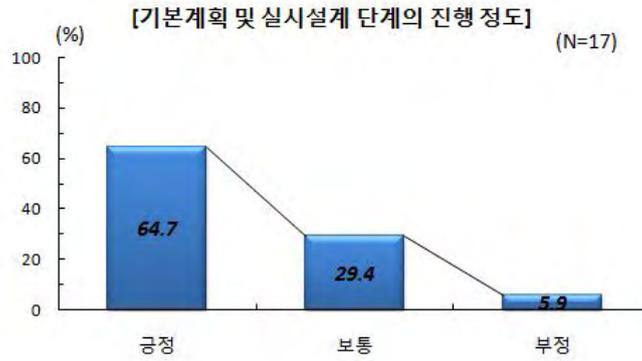
- 지역공무원은 예산규모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부정적 의견을 58.8%로 가장 높게 제시하였다(환산점수 35.3점). 조사결과, 사업예산규모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② 사업추진의 효율성

- 사업추진의 효율성이란 대상지 선정단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 시공단계, 운영단계 등 사업 추진 단계별로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집행하는 지역공무원에게 조사한 결과, 대상지 선정단계에서는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긍정적 의견이 76.5%로 나타났다(환산점수 76.5점).
- 기본계획 및 실시단계에서는 64.7%가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환산점수 73.5점), 시공단계와 운영단계에서는 각각 76.5%(환산 점수 79.7점), 70.6%(69.1점)가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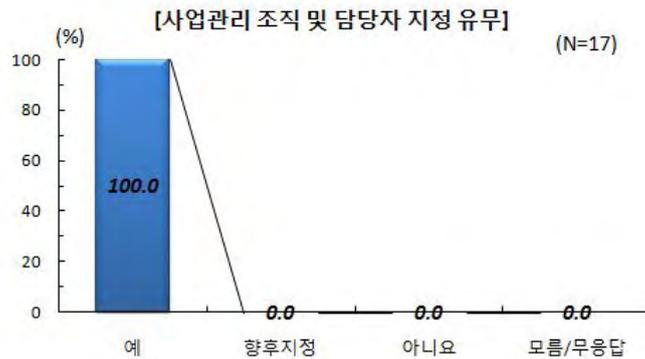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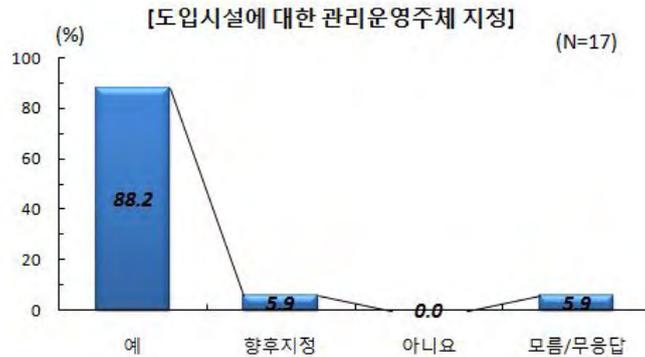


③ 사업운영의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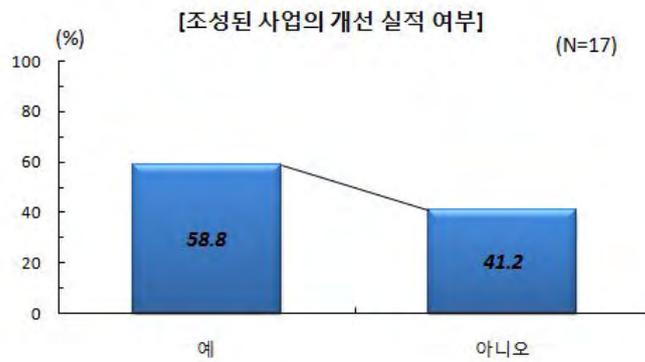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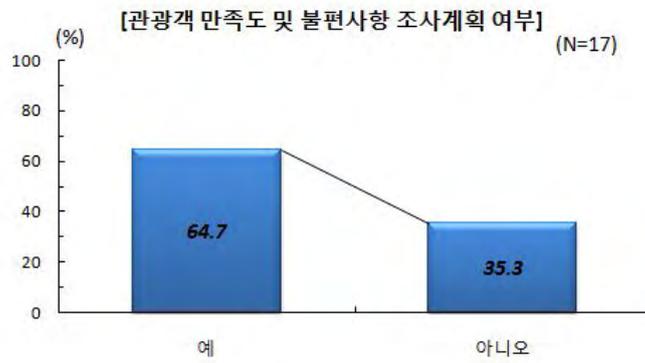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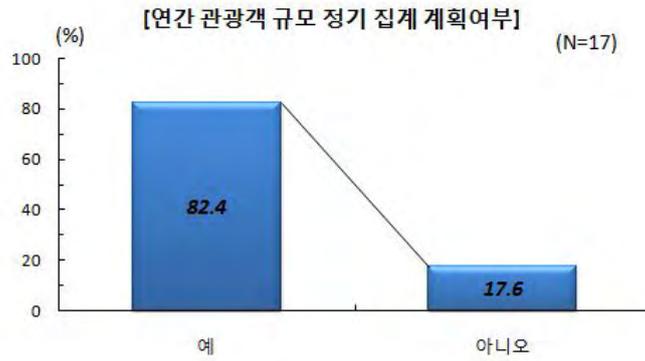
- 사업운영의 효율성은 사업운영의 효율성과 사업관리의 효율성으로 나누어 지역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사업운영의 효율성은 본 사업을 통하여 도입된 시설의 관리운영주체가 지정되어 있는지와 사업관리를 위한 조직 및 담당자가 지정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도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주체의 지정에 대

한 조사결과, 지정되었다는 의견이 88.2%로 나타났으며 향후 지정할 예정이라는 의견이 5.9%로 나타났다.

- 그리고,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관리를 위한 조직과 담당자에 있어서는 100%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의 관리 측면에서는 관광객 집계 계획과 관광객만족도 조사계획,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대한 실적 개선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조사결과, 관광객규모를 집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82.4%로 나타났으며, 관광객 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64.7%로 나타났다.
- 한편, 조성된 사업의 실적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8%가 ‘예’라고 응답하였으며 41.2%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긍정적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26개 어촌체험마을이 대부분 시설사업에 대한 진행이 완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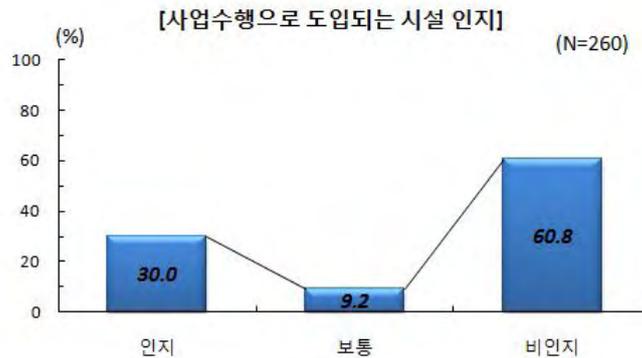


2) 지역주민 대상

(1)사업의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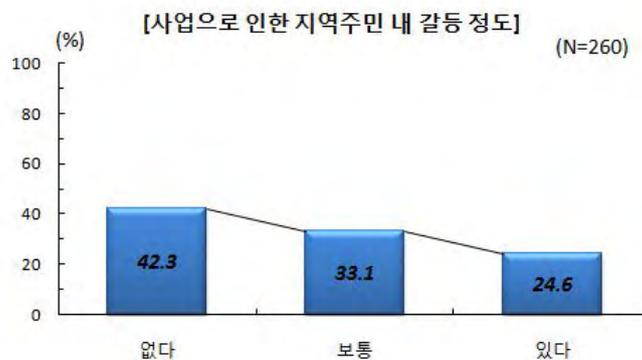
① 사업의 이해도

-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도입시설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30.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에 대한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34.4점이다.



② 사업의 투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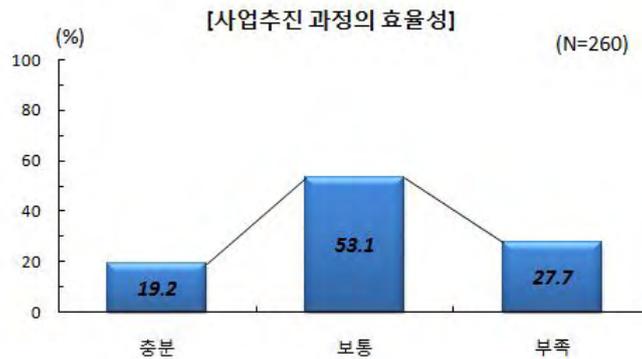
- 본 사업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경우 지역주민간의 마찰이나 갈등이 없게 되므로 사업의 투명도는 사업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 내 갈등 정도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조사결과, 갈등이 없다는 응답이 42.3%, 갈등이 있다는 응답이 24.6를 차지하여 본 사업을 통한 갈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면 39.9점을 차지하였다.



(2) 사업의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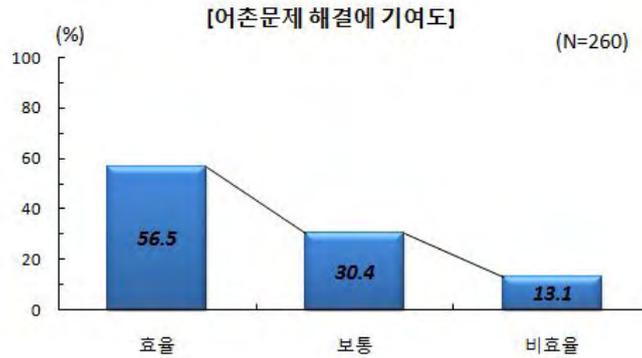
① 사업의 목적성

- 사업의 목적성은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이 본래의 추진목적은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진행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에게는 본 사업을 통하여 어촌의 소득문제, 고령화 등 제반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 사업의 목적성에 대한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9.2%는 본 사업이 지역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27.7%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한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57.4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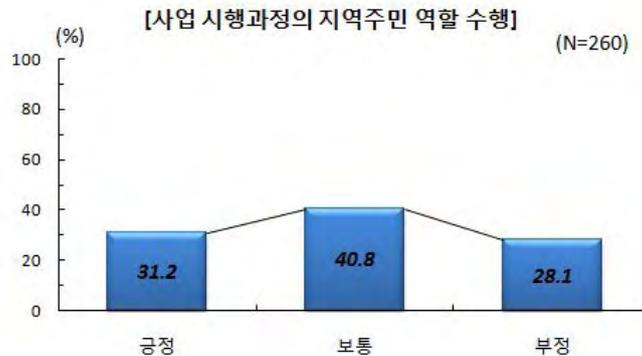
② 사업의 적절성

- 사업의 적절성은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이 지역의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조사결과,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5%가 현실여건을 반영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대한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63.3점으로 나타났다.



③ 사업의 연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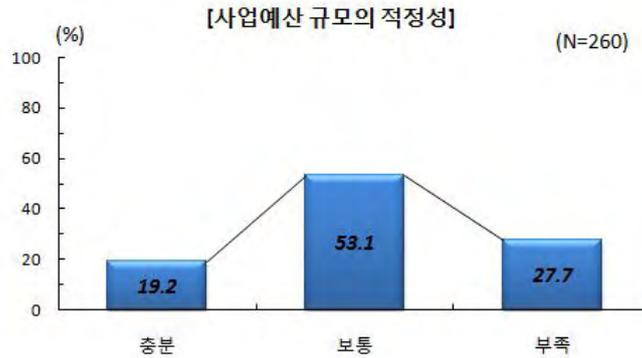
- 사업의 연계성은 지역주민이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추진과정에 충분히 참여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31.2%가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응답하였다.
- 반면, 보통이라는 의견이 40.8%,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28.1%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51.5점이다.



(3) 사업의 유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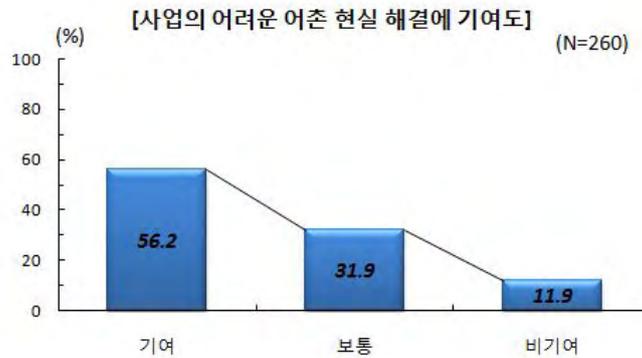
① 예산의 가용성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사업예산규모는 각 마을당 5억원으로 지역 주민은 이의 규모에 대하여 보통이라는 의견을(53.1%) 가장 많이 제시하였으며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면 47.0점이다.



② 집행의 효율성

- 사업에 대한 집행의 효율성이란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 분석결과 응답자의 56.2%가 효율적으로 집행된다고 응답하였으며 31.9%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한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64.6점으로 나타났다.



(4) 지역주민의 의견사항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사항으로는 예산의 충분한 지원, 주민의견 수렴, 사후관리 철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발, 홍보 철저 등의 의견들이 있었다.

<표 IV-23>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의견사항(지역주민)

의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까운 곳만 개발하지 말고 떨어진 곳도 개발지원 · 광범위하게 투자를 많이 해서 시설 등을 쓸모 있게 해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어야 한다. · 마을주민이 단합해서 향상시켰으면 좋겠다. · 사업이 체계적으로 갈 수 있게 리더를 잘하라. · 사후관리까지도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임 · 예산을 좀 더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 전문성을 갖고 개발을 하라. 실효성 있게 하고 조잡스럽지 않게 · 정작 필요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라. ·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해야 한다 ·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도로에 차들을 세워두는데 주차시설을 조금 확장하였으면 ·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개발하라 · 지원금이 국고 세금인 만큼 집행 시 공무원들 사업에 맞게 잘 처리해주고 사후관리도 함 · 형식적으로하지말고운동할경휴식공간많이만들어주었으면 · 홍보가 잘되어야한다 · 정부에서 한꺼번에 지원해야지 진행을 매년 조금씩 지원하면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

2.3 모니터링 조사 결과

가. 성과 모니터링 결과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우선, 26개 마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역주민들은 본 사업을 통하여 외부 방문객 증가와 함께 어촌의 소득이 증대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기대성과를 측정된 결과, 방문객 증가율의 기대치는 46.0%, 수산물 판매액은 43.2%, 어업 외 소득 증가율은 41.7%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24>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계량적 성과

구 분	방문객	어가소득	
		수산물 판매액	어업외소득
증가율 기대치	46.0%	43.2%	41.7%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통한 비계량적 성과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본 사업을 통한 사회문화적 효과는 5점 척도로 평가하여 점수화하였으며, 50점을 상회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환산점수는 사업 실시 이후 성과를 측정하는 사후적 모니터링 결과 분석시 비교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통한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사전적으로 평가한 결과, 생활환경개선은 69.5점, 삶의 질 개선은 63.7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민 자긍심 고취는 65.1점, 지역 이미지 개선은 69.6점, 전통문화 발굴 및 보전 효과는 66.3점으로 나타났다.
- 본 사업을 통한 비계량적 성과지표들을 종합해보면 지역주민들은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25>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비계량적 성과

구 분	삶의 질 개선		이미지 개선		전통문화 발굴·보존
	생활환경 개선	삶의 질 개선	주민 자긍심 고취	이미지 개선	
환산점수	69.5점	63.7점	65.1점	69.6점	66.3점

나.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를 지역주민과 공무원 설문조사결과에 따라 분리하여 종합해 보면 <표 5.4>, <표 5.5>와 같다.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지역주민(인지도 100%) 과 지역공무원(사업 이해도 90.4점)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주민의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의 투명도는 50점 미만으로 나타났다.
- 즉 지역주민들은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자체는 인지하고 있지만 이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참여활성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사업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지역주민 설문조사에서는 사업의 목적성에 대해서는 67.3점으로 긍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났지만 사업의 적절성과 사업의 연계성은 58.4점과 57.0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 즉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지역사회의 현실에 대한 해결여부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참여도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것으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더불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사업의 목적성에 대한 지역 공무원 조사결과에서는 관광기반시설의 확충과 정주환경의 개선에 모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의 유효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는 지역주민과 공무원 모두 5억 원이라는 현재의 사업예산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 그리고 사업집행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은 비교적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75점 이상으로 평가하여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집행에 대한 평가에서 지역주민의 평가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은 지역주민의 참여기회가 비교적 제한적인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업운영 및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관련된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리운영 주체의 지정율은 84.6%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관리 담당자의 지정율은 100%로 나타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체제는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사업관리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관리를 위한 관광객 집계 계획 여부는 92.3%, 관광객 만족도 조사 계획여부는 61.5%, 조성사업에 개선 실적률은 38.5%로 나타났다.

어촌·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용역

<표 IV-26>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 지역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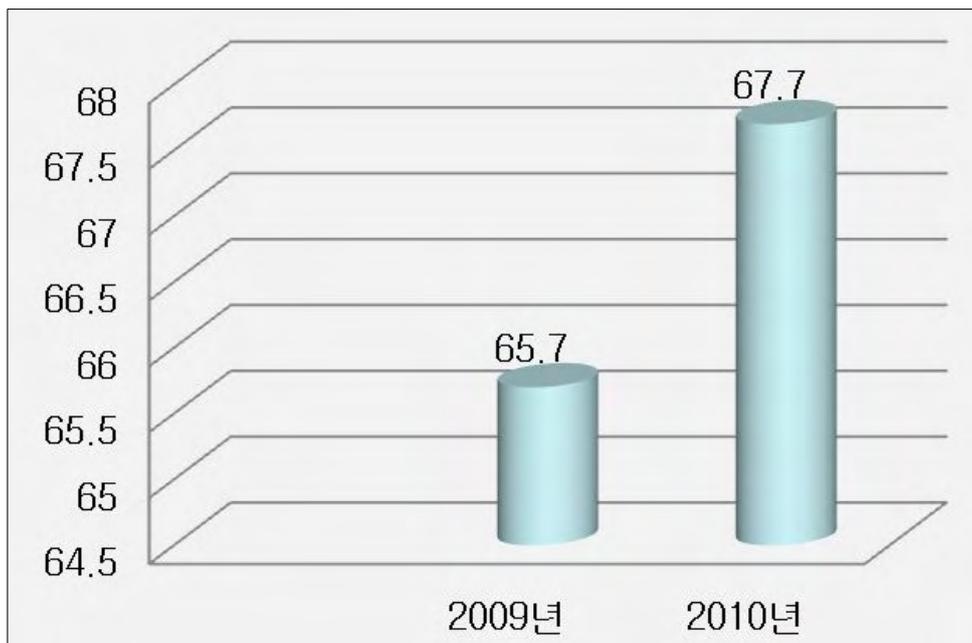
구분	항목	2008년	2009년	2010년	
사업의 인지도	사업의 인지도	100.0	100	100.0	
	사업의 이해도	42.3	46.4	34.4	
	사업의 투명도	42.3	39.9	39.3	
	소계	61.5	62.1	57.9	
사업의 적합도	사업의 목적성	67.3	71	63.3	
	사업의 적절성	58.4	65.5	64.6	
	사업의 연계성	57.0	62.4	51.5	
	소계	60.9	66.3	59.8	
사업의 유효도	예산의 가용성	42.1	43.2	47.0	
	집행의 효율성	57.0	57.7	57.4	
	소계	49.6	50.5	52.2	
평균 만족도		57.3	59.6	56.6	

<표 IV-27>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 공무원

구분	지표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사업의 인지도	사업의 이해도		90.4	91.3	94.1		
	소계		90.4	91.3	94.1		
사업의 적합도	사업의 목적성	관광기반 시설확충	어촌관광활동 시설 확충	69.2	66.7	73.5	
			관광편의시설 확충	61.5	52.5	57.4	
			교통시설 확충	51.9	52.5	73.5	
	정주환경 개선		경관 개선	65.4	77.8	82.4	
			생활기반시설 확충	59.6	60.0	67.7	
			생활편의시설 확충	59.6	45.0	57.4	
	소계		61.2	59.1	68.6		
사업의 유효도	예산의 가용성		30.8	35.0	35.3		
	사업추진의 효율성	대상지 선정 단계	73.1	75.0	76.5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	78.9	33.3	73.5		
		시공단계	78.9	87.5	79.7		
		운영단계	65.4	62.5	69.1		
소계		65.4	58.7	66.8			
평균 만족도			72.3	69.7	76.5		

2.4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대한 이용자만족도 조사·분석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평균 만족도는 66.8점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들의 평균 만족도는 68.6점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전체 만족도는 67.7점으로 본 사업에 대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연도별 이용자 만족도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0년도 만족도 결과가 67.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 대상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이용자만족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IV-62> 연도별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이용자 만족도 결과

<표 IV-28>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만족도 결과

대 상	만족도 항목		2009년	2010년	비 고
지역 주민	사회·문화· 환경	삶의 질 향상	68.7	63.7	
		지역 이미지 향상	74.8	69.6	
		지역 주민 자긍심 향상	71.9	65.1	
		전통문화 발굴·보존	71.2	66.4	
		마을 생활환경 개선	74.6	69.5	
지역주민 평균 만족도			72.2	66.8	
공 무 원	관광기반 시설확충 효과	어촌관광활동시설 확충	66.7	73.5	
		관광편의시설 확충	52.5	57.4	
		교통시설 확충	52.5	73.5	
	정주환경 개선효과	경관 개선 효과	77.8	82.4	
		생활기반시설 확충	45.0	67.7	
		생활편의시설 확충	60.0	57.4	
공무원 평균 만족도			59.1	68.6	
전체 만족도			65.7	67.7	

제3장 어촌관광개발사업

3.1 모니터링 조사 방법

가. 모니터링 목적

- 모니터링은 영리조직인 기업이든 비영리 조직인 정부든 목적달성에 필요한 절차이다. 즉 기업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과 만족도, 혹은 소비자의 기호에 대한 이를 통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정책 수립과 투자 사업에 대한 국민 또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 결과는 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투자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 기업이나 정부의 모니터링은 통계자료를 이용하거나 설문조사를 이용하기도 한다. 동일한 모니터링의 경우에 통계자료와 설문조사를 병행하기도 한다. 통계자료는 과거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미래의 전망이나 예측에 있어서 편차가 클 가능성이 있지만, 객관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상품이나 투자사업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만족도에 대한 모니터링에 많이 사용된다.
- 어촌관광개발사업의 성과 모니터링과 프로그램 모니터링도 통계자료에 의한 모니터링과 설문조사에 의한 모니터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완공 전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수치에 의한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없다.
- 이러한 이유로 실제 성과자료를 이용한 성과 모니터링을 대신하여 예상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한다. 실시방법은 사업 대상지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의 예상성과를 설문조사로 파악한다. 이러한 예상 성과 모니터링의 결과는 향후 실제 성과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 그리고 동 사업의 프로그램 모니터링은 동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 사업의 추진과정, 사업의 인지도, 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설문조사는 지역의 대학교, 연구소, 그리고 전문 설문조사기관을 설문조사대행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지역 대학교와 연구소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할 경우에 대면조사를 할 수 있지만, 설문조사자는 대학생들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설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문 설문조사기관의 설문조사자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전문 설문조사기관에 설문조사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나. 모니터링 대상 및 표본의 선택

(1) 모니터링 대상

- 본 조사는 전국 어촌지역에 실시되었던 다양한 개발사업 중 특히 어촌관광 개발사업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후 현실을 반영한 개선된 어촌지역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 본 조사는 어촌관광개발사업이 시행중인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대상지역은 전국 10개 시·도, 15개 시·군·구로서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V-29> 어촌관광개발사업 모니터링 대상-1

시·도	시·군·구	사업명	비 고
부산시	강서구	대항 어촌관광단지조성	
인천시	강화군	초지 어촌관광단지조성	
울산시	동구	일산항 어촌어항복합공간조성	
	울주군	대송 어촌관광단지조성	
강원도	강릉시	안목항 어촌어항복합공간조성	
	동해시	대진 어촌관광단지조성	
충남도	보령시	무창포 어촌관광단지조성	

<표 IV-30> 어촌관광개발사업 모니터링 대상-2

시·도	시·군·구	사업명	비고
전북도	군산시	야미도 어촌관광단지조성	
전남도	강진군	마량항 어촌어항복합공간조성	
	신안군	방축 어촌관광단지조성	
경북도	영덕군	대진 어촌어항복합공간조성	
	경주시	전촌 어촌관광단지조성	
경남도	고성군	맥전포 어촌어항복합공간조성	
	통영시	학림 어촌관광단지조성	
제주도	서귀포시	모슬포 어촌어항복합공간조성 법환 어촌관광단지조성	

(2) 모니터링 표본의 선택

- 어촌관광개발사업이 시행중인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대상지역은 전국 10개 시·도, 15개 시·군·구로서 지역주민 209명과 시군 공무원 13명을 대상으로 예상 성과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으며, 프로그램 모니터링의 대상 또한 성과 모니터링의 대상과 같이 하였다.
- 표본추출은 사업별 유의표집법을 사용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주로 전화설문조사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공무원의 경우 팩스를 통한 지면설문방법도 병행하였다.

<표 IV-31> 어촌관광개발사업의 조사 개요

구분	공무원	지역주민	비고
모집단	어촌관광 개발사업 담당 공무원	대상 지역 주민	
표본수	13	209	
표본추출	사업별 유의표집	사업별 유의표집	
조사방법	전화 및 팩스조사	전화조사	
조사일자	2010.12.08~22(15일간)	2010.12.08~22(15일간)	

다. 모니터링 내용

1) 성과 모니터링 조사

- 동 사업의 성과는 계량적 성과와 비계량적 성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계량적 성과는 어촌관광개발사업에 도입되는 시설의 완공 후에 나타난다. 이러한 계량적 성과지표는 지역 소득, 입장수입, 방문객의 수, 잠재적 부가가치 등을 들 수 있다. 지역소득과 부가가치 등은 동 사업의 간접효과이며, 입장수입과 방문객의 수는 직접효과이다. 간접효과인 지역소득은 동 시설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동 지역에서 지출하는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다. 그리고 부가가치는 동 시설과 다른 시설과의 연계를 통하여 발생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 이러한 계량적 성과는 동 시설이 완공된 후에 그 값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이 평가지표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댓값을 설문조사로서 파악하고자 한다.
- 그리고 동 사업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비계량적 성과 또한 계량적 성과만큼 중요하다. 왜냐하면 비계량적 성과는 지역 주민의 사기양양과 동기부여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비계량적 성과 또한 계량적 성과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의 기댓값으로 측정한다. 비계량적 평가지표는 지역주민의 참여, 이미지 개선, 주민 자긍심, 주민의 공동의식 등이다.
- 아래 표는 동 사업의 계량적 성과와 비계량적 성과 모니터링 지표를 나타낸다.

<표 IV-32> 어촌관광개발사업의 성과 모니터링 지표

구분	지표	응답척도
계량적 지표	지역소득	증가율
	방문객	증가율
	수산물 판매액	증가율
비계량적 지표	삶의 질 개선	5단계
	이미지 개선	5단계
	주민 자긍심	5단계
	전통문화 발굴·보존	5단계
	생활환경 개선	5단계

2) 프로그램 모니터링 조사

- 사업의 목적에 따라 계획 및 시행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프로그램 모니터링의 지표는 크게 사업의 인지도, 사업의 적합도, 그리고 사업의 유효도 등으로 나눈다. 아래 표는 동 사업의 프로그램 모니터링 지표를 요약한 것이다.

<표 IV-33> 어촌관광개발사업의 프로그램 모니터링 지표

구분	지표	응답척도	대상자
사업의 인지도	사업의 인지도	2점	지역주민
	사업의 이해도	5점	지역주민, 공무원
	사업의 투명도	5점	지역주민
사업의 적합도	사업의 목적성	5점	지역주민, 공무원
	사업의 적절성	5점	지역주민
	사업의 연계성	5점	지역주민
사업의 유효도	예산의 가용성	5점	지역주민, 공무원
	집행의 효율성	5점	지역주민
	사업추진 효율성	5점	공무원
	사업운영 효율성	2점	공무원

- 사업의 인식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사업의 인지도, 사업의 이해도 사업의 투명도 등으로 구성된다.
 - 사업의 인지도(2점 척도)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여부에 대

한 인지 여부를 조사한다.

- 사업의 이해도(5점 척도)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는 도입시설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사업내용 인지정도 및 추진방법 인지 여부를 조사한다.
- 사업의 투명도(5점 척도)는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 여부를 조사한다.
- o 사업의 적합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사업의 목적 부합성, 사업의 적절성, 사업의 연계성 등으로 구성된다.
 - 사업의 목적성(5점 척도)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를 조사한다.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관광기반시설 확충 정도와 지역 정주환경 개선정도를 조사한다.
 - 사업의 적절성(5점 척도)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발 콘셉트가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 사업의 연계성(5점 척도)은 지역주민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충분히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조사한다.
- o 사업의 유효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예산의 가용성, 집행의 효율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사업운영의 효율성 등으로 구성된다.
 - 예산의 가용성(5점 척도)은 예산규모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조사로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 집행의 효율성(5점 척도)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선정과 집행과정의 효율성을 조사한다.
 - 사업추진의 효율성(5점 척도)은 사업추진 과정을 4단계(대상지 선정단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 시공단계,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단계별 효율적 추진 정도를 조사한다.
 - 사업운영의 효율성(2점 척도)은 :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리운영 주체 지정 여부와 관리조직 및 담당자 지정 여부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3.2 어촌관광개발사업 모니터링 조사

가. 성과 모니터링

- 동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사업의 성과와 관련한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사업이 아직 추진 중인 관계로 성과 모니터링과 관련한 계량적 지표는 사업대상지 주민의 동 사업에 대한 기뻐움을 설문조사로서 파악하고자 한다.
- 동 사업은 지역주민 중에서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이용주체가 될 것이므로 사업대상지역의 어촌계에 속해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어촌계원의 만족도가 중요한 평가요소이며, 사업시행전과 사업시행 후를 비교하도록 한다.

1) 조사개요

- 어촌관광개발사업의 모니터링 대상지역인 16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성과모니터링 조사 개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IV-34> 성과모니터링 설문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모 집 단	▪ 사업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지역주민
유효표본	▪ 209 명
표본추출	▪ 어촌관광개발사업 대상지 유의 표집
조사방법	▪ 전화 조사
조 사 일	▪ 2010.12.08~22(15일간)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량적 지표 : 지역소득, 방문객, 수산물 판매액 ▪ 비계량적 지표 : 삶의 질 개선, 이미지 개선, 주민 자긍심, 전통문화발굴·보전, 생활환경 개선

2) 성과 모니터링 결과

(1) 계량적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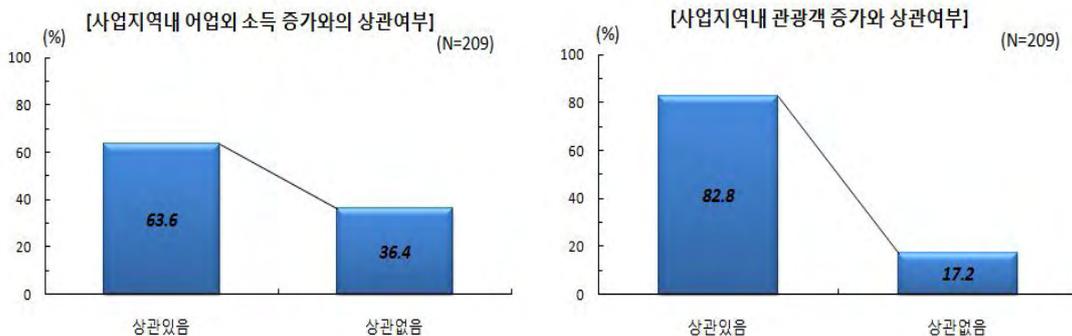
- 어촌관광개발사업의 주된 목적은 고품격 어촌관광단지 개발을 통하여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어가소득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 목적의 달성여부는 사업실시 이후 방문객 수, 어업 외 소득, 수산물 판매액 등이 증가하였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① 지역소득

- 어촌관광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 내 어업 외 소득증가와 상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상관있다’는 응답이 63.6%, ‘상관없다’는 응답은 36.4%로 ‘상관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상관있다’는 응답자의 경우 평균 39.2% 정도 어업 외 소득증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② 방문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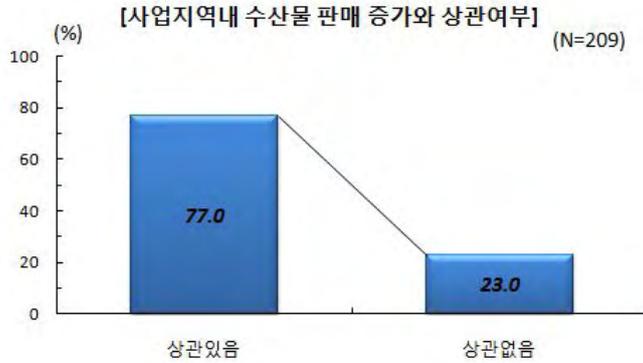
- 어촌관광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 내 관광객 증가와 상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상관있다’는 응답이 82.8%, ‘상관없다’는 응답은 17.2%로 ‘상관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상관있다’는 응답자의 경우 평균 40.5% 정도 관광객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③ 수산물 판매액

- 또한 어촌관광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 수산물 판매 증가와 상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상관있다’는 응답이 77.0%, ‘상관없다’는 응답은 23.0%로 ‘상관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상관있다’는 응

답자의 경우 평균 41.8% 정도 수산물 판매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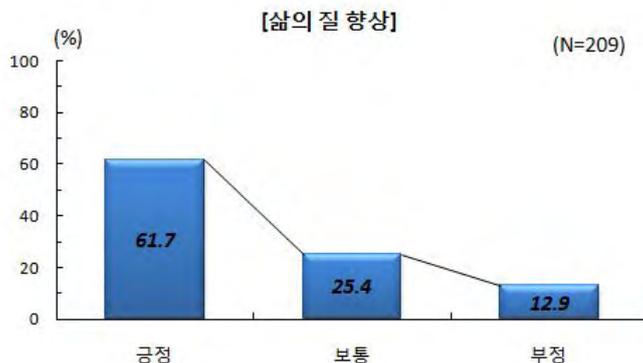


(2) 비계량적 지표

- 어촌관광개발사업은 어가소득 증대이외에도 생활환경시설을 개선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삶의 질 개선을 포함한 지역 이미지 개선, 지역문화 발굴 등의 사회·문화적 효과는 계량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항목이다. 이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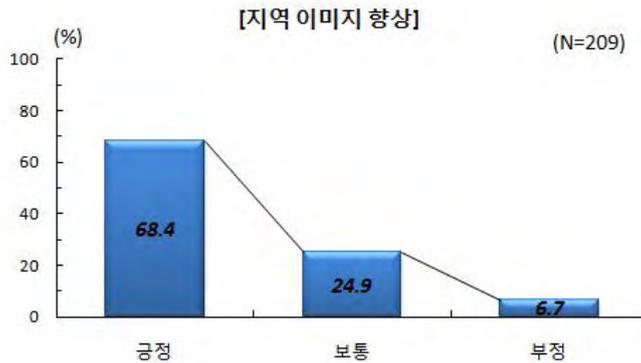
① 사업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

-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인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61.7%, ‘아니다’는 응답은 12.9%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66.4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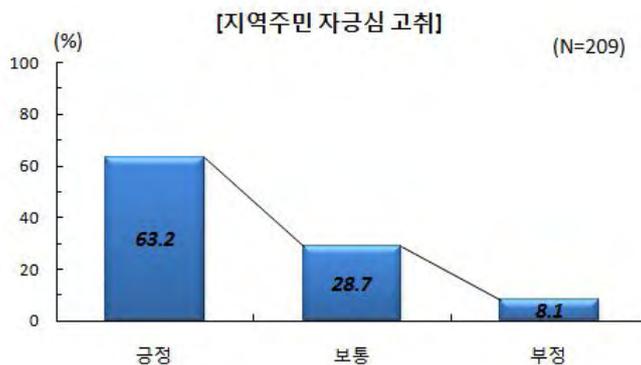
② 사업으로 인한 지역 이미지 개선

-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인한 지역의 이미지가 향상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68.4%, ‘아니다’는 응답은 6.7%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71.3점이다.



③ 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자긍심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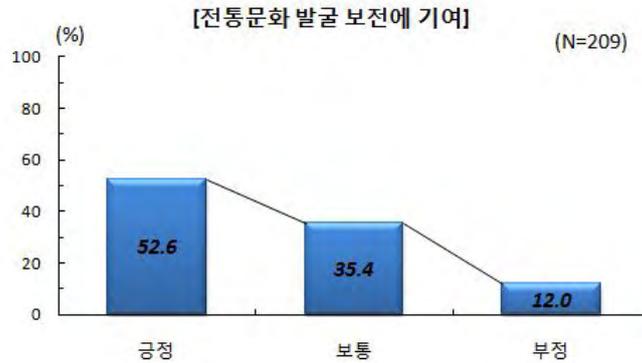
-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의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인지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63.2%, ‘아니다’는 응답은 8.1%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69.3점이다.



④ 사업으로 인한 마을 전통문화 발굴·보전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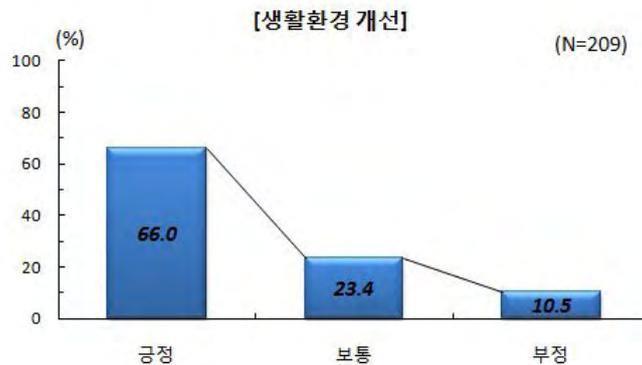
-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인한 마을의 전통문화를 발굴·보전하는데 기여도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52.6%, ‘아니다’는 응답은 12.0%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63.8점이다.



⑤ 사업으로 인한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

- 어촌관광개발사업으로 인한 마을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66.0%, ‘아니다’는 응답은 10.5%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69.6점이다.



나. 프로그램 모니터링

- 사업의 목적에 따라 계획 및 시행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프로그램 모니터링은 크게 사업의 인식도, 사업의 적합도, 그리고 사업의 유효도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1) 프로그램 모니터링 개요

- 어촌관광개발사업의 모니터링 대상지역인 16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성과모니터링 조사 개요는 다음 표와 같다.

<표 IV-35> 프로그램 모니터링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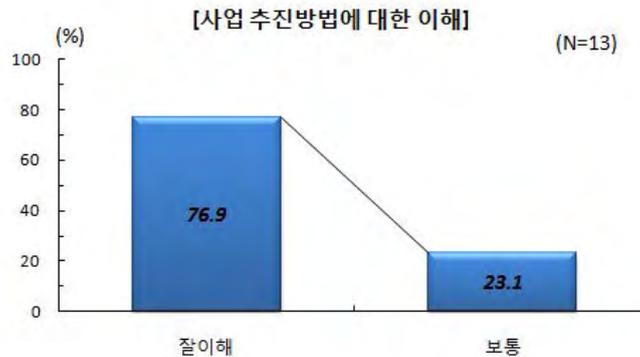
구 분	공무원	지역주민
모 집 단	▪ 어촌관광개발사업 담당 공무원	▪ 사업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지역주민
유효표본	▪ 13명	▪ 209 명
표본추출	▪ 어촌관광개발사업 담당 공무원	▪ 어촌관광단지 대상지 유의 표집
조사방법	▪ 전화 설문조사	▪ 전화 설문조사
조 사 일	▪ 2010.12.08~22(15일간)	▪ 2010.12.08~22(15일간)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인식도 : 이해도 ▪ 사업의 적합도 : 목적성 ▪ 사업의 유효도 : 예산의 가용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사업운영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인식도 : 인지도, 이해도, 투명도 ▪ 사업의 적합도 : 목적성, 적절성, 연계성 ▪ 사업의 유효도 : 예산의 가용성, 집행의 효율성,

2) 공무원 대상 프로그램 모니터링 조사

(1) 사업의 인식도

① 사업의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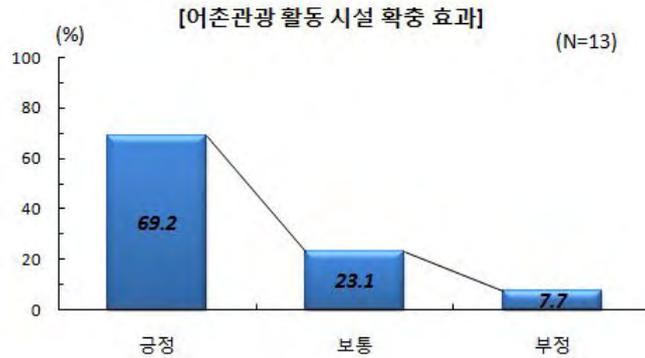
- 사업의 이해도는 지역주민의 도입시설에 대한 인지정도와 공무원의 사업 추진방법에 대한 이해정도로 측정한다.
-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촌관광개발사업 추진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은 76.9%, ‘보통이다’의 응답은 23.1%로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84.6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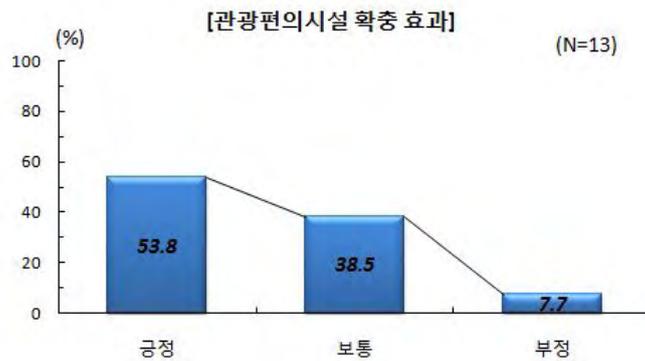
(2) 사업의 적합도

① 사업의 목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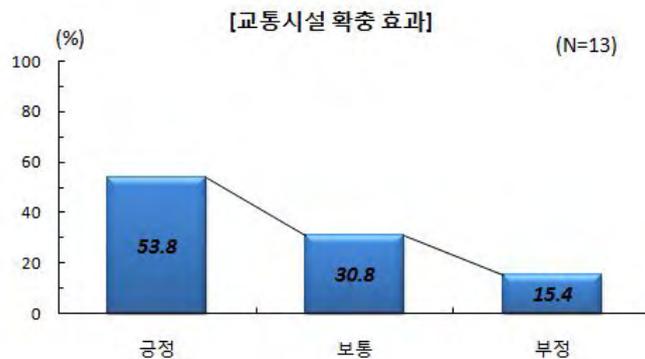
- 관광기반시설 확충 효과는 도입 시설을 잘 인지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어촌관광개발사업의 관광기반시설은 낚시, 어업체험, 해양레저 활동을 위한 어촌관광활동 시설과 숙박, 식사, 휴게실 등 관광편의시설 그리고 도로와 주차장 등의 교통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 어촌관광 활동 시설의 확충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69.2%, ‘아니다’는 응답은 7.7%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73.1점이다.



- 관광편의시설 확충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53.8%, ‘아니다’는 응답은 7.7%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71.2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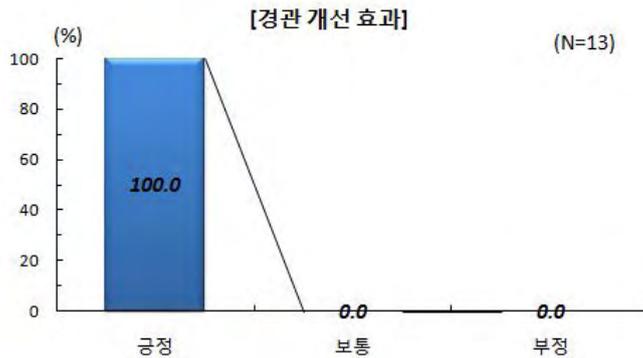
- 교통시설 확충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53.8%, ‘아니다’는 응답은 15.4%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67.3점이다.



- 정주환경 개선 효과 역시 도입 시설을 잘 인지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

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경관 개선, 생활기반시설(상·하수도 시설과 통신 및 전기), 생활편의시설(도소매점과 문화복지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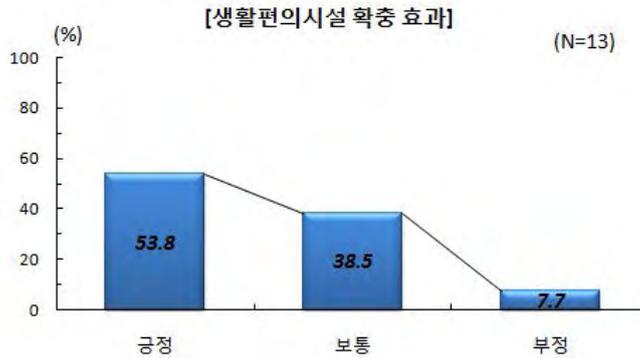
- 경관 개선 효과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100%로 나타났다. 한편,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88.5점이다.



- 생활기반시설 확충 효과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46.2%인 가운데, ‘아니다’는 응답이 23.1%, ‘보통이다’는 응답은 23.1%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62.5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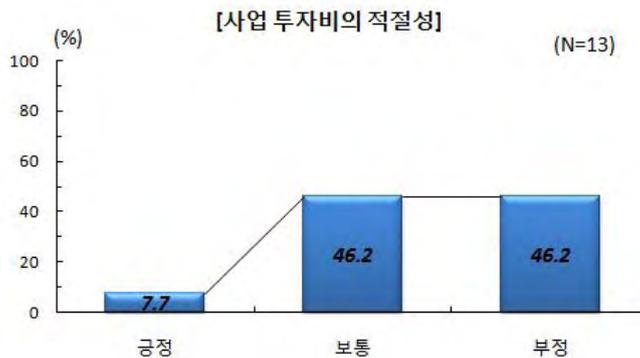
- 생활편의시설 확충 효과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53.8%인 가운데, ‘아니다’는 응답이 7.7%, ‘보통이다’는 응답은 38.5%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67.3점이다.



(3) 사업의 유효도

① 예산의 가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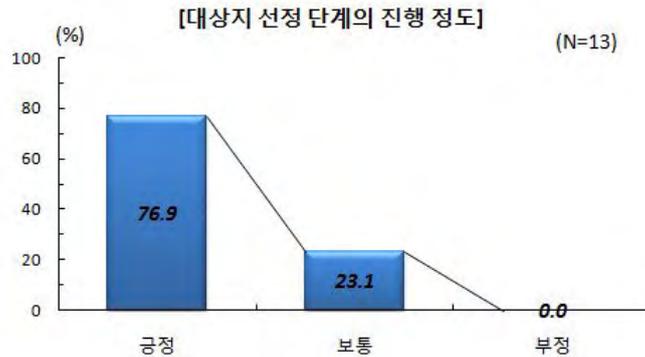
- 담당 공무원에게 어촌관광개발사업의 투자비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족하다’는 응답은 46.4%, ‘충분하다’는 응답은 7.7%로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46.2%였다. 한편,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40.4점이다.
- 예산의 규모면에서는 예산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특히 담당 공무원들이 예산규모에 대해 부족한 의견을 많이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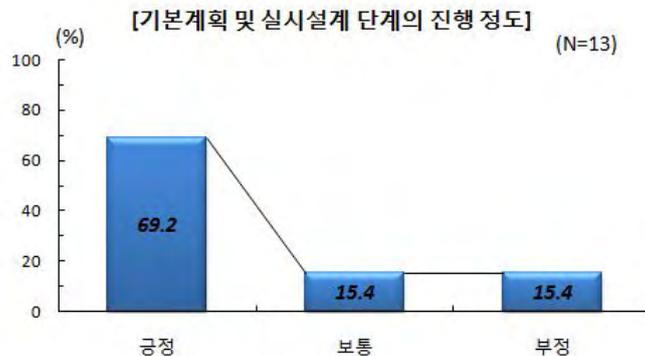
② 사업추진의 효율성

- 사업추진의 효율성이란 대상지 선정단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 시공단계, 운영단계 등 사업 추진 단계별로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어촌관광개발사업 진행상황 중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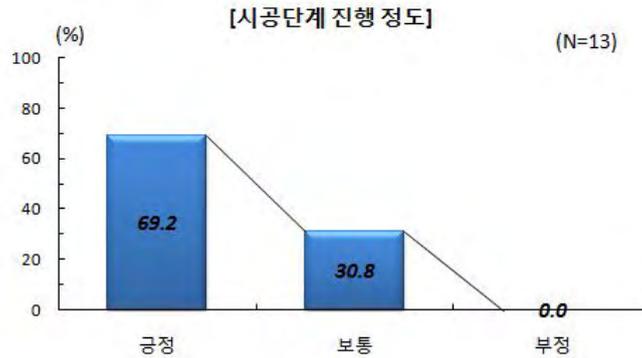
상지 선정 단계의 진행이 잘 진행되는지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76.9%인 가운데, ‘보통이다’는 응답이 23.1%, ‘아니다’는 응답은 0.0%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84.6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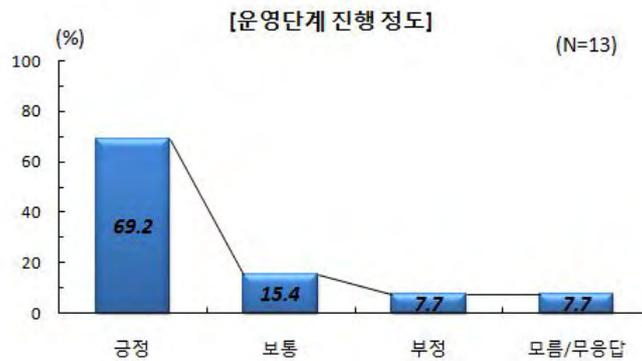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의 진행이 잘 진행되는지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69.2%인 가운데, ‘보통이다’는 응답이 15.4%, ‘아니다’는 응답은 15.4%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76.9점이다.



- 시공단계의 진행이 잘 진행되는지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69.2%로 나타났다. 한편,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80.8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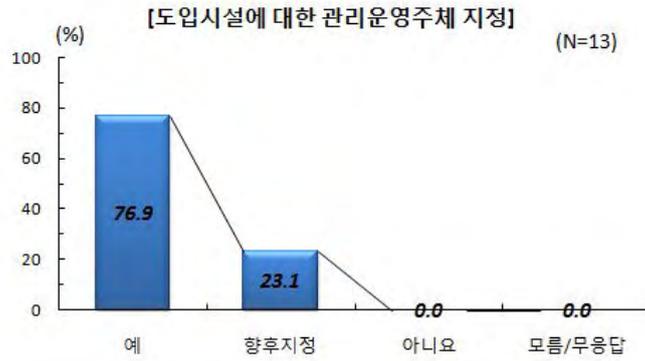


- 운영단계의 진행이 잘 진행되는지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69.2%, ‘아니다’는 응답은 7.7%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83.3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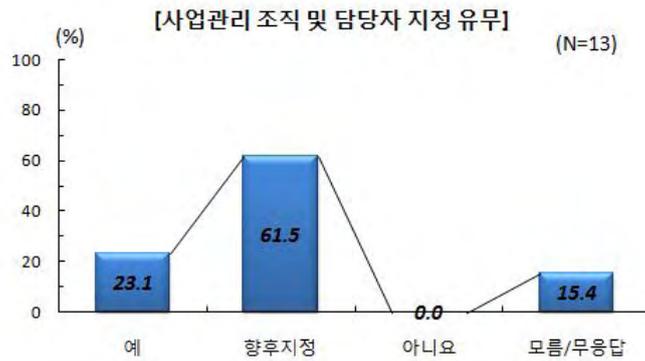


③ 사업운영의 효율성

- 사업운영의 효율성은 도입된 개별 시설의 관리운영 주체가 명확히 존재하는지, 그리고 시설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 혹은 조직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 어촌관광개발사업 도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주체 지정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게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76.9%, ‘아니다’는 응답이 0.0%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향후 지정 예정이다’는 응답은 23.1%로 나타났다.



- 어촌관광개발사업 관리 조직 및 담당자 지정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23.1%, ‘아니다’는 응답이 0.0%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향후 지정 예정이다’는 응답은 61.5%로 나타났다.



3)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모니터링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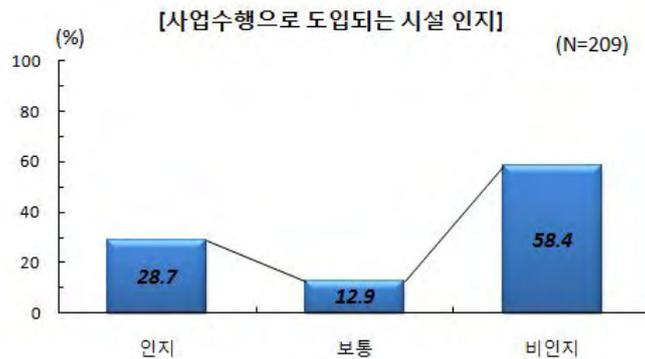
(1) 사업의 인식도

① 사업의 인지도

- 사업의 인지도는 지역주민이 본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지 측정한 것이다. 조사결과 대상지 주민 모두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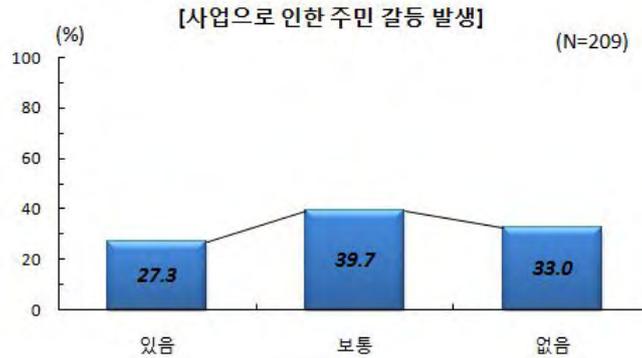
② 사업의 이해도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어촌관광개발사업으로 도입되는 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질문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23.7%, ‘모른다’는 응답이 58.4%로 ‘모른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32.8점이다.



③ 사업의 투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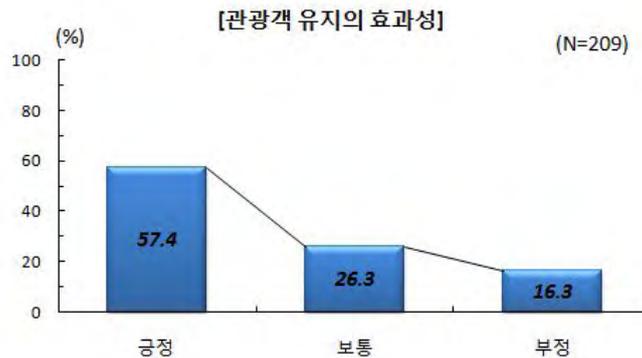
- 투명도가 적을수록 지역주민 내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므로, 사업의 투명도는 사업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 내 갈등 정도를 지역주민으로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어촌관광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 주민 내 갈등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있다’는 응답이 27.3%, ‘없다’는 응답은 33.0%로 ‘없다’는 응답이 오차 범위 내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46.9점이다.



(2) 사업의 적합도

① 사업의 목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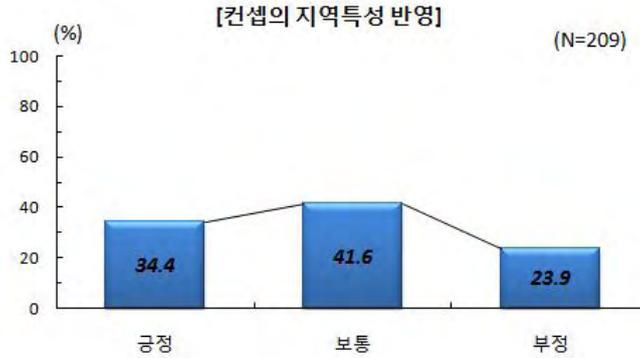
- 사업의 목적성은 본래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진행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관광객 유치 효과, 관광기반시설 확충 효과, 정주환경 개선 효과에 대해 조사하였다.
- 먼저 어촌관광개발사업의 시설계획의 관광객 유치에 대한 효과를 지역주민에게 질문한 결과 ‘효과적이다’는 응답이 57.4%, ‘비효과적이다’는 응답은 16.3%로 ‘효과적이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를 100점을 환산하면 점수는 65.2점이다.



② 사업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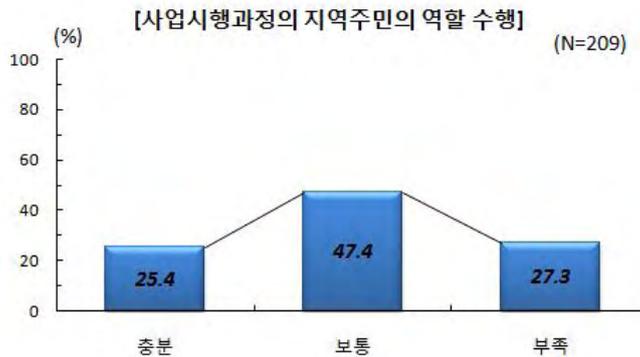
- 사업의 적절성은 본 사업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 어촌관광개발사업의 개발 컨셉이 지역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를 질문한 결과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이 34.4%,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3.9%로 두 응답이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편, 이에 대한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53.6점으로 나타났다.



③ 사업의 연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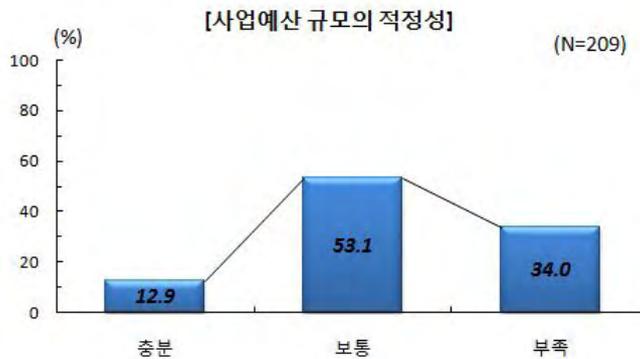
- 사업의 연계성은 지역주민이 사업 추진과정에 충분히 참여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 어촌관광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역할 수행에 대해 질문한 결과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25.4%,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7.3%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50.1점이다.



(3) 사업의 유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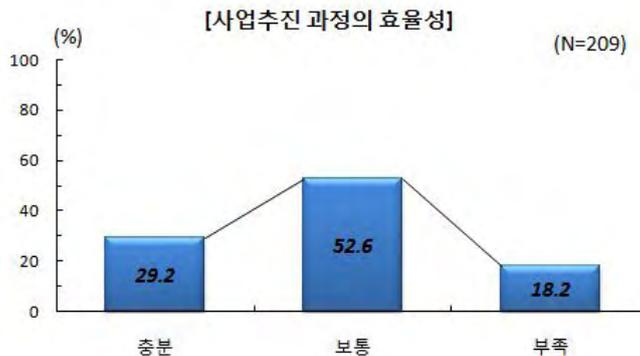
① 예산의 가용성

- 지역 주민들에게 어촌관광개발사업 예산규모(총사업비 50~60억)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다’는 응답이 53.1%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충분하다’는 응답이 12.9%, ‘부족하다’는 응답은 34.0%로 ‘보통이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42.3점이다.
- 예산의 규모면에서는 예산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편이었다.



② 집행의 효율성

- 집행의 효율성이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 사업의 선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효율적이다’는 응답은 29.2%, ‘비효율적이다’는 응답은 18.2%로 ‘효율적이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53.2점이다.



(4) 지역주민의 의견사항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사항으로는 홍보의 강화와, 관광객 유치의 지원, 어민의 복지 및 소득 증대에 힘써달라는 의견, 해안도로 개선, 자연환경이 보전되는 선에서의 개발, 숙박시설 증설 등의 의견들이 있었다.

<표 IV-36> 어촌관광개발사업 의견사항(지역주민)

의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사업에 계원이 아닌 이들도 함께하면 좋겠음 • 개발 잘해서 관광객이 증가했으면 • 계획하고 실천시행에 있어서 홍보 및 지원을 해야 함 • 관광객 유치될 수 있도록 충분한 개발지원 되어야함 • 낚시공원조성 • 도로가 협소한데 넓히고 주차 숙박시설 늘렸으면 함 • 마을마다 특색있게 해 관광객 머물게해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있게 해야한다 • 먼저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라 • 바닷가 근처까지 관광지로 개발되므로 어업종사자는 할 일이 줄어들어서 반대함 • 방파제 및 제반시설 보충 • 사무실 완공 후 농수산물 판매장 만들면 관광객 늘 것 • 어민 복지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어민소득증대에 힘썼으면 • 현장특성에 맞도록 아름답게 설계해 아름다운 어촌 만들었으면 함 • 자연 환경을 해치지 말라 • 지역민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야 함 • 주차장과 편의시설 건설쓰레기처리시설부족 • 주민들에게 충분한 의견 전달 필요, 어촌외 농촌 산촌 지역전체개발 필요함 •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아닌 지역개발을 해야 한다 • 해상도로를 해주고 마을 장터를 부락이름을 적어서 해주어야한다 • 해안도로를 빨리 완공해주길

3.3 모니터링 조사 결과

가. 성과 모니터링 결과

- 사전적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지역 주민들은 어촌관광개발사업을 통한 도시민의 어촌방문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어촌간 교류활성화 및 어가소득의 증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촌관광개발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문객, 어업외소득의 증가율, 수산물 판매액 증가율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치는 약 41%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7> 어촌관광개발사업의 계량적 성과

구 분	방문객	어가소득	
		어업 외 소득	수산물 판매액
증가율 기대치	40.5%	39.2%	41.8%

- 어촌관광개발사업의 사회문화적 효과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항목이므로 5점 척도로 평가하여 점수화하였으며, 50점을 상회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 점수는 사업 실시 이후 성과를 측정하는 사후적 모니터링 결과 분석 시 비교치로 활용할 수 있다.
-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사업이 생활환경 개선을 포함한 삶의 질 개선 효과에 대한 사전적 평가에 지역주민은 66~70점을 책정하였다. 그리고 지역 주민 및 외지인이 해당 지역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 개선 효과에 대한 사전적 평가는 69~71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본 사업이 지역의 전통문화 발굴 및 보전에 미치는 영향은 63.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IV-38> 어촌관광개발사업의 비계량적 성과

구 분	삶의 질 개선		이미지 개선		전통문화 발굴·보존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	지역 주민 자긍심 향상	지역 이미지 향상	
환산점수	69.6점	66.4점	69.3점	71.3점	63.8점

나.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 어촌관광개발사업의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업의 전반적인 인지도는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공무원의 경우 높지만, 지역 주민은 낮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업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사업의 목적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경우 대체로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이라 평가하고 있었지만, 지역 주민의 경우 사업의 목적성과 참여도를 나타내는 연계성이 낮게 나타났다. 즉 어촌관광개발사업을 통해 어가소득 증대와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달성되겠지만, 대상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고, 지역 특색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업의 유효도를 살펴보면, 예산 규모는 지역주민과 담당 공무원 모두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 지역주민은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사업추진의 효율성은 모든 단계에 있어서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리운영 주체는 현재 지정(76.9%) 되어 있거나 향후 지정할 예정(23.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9>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 지역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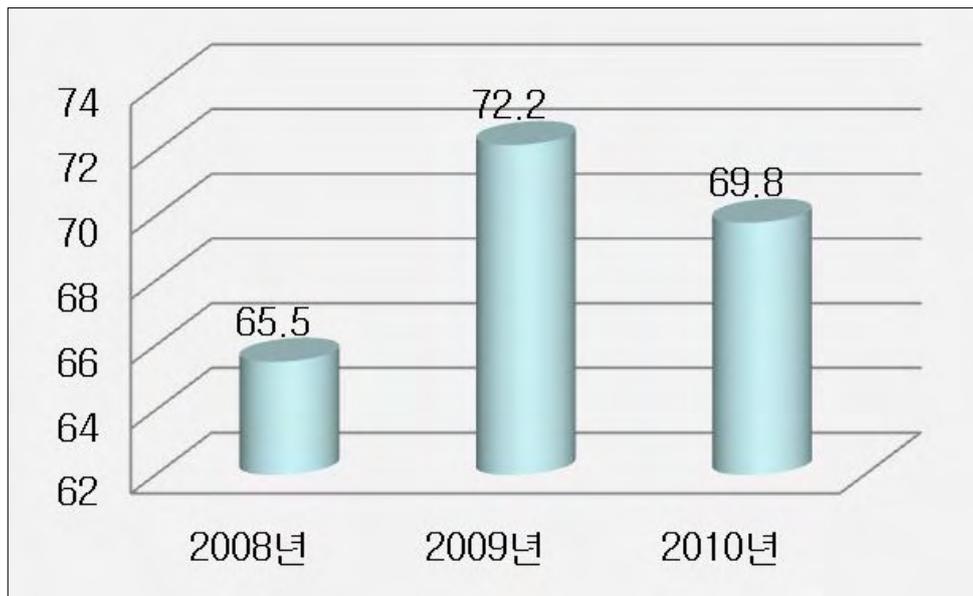
구분	항목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사업의 인지도	사업의 인지도	100.0	100	100.0	
	사업의 이해도	40.3	52.5	32.8	
	사업의 투명도	46.6	56.5	46.9	
	소계	62.3	69.7	59.9	
사업의 적합도	사업의 목적성	65.4	67.6	65.2	
	사업의 적절성	50.3	55.3	53.6	
	사업의 연계성	46.5	47.2	50.1	
	소계	54.1	56.7	56.3	
사업의 유효도	예산의 가용성	42.8	40.7	42.3	
	집행의 효율성	55.3	55.9	53.2	
	소계	49.1	48.3	47.8	
평균 만족도		55.1	58.2	54.7	

<표 IV-40>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 공무원

구분	지표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사업의 인지도	사업의 이해도		72.9	86.1	84.6		
	소계		72.9	86.1	84.6		
사업의 적합도	사업의 목적성	관광기반 시설확충	어촌관광활동시설 확충	72.2	88.9	73.1	
			관광편의시설 확충	66.9	77.8	71.2	
			교통시설 확충	57.2	66.7	67.3	
	정주환경 개선		경관개선	76.6	77.8	88.5	
			생활기반시설 확충	56.0	75	62.5	
			생활편의시설 확충	64.4	75	67.3	
	소계		65.6	76.9	71.6		
사업의 유효도	예산의 가용성		39.1	41.7	40.4		
	사업추진의 효율성	대상지 선정단계	74.7	77.8	84.6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단계	66.7	61.1	76.9		
		시공단계	65.3	75	80.8		
		운영단계	72.9	75	83.3		
소계		63.7	66.1	73.2			
평균 만족도		70.2	72.0	80.8			

3.4 어촌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이용자만족도 조사·분석

- 어촌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평균 만족도는 68.1점으로 나타났다으며, 공무원들의 평균 만족도는 71.6점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전체 만족도는 69.8점으로 본 사업에 대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연도별 이용자 만족도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0년도 만족도 결과가 69.8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2.4점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 대상 이용자만족도 조사결과, 관광기반시설 확충효과나 정주환경 개선효과가 전년도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92> 연도별 어촌관광개발사업 이용자 만족도 결과

<표 IV-41> 어촌관광개발사업에 대한 만족도 결과

대 상	만족도 항목		2008년	2009년	2010년	비 고
지역 주민	사회·문화 ·환경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	65.8	70.1	69.6	
		삶의 질 향상	64.1	68.8	66.4	
		지역 주민 자긍심 향상	67.1	68.5	69.3	
		지역 이미지 향상	70.3	67.9	71.3	
		전통문화 발굴·보존	60.2	62.0	63.8	
지역주민 평균 만족도			65.5	67.5	68.1	
공 무 원	관광기반 시설확충 효과	어촌관광활동시설 확충	72.2	88.9	73.1	
		관광편의시설 확충	66.9	77.8	71.2	
		교통시설 확충	57.2	66.7	67.3	
	정주환경 개선효과	경관개선 효과	76.6	77.8	88.5	
		생활기반시설 확충	56.0	75.0	62.5	
		생활편의시설 확충	64.4	75.0	67.3	
공무원 평균 만족도			65.6	76.9	71.6	
전체 만족도			65.5	72.2	69.8	

제4장 어촌개발사업의 문제점 도출

4.1 어촌종합개발사업

-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본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

-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어촌종합개발에서는 사업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도입가능시설에 대한 이해도 또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촌·어항지역을 찾는 방문객 증가에 대한 어촌지역사회의 대응 부족

- 사회 전반적인 소득 증가와 유희시간 증대 등으로 인하여 어촌과 어항지역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어촌지역사회는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실정이다.

3) 사업 및 프로그램이 우수한 권역에 대한 지원 부족

-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하여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촌계 단위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우수 사례지역으로 선정된 어촌계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거나 후속으로 계획하는 수산업, 어업은 물론 어촌관광 분야 등 각종 분야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한다.

4) 도입되는 시설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사업인지 부족

- 도입되는 시설사업은 특정 지역 혹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에게 필요한 사업인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가장 중요한 사항은 권역별 사업비가 어촌계별 또는 마을별로 나누는 방법이 아닌 지역특성화 개발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

4.2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모니터링 평가 내용 및 본 사업을 둘러싼 제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업평가의 연속성을 위해 모니터링 실시지역의 체계적 관리 부족

- 모니터링 대상 지역에 대한 성과측정은 기대성과를 측정한 것으로 본 사업의 완공이후 변화 된 성과를 측정하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 즉 금차에 조사분석된 대상지역에 대한 기대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실제 사업의 진행에 따른 만족도와 더불어 사업 추진 후 나타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2)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주민참여 기반 부족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지역주민들은 본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지만 세부 사업내용이나 도입시설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예산지원의 부족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예산부문에 있어서는 지역주민과 공무원 모두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대상지의 선정단계, 집행단계, 완료/운영단계 별 사업점검 및 관리부족

- 사업대상지의 선정 및 기본계획의 수립 이후 각 지역에서는 사업집행에 있어서 지역별 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기간인 1년 내에 시설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되기도 한다.
- 따라서 중앙정부의 사업지침에 따라서 사전준비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기본계획 수립 후 시설완공에 이르기 까지 변경사항이 발생 할 경우, 사업추진상의 제약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사업지침에 반영하도록 한다.

5)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이 미흡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이 사업성공의 중요 요소이다. 한편 프로그램 모니터링에는 이러한 기능이 다소 부족하다.

4.3 어촌관광개발사업

- 어촌관광개발사업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본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의 참여 및 도입시설에 대한 이해 부족

- 본 사업의 근본취지가 어촌에 대한 관광수요 창출로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로 그 동안의 생산기반 위주의 지원을 소득·관광기반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임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2) 대상지의 특색 강화 부족

- 모범적인 시범사업이 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전문가 자문이나 광범위한 사례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지역 주민간의 갈등 해소 필요

- 본 사업은 개발사업인 관계로 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다소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

4) 공무원의 사업추진 내용 및 과정에 대한 교육 필요

- 모니터링 결과, 과거 어촌어항복합공간으로 선정되었던 지역의 공무원의 경우 사업추진 내용 및 과정에 대한 이해가 타 사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예산 지원을 상향 조정 또는 직접 집행 필요

- 균특예산으로 추진 중인 타사업에 비해 지방비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방비의 확보가 늦어져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제 V 편 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조사

제1장 국가어항 개발사업

제2장 지방어항 개발사업

제3장 어항개발사업의 문제점 도출

제 V 편 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조사

제1장 국가어항개발사업

1.1 국가어항개발사업 효과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조사방법

가. 모니터링 목적

- 국가어항은 110개항에 대하여 3조 6,000억원이 투자되는 수산분야에서 가장 큰 재정투자사업이다.
- 이들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단계, 그리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 일정 기간, 이사업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과 지역 경제 및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 또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개발·제시되는 객관적·정량적 성과지표는 국가어항 개발 관련 재정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점검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은 어항의 건설 및 관리주체가 누구인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며, 어항의 기능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어항개발사업의 모니터링 평가방법을 달리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모니터링 대상 및 표본의 선택

(1) 모니터링 대상

- 본 조사는 국가어항 개발사업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후 현실을 반영한 개선된 어촌지역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어항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는 전국의 110개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에는 다기능 어항 13개가 포함되어 있다.

<표 V-1> 국가어항 모니터링 대상

<국가어항 110개>
<p>선진포항(웅진), 궁촌항(삼척), 남당항(홍성), 삼길포항(서산), 구시포항(고창), 우이도항(신안), 보옥항(완도), 회진항(장흥), 도장항(완도), 연도항(여수), 남양항(울릉), 호두항(통영), 대포항(거제), 하효항(서귀포), 다대포항(부산), 울도항(웅진), 장봉항(웅진), 덕적도항(웅진), 방어진항(울산), 대진항(고성), 거진항(고성), 아야진항(고성), 공현진항(고성), 남애항(양양), 수산항(양양), 사천진항(강릉), 금진항(강릉), 덕산항(삼척), 장호항(삼척), 임원항(삼척), 안흥항(태안), 모항항(태안), 오천항(보령), 외연도항(보령), 어청도항(군산), 말도항(군산), 연도항(군산), 위도항(부안), 돌산항(여수), 안도항(여수), 낭도항(여수), 초도항(여수), 녹동항(고흥), 발포항(고흥), 시산항(고흥), 풍남항(고흥), 여호항(고흥), 계마항(영광), 안마항(영광), 원평항(신안), 전장포항(신안), 소흑산도항(신안), 서거차항(진도), 서망항(진도), 수품항(진도), 청산도항(완도), 소안항(완도), 사동항(완도), 여서항(완도), 득암항(완도), 어란진항(해남), 죽변항(울진), 사동항(울진), 오산항(울진), 구산항(울진), 대진항(영덕), 강구항(영덕), 구계항(영덕), 축산항(영덕), 대보항(포항), 감포항(경주), 읍천항(경주), 저동항(울릉), 현포항(울릉), 광암항(마산), 원전항(마산), 외포항(거제), 능포항(거제), 다대다포항(거제), 구조라항(거제), 신수항(사천), 능양항(통영), 삼덕항(통영), 옥지항(통영), 매물도항(통영), 미조항(남해), 물건항(남해), 신양항(제주), 도두항(제주), 위미항(서귀포), 김녕항(제주), 천성항(강서구), 궁평항(화성시), 장고항(당진군), 이목항(완도군), 노량항(하동군), 남포항(고성군)</p>

(2) 모니터링 표본의 선택

- 전국 110개 국가어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1,166명과 시군 공무원 90명을 대상으로 예상 성과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으며, 프로그램 모니터링의 대상 또한 성과 모니터링의 대상과 같이 하였다.
- 표본추출은 사업별 유의표집법을 사용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주로 전화설문조사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공무원의 경우 팩스를 통한 지면설문방법도 병행하였다.

<표 V-2>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모니터링 대상 표본

구분	공무원	지역주민	비고
모집단	국가어항개발사업 담당 공무원	대상 지역 주민	
표본수	90	1,166	
표본추출	사업별 유의표집	사업별 유의표집	
조사방법	전화 및 팩스조사	전화조사	
조사일자	2010.12.08~22(15일간)	2010.12.08~22(15일간)	

다. 모니터링 내용

- 국가어항 개발사업 모니터링의 추진 방향은 크게 다음 4단계로 구분된다.
 - 1단계 : 모니터링의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법론 및 지표 개발
 - 2단계(성과 모니터링) : 사업대상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제·사회적 조사(공간적 성과모니터링) 및 국가어항 개발전·후 경제·사회적 효과분석(과거추세에 의한 성과모니터링)
 - 3단계(프로그램 모니터링) : 사업대상지역의 공무원 및 어업인들의 사업 인식도 조사
 - 4단계(고객 만족도 조사) : 사업의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어업인과 어항을 찾는 방문객들의 만족도 조사
- 모니터링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설정하도록 하였다.
 - 목적 부합성 :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모니터링 목적에 맞게 지표 설정
 - 간결성 : 모니터링 조사 목적을 달성하면서 가급적 조사 지표는 간결성을 유지하고 복잡성을 배제
 - 답변 용이성 : 응답자가 대답이 용이하도록 설문내용을 작성

1) 성과모니터링

-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효과 평가 즉 성과 모니터링은 공간적 성과모니터링과 과거 추세에 의한 성과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 공간적 성과모니터링 : 어항개발의 효과를 공간적으로 비교하게 된다. 즉 어항이 개발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성과모니터링을 통한 효과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 과거추세에 의한 성과모니터링 : 어항개발 전·후의 목적 달성도 및 효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평가하게 된다.

(1) 공간적 성과 모니터링

- 어항개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크게 i) 계획대비 성과지표와 ii) 개발성과지표로 분류하여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계획대비 성과지표조사는 어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향후 성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했으나,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성과지표를 조사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계획대비 성과지표 조사보다는 개발성과지표를 주로 분석하게 된다.
- 성과지표는 어항개발의 합목적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어항개발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사업진척도, 어촌지역 발전정도, 정주여건, 소득분석, 수산업 발전정도 등을 분석하게 된다.

<표 V-3>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공간적 성과 모니터링 지표

지표	항목	단위	시도조사/항별조사	세력권/읍	비고
사업진척도	시도별 예산 집행비율	%	시도조사	세력권	국가어항
	항별 예산 집행비율	%	항별조사	세력권	국가어항
	시도별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완공율	%	시도조사	세력권	국가어항
	항별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완공율	%	항별조사	세력권	국가어항
어촌지역 발전정도	어촌계 유형	%	항별조사	세력권	국가어항
정주여건	가구/어업가구	호	시도조사	세력권	국가어항
	인구/어업인구	명	시도조사	세력권	국가어항
소득분석	어가당 평균소득	천원	시도조사	세력권	국가어항
수산업 발전정도	연평균 수산물 생산량	톤	시도조사	세력권	국가어항
	연평균 수산물 생산고	백만원	시도조사	세력권	국가어항
	재적어선척수	척	시도조사	세력권	국가어항

(2) 과거추세에 의한 성과모니터링

- 과거추세에 의한 성과모니터링은 어항개발 전·후의 목적 달성도 및 효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평가하게 된다.
- 어항개발 전·후 효과분석시 어항공사의 분산투자방식에 따른 공사기간의 장기화, 착공시점과 완공시점의 기준설정, 지역적인 공간설정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일부지역의 대표어항을 선정하여 국가어항 개발 전·후 효과를 비교하였다.
- 성과지표는 어항개발의 과거 추세를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서 가구, 인구, 평균소득, 어선세력, 수산물 생산실적 등을 분석하였다.

<표 V-4>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과거추세에 의한 성과 모니터링 지표

지표	항목	단위	비교방법	비고
가구	전체/어가	호	과거추세 및 착공 전·후 비교	
인구	전체/어업인구	명	과거추세 및 착공 전·후 비교	
평균소득	평균어가소득	천원	과거추세 및 착공 전·후 비교	
어선세력	어선척수	척	과거추세 및 착공 전·후 비교	
수산물 생산	생산물량/생산금액	톤/ 백만원	과거추세 및 착공 전·후 비교	

2) 프로그램 모니터링

- 국가어항 개발사업이 실시된 지역의 어업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인식도, 사업의 인정도, 사업의 유효도,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게 된다.
- 사업 인식도는 사업인지도, 이해도, 사업의 명확성으로 구분된다. 사업의 인지도는 어촌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게 된다. 사업의 이해도는 수행중인 사업의 내용을 대체로 잘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내용의 명확성은 수행중인 사업의 내용이 어업인들이 이해하고 따라 하기에 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다고 생각하는가의 여부를 의미하게 된다.
- 사업 인정도는 사업의 필요성, 수준의 적절성, 목적 부합성을 의미한다. 사업의 필요성은 수행중인 사업이 어촌계(마을)의 활성화 방향에 맞다고 생각하는가의 여부를 묻게 된다. 수준의 적절성은 사업의 현재 진행 수준은 어촌계(마을)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가의 여부이다. 목적 부합성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유지될 경우 어촌계(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어촌 및 어항의 개발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를 묻게 된다.
- 사업 유효도는 예산가능성, 집행효율성, 목적 달성도 등을 모니터링

하게 된다. 우선 예산 가용성은 사업 추진에 예산은 충분히 지원되었다고 생각하는가의 여부를 묻게 된다. 집행 효율성은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의 행정력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의 여부이다. 마지막으로 목적 달성도는 사업을 어촌 및 어항 활성화를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하는가의 여부이다.

<표 V-5> 국가어항 프로그램 모니터링 지표

과 제	지 표	응 답	대 상
사업의 인식도	사업의 인지도	2 단계	어업인
	사업의 이해도		
	사업의 명확성		
사업의 인정도	사업의 필요성	7단계	어업인
	사업수준의 적절성		
	사업목적의 부합성		
사업의 유효도	예산의 가용성		
	집행의 효율성		
	사업목적의 달성도		
어업활동	편리성		
	효율성		
사업강화 필요성			

1.2 국가어항개발사업 효과분석

가. 성과 모니터링에 의한 효과분석

- 어항개발사업의 효과분석 즉, 성과모니터링은 공간적 성과모니터링과 과거 추세에 의한 성과모니터링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1) 공간적 성과모니터링

- 성과지표는 어항개발의 합목적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어항개발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사업진척도, 어촌지역 발전정도, 정주여건, 소득분석, 수산업 발전정도 등을 분석하게 된다.

(1) 사업진척도

- 국가어항의 2009년말 기준으로 예산집행율은 약 72.1%이다. 시도별로 보면 울산이 99.8%로 가장 높고 다음이 제주도가 86.0%, 강원이 80.4%순이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공평항이 신규 지정되면서 집행율이 0%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경북이 62.5%, 충남이 63.9%의 예산집행율을 보이고 있다.

<표 V-6> 시도별 예산집행율

단위 : 백만원

종별	총투자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비율
부산	117,099	84,399	32,700	72.1%
인천	99,410	76,069	23,341	76.5%
울산	40,774	40,709	65	99.8%
경기	11,054	0	11,054	0.0%
강원	328,885	264,286	64,599	80.4%
충남	307,472	196,353	111,119	63.9%
전북	201,132	155,359	45,773	77.2%
전남	1,076,105	814,541	261,564	75.7%
경북	625,795	391,268	234,527	62.5%
경남	495,161	332,054	163,107	67.1%
제주	191,543	164,819	26,724	86.0%
계	3,494,430	2,519,857	974,573	72.1%

<표 V-7> 국가어항별 예산집행비율-1

단위 : 백만원

어항명	총투자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비율
천 성	32,700	0	32,700	0.0%
어 유 정	26,250	9,340	16,910	35.6%
장 봉	753	17	736	2.3%
울 도	35,206	29,511	5,695	83.8%
방 어 진	22,539	22,474	65	99.7%
궁 평	11,054	0	11,054	0.0%
대 진(강)	17,793	15,574	2,219	87.5%
아 야 진	25,769	21,369	4,400	82.9%
수 산	46,457	46,291	166	99.6%
남 애	16,795	14,722	2,073	87.7%
사 천 진	28,961	7,251	21,710	25.0%
궁 촌	30,402	15,493	14,909	51.0%
임 원	37,025	17,903	19,122	48.4%
삼 길 포	31,315	23,607	7,708	75.4%
모 항	67,853	44,345	23,508	65.4%
안 흥	59,839	38,366	21,473	64.1%
남 당	35,994	31,333	4,661	87.1%
오 천	22,385	21,818	567	97.5%
외 연 도	14,092	14,025	67	99.5%
흥 원	26,132	22,859	3,273	87.5%
장 고	49,862	0	49,862	0.0%
어 청 도	69,061	60,815	8,246	88.1%
연 도	7,968	7,615	353	95.6%
말 도	21,599	15,556	6,043	72.0%
위 도	17,540	12,608	4,932	71.9%
구 시 포	54,888	28,689	26,199	52.3%
계 마	38,326	14,263	24,063	37.2%
전 장 포	34,129	6,785	27,344	19.9%
원 평	20,591	4,581	16,010	22.2%

<표 V-8> 국가어항별 예산집행비율-2

단위 : 백만원

어항명	총투자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비율
우 이 도	22,697	20,197	2,500	89.0%
가거도(소흑산도)	151,296	150,498	798	99.5%
서 망	27,535	15,452	12,083	56.1%
서 거 차	15,587	13,670	1,917	87.7%
어 란 진	15,227	10,426	4,801	68.5%
득 암	36,470	35,488	982	97.3%
사 동(전)	24,619	13,841	10,778	56.2%
도 장	41,982	15,567	26,415	37.1%
청 산 도	18,529	9,346	9,183	50.4%
소 안	12,237	11,199	1,038	91.5%
보 옥	65,335	64,419	916	98.6%
이 목	33,622	0	33,622	0.0%
회 진	36,714	19,791	16,923	53.9%
녹 동	62,591	32,591	30,000	52.1%
풍 남	51,766	26,968	24,798	52.1%
여 호	23,272	21,936	1,336	94.3%
국 동	31,035	30,992	43	99.9%
연 도	36,225	25,647	10,578	70.8%
초 도	53,812	48,376	5,436	89.9%
죽 변	67,383	15,335	52,048	22.8%
오 산	42,372	40,257	2,115	95.0%
사 동(경)	21,081	20,928	153	99.3%
구 산	45,712	40,495	5,217	88.6%
축 산	32,046	28,161	3,885	87.9%
강 구	47,629	15,730	31,899	33.0%
대 보	18,794	14,834	3,960	78.9%
감 포	82,598	29,658	52,940	35.9%
현포보강	22,881	353	22,528	1.5%
저동보강	51,493	7,434	44,059	14.4%
남 양	39,181	23,458	15,723	59.9%
능 포	10,071	8,831	1,240	87.7%

<표 V-9> 국가어항별 예산집행비율-2

단위 : 백만원

어항명	총투자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비율
구 조 라	37,386	16,282	21,104	43.6%
대포근포 (대 포)	38,588	18,801	19,787	48.7%
원 전	23,931	23,024	907	96.2%
남 포	21,656	0	21,656	0.0%
호 두	30,147	17,652	12,495	58.6%
육 지	25,274	24,602	672	97.3%
신 수	7,113	7,113	0	100.0%
노 량	18,059	0	18,059	0.0%
미 조	53,049	16,182	36,867	30.5%
미조(북항)	36,916	6,596	30,320	17.9%
신 양	34,869	30,869	4,000	88.5%
모 슬 포	32,476	21,776	10,700	67.1%
위 미	32,318	31,040	1,278	96.0%
하 효	39,805	29,059	10,746	73.0%

- 국가어항의 외곽시설 완공율은 91.2%로 사업진척도는 매우 높다. 외곽시설 중 방파제 역시 완공율이 91.0%로 외곽시설 완공율과 비슷하다. 외곽시설의 완공율은 울산이 1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제주가 97.7%, 충남이 97.6%, 인천이 96.5%로 대부분 80% 이상의 완공율을 보이고 있다.

<표 V-10> 시도별 외곽시설 완공율

단위:m, %

항별	시설계획		완공		완공율	
	외곽시설	방파제	외곽시설	방파제	외곽시설	방파제
부산	2,079	1,220	1,739	930	83.6%	76.2%
인천	2,894	2,260	2,794	2,160	96.5%	95.6%
울산	1,818	1,450	1,818	1,450	100.0%	100.0%
경기	1,500	1,350	1,300	1,150	86.7%	85.2%
강원	13,017	9,394	11,926	8,509	91.6%	90.6%
충남	9,619	5,551	9,384	5,371	97.6%	96.8%
전북	5,490	3,802	4,772	3,336	86.9%	87.7%
전남	25,709	15,000	21,788	13,505	84.7%	90.0%
경북	14,555	11,427	14,018	9,776	96.3%	85.6%
경남	12,476	9,000	11,369	8,431	91.1%	93.7%
제주	6,139	6,139	5,999	5,999	97.7%	97.7%
계	95,296	66,593	86,907	60,617	91.2%	91.0%

- 한편 국가어항의 계류시설 완공율은 평균 87.0%로 외곽시설의 완공율 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계류시설 중 물양장의 완공율은 93.5%로 비교적 높았다. 시도별로 보면 울산 경기 등이 100.0%이고, 다음으로는 인천이 95.9%, 전북이 93.5%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계류시설의 완공율은 56.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11> 국가어항 계류시설 완공율

단위 : m², %

항별	시설계획		완공		완공율	
	계류시설	물양장	물양장	물양장	계류시설	물양장
부산	3,273	2,345	1,834	1,834	56.0%	78.2%
인천	1,722	955	1,652	885	95.9%	92.7%
울산	1,859	1,829	1,859	1,829	100.0%	100.0%
경기	340	310	340	310	100.0%	100.0%
강원	10,236	7,606	8,779	7,396	85.8%	97.2%
충남	5,635	3,795	5,098	3,532	90.5%	93.1%
전북	3,075	1,906	2,875	1,736	93.5%	91.1%
전남	23,330	15,398	20,183	14,099	86.5%	91.6%
경북	12,200	9,806	10,359	9,332	84.9%	95.2%
경남	12,569	9,768	11,399	9,373	90.7%	96.0%
제주	3,876	3,876	3,545	3,545	91.5%	91.5%
계	78,115	57,594	67,923	53,871	87.0%	93.5%

어촌·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용역

<표 V-12 > 어항별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현황-1

시도	항명	시설계획(전체계획)				'09년까지 시설현황			
		계류시설(단위:m)		외곽시설(단위:m)		계류시설(단위:m)		외곽시설(단위:m)	
		계	물양장	계	방파제	계	물양장	계	방파제
총계	110	78,115	57,594	95,296	66,593	67,923	53,871	86,907	60,617
부산	3	3,273	2,345	2,079	1,220	1,834	1,834	1,739	930
	다대포항	870	870	0	0	870	870	0	0
	천성항	1,048	120	410	410	0	0	120	120
	대변항	1,355	1,355	1,669	810	964	964	1,619	810
인천	5	1,722	955	2,894	2,260	1,652	885	2,794	2,160
	어유정항	398	280	343	300	398	280	343	300
	장봉항	70	70	140	140	0	0	40	40
	덕적도항	160	160	536	394	160	160	536	394
	울도항	494	100	959	784	494	100	959	784
	선진포항	600	345	916	642	600	345	916	642
울산	2	1,859	1,829	1,818	1,450	1,859	1,829	1,818	1,450
	정자항	795	795	878	780	795	795	878	780
	방어진항	1,064	1,034	940	670	1,064	1,034	940	670
경기	1	340	310	1,500	1,350	340	310	1,300	1,150
	궁평항	340	310	1,500	1,350	340	310	1,300	1,150
강원	14	10,236	7,606	13,017	9,394	8,779	7,396	11,926	8,509
	대진항	791	791	649	584	791	791	649	584
	거진항	1,331	1,331	1,842	728	1,331	1,331	1,842	728
	공현진항	290	250	923	675	290	250	923	675
	아야진항	1,043	677	695	695	988	677	615	615
	대포항	1,158	740	1,200	620	630	630	940	360
	수산항	750	430	1,005	1,005	750	430	1,005	1,005
	남애항	627	627	600	600	627	627	600	535
	사천진항	575	380	1,385	802	575	380	857	492
	강릉항	708	401	1,314	1,074	708	401	1,314	1,074
	금진항	484	454	850	640	484	454	850	640
	궁촌항	230	100	645	483	50	0	375	228
	덕산항	430	315	460	460	375	315	460	460
	장호항	487	417	486	290	487	417	486	290
	임원항	1,332	693	963	738	693	693	1,010	823

<표 V-13 > 어항별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현황-2

시도	항명	시설계획(전체계획)				'09년까지 시설현황			
		계류시설(단위:m)		외곽시설(단위:m)		계류시설(단위:m)		외곽시설(단위:m)	
		계	물양장	계	방파제	계	물양장	계	방파제
충남	8	5,635	3,795	9,619	5,551	5,098	3,532	9,384	5,371
	삼길포항	502	357	355	300	314	284	300	300
	모항항	340	310	2,070	835	340	310	2,070	835
	안흥항	1,505	1,200	2,712	1,598	1,505	1,200	2,532	1,418
	남당항	476	275	2,016	1,010	476	275	2,016	1,010
	오천항	515	470	0	0	515	470	0	0
	외연도항	480	410	922	507	480	380	922	507
	홍원항	1,135	605	1,001	1,001	786	445	1,001	1,001
	장고항항	682	168	543	300	682	168	543	300
전북	6	3,075	1,906	5,490	3,802	2,875	1,736	4,772	3,336
	어청도	345	250	934	750	345	250	934	750
	연도	635	255	810	810	635	255	810	810
	말도	160	160	881	377	160	160	881	377
	격포	937	591	990	990	937	591	990	990
	위도	728	410	888	285	728	410	888	285
	구시포	270	240	987	590	70	70	269	124
전남	31	23,330	15,398	25,709	15,000	20,183	14,099	21,788	13,505
	계마항	928	280	1,690	710	928	280	790	450
	안마항	290	160	1,096	850	290	160	1,096	850
	전장포항	614	240	375	375	339	240	0	0
	원평항	520	330	1,884	480	330	330	1,035	480
	가거도항	800	730	1,108	530	800	730	1,108	530
	우이도항	397	295	435	435	397	280	435	435
	수품항	270	230	600	530	270	230	600	530
	서망항	795	480	730	730	795	480	730	730
	서거차항	762	732	518	518	762	732	518	405
	어란진항	1,204	430	321	321	1,103	430	321	321
	마량항	771	466	790	790	771	466	790	790
	득암항	501	445	883	753	423	377	883	753
	사동항	838	315	962	462	717	315	682	342
	도장항	1,140	350	255	255	409	205	128	128
	청산도항	1,149	435	617	487	993	435	487	487
	소안항	150	120	1,185	865	150	120	1,185	865
	보옥항	630	349	680	680	630	349	680	680

<표 V-14 > 어항별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현황-3

시도	항명	시설계획(전체계획)				'09년까지 시설현황			
		계류시설(단위:m)		외곽시설(단위:m)		계류시설(단위:m)		외곽시설(단위:m)	
		계	물양장	계	방파제	계	물양장	계	방파제
	여서항	579	220	550	485	579	220	550	485
	이목항	350	267	0	0	263	150	0	0
	녹동항	1,915	1,486	1,326	650	1,915	1,486	1,326	650
	풍남항	415	380	1,326	578	415	380	1,326	578
	여호항	445	415	988	499	445	415	988	499
	발포항	465	435	725	420	465	435	725	420
	시산항	460	390	1,710	604	460	390	1,550	604
	국동항	3,639	2,960	676	200	3,369	2,794	450	200
	남도항	300	250	859	357	300	250	859	357
	돌산항	495	465	155	155	495	465	155	155
	안도항	459	389	584	201	459	389	584	201
	연도항	955	570	598	250	190	0	180	0
	초도항	504	374	917	830	504	374	667	580
	회진항	590	410	1,166	0	217	192	960	0
경북	15	12,200	9,806	14,555	11,427	10,359	9,332	14,018	9,776
	죽변항	1,711	1,511	1,543	1,180	1,307	1,307	533	170
	오산항	405	330	1,790	1,135	405	330	1,790	1,135
	사동항	270	240	1,578	966	270	240	1,578	966
	구산항	425	350	1,856	1,316	465	350	1,706	1,316
	대진항	465	310	382	382	340	310	382	382
	축산항	1,155	995	794	545	945	945	683	545
	강구항	1,692	1,010	260	1,030	1,010	1,010	1,553	641
	구계항	405	375	518	448	405	375	518	448
	대보항	704	610	670	530	704	670	764	530
	양포항	1,030	720	1,250	700	950	720	1,150	700
	감포항	1,475	1,475	866	615	1,340	1,340	728	543
	읍천항	646	305	500	450	616	305	450	450
	현포항	480	435	1,310	1,055	380	350	1,140	985
	남양항	80	60	383	220	0	0	188	110
	저동항	1,257	1,080	855	855	1,222	1,080	855	855

<표 V-15 > 어항별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현황-4

시도	항명	시설계획(전체계획)				'09년까지 시설현황			
		계류시설(단위:m)		외곽시설(단위:m)		계류시설(단위:m)		외곽시설(단위:m)	
		계	물양장	계	방파제	계	물양장	계	방파제
경남	19	12,569	9,768	12,476	9,000	11,399	9,373	11,369	8,431
	외포항	597	532	475	344	597	532	475	344
	능포항	700	680	600	600	700	680	600	600
	지세포항	966	728	1,140	450	1,030	728	1,140	450
	구조라항	485	320	1,205	531	475	320	588	301
	다대다포항	610	280	600	600	610	280	600	600
	대포항	890	420	440	440	285	210	125	151
	광암항	905	685	530	420	905	685	530	420
	원전항	756	470	758	758	756	470	758	758
	맥전포항	700	595	871	605	741	595	871	605
	남포항	182	182	100	100	182	182	100	100
	삼덕항	705	645	335	335	705	645	335	335
	능양항	656	596	548	310	656	596	548	310
	옥지항	1,154	1,054	688	638	1,104	1,054	688	638
	호두항	610	265	490	490	0	0	335	335
	매물도항	290	260	384	384	290	290	384	384
	신수항	778	525	400	400	778	525	400	400
	물건항	360	360	1,015	770	360	360	1,015	770
	미조항	956	956	1,542	470	956	1,006	1,542	595
	노량항	269	215	355	355	269	215	335	335
제주	6	3,876	3,876	6,139	6,139	3,545	3,545	5,999	5,999
	김녕항	340	340	1,050	1,050	340	340	1,050	1,050
	도두항	273	273	956	956	273	273	956	956
	신양항	655	655	935	935	655	655	935	935
	하효항	380	380	541	541	49	49	401	401
	모슬포항	1,338	1,338	1,967	1,967	1,338	1,338	1,967	1,967
	위미항	890	890	690	690	890	890	690	690

(2) 어촌지역의 발전정도

- 국가어항개발지역의 발전정도를 보기 위하여 ‘2009 어촌계분류평정표’를 활용하여 어촌계의 발전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어항개발지역의 어촌계¹⁾ 중 발전정도가 가장 높은 복지어촌계는 24.5%, 그다음 발전 정도인 자립어촌계는 42.2%, 성장어촌계는 3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이 없는 일반 어촌계 1,572개와 비교할 때 일반어촌계의 복지어촌계 비율은 7.4%, 자립어촌계 비율은 26.2%, 성장어촌계는 66.2%임을 감안하면 국가어항이 있는 지역 어촌계의 발전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V-16> 국가어항 개발 지역 어촌계의 발전정도 유형

어촌계 유형	국가어항 지역	비율(%)	비사업지역	비율(%)
복 지	25	24.5%	116	7.4%
자 립	43	42.2%	412	26.2%
성 장	34	33.3%	1,044	66.4%
계	102	100.0%	1,572	100.0%

(3) 정주여건

- 국가어항의 정주여건을 보면 국가어항, 지방어항 등을 배후로 하지 않는 기타 어촌계²⁾와 비교할 때 가구수와 인구수가 2.4~2.6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어업가구의 경우 국가어항이 있는 어촌계의 어업가구는 평균 140가구로 기타어촌계의 평균 71가구보다 약 두배정도 많았으며, 어업인구의 경우 평균 269명으로 기타어촌계의 112명에 비해 2.4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 신규로 지정된 국가어항 지역 제외

2) 여기서는 분석의 유효성을 위하여 무역항 및 연안항을 배후로 하고 있는 어촌계, 내륙어촌계, 그리고 도시근교어촌계 중 어가비율이 극히 낮은 어촌계는 제외하였다.

<표 V-17> 국가어항의 정주여건 비교, 단위 : 호, 명

분류	가구	어업가구	인구	어업인구
국가어항	773	140	2,187	269
기타지역	317	71	846	112
비율	2.4	2.0	2.6	2.4

- 지역별로는 어촌계당 가구, 어업가구, 인구, 어업인구 등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부산지역이 가구, 인구, 어업가구, 어업인구 등에서 압도적으로 높아 정주여건이 가장 좋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그밖에 가구수와 인구수는 제주, 경남, 전남 순이며, 어업인구는 제주 충청, 강원 지역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18> 지역별 정주여건 비교 분석, 단위 : 호, 명

지역	가구	어업가구	인구	어업인구
경인	266	116	640	150
강원	522	188	1,256	443
충청	493	194	1,205	398
전북	194	100	483	184
전남	688	125	2,441	277
경북	514	120	1,168	187
경남	834	85	2,251	159
부산	7,900	456	23,615	808
제주	1,178	266	2,591	323
평균	773	140	2,187	269

(4) 소득분석

- 국가어항의 어가당 평균소득은 2,638만원으로 기타어촌계 2,594만원보다 약 1.0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19> 국가어항 배후 어촌계의 어가 소득, 단위 : 천원, %

구분	국가어항	기타어촌계	비율
어가당소득	26,380	25,938	1.02

(5) 수산업 발전정도

- 국가어항 배후어촌계의 연평균수산물 생산량은 582톤으로 비사업지역 296톤보다 약 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산물생산액은 약 16억원으로 비사업지역의 12억원보다 1.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적어선척수 역시 67척으로 비사업지역 38척보다 약 1.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20> 수산업 발전정도의 비교, 단위 : 톤, 백만원 척

구분	국가어항	비사업지역	비율
연평균 수산물 생산량	582	296	2.0
연평균 수산물 생산고	1,556	1,233	1.3
재적어선척수	67	38	1.8

- 국가어항 배후어촌계의 지역별 평균 수산물생산량과 생산액은 부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전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21> 지역별 수산업 발전정도, 단위 : 톤, 백만원, 척

구분	수산물생산량	수산물생산액	어선척수
경인	41	591	29
강원	551	1,762	84
충청	223	1,833	119
전북	163	863	119
전남	1,246	2,496	80
경북	54	597	32
경남	338	975	43
부산	2,455	7,860	208
제주	34	182	48

2) 과거추세에 의한 성과모니터링

(1) 과거추세에 의한 성과모니터링 대상항 선정

- 국가어항의 개발전후 효과를 비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한 이유로는,
 - 첫째, 국가어항 공사기간이 매우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대부분 10년 전후이며 길게는 30년까지 소요되기도 한다. 이는 과거에 집중투자예산이 아니라 분산투자방식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와 집중투자 예산방식으로 전환되어 비교적 공기가 짧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공기가 길어지는 경우 수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환된 상황이므로 대체로 비교의 의미가 없어진다. 예컨대 수산업이 활발했던 197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 둘째, 국가어항의 경우 대체로 기본시설만 갖추어지면 어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착공시점부터 완공시점까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완공시점의 경우 착공이 전시점과 비교하면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비교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착공시점의 경우 어항개발효과라기 보다는 어항공사효과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착공시점도 정확한 어항개발 효과를 나타내기가 어렵다. 또한 착공시점과 완공시점 중 가운데 구간을 택할 수도 있으나 이는 어항간의 비교시점이 사실상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분석할 시에는 사실상 제한된 효과만을 분석하게 된다.
 - 셋째, 다음으로 지역적인 공간 설정부분이다. 이 부문은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개발효과가 미치느냐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하다. 따라서 현재로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도출되기 이전에는 어항을 이용하는 대표어촌계 중심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 넷째, 통계수집의 어려움이다. 어항개발전후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해야 하나, 현재 어항개발 전후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통계는 어촌계분류평정표상의 통계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어촌계 중심의 조사이므로 오차가 매우 크다는 단

점이 있다. 그럼에도 다른 대체통계가 없기 때문에 어촌계분류평정표상의 통계를 이용해야 한다.

- 결국 상기와 같은 어항개발전후효과 분석상의 제한을 고려할 때 샘플로 분석할 수 있는 국가어항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어항을 선정하여 국가어항개발전후효과를 비교하였다.
 - 첫째, 착공연도가 2000년 이후의 어항으로 완공된 어항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공기가 짧으면서도 2000년 전과 비교하므로 어느 정도 분석상의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둘째, 어촌계분류평정표상의 통계가 비교적 정확한 어촌계가 있는 어항을 택하였다. 그렇게 해야만 분석결과가 유의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천의 선진포항(2002~2008), 강원도의 공현진항(2001~2007), 충남의 삼길포항(2003~2009), 남당항(2001~2008), 전라남도의 여호항(2001~2007)과 회진항(2002~2011), 남양항(2005~공사중), 원전항(2004~2007), 호두항(2004~2010), 하효항(2003~2011) 등 10개 국가어항을 대상항으로 선정하였다.

<표 V-22> 과거추세에 의한 성과 모니터링 대상항

지역	국가어항	개발년도	비고
동해안	공현진항	2001~2007	
	남양항	2005~공사중	
서해안	선진포항	2002~2008	
	삼길포항	2003~2009	
	남당항	2001~2008	
남해안	여호항	2001~2007	
	회진항	2002~2011	
	원전항	2004~2007	
	호두항	2004~2010	
	하효항	2003~2011	

(2) 국가어항 개발 전·후 성과 모니터링에 의한 효과분석

① 공현진항

- 강원도의 공현진항은 육지국가어항으로 1999년에 기본계획, 2001년에 실시설계이후 2002~2009년까지 공사를 하였다.
- 공현진항의 경우 국가어항 공사기간과 완공이후에 다소 어항개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가구 수의 경우 착공전에는 연평균 -11.6%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공사기간 동안 연평균 -0.6%로 감소하더니 완공이후에는 16.1%로 증가하였다. 인구역시 착공전에는 연평균 -14.3%로 감소하였으나, 공사기간에는 -3.5%로 감소되었고, 완공이후에는 49.9%로 증가되었다, 평균소득의 경우 착공전에는 -5.1%로 감소하였지만 공사기간동안에는 연평균 5.2%의 성장을 보였다. 완공이후에는 -5.3% 감소하였지만, 이는 1년치 통계이므로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수산업의 경우 공사기간동안에는 착공전보다 퇴보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완공이후에는 조사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일단 어항개발이 어업쇠퇴의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V-23> 공현진 어항의 개발전·후 효과분석

단위 : 호, 명, 천원, 척, 톤, 백만원

구분		1995	2000	2008	2009	착공전	공사기간	완공이후
가구	전체	302	163	155	180	-11.6%	-0.6%	16.1%
	어가	56	54	40	29	-0.7%	-3.7%	-27.5%
인구	전체	997	461	347	520	-14.3%	-3.5%	49.9%
	어업	202	131	56	50	-8.3%	-10.1%	-10.7%
평균소득		16,500	12,700	19,000	18,000	-5.1%	5.2%	-5.3%
어선세력		24	21	21	12	-2.6%	0.0%	-42.9%
수산물 생산	물량	210	50	10	-	-25.0%	-18.2%	-
	금액	760	200	220	-	-23.4%	1.2%	-

② 남양항

- 경북의 남양항은 1999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에 공사에 착수하였다. 2008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2007년에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여전히 공사 중에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완공이후의 어항개발효과분석을 못하고 착공이후의 분석만이 가능하다.
- 착공전과 착공이후를 비교한 결과 가구수 의 증가율은 착공이전 10년간 1.7%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착공이후에는 0.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공사이전 10년간 1.6%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공사기간에는 0.4%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구의 경우 착공 10년간 0.7%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공사기간에는 감소율이 0.2%로 감소하여 감소율이 하락하였다. 한편 평균소득의 경우 착공전에는 2.2%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공사기간동안에는 3.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감소의 폭이 확대되었다. 수산물의 물량과 생산량은 큰 폭으로 증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24> 남양항의 개발전후 효과 분석

단위 : 호, 명, 천원, 척, 톤, 백만원

구분		1995	2005	2009	착공전	공사기간
가구	전체	302	357	355	1.7%	-0.1%
	어가	59	69	68	1.6%	-0.4%
인구	전체	874	814	808	-0.7%	-0.2%
	어업	179	160	158	-1.1%	-0.3%
평균소득		17,518	14,090	12,000	-2.2%	-3.9%
어선세력		13	10	7	-2.6%	-8.5%
수산물 생산	물량	10.9	2	32	-15.6%	100.0%
	금액	64	15	203	-13.5%	91.8%

③ 선진포항

- 인천 선진포 어항은 도서지역 어항으로 기본계획이 2000년에 수립되고 2002.6에 착공되어 2009.6에 완공되었다.
- 어항의 개발전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1995~2000년을 착공전, 2000~2008년을 공사기간 2008~2009년을 완공이후로 하여 분석하였다.
- 분석결과, 국가어항개발이후 전체가구 수와 어업인구 수는 증가하였지만, 기타 뚜렷한 효과는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수산물생산금액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통계상의 착오인 것으로 간주되어지고 있으며, 정확한 것은 2010년 통계집이 나와야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선진포항은 완공한지 이제 1년 정도 되었고, 도서어항으로서 한계로 인해 커다란 효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는 바, 추이를 더 관찰 할 필요가 있다.

<표 V-25> 선진포 어항의 개발 전·후 효과분석

단위 : 호, 명, 천원, 척, 톤, 백만원

구분		1995	2000	2008	2009	착공전	공사기간	완공이후
가구	전체	197	242	230	407	4.2%	-0.6%	77.0%
	어가	147	136	145	103	-1.5%	0.8%	-29.0%
인구	전체	609	612	498	1,201	0.1%	-2.5%	141.2%
	어업	387	349	174	198	-2.0%	-8.3%	13.8%
평균소득		18,300	20,000	18,500	15,000	1.8%	-1.0%	-18.9%
어선세력		48	57	42	30	3.5%	-3.7%	-28.6%
수산물 생산	물량	48	57	136	22	3.5%	11.5%	-83.8%
	금액	297	343	368	1800	2.9%	0.9%	389.1%

④ 삼길포항

- 충남의 삼길포항은 2000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에 실시계획을 하였다. 당초 2008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공기가 지연되어 2011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완공이후의 어항개발효과 분석을 못하고 착공이후의 분석만이 가능하다.
- 착공전과 착공이후를 비교한 결과 가구 수의 증가율은 연평균 3.5% 감소에서 4.0%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인구는 -3.1% 감소에서 2.1%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어가의 경우 착공전 연평균 4.4% 증가에서 -5.2% 감소하였다. 평균소득의 경우 착공전 7.9% 증가에서 공사기간 4.3%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어선세력의 감소율은 착공 이전 8.4%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공사기간에는 연평균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6> 삼길포항의 개발전후 효과분석

단위 : 호, 명, 천원, 척, 톤, 백만원

구분		1995	2000	2009	착공전	공사기간
가구	전체	612	511	730	-3.5%	4.0%
	어가	196	243	150	4.4%	-5.2%
인구	전체	1,836	1,570	1,890	-3.1%	2.1%
	어업	588	837	280	7.3%	-11.5%
평균소득		16,400	24,000	35,000	7.9%	4.3%
어선세력		98	147	89	8.4%	-5.4%
수산물 생산	물량	663	260	N.A	-17.1%	N.A
	금액	1,560	521	N.A	-19.7%	N.A

⑤ 남당항

- 충남의 남당항은 1999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에 실시설계를 하였다. 당초 2008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공기가 지연되어 2011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 착공전과 착공이후를 비교한 결과 가구 수의 증가율은 연평균 6.4%에서 1.8%로 감소하였으나, 인구는 연평균 5.0% 감소에서 1.0%로 증가하였다. 특히 어업인구는 연평균 15.1% 감소에서 5.4%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평균소득의 경우 착공전 0.8% 증가에서 공사기간 동안 7.5%로 증가하였다. 어선세력의 감소율은 연평균 3.9% 감소에서 1.1% 감소로 줄었다. 남당항의 경우 착공이후의 정주여건과 어업소득측면에서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27> 남당항의 개발전후 효과 분석

단위 : 호, 명, 천원, 척, 톤, 백만원

구분		1995	2000	2009	착공전	공사기간
가구	전체	187	255	300	6.4%	1.8%
	어가	158	192	200	4.0%	0.5%
인구	전체	823	637	695	-5.0%	1.0%
	어업	611	270	435	-15.1%	5.4%
평균소득		16,200	16,900	32,500	0.8%	7.5%
어선세력		67	55	50	-3.9%	-1.1%
수산물 생산	물량	150	260	N.A	11.6%	N.A
	금액	1,575	521	N.A	-19.8%	N.A

⑥ 여호항

- 전남의 여호항은 1999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에 실시설계를 하였다. 공사기간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이다.
- 여호항의 개발전후효과를 비교분석하면 가구의 경우 착공 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착공이후 완공까지 0.6%의 감소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타어촌지역의 가구 수 감소율과 비교할 때는 비교적 낮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완공이후 11.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어가의 경우 공사기간동안 10.6% 감소하였으나 완공이후 35.9%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어가소득의 경우 착공 전에는 3.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공사기간에는 연평균 5.5%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완공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선세력이 경우 여타어항과는 달리 어선세력도 공사기간 10.7% 증가하였고, 물량도 1.3%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8> 여호항의 개발전후 효과 분석

단위 : 호, 명, 천원, 척, 톤, 백만원

구분		1995	2000	2007	2009	착공전	공사기간	완공이후
가구	전체	145	145	138	107	0.0%	-0.7%	-11.9%
	어가	128	128	52	96	0.0%	-12.1%	35.9%
인구	전체	507	505	318	195	-0.1%	-6.4%	-21.7%
	어업	393	410	129	107	0.9%	-15.2%	-8.9%
평균소득		18,300	22,000	32,000	32,000	3.8%	5.5%	0.0%
어선세력		74	65	132	132	-2.6%	10.7%	0.0%
수산물 생산	물량	n.a	150	164	n.a	-	1.3%	-
	금액	n.a	225	1040	n.a	-	24.4%	-

⑦ 회진항

- 전남의 회진항은 1999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에 실시설계를 하였다. 당초 2010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공기가 지연되어 2011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완공이후의 어항개발효과분석을 못하고 착공이후의 분석만이 가능하다.
- 착공전과 착공이후를 비교한 결과 가구 수의 증가율은 착공이전 2.4%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공사기간동안 연평균 0.3%의 감소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비교적 낮은 감소율을 보인 것이다. 한편 어가의 경우 착공이전에는 연평균 5.9%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착공이후에는 약 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평균소득은 착공전 연평균 2.0% 증가율을 보였으나 착공이후에는 4.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V-29> 회진항의 개발전후 효과 분석

단위 : 호, 명, 천원, 척, 톤, 백만원

구분		1995	2000	2009	착공전	공사기간
가구	전체	422	474	461	2.4%	-0.3%
	어가	149	110	121	-5.9%	1.1%
인구	전체	1547	1403	1164	-1.9%	-2.1%
	어업	238	164	121	-7.2%	-3.3%
평균소득		18,992	21,000	32,000	2.0%	4.8%
어선세력		70	70	86	0.0%	2.3%
수산물 생산	물량	670	582	N.A	-2.8%	-
	금액	681	832	1,124	4.1%	3.4%

⑧ 원전향

- 경남의 원전향은 1999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본격적인 공사는 2004년에 시작하여 2007년에 기본시설이 완공되었다
- 원전향은 착공전과 착공이후를 비교하면 착공이전보다 눈에 띄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전체가구의 경우 착공 이전에는 연평균 7.6% 감소하였으나, 공사기간에는 약 7.5% 증가율을 보였다. 어가 역시 착공전에는 7.6% 감소율을 보였으나 착공이후에는 2.1%의 증가율을 보였다. 인구의 경우 착공이전에는 14.3%로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공사이후에는 0.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어업인구 역시 착공전에 6.1%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공사이후에는 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평균소득의 경우 착공전에는 연평균 7.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공사이후에는 8.6%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어선세력 및 수산물 생산량 역시 착공이전에는 감소추세였으나 착공이후에는 증가추세로 전환되었다. 한편 완공이후에는 공사기간보다 오히려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공사기간의 특수가 사라진 것으로 보이면 추후 효과 발생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다.

<표 V-30> 원전향의 개발전후 효과 분석

단위 : 호, 명, 천원, 척, 톤, 백만원

구분		1995	2004	2007	2009	착공전	공사기간	완공이후
가구	전체	116	78	97	80	-7.6%	7.5%	-9.2%
	어가	116	78	83	56	-7.6%	2.1%	-17.9%
인구	전체	492	227	229	160	-14.3%	0.3%	-16.4%
	어업	171	125	130	100	-6.1%	1.3%	-12.3%
평균소득		17,465	25,000	32,000	35,000	7.4%	8.6%	4.6%
어선세력		96	86	95	73	-2.2%	3.4%	-12.3%
수산물 생산	물량	736	464	514	n.a	-8.8%	3.5%	-
	금액	1,130	947	968	n.a	-3.5%	0.7%	-

⑨ 호두항

- 경남의 호두항은 1999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999년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본격적인 공사는 2004년에 시작되었고 여전히 공사 중에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완공이후의 어항개발효과분석을 못하고 착공이후의 분석만이 가능하다.
- 착공전과 착공이후를 비교한 결과 호두항 역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 수의 증가율은 착공이전 연평균 3.9%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착공이후에는 1.9% 감소율로 하락되었다. 어가역시 착공 전에는 21.3%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착공이후에는 2.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인구의 경우 전체인구는 착공이전에는 10.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착공이후는 5.5% 감소율을 보여 감소폭이 다소 하락되었다. 평균소득의 경우 착공이전에는 13.6%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착공이후에는 연평균 7.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소득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어선세력은 착공이전 6.2%의 감소에서 착공이후 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산물생산량은 다소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1> 호두항의 개발전후 효과 분석

단위 : 호, 명, 천원, 척, 톤, 백만원

구분		2000	2004	2009	착공전	공사기간
가구	전체	88	75	68	-3.9%	-1.9%
	어가	86	33	38	-21.3%	2.9%
인구	전체	230	146	110	-10.7%	-5.5%
	어업	110	75	36	-9.1%	-13.7%
평균소득		21,500	12,000	17,000	-13.6%	7.2%
어선세력		66	51	55	-6.2%	1.5%
수산물 생산	물량	191	360	172	17.2%	-13.7%
	금액	1,240	900	316	-7.7%	-18.9%

⑩ 하효항

- 제주도의 하효항은 1999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에 실시계획을 하였으며, 2003년에 착공하여 2011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완공이후의 어항개발효과분석을 못하고 착공이후의 분석만이 가능하다.
- 착공전과 착공이후를 비교한 결과 하효항은 평균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는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가구의 경우 착공이전에는 연평균 0.1%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공사기간에는 0.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어가 수는 착공이전 연평균 0.71%감소에서 4.9% 감소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인구 역시 전체적으로 공사기간동안에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어가당 평균소득은 착공이전 1.77%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착공이후에는 9.3%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하효항의 건설은 어업인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어선세력이나 수산물생산량은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표 V-32> 하효항의 개발전후 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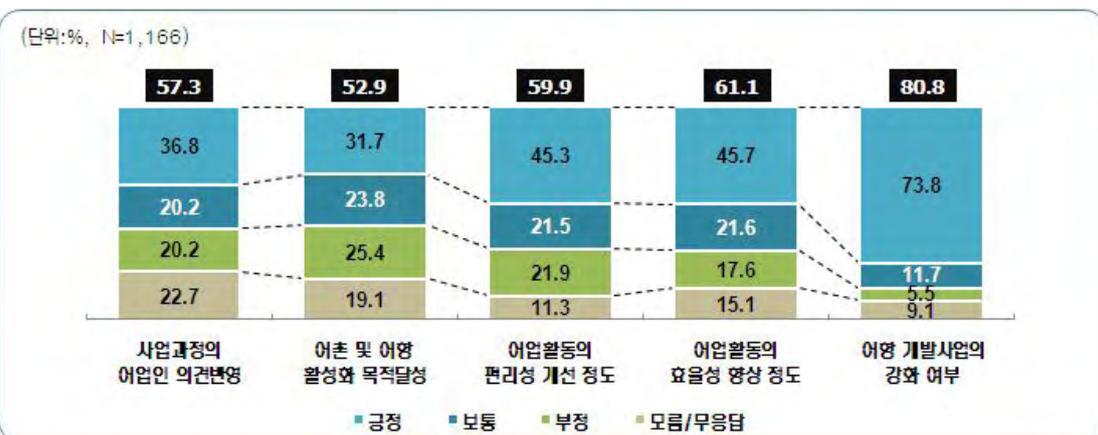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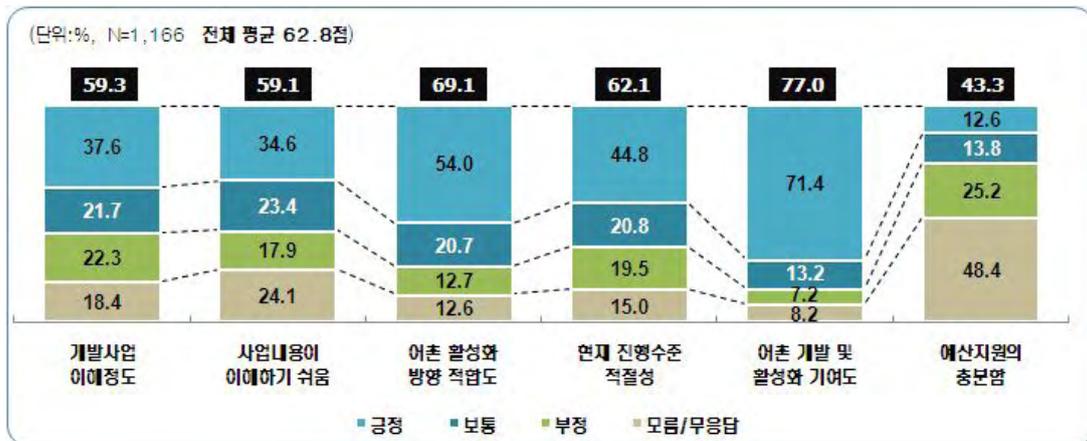
단위 : 호, 명, 천원, 척, 톤, 백만원

구분		1995	2004	2009	착공전	공사기간
가구	전체	1,751	1,735	1,814	-0.10%	0.9%
	어가	81	76	59	-0.71%	-4.9%
인구	전체	6,548	5,968	2,027	-1.03%	-19.4%
	어업	102	89	63	-1.50%	-6.7%
평균소득		18,362	21,500	33,500	1.77%	9.3%
어선세력		23	39	20	6.04%	-12.5%
수산물 생산	물량	28	37	7	3.15%	-28.3%
	금액	130	161	46	2.40%	-22.2%

나. 프로그램 모니터링

1) 국가어항 개발사업 평가

- 국가어항 개발 사업에 대한 여러 방면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전체적으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62.8점 가량의 점수이다. 구체적으로 어항개발사업이 향후에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80.8점으로 나타나 향후 사업의 확대 시행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어촌 개발 및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77.0점), 어촌 활성화 방향 적합도(69.1점) 역시 점수가 높아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체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 한편, 예산지원의 충분함은 43.3점으로 다소 점수가 낮았고, 어촌 및 어항 활성화 목적 달성은 52.9점으로 향후 좀 더 어항 개발과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용역

- 한편, 국가어항 개발 사업에 대해서 동해권은 대체로 평가가 긍정적이고, 서해권과 남해권은 대략 비슷한 편이다. 구체적으로, 어촌 활성화 방향 적합도, 어촌 및 어항 활성화 목적 달성, 사업과정의 어업인의견반영, 어업활동의 편리성 개선 정도, 어업활동의 효율성 향상 정도 등에 있어 동해권의 점수가 다른 권역보다 높은 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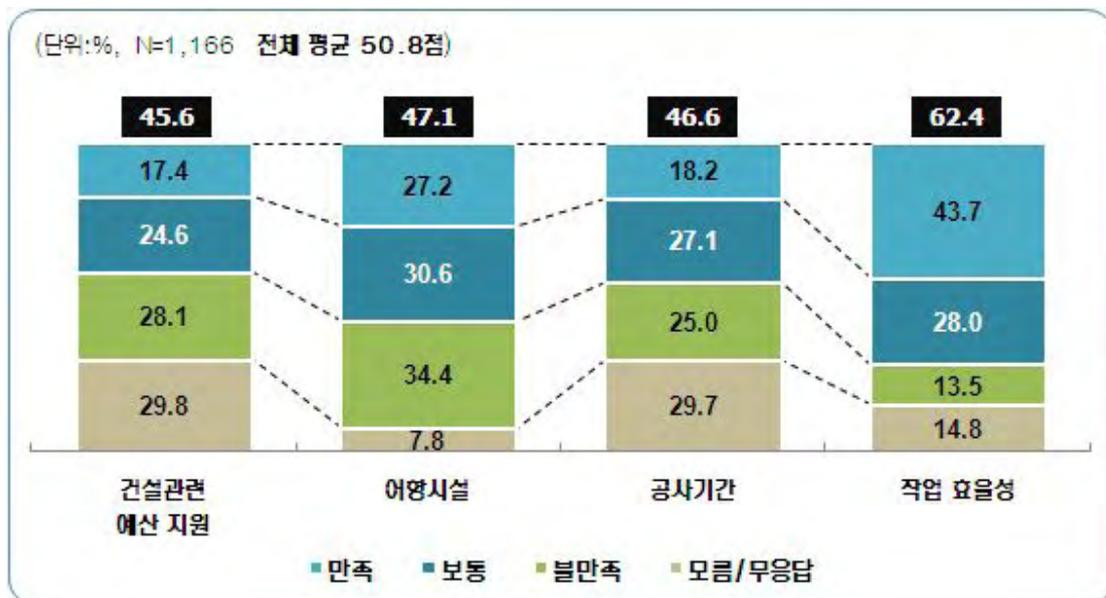
<표 V-33> 권역별 국가어항 개발사업 평가

단위 : 100점	전체	권역			제주도 구분	
		서해권	남해권	동해권	제주이외	제주
사례수	(1166)	(355)	(575)	(236)	(1128)	(38)
개발 사업 평가 종합(2~12번)	62.8	61.5	62.0	66.7	62.7	67.3
개발사업 이해정도	56.3	56.4	56.0	56.6	56.3	54.8
사업내용이 이해하기 쉬움	59.1	57.9	59.1	61.2	59.0	63.9
어촌 활성화 방향 적합도	69.1	67.7	68.7	72.3	69.2	66.7
현재 진행수준 적절성	62.1	61.8	61.0	65.1	61.9	69.0
어촌 개발 및 활성화 기여도	77.0	78.0	75.7	78.8	77.2	71.8
예산지원의 충분함	43.4	43.7	42.2	46.2	43.1	56.0
사업과정의 어업인 의견반영	57.3	54.2	57.3	62.9	57.1	66.0
어촌 및 어항 활성화 목적달성	52.9	50.7	51.3	60.2	52.7	61.5
어업활동의 편리성 개선 정도	59.9	54.8	59.8	68.0	59.6	69.8
어업활동의 효율성 향상 정도	61.1	58.5	59.6	68.5	60.8	68.8
어항 개발사업의 강화 여부	80.8	82.2	80.1	80.4	80.9	80.0

- 한편, 제주지역이 그 외 지역보다 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예산 지원의 충분함, 어촌 및 어항 활성화 목적달성, 어업활동의 편리성 개선정도, 어업활동의 효율성 향상 정도 등에 있어서 제주지역의 국가어항 거주자의 평가가 다른 지역 국가어항 거주자의 평가보다 긍정적인 편이다.. 하지만 어촌 개발 및 활성화 기여도에 있어서는 제주도 이외 지역의 점수가 제주 지역보다 높다.

2) 지역주민 대상

- 어항 시설, 공사기간, 예산 지원 등의 국가어항과 관련된 사항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50.8점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작업 효율성 측면에서는 62.4점으로 대체로 만족도가 높았고, 건설관련 예산지원(45.6점), 어항시설(47.1점), 공사기간(46.6 점)의 경우엔 50점보다 약간 못 미치는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 국가어항에 대한 만족도 역시 동해권과 제주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작업 효율성에 있어 더욱 그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34> 권역별 국가어항 만족도

단위 : 100점	전체	권역			제주도 구분	
		서해권	남해권	동해권	제주이외	제주
건설관련 예산 지원	(1166)	(355)	(575)	(236)	(1128)	(38)
어항시설	47.1	41.5	48.7	52.1	46.7	62.6
공사기간	46.6	44.9	46.4	50.2	46.5	52.5
작업 효율성	62.4	58.6	61.8	69.8	62.3	66.7
만족도 종합 (13~16번)	50.8	47.3	50.8	56.4	50.5	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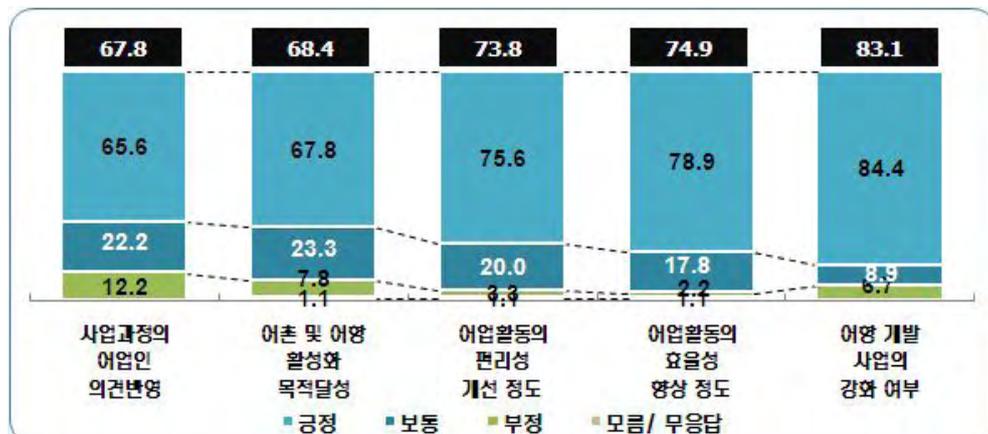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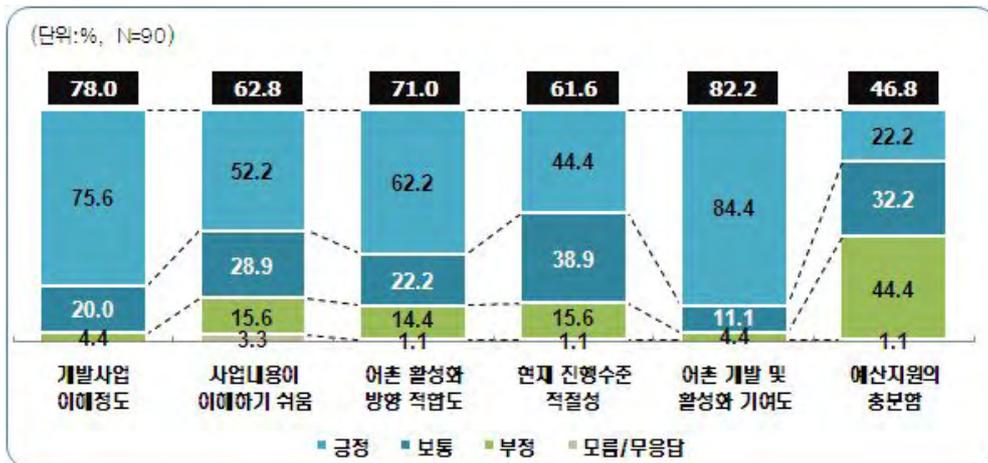
- 개선사항을 살펴본 결과, 공사기간 단축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선착장과 방파제 보강, 편의시설 확충, 해변도로 등의 도로망 확충 등의 의견이 많았다.

<표 V-35> 국가어항에 대한 주요 개선 요망사항

주요 개선 사항 의견	주요 개선 사항 의견
가공시설이 부족함	어민 편의시설이 매우부족하다
공사기간이 단축 되었으면 좋겠다.	어항을 보수해야한다
도로개편 필요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도로면 등 정비필요	주차장이나 진입로 도로가 급한 것 같다
물항장 건설 필요	지역 어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
방파제 보강이 좀 더 필요하다	진행이 빨리되어서 지역활성화에 도움 되었으면
배가 잘 드나들 수 있도록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태풍 시 위험 방파제 강화
빨리 완공되었으면	항만이 비좁은데 더 넓혀야함
선착장방파제가 너무 약해서 큰배 수용이 어렵다	해변도로 건설 필요
선착장시설확대, 항구 커졌으면	홍보필요 정책적이 뒷받침강화요

3) 공무원 대상

- 국가어항 관리 공무원들의 경우, 국가어항 개발 사업에 대해서 대체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이 어촌 활성화 방향에 적합하고 어촌 개발 및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사업으로 인하여 어업활동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편리성 역시 개선되기 때문에 향후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다.
- 그러나 사업 예산 지원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많고, 현재 진행수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일부 부정적인 대답도 있다.



- 개선 사항으로 주로 예산 지원과 관련된 의견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어항 유지보수 및 증설과 관련된 의견, 편의시설 확충, 주민의 의사반영 등의 의견도 있다.

<표 V-36> 국가어항 개발 개선사항(공무원)

주요 개선 사항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자금의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 공사 기간을 단축해서 조기 완공이 필요하다. 당초 계획변경 요구 있을 때 부흥해 주었으면 한다 · 관광 어항개발사업으로 접목해야 한다, 레저산업과 실질적 어업인을 위한 시설이 접목되어야 한다 · 관광기능 활성화, 어항 환경 개선을 수요에 그치지 말고 장래 수요를 예측해서 획기적 개발을 해야 한다 · 국가어항 안의 부가적인 시설을 지원했으면 한다 · 기존 개발 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고, 증설이 꼭 필요하다 · 사업비가 부족해 기간내 사업 완성이 어렵다. 시설유지 관리보수를 제때에 할 수 없다 · 어항 개발과 관련해서 실질적 이용자인 어업인이나 어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한다 · 어항 발전도 중요하지만 부대적으로 복지 시설이나 어업인 후계자의 교육이나 여건이 필요하다 ·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 유지 관리비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 · 좀 더 유지 보수가 지원되었으면 한다 · 지역 실정과 개발 여건을 충분히 알고 있는 지자체로 이관되어야 한다 · 편의 시설이 다른 시군에 비해 부족하다 · 현재의 소규모 지방 어항을 국가 어항으로 귀속시켜 재정을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

1.3 모니터링 조사 결과

가. 성과모니터링에 의한 효과분석 결과

-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다.
- 국가어항의 2009년 말 기준으로 총 집행예산액 3조 4,943억원 중 2조 5,198억원이 집행되어 투자예산 집행률은 약 72.1%이다. 여기에는 새로 지정된 천성항, 궁평항, 장고항, 남포항, 노량항, 이목항 등의 예산완공률이 0%이고, 이들 신규어항의 투자예산액 1,674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어항의 투자예산 완공률은 75.7%이다.
- 국가어항의 외곽시설 완공률은 91.2%로 이중 방파제 완공률은 91.2%이며, 계류시설 완공률은 87.0%이고 이중 물양장 완공률은 93.5%로 비교적 높다.
- 국가어항을 배후로 하고 있는 어촌계와 그렇지 않은 어촌계 지역의 발전정도를 보면, 발전정도가 가장 높은 복지어촌계의 비율이 국가어항지역 어촌계가 25.4%로 비사업지역의 7.4%보다 월등히 높으며, 자립어촌계가 42.2%로 비사업지역의 26.2%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국가어항사업지역 어촌계의 복지 또는 자립어촌계의 비율이 전체 67%이나 비사업지역은 33.6%로 사업지역의 1/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가어항의 정주여건을 보면 국가어항, 지방어항 등을 배후로 하지 않는 기타 어촌계³⁾와 비교할 때 가구 수와 인구수가 2.4~2.6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어항의 평균가구수는 773가구이나 비사업지역은 317가구였고 어업가구 역시 국가어항은 140가구인데 비해 기타지역은 71가구로써 결과적으로 정주여건이 비사업지역보다 좋은 것으로 분석된다.
- 어가당 평균소득을 보며 국가어항 배후 어촌계의 경우 평균 소득은

3) 여기서는 분석의 유효성을 위하여 무역항 및 연안항을 배후로 하고 있는 어촌계, 내륙어촌계, 그리고 도시근교어촌계 중 어가비율이 극히 낮은 어촌계는 제외하였다.

2,638만원으로 비사업지역의 2,594만원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가어항 배후어촌계의 연평균수산물 생산량은 582톤으로 비사업지역 296톤보다 약 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산물생산액은 약 16억원으로 비사업지역의 12억원보다 1.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적어선척수 역시 67척으로 비사업지역 38척보다 약 1.8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수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과거추세변화에 의한 국가어항개발전후효과 분석은 어항개발기간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져 단순하게 개발전후를 비교하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2000년 중에 착공된 10개 어항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착공전보다 전체 가구 수의 증가율이 상승된 곳은 6개 어항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균소득 증가율은 7개 지역이 보다 상승된 곳으로 분석되었다. 어선세력이나 수산물생산량은 증감의 폭이 다소 크게 나왔다. 대체적으로 어항개발이 시작되면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완공이후의 경우 분석기간이 짧아 유의적인 분석을 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국가어항 개발사업에 대한 인식도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경우 지역주민보다 다소 높지만, 지역주민의 경우 주민간 갈등과 도입시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 사업의 인정도를 살펴보면 사업의 목적은 대체로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이라 평가하고 있었지만, 공무원들의 사업수준에 대한 적절성에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즉, 본 사업을 통해 어가소득 증대와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대상지의 지속적이고 내발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고, 지역 특색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업의 유효도를 살펴보면, 예산 규모는 지역주민과 공무원 모두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 지역 주민은 오차 범위 내에서 다소 낮게 평가하였다.
- 어업활동의 편리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는 국가어항 개발을 통해 많이 개선되었다고 공감을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보다 공무원이 체감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사업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및 공무원 모두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강화에 대해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7>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 지역주민

구분	지표	전국	육지지역	제주지역	비고
사업의 인식도	사업 인지도*	100.0	100.0	100.0	
	사업 이해도	56.3	56.3	54.8	
	사업 명확성	59.1	59.0	63.9	
사업의 인정도	사업 필요성	69.1	69.2	66.7	
	수준 적절성	62.1	61.9	69.0	
	목적 부합성	77.0	77.2	71.8	
사업의 유효도	예산 가용성	43.4	43.1	56.0	
	집행 효율성	57.3	57.1	66.0	
	목적 달성도	52.9	52.7	61.5	
어업활동	편리성	59.9	59.6	69.8	
	효율성	61.1	60.8	68.8	
사업 강화 필요성		80.8	80.9	80.0	
평 균(* 제외)		61.7	61.6	66.2	

<표 V-38>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 공무원

구분	지표	전국	육지지역	제주지역	비고
사업의 인식도	사업 이해도	78.0	77.4	-	
	사업 명확성	62.8	61.7	-	
사업의 인정도	사업 필요성	71.0	70.3	-	
	수준 적절성	61.6	60.7	-	
	목적 부합성	82.2	81.8	-	
사업의 유효도	예산 가용성	46.8	45.2	-	
	집행 효율성	67.8	66.7	-	
	목적 달성도	68.4	67.2	-	
어업활동	편리성	73.8	73.1	-	
	효율성	74.9	74.2	-	
사업 강화 필요성		83.1	82.8	-	
평 균		70.0	69.2	-	

1.4 국가어항 개발사업에 대한 이용자만족도 조사·분석

- 국가어항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를 제외한 육지지역 지역주민들의 평균 만족도는 61.7점, 공무원은 69.2점으로 평균 65.4점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 제주지역은 대상공무원의 유효한 응답결과가 없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평균 만족도는 66.2점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국가어항 개발사업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65.9점으로 본 사업에 대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 연도별 이용자 만족도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0년도 전국 국가어항 이용자만족도 결과가 65.9점으로 1.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어항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라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이용자만족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V-6> 연도별 국가어항 이용자 만족도 결과

어촌·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용역

<표 V-39> 2010년 국가어항개발사업의 이용자만족도 조사 결과

구 분	환산점수			비고
	육지지역		제주지역	
	지역주민	공무원	지역주민	
사업의 인지도	57.7	69.6	59.3	이해도, 명확성
사업의 적합도	69.4	70.9	69.1	필요성, 적절성, 부합성
사업의 유효도	51.0	59.7	61.2	가용성, 효율성, 달성도
어업활동	60.2	73.6	69.3	편리성, 효율성
사업강화 필요성	80.9	82.8	80.0	사업강화 필요성
평균 만족도	61.7	69.2	66.2	
전체 만족도	65.4		66.2	전국 만족도 : 65.9

※ 제주지역은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유효한 응답 결과가 없으므로 본 항목의 객관적 분석을 위하여 지역주민으로 한정

<표 V-40> 2009년 국가어항개발사업의 이용자만족도 조사 결과

구 분	환산점수			비고
	육지지역		제주지역	
	지역주민	공무원	지역주민	
사업의 인지도	60.7	74.1	59.0	
사업의 적합도	64.3	69.4	66.8	
사업의 유효도	53.6	52.0	56.1	
사업강화 필요성	80.2	-	77.4	본 항목의 객관적 응답을 위하여 지역주민으로 한정
평균 만족도	64.7	65.2	64.8	64.9
전체 만족도	64.9		64.8	64.8

※ 제주지역에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유효한 응답 결과 없음

제2장 지방어항 개발사업

2.1 지방어항 개발사업 효과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조사방법

가. 모니터링의 목적

- 지방어항은 285개항에 대하여 2조 147억원이 투자되는 수산분야에서 국가어항 다음으로 큰 재정투자사업이다.

<표 V-41> 지방어항개발사업의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72 - 2009까지 실적			2010계획				잔사업비
	계	국 비	지방비	계	국 비	지방비	순수 지방비	
2,014,753	1,132,250	498,667	633,583	67,176	53,741	13,435	미정	815,327

- 이들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단계, 그리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 일정 기간, 이사업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과 지역 경제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 또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개발·제시되는 객관적·정량적 성과지표는 국가어항 개발 관련 재정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점검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의 경우 어항의 건설 및 관리주체가 누구인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며, 어항의 기능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어항개발사업의 모니터링 평가방법을 달리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모니터링 대상 및 표본의 선택

(1) 모니터링 대상

- 본 조사는 지방어항 개발사업에 대해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후 현실을 반영한 개선된 어촌지역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국의 지방어항은 총 285개로 본 조사는 이들 지방어항 인근 주민들과 이용자(어업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 V-42> 지방어항 모니터링 대상

<지방어항 285개>
부산광역시(송정, 민락, 학리, 월내, 동백, 이동, 두호, 우동, 청사포, 칠암, 대항, 신암, 놀차), 인천광역시(대무의, 선두, 주문, 후포, 정포, 소연평, 답동, 진두, 옥죽포, 자월1리, 광명, 창후, 장곶, 진리, 두무진), 울산광역시(나사, 신암, 주전, 당사), 경기도(풍도, 제부, 대명, 탄도, 전곡), 강원도(호산, 물치, 봉포, 신남, 초곡, 동산, 가진, 영진, 오호, 천진, 소들, 문암2리, 문암1리, 교암), 충청남도(장고도, 어사, 궁리, 천리포, 백사장, 영목, 고대도, 무창포, 몽산포, 효자도, 만리포, 판교, 호도항, 원산도, 삼시도, 학암포, 여은돌, 녹도, 채석포, 가의도, 통개, 성구미, 간월도, 방포, 마검포, 송석, 월하성, 난지도), 전라북도(비안도, 동호, 곰소, 선유도, 상왕등도, 개야도, 방축도, 무녀도, 궁항, 식도, 송포, 성천), 전라남도(원동, 화도, 장환, 법성, 해동, 성등포, 동봉, 명천, 어불, 우두, 울포, 내동, 죽도, 덕흥, 이진목, 화전, 방축, 굴포, 계동, 의성, 미라, 영산, 검산, 장수, 동백, 송평, 하동, 수문, 징의, 도리포, 죽포, 재원, 금진, 설도, 우수영, 대통, 서성, 사리, 용호, 호령, 월양, 관호, 상진, 사초, 장용, 우학, 송도, 덕우, 횡간, 화포, 창유, 영전, 신흥, 수대, 소우이도, 성두, 잠두, 초평, 염포, 모서, 서도, 진산, 용동, 가교, 동고, 망석, 함구미, 웅암, 대영, 벌포, 금능, 봉남, 소울, 심리, 사구미, 연소, 세포, 다수, 덕촌, 손죽, 남성, 울포, 하태, 오천, 송호, 금사, 학가, 톱머리, 충도, 만재, 추포), 경상북도(통구미, 천부, 직산, 경정, 발산, 모포, 전촌, 백석, 가곡, 노물, 지경, 태하, 기성, 삼정, 병곡, 이가리, 방석, 부경, 창포, 골장, 나정, 대보, 죽천), 경상남도(내항, 돈지, 성포, 견유, 죽림, 선소, 장작지, 시방, 이수도, 장포, 진동, 적량, 이운, 하포, 학림, 포교, 당동, 은점, 냉천, 서상, 당저, 하청, 송포, 유교, 옥계, 대포, 중항, 쌍근, 연화, 유희, 늑도, 당항, 연명, 동갈화, 중평, 울포, 곤리, 평림, 도장포, 예포, 동호, 향촌, 거제, 연대, 장목, 진촌, 관포, 곡용포, 원천, 물안, 향도, 농소, 수월, 지족, 한내, 유포, 시락, 수치, 광천, 낙지포, 술상), 제주도(조천, 대포, 우도, 신양, 가파, 세화, 종달, 표선, 사계, 신창, 강정, 화북, 하귀1리, 귀덕1리, 고산, 신천, 태흥2리, 법환)

(2) 모니터링 표본의 선택

- 전국 285개 지방어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및 이용자(어업인) 103명을 대상으로 예상 성과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으며, 프로그램 모니터링의 대상 또한 성과 모니터링의 대상과 같이 하였다.
- 표본추출은 사업별 유의표집법을 사용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주로 전화설문조사 방식을 사용하였다.

<표 V-43> 지방어항 개발사업의 조사 개요

구분	지역주민	비고
모집단	대상 지역 주민 및 이용자(어업인)	
표본수	103	
표본추출	사업별 유의표집	
조사방법	전화조사	
조사일자	2010. 12. 08 ~ 22 (15일간)	

다. 모니터링 내용

- 지방어항 개발사업 모니터링의 추진 방향은 크게 다음 4단계로 구분된다.
 - 1단계 : 모니터링의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법론 및 지표의 개발
 - 2단계(성과 모니터링) : 사업대상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제·사회적 조사
 - 3단계(프로그램 모니터링) : 사업대상지역의 공무원 및 어업인들의 사업 인식도 조사
 - 4단계(고객 만족도 조사) : 사업의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어업인과 어항을 찾는 방문객들의 만족도 조사
- 모니터링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설정하도록 하였다.
 - 목적 부합성 :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모니터링 목적에 맞게 지표 설정

- 간결성 : 모니터링 조사 목적을 달성하면서 가급적 조사 지표는 간결성을 유지하고 복잡성을 배제
- 답변 용이성 : 응답자가 대답이 용이하도록 설문내용을 작성

1) 성과모니터링

- 지방어항 개발사업의 효과 평가 즉 성과 모니터링은 공간적 성과 모니터링을 위주로 실시하였다.
- 어항개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크게 i) 계획대비 성과지표와 ii) 개발성과지표로 분류하여 조사해야 하나, 계획대비 성과지표조사는 어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향후 성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했으나,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성과지표 조사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계획대비 성과지표 조사보다는 개발성과지표를 주로 분석하게 된다.
- 성과지표는 어항개발의 합목적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어항개발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사업진척도, 어촌지역 발전정도, 정주여건, 소득분석, 수산업 발전정도 등을 분석하게 된다.

<표 V-44> 지방어항 개발사업의 성과 모니터링 지표

지표	항목	단위	시도조사/항별조사	세력권/읍	비고
사업진척도	시도별 예산 집행비율	%	시도조사	세력권	지방어항
	시도별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완공율	%	시도조사	세력권	지방어항
어촌지역 발전정도	어촌계 유형	%	항별조사	세력권	지방어항
정주여건	가구/어업가구	호	시도조사	세력권	지방어항
	인구/어업인구	명	시도조사	세력권	지방어항
수산업 발전정도	연평균 수산물 생산량	톤	시도조사	세력권	지방어항
	연평균 수산물 생산고	백만원	시도조사	세력권	지방어항
	재적어선척수	척	시도조사	세력권	지방어항

2) 프로그램 모니터링

- 지방어항 개발사업이 실시된 지역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인식도, 사업의 인정도, 사업의 유효도,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게 된다.
- 사업 인식도는 사업인지도, 이해도, 사업의 명확성으로 구분된다. 사업의 인지도는 어촌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게 된다. 사업의 이해도는 수행중인 사업의 내용을 대체로 잘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내용의 명확성은 수행중인 사업의 내용이 어업인들이 이해하고 따라 하기에 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다고 생각하는가의 여부를 의미하게 된다.
- 사업 인정도는 사업의 필요성, 수준의 적절성, 목적 부합성을 의미한다. 사업의 필요성은 수행중인 사업이 어촌계(마을)의 활성화 방향에 맞다고 생각하는가의 여부를 묻게 된다. 사업의 현재 진행 수준은 어촌계(마을)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가의 여부이다. 목적 부합성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유지될 경우 어촌계(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촌·어항의 개발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를 묻게 된다.
- 사업 유효도는 예산가능성, 집행효율성, 목적달성도 등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우선 예산 가용성은 사업 추진에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었다고 생각하는가의 여부를 묻게 된다. 집행 효율성은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의 행정력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의 여부이다. 마지막으로 목적 달성도는 사업을 어촌 및 어항 활성화를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하는가의 여부이다.

<표 V-45> 지방어항 프로그램 모니터링 지표

과 제	지 표	응 답	대 상
사업의 인식도	사업의 인지도	2 단계	어업인
	사업의 이해도		
	사업의 명확성		
사업의 인정도	사업의 필요성	7단계	어업인
	사업수준의 적절성		
	사업목적의 부합성		
사업의 유효도	예산의 가용성		
	집행의 효율성		
	사업목적의 달성도		
어업활동	편리성		
	효율성		
사업강화 필요성			

2.2 지방어항개발사업 효과분석

가. 성과 모니터링에 의한 효과분석 결과

- 성과지표는 어항개발의 합목적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어항개발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사업진척도, 어촌지역 발전정도, 정주여건, 수산업 발전정도 등을 분석하게 된다.

(1) 사업진척도

- 285개의 지방어항 중 완공된 어항은 총 158개 어항으로 62.2%의 완공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어항은 43개 어항으로 전체 15.1%이며, 지금까지 착공조차 못한 지방어항은 83개로 22.7%에 달하고 있다.
- 지방어항의 2009년 말 기준으로 예산 집행율은 약 56.2%이다. 시도별로 보면 울산이 100%로 가장 높고 다음이 부산지역으로 84.9%, 경기지역이 78.5%이다. 반면에 전북지역은 35.4%로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 전남, 인천, 충남지역이 각각 35.4%, 41.5%, 53.7%, 55.6%로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다.

<표 V-46> 지방어항 완공현황

시도 별	계	지 방 어 항		
		완공항	투자중	미착공
계	285	158	43	83
부산	13	10	1	2
		우동, 칠암, 송정, 민락, 학리, 월내, 이동, 동백, 두호, 청사포	대항	신암, 늘차
인천	15	10	1	4
		정포, 대무의, 선두, 옥죽포, 주문, 소연평, 답동, 진두, 후포, 자월1리,	진리	두무진, 창후, 장곳, 광명
울산	4	4	0	0
		나사, 신암, 주전, 당사		
경기	5	5	0	0
		제부, 풍도, 대명, 탄도,전곡		
강원	14	6	4	4
		호산, 물치, 봉포, 신남, 초곡, 문암1리,	동산, 우암진 가진, 영진	천진, 오호, 교암, 문암2리
충남	29	19	4	5
		고대도, 무창포, 효자도, 판교, 몽대포, 만리포, 백사장, 궁리, 장고도, 영목, 어사, 천리포, 호도, 삼시도, 여은돌 원산도, 학암포, 통개, 간월도,	녹도, 채석포, 난지도, 송석	가의도, 방포, 성구미, 마검포, 월하성
전북	12	4	5	3
		비안도, 동호, 곰소, 선유도,	상왕등도, 궁항, 방축도, 개야도, 송포	무녀도, 식도, 성천,

주) 1) 밑줄표시항 : 기본계획 미수립항
 2) 투자중인항 : '09년 투자항 포함

<표 V-47> 지방어항 완공현황(계속)

시도 별	계	지 방 어 항		
		완공항	투자중	미착공
전남	91	41	14	36
		해동, 성등포, 우두, 동봉, 명천, 화도, 장환, 어불, 법성, 울포, 내동, 원동, 죽도, 덕흥, 이진목, 화전, 방축, 굴포, 미라, 계동, 의성, 영산, 검산, 장수, 동백, 송평, 하동, 수문, 징의, 도리포, 죽포, 재원, 금진, 설도, 대통, 우수영, 호, 잠두, 상진, 사초, 용호,	울포, 우학, 하태, 오천, 덕우, 월양, 횡간, 호령, 서성, 사리, 장용, 우이, 동고, 심리,	화포, 창유, 초평, 영전, 신흥, 수대, 성두, 연소, 진산, 염포, 모서, 서도, 송도, 가교, 송호, 망석, 함구미, 응암, 대영, 벌포, 금능, 봉남, 소을, 사구미, 세포, 다수, 덕촌, 손죽, 남성, 용동, 금사, 학가, 톱머리, 충도, 만재, 추포
경북	23	11	1	11
		직산, 천부, 통구미, 경정, 발산, 모포, 전촌, 백석, 가곡, 지경, 노물,	기성,	죽천, 태하, 삼정, 병곡, 이가리, 방석, 부경, 창포, 골장, 나정, 대보
경남	61	38	7	16
		서상, 내항, 시방, 돈지, 성포, 견유, 죽림, 선소, 장작지, 이수도, 장포, 진동, 적량, 이운, 하포, 학림, 포교, 당동, 은점, 냉천, 당지, 하청, 송포, 옥계, 연화, 늑도, 유호, 쌍근, 유교, 대포, 중항, 당항, 연명, 동갈화, 중평, 평림, 울포, 동호,	향촌, 예포, 곤리, 연대, 도장포, 곡용포, 원천,	시락, 한내, 진촌, 유포, 관포, 농소, 향도, 물안, 거제, 수치, 술상, 광천, 낙지포, 지족, 장목, 수월
제주	18	10	6	2
		세화, 우도, 대포, 조천, 가파, 신양, 종달, 표선, 사계, 신창,	강정, 화북, 귀덕1리, 고산, 신천, 태흥2리	하귀1리, 법환

주) 1) 밑줄표시항 : 기본계획 미수립항.

2) 투자중인항 : '09년투자항 포함

<표 V-48> 지방어항의 시도별 예산집행율

단위 : 백만원

종별	총투자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비율
부산	67,354	57,172	10,182	84.9%
인천	117,377	62,991	54,386	53.7%
울산	17,344	17,344	0	100.0%
경기	73,029	57,329	15,700	78.5%
강원	158,075	94,920	63,155	60.0%
충남	241,526	134,246	107,280	55.6%
전북	126,094	44,596	81,498	35.4%
전남	573,978	238,107	335,871	41.5%
경북	204,500	141,195	63,305	69.0%
경남	272,731	185,038	87,693	67.8%
제주	162,745	99,312	63,433	61.0%
계	2,014,753	1,132,250	882,503	56.2%

- 지방어항의 외곽시설 완공율은 63.7%로 사업 진척도는 매우 낮다. 외곽시설 중 방파제 역시 완공율이 64.8%로 외곽시설 완공율과 비슷하다. 외곽시설의 완공율은 울산이 1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부산이 98.1%, 인천이 82.9%이다. 그러나 전북은 64.0%, 전남은 57.7%로 완공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V-49> 시도별 외곽시설 완공율

단위 : m, %

항별	시설계획(m)		완공(m)		완공율	
	외곽시설	방파제	외곽시설	방파제	외곽시설	방파제
부산	3,993	3,528	3,919	3,090	98.1%	87.6%
인천	4,634	2,799	3,841	1,820	82.9%	65.0%
울산	1,265	932	1,265	932	100.0%	100.0%
경기	1,736	809	1,359	809	78.3%	100.0%
강원	7,597	4,298	5,897	3,612	77.6%	84.0%
충남	15,579	9,236	11,077	7,349	71.1%	79.6%
전북	5,102	3,653	3,267	1,754	64.0%	48.0%
전남	28,606	25,517	16,504	15,691	57.7%	61.5%
경북	10,332	8,251	7,765	6,805	75.2%	82.5%
경남	19,861	14,005	14,741	10,538	74.2%	75.2%
제주	10,899	8,100	8,291	6,931	76.1%	85.6%
계	109,604	81,128	77,926	59,331	71.1%	73.1%

- 한편 지방어항의 계류시설 완공율은 평균 67.3%로 외곽시설의 완공율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류시설 중 물양장의 완공율은 62.5%이다. 시도별로 보면 울산이 100.0%이고, 다음으로는 인천이 93.3%, 부산이 87.5%로 비교적 높은 완공율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전북이 56.3%, 전남은 55.9%로 매우 낮은 완공율을 보이고 있다.

<표 V-50> 지방어항 계류시설 완공율, 단위 : m, %

항별	시설계획(m)		완공(m)		완공율	
	계류시설	물양장	계류시설	물양장	계류시설	물양장
부산	4,092	3,000	3,579	2,537	87.5%	84.6%
인천	4,463	2,282	4,163	2,002	93.3%	87.7%
울산	740	600	740	600	100.0%	100.0%
경기	1,540	854	1,101	749	71.5%	87.7%
강원	3,128	2,956	2,551	2,439	81.6%	82.5%
충남	8,563	3,750	5,234	2,325	61.1%	62.0%
전북	3,774	3,138	2,125	1,461	56.3%	46.6%
전남	22,732	14,935	12,718	7,029	55.9%	47.1%
경북	3,661	2,890	2,663	2,191	72.7%	75.8%
경남	12,182	10,434	7,931	6,398	65.1%	61.3%
제주	8,001	5,199	6,248	3,551	78.1%	68.3%
계	72,876	50,038	49,053	31,282	67.3%	62.5%

(2) 어촌지역의 발전정도

- 지방어항개발지역의 발전정도를 보기 위하여 ‘2009 어촌계분류평정표’를 활용하여 어촌계의 발전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방어항개발지역의 어촌계 231개 지역⁴⁾ 중 발전정도가 가장 높은 복지어촌계는 16.9%, 그다음 발전 정도인 자립어촌계는 41.1%, 성장어촌계는 4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이 없는 일반 어촌계 1,572개와 비교할 때 일반어촌계의 복지어촌계 비율은 7.4%, 자립어촌계 비율은 26.2%, 성장어촌계는 66.2%임을 감안하면 지방어항이 있는 지역 어촌계의

4)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을 모두 이용하는 어촌계는 국가어항으로 분류하고 지방어항에서는 제외시켰음

발전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V-51> 지방어항 개발 지역 어촌계의 발전정도 유형

어촌계 유형	지방어항	비율(%)	비사업지역	비율(%)
복 지	39	16.9%	116	7.4%
자 립	95	41.1%	412	26.2%
성 장	97	42.0%	1044	66.4%
계	231	100.0%	1572	100.0%

(3) 정주여건

- 지방어항의 정주여건을 보면 국가어항, 지방어항 등을 배후로 하지 않는 기타 어촌계⁵⁾와 비교할 때 가구 수와 인구수가 소폭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어업가구의 경우 지방어항이 있는 어촌계의 어업가구는 평균 83가구로 기타어촌계의 평균 71가구보다 약 1.17배 많았으나, 어업인구의 경우 평균 96명으로 기타어촌계의 112명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52> 지방어항의 정주여건 비교

단위 : 호, 명

분류	가구	어업가구	인구	어업인구
지방어항	353	83	939	96
기타지역	317	71	846	112
비율	1.11	1.17	1.11	0.85

5) 여기서는 분석의 유효성을 위하여 무역항 및 연안항을 배후로 하고 있는 어촌계, 내륙어촌계, 그리고 도시근교어촌계 중 어가비율이 극히 낮은 어촌계는 제외하였다.

(4) 수산업발전정도

- 지방어항 배후어촌계의 연평균수산물 생산량은 549톤으로 비사업지역 296톤보다 약 1.9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산물생산액은 약 12억원으로 비사업지역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53> 수산업 발전정도의 비교, 단위 : 톤, 백만원 척

구분	지방어항	비사업지역	비율
연평균 수산물 생산량	549	296	1.9
연평균 수산물 생산고	1,154	1,233	0.9
재적어선척수	39	38	1.0

- 한편 지방어항 배후어촌계의 지역별 평균 수산물생산량과 생산액은 전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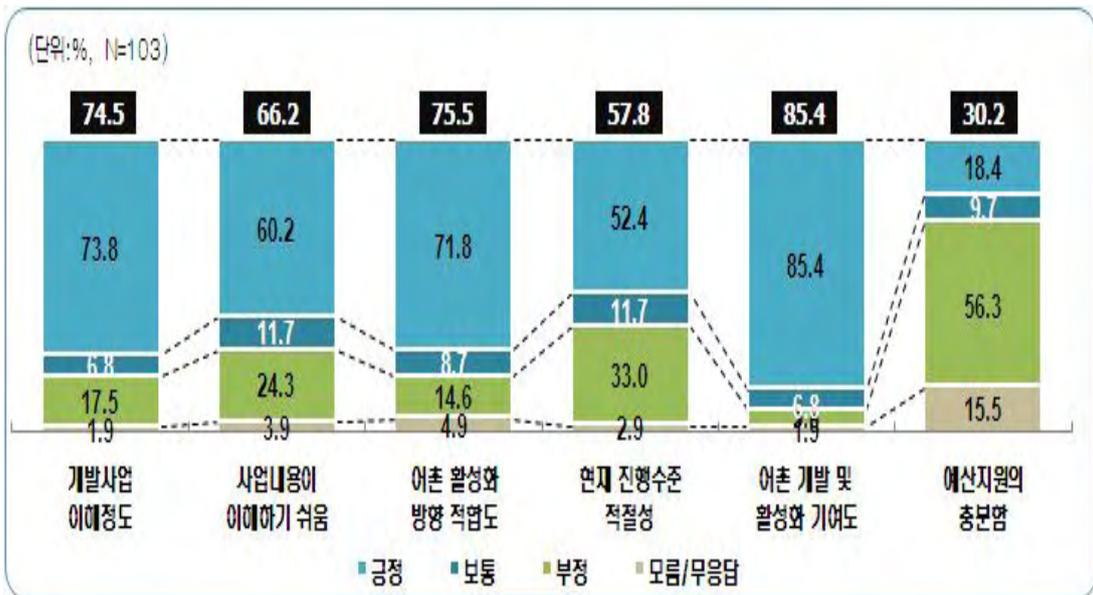
<표 V-54> 지역별 수산업 발전정도 , 단위 : 톤, 백만원, 척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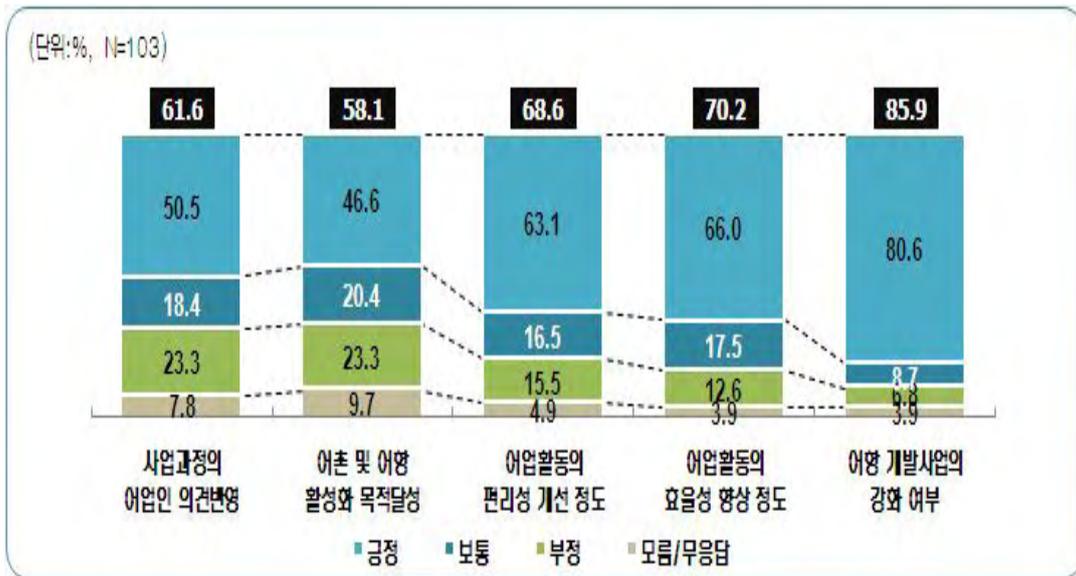
구분	수산물생산량	수산물생산액	어선척수
경인	104	457	14
강원	168	714	12
충청	272	1,568	23
전북	1,592	8,706	7
전남	1,188	1,522	76
경북	31	263	17
경남	172	372	56
부산	551	1,174	9
제주	42	178	17

나. 프로그램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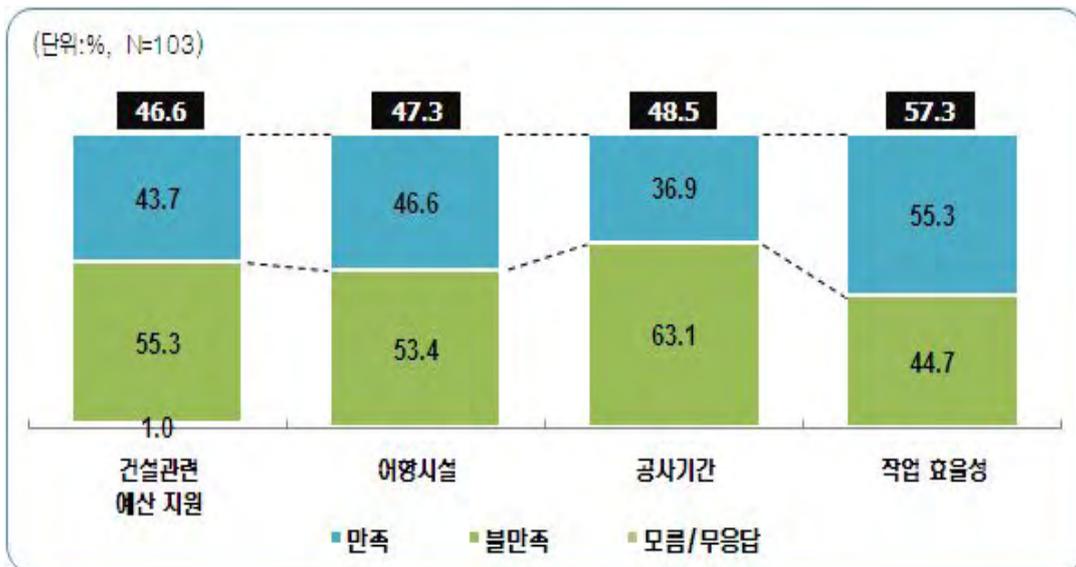
1) 지방어항 개발사업 평가

- 지방어항을 이용하는 어촌계장들의 경우 지방어항 개발사업을 대체로 잘 이해하고 있고, 지방어항 개발사업이 어촌 개발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데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다. 또한 어촌 활성화 방향에도 적합하다고 보는 경향이다. 한편, 어업활동의 편리성과 효율성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향후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반면, 예산 지원이 충분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현재 진행 수준이나 어촌 및 어항 활성화 목표달성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사람이 더 많지만 일부는 부정적인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 어업인의 의견 반영에 대해서도 부족하다고 보는 사람이 일부가 있어 향후 사업 추진 시 어업인의 의견 반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작업 효율성에 있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고 국가어항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불만족인 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공사기간, 어항 시설, 건설관련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불만족인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개선사항

- 지방어항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주로 선착장과 방파제 건설 및 확장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또한 접안시설과 도로확충 등의 의견도 많다.

<표 V-55> 지방어항 개선 요망사항

주요 개선 사항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수립만 하고 시행을 안 한다. 접안시설과 하역시설 부족. · 공사를 신속하게 했으면 · 관광지와 접해 있으므로 배를 대기에 좋게 해 달라. ·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 · 방파제 삼발이 완전 주저앉아 내렸다. 보강해 주길 바란다. · 배가 출입항 할 때, 좁아서 불편하다 · 선착장과 매립지, 어촌계의 조개 맨손 어업의 보상 문제 등에 대해 좀 더 신경 써줘야 할 듯. · 선착장이 여름이면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간다. 어업의 기계들이 도난을 당하는데 CCTV 설치해주길 · 어구 적재 시설이 많이 부족하여 이런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이나 답이 없다. · 어항을 완공했는데 조금 비좁다. 남 방파제 TTP를 보완했는데 배가 더 접안할 수 있도록 확장공사 부탁 · 예산을 투입해 달라. · 전체적으로 해안정비, 외관 조성과 진입도로 확충 · 태풍이 불면 방파제에 삼발이 없어 불안하다. 바닥이 알아 배가 닿는다. · 항은 개선되었지만, 방파제도 넓혀야 되고, 어항시설등 정부차원에서 지원 개발해 주어야 한다. · 후안도로를 내서 방파제를 보호하면 좋겠다. · 등대가 필요하고, 준설작업 통해서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 선착장 시설의 물양장 만들어 주고, 준설작업 필요. · 선착장을 건설해 달라. · 어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 바람. · 어업 어선 위주의 개발보다는 레저시설 등 미래 지향적 개발이 필요하다.

2.3 모니터링 조사 결과

가. 성과 모니터링에 의한 효과분석 결과

- 지방어항 개발사업의 성과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지방어항의 2009년 말 기준으로 예산완공률은 약 56.2%로 사업진척도 매우 더딘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곽시설의 완공률은 63.7%, 계류시설 완공률은 평균 67.3%이다. 시도별로 보면 예산완공률은 전북이 35.4%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외곽시설 완공률 역시 전북이 48.0%로 가장 낮다. 계류시설은 대부분 50%이상이나 전북이 46.6%, 전남이 47.1%로 완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어항을 배후로 하고 있는 어촌계 지역의 발전정도를 보면 가장 발전도가 높은 복지어촌계가 전체 16.9%로 비사업지역의 복지어촌계 비율 7.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어촌계 역시 41.1%로 비사업지역의 26.2%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지방어항의 배후어촌계의 발전정도가 비사업지역보다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지방어항의 정주여건을 보기 위하여 비사업지역의 가구 수, 어업가구 수, 인구, 어업인구 수와 비교한 결과 지방어항 배후 어촌계의 가구 수와 인구수는 비사업지역 어촌계보다 각 1.11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가구도 1.1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어업인구는 비사업지역의 8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방어항 배후 어촌계의 수산업발전정도를 보면 어촌계당 평균 수산물생산량이 549톤으로 비사업지역의 296톤 보다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고는 비사업지역의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어항 배후 어촌계의 수산물단위당 생산가치가 낮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한편으로는 통계상의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나.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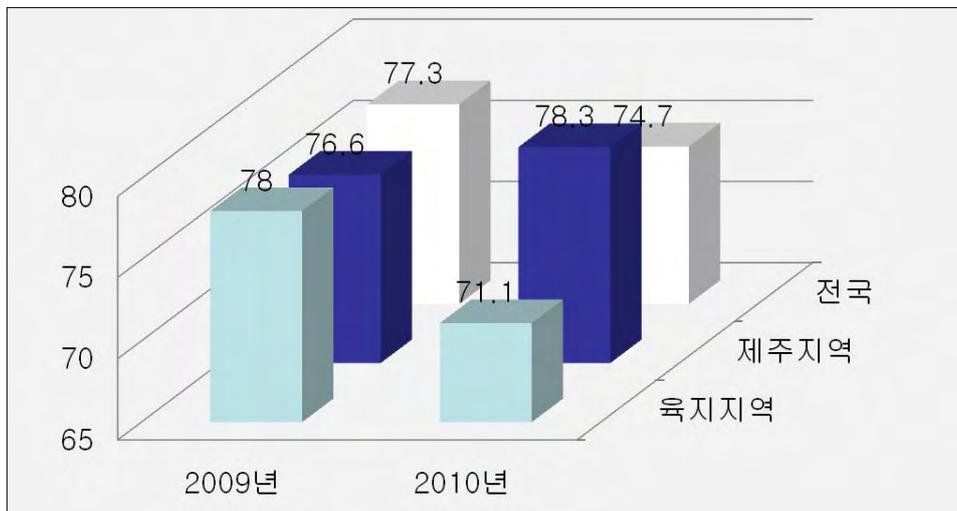
- 지방어항 개발사업의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지방어항 개발사업에 대한 인식도에서 이해도는 89.3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사업의 명확성은 68.8점으로 다소 낮게 조사되었다.
- 사업의 인정도를 살펴보면 사업의 목적은 대체로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즉, 본 사업을 통해 어가소득 증대와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대상지의 지속적이고 내발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고, 지역 특색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업의 유효도를 살펴보면, 예산의 가용성 면에서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어업활동의 편리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는 국가어항 개발을 통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사업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2.9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6>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 지역주민

구분	지표	전국	육지지역	제주지역	비고
사업의 인식도	사업 인지도*	100.0	100.0	100.0	
	사업 이해도	74.5	73.4	89.3	
	사업 명확성	66.2	65.9	68.8	
사업의 인정도	사업 필요성	75.5	74.4	87.5	
	수준 적절성	57.8	55.7	85.7	
	목적 부합성	85.4	85.0	90.6	
사업의 유효도	예산 가용성*	30.2	30.3	28.6	
	집행 효율성	61.6	61.5	62.5	
	목적 달성도	58.1	58.4	53.6	
어업활동	편리성	68.6	68.3	71.9	
	효율성	70.2	69.8	75.0	
사업 강화 필요성		85.9	85.3	92.9	
평 균(* 제외)		74.7	71.1	78.3	

2.4 지방어항 개발사업에 대한 이용자만족도 조사·분석

- 지방어항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를 제외한 육지지역 지역주민들의 평균 만족도는 71.7점, 제주지역 지역주민들의 평균 만족도는 78.3점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지방어항 개발사업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74.7점으로 본 사업에 대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 연도별 이용자 만족도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0년도 전국 국가어항 이용자만족도 결과가 74.7점으로 2.6점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어항 개발사업이 예산의 규모나 집중도에서 국가어항에 비해 떨어짐으로 해서 이용자 만족도 결과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인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좀 더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림 V-10> 연도별 지방어항개발사업 이용자 만족도 결과

<표 V-57> 2010년 지방어항 개발사업의 이용자만족도 조사 결과

구 분	환산점수			비고
	육지지역	제주지역	평균 만족도	
사업의 인식도	69.7	79.0	74.3	
사업의 인정도	71.7	89.7	79.8	
사업의 유효도	60.0	58.0	59.0	
어업활동	69.1	73.4	71.2	
사업 강화 필요성	85.3	92.9	89.1	
평균 만족도	71.1	78.3	74.7	

<표 V-58> 2009년 지방어항 개발사업의 이용자만족도 조사 결과

구 분	환산점수			비고
	육지지역	제주지역	평균 만족도	
사업의 인식도	86.8	97.9	92.4	
사업의 인정도	77.6	65.2	70.1	
사업의 유효도	64.6	64.0	64.3	
사업 강화 필요성	83.2	82.0	82.6	
평균 만족도	78.0	76.6	77.3	

제3장 어항개발사업의 문제점 도출

3.1 국가어항개발사업

- 국가어항개발사업의 모니터링 조사에서 분석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가어항개발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계획의 미수립

- 현재 국가어항은 신규지정된 6개 어항을 포함하여 총 110개 어항이다. 신규지정된 어항은 이제 막 새로이 개발되는 어항이다.
- 어항사업은 기본시설 사업, 정비사업, 환경개선 사업, 다기능 어항 사업 등이 있다. 현재 기본시설이 미완공된 어항(신규지정어항 제외)은 강원도의 궁촌어항, 충남의 남당항과 삼길포 어항, 전북의 구시포어항, 전남 우이도, 회진항, 연도항, 도장항, 경북의 남양항, 경남의 호두항, 제주도의 하효항 등 총 11개 어항이며, 나머지 어항은 기본시설이 완공되어 정비계획중이거나 정비사업 중인 어항이다. 또한 정비사업을 떠나 다기능어항 공사를 하는 어항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항개발사업에 대하여 현재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다.
- 과거에는 지역별로 분산투자를 하였으나, 2006년 국가어항심층평가 사업 이후에는 집중투자형식으로 변경하였으나 여전히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분산투자 방식을 취하고 있다.
- 따라서 향후에는 어항개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어항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투자우선순위는 5년마다 정하고 매년 수정보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기본시설 완공에 치우친 개발

- 현재 국가어항개발은 다기능어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본시설 완

공에 치중하고 있다.

- 기본시설의 완공도 중요하지만 수산업의 변화를 고려할 때 기능시설 및 편의시설의 확충이 시급히 요구되어진다. 신규지정어항을 포함하여 국가어항의 계류시설 완공률은 87.0%, 외곽시설의 완공률은 91.2%이다. 또한 신규지정어항을 제외한 미완공어항 11개 어항은 기본시설은 향후 2~3년 내에 모두 완공될 예정이다. 이러한 기본시설은 말 그대로 선박이 어항에 입출항하고 정박하고 수산물을 하역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다.
- 성과모니터링을 분석한 결과 국가어항의 수산업발전은 어항이 없는 지역보다 연평균수산물생산량은 2배, 수산물생산고는 1.3배 재적어선 척수는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어항의 개발전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어선세력의 증가 또는 수산물의 생산량 증대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어업이 갈수록 쇠퇴하고 있다는데 기인한다.
- 따라서 국가어항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시설보다는 어항의 기능시설 이나 편의시설 확충을 통하여 어업인들의 작업편의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 프로그램모니터링에서 많은 어업인들이 편의시설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다. 어업인의 소득증가가 미약

- 국가어항의 배후어촌계 지역의 어업인 소득증대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가어항 배후 어촌계의 어가당 평균 소득은 2,638만원으로 미사업 지역의 2,594만원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국가어항의 개발이 소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2008년도에 평가하였던 국가어항개발사업의 모니터링 결과와 비슷하

다.

- 2008년도에 국가어항 배후어촌계의 소득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장기('90~'07)에는 국가어항 배후어촌계의 연평균소득증가율이 어가평균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어촌계의 비율이 86.3%로 매우 높았으나, 중기('00~'07)에는 37.5%, 단기('05~'07)에는 27.9%로 그 비율이 갈수록 낮아졌기 때문이다.

<표 V-59> 국가어항 배후어촌계 단기, 중기, 장기 소득증가율

구분	'90~'07	'00~'07	'05 ~ '07
어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	3.79%	5.8	4.6
case	104	104	104
(국가어항 배후 어촌계 소득증가율>어가평균소득증가율)	86	39	29
ratio(%)	86.3	37.5	27.9

자료 : 해양수산부, 국가어항개발모니터링 사업, 2008

- 결국 수산업이 쇠퇴되면서 국가어항이 어촌지역의 어업인 소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어항개발이 지역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라. 국가어항개발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 국가어항개발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사업의 이해나 명확성을 나타내는 인식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어업인의 경우 살고 있는 지역에 어항이 개발되고 있음은 모두 알고 있으나 국가 어항개발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인식도는 57.7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활동이 보다 강화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국가어항개발사업에 대한 가용 예산 부족

- 프로그램 모니터링 분석결과 어항개발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업인들의 경우 국가어항 개발사업 예산의 가용성에 대하여 불과 43.4점 척도를 보이고 있으며, 공무원은 46.8 점 척도를 보여 대부분 불만족인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다.
- 또한 집행효율성도 어업인은 57.3점, 공무원은 67.8점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예산 집행 효율성도 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이러한 예산부족은 어업인의 어항개발에 대한 만족도가 50.8점으로 매우 낮은 것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우선적으로 예산확충과 효율적인 사업개발이 필요하다.

3.2 지방어항 개발사업

가. 한정된 예산대비 과도한 어항 지정

- 지방어항은 1972년 최초로 255개 지정된 이후 251개가 추가 지정되고 222개가 해제되어 2010년 12월 현재 285개의 어항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1972년부터 2006년까지 35년간 개발해 온 지방어항의 완공률은 62%에 불과하여 개발투입규모대비 과도한 어항을 지정한 상태이다.

<표 V-60> 지방어항 지정 변화

(단위: 개항)

구 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72최초지정	255	3	4	-	15	16	20	11	59	36	81	10
- '73이후 추가지정	251	11	33	6	24	1	19	8	107	-	28	14
- '73이후 해제	222	1	22	2	34	3	11	7	75	13	48	6
○ 2010.12 현재	285	13	15	4	5	14	29	12	91	23	61	18

- 지방어항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지정된 지방어항이 너무 많아 개발 또는 운영상의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그동안 251개가 추가 지정되었고 222개가 지정해제 되었다는 점에서 입증되고 있다.
- 한정된 예산으로 과도하게 지정된 어항을 개발하는 경우 자연적으로 공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런 경우 어항공사비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방어항개발 기간은 지정에서 개발완료까지 23.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비는 지정당시 어항 당 평균 5,285백만원이었으나 2007년 7,107백만으로 1.34배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⁶⁾.

- 따라서 과학적인 접근 방식에 의거하여 적정 지정어항 수를 산출하고 투자가 이루어질 때 지방어항개발도 원활히 개발되어질 것이며, 적기에 어항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우선투자 순위 계획의 미수립

- 지방어항 역시 국가어항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또는 경제적인 방법에 접근하여 투자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따라 배분하여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물론 2006년 이후 정부에서는 과거 분산방식에 의한 투자보다는 집중적인 투자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여전히 모호한 입장이다.
- 지방어항의 총사업비는 2조 148억원으로 국가어항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다. 또한 지방어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국비가 80%가 투자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다보니 중앙정부에서는 단순히 "완공위주 집중투자", "1개항 당 연간 10억원 이상 투자" 등 지방어항개발 원칙에 대하여 권고만 할 뿐이다.
- 이러한 관계로 지방어항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효과 또한 국가어항에 비해 낮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지방어항 개발 역시 경제성과 사회성, 지역발전 등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수립하고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낮은 사업의 유효도

- 지방어항에 대한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사업의 인식도나 인정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사업의 유효도는 60.0점으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예산 가용성은 일반 주민 30.2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집행효율성은 61.6점 목적달성도는 58.1점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

6) 해양수산부, '지방어항개발사업의 심층평가', 2007

방어항 개발에 대한 지연으로 인해 어업인들이 만족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적은 예산에 대한 집행 효율성에 대한 만족도도 낮음을 알 수 있다.

- 지방어항에 대한 어업활동의 만족도는 편리성과 효율성 등에서 각각 68.6점 70.2점으로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지방어항이 건설되면 주민들은 어업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나 개발과정에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업 강화 필요성이 85.9%라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 결국, 성과평가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지방어항 개발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자우선순위를 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Ⅵ편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모니터링 조사

제1장 다기능어항 효과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조사 방법

제2장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모니터링 방법

제3장 다기능어항사업 시행 전·후의 사회·경제적 현황 및
효과분석

제4장 모니터링 조사 결과

제5장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에 대한 이용자만족도 조사·
분석

제VI편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모니터링 조사

제1장 다기능어항 효과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조사 방법

1.1 모니터링 개요

가. 모니터링의 목적

- 정부는 어업활동에 의한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기본으로 하고 획득한 어획물에 대한 신속한 가공 및 물류 유통기능, 관련 산업기능, 육상·해상 교통의 기능, 관광·휴양기능, 정주생활거점기능 등 수산업이외의 부가기능을 겸비하여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다기능어항의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왔다.
- 이에 따라 다기능어항은 어업기반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어항 고유 기능성의 증진과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된 해양 관광의 명소화, 지역 문화 요구도에 부응하는 지역 문화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 정부에서는 최근 건설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기능어항 건설에 대해 지역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에서 다기능어항의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다기능어항의 투자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의 다기능어항 건설사업이 계획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프로그램에 대한 투입들과 프로그램 활동들을 측정하고, 측정된 프로그램에의 투입과 프로그램 활동들이 사전에 설정되었거나 또는 기대되고 있는 것들과 비교하여 다기능어항 건설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목표이다.
 -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의 수행 결과 어장-어항-어촌의 연계가 강화되었는가의 여부
 -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이 해당 지역 어업인의 생활기반 조성과, 소득원 및 생활환경 개선에 영향을 미쳤는가의 여부

-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이 관광 및 휴식공간의 조성 과 연계되었는가 여부

나. 모니터링의 내용

- 다기능어항 건설에 따른 어업과 수산업 및 관련 산업의 지역적 파급 효과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 다기능어항 건설에 따른 지역 어업인, 관련공무원의 의견 평가 수렴
 - 어업인과 공무원의 사업 만족성 조사
 - 외부고객(관광객)과 내부고객(주민)의 정책개선방안 조사
 - 고객의 요구 수렴 : 행정서비스,
 - 공무원의 기대 수렴 : 공공의 목표 달성 여부, 유사행정서비스에 대한 적용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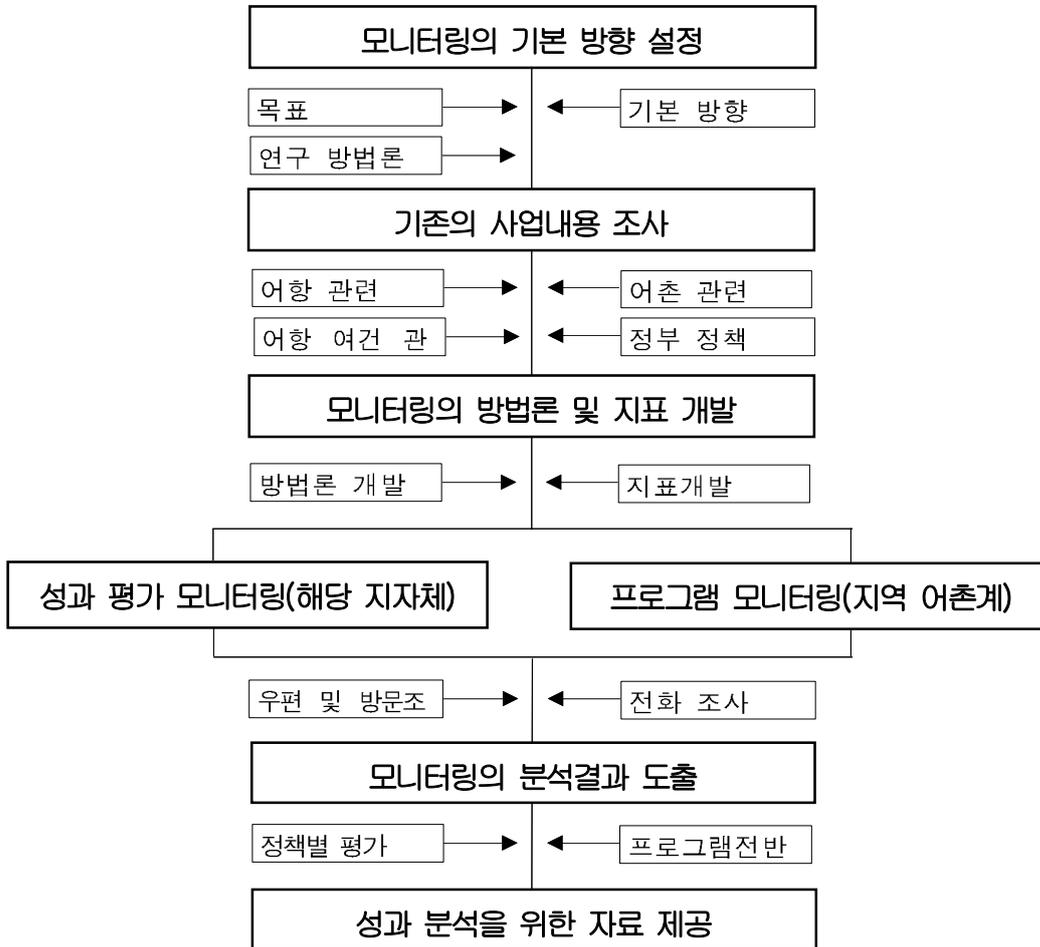
1.2 모니터링의 추진 방향

- 다기능어항 모니터링의 추진 방향은 크게 다음 3단계로 구분된다.
 - 1단계 : 모니터링의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법론 및 지표의 개발
 - 2단계(성과 모니터링) : 다기능어항 건설에 전·후의 해당 지역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성과평가
 - 3단계(프로그램 모니터링) : 사업대상지역과 인근 주민의 설문 조사를 통한 다기능어항 만족도 및 인식도 조사

가. 성과 모니터링에 의한 효과분석

- 다기능어항의 성과평가 방법은 앞서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의 성과평가에서 설명한 유형 가운데 과거추세에 의한 성과 모니터링을 위주로 수행한다.
- 현재 다기능어항의 경우 13개 가운데 8개가 완료되고 5개가 시행중이므로, 공사 전후의 경제·사회 지표의 변화를 위주로 다기능어항의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그림 VI-1>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의 모니터링 조사과정

나. 프로그램 모니터링

- 다기능어항의 주체인 어업인, 숙박 및 관광시설,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기능어항의 인식도, 인정도, 만족도 등을 조사한다.
- 다기능어항의 이용 주체인 인근 중소도시 주민에 대해 다기능어항의 인식도, 인정도, 만족도 등을 조사한다.
 - 인식도 : 동 사업이 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되는 사실을 인지하는가?
 - 인정도 : 동 사업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가?
 - 효율성 : 동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는가?

제2장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모니터링 방법

- 본 조사는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후 현실을 반영한 개선된 어항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1 지역별 모니터링 범위 및 표본

가. 지역별 모니터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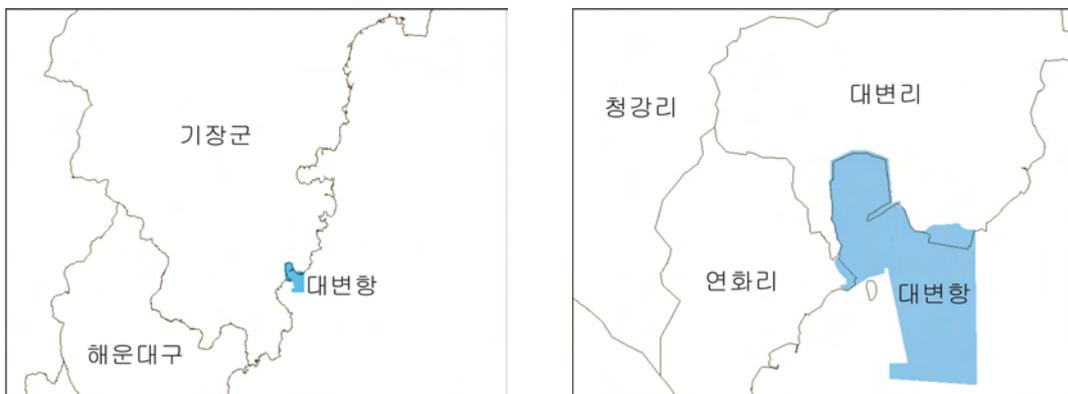
- 성과평가 모니터링은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달리 다기능어항이 포함된 지역 지자체의 객관적 통계에 의존하여 평가한다. 기본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생산통계를 기반으로 다기능어항 소속 어촌계 및 인접 읍·면·리에 대한 목적 통계를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국의 다기능어항은 아래의 표와 같이 13개로 기본 자료는 이들 어항이 포함된 기초 지자체의 통계현황과 수협의 어촌계분류평정표, 어촌계 및 통계 생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표 VI-1> 다기능 어항 모니터링 대상

시/도	시·군·구	다기능어항	비 고
부산	기장군	대변항	
인천	강화군	어유정항	
울산	북구	정자항	
강원	속초시	대포항	
강원	강릉시	강릉항	
충남	서천군	홍원항	
전북	부안군	격포항	
전남	강진군	마량항	
전남	여수시	국동항	
경북	포항시	양포항	
경남	거제시	지세포항	
경남	고성군	맥전포항	
제주	서귀포시	모슬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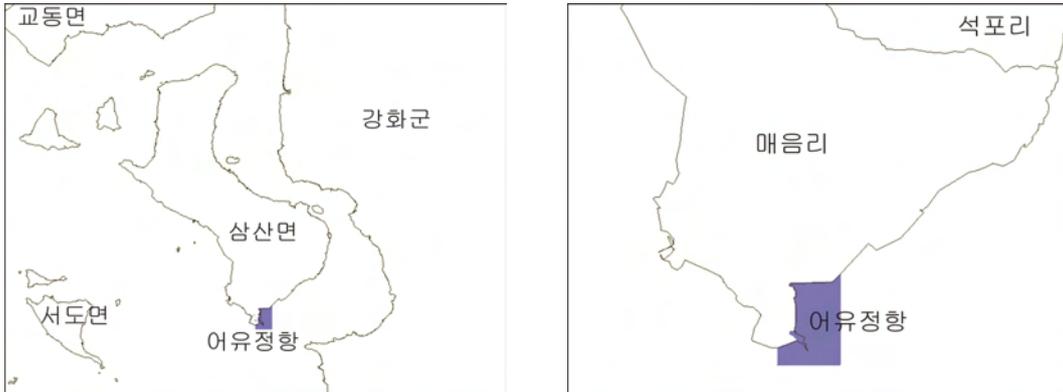
- 통계 생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체계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 다기능어항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어촌계장 또는 사무장 등을 방문조사한다.
- 현황조사 및 활동거점의 기준은 다기능어항의 영역에 인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현황조사를 위하여 다기능어항을 주로 이용하는 관련어촌계를 선정하였다. 관련어촌계는 대상지역에 주소를 둔 어촌계를 기준으로 하였다. 사업 시행 후 새로 분리되어 만들어진 어촌계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조사하였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도둔리에 주소를 둔 어촌계는 2004년 남촌, 도둔리, 요포, 장벌, 흥원 등 5개 어촌계이었으나 사업 시행 후 2009년에 요포어촌계에서 공암어촌계가 분리되어 남촌, 도둔리, 요포·공정, 장벌, 흥원, 공암 등 6개 어촌계가 되었다.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춘암리에 주소를 둔 어촌계는 춘암리어촌계 뿐이다. 춘암리어촌계는 5년 전 맥전포항의 시설설계와 함께 동화어촌계에서 분리되어 만들어졌다. 따라서 주소는 다르지만 사업 시행 전 동화어촌계와 사업 시행 후 동화, 춘암리어촌계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하였다.

(1) 대변항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와 연화리에 인접



<그림 VI-2> 대변항의 범위

(2) 어유정항 : 어유정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에 인접



<그림 VI-3> 어유정항의 범위

(3) 정자항 : 정자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과 구유동에 인접해 있음



<그림 VI-4> 정자항의 범위

(4) 대포항 : 대포항은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에 인접해 있음



<그림 VI-5> 대포항의 범위

(5) 강릉항 : 강릉항은 강원도 강릉시 견소동에 인접해 있음



<그림 VI-6> 강릉항의 범위

(6) 홍원항 : 홍원항은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도둔리에 인접해 있음



<그림 VI-7> 홍원항의 범위

(7) 격포항 : 격포항은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인접해 있음



<그림 VI-8> 격포항의 범위

(8) 마량항 : 마량항은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에 인접해 있음



<그림 VI-9> 마량항의 범위

(9) 국동항 :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신월동, 봉산동, 남산동에 인접



<그림 VI-10> 국동항의 범위

(10) 양포항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신창리, 계원리 인접



<그림 VI-11> 양포항의 범위

(11) 지세포항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소동리, 옥림리 인접



<그림 VI-12> 지세포항의 범위

(12) 맥전포항 : 맥전포항은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춘암리에 인접



<그림 VI-13> 맥전포항의 범위

(13) 모슬포항 : 모슬포항은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인접



<그림 VI-14> 모슬포항의 범위

어촌·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용역

- 다기능어항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관련 읍·면·동·리와 어촌계는 다음과 같다.

<표 VI-2> 다기능어항 사업의 대상지역과 관련 어촌계

다기능어항	시/도	시·군·구	대상지역	관련어촌계
대변항	부산	기장군	대변리, 연화리	대변, 서암, 신암
어유정항	인천	강화군	매음리	매음
정자항	울산	북구	정자동, 구유동	정자, 제전, 판지
대포항	강원	속초시	대포동	내물치, 옹치, 대포
강릉항	강원	강릉시	견소동	안목
홍원항	충남	서천군	도둔리	남촌, 도둔리, 요포, 공정, 장벌, 홍원, 공양
격포항	전북	부안군	격포리	격포
마량항	전남	강진군	마량리	서중, 신마, 원마1·2구
국동항	전남	여수시	신월동, 국동, 봉산동, 남산동	서부, 신월,
양포항	경북	포항시	신창리, 양포리, 계원리	계원1·2리, 신창1·2리, 양포리
지세포항	경남	거제시	옥림리, 소동리, 지세포리	선창, 소림, 지세포
맥전포항	경남	고성군	춘암리	춘암리(동화)
모슬포항	제주	서귀포시	하모리	하모

나. 프로그램 모니터링 표본

-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의 프로그램 모니터링 조사는 다기능어항을 사용하는 사용주민(어항부근)과 다기능 어항을 이용하는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VI-3> 프로그램 모니터링 표본

구분	근거리 사용자	원거리 이용자	비 고
모집단	다기능어항을 사용하는 사용주민(어항부근)	다기능어항을 이용하는 인근지역 주민(인근지역)	
표본수	392	308	
표본추출	사업별 유의표집	사업별 유의표집	
조사방법	전화조사	전화조사	
조사일자	2010.12.08~22(15일간)	2010.12.08~22(15일간)	

2.2 성과 모니터링 조사방법

가. 성과 모니터링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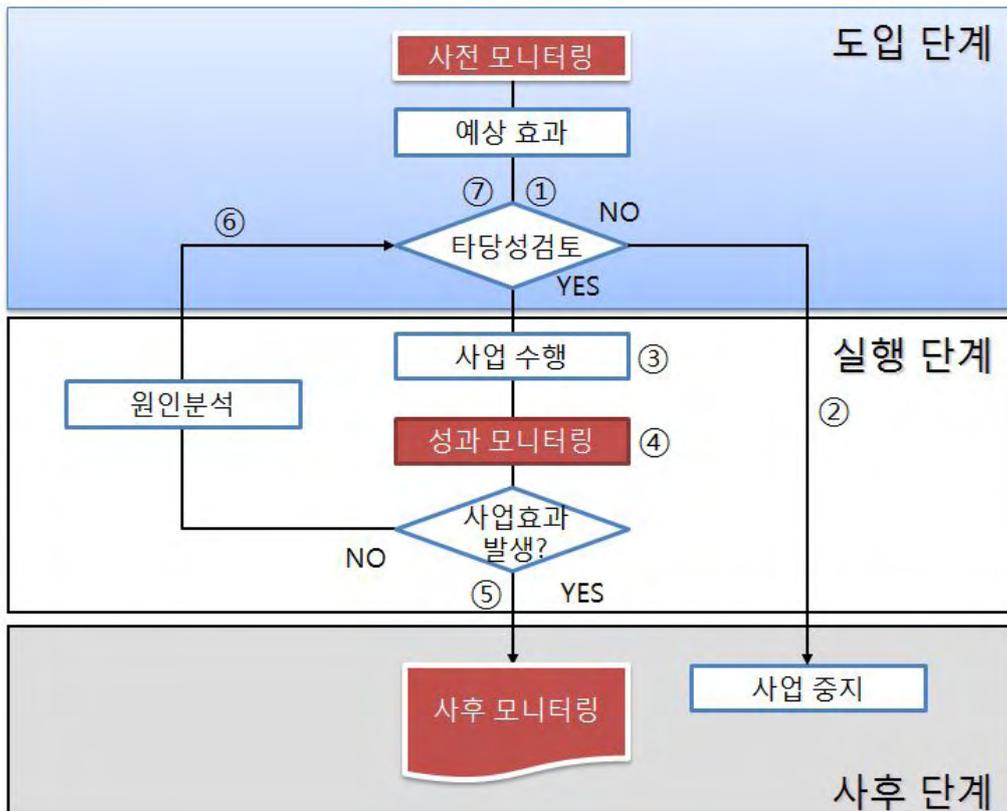
1) 성과 모니터링의 방향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과평가는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같이 다기능어항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모니터링의 한 방법이다. 프로그램 모니터링이 다기능어항 건설의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인 반면, 성과평가 모니터링은 다기능어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 다기능어항 개발 전·후의 경제적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성과평가의 방법론 정립이 필수적이며, 여기에서는 성과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방법론에 대해 설명한다.
- 성과 모니터링은 다기능어항 건설사업의 항만별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 성과 모니터링은 수행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제시될 수 있으나, 본 과업에서는 우리나라 어촌·어항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따라 다음 3가지 방안을 고려한다.
 - 1안(3단계 성과 모니터링 방안) : 개별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측정을 위해 도입단계, 실행단계, 사후단계 등 3단계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방안이다.
 - 2안(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연도별 성과 모니터링) :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성과를 다음해에 모니터링하는 방안이다.
 - 3안(1안과 2안을 결합) : 기본적으로 1안의 3단계 모니터링을 수행하되, 실행단계에 사업에 대해 2안의 연도별 성과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방안이다.
- 본 성과평가에서는 1안을 기본으로 하되, 13개 다기능어항 대부분이 도입단계서 성과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입각하여 1안

과 2안을 결합한 3안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안 : 3단계 성과 모니터링 수행 방안

- 특정 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방법으로 많이 적용되는 방법으로, 사업을 도입단계와 실행단계, 사업완료단계로 구분하여 해당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다.
- 모니터링은 성과평가를 위한 관찰 자료의 확보수단으로 3단계에 걸쳐 수행한다.
 - 통상 도입단계, 실행단계, 사후단계 별로 사업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성과평가에서는 모니터링의 결과를 통하여 사업 추진, 사업 지속 수행, 사업추진 결과 등을 평가한다.



<그림 VI-15>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의 성과 모니터링 수행 절차

- 3단계 모니터링 수행 방안을 적용하여 다기능어항건설사업의 모니터링 전체 구성도는 위의 그림과 같으며, 각 과정별로 부여된 숫자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 ① 다기능어항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 및 어촌계에서는 사전 모니터링 양식에 기재된 지표에 대해 사업 시행 전 현재의 수준과 사업 후의 예상 수준을 조사 제출함
 - ② 필요성 검토 결과 사업의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을 기각하여 사후단계로 넘겨짐
 - ③ 필요성 검토 결과 사업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기간을 확정하여 지방어항건설사업을 수행함
 - ④ 매 기간 사업 수행에 따른 실행단계의 성과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사업효과의 발생 여부를 판단함
 - ⑤ 실행단계에서 사업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다음 기간까지 사업을 지속함
 - ⑥ 매 기간 사업 수행에 따른 실행단계 성과 모니터링에서 사업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원인분석을 수행하고 도입단계의 타당성 분석을 다시 수행함
 - ⑦ 판단결과 사업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②의 경우와 같이 기각하여 사후단계로 넘겨지고, 다른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사업 효과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③의 단계로 사업을 지속함

(1) 도입단계의 성과 모니터링

- 도입단계의 성과 모니터링은 사업 이전에 해당지역의 현황을 모니터링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의 추진 목표와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별에 부응하는 지표를 대상으로 과업 수행 이전에 사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해당 지역에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도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진목표를 설정한

다.

- 사전 모니터링의 조사대상은 사전단계는 물론 실행단계와 사후단계에 걸쳐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을 선정해야 하며 다음 표에서 제시된 모니터링 방안에 부합하는 조사항목을 선정한다.

<표 VI-4> 다기능어항 개발 도입단계 사전 모니터링 방향

추진목표	추진과제	세부과제
수산업 지원기능	어업생산기반시설확충	어촌계 발전잠재력
		수산업 잠재력 제고
해양관광·유통·문화·복지 등 복합적 기능	기반시설계획	관광객 여가·휴식공간
	관광프로그램	체험관광프로그램
		새로운 관광루트 확립
어업인 소득창출 기능	어업 소득 향상	수산업 소득
	어업 외 소득 향상	관광 소득

- 조사항목은 다기능어항의 개발 추진 목표에 따른 세부 과제를 선정하였다. 조사항목은 수산업 지원기능, 해양관광·유통·문화·복지 등 복합적 기능, 어업인 소득창출 기능 등에 대한 지표 개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 그러나 13개 다기능어항별로 상이한 여건을 반영하여 다기능어항별로 조사 지표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사전 모니터링의 조사지표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 사전 모니터링의 수행 시점 및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수행 시점 : 사업이 수행되기 이전 기본계획서 작성 시점
 - 수행 주체 : 기본계획서 작성 주체
 - 조사 내용 : 위 표에서 제시된 추진과제 항목 중 달성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선정하고 조사
 - 조사 범위 : 사업이 영향을 미치는 어촌계 또는 해당 면소재지에 한정

하여 작성한다.

(2) 실행단계의 성과 모니터링

- 실행단계의 성과 모니터링은 사업이 시행된 지 일정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사업 수행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고 다음 기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 실행단계의 성과 모니터링은 전체효과에 대해 일정한 비율 이상의 성과를 제시하였는가 여부를 통해 사업의 지속여부를 파악한다. 또는 이 시점에서 사업의 효과가 발생되는가를 파악하여 일정 기준이상의 효과가 발생될 경우 사업을 지속한다.
- 실행단계 성과 모니터링의 수행 시점 및 주체는 다음과 같다.
 - 수행 시점 : 사업 착수 후 일정 시간이 경과된 시점(매년 혹은 일정 기간)
 - 수행 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전문 연구기관, 관련 대학
 - 조사 내용 : 사업 시행기관이 기 제출한 사전 모니터링(도입단계 성과 모니터링)에서의 조사 항목에 대해 수행 주체가 사업성과 및 사업진척도를 현지 정밀 조사함
 - 조사 목적 : 중간 단계의 성과평가를 동시에 수행

(3) 사후단계의 성과 모니터링

- 다기능어항의 사후단계 성과 모니터링은 다기능어항의 건설로 인해 해당지역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이 중단된 경우 사업이 중단 또는 완료된 시점에서 사업 착수 후 현재까지의 사업성과를 모니터링 한다.
- 총 투자비용 대비 성과의 객관적 평가는 모니터링 단계가 아닌 성과평가 단계로 이관하여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연계 평가한다.
- 사후단계 성과모니터링의 수행시점 및 주체는 다음과 같다.

- 수행 시점 : 사업이 완료된 시점(사업이 정상 완료되었거나 중도 취소된 시점)
- 수행 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전문 연구기관, 관련 대학
- 조사 내용 : 사업 시행기관이 기 제출한 사전 모니터링(도입단계 성과 모니터링)에서의 조사 항목에 대해 수행 주체가 사업성과 및 사업진척도를 현지 정밀 조사함
- 조사 목적 : 사업의 성과를 정밀 판단하여 향후의 사업에 반영하는 한편, 중도 취소된 사업의 경우 사례 분석을 통해 유사사업 재발 방지

(4) 3단계 성과 모니터링의 장·단점

- 3단계 성과 모니터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 등 외국에서도 공공시설의 성과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사업의 체계적·합리적·종합적 관리가 가능하다. 개별 다기능어항 건설 사업에 대해 수행단계, 실행단계, 완료단계 별로 사업을 관리하고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사업의 수행여부를 결정하므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다.
 - 사업의 효과를 장기에 걸쳐 측정 가능하다. 통상 어촌·어항 건설사업의 사회경제적 사업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단기에 사업의 평가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3단계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효과의 장기측정이 가능하다.
 - 사업 효과의 귀속 여부 판단이 가능하다. 단기간에 발생하는 효과는 다기능어항 건설로 인해 유발되는 것인지, 혹은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지의 사업효과 귀속 여부 판단이 어렵다. 그러나 3단계 성과 모니터링을 적용할 경우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평가하기 때문에 사업효과의 귀속여부 판단이 용이하다.
- 그러나 3단계 성과모니터링은 경제나 정책적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

응력이 결여된다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모니터링이나 성과평가를 일정시점 이후에 수행하기로 되어있어 즉각적인 경제나 정책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3단계 성과 모니터링은 대형 사업에 적합하며, 사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 오히려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 또한 다기능어항과 같이 이미 도입시점에서 성과 모니터링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 완전한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기능어항의 성과평가는 3단계평가와 연도별 성과평가의 적절한 혼합을 통해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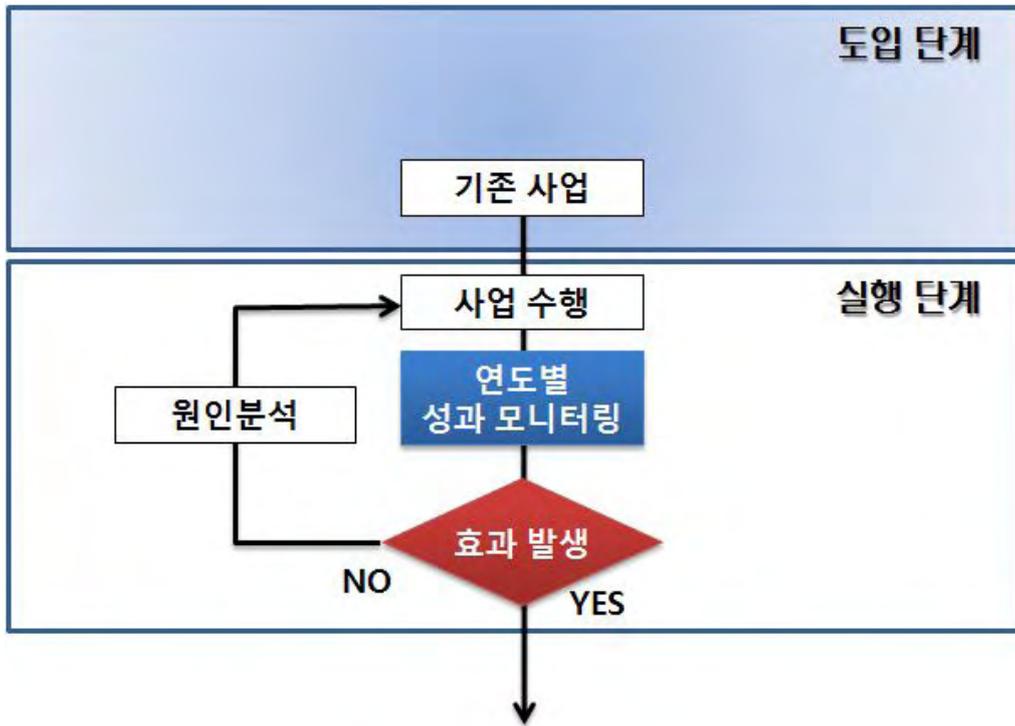
2) 제2안 : 연도별 성과 모니터링

- 연도별 성과 모니터링은 해마다 지속되는 사업에 대해 당해연도의 사업추진을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하고 다음 해의 사업 시 이를 즉각 반영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다기능어항에 대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연도별 성과 모니터링의 개요

- 농림수산식품부의 어촌·어항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기본 목표는 연도별 성과평가를 기본으로 한다. 즉, 당해 연도 사업에 대한 사업전후의 사업 효과(성과)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해당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함이다.
- 앞에서 제시한 3단계 모니터링 수행방법 가운데 2단계인 실행단계의 모니터링을 연도별로 특정 항목에 대해 반복함으로써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궁극적으로 사업 실행의 중요성을 추구하는 모니터링 방법에 해당한다.

- 특히, 13개 다기능어항과 같이 이전에 도입단계에서 성과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못한 기존사업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실행단계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연도별 성과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림 VI-16> 다기능어항 건설사업의 연도별 성과 모니터링 수행 절차

(2) 연도별 성과 모니터링의 수행 방법

- 연도별 성과 모니터링은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중요 항목에 대해 연도별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의 경우 어항건설의 공정율과 예산집행비율 등 정책 진척도와 완공시설에 대한 어선대피율, 자연재해 등을 중심으로 연도별 성과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
- 연도별 성과 모니터링의 수행 시점 및 주체는 다음과 같다.
 - 수행 시점 : 매년 또는 일정기간(연구 종료 포함)

- 수행 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전문 연구기관, 관련 대학
- 조사 내용 : 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비교적 간단한 항목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함
- o 연도별 조사의 경우 경제·사회지표에서 단기적 효과측정이 어려우므로 지역통계 등 객관적으로 수치화 될 수 있는 자료와 건설예산의 집행 등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내용의 항목이 주요 대상이 된다.
- o 어항 건설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성과평가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간략형 성과평가 지표에 의거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표 VI-5>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모니터링 성과 평가 지표(예시)

과 제	세부과제	지 표	단 위
수산업 지원 기능	어촌계 발전 잠재력	총 세대	호
		어업 세대	호
		총 인구	명
		어업 인구	명
		어촌의 발전수준 및 어촌의 유형	-
		어업권현황	건, ha
		어선 수	척
		총 톤수	톤
		소형선 비율	%
	수산업 잠재력 제고	위판장 및 창고시설 규모	m ²
		보급시설/야적장 규모	m ²
		어선입출항 척수	척
		황천시 대피 선박수	척
관광 복합 공간	관광기반 시설	음식점 수	개
		여가휴식시설 수(호텔/콘도/여관/민박)	개소
		관광객 수	명
	체험관광 시설	해안 소공원	개소
		낚시터 수	개소
		어업·어촌 체험시설 수	개소
		전통문화 체험시설 수	개소
		기타 체험시설 수	개소
어업인 소득 수준	어업소득	어업 생산량	톤/년
		어업 생산액	백만원
		호당 평균소득	천원
사업추진 현황	다기능어항 개발	사업 예산 집행율	금액/%
		사업 공정율	%

(3) 연도별 성과 모니터링의 장·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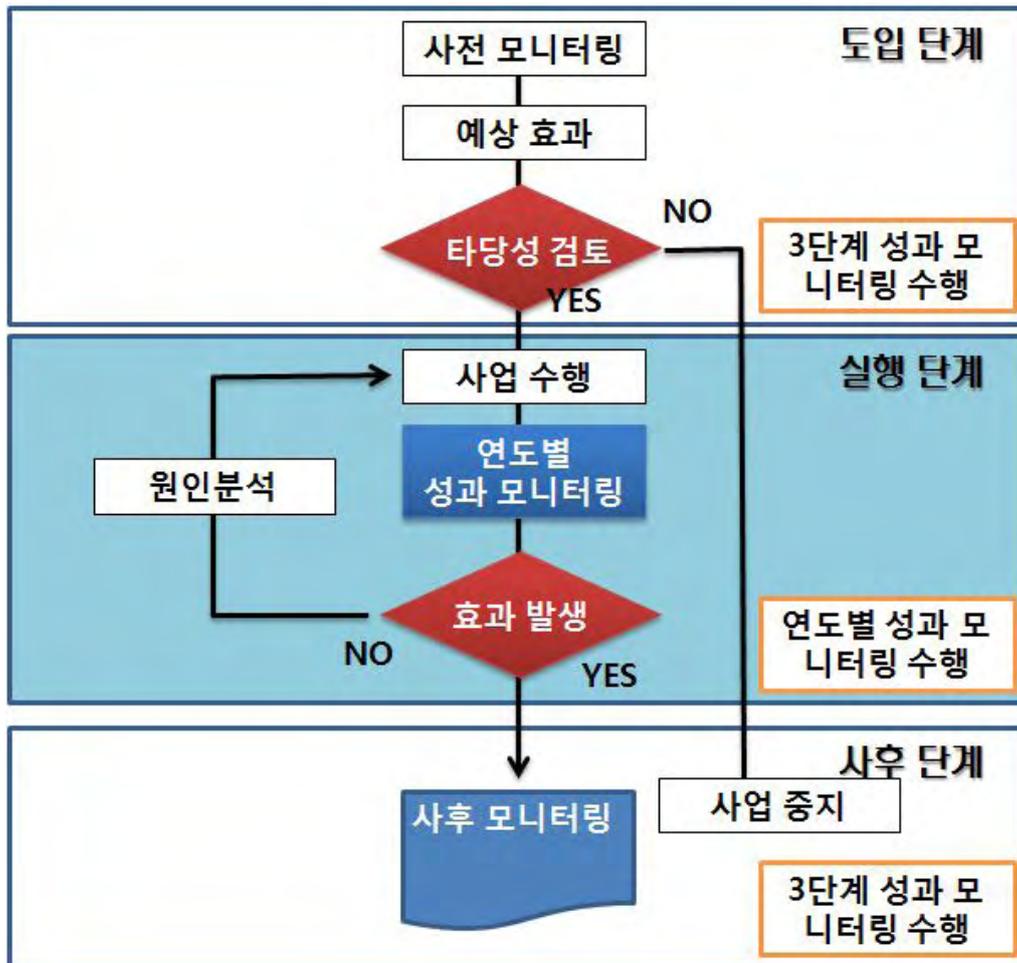
- 연도별 성과 모니터링의 장점은 사업 추진 내용이나 정책적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모니터링이 매년 수행되므로 공사기간이나 예산 등 사업내용의 변경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해진다.
- 또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소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대한 모니터링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종종 이 평가 방법이 사용된다.
- 따라서 도입단계의 성과 평가가 없었던 기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연도별 혹은 일정 기간별 성과 모니터링의 수행이 가장 현실적인 모니터링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다.
- 그러나 연도별 성과 모니터링은 장기적 사회경제적 효과 측정이 어렵다는 점과 사업 효과의 귀속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통상 어촌·어항에서 항만건설사업의 사회경제적 사업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 성과 모니터링으로는 사회경제적 효과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단기간에 발생하는 효과는 지방어항건설로 인해 유발되는 것인지, 혹은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지의 사업효과 귀속여부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3) 제3안 : 현실적인 대안

- 제3안은 앞의 제1안과 제2안을 절충한 성과 모니터링 기법으로 도입 단계와 사후단계의 경우 제1안(3단계 성과 모니터링)을 적용하되, 실행단계의 경우 제2안(연도별 성과 모니터링) 수행하는 방안이다.
- 즉, 공사가 완료된 다기능어항의 경우 3단계 성과 모니터링을 적용하여 사전단계와 사후단계의 사회경제적 성과평가를 수행하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다기능어항의 경우 연도별 혹은 일정 시점별로 성과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방안이다.

- 향후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제1안에서와 같이 도입단계, 실행단계, 사후단계에 걸쳐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수행하되, 실행단계의 성과 모니터링은 연도별 성과 모니터링으로 수행한다. 즉, 성과평가와 연결된 일정시점의 실행단계 성과모니터링과 별도로 매년(혹은 일정 시점마다) 사업 수행과 관련된 연도별 성과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 반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경우 도입단계의 사전 모니터링 자료가 없으므로 기존의 연도별(혹은 일정 시점별) 성과 모니터링을 추진하되, 과거 통계자료에 입각하여 도입단계의 사전 모니터링을 현 시점에서 단계적으로 수행한다.



<그림 VI-17> 제3안의 성과 모니터링 방안

나. 다기능어항 성과평가 방안

-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의 주요 효과를 계량 또는 비계량적으로 측정하는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중 어떤 척도가 사업의 성격, 효과 등을 잘 나타내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순응여부를 검사하거나 제공된 용역을 추적하는 활동을 말하며, 이에는 기존 사업의 방향성 등의 재검토와 향후 사업의 변화 또는 활성화 방안제시까지 포함한다. 여기에서는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의 현황을 조사할 때에 주로 활용되는 지표의 종류에 대해 정리한다.
- 주요조사 내용은 어항의 기능성측면, 관광·유통·문화·복지 등 복합적 기능성측면, 어업인 소득창출 기능측면에 대한 것이다.
- 어항의 기능성 측면에서는 수혜대상 인구와 성장성 등을 고려한 어촌계의 발전잠재력, 어업생산량, 어선수, 어업인수, 어항시설, 유통·가공시설 등을 고려한 수산업 잠재력 등에 대해 조사한다.
- 관광·유통·문화·복지 등 복합적 기능성측면에서는 어촌체험시설, 기존관광시설, 교통·문화시설, 관광체험시설, 관광객 수 등을 고려하여 조사한다.
- 어업인 소득창출 기능측면에서는 어업소득, 관광이용율 등을 고려하여 조사될 것이다.
- 세부 조사표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표 VI-6>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성과 모니터링 지표

추진목표	세부과제	용도별	지표
수산업 지원기능	어촌발전 잠재력	수혜대상	총 세대 (가구)
			총 인구 (명)
			어가 (호)
			어가인구 (명)
		성장성	청장년인구 (명)
			65세 이상 고령자 (명)
	수산업 잠재력	자원잠재력	어가 비율 (%)
			어가인구 비율 (%)
		시설소요	어획량 (M/T)
			어획금액 (백만원)
			어업권수 (건)
		유통가공시설	어업권면적 (ha)
어선척수 (척)			
관광·유통 ·문화 복지 등 복합적 기능	어촌관광 지원시설	숙박 및 음식점	수산물 유통시설 (㎡)
			공동시설 보유수 (개)
		유형, 오락시설	업체수 (개소)
			종사자 수 (명)
			업체수 (개소)
			종사자 수 (명)
	공원	자연공원 (개소)	
		어린이공원 (개소)	
		근린공원 (개소)	
	관광·교통·복지 등 복합기능	관광	도시자연공원 (개소)
			사업체수 (개소)
			관광객수 (명)
교통		자원수 (개)	
		주차장 용지 (㎡)	
복지		복지시설 (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 (개소)		
문화	문화공간 (개소)		
	문화공간 (개소)		
어업인 소득창출	어업소득	소득	호당 어가소득 (천원)
		어촌계유형	발전수준
			입지유형
			종사유형

2.3 프로그램 모니터링 조사방법

-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이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여 계획 및 시행이 되고 있는 지를 평가하기 위한 프로그램 모니터링의 지표는 크게 사업의 인식도, 사업의 적합도, 그리고 사업의 유효도 등으로 나눈다. <표 VI-7>는 동 사업의 프로그램 모니터링 지표를 요약한 것이다.

<표 VI-7>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프로그램 모니터링 지표

구분	지표	응답척도	대상자
사업의 인식도	사업의 인지도	2점	근거리사용자 원거리이용자
	사업의 이해도	5점	근거리사용자 원거리이용자
사업의 적합도	사업의 목적성	5점	근거리사용자
	사업의 연계성	5점	근거리사용자 원거리이용자
사업의 유효도	예산의 가용성	5점	근거리사용자
	집행의 효율성	5점	근거리사용자 원거리이용자
	사업추진 효율성	5점	근거리사용자

- 사업의 인식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사업의 인지도, 사업의 이해도 등으로 구성된다.
 - 사업의 인지도(2점 척도)는 근거리사용자와 원거리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여부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한다.
 - 사업의 이해도(5점 척도)는 근거리사용자와 원거리이용자를 대상으로 소득증대 및 관광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 사업의 적합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사업의 목적성, 사업의 연계성 등으로 구성된다.
 - 사업의 목적성(5점 척도)은 근거리사용자를 대상으로 소득증대 및 관

광활성화에 기여를 하였는지 조사한다.

- 사업의 연계성(5점 척도)은 근거리사용자와 원거리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이 다른 항에 수행될 경우 우리나라 어촌의 소득 증대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다.
- 사업의 유효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예산의 가용성, 집행의 효율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으로 구성된다.
 - 예산의 가용성(5점 척도)은 근거리 사용자를 대상으로 예산지원이 충분한지를 조사한다.
 - 집행의 효율성(5점 척도)은 근거리사용자와 원거리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이 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적정한 수준인지를 조사한다.
 - 사업추진의 효율성(5점 척도)은 근거리사용자를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의 행정력이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한다.

제3장 다기능어항사업 시행 전·후의 사회·경제적 현황 및 효과분석

3.1 사회·경제적 현황 및 효과분석을 위한 성과모니터링 지표

- 다기능어항의 건설 전·후의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기능어항 사업의 성과 조사 대상지역과 관련어촌계를 분류하였다.
- 어항으로서의 기능(수산업 지원기능), 어업인 소득창출 기능 중 어업소득 부분은 다기능어항 건설 사업지역의 관련어촌계와 해당수협외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담당 공무원,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관광·유통·문화·복지 등 복합기능과 어업인 소득창출 기능 중 어업이외의 소득 향상 부분은 다기능어항 건설 사업지역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담당 공무원, 해당 지역주민, 어항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다기능어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의 정자항, 강원도 속초시의 대포항, 강원도 강릉시의 강릉항, 전남 여수시의 국동항 사업지역은 비교적 자료가 충실한 권역(읍면동)에 위치해 있지만 나머지 어항은 세부 자료가 부족한 권역(리)에 위치해 있어 지자체의 통계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자료가 충실한 권역(읍면동)에 있는 정자항, 대포항, 강릉항의 경우에도 법정동의 구분으로서, 행정동을 기본으로 하는 지자체의 통계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따라서 다기능어항이 법정동 권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행정동에서 법정동이 차지하는 비율과 대상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였고, 다기능어항이 리 권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리가 차지하는 비율과 대상지역의 특성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당공무원, 해당수협, 해당어촌계에 설문하여 비율을 설정하였다.
- 전국에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다기능어항 13항을 선정하고 개소당 90~300억 내외(총 2,476억)을 투자할 예정이다. 2010년말 기준으로 13개 다기능어항 중 9개 어항은 투자가 완료되었고, 3개 어항

(대변항, 국동항, 지세포항)은 아직 공사 중에 있으며, 1개 어항(어유정항)은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투자가 완료된 9개 어항 중에서도 4개 어항(대포항, 흥원항, 격포항, 맥전포항)은 2010년말 기준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가 완공된 어항은 5개 어항(정자항, 강릉항, 마량항, 양포항, 모슬포항)에 불과하다. 완공된 5개 어항 중에서도 최근의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2009년말까지 공사가 완공된 어항은 3개 어항(정자항, 마량항, 양포항)이다.

- 따라서 현 시점에서 13개 어항 중 사후단계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어항은 3개 어항에 불과하며, 9개 어항은 실행단계의 성과를 파악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1개 어항은 도입단계의 성과 모니터링에 해당한다.
- 이와 같이 사업의 진척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다기능어항 전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의 실시설계 이전인 2004년(2005년 통계자료)을 “사업 시행 전”,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비교할 수 있었던 2009년(2010년 통계자료)을 “사업 시행 후”로 가정하여 다기능어항의 건설 사업 전·후의 사회·경제적 현황 및 효과를 분석하였다. 일부 통계자료가 발표되지 않았거나 확보할 수 없었던 지자체에 속하는 다기능어항은 2004년과 2009년과 가장 가까운 자료를 활용하였다.

가. 수산업 지원 기능

- 권역별 어촌의 발전 잠재력, 수산업 잠재력을 조사하여 다기능어항의 수산업 지원 기능을 파악하였다.
- 어촌의 발전 잠재력의 조사를 위해서는 총 인구, 총 세대에 대한 어촌인구, 어촌세대의 비율, 청장년 인구의 비율, 인구증감률 등의 지표가 이용된다.
- 수산업 잠재력의 조사를 위해서는 어업생산량, 어업생산액의 자원 잠

재력, 어업권수, 어업권면적, 어선척수 등 시설소요, 수산물유통시설, 공동시설 보유수 등의 유통가공시설 등의 지표가 이용된다.

- 이들 지표를 조사하기 위해 다기능어항 사업지역과 해당수협의 통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담당 공무원,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VI-8> 수산업 지원 기능 조사 지표

세부과제	용도별	지표
어촌발전잠재력	수혜대상	총 세대 (가구)
		총 인구 (명)
		어가 (호)
		어가인구 (명)
	성장성	청장년인구 (명)
		65세 이상 고령자 (명)
		어가 비율 (%)
		어가인구 비율 (%)
수산업잠재력	자원잠재력	어획량 (M/T)
		어획금액(백만원)
	시설소요	어업권수 (건)
		어업권면적 (ha)
		어선척수 (척)
	유통가공시설	수산물 유통시설(m ²)
		공동시설 보유수 (개)

나. 관광·유통·문화 복지 등 복합기능

- 권역별 어촌관광 지원시설, 관광·교통·복지·문화 등 어촌기반시설을 조사하여 다기능어항의 관광·유통·문화·복지 등 복합기능을 파악하였다.
- 어촌관광 지원시설의 조사를 위해서는 숙박업소 및 음식점의 수 및 종사자 수, 유흥 및 오락시설의 수 및 종사자 수, 자연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등의 공원의 지표가 이용된다.

- 관광시설, 체험관광시설의 조사를 위해서는 관광시설의 수, 국가지정 또는 지방지정 관광자원의 수, 체험시설의 수, 축제의 수 등의 지표가 이용된다.
- 기타 문화시설의 수, 교통편의 수 등의 교통·복지·문화시설과 축제참자가의 수, 문화시설 관람객의 수, 지정 관광자원 관람객의 수 등의 관람객의 수가 다기능어항의 관광·유통·문화·복지 등 복합기능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 이들 지표를 조사하기 위해 다기능어항 사업지역과 해당수협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담당 공무원, 해당 지역주민, 어항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VI-9> 관광·유통·문화 복지 등 복합기능 조사 지표

세부과제	용도별	지표
어촌관광 지원시설	숙박 및 음식점	업체수 (개소)
		종사자 수 (명)
	유흥, 오락시설	업체수 (개소)
		종사자 수 (명)
	공원	자연공원 (개소)
		어린이공원 (개소)
		근린공원 (개소)
		도시자연공원 (개소)
관광·교통·복지 등 복합기능	관광	사업체수 (개소)
		관광객수 (명)
		자원수 (개)
	교통	주차장 용지 (㎡)
	복지	복지시설 (개소)
	문화	노인여가복지시설 (개소)
		문화공간 (개소)

다. 어업인 소득창출 기능

- 권역별 어업소득을 조사하여 다기능어항의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을 파악하였다.
- 어업소득의 조사를 위해서는 호당 어가소득, 어촌계 유형 등의 지표가 이용된다.
- 어촌계의 유형은 발전수준별, 입지유형별, 종사유형별로 구분하였으며, 어촌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발전수준별 어촌계의 유형
 - 성장 : 신설 또는 경영기반이 취약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할 어촌계

- 자립 : 경영기반이 취약단계를 벗어나 스스로 어촌계 경영을 도모해야 할 어촌계
- 복지 : 지속적인 성장 결과 경영기반이 우수하여 계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을 가진 어촌계
- 입지유형별 어촌계의 유형
 - 취약지구형 : 교통·통신이 불편한 낙도 벽지 및 접적지역 내에 위치한 어촌계
 - 연안촌락형 : 도시근교형 및 취약지구형이 아닌 어촌계
 - 도시근교형 : 시·군·읍 소재지 및 인접의 어촌계로 생활여건이 도시형인 어촌계
- 종사유형별 어촌계의 유형
 - 어선어업형 : 어촌계원의 대다수 또는 절대적인 생산기반이 어선어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어촌계
 - 양식어업형 : 해조류양식·패류양식·어류등양식·복합양식·협동양식어업 등에 주로 종사하는 어촌계
 - 복합형 : 어선어업형과 양식어업형의 세력이 비슷한 어촌계
- 이들 지표를 조사하기 위해 다기능어항 사업지역과 해당수협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담당 공무원,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VI-10>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조사 지표

세부과제	용도별	지표
어업소득	소득	호당 어가소득(천원)
	어촌계유형	발전수준 (성장/자립/복지)
		입지유형 (취약지구/연안촌락/도시근교)
		종사유형 (어선어업/양식어업/복합어업)

3.2 항별 성과 모니터링에 의한 사회경제적 현황 및 효과분석

가. 대변항

- 대변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와 연화리에 인접해 있다. 따라서 대변항의 사업 전·후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대상지역은 기장읍 대변리, 연화리이며, 관련어촌계는 대변어촌계, 서암어촌계, 신암어촌계로 한정한다.
- 대변항은 2010년말 기준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어항으로 본 성과조사를 활용하여 실행단계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 기장읍은 14개의 법정리, 38개의 행정리를 가지고 있으며 대변리와 연화리는 14개의 법정리에 속한다. 기장읍의 면적 39.2km²은 기장군의 면적 218.06km²의 18.0%이지만, 기장읍의 총 세대와 총 인구는 각각 기장군의 56.6%, 57.1%를 차지한다. 기장읍 14개의 법정리에서 바다와 연접해 있는 권역은 시랑리, 연화리, 대변리, 죽성리의 4개이며, 이중 대변리, 연화리에 속한 어촌계가 어가 72.3%, 어가인구 81.9%, 어촌계원 55.9%, 어업권건수 45.2%, 어선수 58.9%, 수산물 생산실적은 54.1% 등을 차지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대략 어업시설, 어업소득이 기장읍을 100%로 하였을 때 대변리, 연화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55%정도이었다. 관광시설과 관광소득은 대변항 주변으로 숙박시설 및 음식점이 분포하여 있으나 많은 시설이 기장읍내에 치중해 있어 대변리, 연화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기장읍을 100%로 하였을 경우 25%정도이었다.

(1) 수산업 지원 기능

- 세대와 인구조사는 대변리, 연화리만의 자료를 얻기 어려워 기장읍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총 세대는 사업 전(2004년) 17,689가구에서 사업 후(2009년) 20,012가구로 13.1% 증가하였으며, 총 인구는 사업 전 49,779명에서 사업 후 51,582명으로 3.6% 증가하였다. 세대별

인구는 2.8명에서 2.6명으로 감소하였다.

- 총 세대에 대한 어가의 비율은 사업 전 3.8%에서 사업 후 4.1%로 증가하였으며, 총 인구에 대한 어가인구의 비율은 사업 전 3.1%에서 사업 후 3.0%로 감소하였다. 어가의 비율 증가와 함께 어가는 사업 전 668가구에서 사업 후 817가구로 22.3% 증가하였으며, 어가인구의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어가인구는 사업 전 1,536명에서 사업 후 1,562명으로 1.7% 증가하여 수혜대상이 증가하였다.
-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구와 청장년(20세~49세)의 인구는 기장군의 자료밖에 없어 기장군의 비율을 이용하여 기장읍의 자료를 추정하였다. 총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구비율은 사업 전 10.9%에서 사업 후 11.8%로 증가하였다. 청장년(20세~49세)의 인구비율은 사업 전 48.3%에서 사업 후 44.7%로 감소하였다. 즉 고령자는 12.6% 증가하였고, 청장년층 인구는 4.1% 감소하였다. 노년층의 증가와 청장년층의 감소는 있었으나 다른 권역에 비해 그 증가와 감소 폭이 적어 발전 잠재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대변항은 사업 시행 후 총 세대, 총 인구, 어가, 어가인구가 증가하여 어촌 발전 잠재력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I-11> 어촌 발전 잠재력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총 세대 (가구)	17,689	20,012	▲ 13.1
총 인구 (명)	49,779	51,582	▲ 3.6
어가 (호)	668	817	▲ 22.3
어가인구 (명)	1,536	1,562	▲ 1.7
청장년인구 (명)	24,060	23,073	▽ 4.1
65세 이상 고령자 (명)	5,424	6,108	▲ 12.6
어가 비율 (%)	3.8	4.1	▲ 0.3
어가인구 비율 (%)	3.1	3.0	▽ 0.1

어촌·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용역

- 대변항 권역의 수산업 잠재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업생산량, 어업생산액 등의 자료가 활용되었고,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의 현황, 어선척수 등의 시설소요와 유통시설, 공동시설 등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 대변항 권역의 어획량은 사업 시행 후 4.5% 증가하였으며, 어획금액은 147.6%로 대폭 증가하였다. 어획물이 고가로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사업 시행 후 어획량과 어획금액이 증가하여 자원 잠재력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 대변항 권역 3개의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복합양식어업 11건, 마을어업 3건으로 사업 시행 전·후에 동일하였으며, 어업권의 면적은 139ha이었다. 또한 대변항 권역 어촌계가 소유하고 있는 어선은 사업 시행 전 91척에서 사업 시행 후 96척으로 5.5% 증가하였다.
- 대변항 권역의 유통시설은 사업 시행 전·후에 9,034m²으로 동일하였으며,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공동시설은 사업 시행 전·후에 33개로 동일하였다.

<표 VI-12> 수산업 잠재력

용도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자원 잠재력	어획량 (MT)	4,867	5,085	▲ 4.5
	어획금액 (백만원)	2,334	5,780	▲ 147.6
시설 소요	어업권수	14	14	
	어업권면적 (ha)	139	139	
	어선척수	91	96	▲ 5.5
유통가 공시설	수산물 유통시설 (m ²)	9,034	9,034	
	공동시설 보유수	33	33	

- 대변항은 2010년말 기준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어항으로 성과 조사를 수행한 2009년에는 공사완공율이 낮아 시설소요 및 유통시설, 공동시설 등의 변화가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관광·유통·문화 복지 등 복합기능

- 대변항의 사업 시행 전·후의 경제적 지표 평가를 위하여 대상지역의 숙박 및 음식점, 유흥 및 오락시설의 업체수·종사자 수와 공통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을 조사하여 어촌관광 지원시설을 평가하였다. 자료는 대변리, 연화리만의 자료를 얻기 어려워 기장읍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관광시설과 관광소득은 대변항 주변으로 숙박시설 및 음식점이 분포하고 있으나 많은 시설이 기장읍내에 집중해 있어 대변리, 연화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기장읍을 100%로 하였을 경우 25% 정도이다. 이러한 추정치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대변항 권역의 어촌관광 지원시설을 평가할 수 있다.
- 사업 시행 전 숙박 및 음식점의 업체수는 827개소, 종사자 수는 2,071명으로 기장군 전체 숙박 및 음식점 업체수의 56.6%, 종사자 수의 57.2%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업 시행 후 이 비율은 약간 감소하였지만 미미한 수준이었다.
- 사업 시행 전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는 162개소, 종사자는 293명으로 기장군 전체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의 76.8%, 종사자 수의 55.7%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업 시행 후 이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며, 특히 종사자의 감소율이 27.0%로 가장 컸다.
- 이 기간 동안 기장군의 전체 업체수와 종사자 수는 각각 10.1%, 10.5% 증가하였으며, 기장읍은 각각 6.4%, 0.3%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건설업, 운수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개선으로 판단된다. 반면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부동산 및 임대업은 감소 추세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 대변항은 2010년말 기준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어항이었으며, 성과조사를 수행한 2009년에는 아직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숙박 및 음식점, 유흥·오락시설이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숙박 및 음식점,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와 종사자 수는 어촌관광 지원시설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활동에 의한 감소로 생각할 수 있다.
- 어촌의 공통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의 개소는 사업 시행 후 6.5% 증가하였다. 공원의 숫자는 미미하게 증가하였으나 면적은 921.8%로 급등하여 어촌관광의 잠재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3> 어촌관광 지원시설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숙박 및 음식점	업체수 (개소)	827 (56.6%)	809 (55.4%)	▽ 2.2
	종사자 수 (명)	2,071 (57.2%)	1,921 (53.7%)	▽ 7.2
유흥, 오락시설	업체수 (개소)	162 (76.8%)	138 (75.0%)	▽ 14.8
	종사자 수 (명)	293 (55.7%)	214 (36.7%)	▽ 27.0
공원	어린이공원 (개소)	25	20	
	근린공원 (개소)	6	8	
	도시자연공원 (개소)	0	5	
	합 계	31	33	▲ 6.5

- 대변항 권역의 관광사업체수, 문화재 자원수, 주차장, 복지시설, 복지여가시설 및 문화공간 수 등을 이용하여 관광·교통·문화·복지 등 어촌체험 기반시설을 파악하였다. 자료는 대변리, 연화리만의 자료를 얻기 어려워 기장읍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관광시설 및 관광소득은 기장읍을 100%로 하였을 경우 대변리, 연화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25%정도이다.

- 관광업체 수는 8.3%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문화재 자원수가 42.9%로 대폭 증가하여 대변항이 관광 복합어항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또한 주차장 확보율로부터 교통편의를 대략적으로 판단하였다. 주차장 용지가 사업 시행 전에는 2,829m²이었으나 사업 시행 후에는 7,844m²로 177.3% 증가하여 교통편의가 사업 시행 전 보다 좋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28.6%)과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40.0%)이 다기능어항 주변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대변항 권역에서 관광사업체수는 8.3%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문화재 자원수, 주차장 용지, 복지시설, 복지여가시설 및 문화공간 수 등이 42.9%로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대변항은 어촌관광 지원시설이 증가하여 관광·유통·문화·복지 등 복합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VI-14> 어촌관광 지원시설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관광	사업체수 (개소)	48	44	▽ 8.3
	자원수 (개)	7	10	▲ 42.9
교통	주차장 용지 (m ²)	2,829	7,844	▲ 177.3
복지	복지시설 (개소)	28	36	▲ 28.6
문화	노인여가복지시설 (개소)	50	70	▲ 40.0
	문화공간 (개소)	2	2	

(3)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 권역별 어업소득을 조사하여 다기능어항의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을 파악하였다.
- 어업소득의 조사를 위해서는 호당 어가소득, 어촌계 유형 등의 지표

가 이용되었다.

- 사업 이후 대변항과 인접한 3개 어촌계의 호당 평균 어가소득은 26,533천원에서 27,067천원으로 533천원(2.0%) 증가하였다.
- 대변항에 인접한 어촌계는 도시에 인접하여 생활여건이 도시형이지만 경영기반이 취약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성장어촌계이다. 어촌계원의 대다수는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에 종사하여 어선어업의 세력과 양식어업의 세력이 비슷하다. 대변항에 인접한 어촌계는 사업 시행 전·후의 차이는 없었다.
- 어촌계의 유형으로 보아 대변항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많은 어촌계이며, 호당 평균어가소득의 상승으로 어업인 소득 창출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VI-15>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과제	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어업 소득	호당 어가소득(천원)		26,533	27,067	▲ 2.0
	어촌계유형	발전수준	성장	성장	
		입지유형	도시근교	도시근교	
		종사유형	복합어업	복합어업	

나. 어유정향

- 어유정향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에 인접해 있다. 따라서 어유정향의 사업 성과 조사를 위한 대상지역은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이며, 관련어촌계는 매음어촌계로 한정한다.
- 어유정향은 2010년말 기준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어항으로 도입단계의 성과 모니터링에 해당한다.
- 사업의 실시설계가 되어있는 경우, 사업의 진척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다기능어항 전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의 실시설계 이전을 “사업 시행 전”,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비교할 수 있는 사업의 실시설계 이후를 “사업 시행 후”로 가정하여 다기능어항의 건설 사업 전·후의 사회·경제적 현황 및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어유정향은 2010년말 기준으로 실시설계도 되어있지 않아 사업 시행 전·후의 자료가 모두 도입단계의 성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유정향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을 “계획 발표 후”로, “사업 시행 후”를 “사업 시행 전”으로 가정하여 어항의 사회·경제적 현황 및 효과를 분석하였다.
- 강화군 삼산면은 7개의 법정리, 12개의 행정리를 가지고 있으며 법정리인 매음리는 매음1리, 매음2리, 매음3리의 3개 행정리를 가지고 있다. 강화군 삼산면은 유인도로서 7개의 법정리는 모두 바다와 연접해 있다. 7개의 법정리중 매음리는 유인도서인 삼산면의 남쪽에 위치해 있고, 총 세대와 총 인구가 각각 삼산면의 24.6%, 35.1%를 차지하는 큰 권역이다. 삼산면 중 매음리에 속한 어촌계에는 어가 45.0%, 어가인구 44.8%, 어촌계원 44.8%, 어업권건수 58.3%, 어선수 61.5% 등이 속해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대략 어업시설, 어업소득이 삼산면을 100%로 하였을 때 매음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45%정도이었다. 관광시설과 관광소득은 항구가 설비되어 있는 매음리와 하리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중 매음리쪽이 발달하여 매음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삼산면

을 100%로 하였을 경우 55%정도이었다.

(1) 수산업 지원 기능

- 세대와 인구는 매음리(매음1리, 매음2리, 매음3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65세이상 고령자의 인구와 청장년(20세~49세)의 인구는 삼산면의 자료밖에 없어 삼산면의 비율을 이용하여 매음리의 자료를 추정하였다. 어유정향의 계획 발표 후 자료는 2006년 강화군 통계연보(2005년 기준) 및 2005년 어촌계 분류평정 자료를 이용하였고, 사업 시행 후 자료는 2010년 강화군 통계연보(2009년 기준) 및 어촌계 분류평정 자료를 이용하였다. 총 세대는 계획 발표 후(2005년) 330가구에서 사업 시행 전(2009년) 276가구로 16.4% 감소하였으나, 총 인구는 사업 전 799명에서 사업 후 820명으로 2.6% 증가하였다. 세대별 인구는 2.4명에서 3.0명으로 증가하였다.
- 총 세대에 대한 어가의 비율은 사업 전 25.5%에서 사업 후 18.1%로 감소하였으며, 어가인구는 사업 전 87명에서 사업 후 50명으로 감소하여 계획 발표 후 수혜대상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어유정향은 2010년말 기준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어항이다. 따라서 수혜대상의 감소는 다기능어항의 사업과는 무관하며, 일반어항의 특징을 나타낸다.
- 어가와 어가인구가 각각 40.5%, 40.2% 감소하여 어촌이 급격하게 쇠퇴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어촌의 쇠퇴, 어업인구의 감소는 주변의 관광편의시설, 관광이용시설의 증가와 더불어 관광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숙박 및 음식점 등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즉 어유정향은 수산업 지원기능보다는 관광·문화·복지 등 복합기능을 확대하여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어업인의 소득창출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수산물의 판매, 기타 관광소득 등 관광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표 VI-16> 어촌 발전 잠재력

조사지표	계획 발표 후	사업 시행 전	증감 (%)
총 세대 (가구)	330	276	▽ 16.4
총 인구 (명)	799	820	▲ 2.6
어가 (호)	84	50	▽ 40.5
어가인구 (명)	87	52	▽ 40.2
청장년인구 (명)	276	257	▽ 7.0
65세이상 고령자 (명)	224	252	▲ 12.4
어가 비율 (%)	25.5	18.1	▽ 7.3
어가인구 비율 (%)	10.9	6.3	▽ 4.5

- 총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구비율은 사업 전 28.0%에서 사업 후 30.7%로 2.7%포인트 증가하였다. 청장년(20세~49세)의 인구비율은 사업 전 34.5%에서 사업 후 31.3%로 3.2%포인트 감소하였다. 즉 고령자는 12.4% 증가하였고, 청장년층 인구는 7.0% 감소하였다. 청장년층의 감소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음리 전체 인구는 증가하여 어촌의 발전 잠재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어유정항 권역의 수산업 잠재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유정항 권역의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의 현황과 어선척수로 시설소요를 파악하였다. 어유정항 권역의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수는 계획 발표 후에 3건이었으나 사업 시행 전에 패류양식어업 1건, 어류등 양식어업 2건, 마을어업 1건이 증가하여 7건이 되었다. 어업권의 면적은 125.7% 증가하였다. 어유정항 권역의 어촌계가 소유하고 있는 어선은 계획 발표 후 43척에서 사업 시행 전 48척으로 11.6% 증가하였다. 계획 발표 후 어업권수, 어선의 척수 등이 증가하여 자원 잠재력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 어유정항 권역의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공동시설은 계획 발표 후에 감소하였다. 어유정항은 2010년말 기준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어항으로 유통시설, 공동시설 등이 사업과 무관하게 변화되어

일반어항의 특징을 나타낸다.

<표 VI-17> 수산업 잠재력

용도	조사지표	계획 발표 후	사업 시행 전	증감 (%)
시설 소요	어업권수 (건)	3	7	▲ 133.3
	어업권면적 (ha)	35	79	▲ 125.7
	어선척수 (척)	43	48	▲ 11.6
유통가 공시설	수산물 유통시설 (m ²)	0	0	
	공동시설 보유수 (개)	4	1	▽ 75.0

(2) 관광·유통·문화·복지 등 복합기능

- 어유정항의 개발계획 발표 후 경제지표 평가를 위하여 대상지역의 숙박 및 음식점, 유흥 및 오락시설의 업체수·종사자 수와 공통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을 조사하여 어촌관광 지원시설을 평가하였다. 자료는 매음리만의 자료를 얻기 어려워 강화군 삼산면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관광시설과 관광소득은 항구가 설비되어 있는 매음리와 하리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중 매음리 쪽이 발달하여 매음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삼산면을 100%로 하였을 경우 55%정도이다. 이러한 추정치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어유정항 권역의 어촌관광 지원시설을 평가할 수 있다.
- 계획 발표 후 숙박 및 음식점의 업체수는 121개소, 종사자 수는 330명으로 강화군 전체 숙박 및 음식점 업체수의 9.8%, 종사자 수의 11.2%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업 시행 전 업체수는 144개소로 19.0% 증가하였으나, 종사자 수는 311명으로 5.8% 감소하였다.
- 계획 발표 후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는 5개소, 종사자는 9명으로 강화군 전체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의 4.6%, 종사자 수의 3.9%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업 시행 발표로 이 비율은 약간 증가하였다.
- 이 기간 동안 강화군의 전체 업체수와 종사자 수는 각각 6.6%, 8.7%

증가하였으며, 삼산면은 각각 14.7%, 1.8% 증가하였다. 이는 기간중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방송통신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개선 때문으로 판단된다. 어유정항은 2010년말 기준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어항임에도 불구하고 숙박 및 음식점,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가 19.0% 증가하여 어촌관광 지원시설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어촌의 공통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의 개소는 강화군 전체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공원의 개소는 계획 발표 후와 사업 시행 전이 동일하였다. 어유정항의 사업이 진행되면 어촌의 공통시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VI-18> 어촌관광 지원시설

조사지표		계획 발표 후	사업 시행 전	증감 (%)
숙박 및 음식점	업체수 (개소)	121 (9.8%)	144 (9.6%)	▲ 19.0
	종사자 수 (명)	330 (11.2%)	311 (9.0%)	▽ 5.8
유흥, 오락시설	업체수 (개소)	5 (4.6%)	7 (7.1%)	▲ 40.0
	종사자 수 (명)	9 (3.9%)	10 (4.3%)	▲ 11.1
공원 ¹⁾	어린이공원 (개소)	3	3	
	근린공원 (개소)	5	5	
	도시자연공원 (개소)	2	2	
	합 계	10	10	

- 어유정 권역의 관광사업체수, 관광객 수, 문화재 자원수, 주차장, 복지시설, 복지여가시설 및 문화공간 수 등을 이용하여 관광·교통·문화·복지 등 어촌체험 기반시설을 파악하였다. 자료는 매음리만의 자료를 얻기 어려워 삼산면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관광시설 및 관광소득은 삼산면을 100%로 하였을 경우 매음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55%정도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전체자료

이다.

- 관광업체는 삼산면 전체적으로 그 수가 적어 관광기능을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문화재 자원수는 100.0%가 증가하여 어유정항이 관광 복합어항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문화재 자원의 활용과 어항의 개발 등으로 접근이 용이해져 관광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 또한 주차장 확보율로부터 교통편의를 대략적으로 판단하였다. 주차장 용지가 계획 발표 후에는 2,196m²이었으나 계획 발표 후에는 7,165m²로 226.3% 증가하여 교통편의가 계획 발표 후에 크게 좋아졌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었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과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계획 발표 전과 후에 거의 변동이 없었다.
- 어유정항 권역에서 문화재 자원수, 주차장 용지, 문화공간 수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어유정항은 어촌체험 기반시설이 증가하여 관광·유통·문화·복지 등 복합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VI-19> 어촌체험 기반시설

조사지표		계획 발표 후	사업 시행 전	증감 (%)
관광	사업체수 (개소)	1	0	▽
	관광객 수 (명) ²⁾	1,947	1,248,568	▲
	자원수 (개)	2	4	▲ 100.0
교통	주차장 용지 (m ²)	2,196	7,165	▲ 226.3
복지	복지시설 (개소)	0	1	▲
문화	노인여가복지시설 (개소)	15	15	
	문화공간 (개소)	2	4	▲ 100.0

2) 인천광역시 강화군 전체자료

(3)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 권역별 어업소득을 조사하여 다기능어항의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을 파악하였다.
- 어업소득의 조사를 위해서는 호당 어가소득, 어촌계 유형 등의 지표가 이용되었다.
- 개발계획 발표 후 어유정향과 인접한 어촌계의 호당 평균 어가소득은 26,000천원에서 30,000천원으로 4,000천원(15.4%) 증가하였다.
- 어유정향에 인접한 어촌계는 경영기반이 취약단계를 벗어나 스스로 어촌계 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립어촌계이다. 또한 계획 발표 후에는 교통·통신이 불편한 낙도 벽지 및 접적지역 내에 위치한 어촌계이었으나, 사업 시행 전 생활여건이 개선된 연안취락어촌계로 발전하였다. 이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대다수 또는 절대적인 생산기반이 어선어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고 있다.
- 호당 평균어가소득의 상승, 어촌계의 입지유형 변화로 보아 어유정향은 어업인 소득 창출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VI-20>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과제	지표		계획 발표 후	사업 시행 전	증감 (%)
어업 소득	호당 어가소득 (천원)		26,000	30,000	▲ 15.4
	어촌계유형	발전수준	자립	자립	
		입지유형	취락지구	연안촌락	
		종사유형	어선어업	어선어업	

다. 정자항

- 정자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과 구유동에 인접해 있으며 정자동과 구유동은 행정동인 강동동에 속한다. 따라서 정자항의 사업 시행 전·후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대상지역은 북구 정자동과 구유동이며, 관련어촌계는 정자, 제전, 판지어촌계로 한정한다.
- 정자항은 2009년말까지 공사가 완공된 어항으로 본 성과조사를 활용하여 사후단계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북구 강동동은 신명동, 대안동, 산하동, 정자동, 무룡동, 신현동, 구유동, 당사동, 어물동 등 9개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다. 9개의 법정동 중 신명동, 산하동, 정자동, 구유동, 당사동, 어물동 등 6개의 법정동이 바다에 인접해 있다.
- 강동동에서 정자동과 구유동에 속한 어촌계의 어가, 어가인구, 어촌계원은 각각 강동동의 61.4%, 60.1%, 58.4%를 차지한다. 또한 어업권건수, 어선수, 어획물량은 각각 32.4%, 39.7%, 39.7%에 달한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어업시설, 어업소득이 강동동을 100%로 하였을 때 정자동과 구유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80%와 50%정도이었다. 관광시설과 관광소득은 강동동을 100%로 하였을 경우 각각 70%정도이었다.

(1) 수산업 지원 기능

- 세대와 인구는 법정동인 정자동과 구유동의 자료가 없어 행정동인 강동동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65세이상 고령자의 인구와 청장년(20세~49세)의 인구는 북구의 자료밖에 없어 북구의 인구비율을 이용하여 강동동의 자료를 추정하였다. 총 세대는 사업 전(2004년) 1,945가구에서 사업 후(2009년) 2,040가구로 4.9% 증가하였으나, 총 인구는 사업 전 5,009명에서 사업 후 4,772명으로 4.7% 감소하였다. 세대별 인구는 2.6명에서 2.3명으로 감소하였다.

- 총 세대에 대한 어가의 비율은 사업 전 54.6%에서 사업 후 40.7%로 감소하였으며, 총 인구에 대한 어가인구의 비율은 사업 전 41.9%에서 사업 후 27.0%로 감소하여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에 대한 수혜대상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어가와 어가인구가 각각 21.8%, 38.5% 감소하여 어촌이 쇠퇴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 총 인구에 대한 65세이상 고령자의 인구는 사업 전 1,017명에서 사업 후 968명으로 49명 감소하였으며 청장년(20세~49세)의 인구는 사업 전 2,662명에서 사업 후 2,462명으로 200명 감소하였다.
- 강동동은 인구의 51.2%가 어업에 종사하며 고령자의 비율이 높다. 이들 어업에 종사하는 고령자의 사망은 그대로 인구감소로 이어져 수혜대상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자료는 정자항 권역의 자료가 아닌 강동동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어촌계 분류평정에 의하면 정자항이 인접한 정자동과 구유동에 속한 어촌계의 어가 어가인구는 2009년말 기준으로 각각 강동동의 61.4%와 60.1%를 차지한다. 즉 정자항 권역의 작은 변화에도 강동동은 크게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어촌 발전 잠재력을 평가하는데 강동동의 자료를 이용한 오차가 포함되어 어촌이 급격하게 쇠퇴한 경향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표 VI-21> 어촌 발전 잠재력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총 세대 (가구)	1,945	2,040	▲ 4.9
총 인구 (명)	5,009	4,772	▽ 4.7
어가 (호)	1,061	830	▽ 21.8
어가인구 (명)	2,099	1,290	▽ 38.5
청장년인구 (명)	2,662	2,462	▽ 7.5
65세이상 고령자 (명)	1,017	968	▽ 4.8
어가 비율 (%)	54.6	40.7	▽ 13.9
어가인구 비율 (%)	41.9	27.0	▽ 14.9

어촌·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용역

- 정자항 권역의 수산업 잠재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정자항 권역 어촌계의 어업생산량, 어업생산금액 등의 자료가 활용되었고,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의 현황, 어선척수 등의 시설소요와 공동시설 등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 정자항 권역의 어획량과 어획금액은 사업 시행 후 각각 75.2%, 77.3%로 급감하였다. 정자항 권역의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수는 사업 시행 전 9건에서 사업 시행 후 12건으로 33.3% 증가하였으며, 어업권 면적은 70.5% 증가하였다. 또한 정자항 권역의 어촌계가 소유하고 있는 어선은 사업 시행 전 165척에서 사업 시행 후 102척으로 63척(38.2%) 감소하였다. 공동시설은 사업 시행 후에 25.0% 감소하였다.
- 어업권은 복합양식어업이 2건 감소한 대신 정치망어업 2건, 해조류, 패류양식어업 및 마을어업이 각각 1건씩 증가하였다. 어업권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획량(-75.2%)과 어획금액(-77.3%)은 감소하였다. 본 자료에서 비계통판매는 제외하였으며 마을어업을 비롯한 면허어업 및 소규모 어업의 비계통판매가 통계상 어획량 및 어획금액의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사업 시행 후 어획량 및 어획금액의 감소와 어선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어업권 수와 어업권 면적의 증가로 어촌계 종사유형의 변화와 함께 어촌관광 지원능력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I-22> 수산업 잠재력

용도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자원잠재력	어획량 (M/T)	5,450	1,350	▽ 75.2
	어획금액 (백만원)	13,632	3,100	▽ 77.3
시설소요	어업권수 (건)	9	12	▲ 33.3
	어업권면적 (ha)	112	191	▲ 70.5
	어선척수 (척)	165	102	▽ 38.2
유통가공시설	공동시설 보유수 (개)	12	9	▽ 25.0

(2) 관광·유통·문화·복지 등 복합기능

- 정자항의 사업 시행 전·후의 경제지표 평가를 위하여 대상지역의 숙박 및 음식점, 유흥 및 오락시설의 업체수·종사자 수와 공통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을 조사하여 어촌관광 지원시설을 평가하였다. 자료는 정자동과 구유동의 자료를 얻기 어려워 북구 강동동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관광시설과 관광소득의 정자동과 구유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강동동을 100%로 하였을 경우 각각 70%정도이다. 이러한 추정치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정자항 권역의 어촌관광 지원시설을 평가할 수 있다.
- 사업 시행 전 숙박 및 음식점의 업체수는 201개소, 종사자 수는 523명으로 북구 전체 숙박 및 음식점 업체수의 15.2%, 종사자 수의 17.3%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업 시행 후 이 비율은 감소하여 각각 12.3%, 11.8%가 되었다. 강동동에 숙박 및 음식점이 비교적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사업 시행 전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는 16개소, 종사자는 17명으로 북구 전체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의 5.7%, 종사자 수의 5.5%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업 시행 후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는 동일하였으나 유흥·오락시설의 종사자 수는 47.1% 증가하여 유흥·오락시설이 대형화 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강동동의 유흥·오락시설의 비율은 북구와의 면적 비율에 비해 적게 분포하여 있었다.
- 이 기간 동안 북구의 전체 업체수와 종사자 수는 각각 130.6%, 110.1% 증가하였으며,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체수와 종사자 수는 각각 127.7%, 137.7%, 유흥·오락시설업체수와 종사자 수는 각각 116.5%, 126.9%로 크게 증가하였다. 북구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체수와 종사자 수, 유흥·오락시설업체수와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강동동의 경우 미미하게 증가하거나 오히려 감소하였다. 정자항은 머무는 향의 기능보다는 탐방을 위한 향으로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어촌의 공통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의 개소는 북구 전체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사업 시행 전 51개소이었으나 사업 시행 후 74개소로 45.1% 증가하여 어촌관광 잠재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3> 어촌 관광 지원시설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숙박 및 음식점	업체수 (개소)	201 (15.2%)	208 (12.3%)	▲ 3.5
	종사자 수 (명)	523 (17.3%)	490 (11.8%)	▽ 6.3
유흥, 오락시설	업체수 (개소)	16 (5.7%)	16 (4.9%)	
	종사자 수 (명)	17 (5.5%)	25 (4.0%)	▲ 47.1
공원 ³⁾	어린이공원 (개소)	34	47	
	근린공원 (개소)	16	26	
	도시자연공원 (개소)	1	1	
	합 계	51	74	▲ 45.1

- 정자항 권역의 관광사업체수, 관광객 수, 문화재 자원수, 주차장, 복지시설, 복지여가시설 및 문화공간 수 등을 이용하여 관광·교통·문화·복지 등 어촌체험 기반시설을 파악하였다. 자료는 정자동과 구유동을 비롯한 강동동의 자료를 얻기 어려워 북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관광시설 및 관광소득은 강동동을 100%로 하였을 경우 정자동과 구유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70%정도이다. 북구에서 강동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25%정도이다.
- 관광업체 수, 문화재 자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정자항이 관광 복합어항으로 활성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문화재 자원의 활용과 어항의 개발 등으로 관광객 수가 큰 폭(62.5%)으로 증가하였다.
- 주차장 확보율로부터 교통편의를 대략적으로 판단하였다. 주차장 용

3) 울산광역시 북구 전체자료

지가 사업 시행 전에는 4,412m²이었으나 사업 시행 후 30,431m²로 589.7% 증가하여 교통편의가 사업 시행 전 보다 크게 좋아졌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었다.

-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사업 시행 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정자항은 모든 항목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관광·유통·문화·복지 등 복합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VI-24> 어촌체험 기반시설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관광	사업체수 (개소)	2	11	▲ 450.0
	관광객 수 (명) ⁴⁾	651,356	1,059,971	▲ 62.7
	자원수 (개)	13	16	▲ 23.1
교통	주차장 용지 (m ²)	4,412	30,431	▲ 589.7
복지	복지시설 (개소)	3	4	▲ 33.3
문화	노인여가복지시설 (개소)	97	115	▲ 18.6
	문화공간 (개소)	5	7	▲ 40.0

(3)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 권역별 어업소득을 조사하여 다기능어항의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을 파악하였다.
- 어업소득의 조사를 위해서는 호당 어가소득, 어촌계 유형 등의 지표가 이용되었다.
- 사업 이후 정자항과 인접한 어촌계의 호당 평균 어가소득은 26,000천원에서 33,333천원으로 7,333천원(28.2%) 증가하였다.
- 정자항 권역의 어촌계는 사업 시행 전 경영기반이 우수한 복지어촌계

4) 울산광역시 북구 전체자료

이었으나, 사업 시행 후 경영기반이 취약해진 자립어촌계가 등장하였다. 또한 어촌계원의 대다수 또는 절대적인 생산기반이 어선어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고 있었다.

- 호당 평균어가소득이 28.2% 상승하였으나 일부 어촌계에서는 발전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가와 어가인구의 감소에 따른 영향이라 생각된다.

<표 VI-25>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과제	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어업 소득	호당 어가소득 (천원)		26,000	33,333	▲ 28.2
	어촌계유형	발전수준	복지	자립1/복지2	
		입지유형	도시근교	도시근교	
		종사유형	어선2/복합1	어선	

라. 대포항

- 대포항은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에 인접해 있다. 따라서 대포항의 사업 전·후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대상지역은 속초시 대포동이며, 관련 어촌계는 내물치어촌계, 웅치어촌계, 대포어촌계로 한정한다.
- 대포항은 2010년말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었으나,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어항으로 본 성과조사를 활용하여 실행단계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 속초시는 8개의 행정동과 13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포동은 13개의 법정동에 속한다. 속초시의 통계자료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법정동인 대포동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동으로부터 자료를 분석해야한다. 법정동인 대포동, 도문동, 설악동은 행정동인 대포동에서 관할한다. 행정동인 대포동은 설악산국립공원 포함되어 속초시 면적의 62.6%를 차지하고 있으나 법정동인 대포동의 면적은 속초시의 2.9%, 행정동인 대포동 면적의 4.7%에 이른다. 그러나 법정동인 대포동의 총 세대와 총 인구는 각각 행정동인 대포동의 41.1%, 45.5%에 달한다.
- 행정동인 대포동에서 바다와 인접해 연안을 가지고 있는 법정동은 대포동뿐이다. 따라서 어업시설, 어업소득 등은 행정동인 대포동을 100%로 하였을 경우 법정동인 대포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이다. 관광시설과 관광소득은 설문조사 결과 설악산국립공원 포함되어 있지만 설악산을 관광하는 대부분의 관광객이 대포항 주변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법정동인 대포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행정동인 대포동을 100%로 하였을 경우 30%정도이었다.

(1) 수산업 지원 기능

- 세대와 인구는 법정동인 대포동(행정동인 대포동의 1통~15통 중 1통~5통)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65세이상 고령자의 인구와 청장년(20

세~49세)의 인구는 행정동인 대포동의 자료밖에 없어 행정동인 대포동의 인구 비율을 이용하여 법정동인 대포동의 자료를 추정하였다. 다기능어항의 건설 사업 전·후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은 사업의 실시설계 이전인 2004년(2005년 통계자료)으로 하였으며, 사업 시행 후는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09년(2010년 통계자료)으로 하였다. 그러나 속초시에서는 2010년 통계자료가 발표되지 않아 확보할 수 없어서 2009년 통계자료(2008년 기준)를 활용하였다.

- 총 세대는 사업 전 738가구에서 사업 후 733가구로 0.7% 감소하였으며, 총 인구는 사업 전 2,014명에서 사업 후 1,788명으로 11.2% 감소하였다. 세대의 감소폭보다 인구의 감소폭이 커서 세대별 인구는 2.7명에서 2.4명으로 감소하였다.
- 총 세대에 대한 어가의 비율은 사업 전 31.2%에서 사업 후 28.6%로 감소하였으나, 총 인구에 대한 어가인구의 비율은 사업 전 16.0%에서 사업 후 29.5%로 크게 증가하여 다기능어항 개발 사업에 대한 수혜대상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 어가는 사업 후 8.7% 감소하였으나 어가인구는 63.5% 증가하였다. 어가의 감소는 인근 도문동의 생활권으로 흡수된 것으로 분석되며, 어업인구의 증가는 어촌이 발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수산물 수요가 커져 어가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어가인구는 6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6> 어촌 발전 잠재력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총 세대 (가구)	738	733	▽ 0.7
총 인구 (명)	2,014	1,788	▽ 11.2
어가 (호)	230	210	▽ 8.7
어가인구 (명)	323	528	▲ 63.5
청장년인구 (명)	995	817	▽ 17.9
65세이상 고령자 (명)	257	300	▲ 16.7
어가 비율 (%)	31.2	28.6	▽ 2.5
어가인구 비율 (%)	16.0	29.5	▲ 13.5

- 총 인구에 대한 65세이상 고령자의 인구는 사업 전 257명에서 사업 후 3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청장년(20세~49세)의 인구는 사업 전 995명에서 사업 후 817명으로 감소하였다. 즉 고령자는 16.7% 증가하였고, 청장년층 인구는 17.9% 감소하였다. 노년층의 증가와 청장년층의 감소는 사회적 현상으로 다기능어항의 사업과는 무관해 보였다.
- 대포항 권역의 수산업 잠재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포항 권역의 어촌계의 어업생산량, 어업생산금액 등의 자료가 활용되었고,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의 현황, 어선척수 등의 시설소요와 유통시설, 공동시설 등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 대포항 권역의 어획량은 사업 시행 전·후에 동일하였으나 어획금액은 사업 시행 후 1,749.5%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수산물 수요가 커지면서 어획물이 고가로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대포항 권역의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수는 사업 시행 전 6건에서 사업 시행 후 8건으로 33.3% 증가하였으며, 어업권 면적은 6.5% 증가하였다. 또한 대포항 권역의 어촌계가 소유하고 있는 어선

은 사업 시행 전 128척에서 사업 시행 후 139척으로 8.6% 증가하였다. 공동창고, 관리선 등의 공동시설은 사업 시행 후에 100.0% 증가하였다.

- 어업권은 마을어업이 1건 감소한 반면 정치망어업 2건, 협동양식어업 1건이 증가하였다. 대표항의 사업진척도는 2010년말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었으나,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소요 및 유통시설, 공동시설 등이 증가하였으며, 어획금액이 대폭 증가하여 자원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I-27> 수산업 잠재력

용도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자원잠재력	어획량 (M/T)	21	21	
	어획금액 (백만원)	93	1,720	▲ 1749.5
시설소요	어업권수 (건)	6	8	▲ 33.3
	어업권면적 (ha)	184	196	▲ 6.5
	어선척수 (척)	128	139	▲ 8.6
유통가공시설	수산물 유통시설(m ²)	0	0	
	공동시설 보유수 (개)	4	8	▲ 100.0

(2) 관광·유통·문화·복지 등 복합기능

- 대표항의 사업 시행 전·후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대상지역의 숙박 및 음식점, 유흥 및 오락시설의 업체수와 종사자 수와 공통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을 조사하여 어촌관광 지원시설을 평가하였다. 자료는 법정동인 대표동의 자료를 얻기 어려워 행정동인 대표동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공통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은 속초시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관광시설과 관광소득은 설문조사 결과 설악산국립공원 포함되어 있지만 설악산을 관광하는 대부분의 관광객이 대표항 주변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법정동인 대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행정동인 대포동을 100%로 하였을 경우 30%정도이다. 이러한 추정치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대포항 권역의 어촌관광 지원시설을 평가할 수 있다.

- 사업 시행 전 숙박 및 음식점의 업체수는 357개소, 종사자 수는 953명으로 속초시 전체 숙박 및 음식점 업체수의 16.2%, 종사자 수의 16.9%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업 시행 후 이 비율은 감소하여 각각 7.2%가 되었다.
- 사업 시행 전 유희·오락시설의 업체수는 23개소, 종사자는 135명으로 속초시 전체 유희·오락시설의 업체수의 7.3%, 종사자 수의 15.6%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업 시행 후 유희·오락시설의 종사자수가 53명으로 11.8%포인트 감소하였다. 유희·오락시설의 비율이 법정동인 대포동의 면적에 비해 적게 분포하고 있었다.
- 이 기간 동안 행정동인 대포동의 전체 업체수와 종사자 수는 각각 47.1%, 23.8% 증가하였다. 대포항의 사업진척도는 2010년말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었으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대포항 주변의 시전 정비 등으로 대단히 어지러운 상태에 있다. 따라서 공사가 진행 중이 현재 관광객의 접근이 어려워 숙박 및 음식점, 유희·오락시설이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완공 후 잠재력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어촌의 공통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의 개소는 속초시 전체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사업 시행 전 33개소이었으나 사업 시행 후 39개소로 18.2% 증가하여 어촌관광 지원시설의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8> 어촌관광 지원시설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숙박 및 음식점	업체수 (개소)	357 (16.2%)	331 (7.2%)	▽ 7.3
	종사자 수 (명)	953 (16.9%)	727 (7.2%)	▽ 23.8
유흥, 오락시설	업체수 (개소)	23 (7.3%)	27 (4.2%)	▲ 17.4
	종사자 수 (명)	135 (15.6%)	53 (3.8%)	▽ 60.7
공원 ⁵⁾	자연공원 (개소)	1	1	
	어린이공원 (개소)	22	24	
	근린공원 (개소)	8	9	
	도시자연공원 (개소)	2	5	
	합 계	33	39	▲ 18.2

- 대포항 권역의 관광사업체수, 관광객 수, 문화재 자원수, 주차장, 복지시설, 복지여가시설 및 문화공간 수 등을 이용하여 관광·교통·문화·복지 등 어촌체험 기반시설을 파악하였다. 자료는 법정동인 대포동의 자료를 얻기 어려워 행정동인 대포동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관광시설과 관광소득은 설문조사 결과 설악산국립공원 포함되어 있지만 설악산을 관광하는 대부분의 관광객이 대포항 주변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법정동인 대포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행정동인 대포동을 100%하였을 경우 30%정도이다.
- 관광업체 수, 관광객 수, 문화재 자원수가 소폭으로 증가하여 대포항이 관광 복합어항으로 활성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포동은 이전부터 복합어항으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규모가 협소하였다. 규모확대와 함께 복합어항 기능의 확대가 기대된다.
- 주차장 확보율로부터 교통편의를 대략적으로 판단하였다. 주차장 용지가 사업 시행 전에는 6,614m²이었으나 사업 시행 후 7,880m²로 19.1% 증가하여 교통편의가 사업 시행 전 보다 좋아졌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었다.

5) 강원도 속초시 전체자료

<표 VI-29> 관광·교통·복지 등 복합기능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관광	사업체수 (개소)	7	8	▲ 14.6
	관광객 수 (명) ⁶⁾	12,005,243	12,343,013	▲ 2.8
	자원수 (개)	11	13	▲ 18.2
교통	주차장 용지 (m ²)	6,614	7,880	▲ 19.1
복지	복지시설 (개소)	0	0	
문화	노인여가복지시설 (개소)	6	7	▲ 16.7
	문화공간 (개소)	0	0	

-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과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 문화공간이 사업 시행 전·후에 동일하거나 소폭 증가하였다. 대포항의 사업진척도는 2010년말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었으나,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항목이 소폭 증가하여 관광·유통·문화·복지 등 복합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 권역별 어업소득을 조사하여 다기능어항의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을 파악하였다.
- 어업소득의 조사를 위해서는 호당 어가소득, 어촌계 유형 등의 지표가 이용되었다.
- 사업 이후 대포항과 인접한 어촌계의 호당 평균 어가소득은 25,233천원에서 24,000천원으로 1,233천원(4.9%) 감소하였다.
- 대포항에 인접한 어촌계는 도시에 인접한 어촌계로 사업 시행 전 신

6) 강원도 속초시 전체자료

설 또는 경영기반이 취약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해야할 성장어촌계에서 사업 시행 후 경영기반이 취약단계를 벗어나 스스로 어촌계 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립어촌계로 발전하였다. 또한 어촌계는 사업 시행 전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의 세력이 비슷하였는데 사업 시행 후 어선어업의 세력이 우세하였다.

- 어촌계의 호당 어가소득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어촌계의 유형 및 발전 수준으로 보아 대표항은 어업인 소득 창출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I-30>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과제	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어업 소득	호당 어가소득 (천원)		25,233	24,000	▽ 4.9
	어촌계유형	발전수준	성장	자립	
		입지유형	도시근교	도시근교	
		종사유형	복합2/어선1	복합1/어선2	

마. 강릉항

- 강릉항은 강원도 강릉시 견소동에 인접해 있으며, 견소동은 행정동인 송정동에 속한다. 따라서 강릉항의 사업 전·후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대상지역은 강릉시 견소동이며, 관련어촌계는 안목어촌계로 한정한다.
- 강릉항은 2010년말 기준으로 공사가 완공된 어항이지만, 성과조사를 실시한 2009년말에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던 어항으로 본 성과조사를 활용하여 실행단계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 강릉시 송정동은 송정동과 견소동 2개의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다. 2개의 법정동이 바다와 인접하여 있지만 법정동인 송정동은 연안의 대부분이 해수욕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견소동 연안에 어업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행정동인 송정동에서 견소동에 속한 어촌계의 어촌계원, 어업권건수, 어선수, 어획물량은 100%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어업시설은 법정동인 송정동을 100%로 하였을 경우 견소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이었다. 그러나 어업소득은 어업을 하지만 생활권을 법정동인 송정동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정동인 송정동을 100%로 하였을 경우 견소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70% 정도이었다. 관광시설과 관광소득은 법정동인 송정동의 경우 송정해수욕장 인근의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 주거시설이 분포하고 많은 관광시설이 견소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동인 송정동을 100%로 하였을 경우 견소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80% 정도이었다.

(1) 수산업 지원 기능

- 세대와 인구는 법정동인 견소동(행정동인 송정동의 4통, 5통, 12통, 13통, 15통)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65세이상 고령자의 인구와 청장년(20세~49세)의 인구는 행정동인 송정동의 자료밖에 없어 행정동인 송정동의 인구 비율을 이용하여 법정동인 견소동의 자료를 추정하였

다. 다기능어항의 사업 시행 전·후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은 사업의 실시설계 이전인 2004년(2005년 통계자료)으로 하였으며, 사업 시행 후는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09년(2010년 통계자료)으로 하였다.

- 총 세대는 사업 전 693가구에서 사업 후 1,037가구로 49.4% 증가하였고 총 인구는 사업 전 1,994명에서 사업 후 2,803명으로 40.6% 증가하였다. 세대당 인구는 2.9명에서 2.7명으로 감소하였다.
- 총 세대에 대한 어가의 비율은 사업 전 4.6%에서 사업 후 2.9%로 감소하였고 총 인구에 대한 어가인구의 비율은 사업 전 8.2%에서 사업 후 5.7%로 감소하였다. 어가는 사업 후 6.3% 감소하였고 어가인구는 3.0% 감소하여 어가와 어가인구는 사업 시행 전·후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총 세대와 총 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총 세대에 대한 어가 비율, 총 인구에 대한 어가인구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강릉항이 다기능어항으로 개발되면서 강릉-울릉도간 여객선 취항, 견소동 일원의 커피축제 개발 등으로 다수의 주민이 전입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강릉항의 개발은 총 세대, 총 인구의 증가를 가져와 수혜대상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 총 인구에 대한 65세이상 고령자의 인구는 사업 전 160명에서 사업 후 22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청장년(20세~49세)의 인구는 사업 전 964명에서 사업 후 1,229명으로 증가하였다. 즉 고령자는 40.6% 증가하였고, 청장년층 인구는 27.5% 증가하였다. 강릉항을 비롯한 견소동 일원의 관광상품 개발로 청장년층의 증가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VI-31> 어촌 발전 잠재력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총 세대 (가구)	693	1,037	▲ 49.4
총 인구 (명)	1,994	2,803	▲ 40.6
어가 (호)	32	30	▽ 6.3
어가인구 (명)	166	161	▽ 3.0
청장년인구 (명)	964	1,229	▲ 27.5
65세이상 고령자 (명)	160	225	▲ 40.6
어가 비율 (%)	4.6	2.9	▽ 1.7
어가인구 비율 (%)	8.3	5.7	▽ 2.6

- 강릉항 권역의 수산업 잠재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강릉항 권역 어촌계의 어업생산금액 등의 자료가 활용되었고,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의 현황, 어선척수 등의 시설소요와 유통시설, 공동시설 등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 강릉항 권역의 어획금액은 사업 시행 전 1,173백만원에서 사업 시행 후 1,000백만원으로 14.7%로 감소하였다. 어획량의 감소에 따른 어획금액 감소로 분석된다.
- 강릉항 권역의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수는 사업 시행 전·후에 동일하였으나 어업권의 면적은 46.2% 증가하였다. 어업권은 사업 시행 전에는 마을어업 1건이 있었으나, 사업 시행 후에는 복합양식어업 1건으로 변환되면서 면적이 커지게 되었다. 또한 강릉항 권역의 어촌계가 소유하고 있는 어선은 사업 시행 전·후에 29척으로 동일하였다.
- 강릉항 권역의 유통시설은 사업 시행 후 62.0% 증가하였으며, 공동창고, 관리선 등의 공동시설은 사업 시행 후에 133.3% 증가하였다.
- 강릉항은 2010년말 기준으로 공사가 완공된 어항이지만, 성과조사를 실시한 2009년말에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던 어항이다. 강릉항 권역

에서는 어업권의 면적이 증가하는 등 자원 잠재력은 가지고 있으나, 총 세대와 총인구, 수산물 유통시설, 공동시설 등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보아 어항의 순수기능인 수산업 기능보다는 관광·유통·문화·복지 등 복합기능이 더욱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I-32> 수산업 잠재력

용도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자원잠재력	어획금액 (백만원)	1,172	1,000	▽ 14.7
시설소요	어업권수 (건)	1	1	
	어업권면적 (ha)	143	209	▲ 46.2
	어선척수 (척)	29	29	
유통가공시설	수산물 유통시설(m ²)	5,101	8,263	▲ 62.0
	공동시설 보유수 (개)	3	7	▲ 133.3

(2) 관광·유통·문화·복지 등 복합기능

- 강릉항의 사업 시행 전·후의 경제성 평가를 위하여 대상지역의 숙박 및 음식점, 유흥 및 오락시설의 업체수·종사자 수와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을 조사하여 어촌관광 지원시설을 평가하였다. 자료는 법정동인 견소동의 자료를 얻기 어려워 행정동인 송정동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은 속초시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관광시설과 관광소득은 법정동인 송정동의 경우 송정해수욕장 인근의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 주거시설이 분포하고 많은 관광시설이 견소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동인 송정동을 100%로 하였을 경우 견소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80% 정도이다. 이러한 추정치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강릉항 권역의 어촌관광 지원시설을 평가할 수 있다.

- 사업 시행 전 숙박 및 음식점의 업체수는 101개소, 종사자 수는 290명으로 강릉시 전체 숙박 및 음식점 업체수의 2.0%, 종사자 수의 2.6%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업 시행 후 이 비율은 거의 동일하였다. 사업 시행 전 유희·오락시설의 업체수는 11개소, 종사자는 31명으로 강릉시 전체 유희·오락시설의 업체수의 1.6%, 종사자 수의 1.7%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업 시행 후 이 비율은 거의 동일하였다. 숙박 및 음식점업, 유희·오락시설업의 비율이 행정동인 송정동의 면적에 비해 적게 분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업체의 80%이상은 견소동에 위치해 있었다.
- 이 기간 동안 강릉시 전체의 숙박 및 음식점업체수는 3.8% 감소하였으며, 유희·오락시설업의 업체수는 20.4% 감소하였다. 강릉시의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견소동의 그것은 1.0% 증가하였고, 강릉시의 유희·오락시설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견소동의 경우 9.1% 감소에 그쳤다. 강릉항은 성과조사를 실시한 2009년말에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던 어항이었지만 강릉시 전체의 숙박 및 음식점업, 유희·오락시설업에 비해 그 감소 폭이 좁은 것은 강릉항의 관광·유통·문화·복지 등 복합기능의 역할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이라 생각한다.
- 어촌의 공통시설인 공원의 개소는 사업 시행 후 26.1% 증가하여 어촌 관광 잠재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33> 어촌관광 지원시설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숙박 및 음식점	업체수 (개소)	101 (2.0%)	102 (2.1%)	▲ 1.0
	종사자 수 (명)	290 (2.6%)	290 (2.5%)	
유흥, 오락시설	업체수 (개소)	11 (1.6%)	10 (1.8%)	▽ 9.1
	종사자 수 (명)	31 (1.7%)	20 (1.4%)	▽ 35.5
공원 ⁷⁾	자연공원 (개소)	2	2	
	어린이공원 (개소)	63	66	
	근린공원 (개소)	19	19	
	도시자연공원 (개소)	8	29	
	합 계	92	116	▲ 26.1

- 강릉항 권역의 관광사업체수, 관광객 수, 문화재 자원수, 주차장, 복지시설, 복지여가시설 및 문화공간 수 등을 이용하여 관광·교통·문화·복지 등 어촌체험 기반시설을 파악하였다. 자료는 법정동인 견소동의 자료를 얻기 어려워 행정동인 송정동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관광시설과 관광소득은 송정동을 100% 하였을 경우 견소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80% 정도이다.
- 관광업체, 문화재 자원은 법정동인 송정동에는 없었다. 관광객 수는 오히려 30.9% 감소하였다. 관광객 수는 강릉시 전체 자료로서 견소동 관광객 수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견소동에서는 커피 축제, 강릉-울릉도 간 여객선 취항, 화물여객선 터미널 등 관광상품의 개발이 두드러진 구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수가 감소한 것은 강릉시 전체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강릉항은 요트마라나 등의 활성화와 함께 복합어항 기능의 확대가 기

7) 강원도 강릉시 전체자료

대된다.

- 주차장 확보율로부터 교통편의를 대략적으로 판단하였다. 주차장 용지가 사업 시행 전에는 20,174m²이었으나 사업 시행 후 19,993m²로 3.5% 감소하였다. 이 또한 행정동인 송정동의 자료로서 최근 견소동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값으로 교통편의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복지시설과 문화공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사업 시행 후 80.0% 증가하였다. 강릉항의 성과조사를 실시한 2009년말에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던 어항으로 관광·유통·문화·복지 등 시설이 충실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총 세대와 총 인구, 수산물 유통시설, 공동시설 등의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보아 어항의 순수기능인 수산업 기능보다는 관광·유통·문화·복지 등 복합기능이 앞으로 확대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VI-34> 어촌체험 기반시설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관광	사업체수 (개소)	0	0	
	관광객 수 (명) ⁸⁾	21,373,097	14,776,400	▽ 30.9
	자원수 (개)	0	0	
교통	주차장 용지 (m ²)	20,714	19,993	▽ 3.5
복지	복지시설 (개소)	0	0	
문화	노인여가복지시설 (개소)	5	9	▲ 80.0
	문화공간 (개소)	0	0	

8) 강원도 강릉시 전체자료

(3)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 권역별 어업소득을 조사하여 다기능어항의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을 파악하였다.
- 어업소득의 조사를 위해서는 호당 어가소득, 어촌계 유형 등의 지표가 이용되었다.
- 사업 이후 강릉항과 인접한 어촌계의 호당 평균 어가소득은 24,000천원에서 20,000천원으로 4,000천원(16.7%) 감소하였다.
- 강릉항에 인접한 어촌계는 도시에 인접한 어촌계로 경영기반이 취약 단계를 벗어나 스스로 어촌계 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립어촌계이며, 어촌계원의 대다수 또는 절대적인 생산기반이 어선어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어선어업형 어촌계이다. 이러한 유형은 사업 시행 전·후 동일하였다.
- 어촌계의 호당 어가소득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어촌계의 입지유형 및 발전수준으로 보아 강릉항은 어업인 소득 창출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VI-35>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과제	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어업 소득	호당 어가소득 (천원)	24,000	20,000	▽ 16.7	
	어촌계유형	발전수준	자립	자립	
		입지유형	도시근교	도시근교	
		종사유형	어선어업	어선어업	

바. 홍원항

- 홍원항은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에 인접해 있다. 따라서 홍원항의 사업 전·후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대상지역은 서면 도둔리이며, 관련 어촌계는 남촌, 도둔리, 요포·공정, 장벌, 홍원, 공암어촌계로 한정한다.
- 홍원항은 2010년말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었으나,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어항으로 본 성과조사를 활용하여 실행단계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 서천군 서면은 9개의 법정리, 24개의 행정리를 가지고 있으며 도둔리는 9개의 법정리에 속한다. 또한 도둔리는 도둔1리~도둔10리까지 10개의 행정리를 관할하고 있다. 도둔리는 동쪽으로 부사리와 신탐리가 위치해 있으며, 서쪽으로 마량리가 자리잡고 있다. 남쪽과 북쪽으로는 바다와 인접해 있으며, 북서쪽에 홍원항이 있다. 도둔리의 10개 행정리 중 홍원항은 도둔9리(홍원리), 도둔10리(요포리)와 인접하여 있지만, 권역의 기준을 권역의 최소단위인 법정동, 법정리로 하였으므로 도둔리 전체자료를 이용하였다.
- 다기능어항 성과조사를 위한 관련어촌계는 대상지역에 주소를 둔 어촌계를 기준으로 하였다. 서면 도둔리에 주소를 둔 어촌계는 2004년 남촌, 도둔리, 요포, 장벌, 홍원 등 5개 어촌계이었으나 사업 시행 후 2009년에는 요포어촌계에서 공암어촌계가 분리되어 남촌, 도둔리, 요포·공정, 장벌, 홍원, 공암 등 6개 어촌계가 되었다. 사업 시행 후 새로 분리되어 만들어진 어촌계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조사하였다. 홍원항에 인접한 어촌계는 홍원어촌계이지만 홍원항에는 서천서부수협이 위치해 있고 위판장이 있어 도둔리의 대부분의 선박이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둔리에 주소를 둔 어촌계를 대상으로 하였다.
- 도둔리의 총 인구와 총 세대는 각각 서면의 46.7%와 50.1%를 차지하는 큰 권역이다. 또한 서면 전체의 어촌계에서 도둔리에 주소를 둔

어촌계가 어가 60.2%, 어가인구 63.0%, 어촌계원 55.9%, 어업건수 55.2%, 어선수 58.5%, 수산물 생산실적 67.9% 등을 차지한다.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대략 어업시설, 어업소득이 서면을 100%로 하였을 때 도둔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65%정도이었다. 관광시설과 관광소득은 도둔리에 춘장대해수욕장, 흥원항 등이 위치해 있어 도둔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서면을 100%로 하였을 경우 60%정도이었다.

(1) 수산업 지원 기능

- 세대와 인구는 서면 도둔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65세이상 고령자의 인구와 청장년(20세~49세)의 인구는 서면의 자료밖에 없어 서면의 인구 비율을 이용하여 도둔리의 자료를 추정하였다. 다기능어항의 사업 시행 전·후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은 사업의 실시설계 이전인 2004년(2005년 통계자료)으로 하였으며, 사업 시행 후는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09년(2010년 통계자료)으로 하였다.
- 총 세대는 사업 전 895가구에서 사업 후 1,002가구로 12.0% 증가하였고, 총 인구는 사업 전 2,448명에서 사업 후 2,585명으로 5.6% 증가하였다. 세대당 인구는 2.7명에서 2.6명으로 감소하였다.
- 총 세대에 대한 어가의 비율은 사업 전 46.9%에서 사업 후 50.2%로 증가하였으나, 총 인구에 대한 어가인구의 비율은 사업 전 42.7%에서 사업 후 35.7%로 감소하였다. 이는 어가의 수는 증가에도 불구하고 어업인구는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 흥원항은 2010년말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었으나,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어항으로 수혜대상의 감소는 다기능어항의 사업과는 무관해 보인다. 더욱이 2007년 12월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어장오염으로 어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어업인구가 발생하여 이것이 어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어업인구는 감소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 총 인구에 대한 65세이상 고령자의 인구는 사업 전 441명에서 사업 후 56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청장년(20세~49세)의 인구는 사업 전 934명에서 사업 후 879명으로 감소하였다. 즉 고령자는 27.9% 증가하였고, 청장년층 인구는 6.0% 감소하였다. 노년층의 증가와 청장년층의 감소는 사회적 현상으로 다기능어항의 사업과는 무관해 보였다.

<표 VI-36> 어촌 발전 잠재력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총 세대 (가구)	895	1,002	▲ 12.0
총 인구 (명)	2,448	2,585	▲ 5.6
어가 (호)	420	503	▲ 19.8
어가인구 (명)	1,046	923	▽ 11.8
청장년인구 (명)	934	879	▽ 6.0
65세이상 고령자 (명)	441	564	▲ 27.9
어가 비율 (%)	46.9	50.2	▲ 3.3
어가인구 비율 (%)	42.7	35.7	▽ 7.0

- 흥원항 권역의 수산업 잠재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흥원항 권역의 어촌계의 어업생산량, 어업생산금액 등의 자료가 활용되었고,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의 현황, 어선척수 등의 시설소요와 공동시설 등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 흥원항 권역의 어획량은 사업 시행 후 103.2% 증가하였으나, 어획금액은 29.7% 감소하였다. 2007년 12월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어획량은 증가하였으나 단가의 하락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 흥원항 권역의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수는 사업 시행 후 37.5% 감소하였으며, 어업권면적은 32.2% 감소하였다. 또한 어선은

사업 시행 후 24.0% 감소하였다. 어업권은 사업 시행 후 마을어업 6건, 패류양식어업 3건, 어류등 양식어업 1건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해조류양식어업 3건, 패류양식어업 2건, 어류등 양식어업 1건이 감소하였다. 어업권과 어선의 감소는 2007년 12월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어장오염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 흥원항 권역의 공동창고, 관리선 등의 공동시설은 사업 시행 후에 50.0% 증가하였다.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하여 어획금액, 어업권수, 어선척수는 감소하였으나 어획량, 공동시설은 증가하였다. 이는 흥원항 권역이 수산업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표 VI-37> 수산업 잠재력

용도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자원잠재력	어획량 (M/T)	4,598	9,345	▲ 103.2
	어획금액 (백만원)	25,202	17,729	▽ 29.7
시설소요	어업권수 (건)	16	10	▽ 37.5
	어업권면적 (ha)	118	80	▽ 32.2
	어선척수 (척)	242	184	▽ 24.0
유통가공시설	공동시설 보유수 (개)	8	12	▲ 50.0

(2) 관광·유통·문화·복지 등 복합기능

- 흥원항의 사업 시행 전·후의 경제성 평가를 위하여 대상지역의 숙박 및 음식점, 유흥 및 오락시설의 업체수·종사자 수와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을 조사하여 어촌관광 지원시설을 평가하였다. 자료는 도둔리의 자료를 얻기 어려워 서면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은 서천군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관광시설과 관광소득은 도둔리에 춘장대해수욕장, 흥원항 등이 위치해 있어 도둔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서면을 100%로 하였을 경우 60%정도이다. 이러한 추정치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흥원항 권역의 어촌관광 지원시설을 평가할 수 있다.

- 사업 시행 전 숙박 및 음식점의 업체수는 108개소, 종사자 수는 207명으로 서천군 전체 숙박 및 음식점 업체수의 12.7%, 종사자 수의 12.2%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업 시행 후 숙박 및 음식점의 업체수는 119개소, 종사자 수는 245명으로 각각 10.1%, 18.5% 증가하였다. 사업 시행 전 유희·오락시설의 업체수는 7개소, 종사자는 16명으로 서천군 전체 유희·오락시설의 업체수의 6.8%, 종사자 수의 8.4%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업 시행 후 유희·오락시설의 업체수는 6개소, 종사자는 14명으로 각각 21.4%, 12.1% 감소하였다.

<표 VI-38> 어촌관광 지원시설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숙박 및 음식점	업체수 (개소)	108	119	▲ 10.1
	종사자 수 (명)	207	245	▲ 18.5
유희, 오락시설	업체수 (개소)	7	6	▽ 21.4
	종사자 수 (명)	16	14	▽ 12.1
공원 ⁹⁾	자연공원 (개소)	0	0	
	어린이공원 (개소)	11	11	
	근린공원 (개소)	9	9	
	도시자연공원 (개소)	7	7	
	합 계	27	27	

9) 충남 서천군 전체자료

- 어촌의 공통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의 개소는 사업 시행 전·후에 동일하였다. 홍원항은 2010년말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었으나,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어항으로 성과조사를 수행한 2009년에는 공사 진척도가 매우 낮아 숙박 및 음식점업, 유흥·오락시설업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여 어촌관광 지원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홍원항 권역의 관광사업체수, 관광객 수, 문화재 자원수, 주차장, 복지시설, 복지여가시설 및 문화공간 수 등을 이용하여 관광·교통·문화·복지 등 어촌체험 기반시설을 파악하였다. 자료는 도둔리의 자료를 얻기 어려워 서면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관광시설과 관광소득은 서면을 100%로 하였을 경우 도둔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60%정도이다.
- 관광객 수는 12.0%로 증가하였으나 관광업체 수와 문화재 자원수는 사업 시행 전·후에 동일하였다. 즉 어촌관광 지원시설의 부족한 편이었다.
- 주차장 확보율로부터 교통편의를 대략적으로 판단하였다. 주차장 용지가 사업 시행 전에는 1,400m²이었으나 사업 시행 후 27,357m²로 1,885.3% 증가하였다. 교통편의가 사업 시행 전 보다 훨씬 좋아졌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었다.
- 복지시설은 아직 건설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문화공간은 사업 시행 후 문화원 1개소가 들어섰다.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사업 시행 후 21.1% 증가하였다.
- 홍원항은 2010년말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었으나, 성과조사를 수행한 2009년에는 공사 진척도가 매우 낮아 관광·유통·문화·복지 등 시설이 충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VI-39> 어촌체험 기반시설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관광	사업체수 (개소)	0	0	
	관광객 수 (명) ¹⁰⁾	3,677,121	4,120,113	▲ 12.0
	자원수 (개)	1	1	
교통	주차장 용지 (m ²)	1,400	27,357	▲ 1,855.3
복지	복지시설 (개소)	0	0	
문화	노인여가복지시설 (개소)	19	23	▲ 21.1
	문화공간 (개소)	0	1	▲

(3)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 권역별 어업소득을 조사하여 다기능어항의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을 파악하였다.
- 어업소득의 조사를 위해서는 호당 어가소득, 어촌계 유형 등의 지표가 이용되었다.
- 사업 후 도둔리에 주소를 둔 어촌계의 호당 평균 어가소득은 24,150천원에서 31,550천원으로 7,400천원(30.6%) 증가하였다. 특히 흥원항을 기점으로 하는 흥원어촌계의 경우에는 사업 전 28,500천원에서 사업 후 36,000천원으로 7,500천원(26.3) 증가하였다.
- 도둔리에 주소를 둔 어촌계는 사업 시행 전 5개소에서 사업 시행 후 6개소로 증가하였다. 대부분 연안촌락 어촌계로 사업 전에는 어선어업의 세력이 강했으나 사업 후에는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의 세력이 비슷해졌다. 또한 흥원항에 기점을 둔 흥원어촌계를 제외하고 모두 경영기반이 취약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할 성장어촌계로 분류되었다. 흥원항에 기점을 둔 흥원어촌계는 연안촌락 어촌

10) 충남 서천군 전체자료

계로 어선어업의 세력이 강한 어촌계이며 지속적인 성장결과 경영기반이 우수하여 계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능력을 가진 복지어촌계로 분류된다.

- 어촌계의 분리, 어촌계의 호당 어가소득의 상승, 어촌계의 유형 및 발전수준으로 보아 흥원항은 어업인 소득 창출기능이 아직 수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향후 어항개발사업과 더불어 어촌관광 지원시설의 확대가 기대된다.

<표 VI-40>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과제	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어업 소득	호당 어가소득 (천원)	24,150	31,550	▲ 30.6	
	어촌계유형	발전수준	성장4/복지1	성장5/복지1	
		입지유형	연안5	연안5/취약1	
		종사유형	어선2/복합3	어선2/양식2/복합2	

사. 격포항

- 격포항은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인접해 있다. 따라서 격포항의 사업 전·후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대상지역은 변산면 격포리이며, 관련어촌계는 격포어촌계로 한정한다.
- 격포항은 2010년말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었으나,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어항으로 본 성과조사를 활용하여 실행단계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 부안군 변산면은 7개의 법정리, 37개의 행정리를 가지고 있으며 격포리는 7개의 법정리에 속한다. 변산면의 면적 85.17km²은 부안군의 면적 493.05km²의 17.3%를 차지하는 부안군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이다. 변산면의 서쪽으로 격포리가 위치해 있으며, 격포리의 서쪽해안에 격포항이 있다. 변산면의 7개 법정리에서 바다와 연접해 있는 행정구역은 도청리, 격포리, 마포리, 운산리, 대항리 5개 구역이며, 이 중 격포리에 속한 어촌계는 어가 52.3%, 어가인구 40.7%, 어촌계원 40.7%, 어업권건수 38.1%, 어선수 68.4%, 수산물 생산실적은 71.3% 등을 차지한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어업시설, 어업소득이 변산면을 100%로 하였을 때 격포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70%정도이었다. 관광은 새만금 방조제 홍보관과 변산해수욕장이 위치해 있는 대항리에서 일부 시설이 있어 이용되지만 대부분 채석강이 있는 격포항 부근에서 관광이 마무리된다. 이는 최근 개발된 변산 마실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변산면의 관광소득과 관광시설은 격포리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설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1) 수산업 지원 기능

- 세대와 인구는 변산면 격포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65세이상 고령자의 인구와 청장년(20세~49세)의 인구는 변산면의 자료밖에 없어 변산면의 인구 비율을 이용하여 격포리의 자료를 추정하였다. 다기능어

항의 건설 사업 전·후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은 사업의 실시설계 이전인 2004년(2005년 통계자료)으로 하였으며, 사업 시행 후는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09년(2010년 통계자료)으로 하였다. 그러나 부안군에서는 2005년 통계자료를 구독하기 어려워 2006년 통계자료(2005년 기준)를 활용하였으며, 2010년 통계자료가 출판되지 않아 확보할 수 없어서 2009년 통계자료(2008년 기준)를 이용하였다.

- 총 세대는 사업 전 602가구에서 사업 후 609가구로 1.2% 증가하였고 총 인구는 사업 전 1,549명에서 사업 후 1,475명으로 4.8% 감소하였다. 세대당 인구는 2.6명에서 2.4명으로 감소하였다.
- 총 세대에 대한 어가의 비율은 사업 전 30.7%에서 사업 후 36.9%로 증가하였으나 총 인구에 대한 어가인구의 비율은 사업 전 43.5%에서 사업 후 22.2%로 감소하였다. 총 세대와 총 인구는 사업 시행 전·후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어가인구는 -51.5%로 급감하면서 수혜대상이 감소를 초래하였다. 이는 격포항 주변의 관광상품의 개발에 따라 다수의 주민이 관광관련 산업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 총 인구에 대한 65세이상 고령자의 인구는 사업 전 398명에서 사업 후 43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청장년(20세~49세)의 인구는 사업 전 653명에서 사업 후 594명으로 감소하였다. 즉 고령자는 8.7% 증가하였고, 청장년층 인구는 9.0% 감소하였다. 노년층의 증가와 청장년층의 감소는 사회적 현상으로 어항개발 사업과는 무관해 보였다.

<표 VI-41> 어촌 발전 잠재력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총 세대 (가구)	602	609	▲ 1.2
총 인구 (명)	1,549	1,475	▽ 4.8
어가 (호)	185	225	▲ 21.6
어가인구 (명)	674	327	▽ 51.5
청장년인구 (명)	653	594	▽ 9.0
65세이상 고령자 (명)	398	432	▲ 8.5
어가 비율 (%)	46.9	50.2	▲ 6.2
어가인구 비율 (%)	42.7	35.7	▽ 21.3

- 격포항 권역의 수산업 잠재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격포항 권역의 어촌계의 어업생산량, 어업생산금액 등의 자료가 활용되었고,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의 현황, 어선척수 등의 시설소요와 공동시설 등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 격포항 권역의 어획량은 사업 시행 후 254.3% 증가하였으나, 어획금액은 43.5% 감소하였다. 본 자료는 계통판매고를 제외시켰다. 격포 어촌계의 주된 생산품은 주꾸미로서 계통판매를 실시함에 따른 어획금액의 감소와 2007년 12월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어획물의 단가의 하락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 격포항 권역의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수는 사업 시행 후 6.7% 증가하였으며, 어업권면적은 5.1% 증가하였다. 어선은 사업 시행 후 26.0% 감소하였다. 어업권은 사업 시행 후 해조류양식어업 1건이 감소하는 대신 패류양식어업 2건이 증가하였다. 어선의 감소는 2007년 12월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어장오염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 격포항 권역의 공동창고, 관리선 등의 공동시설은 사업 시행 후에 266.7% 증가하였다.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하여 어획금액, 어업권수, 어선척수는 감소하였으나 어획량, 공동시설 등은 증가하였다. 이

는 격포항 권역이 수산업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표 VI-42> 수산업 잠재력

용도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자원잠재력	어획량 (M/T)	175	620	▲ 254.3
	어획금액 (백만원)	620	350	▽ 43.5
시설소요	어업권수 (건)	15	16	▲ 6.7
	어업권면적 (ha)	197	207	▲ 5.1
	어선척수 (척)	204	151	▽ 26.0
유통가공시설	공동시설 보유수 (개)	6	22	▲ 266.7

(2) 관광·유통·문화·복지 등 복합기능

- 격포항의 사업 시행 전·후의 경제성 평가를 위하여 대상지역의 숙박 및 음식점, 유흥 및 오락시설의 업체수·종사자 수와 공통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을 조사하여 어촌관광 지원시설을 평가하였다. 자료는 격포리의 자료를 얻기 어려워 변산면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공통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은 부안군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관광시설과 관광소득은 변산면을 100%로 하였을 경우 격포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80%정도이다. 이러한 추정치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격포항 권역의 어촌관광 지원시설을 평가할 수 있다.
- 사업 시행 전 숙박 및 음식점의 업체수는 261개소, 종사자 수는 676명으로 부안군 전체 숙박 및 음식점 업체수의 26.4%, 종사자 수의 29.1%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업 시행 후 숙박 및 음식점의 업체수는 280개소, 종사자 수는 836명으로 각각 7.3%, 23.7% 증가하여 부안군 전체 숙박 및 음식점 업체수의 27.6%, 종사자 수의 32.6%를 차지하였다.
- 사업 시행 전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는 23개소, 종사자는 93명으로

- 부안군 전체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의 20.5%, 종사자 수의 30.5%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업 시행 후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는 14개소, 종사자는 73명으로 각각 39.1%, 21.5% 감소하여 부안군 전체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의 17.9%, 종사자 수의 30.8%를 차지하였다.
- 어촌의 공통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의 개소는 사업 시행 전·후에 동일하였다. 변산반도국립공원이 격포리를 포함한 변산면 전역에 분포해 있었다.

<표 VI-43> 어촌관광 지원시설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숙박 및 음식점	업체수 (개소)	261	280	▲ 7.3
	종사자 수 (명)	676	836	▲ 23.7
유흥, 오락시설	업체수 (개소)	23	14	▽ 39.1
	종사자 수 (명)	93	73	▽ 21.5
공원 ¹¹⁾	자연공원 (개소)	1	1	
	어린이공원 (개소)	0	0	
	근린공원 (개소)	0	0	
	도시자연공원 (개소)	0	0	
	합 계	1	1	

- 변산면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의 업체수와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격포항 개발에 따른 관광객의 증가로 분석되었으며, 어촌관광 지원시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격포항 권역의 관광사업체수, 관광객 수, 문화재 자원수, 주차장, 복지시설, 복지여가시설 및 문화공간 수 등을 이용하여 관광·교통·문화·복지 등 어촌체험 기반시설을 파악하였다. 자료는 격포리의 자료를 얻기 어려워 변산면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관광시설과 관광소득은 변

11) 전북 부안군 전체자료

산면을 100%로 하였을 경우 격포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80%정도이다.

- 변산면에는 문화재 자원이 풍부하여 9개소가 있었다. 사업 시행 후 관광사업체 수도 100% 증가하였다. 관광객 수는 30.8% 감소하였다. 관광객 수는 2005년에 예외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평년과 비교하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어촌관광 지원시설이 높은 편이다.
- 주차장 확보율로부터 교통편의를 대략적으로 판단하였다. 주차장 용지는 사업 시행 전·후에 동일하였다. 교통편의가 사업 시행 전·후에 비슷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 복지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문화공간은 사업 시행 전·후 동일하였다.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사업 시행 후 26.1% 증가하였다.
- 격포리에는 숙박시설 및 음식점, 문화재 자원수, 문화공간,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이 풍부하였으며 교통편의도 좋았다. 또한 새롭게 새만금 방조제로부터 변산 마실길 등의 관광상품이 개발되어 사업 시행 후 관광·유통·문화·복지 등의 복합기능이 향상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표 VI-44> 어촌체험 기반시설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관광	사업체수 (개소)	3	6	▲ 100.0
	관광객 수 (명) ¹²⁾	7,522,159	5,202,250	▽ 30.8
	자원수 (개)	9	9	
교통	주차장 용지 (m ²)	8,518	8,518	
복지	복지시설 (개소)	0	0	
문화	노인여가복지시설 (개소)	23	29	▲ 26.1
	문화공간 (개소)	4	4	

(3)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 권역별 어업소득을 조사하여 다기능어항의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을 파악하였다.
- 어업소득의 조사를 위해서는 호당 어가소득, 어촌계 유형 등의 지표가 이용되었다.
- 사업 후 격포리에 주소를 둔 어촌계의 호당 평균 어가소득은 15,651천원에서 34,157천원으로 18,506천원(118.2%) 증가하여 어업인의 소득 창출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 격포리에 주소를 둔 어촌계는 사업 시행 전 경영기반이 취약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할 성장어촌계에서 사업 시행 후 경영기반이 우수하여 계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을 가진 복지어촌계로 급성장하였다. 또한 연안촌락에 위치한 어촌계에서 근소재지에 인접한 어촌계로 생활여건이 도시형인 어촌계로 성장하였으며, 사업 시행 전에는 어선어업의 세력이 강했으나, 사업 시행 후에는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의 세력이 비슷해졌다.
- 어촌계의 호당 평균어가소득의 급상승, 어촌계의 급발전, 어촌계의 입지유형의 변화 등 격포항은 어업인 소득 창출기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I-45>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과제	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어업 소득	호당 어가소득 (천원)	15,651	34,157	▲ 118.2	
	어촌계유형	발전수준	성장	복지	
		입지유형	연안어촌	도시근교	
		종사유형	어선어업	복합어업	

아. 마량항

- 마량항은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에 인접해 있다. 따라서 마량항의 사업 전·후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대상지역은 마량면 마량리이며, 관련어촌계는 서중, 신마, 원마1구, 원마2구 어촌계로 한정한다.
- 마량항은 2009년말까지 공사가 완공된 어항으로 본 성과조사를 활용하여 사후단계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강진군 마량면은 5개의 법정리, 12개의 행정리를 가지고 있으며 마량리는 5개의 법정리에 속한다. 법정동인 마량리는 마량1리, 마량2리 2개의 행정리를 관할하고 있다. 마량면의 5개의 법정리에서 바다와 연결해 있는 행정구역은 수인리, 마량리, 원포리 3개 구역이며 이 중 마량리의 해안선이 가장 길다. 마량면의 어촌계 중 마량리에 속하는 어촌계는 어가 66.9%, 어가인구 69.4%, 어촌계원 66.9%, 어업권건수 44.4%, 어선수 84.5%, 수산물 생산실적 69.4%를 차지한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마량면을 100% 하였을 때 마량리가 차지하는 어업시설 및 어업소득의 비율은 각각 90%, 70%정도이었다. 관광시설과 관광소득은 마량항 부근에 각종 홍보관 등의 시설과 축제, 음악제 등이 집중되어 마량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마량면을 100% 하였을 경우 90%정도이었다.

(1) 수산업 지원 기능

- 세대와 인구는 마량면 마량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65세이상 고령자의 인구와 청장년(20세~49세)의 인구는 마량면의 자료밖에 없어 마량면의 인구 비율을 이용하여 마량리의 자료를 추정하였다. 다가능어항의 건설 사업 전·후의 경제지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이전은 사업의 실시설계 이전인 2004년(2005년 통계자료)으로 하였으며, 사업 시행 이후는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09년(2010년 통계자료)으로 하였다.

- 총 세대는 사업 전 449가구에서 사업 후 458가구로 2.0% 증가하였고 총 인구는 사업 전 1,073명에서 사업 후 1,027명으로 4.3% 감소하였다. 세대당 인구는 2.4명으로 동일하였다.
- 총 인구에 대한 65세이상 고령자의 인구는 사업 전 215명에서 사업 후 205명으로 4.7% 감소하였으며 청장년(20세~49세)의 인구는 사업 전 391명에서 사업 후 345명으로 11.8% 감소하였다.

<표 VI-46> 어촌 발전 잠재력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총 세대 (가구)	449	458	▲ 2.0
총 인구 (명)	1,073	1,027	▽ 4.3
어가 (호)	342	352	▲ 2.9
어가인구 (명)	746	815	▲ 9.2
청장년인구 (명)	391	345	▽ 11.8
65세이상 고령자 (명)	215	205	▽ 4.8
어가 비율 (%)	76.2	76.9	▲ 0.7
어가인구 비율 (%)	69.5	79.4	▲ 9.8

- 총 세대에 대한 어가의 비율은 사업 전 76.2%에서 사업 후 76.9%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총 인구에 대한 어가인구의 비율은 사업 전 69.5%에서 사업 후 79.4%로 크게 증가하였다. 총 세대와 총 인구는 사업 시행 전·후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어가인구는 9.2% 증가하여 수혜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마량항이 어촌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되었다.
- 마량항 권역의 수산업 잠재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마량항 권역의 어촌계의 어업생산량, 어업생산금액 등의 자료가 활용되었고,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의 현황, 어선척수 등의 시설소요와 공동시설 등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어촌·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용역

- 마량항 권역의 어획량은 사업 시행 후 66.5% 감소하였으나, 어획금액은 12.7% 증가하였다. 비계통판매를 실시함에 따른 어획금액의 차이와 어획물의 고가 거래가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 마량항 권역의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수는 사업 시행 후 33.3% 증가하였으며, 어업권면적은 850.0% 증가하였다. 어선은 사업 시행 후 -31.0% 감소하였다. 어업권은 사업 시행 전 해조류양식어업 1건, 패류양식어업 4건, 어류등 양식어업 1건이었으나 사업 시행 후 어류등 양식어업이 1건 감소한 반면 해조류양식어업 1건, 마을어업 2건이 증가하였다. 어선의 감소, 어업권의 변화로부터 어촌계의 종사유형이 사업 시행 전 어선어업 또는 복합어업에서 사업 시행 후 양식어업으로 변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마을어업의 증가는 수산업 잠재력과 더불어 어촌 체험 마을을 비롯한 어촌관광 지원시설의 기능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 마량항 권역의 공동창고, 관리선 등의 공동시설은 사업 시행 후에 47.4% 증가하였다. 어획금액, 공동시설, 어업권의 증가는 마량항이 수산업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마을어업의 증가 등 어업권의 변화는 어촌관광 지원시설의 기능 확대를 의미한다.

<표 VI-47> 수산업 잠재력

용도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자원잠재력	어획량 (M/T)	1,490	499	▽ 66.5
	어획금액 (백만원)	3,100	3,493	▲ 12.7
시설소요	어업권수 (건)	6	8	▲ 33.3
	어업권면적 (ha)	24	228	▲ 850.0
	어선척수 (척)	245	169	▽ 31.0
유통가공시설	공동시설 보유수 (개)	19	28	▲ 47.4

(2) 관광·유통·문화·복지 등 복합기능

- 마량항의 사업 시행 전·후의 경제성 평가를 위하여 대상지역의 숙박 및 음식점, 유흥 및 오락시설의 업체수·종사자 수와 공통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을 조사하여 어촌관광 지원시설을 평가하였다. 자료는 마량리의 자료를 얻기 어려워 마량면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관광시설과 관광소득은 마량항 부근에 각종 홍보관 등의 시설과 축제, 음악제 등이 집중되어 마량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마량면을 100%로 하였을 경우 90%정도이다. 이러한 추정치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마량항 권역의 어촌관광 지원시설을 평가할 수 있다.
- 사업 시행 전 숙박 및 음식점의 업체수는 73개소, 종사자 수는 131명으로 강진군 전체 숙박 및 음식점 업체수의 12.5%, 종사자 수의 11.4%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업 시행 후 숙박 및 음식점의 업체수는 71개소로 2.7% 감소하고 종사자 수는 169명으로 29.0% 증가하여 강진군 전체 숙박 및 음식점 업체수의 13.7%, 종사자 수의 15.5%를 차지하였다.
- 사업 시행 전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는 5개소, 종사자는 7명으로 강진군 전체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의 6.5%, 종사자 수의 3.6%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업 시행 후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는 1개소, 종사자는 73명으로 각각 80.0%, 71.4% 감소하여 강진군 전체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의 2.1%, 종사자 수의 1.3%를 차지하였다.
- 어촌의 공통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의 개소는 사업 시행 전 4개소에서 사업 시행 후 도시자연공원이 1개소 감소하였다.
- 마량면의 숙박 및 음식점의 업체수는 사업 시행 후 2개소 감소하였으나 강진군 전체의 감소율과 비교하면 그 폭은 적은 편이었다. 성과 조사를 수행한 2009년에는 다기능어항이 완공되었으나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단계로 숙박 및 음식점, 유흥·오락시설 등의 부대시설은 증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마을어업을 이용한 어촌

체험마을 등의 개발과 함께 부대시설의 확대 등이 기대된다.

<표 VI-48> 어촌관광 지원시설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숙박 및 음식점	업체수 (개소)	73	71	▽ 2.7
	종사자 수 (명)	131	169	▲ 29.0
유흥, 오락시설	업체수 (개소)	5	1	▽ 80.0
	종사자 수 (명)	7	2	▽ 71.4
공원	자연공원 (개소)	0	0	
	어린이공원 (개소)	2	2	
	근린공원 (개소)	1	1	
	도시자연공원 (개소)	1	0	
	합 계	4	3	▽ 25.0

- 마량항 권역의 관광사업체수, 관광객 수, 문화재 자원수, 주차장, 복지시설, 복지여가시설 및 문화공간 수 등을 이용하여 관광·교통·문화·복지 등 어촌체험 기반시설을 파악하였다. 자료는 마량리의 자료를 얻기 어려워 마량면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관광시설과 관광소득은 마량면을 100%로 하였을 경우 마량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90%정도이다.
- 마량면에는 문화재 자원이 2개있었다. 사업 시행 후 관광객은 54.9% 증가하였으며 다양한 관광프로그램과 자원, 공원을 갖추고 있어 관광 관광 지원시설이 높은 편이다.
- 주차장 확보율로부터 교통편의를 대략적으로 판단하였다. 마량면에는 사업 시행 전·후에 주차장 용지를 갖추어 있지 않아 교통편의가 사업 시행 전·후에 비슷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 복지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문화공간, 노인여가복지시설

은 사업 시행 전·후 동일하였다.

- 마량리에는 마을어업을 이용한 어촌체험마을 등 프로그램은 개발되어 어촌관광 지원시설은 가지고 있으나 교통, 문화, 복지 등의 복합기능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VI-49> 어촌체험 기반시설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관광	사업체수 (개소)	0	0	
	관광객 수 (명) ¹³⁾	4,131,485	6,401,446	▲ 54.9
	자원수 (개)	2	2	
교통	주차장 용지 (m ²)	0	0	
복지	복지시설 (개소)	0	0	
문화	노인여가복지시설 (개소)	14	14	
	문화공간 (개소)	1	1	

(3)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 권역별 어업소득을 조사하여 다기능어항의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을 파악하였다.
- 어업소득의 조사를 위해서는 호당 어가소득, 어촌계 유형 등의 지표가 이용되었다.
- 사업 후 마량리에 주소를 둔 어촌계의 호당 평균 어가소득은 26,800천원에서 31,250천원으로 4,450천원(16.6%) 증가하여 어업인의 소득 창출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 마량리에 주소를 둔 어촌계에서는 사업 시행 전 경영기반이 취약한 성장어촌계에서 사업 시행 후 경영기반이 우수한 복지어촌계로 급성장한 어촌계가 등장하였다. 또한 사업 시행 전에는 양식어업의 세력

13) 전남 강진군 전체자료

이 강했으나, 사업 시행 후에는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의 세력이 비슷한 복합어업으로 전환한 어촌계가 등장하였다.

- 어촌계의 호당 어가소득의 상승, 어촌계의 급발전 등 마량항은 어업인 소득 창출기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I-50>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과제	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어업 소득	호당 어가소득 (천원)	26,800	31,250	▲ 16.6	
	어촌계유형	발전수준	성장3/자립1	성장2/자립1/복지1	
		입지유형	연안어촌	연안어촌	
		종사유형	양식3/어선1	양식1/복합2/어선1	

자. 국동항

- 국동항은 전남 여수시 신월동, 국동, 봉산동, 남산동에 인접해 있다. 따라서 국동항의 사업 전·후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대상지역은 여수시 신월동, 국동, 봉산동, 남산동이며 관련어촌계는 서부어촌계와 신월어촌계로 한정한다.
- 국동항은 2010년말 기준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어항으로 본 성과조사를 활용하여 실행단계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 여수시는 1개읍, 6개면, 20개 행정동, 51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월동, 국동, 봉산동, 남산동은 51개의 법정동에 속한다. 행정동인 대교동은 봉산동과 남산동을 관할하고, 행정동인 월호동은 신월동과 경호동을 관할한다. 행정동인 국동은 그대로 법정동이다. 경호동의 육역은 국동항에 포함되지 않지만 해역은 국동항에 속하기 때문에 조사에서는 경호동을 포함하며 수행한다.

(1) 수산업 지원 기능

- 세대와 인구는 여수시 국동, 대교동, 월호동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다기능어항의 건설 사업 시행 전·후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은 사업의 실시설계 이전인 2004년(2005년 통계자료)으로 하였으며, 사업 시행 후는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09년(2010년 통계자료)으로 하였다.
- 총 세대는 사업 전 11,097가구에서 사업 후 11,218가구로 1.1% 증가하였으나, 총 인구는 사업 전 33,370명에서 사업 후 29,601명으로 11.3% 감소하였다. 세대별 인구는 3.0명에서 2.6명으로 감소하였다. 여수시 전체적으로도 세대수는 6.7% 증가하였으나 총 인구수는 3.9% 감소하였다.
- 총 세대에 대한 어가의 비율은 사업 전 3.4%에서 사업 후 4.3%로 증가하였으며, 총 인구에 대한 어가인구의 비율은 사업 전 3.8%에서

- 사업 후 4.5%로 증가하여 수혜대상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 어가와 어가인구가 각각 26.5%, 5.1% 증가하여 어촌 발전 잠재력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총 인구에 대한 65세이상 고령자의 인구비율은 사업 전 8.3%에서 사업 후 12.5%로 증가하였다. 청장년(20세~49세)의 인구비율은 사업 전 48.7%에서 사업 후 43.8%로 감소하였다. 즉 고령자는 33.1% 증가하였고, 청장년층 인구는 20.3% 감소하였다. 노년층의 증가와 청장년층의 감소는 여수시 전체적으로도 각각 22.2%, 10.2%를 나타내어 다가능어항의 사업과는 무관해 보였다.
 - 국동항은 사업 시행 후 총 인구는 감소하였으나 어가, 어가인구, 어가비율, 어가인구비율이 증가하여 어촌이 급격하게 발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I-51> 어촌 발전 잠재력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총 세대 (가구)	11,097	11,218	▲ 1.1
총 인구 (명)	33,370	29,601	▽ 11.3
어가 (호)	378	478	▲ 26.5
어가인구 (명)	1,267	1,331	▲ 5.1
청장년인구 (명)	16,262	12,967	▽ 20.3
65세이상 고령자 (명)	2,769	3,686	▲ 33.1
어가 비율 (%)	3.4	4.3	▲ 0.9
어가인구 비율 (%)	3.8	4.5	▲ 0.7

- 국동항 권역의 수산업 잠재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업생산량, 어업생산액 등의 자료의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

권의 현황, 어선척수 등의 시설소요와 유통시설, 공동시설 등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어업생산량, 어업생산액은 법정동 단위의 자료가 누락되어 법정동 단위의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어업종사자의 자료를 이용하여 그 비율로 지표값을 산출하였다.

- 여수시의 어업종사자는 사업 시행 전 8,745명에서 사업 시행 후 12,285명으로 40.5% 증가하였으며, 국동항 권역에서도 39.1% 증가하였다. 국동항 권역에서 어업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사업 시행 전에는 13.5%이었고, 사업 시행 후에는 13.6%이었다.
- 국동항 권역에서 어업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한 국동항 권역의 어획량은 사업 시행 후 12.4% 감소하였으나, 어획금액은 7.9% 증가하였다. 어획물이 고가로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사업 시행 후 어획량은 감소하였으나, 어획금액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어업종사자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자원 잠재력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 국동항 권역의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의 현황과 어선척수로 시설소요를 파악하였다. 두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수는 사업 시행 전·후에 동일하였으며 패류양식어업 9건, 마을어업 4건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 시행 후 마을어업권의 면적이 51.6% 확대되었으며 어선척수도 사업 시행 후 10.2% 증가하였다.
- 사업 시행 후 시설소요가 증가하여 어항으로서 기능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VI-52> 수산업 잠재력

용도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자원 잠재력	어업종사자 (명)	전체	8,745	12,285	▲ 40.5
		권역	435	903	▲ 39.1
	어획량 (M/T)	전체	96,552	83,750	▽ 13.3
		권역(추정치)	13,010	11,394	▽ 12.4
	어획금액 (백만원)	전체	178,459	190,800	▲ 6.9
		권역(추정치)	24,047	25,958	▲ 7.9
시설 소요	어업권수 (건)		13	13	
	어업권면적 (ha)		153	232	▲ 51.6
	어선척수 (척)		420	463	▲ 10.2
유통가 공시설	수산물 유통시설 (m ²)		3,308	48,580	▲ 1368.6
	공동시설 보유수 (개)		17	14	▽ 17.6

(2) 관광·유통·문화·복지 등 복합기능

- 국동향의 사업 시행 전·후의 경제지표 평가를 위하여 대상지역의 숙박 및 음식점, 유흥 및 오락시설의 업체수·종사자 수와 공통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을 조사하여 어촌관광 지원시설을 평가하였다.
- 사업 시행 전 숙박 및 음식점의 업체수는 517개소, 종사자 수는 992명으로 여수시 전체 숙박 및 음식점 업체수의 10.8%, 종사자 수의 10.0%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업 시행 후 이 비율은 약간 감소하였지만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전·후의 증가율은 업체수에서 -10.3%로 크게 감소하였다.
- 사업 시행 전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는 70개소, 종사자는 132명으로 여수시 전체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의 8.4%, 종사자 수의 7.7%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업 시행 전·후의 증가율은 업체 수 -27.1%, 종사자 수 -34.1%로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 이 기간 동안 여수시는 전체적으로 업체수 및 종사자 수가 많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감소율이 컸다. 숙박 및 음식

- 점,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와 종사자 수의 감소는 어촌관광 지원시설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 보기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국동항은 2010년말 기준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어항이다. 숙박 및 음식점,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와 종사자 수의 감소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진과 더불어 경제적인 활동에 의한 감소로 생각할 수 있다.
- 어촌의 공통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의 개소와 면적은 사업 시행 전·후에 25.0% 증가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표 VI-53> 어촌관광 지원시설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숙박 및 음식점	업체수 (개소)	517 (10.8%)	464 (10.1%)	▽ 10.3
	종사자 수 (명)	992 (10.0%)	979 (9.6%)	▽ 1.3
유흥, 오락시설	업체수 (개소)	70 (8.4%)	51 (7.9%)	▽ 27.1
	종사자 수 (명)	132 (7.7%)	87 (6.2%)	▽ 34.1
공원	자연공원 (개소)	0	0	
	어린이공원 (개소)	6	7	
	근린공원 (개소)	5	3	
	도시자연공원 (개소)	1	5	
	합 계	12	15	▲ 25.0

- 국동항 권역의 관광업체 수, 관광객 수, 문화재 자원수, 주차장, 복지시설, 복지여가시설, 문화공간 수 등을 이용하여 관광·교통·문화·복지 등 어촌체험 기반시설을 파악하였다.
- 자원수의 증가와 더불어 관광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국동항이 관광 복합어항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차장 확보율로부터 교통편의를 대략적으로 판단하였다. 2008년 이전 주차장에 대한 자료는 읍면동의 자료가 누락되어 2009년의 자료에서 전체에 대한 권역의 비율을 구해 추정하였다. 주차장의 개수가 53.3% 증가

하였다. 교통편의가 사업 시행 전 보다 좋아졌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었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과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다기능어항 주변에서 5개소(19.2%)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54> 어촌체험 기반시설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관광	사업체수 (개소)	2	2	
	자원수 (개)	0	1	
	관광객 수 (명) ¹⁴⁾	4,738,000	6,706,288	▲ 41.5
교통	주차장 (개소)	182	279	▲ 53.3
복지	복지시설 (개소)	1	2	
문화	노인여가복지시설 (개소)	26	31	▲ 19.2
	문화공간 (개소)	0	0	

(3)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 권역별 어업소득을 조사하여 다기능어항의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을 파악하였다.
- 어업소득의 조사를 위해서는 호당 어가소득, 어촌계 유형 등의 지표가 이용되었다.
- 사업 후 국동항과 인접한 어촌계의 호당 평균 어가소득은 21,700천원에서 25,100천원으로 3,400천원(15.7%) 증가하여 어업인의 소득 창출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 국동항과 인접한 어촌계는 도시근교에 입지한 어촌계로 경영기반이 취약하거나 취약단계를 벗어나 스스로 어촌계 경영을 도모해야 하는 성장 또는 자립형 어촌계이다. 또한 대다수 어촌계원이 어선어업을

14) 전남 여수시 전체자료

하거나 일부 어선과 양식어업을 병행하는 복합 또는 어선어업형 어촌계이다. 사업 시행 전·후의 차이는 없었다.

- 국동향은 다른 다기능어항과는 달리 광범위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잠수기조합, 거문도새우조망협회, 여수새우조망협회 등등 다양한 조합, 협회 등이 국동향을 기점으로 어업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어촌계의 호당 평균 어가소득, 어촌계의 유형으로 어업인의 소득 창출기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다만 일부 어촌계의 호당 평균 어가소득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국동향이 어업인 소득 창출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다.

<표 VI-55>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과제	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어업 소득	호당 어가소득 (천원)		21,700	25,100	▲ 15.7
	어촌계유형	발전수준	성장/자립	성장/자립	
		입지유형	도시근교	도시근교	
		종사유형	어선/복합	어선/복합	

차. 양포항

- 양포항은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 양포리, 계원리에 인접해 있다. 따라서 격포항의 사업 전·후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대상지역은 장기면 신창리, 양포리, 계원리이며, 관련어촌계는 계원1리, 계원2리, 신창1리, 신창2리, 양포리 어촌계로 한정한다.
- 양포항은 2009년말까지 공사가 완공된 어항으로 본 성과조사를 활용하여 사후단계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포항시 장기면은 23개의 법정리, 33개의 행정리를 가지고 있으며 신창리, 양포리, 계원리는 23개의 법정리에 속한다. 신창리는 신창1리와 신창2리 2개의 행정리를 관할하고, 계원리는 계원1리와 계원2리 2개의 행정리를 관할한다. 양포리는 법정리와 행정리가 동일하다. 장기면 7개 법정리에서 바다와 연접해 있는 행정구역은 두원리, 계원리, 양포리, 신창리, 영암리, 대진리, 모포리 7개 구역이며 이 중 계원리, 양포리, 신창리에 속한 어촌계가 장기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가 55.1%, 어가인구 56.1%, 어촌계원 55.3%, 어업권 건수 49.3%, 어선 수 50.0%, 수산물 생산실적 61.3%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어업시설, 어업소득이 장기면을 100%로 하였을 때 계원리, 양포리, 신창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60%정도이었다. 관광시설과 관광소득은 장기읍내와 모포리 등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장기면을 100%로 하였을 경우 계원리, 양포리, 신창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50%정도이었다.

(1) 수산업 지원 기능

- 세대와 인구는 장기면 신창리, 양포리, 계원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다기능어항의 건설 사업 전·후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은 사업의 실시설계 이전인 2004년(2005년 통계자료)으로 하였으며, 사업 시행 후는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09년(2010년 통계자료)으로 하였다.

- 총 세대는 사업 전 723가구에서 사업 후 720가구로 0.4% 감소하였고, 총 인구는 사업 전 1,872명에서 사업 후 1,690명으로 9.7% 감소하였다. 세대별 인구는 2.6명에서 2.3명으로 감소하였다.
- 총 세대에 대한 어가의 비율은 사업 전 45.5%에서 사업 후 39.3%로 6.2%포인트 감소하였고 총 인구에 대한 어가인구의 비율은 사업 전 28.0%에서 사업 후 21.3%로 6.7%포인트 감소하였다. 총 세대와 총 인구는 사업 시행 전·후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어가인구는 사업 전후 31.4%나 급감하면서 수혜대상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어가의 감소는 양포항 주변의 관광상품의 개발에 따라 주민의 관광관련 산업으로의 유입에 따른 것이라 판단되며, 어가인구의 급감은 고령자의 사망이 그대로 어가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수혜대상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VI-56> 어촌 발전 잠재력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총 세대 (가구)	723	720	▽ 0.4
총 인구 (명)	1,872	1,690	▽ 9.7
어가 (호)	329	283	▽ 14.0
어가인구 (명)	525	360	▽ 31.4
어가 비율 (%)	45.5	39.3	▽ 6.2
어가인구 비율 (%)	28.0	21.3	▽ 6.7

- 양포항 권역의 수산업 잠재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양포항 권역의 어촌계의 어업생산량, 어업생산금액 등의 자료가 활용되었고,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의 현황, 어선척수 등의 시설소요와 공동시설 등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 양포항 권역의 어획량은 사업 시행 후 75.0% 감소하였으며 어획금액은 14.2% 감소하였다. 본 자료는 계통판매고를 제외시켰다. 양포어촌계의 주된 생산품은 전복, 해삼, 소라, 성게 등 저서생물로 계통판매에 의해 어획량과 어획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 양포항 권역의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수는 35건으로 사업 시행 전·후에 동일하였으나, 어업권면적은 사업 시행 후 20.0% 감소하였다. 어선은 사업 시행 후 15.7% 증가하였다. 어업권은 사업 시행 전 주로 어류등양식업이었으나 사업 시행 후 해조류, 패류양식어업으로 전환되었다.
- 양포항 권역의 공동창고, 관리선 등의 공동시설은 사업 시행 전·후에 동일하였다. 어선척수를 제외한 자원 잠재력, 시설소요 등이 사업 시행 전보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양포항 권역의 수산업 잠재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촌계분류평정을 사용하였다. 어촌계분류평정의 부정확한 자료에 의한 오차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어업권의 자료에서 패류양식어업과 복합양식어업의 경우 각각 3건과 2건의 어업면허가 있으나 어업권의 면적은 0(ha)이었다. 이와 같은 자료에 의해 어업권의 면적이 부정확하게 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VI-57> 수산업 잠재력

용도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자원잠재력	어획량 (M/T)	76	19	▽ 75.0
	어획금액 (백만원)	246	211	▽ 14.2
시설소요	어업권수 (건)	35	35	
	어업권면적 (ha)	335	268	▽ 20.0
	어선척수 (척)	159	184	▲ 15.7
유통가공시설	공동시설 보유수 (개)	19	19	

(2) 관광·유통·문화·복지 등 복합기능

- 양포항의 사업 시행 전·후의 경제지표 평가를 위하여 대상지역의 숙박 및 음식점, 유흥 및 오락시설의 업체수·종사자 수와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을 조사하여 어촌관광 지원시설을 평가하였다. 자료는 법정리인 신창리, 양포리, 계원리의 자료를 얻기 어려워 장기면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은 포항시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관광시설과 관광소득은 장기읍내와 모포리 등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장기면을 100%로 하였을 경우 계원리, 양포리, 신창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50%정도이었다. 이러한 추정치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양포항 권역의 어촌관광 지원시설을 평가할 수 있다.
- 사업 시행 전 숙박 및 음식점의 업체수는 89개소, 종사자 수는 111명이었으나 사업 시행 후 숙박 및 음식점의 업체수는 77개소, 종사자 수는 105명으로 각각 13.1%, 5.0% 감소하였다.
- 사업 시행 전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는 14개소, 종사자는 17명이었으나 사업 시행 후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는 11개소, 종사자는 14명으로 각각 21.7%, 18.3% 감소하였다.

<표 VI-58> 어촌관광 지원시설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숙박 및 음식점	업체수 (개소)	89	77	▽ 13.1
	종사자 수 (명)	111	105	▽ 5.0
유흥, 오락시설	업체수 (개소)	14	11	▽ 21.7
	종사자 수 (명)	17	14	▽ 18.3
공원 ¹⁵⁾	자연공원 (개소)	1	1	
	어린이공원 (개소)	158	184	
	근린공원 (개소)	35	47	
	도시자연공원 (개소)	11	12	
	합 계	205	244	▲ 19.0

- 어촌의 공통시설에 해당하는 포항시 전체의 공원 개소는 사업 시행 후 19.0% 증가하였다.
- 양포항은 성과조사를 수행한 2009년에 완공되었으나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던 단계로 숙박 및 음식점, 유흥·오락시설 등의 부대시설은 증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어촌체험 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확대가 기대된다.
- 양포항 권역의 관광사업체수, 관광객 수, 문화재 자원수, 주차장, 복지시설, 복지여가시설 및 문화공간 수 등을 이용하여 관광·교통·문화·복지 등 어촌체험 기반시설을 파악하였다. 자료는 법정리인 신창리, 양포리, 계원리의 자료를 얻기 어려워 장기면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관광시설과 관광소득은 장기면을 100%로 하였을 경우 계원리, 양포리, 신창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50%정도이다.
- 장기면에는 문화재 자원이 4개있었다. 사업 시행 후 관광객은 166.1% 증가하여 어촌관광 지원시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차장 확보율로부터 교통편의를 대략적으로 판단하였다. 장기면에는

15) 경북 포항시 전체자료

사업 시행 전·후에 주차장 용지를 갖추어 있지 않아 교통편의가 사업 시행 전·후에 비슷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 복지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문화공간은 사업 시행 전·후 동일하였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사업 시행 후 15.2% 증가하였다.
- 양포항 권역에서는 어촌관광 지원시설은 보유하고 있으나 교통, 문화, 복지 등의 복합기능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VI-59> 어촌체험 기반시설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관광	사업체수 (개소)	0	0	
	관광객 수 (명) ¹⁶⁾	4,966,263	13,214,175	▲ 166.1
	자원수 (개)	4	4	
교통	주차장 용지 (m ²)	0	0	
복지	복지시설 (개소)	0	0	
문화	노인여가복지시설 (개소)	33	38	▲ 15.2
	문화공간 (개소)	1	1	

(3)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 권역별 어업소득을 조사하여 다기능어항의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을 파악하였다.
- 어업소득의 조사를 위해서는 호당 어가소득, 어촌계 유형 등의 지표가 이용되었다.
- 사업 후 양포항 권역 어촌계의 호당 평균 어가소득은 14,200천원에서 23,860천원으로 9,660천원(68.0%) 증가하여 어업인의 소득 창출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 양포항 권역 어촌계는 연안촌락에 위치한 어촌계로서 사업 시행 전

16) 경북 포항시 전체자료

어촌·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용역

어선어업의 세력이 강했으나, 사업 시행 후에는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의 세력이 비슷해졌다. 또한 경영기반이 취약단계를 벗어나 스스로 어촌계 경영을 도모해야하는 자립어촌계에서 사업 시행 후 일부 어촌계가 경영기반이 우수하여 계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을 가진 복지어촌계로 급성장하였다.

- 어촌계의 호당 어가소득의 상승, 어촌계의 급발전 등 양포항은 어업인 소득 창출기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I-60>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과제	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어업 소득	호당 어가소득 (천원)		14,200	23,860	▲ 68.0
	어촌계유형	발전수준	자립5	성장1/자립2/복지2	
		입지유형	연안어촌	연안어촌	
		종사유형	어선2/복합3	복합5	

카. 지세포항

- 지세포항은 경남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소동리, 지세포리에 인접해 있다. 따라서 지세포항의 사업 전·후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대상지역은 일운면 옥림리, 소동리, 지세포리이며, 관련어촌계는 선창, 소림, 지세포어촌계로 한정한다.
- 지세포항은 2010년말 기준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어항으로 본 성과조사를 활용하여 실행단계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 거제시 일운면은 6개의 법정리, 17개의 행정리를 가지고 있으며 옥림리, 소동리, 지세포리는 6개의 법정리에 속한다. 옥림리, 소동리, 지세포리가 일운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가 46.0%, 어가인구 48.6%, 어촌계원 43.8%, 어업권 건수 31.8%, 어선 수 35.1%, 수산물 생산실적 79.2%이다. 어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일운면을 100%로 하였을 때 옥림리, 소동리, 지세포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업소득 35%, 어업시설 40%정도이었다. 관광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일운면을 100%로 하였을 때 옥림리, 소동리, 지세포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관광소득과 관광시설이 각각 25%, 35% 정도이었다.

(1) 수산업 지원 기능

- 세대와 인구는 일운면 옥림리, 소동리, 지세포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다기능어항의 건설 사업 전·후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은 사업의 실시설계 이전인 2004년(2005년 통계자료)으로 하였으며, 사업 시행 후는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09년(2010년 통계자료)으로 하였다.
- 총 세대는 사업 전 1,095가구에서 사업 후 2,011가구로 83.7% 증가하였고 총 인구는 사업 전 2,800명에서 사업 후 4,820명으로 72.1% 증가하였다. 세대당 인구는 2.6명에서 2.4명으로 감소하였다.
- 총 세대에 대한 어가의 비율은 사업 전 13.2%에서 사업 후 5.4%로

감소하였고 총 인구에 대한 어가인구의 비율은 사업 전 8.2%에서 사업 후 3.2%로 5.0%포인트 감소하였다.

- 총 세대와 총 인구는 급증하였으나, 어가와 어가인구는 감소하였다. 인구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구가 감소한 것은 지세포항 주변의 관광상품의 개발에 따라 주민의 관광관련 산업으로의 유입에 따른 것이라 판단되었다. 이는 수산업 기반의 어촌 발전 잠재력 저하를 의미하며 지세포항 인근은 어촌관광 지원시설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I-61> 어촌 발전 잠재력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총 세대 (가구)	1,095	2,011	▲ 83.7
총 인구 (명)	2,800	4,820	▲ 72.1
어가 (호)	145	108	▽ 25.5
어가인구 (명)	230	154	▽ 33.0
어가 비율 (%)	13.2	5.4	▽ 7.9
어가인구 비율 (%)	8.2	3.2	▽ 5.0

- 지세포항 권역의 수산업 잠재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세포항 권역의 어촌계의 어업생산량, 어업생산금액 등의 자료가 활용되었고,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의 현황, 어선척수 등의 시설소요와 공동시설 등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 지세포항 권역의 어획량은 사업 시행 후 41.5% 감소하였으며 어획금액은 25.4% 감소하였다. 어가인구의 감소가 어획량, 어획금액의 감소로 이어진 것이라 판단된다. 즉 어촌 발전 잠재력의 저하로 수산업이 위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령자의 사망이 그대로 어가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유입되는 청장년의 대부분은 어촌관광 지원시설

- 이 남아있으면서 수산업의 기능이 저하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 지세포항 권역의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수는 사업 전 6건에서 사업 후 7건으로 1건이 증가하였으며 어업권의 면적은 사업 시행 후 1.0% 증가하였다. 어선은 사업 시행 후 26.9% 감소하였다. 어업권은 사업 시행 전 정치망어업, 협동양식어업, 마을어업이 각각 2건씩 면허되어 있었으나 사업 시행 후 정치망어업 1건 증가하였다. 공동창고, 관리선 등의 공동시설은 사업 시행 후 75.0% 증가하였다.
 - 어업권, 공동시설 등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가인구가 감소하면서 어촌 발전 잠재력의 저하되고 있었다. 그러나 총 세대와 총 인구, 어업권, 공동시설 등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보아 어항의 순수기능인 수산업 기능보다는 관광·유통·문화·복지 등 복합기능이 더욱 발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I-62> 수산업 잠재력

용도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자원잠재력	어획량 (M/T)	176	103	▽ 41.5
	어획금액 (백만원)	717	535	▽ 25.4
시설소요	어업권수 (건)	6	7	▲ 16.7
	어업권면적 (ha)	99	100	▲ 1.0
	어선척수 (척)	93	68	▽ 26.9
유통가공시설	공동시설 보유수 (개)	4	7	▲ 75.0

(2) 관광·유통·문화·복지 등 복합기능

- 지세포항의 사업 시행 전·후의 경제성 평가를 위하여 대상지역의 숙박 및 음식점, 유흥 및 오락시설의 업체수·종사자 수와 공통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을 조사하여 어촌관광 지원시설을 평가하였다. 자료는 법정리인 옥림리, 소동리, 지세포리의 자료를 얻기 어려워 일운면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공통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은 거제시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관광시설과 관광소득은 일운면을 100%로 하였을 때 옥림리, 소동리, 지세포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35%와 25%이다. 이러한 추정치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지세포항 권역의 어촌관광 지원시설을 평가할 수 있다.
- 사업 시행 전 숙박 및 음식점의 업체수는 155개소, 종사자 수는 278명으로 거제시 전체 숙박 및 음식점 업체수의 4.2%, 종사자 수의 3.3%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업 시행 후 숙박 및 음식점의 업체수는 288개소로 85.8% 증가하고 종사자 수는 631명으로 127.0% 증가하여 거제시 전체 숙박 및 음식점 업체수의 7.3%, 종사자 수의 6.3%를 차지하였다. 사업 시행 전 보다 사업 시행 후 업체수의 비율이 큰 것으로 일운면에 숙박 및 음식점이 많이 들어선 것을 알 수 있었다.
- 사업 시행 전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는 9개소, 종사자는 64명으로 거제시 전체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의 1.7%, 종사자 수의 5.5%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업 시행 후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는 동일하였고, 종사자는 71명으로 10.9% 증가하여 거제시 전체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의 2.1%, 종사자 수의 7.0%를 차지하였다. 업체수에 비해 종사자 수가 큰 것으로 일운면에 위치한 유흥·오락시설의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어촌의 공통시설에 해당하는 거제시의 공원 개소는 사업 시행 전 72개소에서 사업 시행 후 77개소로 6.9% 증가하였다.
- 일운면의 숙박 및 음식점의 업체수는 사업 시행 후 급증하고 있었으

며, 유흥·오락시설의 규모도 커지고 있었다. 지세포항은 2010년말 기준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어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숙박 및 음식점의 급증, 유흥·오락시설의 규모 확대 등은 지세포항이 어촌관광 지원시설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지세포항에는 거제어촌민속 전시관, 조선해양문화관이 들어서 있으며 인근에 리조트와 많은 펜션 등이 건축되고 있다. 또한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지세포항은 어촌관광 지원시설이 매우 뛰어난 항으로 자리잡고 있다.

<표 VI-63> 어촌관광 지원시설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숙박 및 음식점	업체수 (개소)	155	288	▲ 85.8
	종사자 수 (명)	278	631	▲ 127.0
유흥, 오락시설	업체수 (개소)	9	9	
	종사자 수 (명)	64	71	▲ 10.9
공원 ¹⁷⁾	자연공원 (개소)	2	2	
	어린이공원 (개소)	50	52	
	근린공원 (개소)	15	18	
	도시자연공원 (개소)	5	5	
	합 계	72	77	▲ 6.9

- 지세포항 권역의 관광사업체수, 관광객 수, 문화재 자원수, 주차장, 복지시설, 복지여가시설 및 문화공간 수 등을 이용하여 관광·교통·문화·복지 등 어촌체험 기반시설을 파악하였다. 자료는 법정리인 옥림리, 소동리, 지세포리의 자료를 얻기 어려워 일운면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관광시설과 관광소득은 일운면을 100%로 하였을 때 옥림리, 소동리, 지세포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35%와 25%이다.

17) 경남 거제시 전체자료

- 관광업체 수, 문화재 자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문화재 자원도 소폭 증가하여 지세포항이 관광 복합어항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주차장 확보율로부터 교통편의를 대략적으로 판단하였다. 주차장 용지가 사업 시행 전에는 443m²이었으나 사업 시행 후 517m²로 16.7% 증가하여 교통편의가 사업 시행 전 보다 좋아졌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었다.
-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이 사업 시행 후 100.0% 증가하였으며,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의 노인여가 복지시설과 문화공간도 사업 시행 후 증가하였다. 관광, 교통, 복지, 문화 등 모든 항목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세포항이 복합기능 어항으로 자리매김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I-64> 어촌체험 기반시설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관광	사업체수 (개소)	14	32	▲ 128.6
	관광객 수 (명) ¹⁸⁾	3,165,183	4,919,790	▲ 55.4
	자원수 (개)	7	8	▲ 14.3
교통	주차장 용지 (m ²)	443	517	▲ 16.7
복지	복지시설 (개소)	2	4	▲ 100.0
문화	노인여가복지시설 (개소)	16	20	▲ 25.0
	문화공간 (개소)	6	9	▲ 50.0

18) 경남 거제시 전체자료

(3)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 권역별 어업소득을 조사하여 다기능어항의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을 파악하였다.
- 어업소득의 조사를 위해서는 호당 어가소득, 어촌계 유형 등의 지표가 이용되었다.
- 사업 후 지세포항 권역 어촌계의 호당 평균 어가소득은 16,667천원에서 27,167천원으로 10,500천원(63.0%) 증가하여 어업인의 소득 창출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 지세포항 권역 어촌계는 연안촌락 및 도시근교에 위치한 어촌계로서 사업 시행 전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의 세력이 비슷한 복합어업에 종사하였으나 사업 시행 후 어선어업의 세력이 강한 어선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또한 사업 시행 전 경영기반이 취약한 성장어촌계에서 일부 어촌계가 사업 시행 후 경영기반이 취약단계를 벗어난 자립어촌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 어촌계의 호당 어가소득의 상승, 어촌계의 발전수준 등으로 지세포항은 어업인 소득 창출기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I-65>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과제	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어업 소득	호당 어가소득 (천원)		16,667	27,167	▲ 63.0
	어촌계유형	발전수준	성장	성장2/자립1	
		입지유형	연안2/도시1	연안1/도시2	
		종사유형	복합어업	어선어업	

타. 맥전포항

- 맥전포항은 경남 고성군 하일면 춘암리에 인접해 있다. 따라서 맥전포항의 사업 전·후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대상지역은 하일면 춘암리이며, 관련어촌계는 춘암리, 동화어촌계로 한정한다.
- 맥전포항은 2010년말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었으나,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어항으로 본 성과조사를 활용하여 실행단계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 고성군 하일면은 7개의 법정리, 15개의 행정리를 가지고 있으며 춘암리는 7개의 법정리에 속한다. 춘암리는 춘암, 용암포, 맥전포 3개의 행정리를 관할한다. 춘암리가 하일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가 25.5%, 어가인구 35.5%, 어촌계원 23.9%, 어업권 건수 9.5%, 어선수 28.7%, 수산물 생산실적 26.2%이다. 어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하일면을 100%로 하였을 때 춘암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업소득 25%, 어업시설 70%정도이었다. 관광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하일면을 100%로 하였을 때 춘암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관광소득과 관광시설이 각각 35%, 25% 정도이었다.
- 다기능어항 성과조사를 위한 관련어촌계는 대상지역에 주소를 둔 어촌계를 기준으로 하였다. 하일면 춘암리에 주소를 둔 어촌계는 춘암리어촌계 뿐이다. 춘암리어촌계는 5년 전 맥전포항의 실시설계와 함께 동화어촌계에서 분리되어 만들어졌다. 다기능어항의 건설 사업 전·후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은 사업의 실시설계 이전인 2004년(2005년 통계자료)으로 하였으며, 사업 시행 후는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09년(2010년 통계자료)으로 하였다. 그래서 2004년에는 춘암리에 주소를 둔 어촌계는 없었으며 춘암리 주민은 동화어촌계에 소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주소는 다르지만 사업 시행 전에는 동화어촌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업 시행 후에는 동화어촌계와 춘암리어촌계를 대상으로 성과를 조사하였

다.

(1) 수산업 지원 기능

- 세대와 인구는 하일면 춘암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총 세대는 사업 전 189가구에서 사업 후 178가구로 5.8% 감소하였고 총 인구는 사업 전 426명에서 사업 후 357명으로 16.2% 감소하였다. 세대당 인구는 2.3명에서 2.0명으로 감소하였다.
- 총 세대에 대한 어가의 비율은 사업 전 41.8%에서 사업 후 43.8%로 증가하였고 총 인구에 대한 어가인구의 비율은 사업 전 47.9%에서 사업 후 57.7%로 증가하였다.
- 총 세대와 총 인구는 사업 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어가와 어가인구는 사업 전·후에 거의 동일하였다. 이것은 춘암리가 어촌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일면의 어가 및 어가인구 비율에서도 어촌 발전 잠재력은 나타난다. 사업 후 어가비율은 2.0%, 어가인구 비율은 9.7% 증가하였다. 춘암리의 전체 세대와 인구는 감소하여도 어가와 어가인구는 유지되면서 어촌 발전에 기여하고 있었다.

<표 VI-66> 어촌 발전 잠재력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총 세대 (가구)	189	178	▽ 5.8
총 인구 (명)	426	357	▽ 16.2
어가 (호)	79	78	▽ 1.3
어가인구 (명)	204	206	▲ 1.0
청장년인구 (명)	180	136	▽ 24.4
65세이상 고령자 (명)	120	123	▲ 2.5
어가 비율 (%)	41.8	43.8	▲ 2.0p
어가인구 비율 (%)	47.9	57.7	▲ 9.8p

- 총 인구에 대한 65세이상 고령자의 인구는 사업 전 120명에서 사업 후 12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청장년(20세~49세)의 인구는 사업 전 180명에서 사업 후 136명으로 감소하였다. 즉 고령자는 2.5% 증가하였고, 청장년층 인구는 24.4% 감소하였다. 노년층의 증가와 청장년층의 감소는 사회적 현상으로 어항개발 사업과는 무관해 보였다.
- 맥전포항 권역의 수산업 잠재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맥전포항 권역 어촌계의 어업생산량, 어업생산금액 등의 자료가 활용되었고,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의 현황, 어선척수 등의 시설소요와 공동시설 등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 맥전포항 권역의 어획량은 사업 시행 후 15.4% 증가하였으나 어획금액은 7.6% 감소하였다. 본 자료는 계통판매고를 제외시켰다. 맥전포항 권역 어촌계의 주된 생산품인 전어, 낚지, 감송어가 계통판매되어 어획금액이 감소하였다고 생각된다.
- 맥전포항 권역의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수는 사업 전 6건에서 사업 후 7건으로 1건이 증가하였으나, 어업권의 면적은 사업 시행 후 3.1% 감소하였다. 어선은 사업 시행 후 36.0% 증가하였다. 어업권은 사업 시행 전 협동양식어업 3건, 복합양식어업 1건, 마을어업 2건이었으나 사업 시행 후 복합양식어업이 사라지고 협동양식어업 1건, 마을어업 1건이 증가하였다. 촌암리어촌계가 동화어촌계와 분리되면서 신설된 마을어업 면허이다. 공동창고, 관리선 등의 공동시설은 사업 시행 후 33.3% 증가하였다.
- 어업권, 공동시설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어선 증선 등 촌암리 주민의 적극적인 어장개발이 느껴진다. 어획금액 등 다소 부정적인 지표도 있었지만 수산업 잠재력이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표 VI-67> 수산업 잠재력

용도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자원잠재력	어획량 (M/T)	182	210	▲ 15.4
	어획금액 (백만원)	1,142	1,055	▽ 7.6
시설소요	어업권수 (건)	6	7	▲ 16.7
	어업권면적 (ha)	160	155	▽ 3.1
	어선척수 (척)	125	170	▲ 36.0
유통가공시설	공동시설 보유수 (개)	3	4	▲ 33.3

(2) 관광·유통·문화·복지 등 복합기능

- 맥전포항의 사업 시행 전·후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대상지역의 숙박 및 음식점, 유흥 및 오락시설의 업체수와 종사자 수와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을 조사하여 어촌관광 지원시설을 평가하였다. 자료는 법정리인 춘암리의 자료를 얻기 어려워 하일면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관광시설과 관광소득은 하일면을 100%로 하였을 때 춘암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5%, 35% 정도이다. 이러한 추정치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맥전포항 권역의 어촌관광 지원시설을 평가할 수 있다.
- 사업 시행 전 숙박 및 음식점의 업체수는 22개소, 종사자 수는 40명으로 고성군 전체 숙박 및 음식점 업체수의 2.5%, 종사자 수의 2.4%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업 시행 후 숙박 및 음식점의 업체수는 27개소로 22.7% 증가하고 종사자 수는 48명으로 20.0% 증가하여 고성군 전체 숙박 및 음식점 업체수의 2.9%, 종사자 수의 2.4%를 차지하였다.
-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와 종사자 수는 각각 2개소, 2명으로 사업 시행 전·후에 동일하였으며 어촌의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공원 개소는 사업 시행 전·후에 증설되지 않았다.

어촌·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용역

- 맥전포항은 2010년말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었으나,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어항으로 주변에 상죽암군립공원 등이 들어서 있어 관광객도 풍부한 편이다. 그러나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구축되지 않아 맥전포항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적은 편이었다. 또한 숙박 및 음식점, 유희·오락시설, 공원 등의 근린시설, 편의시설, 생활시설도 부족하여 어촌관광 지원시설은 감소하는 어항으로 판단되었다.

<표 VI-68> 어촌관광 지원시설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숙박 및 음식점	업체수 (개소)	22	27	▲ 22.7
	종사자 수 (명)	40	48	▲ 20.0
유희, 오락시설	업체수 (개소)	2	2	
	종사자 수 (명)	2	2	
공 원		0	0	

- 맥전포항 권역의 관광사업체수, 관광객 수, 문화재 자원수, 주차장, 복지시설, 복지여가시설 및 문화공간 수 등을 이용하여 관광·교통·문화·복지 등 어촌체험 기반시설을 파악하였다. 자료는 춘암리의 자료를 얻기 어려워 하일면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관광시설과 관광소득은 하일면을 100%로 하였을 때 춘암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5%, 35% 정도이다.
- 6곳의 문화재 자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관광객 수가 497.2%나 증가하여 맥전포항이 관광 복합어항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주차장 확보율로부터 교통편의를 대략적으로 판단하였다. 주차장 용지가 사업 시행 전에는 496m²이었으나 사업 시행 후 1,487m²로 199.8% 증가하여 교통편의가 사업 시행 전 보다 좋아졌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었다.

- 복지시설과 문화공간을 없었으며,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사업 시행 후 15.0% 증가하였다. 관광, 교통 항목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관광 복합어항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자원의 개발, 사회기반시설의 구축, 근린시설·생활시설·편의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표 VI-69> 어촌체험 기반시설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관광	사업체수 (개소)	0	0	
	관광객 수 (명) ¹⁹⁾	315,879	1,886,363	▲ 497.2
	자원수 (개)	6	6	
교통	주차장 용지 (m ²)	496	1,487	▲ 199.8
복지	복지시설 (개소)	0	0	
문화	노인여가복지시설 (개소)	20	23	▲ 15.0
	문화공간 (개소)	0	0	

(3)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 권역별 어업소득을 조사하여 다기능어항의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을 파악하였다.
- 어업소득의 조사를 위해서는 호당 어가소득, 어촌계 유형 등의 지표가 이용되었다.
- 사업 후 맥전포항 권역 어촌계의 호당 평균 어가소득은 29,000천원에서 26,000천원으로 3,000천원(10.3%) 감소하였다.
- 맥전포항 권역 어촌계는 연안촌락에 위치한 어촌계로서 어촌계원의 대다수가 어선어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고 있었다. 이 어촌계는 사업 시행 전 경영기반이 취약한 성장어촌계이었으나 사업 시행 후 경영기

19) 경남 고성군 전체자료

반이 취약단계를 벗어난 자립어촌계와 경영기반이 우수한 복지어촌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 어촌계의 호당 어가소득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어촌계의 발전수준으로 보아 맥전포항은 어업인 소득 창출기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I-70>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과제	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어업 소득	호당 어가소득 (천원)		29,000	26,000	▽ 10.3
	어촌계유형	발전수준	성장	자립1/복지1	
		입지유형	연안촌락	연안촌락	
		종사유형	어선어업	어선어업	

과. 모슬포항

- 모슬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인접해 있다. 따라서 모슬포항의 사업 전·후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대상지역은 대정읍 하모리이며, 관련어촌계는 하모어촌계로 한정한다.
- 모슬포항은 2010년말 기준으로 공사가 완공된 어항이지만, 성과조사를 실시한 2009년말에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던 어항으로 본 성과조사를 활용하여 실행단계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 서귀포시 대정읍은 13개의 법정리, 23개의 행정리를 가지고 있으며 하모리는 13개의 법정리에 속한다. 하모리는 하모1리, 하모2리, 하모3리 3개의 행정리를 관할한다. 하모리가 대정읍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가 43.1%, 어가인구 45.9%, 어촌계원 37.2%, 어업권 건수 10.0%, 어선 수 68.3%, 수산물 생산실적 24.8%이다. 어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대정읍을 100%로 하였을 때 하모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업소득 55%, 어업시설 70%정도이었다. 관광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대정읍을 100%로 하였을 때 하모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관광소득과 관광시설이 각각 30%, 70% 정도이었다.

(1) 수산업 지원 기능

- 세대와 인구는 하일면 춘암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다기능어항의 건설 사업 전·후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은 사업의 실시설계 이전인 2004년(2005년 통계자료)으로 하였으며, 사업 시행 후는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09년(2010년 통계자료)으로 하였다. 그러나 서귀포시에서는 2005년 통계자료를 구독하기 어려워 2006년 통계자료(2005년 기준)를 활용하였으며, 2010년 통계자료가 출판되지 않아 확보할 수 없어서 2009년 통계자료(2008년 기준)를 이용하였다.
- 총 세대는 사업 전 2,129가구에서 사업 후 2,163가구로 1.6% 증가

하였고 총 인구는 사업 전 5,690명에서 사업 후 5,598명으로 1.6% 감소하였다. 세대당 인구는 2.7명에서 2.6명으로 감소하였다.

- 총 세대에 대한 어가의 비율은 사업 전 28.7%에서 사업 후 27.7%로 감소하였고 총 인구에 대한 어가인구의 비율은 사업 전 11.4%에서 사업 후 14.3%로 증가하였다.
- 총 세대와 총 인구는 사업 전·후에 비슷하였으나 어가인구가 사업 후 크게 증가하여 어촌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총 인구에 대한 65세이상 고령자의 인구는 사업 전 944명에서 사업 후 1,026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청장년(20세~49세)의 인구는 사업 전 2,586명에서 사업 후 2,438명으로 감소하였다. 즉 고령자는 8.7% 증가하였고, 청장년층 인구는 5.7% 감소하였다. 노년층의 증가와 청장년층의 감소는 사회적 현상으로 어항개발 사업과는 무관해 보였다.

<표 VI-71> 어촌 발전 잠재력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총 세대 (가구)	2,129	2,163	▲ 1.6
총 인구 (명)	5,690	5,598	▽ 1.6
어가 (호)	611	600	▽ 1.8
어가인구 (명)	648	800	▲ 23.5
청장년인구 (명)	2,586	2,438	▽ 5.7
65세이상 고령자 (명)	944	1,026	▲ 8.7
어가 비율 (%)	28.7	27.7	▽ 1.0p
어가인구 비율 (%)	11.4	14.3	▲ 2.9p

- 모슬포항 권역의 수산업 잠재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모슬포항 권역 어촌계의 어업생산량, 어업생산금액 등의 자료가 활용되었고,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의 현황, 어선척수 등의 시설소요와 공동시설 등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 모슬포항 권역의 어획량은 사업 시행 후 80.0% 증가하였으며 어획금액은 68.3% 증가하여 사업 시행 후 자원 잠재력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 모슬포항 권역의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수와 어업권 면적, 공동시설은 사업 시행 전·후에 동일하였으며 어선은 사업 시행 후 36.3% 감소하였다. 시설소요 및 공동시설은 사업 시행 전·후에 동일하거나 일부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인 수량이 다른 권역에 비해 크기 때문에 수산업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VI-72> 수산업 잠재력

용도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자원잠재력	어획량 (M/T)	15	27	▲ 80.0
	어획금액 (백만원)	60	101	▲ 68.3
시설소요	어업권수 (건)	3	3	
	어업권면적 (ha)	130	130	
	어선척수 (척)	237	170	▽ 36.3
유통가공시설	공동시설 보유수 (개)	12	12	

(2) 관광·유통·문화·복지 등 복합기능

- 모슬포항의 사업 시행 전·후의 경제지표 평가를 위하여 대상지역의 숙박 및 음식점, 유흥 및 오락시설의 업체수·종사자 수와 공통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을 조사하여 어촌관광 지원시설을 평가하였다. 자료는 하모리의 자료를 얻기 어려워 대정읍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관광시설과 관광소득은 대정읍을 100%로 하였을 때

하모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70%, 30% 정도이다. 이러한 추정치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모슬포항 권역의 어촌관광 지원시설을 평가할 수 있다.

- 사업 시행 전 숙박 및 음식점의 업체수는 277개소, 종사자 수는 623명으로 서귀포시 전체 숙박 및 음식점 업체수의 9.5%, 종사자 수의 7.1%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업 시행 후 숙박 및 음식점의 업체수는 268개소로 3.2% 감소하고 종사자 수는 641명으로 2.9% 증가하여 서귀포시 전체 숙박 및 음식점 업체수의 9.1%, 종사자 수의 7.1%를 차지하였다.
- 사업 시행 전 유희·오락시설의 업체수는 32개소, 종사자는 72명으로 서귀포시 전체 유희·오락시설의 업체수의 7.2%, 종사자 수의 2.5%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업 시행 후 유희·오락시설의 업체수는 20개소로 37.5% 감소하고 종사자는 38명으로 47.2% 감소하여 서귀포시 전체 유희·오락시설의 업체수의 5.3%, 종사자 수의 1.3%를 차지하였다.
- 어촌의 공통시설에 해당하는 서귀포시의 공원 개소는 사업 시행 전·후에 69개소로 동일하였다.
- 모슬포항은 2010년말 기준으로 공사가 완공된 어항이지만, 성과조사를 실시한 2009년말에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던 어항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유희·오락시설업이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일부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많은 어촌관광 지원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VI-73> 어촌관광 지원시설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숙박 및 음식점	업체수 (개소)	277	268	▽ 3.2
	종사자 수 (명)	623	641	▲ 2.9
유흥, 오락시설	업체수 (개소)	32	20	▽ 37.5
	종사자 수 (명)	72	38	▽ 47.2
공원 ²⁰⁾	자연공원 (개소)	4	4	
	어린이공원 (개소)	27	27	
	근린공원 (개소)	28	28	
	도시자연공원 (개소)	10	10	
	합 계	69	69	

- 모슬포항 권역의 관광사업체수, 관광객 수, 문화재 자원수, 주차장, 복지시설, 복지여가시설 및 문화공간 수 등을 이용하여 관광·교통·문화·복지 등 어촌체험 기반시설을 파악하였다. 자료는 대정읍의 자료를 얻기 어려워 서귀포시 전체 자료를 이용하였다. 관광시설과 관광소득은 대정읍을 100%로 하였을 때 하모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70%, 30% 정도이다.
- 관광사업체수, 문화재 자원수, 관광객 수 등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관광객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모슬포항이 관광 복합어항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주차장 확보율로부터 교통편의를 대략적으로 판단하였다. 주차장은 사업 시행 전에는 10,797개소이었으나 사업 시행 후 11,626개소로 7.7% 증가하여 교통편의가 사업 시행 전 보다 좋아졌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었다.
- 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문화공간이 사업 시행 후 각각 15.4%,

2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전체자료

3.1%, 12.2% 증가하였다. 모든 항목이 증가하여 관광·교통·복지 등 복합어항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I-74> 어촌체험 기반시설

조사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관광	사업체수 (개소)	92	133	▲ 44.6
	관광객 수 (명)	5,321,998	17,219,913	▲ 223.6
	자원수 (개)	135	138	▲ 2.2
교통	주차장 (개소)	10,797	11,626	▲ 7.7
복지	복지시설 (개소)	13	15	▲ 15.4
문화	노인여가복지시설 (개소)	129	133	▲ 3.1
	문화공간 (개소)	41	46	▲ 12.2

(3)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 권역별 어업소득을 조사하여 다기능어항의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을 파악하였다.
- 어업소득의 조사를 위해서는 호당 어가소득, 어촌계 유형 등의 지표가 이용되었다.
- 사업 후 모슬포항 권역 어촌계의 호당 평균 어가소득은 19,230천원에서 18,000천원으로 1,230천원(6.4%) 감소하였다.
- 모슬포항 권역 어촌계는 도시근교에 위치한 어촌계로서 어선어업 또는 양식어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고 있었다. 이 어촌계는 경영기반이 우수하여 어촌계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 능력을 가진 복지어촌계이다.
- 어촌계의 호당 어가소득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어촌계의 발전수준이 복지형 어촌계로서 이후 모슬포항은 어업인 소득 창출기능이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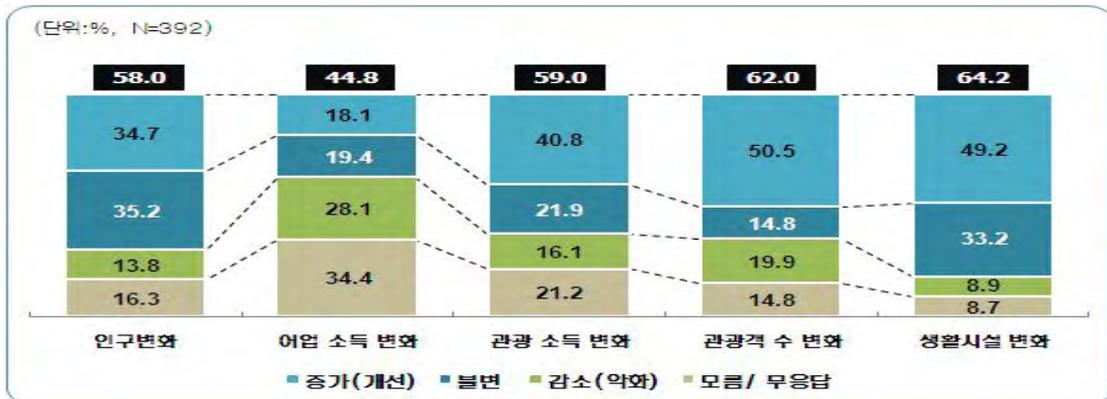
<표 VI-75>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과제	지표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증감 (%)
어업 소득	호당 어가소득 (천원)		19,230	18000	▽ 6.4
	어촌계유형	발전수준	복지	복지	
		입지유형	도시근교	도시근교	
		종사유형	복합어업	복합어업	

3.3 프로그램 모니터링

가. 근거리 사용자(어항부근) 대상

- 다기능어항이 개발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경우 다기능 어항 사업 내용에 대해서 41.3%가 알고 있고, 48.2%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보통 : 10.5%)
- 다기능어항 개발 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생활시설과 관광객 수는 대체로 증가한 편이고, 관광 소득 역시 증대된 것으로 나타남. 게다가 인구도 조금 증가함. 반면, 어업 소득은 감소되거나 악화되었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음.
- 즉, 다기능어항 개발이 관광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어업 활성화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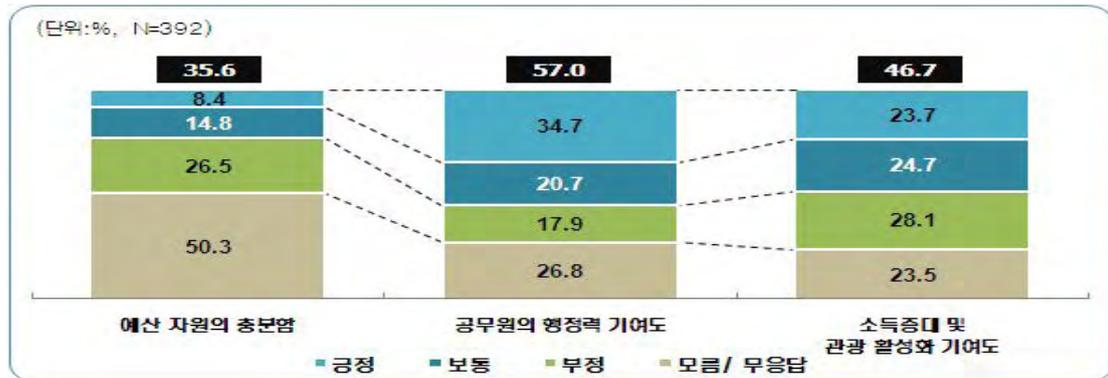
- 다기능어항 개발 후 변화를 어항별로 살펴본 결과, 주로 흥원항, 격포항, 대변항, 정자항, 안목항 등에서 긍정적 변화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정자항, 지세포항, 대변항에서 주로 인구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어업 소득 증가의 경우 흥원항, 격포항, 정자항에서의 변화가 괄목할만함.
- 관광소득증가의 경우 흥원항, 격포항, 정자항, 안목항에서 변화가 많

은 편임. 관광객 수의 경우엔 흥원항, 격포항, 마량항, 안목항, 모슬포항에서 많이 증가한 편임. 생활시설의 경우 흥원항, 대변항, 안목항에서 주로 긍정적 변화가 있었음.

<표 VI-76> 어항별 다기능어항 개발 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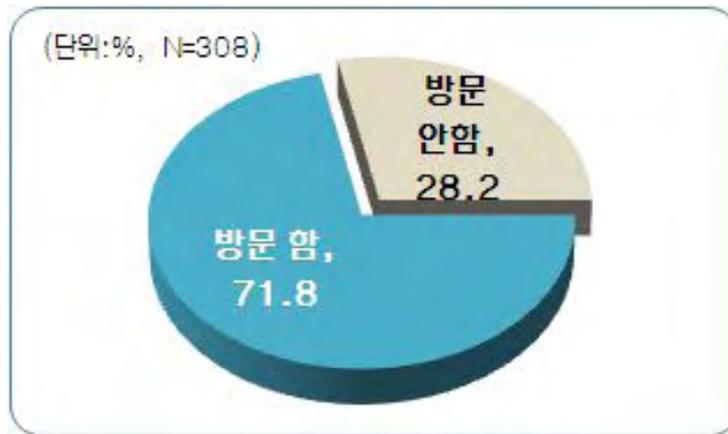
단위 : 100점	사례	인구변화	어업 소득 변화	관광 소득 변화	관광객 수 변화	생활시설 변화
전체	(392)	58.0	44.8	59.0	62.0	64.2
어유정항	(23)	56.3	47.7	35.5	37.5	55.4
흥원항	(30)	60.4	53.1	72.5	71.9	73.1
격포항	(34)	61.6	53.6	68.8	70.0	67.5
마량항	(31)	53.4	47.2	64.8	70.0	66.7
국동항	(33)	42.0	36.3	53.6	51.0	59.2
지세포항	(34)	71.2	38.0	61.1	64.1	66.4
맥전포항	(18)	45.0	36.4	47.7	64.6	67.2
대변항	(31)	68.5	41.7	61.5	62.0	71.3
정자항	(28)	73.9	58.3	67.4	68.2	68.8
양포항	(33)	49.2	42.4	54.3	60.6	60.9
안목항	(35)	62.5	43.8	69.2	73.4	75.8
대포항	(34)	49.1	37.9	39.2	35.8	49.2
모슬포항	(28)	54.2	46.1	61.5	72.0	54.5

- 다기능어항 개발 사업 환경에 대해 살펴본 결과,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절반 이상인 가운데,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음. 반면, 공무원의 행정력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음. 한편, 소득증대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긍·부정 평가가 엇갈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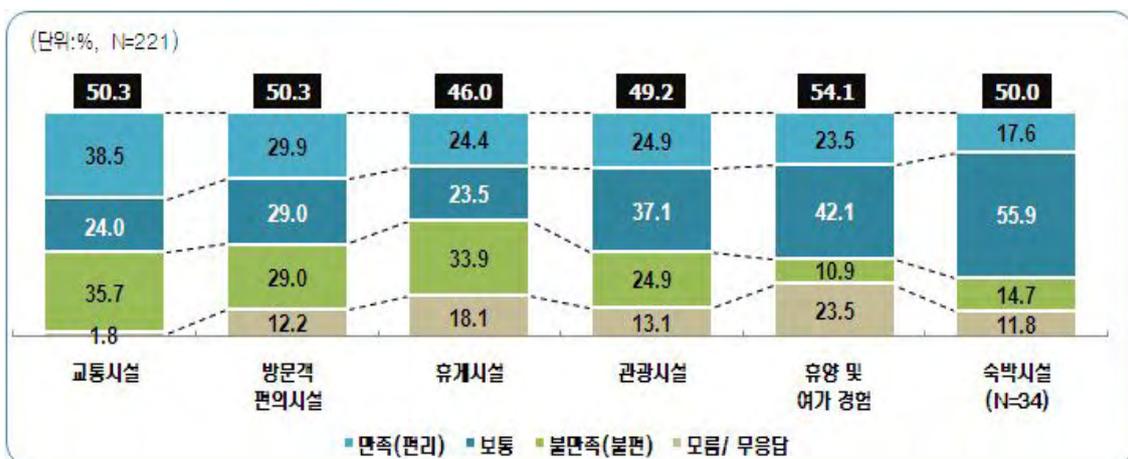


나. 원거리 이용자(인근지역)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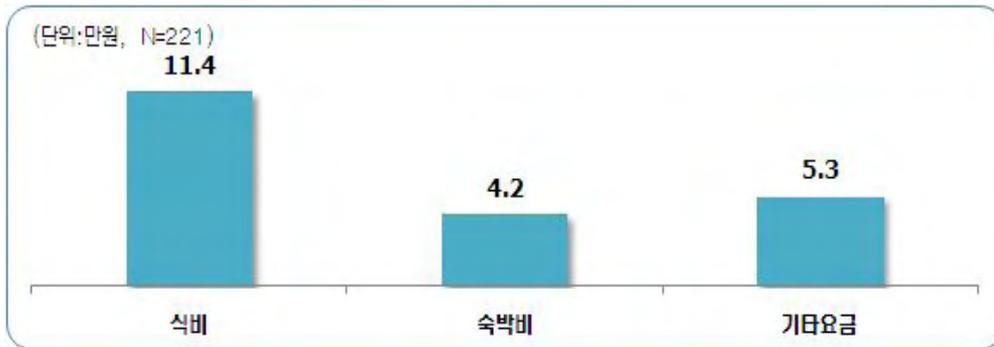
- 다기능 어항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관광객의 입장에서 다기능어항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봄. 우선 인근 지역 주민의 71.8%가 다기능어항이 완공된 2004년 이후에 어항 방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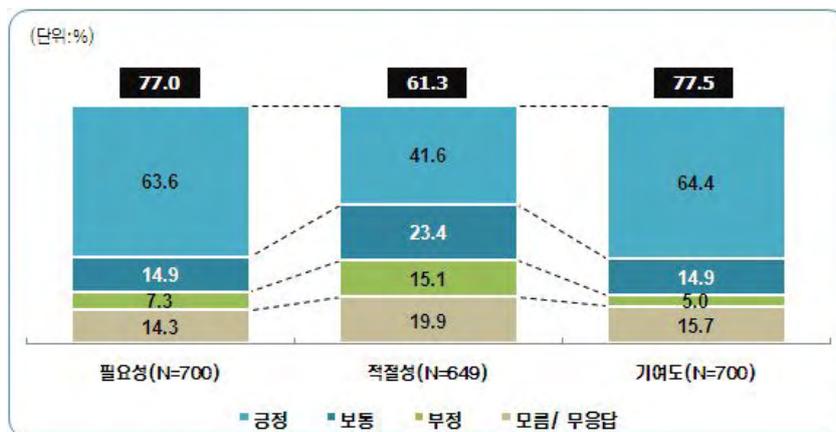
- 관광 후의 여러 사항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만족도 불만족도 아닌 보통 정도인 경우가 많음. 한편, 휴게시설의 경우 다소 불만족인 사람이 많았고, 휴양 및 여가를 즐긴 경험에 대해서는 만족인 사람이 많은 편임.



- 다기능어항에서 지출한 금액의 경우 식비는 평균 11.4만원, 숙박비는 4.2만원, 주차요금, 관람요금 등의 기타 요금은 5.3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54.3%의 사람은 향후에도 다기능어항에 다시 방문할 의향이 있고, 11.3%는 방문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보통: 30.3%, 모름: 4.1%).
-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이 어촌지역의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들을 살펴봄. 결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77.0점, 기여도에 있어서는 77.5점으로 대체로 사업 취지와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임. 하지만 적절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일부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함



다. 개선 의견

- 다기능어항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도로망 확충 및 교통편의 개선 필요 의견, 화장실,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의 개선, 어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 등의 의견이 있음.

<표 VI-77> 주요 개선 사항 의견

주요 개선 사항 의견	주요 개선 사항 의견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활성화될 수 있게 지원	어민의 소득이 증대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교통편개선이 필요하다	어항에 대한 홍보 필요함
교통편이 많이 불편하므로 버스 편이 생기면 좋겠다.	활어직판장 같은 오래된 시설을 다시 지었으면
다기능개발목적을 했으면 많은 지원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게 해달라	탁상공론이 아닌 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발이 되길 바란다.
예산 많이 와야 한다.	자연훼손을 안하는 한도에서 개발을 해주세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은 화장실 등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배가 잘 드나들 수 있도록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한다
말뿐인행정이아닌실질적정책추진이필요하다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균형되게 골고루 하라.
물고기나산호초가피해가안가도노력하면좋겠다	주차시설과 음료판매시설도 있었으면
부대시설도해주길 어항만 해놓지 말고	실제 거주민에게는 혜택이 없다.
승강장 도로 등 편의시설	홍보를 많이 해서 보다 나은 개발이 되길 바란다.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실행해주길 바란다.	여행객에게 필요한 위락시설 편의시설이 더 많이 필요하다.
식당에서 무리한 가격은 없었으면 좋겠다-관광객 유치를 위해 바가지요금이 없으면 좋겠다.	휴식공간이 부족했다. 음식점이 횡집 중심으로 됨. 다양했으면. 식사비가 너무 비싸다.

제4장 모니터링 조사 결과

4.1 성과 모니터링에 의한 효과분석 결과

가. 다기능어항 성과 모니터링

- 다기능어항의 성과 모니터링에서는 이용객과 주민에 대한 제도적 만족도와 이용 편의적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 다기능어항이 개발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주민의 48.2%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어업인 외에도 관광 및 친수공간 제공 측면에서 일반인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기능어항의 개발 후 변화로 생활시설과 관광객은 증가하였으나 어업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다기능어항이 관광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어업 활성화에는 아직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 다기능어항 인근 주민들은 71.8%가 다기능어항을 방문하였으며, 이들 중 휴게시설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휴양 및 여가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결론적으로 다기능어항의 개발이 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은 77.5점으로 대체적으로 사업 취지와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규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일부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 개선사항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항 개발 뿐 아니라 활성화 대책도 수립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다기능어항 지역과 도심지역의 교통편이 매우 불편하여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가능토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다기능어항에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함께 음식점이 천편일률적으로 횡집이며, 바가지 요금 등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었다.

나. 다기능어항별 개발전후 경제적 지표 분석

- 다기능어항의 개발 전후 경제적 성과 지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성과 모니터링 방법론에 입각하여 도입단계, 실행단계, 사후단계의 3단계 성과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 1단계는 사전 모니터링 단계로 다기능어항의 개발 시점 이전에 대상 어항의 수산업 생산량, 어업 및 어업외 소득 현황, 어촌어항의 제반 경제적 지표를 조사하고, 어항 개발을 통한 예상 기대효과 제출하는 것이다. 2단계는 어항 건설 과정에 수산업 및 어촌·어항의 제반 경제 지표를 조사하고, 당초 기대효과를 충족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3단계는 어항 건설 이후 당초 예상했던 수산업 생산량 및 제반 경제지표에 도달했는가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 다기능어항의 경우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착공하여 도입단계의 모니터링이 수행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2단계 및 3단계 성과 모니터링의 연계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 이에 따라 본 조사에서는 13개 시범 다기능어항에 대한 공사 전후의 경제적 지표 조사를 통해 도입단계의 수산업 생산 및 경제지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조사에서는 13개 다기능어항의 대상지역을 리·동 단위로 구분하고 해당어촌계를 대상으로 성과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 13개 시범 다기능어항 중 9개 어항은 투자가 완료되었고, 3개 어항(대변항, 국동항, 지세포항)은 아직 공사 중에 있으며, 1개 어항(어유정항)은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투자가 완료된 9개 어항 중에서도 4개 어항(대포항, 흥원항, 격포항, 맥전포항)은 2010년말 기준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가 완공된 어항은 5개 어항(정자항, 강릉항, 마량항, 양포항, 모슬포항)에 불과하다. 완공된 5개 어항 중에서도 최근의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2009년말까지 공사가 완공된 어항은 3개 어항(정자항, 마량항, 양포항)이다.

- 따라서 현 시점에서 13개 어항 중 사후단계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어항은 3개 어항에 불과하며, 9개 어항은 실행단계의 성과를 파악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1개 어항은 도입단계의 성과 모니터링에 해당한다.

조사내용은 어항의 기능성 측면으로 「수산업 지원 기능」, 수산업 이외 기능으로 「관광·유통·문화·복지 등 복합기능」 측면, 그리고 「어업인 소득창출 기능」 측면에 대한 것이었다. 조사 시점은 다기능어항의 실시단계 이전인 2004년으로 하였으며, 사업 시행 후는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2009년 통계를 기준으로 하였다.

1) 대변향

- 수산업 지원 기능 가운데 어촌 발전 잠재력은 8개 지표 가운데 5개 지표에서 개선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총세대(가구)가 13.1%, 총 인구가 3.6% 증가하였으며 어가는 22.3%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청장년 인구(-4.1%)와 어가 인구비율(-0.1%)은 낮은 수준이지만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 수산업 지원 기능 가운데 수산업 잠재력은 7개 지표 가운데 3개 지표가 개선되었으며, 나머지 4개 지표는 전과 동일하였다. 특히 어획량이 4.5% 증가하였고 어획금액이 147.6% 증가하였다.
- 한편 숙박 및 음식점과 유흥 오락시설의 개소와 종사자수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관광·교통·복지 등 복합기능 지표의 경우 6개 지표 가운데 4개 지표가 증가하였으며 1개 지표가 감소하고 1개 지표는 전과 동일하였다.
- 어업인 소득창출 기능의 경우 사업 시행 전 후로 약 2.0%의 소득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어유정향

- 수산업 지원 기능 가운데 어촌 발전 잠재력은 8개 지표 가운데 2개 지표에서 개선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나머지 6개 지표는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특히 총세대(가구)가 16.4%, 어가인구가 40.2% 감소하였다. 반면, 총 인구는 2.6% 증가하였다.
- 그러나 수산업 잠재력의 경우 5개 지표 가운데 3개 지표가 개선되었으며, 1개 지표가 감소하였다. 증가된 지표 가운데 어업권수는 133.3%, 어업권 면적은 125.7%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 한편 숙박 및 음식점과 유흥 오락시설의 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내었다. 음식점 종사자수 만 5.8% 감소하였을 뿐, 음식점 업체수와 유흥 오락시설 업체수(40.0%)와 종사자수(11.1%) 모두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또한 관광·교통·복지 등 복합기능 지표의 경우 7개 지표 가운데 5개 지표가 증가하였다. 특히 관광자원이 100%, 주차장 용지가 226.3%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 어업인 소득창출 기능의 경우 사업 시행 전 후로 약 15.4%의 소득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정자향

- 정자향은 다기능어항 전후로 어촌체험 기반시설과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수산업 지원기능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수산업지원 기능의 경우 어항 영향지역 총 세대(가구)만이 4.9% 증가하였을 뿐, 총인구와 어가인구 등 모든 지표에서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수산업 잠재력의 경우 어업권수(33.3%)와 어업권면적(70.5%)을 제외하고 자원잠재력과 유통가공시설 모두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 반면, 어촌체험 기반시설의 경우 관광 사업체수, 관광객 수, 관광자원 수, 주차장용지, 복지시설 문화공간 등 모든 부문에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내었으며, 이에 따라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도 사업 전후로 2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대포항

- 대포항의 경우 다기능어항 건설 전·후로 수산업의 잠재력과 관광·교통·복지 등 복합기능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어촌발전의 잠재력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어획금액이 사업 전후로 1,749.5%라는 큰 폭의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어가인구도 63.5% 증가하였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의 감소로 어촌체험의 잠재력은 다소 감소하였으며, 어업인 소득도 건설 전에 비해 4.9% 감소하였다.
- 어촌계의 호당 어가소득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어촌계의 유형 및 발전 수준으로 보아 대포항은 어업인 소득 창출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강릉항

- 다기능어항 건설 전후의 수산업 및 어촌 잠재력의 경우 인구는 감소하고 시설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시행 전후의 어가인구는 6.3% 감소하였으나, 어업권 면적(46.2%)과 수산물 유통시설(62.0%), 공동시설(133.3%) 증가하였다.
- 관광·유통·문화·복지 등 복합기능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 업체 수와 공원 수는 증가하였으나 유흥 오락시설의 업체수와 종사자 수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어업인의 호당 어가소득도 16.7% 감소하였으나, 어촌계원의 대다수 또는 절대적인 생산기반이 어선어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어선어업형 어촌계로 향후 소득 창출 기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6) 흥원항

- 흥원항의 경우 다기능어항의 건설로 총 세대와 어가(호)(19.8%)의 수가 증가되고 어획량(103.2%)과 유통가공시설(50.0%) 등 수산업 지원 기능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산업 잠재력 가운데 어업 권수(-37.9%)와 어선척수(-24.0%) 등 시설소요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증가하였으나, 유흥 오락시설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주차장 용지(1,855.3%)와 문화공간(21.1%) 등의 개선으로 관광객 수도 12.0% 증가하였다.
- 어획량과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흥원항의 호당 어가소득도 사업 시행 후에 30.6% 증가하였다.

7) 격포항

- 격포항은 다기능어항 사업 전후로 어촌발전 잠재력과 수산업 잠재력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발전 잠재력의 경우 총 세대수(1.2%)와 어가(호)(21.6%) 등이 증가하였으며, 수산업 잠재력의 경우 어획량(254.3%), 어업권수(6.7%), 유통가공시설(266.7%) 등이 크게 개선되었다.
- 관광·유통·문화·복지 등 복합시설의 경우 음식점 및 숙박업소의 수와 종사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유흥 오락시설의 수와 종사자 수는 감소하였다. 특히, 사업 전후로 관광사업체수가 100.0% 증가하였으며, 문화·복지 공간도 26.1% 증가하였다.
- 이에 따라 격포항 인근 어촌계의 호당 평균 어가소득도 다기능어항 사업 전후로 118.2%라는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8) 마량항

- 마량항은 다기능어항 사업 전후로 수산업 지원기능은 크게 개선된 반면, 관광·유통·문화 지원 부분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어촌발전 잠재력의 경우 총세대(2.0%), 어가(호)(2.9%), 어가인구(9.2%)등 어가인구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며, 수산업 잠재력의 경우 어획금액(12.7%), 어업권면적(850.0%), 유통가공시설(47.4%) 등이 크게 개선되었다.
- 수산업 지원시설의 개선에 힘입어 호당 어가소득은 사업 전후로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 국동항

- 국동항은 다기능어항의 건설로 어촌관광 지원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산업 지원기능의 경우 총세대(1.1%)와 어가(호)(26.5%), 어가 인구(5.1%) 등 어촌 발전의 잠재력이 개선되었으며, 어업종사자(권역 39.1%), 어획금액(권역 7.9%), 어업권 면적(51.6%), 수산물 유통시설(1,368.6%) 등의 지표에서 큰 폭의 개선을 나타내었다.
- 또한 관광·유통·문화 지표에서 관광객의 수 41.5%, 주차장 개소수 53.3%, 문화복지시설 19.2%의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며, 이에 따라 어업인 소득도 다기능어항 사업 전후로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양포항

- 양포항은 다기능어항 건설 전후로 어업인의 소득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그리 큰 개선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산업 지원 부문의 경우 총세대 -0.4%, 어가수 -14.0%, 어가인구 -31.4% 등 어촌발전 잠재력의 모든 분야에서 감소세를 나타내었으며, 어획량 -75.0%, 어획금액 -14.2%, 어업권 면적 -20.0% 등 수산업 잠재력 분야에서도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 관광·유통·문화 지원 부문에서도 공원의 수를 제외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 유흥 오락시설의 수와 종사자수에서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 다만 관광객의 수가 건설 전후로 166.1%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어업인 소득도 건설 전후로 약 68.0% 증가하였다.

11) 지세포항

- 지세포항의 경우 다기능어항 건설 전후로 수산업 지원기능의 개선은 미미한 가운데 관광·유통·문화 부문에서 큰 폭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수산업 지원부문 가운데 어촌 발전 잠재력의 경우 어가 인구가 -33.0%, 수산업 잠재력의 경우 어획량 -41.5%, 어획금액 -25.4%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감소세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러나 관광·유통·문화·복지 등 복합기능의 경우 음식점 및 숙박업소 수 85.8%, 유흥오락시설 종사자수 10.9% 등 어촌관광 지원시설의 대부분의 지표에서 개선된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교통 사업체수(128.6%), 관광객수(55.4%), 주차장 용지, 복지시설(100.0%), 문화공간(50.0%) 등 모든 부문에서 큰 폭의 개선을 나타내었다.
- 이에 따라 어업인의 호당 어가소득도 사업 시행 전후로 63.0%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2) 맥전포항

- 맥전포항의 경우 다기능어항 건설 전후로 수산업 지원기능 보다는 관광·물류·문화 기능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 수산업 지원기능의 경우 어가 인구는 다소 증가했으나 어가 수와 총 세대수 등이 감소하였으며, 어획량의 증가(15.4%)에도 불구하고 어획 금액이 7.6% 감소하였다.
- 반면에 관광·유통·문화·복지 등 복합기능의 경우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약 20% 이상의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다기능어항 사업 전후로 관광객수 497.2%, 주차장용지 199.8%, 문화공간 15.0%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 이러한 관광기능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의 감소 등으로 어업인의 호당 어업소득은 사업 전후로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 모슬포항

- 모슬포항의 경우 어가인구가 23.5% 증가하고 어획량(80.0%)과 어획 금액(68.3%) 등의 개선에 따라 수산지원기능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문화·유통·문화·복지 등 복합기능의 경우 어촌체험잠재력은 하락하였으나, 관광객의 수(223.6%), 주차장 개소(7.7%), 복지시설(15.4%) 등에서 큰 폭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러나 어업인의 호당 어가소득은 사업 전후로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감소는 어획금액과 관광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소득의 증가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 다기능어항 전체의 개발 전후 경제지표 종합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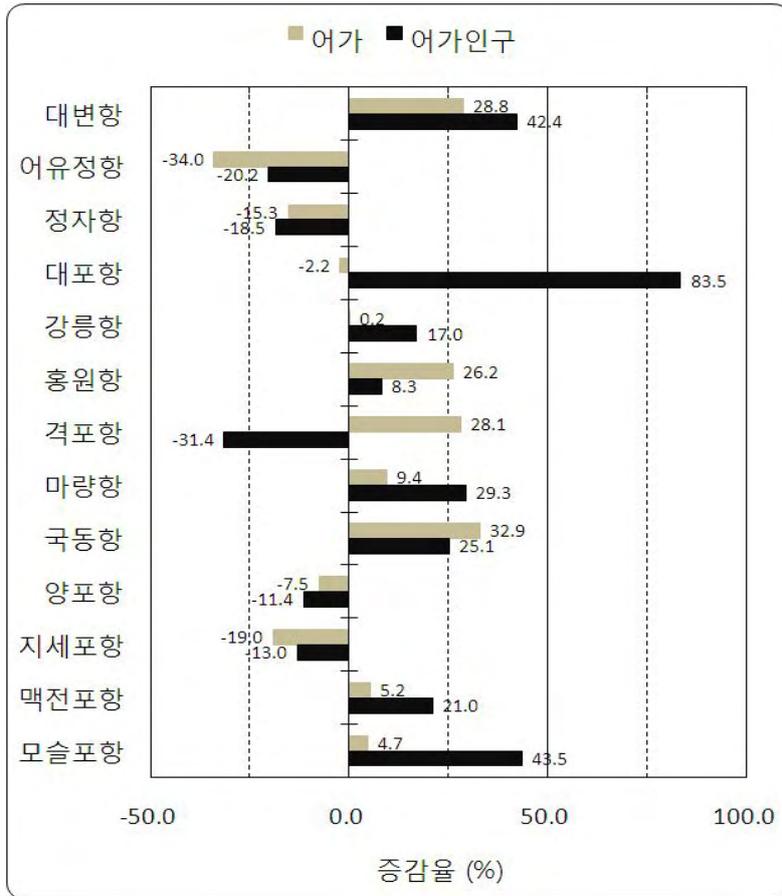
- 앞에서 언급한 다기능어항별 건설 전후의 경제지표 변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산업 지원 기능

- 권역별 어촌의 발전 잠재력, 수산업 잠재력을 조사하여 다기능어항의 수산업 지원 기능을 파악하였다.
- 전체 어촌에서 어가가 6.5%감소하고 어가인구가 20.0%감소한 반면 다기능어항 권역의 어촌에서는 전체 어촌보다 감소율이 적어 어촌 발전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 사업 후 다기능어항 권역 어촌의 총 세대와 총 인구는 증가한 반면, 어가는 사업 시행 전·후에 4,564호로 동일하였고, 어가인구는 사업 시행 전 9,551명에서 사업 시행 후 8,509명으로 10.9%감소
 - 전체 어촌의 어가는 사업 시행 전 163,127호에서 사업 시행 후 152,559호로 6.5%감소하였고, 어가인구는 사업 시행 전 314,582명에서 사업 시행 후 251,519명으로 20.0%감소
- 어가 및 어가인구가 감소하는 어항은 주변의 관광상품 개발에 따라 어촌발전 잠재력이 수산업에서 관광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다수의 주민이 관광관련 산업으로 유입되면서 어가 및 어가인구가 감소하게 되었고, 이러한 어항에서는 어획량 및 어획금액도 감소하였다.
 - 전체 어촌의 어가 및 어가인구의 증감율을 기준으로 다기능어항 권역의 어가 및 어가인구의 증감율을 살펴본 결과 어유정항, 정자항, 격포항, 양포항, 지세포항의 어가 및 어가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총 세대 및 총 인구는 증가한 반면 어가 및 어가인구가 감소한 다기능어항으로는 어유정항, 정자항, 강릉항, 격포항, 양포항 등이 있음

<표 VI-78> 수산업 지원 기능

과제	조사지표		사업시행전	사업시행후	증감 (%)
어촌발전 잠재력	총 세대 (가구)		38,575	42,457	10.1
	총 인구 (명)		108,823	108,918	0.1
	어가 (호)		4,564	4,564	0.0
	어가인구 (명)		9,551	8,509	-10.9
	어가 비율 (%)		11.8	10.7	-1.1
	어가인구 비율 (%)		8.8	7.8	-1.0
수산업 잠재력	자원 잠재력	어획량 (M/T)	30,060	28,673	-4.6
		어획금액 (백만원)	72,365	61,032	-15.7
	시설 소요	어업권수 (건)	133	141	6.0
		어업권면적 (ha)	1,829	2,214	21.0
		어선척수 (척)	2,181	1,954	-10.4
	유통 가공시설	수산물 유통시설 (m ²)	17,462	65,905	277.4
		공동시설 보유수 (개)	125	148	18.4



- 어획량과 어획금액은 사업 후 각각 4.6%, 15.7% 감소하였다.
 - 어획량 및 어획금액의 감소원인은 어항 주변의 관광상품 개발에 따른 다수 주민의 관광관련 산업으로 유입과 비계통판매에 의한 누락이 주요원인으로 판단됨
- 어선은 사업 후 10.4% 감소하였다.
 - 격포항, 지세포항, 모슬포항 등 대부분 관광기능이 발달하였거나 발달이 기대되는 어항에서 어선이 감소
- 어업권수와 어업권 면적이 각각 사업 시행 후 6.0%, 21.0% 증가하였다.
- 수산물 유통 시설 및 공동시설도 각각 277.4%, 18.4% 증가하였다.
- 어업권, 공동시설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수산업 지원으로 다기능어항의 수산업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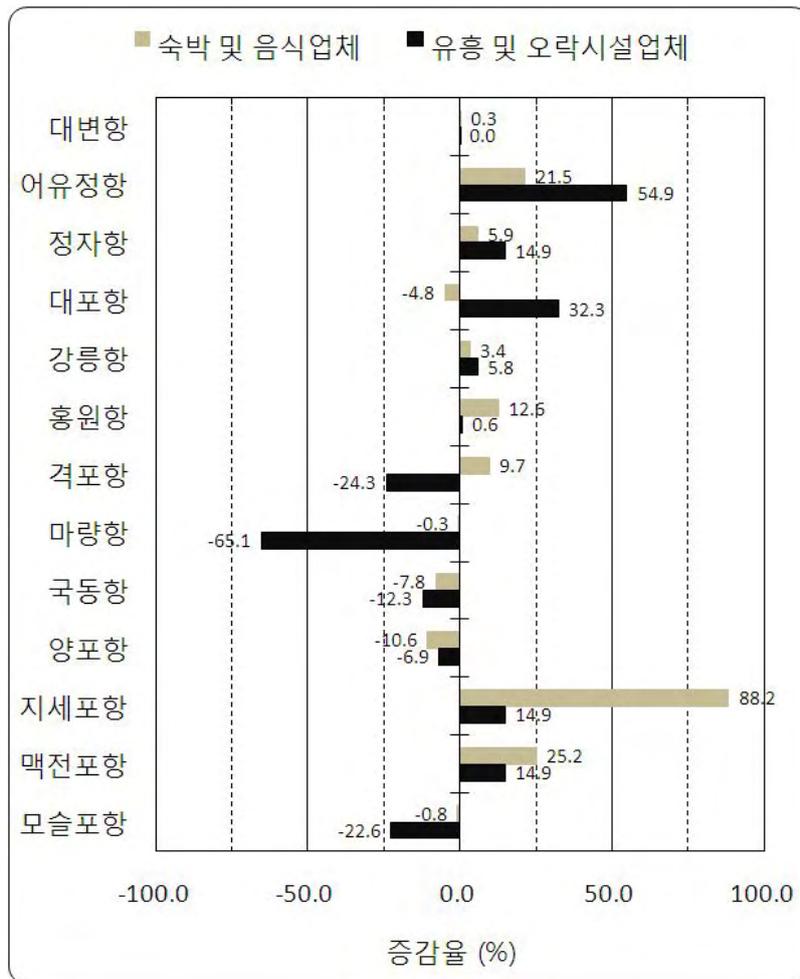
2) 관광·교통·문화·복지 등 복합 기능

- 권역별 어촌관광 지원시설, 복합시설 등을 조사하여 다기능어항의 관광·교통·문화·복지 등 복합기능을 파악하였다.
- 다기능어항 권역 어촌은 전 사업체에서 숙박 및 음식점, 유흥·오락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와 종사자 수가 다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 후 어촌관광 지원시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시행 후 숙박 및 음식점의 업체수는 2.6% 증가, 종사자 수는 2.3% 증가
 - 사업시행 후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는 17.7% 감소, 종사자는 29.9% 감소
 - 2009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사업체 중 숙박 및 음식점의 업체수와 종사자 수의 비율은 각각 19.1%, 10.4%이었으며,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와 종사자 수의 비율은 각각 3.1%, 1.9%이었으나, 다기능어항 권역

- 어촌의 숙박 및 음식점의 업체수와 종사자의 비율은 각각 29.6%, 20.1%이었으며 와 종사자 수의 비율은 각각 9.8%, 8.4%임
- 어촌관광 지원시설의 지표로 사용된 공원 역시 사업 시행 후 16.6% 증가
 - 숙박 및 음식점, 유흥·오락시설 중 숙박 및 음식점이 어촌관광 지원 시설의 지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전국 숙박 및 음식점의 업체수,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의 증감율 -2.4%, -14.9%를 기준으로 다기능어항 권역의 숙박 및 음식점의 업체수, 유흥·오락시설의 업체수의 증감율을 살펴본 결과 어유정항, 정자항, 강릉항, 흥원항, 격포항, 지세포항, 맥전포항에서 증감율이 커 어촌관광 잠재력이 큰 어항으로 판단 됨
 - 사업 시행 후 관광업체 수, 관광객 수, 문화재 자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다기능어항 권역 어촌이 관광 복합어항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주차장 용지는 사업 시행 후 133.5%로 급증하여 교통편의가 사업 시행 전보다 좋아졌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었
 - 복지시설과 노인여가 복지시설, 문화공간이 사업 시행 후 큰 폭으로 증가
 - 성과조사를 수행한 2009년에는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시작단계에 있던 어항이 대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항목이 증가하여 관광·교통·문화·복지 등 복합 기능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음

<표 VI-79> 관광·교통·복지·문화 등 복합 기능

과제	조사지표		사업시행전	사업시행후	증감 (%)
어촌체험 잠재력	숙박 및 음식점	업체수 (개소)	3,109	3,188	2.6
		종사자 수 (명)	7,225	7,393	2.3
	유희· 오락시설	업체수 (개소)	379	312	-17.7
		종사자 수 (명)	888	623	-29.9
	공원 (개소)		607	708	16.6
복합시설	관광	사업체 수 (개소)	169	236	39.6
		관광객 수 (명)	67,869,731	89,098,290	31.3
		자원수 (개)	197	212	7.6
	주차용지 (m ²)		47,622	111,192	133.5
	복지시설 (개소)		47	62	31.9
	문화	노인여가복지시설 (개소)	453	527	16.3
		문화공간 (개소)	62	75	21.0



3)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 권역별 어업소득을 조사하여 다기능어항의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을 파악하였다.
- 어업소득의 조사를 위해서는 호당 어가소득, 어촌계 유형 등의 지표가 이용되었다.
- 사업 시행 전 다기능어항 권역 어촌계는 33개소이었으나 사업 후 흥원항 권역의 공암어촌계와 맥전포항 권역의 춘암리어촌계가 새롭게 분리되어 만들어져 35개소가 되었다.
- 사업 시행 후 다기능어항 권역 어촌계의 호당 평균 어가소득은 21,410천원에서 27,790천원으로 5,380천원(24.0%) 증가하여 어업인의 소득 창출 기능이 향상되었다.
 - 다기능어항 권역의 호당 평균 어가소득 증감율을 살펴본 결과 대포항, 강릉항, 맥전포항, 모슬포항을 제외한 전 어항에서 어가소득이 증가
 - 어촌계의 경영기반이 향상되거나 어촌계의 입지유형이 도시형으로 변화되면서 어업인의 소득 창출기능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냄
- 어촌계의 종사유형은 사업 시행 후 어선어업이 증가하였고, 이는 어항의 순수기능이 확대됨으로서 어선어업이 발달한 것으로 판단됨
- 입지유형은 사업 시행 전·후 비슷하여 대부분 도시근교와 연안촌락에 입지하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취약지구로 분류되어 있던 인천광역시 강화군 어유정항 권역의 매음어촌계가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연안촌락으로 분류되어 다기능어항 사업 이후 크게 발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새롭게 만들어진 흥원항 권역의 공암어촌계와 맥전포항 권역의 춘암리어촌계의 입지유형이 연안촌락인 것을 감안하면 2개의 어촌계가 연안촌락에서 도시근교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발전수준별 어촌계의 유형에서는 경영기반이 취약한 성장어촌계가 26.3% 감소한 반면, 경영기반이 취약단계를 벗어난 자립어촌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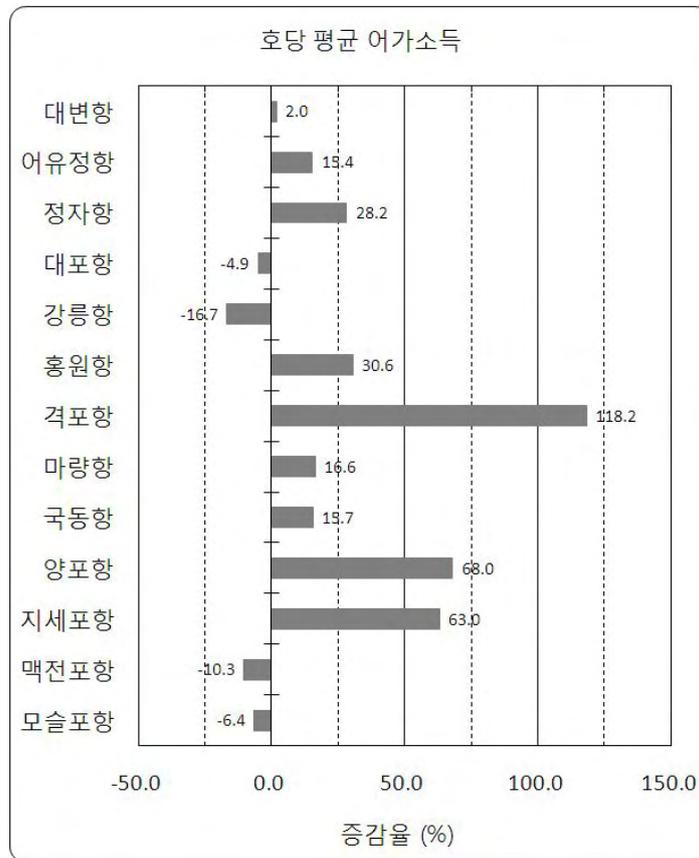
어촌·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용역

33.3%, 경영기반이 우수한 복지어촌계가 80.0% 증가하여 다가능어항 권역의 어촌계가 크게 발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어촌계의 호당 어가소득의 증가, 어촌계 유형의 변화로부터 다가능어항은 어업인 소득 창출기능이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VI-80> 어업인 소득창출 기능 조사 지표

조사지표			사업시행전	사업시행후	증감 (%)
호당 평균 어가소득 (천원)			22,410	27,790	24.0
어촌계유형	종사유형	어선어업	13	16	23.1
		양식어업	3	3	0.0
		복합어업	17	16	-5.9
	입지유형	취약지구	1	1	0.0
		연안촌락	18	18	0.0
		도시근교	14	16	14.3
	발전수준	성장	19	14	-26.3
		자립	9	12	33.3
		복지	5	9	80.0



4.2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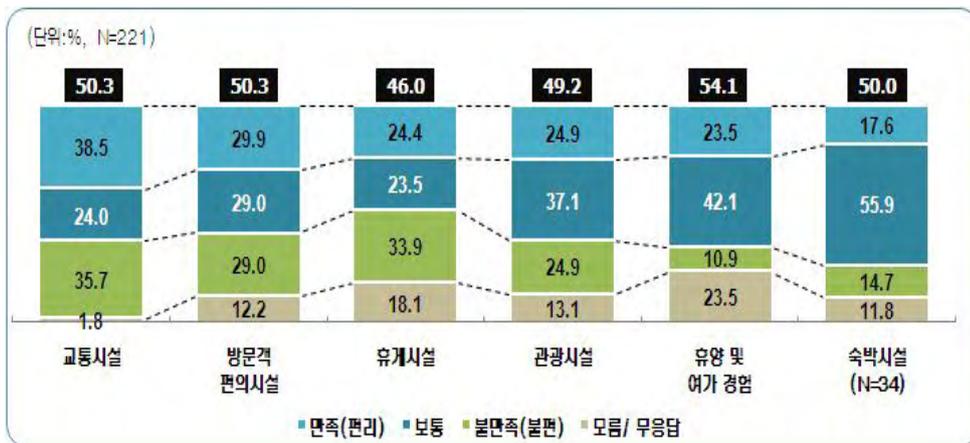
-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의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사업의 인식도를 살펴보면 사업의 이해도 면에서 다기능 어항개발로 인하여 어촌의 소득증대 및 관광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사업의 목적성은 관광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어업소득증대 등의 어업활성화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의 유효도를 살펴보면, 예산 규모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사업추진의 효율성은 모든 단계에 있어서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I-81>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구 분	항 목	2010년	비 고
사업의 인식도	사업의 인지도	100.0	
	사업의 이해도	77.0	
	소계	88.5	
사업의 적합도	사업의 목적성	46.7	
	사업의 연계성	77.5	
	소계	62.1	
사업의 유효도	예산의 가용성	35.6	
	집행의 효율성	61.3	
	사업추진 효율성	57.0	
	소계	51.3	
평균		67.3	

제5장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에 대한 이용자만족도 조사·분석

-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근거리 및 원거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 관광 후의 여러 사항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만족도 불만족도 아닌 보통 정도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휴게시설의 경우 다소 불만족인 사람이 많았고, 휴양 및 여가를 즐긴 경험에 대해서는 만족인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50.0점으로 본 사업에 대한 보통정도의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연도별 이용자 만족도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0년도 만족도 결과가 50.0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6.8점 낮게 나타났다.
 - 2009년도에는 이용자 만족도조사 대상을 인근 지역주민으로 한정하였고, 2010년에는 도시지역 및 인근 시·군에서 다기능어항을 실제 이용하는 원거리이용자를 조사대상에 추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 즉, 2009년도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만족도 결과는 실제 다기능어항을 이용하는 이용대상자가 아닌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만족도 결과의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 2010년에는 좀 더 객관적인 자료획득을 위해 대상표본을 전년도와 상이하게 실제 이용하는 원거리 이용자를 조사대상에 추가하였고, 향후

다기능어항개발사업의 이용자만족도는 금년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VI-82>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만족도 결과

만족도 항목	2009년	2010년	비고
편의시설	52.6	50.3	
휴게시설	48.1	46.0	
관광시설	49.5	49.2	
여가행위	53.4	54.1	
숙박시설	53.7	50.0	
교통시설	-	50.3	
전체 만족도	56.8	50.0	



제Ⅶ편 결론 및 향후 추진방향

제1장 결론

제2장 어촌어항개발사업의 향후 사업개선방안 및
추진방향

제3장 다기능어항개발사업의 앞으로 사업추진방향
및 발전방안

제4장 어항개발사업의 성과지표 제시

제Ⅶ편 결론 및 향후 추진방향

제1장 결 론

1.1 어촌개발사업

가. 어촌종합개발사업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모니터링 조사는 사업 성과와 연관을 갖는 성과 모니터링과 사업추진에 대한 프로그램 모니터링으로 나누어서 실시하였는데, 성과 모니터링은 어촌계 단위로 각종 통계자료가 수록된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한 연도별 「어촌계분류평정 및 현황」의 계량적 수치와 공무원 및 지역주민 대상의 전화설문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며 프로그램 모니터링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어가구의 변화, 어업인구의 변화, 어가 소득의 변화, 어업 생산성 영향에 대한 계량적 지표가 조사되었으며, 방문객 변화에 대한 영향, 자연재해 방지에 대한 기여, 사회·문화·환경에 대한 영향 등의 비계량적 지표가 조사되었다.
- 또한,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사업의 인지도, 적합도, 유효도 등이 각각 조사되었다.
- 어촌종합개발사업 성과 모니터링과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는 전년보다 3.9점 상향된 69.7점으로 나타나 본 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67.6점, 공무원의 만족도는 71.7점으로 조사되어 전체적인 만족도는 69.7점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만족도는 성과 모니터링의 계량적 지표를 산출함에 있어 앞서 과거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1단계 권역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지역주민들과 담당 공무원의 만족도가 조금 낮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 앞으로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대상권역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포함되어 사업이 실행되므로 이용자의 만족도는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프로그램모니터링은 본 사업에 대한 인지도, 적합도, 사업의 유효도를 지역주민과 공무원으로 분리하여 조사한 결과, 모두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 따라서,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연차적인 지표산출 및 분석을 통해 본 사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한편 앞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투자된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중심어촌계의 적극적 활용, 연도별/지역별 분산투자를 지양한 완공 위주의 사업추진,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어업 외 소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정책적 접근 변화 그리고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우수한 권역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도시인에게 여가 휴양 공간을 제공, 어업인의 소득 외 소득증대, 도시와의 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12개 마을을 조성하게 된다.
- 본 사업은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관광지원 사업이나 외부자본의 유치를 통한 대규모 상업시설의 유치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이 어촌관광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 한편,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사업의 성과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발전방안에 대한 모색을 위하여 이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며, 모니터링 작업은 본 사업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성과 및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결과 방문객 증가와 더불어 어가소득 증가에 긍정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본 사업에 대한 기대 성과를 측정
- 어촌종합개발사업 성과 모니터링과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는 전년보다 2.0점 상향된 67.7점으로 나타나 본 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삶의 질 향상, 지역 이미지 향상, 지역 주민 자긍심 향상, 전통문화 발굴·보존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66.8점, 관광기반시설 확충효과, 정주환경 개선효과 등에 대한 공무원의 만족도는 68.6점으로 조사되어 전체적인 만족도는 67.7점으로 나타남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대한 프로그램모니터링은 본 사업에 대한

인지도, 적합도, 사업의 유효도를 지역주민과 공무원으로 분리하여 조사한 결과,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다. 어촌관광개발사업

- 어촌관광개발사업의 주된 목적은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촌을 중심으로 하여 관광모델로 개발하여 지역소득증대 방안 창출과 함께 도시와 어촌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어가소득 수준 향상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다.
- 어촌관광개발사업의 대상지는 2004년에 사업대상지 18개소를 선정하여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개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며, 본 과업에서는 어촌관광개발사업의 대상지 선정이후의 제반과정(계획~시공 단계)이 본 사업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였다.
-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과 담당 공무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본 사업의 성과와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분석하였다.
-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소득, 방문객, 수산물 판매액 증가율에 대한 기대치 등의 계량적 지표가 조사되었으며, 사회문화적 효과인 삶의 질 개선, 이미지 개선, 주민 자긍심, 전통문화 발굴·보전, 생활환경 개선 등의 비계량적 지표가 조사되었다.
- 또한,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사업의 인지도, 적합도, 유효도 등이 각각 조사되었다.
-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관련하여 계획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도입시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계획수립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계획수립이 완료된 지역은 도입시설에 대한 주민 홍보와 사업 운영시 구체적인 주민참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어촌관광개발사업 성과 모니터링과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는 69.8점으로 나타나 본 사업에 대한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68.1점, 공무원의 만족도는 71.6점으로 조사되어 전체적인 만족도는 69.8점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2.4점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공무원 대상 조사결과 관광기반시설 확충효과나 정주환경 개선효과가 전년도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어촌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모니터링의 계량적 지표를 산출함에 있어 각종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는 대신 설문조사를 통해 예상 기대치를 물어 볼 수밖에 없었던 점이 본 과업의 한계점이었으나, 이러한 기대치는 향후 본 사업의 완료 후 실적치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할 때 비교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어촌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연차적인 지표산출 및 분석을 통해 본 사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2 어항개발사업

가. 국가어항 개발사업

- 본 과업에서는 국가어항을 대상으로 성과 모니터링에 의한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해 공간적 성과모니터링과 과거 추세에 의한 성과모니터링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 공간적 성과모니터링 : 어항이 개발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성과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평가를 실시
 - 과거추세에 의한 성과모니터링 : 어항개발 전·후의 목적 달성도 및 효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평가
- 공간적 성과모니터링은 110개 국가어항 대상지역으로 모니터링 분석을 하였으며, 과거 추세에 의한 모니터링은 어항개발 전·후 효과 분석상의 제한을 고려할 때 샘플로 분석할 수 있는 국가어항은 상당히 제한적이므로 착공연도가 2000년 이후의 어항으로 완공된 어항과 어촌계분류평정표상의 통계가 비교적 정확한 어촌계가 있는 어항을 대상으로 10개항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 국가어항 개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첫째, 국가어항 개발사업은 투자예산에 비해 어항개발의 진척도가 매우 높아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가어항개발사업의 공간적 성과모니터링 결과, 2010년말 기준으로 투자예산 집행율은 약 77.6%를 집행하였고, 외곽시설 완공률은 91.2%, 계류시설 완공률은 87.0%로 투자예산에 비해 어항개발의 진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국가어항 배후지 어촌계의 경우 발전도가 높은 복지 또는 자립 어촌계의 비율이 비사업지역 어촌계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국가어항 개발사업을 통해 배후지 어촌계의 발전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어항을 배후로 하고 있는 사업지역 어촌계의 복지 또는 자립어촌계의 비율이 전체 67%인데 비해 비사업지역은 33.6%로 국가어항이 있는 지역의 어촌계의 발전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셋째, 국가어항 배후지역의 어업가구 및 어업인구 등이 비사업지역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정주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어항이 있는 어촌계의 어업가구는 평균 140가구로 기타어촌계의 평균 71가구보다 약 두배 정도 많았으며, 어업인구의 경 평균 269명으로 기타어촌계의 112명에 비해 2.4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넷째, 국가어항 배후어촌계의 연평균수산물 생산량은 비사업지역보다 약2배, 수산물 생산액은 약1.3배, 재적어선척수는 약1.8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수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가어항 배후어촌계의 연평균수산물 생산량은 582톤으로 비사업지역 296톤보다 약 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산물생산액은 약 16억 원으로 비사업지역의 12억원보다 1.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재적어선척수 역시 67척으로 비사업지역 38척보다 약 1.8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다섯째, 2000년대에 건설한 국가어항 10개항을 대상으로 과거추세에 의한 성과모니터링을 분석한 결과 국가어항 개발로 인하여 착공이후 가구수, 어가소득, 수산물 생산량 등의 증가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000년대에 건설한 10개 국가어항에 대하여 국가어항 개발 전·후를 효과 분석해본 결과 어항 착공이전보다 착공 이후 전체 가구 수의 증가율이 상승된 곳은 6개 어항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소득 증가율은 7개 지역이 상승된 곳으로 분석되었고, 어선세력이나 수산물 생산량은 착공이후 증가율이 다소 크게 나타났다.

- 여섯째,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공무원, 어업인 모두 국가어항에 대한 예산의 가용성 부분에서 예산지원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 예산가용성에 조사결과 어업인은 43.4점, 공무원은 46.8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일곱째, 어선안전수용율 검토결과 어선척수는 수산업 여건변화에 따라 어선감척 등으로 1,245척 감소하였지만, 국가어항 개발에 따라 어선을 수용할 수 있는 계류시설, 항내박지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어선안전수용율은 74.3%로 전년도 대비 1.5% 증가되었다.
 - 수용대상어선척수는 2009년 74,362척에서 2010년 73,117척으로 1,245척 감소하였다.
 - 전국 어선안전수용율은 2009년 72.8%에서 2010년 74.3%로 1.5% 증가되었다.
 - 항종별 부담율을 고려한 국가어항의 어선안전수용율은 2009년 40.76%에서 2010년 41.61%로 0.85% 증가되었다.
- 여덟째,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이용자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대비 1.1점 상향된 65.9점으로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본 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제주를 제외한 육지지역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평균 이용자만족도는 61.7점, 제주지역의 평균 이용자만족도는 66.2점으로 전체 평균 이용자만족도는 65.9점으로 본 사업에 대한 보통이상의 이용자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결론적으로 국가어항 개발사업을 통해 사업진척도, 어촌지역 발전정도, 정주여건, 소득수준, 수산업 발전정도 등의 효과가 향상되어 어항 개발의 합목적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어항은 어촌의 핵심 기반시설로서 지속적인 시설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지방어항 개발사업

- 본 과업에서는 지방어항 개발사업이 수행되기 이전 사업권역의 어촌 기반수준 등에 대한 자료의 확보가 어려워 2010년의 지방어항 개발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해 지방어항 개발사업이 수행된 지역과 수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비교 평가를 통해 사업효과를 모니터링 하였다.
- 지방어항 개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첫째, 지방어항 개발사업은 투자예산에 비해 어항개발의 진척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국가어항 개발사업보다 사업진척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어항 개발사업의 완공율은 2009년 말 기준으로 285개의 지방어항 중 158개의 어항이 완공되어 62.2%의 완공율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 집행율은 약 56.2%로 국가어항 개발사업에 비해 사업진척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둘째, 지방어항 배후지 어촌계의 경우 발전도가 높은 복지어촌계의 비율이 비사업지역의 어촌계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지방어항 개발사업을 통해 배후지 어촌계의 발전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어항을 배후로 하고 있는 어촌계의 발전도가 높은 복지어촌계 비율이 16.9%로 비사업지역 복지어촌계 비율 7.4%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셋째, 지방어항의 가구수, 어업가구 등의 정주여건이 비사업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국가어항에 비하여 정주여건 개선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구수는 비사업지역보다 1.11배, 어업가구 수는 비사업지역보다 1.1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넷째, 지방어항 배후어촌계의 수산물 생산량이 비사업지역보다 1.9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수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다섯째,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육지지역, 제주지역 모두 지방어항에 대한 예산의 가용성 부분에서 예산지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 예산가용성에 조사결과 육지지역은 30.3점, 제주지역은 28.6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여섯째, 지방어항 개발사업의 이용자만족도 조사결과 74.7점으로 조사되어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산의 규모나 집중도에서 국가어항에 비해 떨어짐으로 해서 전년대비 2.6점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프로그램모니터링을 통해 본 사업에 대한 육지지역의 이용자 만족도는 71.1점, 제주지역의 이용자 만족도는 78.3점으로 조사되어 전체 평균 만족도는 74.7점으로 나타나 본 사업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결론적으로 지방어항 개발사업을 통해 사업진척도, 어촌지역 발전정도, 정주여건, 수산업 발전정도 등의 효과가 향상되어 어항개발의 합목적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어항 개발사업에 비하여 어항개발 효과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예산의 규모 및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3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 다기능어항의 건설 사업 전·후의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기능어항 사업의 성과 조사 대상지역과 관련어촌계를 분류하였다.
- 다기능어항의 행정구역은 최소단위인 동·리 까지 분획하여 다기능어항의 행정구역을 체계화시켰고, 자료수집은 최소단위의 법정동, 법정리를 기준으로 하였다. 관련어촌계는 대상지역에 주소를 둔 어촌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사업 시행 후 새로 분리되어 만들어진 어촌계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조사하였다.
- 어항으로서의 기능(수산업 지원 기능), 관광·유통·문화 복지 등 복합기능, 어업인 소득창출 기능에 대해 각 지자체 및 각 수협이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통계자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 해당 지역주민, 어항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다기능어항의 건설 사업 전·후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은 사업의 설계 이전인 2004년(2005년 통계자료)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사업 시행 후는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09년(2010년 통계자료)을 기준으로 하였다. 일부 통계자료가 발표되지 않았거나 확보할 수 없었던 지자체에 속하는 다기능어항은 2004년과 2009년과 가장 가까운 자료를 활용하였다.
- 다기능어항의 개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첫째, 다기능어항은 13개 어항별로 공사 진행 정도, 인근 관광지 여부, 지역 어촌계의 의지, 지역적 수산업 집중 정도 등에 따라 다기능어항의 3대 기능 가운데 한·두가지로 특화되어 발전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번 조사를 통해 다기능어항에 대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어항을 기능별로 구분하고 각각 특화된 기능의 발전방향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촌·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용역

- 13개 다기능어항 중 대변항, 대포항, 마량항, 국동항, 맥전포항, 모슬포항 등 6개 어항은 수산업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흥원항은 수산업 기능의 강화가 기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자항, 강릉항, 격포항, 양포항, 지세포항 등 5개 어항은 어촌체험 등 관광 지원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어유정항은 관광 복합 기능을 확대시켜 개발하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II-1 > 성과조사 시 다기능어항의 모니터링 단계

모니터링 단계	다기능어항
도입단계	어유정항
실행단계	대변항, 대포항, 강릉항, 흥원항, 격포항, 국동항, 지세포항, 맥전포항, 모슬포항
사후단계	정자항, 마량항, 양포항

<표 VII-2 > 성과조사에 따른 다기능어항의 발달 기능

발달 기능	다기능어항
수산업 기능 활성화	대변항, 대포항, 마량항, 국동항, 맥전포항, 모슬포항 (※ 흥원항 : 수산업 기능 강화 기대)
복합 기능 활성화	정자항, 강릉항, 격포항, 양포항, 지세포항 (※ 어유정항 : 복합 기능 확대 개발이 효과적)

- 둘째, 다기능어항의 개발을 통해 어가 및 어업인구 감소의 억제 효과로 작용하고, 지역 수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어 수산업 본래의 기능인 수산업 잠재력을 크게 제고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기능어항 지역의 어가 수는 사업 전후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어가 인구는 사업 후 10.9%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전체 어촌계의 어가 수 6.5% 감소, 어가인구 20.0% 감소에 비해 높게 나타나므로

다가능 어항의 건설 효과가 어가와 어가인구 감소의 억제 효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어항별로 보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어유정항(-20.2%), 관광기능의 활성화로 어가인구의 관광업 전환이 촉진되었던 정자항(-18.5%), 격포항(-31.4%), 지세포항(-13.0%) 등 5개 다가능어항을 제외한 8개 다가능어항에서 어가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어업권 수(6.0%)와 어업권 면적(21.0%), 수산물 유통가공시설(277.4%) 등은 다가능어항의 건설에 따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다가능어항이 지역 수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 셋째, 다가능어항은 지역의 관광지역과 결합하여 해양 친수공간, 마리나 시설, 음식점과 유희오락공간의 제공을 통해 어촌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13개 다가능어항의 건설로 인해 유희·오락시설의 업체 수(-17.7%)와 종사자수(-29.9%)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에서 다가능어항 건설 후 경제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다가능어항의 건설 이후 관광 사업체수가 39.6%, 해당 어항 관광객 수가 31.3%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어촌관광 개선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항시설의 개선으로 주차용지 133.5%, 복지시설 31.9% 등 문화·복지 복합시설이 크게 개선되어 어촌 지역의 소득 증가 및 복지 개선에 큰 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넷째, 다가능어항은 수산업 기능 강화와 관광객 유입 증가 등과 같은 요인을 통해 어업인의 어가소득을 크게 개선시킨 것으로 판단되었다.
 - 사업 전후 다가능어항의 어촌계는 어가소득이 평균 24.0% 증가하여 어업인 소득 창출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특히, 대포항(-4.9%), 강릉항(-16.7%), 맥전포항(-10.3%), 모슬포항(-6.4%) 등 4개 다가능어항을 제외한 전 어항에서 어가소득이 증가하였으며, 격포항이 118.2%로 가장 높은 어가소득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어가소득이 감소된 4개 다기능어항도 어촌계의 경영기반 향상과 어촌계 입지유형 변화로 어업인 소득창출이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다섯째, 다기능어항 건설을 통해 어촌계 종사유형인 어선어업의 증가와 경영기반이 우수한 복지어촌계로의 빠른 변화에 따라 어촌계의 기반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기능어항 건설을 전후하여 어촌계의 종사유형은 어선어업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항 순수기능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업 환경에 긍정적 요인으로 판단된다.
 - 또한 다기능어항 건설지역의 어촌계 발전 정도를 살펴보면, 경영기반이 취약한 성장어촌계가 26.3% 감소한 반면, 취약한 경영기반을 벗어나 자립어촌계로 성장한 어촌계가 33.3%, 경영기반이 우수한 복지어촌계가 80% 각각 증가하여 다기능어항 권역의 어촌계가 대부분 복지어촌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결론적으로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을 통해 어촌발전 잠재력과 수산업 잠재력의 향상, 어촌관광 지원시설과 교통·복지·문화시설의 개선, 어가소득과 어촌계의 발전수준 향상 등으로 수산업 지원기능, 관광·교통·문화·복지 등 복합기능, 어업인 소득창출 기능 등의 효과가 크게 개선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장 어촌어항개발사업의 향후 사업개선방안 및 추진방향

2.1 어촌개발사업 향후 사업개선방안 및 추진방향

가. 어촌종합개발사업

- 모니터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사업 개선방안 및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설 활용방안 모색

-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어촌종합개발에서는 사업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도입가능시설에 대한 이해도 또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는 사업비 확보이전에 기본계획을 지자체에서 수립하도록 추진체계가 개정되었으므로,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아울러 계획수립이 완료된 지역에 있어서는 도입시설에 대한 주민 대상의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시행 시에도 시설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2) 중심어촌계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 원동력 확보

- 도입되는 시설사업은 특정 지역 혹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에게 필요한 사업인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가장 중요한 사항은 권역별 사업비가 어촌계별 또는 마을별로 나누는 방법이 아닌 지역특성화 개발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
- 아울러 해당 권역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만한 또는 개발 여건이 되는 중심어촌계를 선정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가치를 제고하도록 한다.

(3) 완공 위주의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조정

- 본 사업은 도로 개설 또는 구조물 건축 등과 같은 육상시설이 아닌 선착장 및 물양장 확장 등 해상공사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보통 2년 길게는 3년에 걸쳐서 투입되기 때문에 완전한 구조물을 형성하지 못하여 태풍 등 열악한 해상조건으로 인하여 유실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비를 배분하는데 있어서 어촌계별(또는 마을별)로 예산을 할당할 것이 아니라 완공 위주의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4) 지역주민의 어업 외 소득확보를 위한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검토 필요

- 어업 외 소득확보를 통한 지역주민의 정주의지 강화 그리고 이를 통한 건전한 사회구조 유지 등을 목적으로 어촌지역에서 도입이 가능한 소득창출시설 즉 관광 편의시설에 대한 정책적 접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 소득사업에 대한 운영 및 관리계획이 타당할 경우의 지원책으로는 중장기 저금리 융자, 일부 사업비 보조 또는 어업인 공동체를 위한 사업과 공동분배라는 전제하의 사업비 지원 등 다각적이고도 현실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5) 시설과 프로그램이 우수한 권역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모색

-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하여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촌계 단위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우수 사례지역으로 선정된 어촌계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후속으로 계획하는 수산업, 어업은 물론 어촌관광 분야 등 각종 분야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나.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 모니터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향후 사업개선방안 및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업평가의 연속성을 위해 모니터링 실시지역의 체계적 관리

- 모니터링 대상 지역에 대한 성과측정은 기대성과를 측정해 준 것으로 본 사업의 완공이후 변화된 성과를 측정하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 즉, 금차에 조사 분석된 대상지역에 대한 기대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실제 사업의 진행에 따른 만족도와 더불어 사업 추진 후 나타나는 경제,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 이를 통하여 모니터링 대상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가 수반되도록 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사업에 대한 홍보와 주민참여 기반 강화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지역주민들은 본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지만 세부 사업내용이나 도입시설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체험마을사업의 선정과정에 대한 인지와 더불어 사업의 진행과정, 사업의 완료에 따른 지역주민의 역할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시키는 것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한 관계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설명회, 간담회)를 통하여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역주민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교육과 각종 컨설팅을 통하여 참여역량을 키우는 작업의 병행도 요구된다.

(3) 지역여건에 따른 예산지원 범위의 다양화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예산부문에 있어서는 지역주민과 공무원 모두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예산지원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일괄적인 예산의 증액보다는 지역의 여건에 따른 탄력적 예산지원과 더불어 타 부문의 지원 사업비를 연계하는 방안, 모니터링을 통하여 우수지역을 발굴하고 추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된다.

(4) 중심테마 및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지역 간 차별화 강화

- 중심테마를 바탕으로 한 사업대상지 선정 후 체험프로그램의 실제 운영상황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새로운 체험테마를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한다.
- 따라서 사업지침에 따라 선정된 중심테마가 운영단계에서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새로운 체험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발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인접지역간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중심테마 및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은 지역 간의 비교가 필요하므로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정부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기능 강화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이 사업성공의 중요 요소이다.
- 이에 따라 사업에 대한 관리기능 및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를 보다 세분화시켜 사업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관리기능 및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로는 방문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 홍보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시설관리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 등을 지표에 포함시키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어촌관광개발사업

- 모니터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어촌관광 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사업 개선방안 및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도입시설에 대한 이해 및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 본 사업의 근본취지가 어촌에 대한 관광수요 창출로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로 그 동안의 생산기반 위주의 지원을 소득·관광기반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임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즉, 지역의 여건 및 현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관련 권한을 위임하도록 한다.
- 한편, 대상 지역 공무원이 도입시설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주민참여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할 것이다.

(2) 동·서·남해 지역별 대상지의 특색 강화 필요

- 동·서·남해의 특성을 살리되, 기존 어촌체험마을사업으로는 실시할 수 없었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어촌지역의 문화, 음식, 축제 개발에 집중함으로써 어항개발사업과의 차별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서식하는 어종이 동·서·남해가 다르고, 어촌 및 해안에서의 수산물 시식을 즐기는 관광 수요가 많으므로, 어촌 음식 시식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3)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통한 지역 주민간의 갈등 해소 필요

- 본 사업은 개발사업인 관계로 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다소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 집

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

- 즉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과정에서 특정 관계주인이 아닌 대상지의 모든 주민에게 사업의 내용을 공지 및 설명하고, 가능하다면 주민이 개발계획뿐만 아니라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관리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4) 공무원의 사업추진 내용 및 과정에 대한 교육 강화

- 모니터링 결과, 과거 어촌어항복합공간으로 선정되었던 지역의 공무원의 경우 사업추진 내용 및 과정에 대한 이해가 타 사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과거 어촌어항복합공간사업이 어촌구역 사업과 어항구역 사업으로 분리되면서 다소 혼란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어촌관광개발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간다면 이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5) 예산 지원율 상향 조정 또는 직접 집행 필요

- 균특예산으로 추진중인 타사업에 비해 지방비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방비의 확보가 늦어져 사업추진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국고지원율을 현행 보다 상향 조정하거나 국가 직접시행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자체 및 일부 어업인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적정 투자규모는 향후 몇 년 성과를 측정한 후 전문가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2.2 어항개발사업 향후 사업개선방안 및 추진방향

- 모니터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어항개발사업의 대한 향후 사업개선 방안 및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강구

-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을 비롯한 어항개발 사업의 예산은 총 6조 9,446억원으로 수산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투자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했으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¹⁾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수립하기가 곤란 하였다.

<표 VII-3 > 어항개발사업 투자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총투자계획	'10까지 투자액	잔사업비	투자율
계	69,446	48,177	21,269	69.4%
국가어항	36,049	27,992	8,057	77.6%
지방어항	20,148	11,840	8,308	58.8%
어촌정주어항	13,249	8,345	4,904	63.0%

- 국가어항에 대한 성과조사 및 프로그램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 국가어항에 대한 예산의 적절성에 대하여 일반주민은 43.4점, 공무원은 46.8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산집행의 효율성 역시 어업인 57.3점, 공무원 67.8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 한편, 지방어항은 국가어항에 비하여 더 심각한데, 예산의 가용성에 대하여 일반주민은 30.2점으로 매우 낮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집행의 효율성도 61.6점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1) 대표적인 것이 지역의 민원이다. 특히 지방 어항개발 사업은 민원성 성격이 강해 다른 사업처럼 투자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집행하는 경우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어업인들의 반발과 민원이 야기된다.

- 결국, 막대한 예산이 어항개발사업에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투자우선순위 수립 없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절대적인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업인들의 불만이 가중된 것으로 판단된다.
- 2010년 기준으로 국가어항에 대한 연간 투자액은 약 1,367억원이고 지방어항은 537억원이며, 산술적으로 지정어항 개발을 완공까지는 국가어항은 약 7년 지방어항은 16년이나 소요된다.
- 따라서 어항개발에 대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어항이나 지방어항의 개발계획 또는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경제성평가와 과학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어항개발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지방어항의 경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 기획단계부터 효율적인 예산집행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나. 기능시설과 편의시설의 확충

- 현재 어항개발은 다기능어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외곽시설, 물양장 시설 등 기본시설 완공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시설의 완공도 중요하지만 수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할 때 기능시설 및 편의시설의 확충이 시급히 요구되어진다.
- 어항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시설보다는 어항의 기능시설이나 편의시설 확충을 통하여 어업인들의 작업편의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프로그램모니터링에서도 어업인들이 편의시설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 어선어업이 쇠퇴되면서 어항은 이제 어업의 기반시설의 기능보다는 수산물의 가공, 유통, 관광시설 등으로서의 기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어항개발을 기본시설위주에서 기능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다. 사후관리체계 구축

- 2000년대 이후 건설된 10개의 국가어항 개발전후 효과를 비교한 결과 착공이후에는 어항개발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나 어항이 완공된 후에는 공사기간보다 효과가 쇠퇴되고 있다. 물론 단기간을 비교하여 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할 필요는 있지만 완공이후 개발 효과가 감소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 현재 어항법상 어항의 관리 유지보수는 정부이며 기본적인 관리는 지자체 담당이다. 이는 어촌어항법상에는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관리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사실상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 더욱이 현재 어항법상에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사용료징수를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어서 어항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차 자체징수하기 곤란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어항관리에도 여러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 따라서, 효과적으로 어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어항관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명시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배포할 필요가 있으며, 어항관리청도 어항의 효율적인 사후활용을 위해 어항이용세칙을 만드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이와 함께 어항 이용 활성화를 강구하기 위해 정부는 어항관리청으로 하여금 어항 완공이후의 어항활용 장기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매 5년마다 이를 평가 수정하도록 하며, 아울러 어항의 사전, 중간, 사후평가 활용을 위해 어항관리청에 어항의 이용관련 통계자료 확보를 강제화하는 법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표 VII-4 > 일본 북해도의 어항관리제도

<p>○ 홋카이도의 어항 관리는 소규모 어항인 제1종, 제2종은 홋카이도청이 관할하고 규모가 큰 제3종, 제4종은 홋카이도개발국이 관할하되 홋카이도청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관리되고 있음</p> <p>- 어항시설로는 기본시설(계류시설, 수역시설 등), 운송시설(도로, 주차장 등), 어항시설용지, 기타 어항시설(가공시설 등)이 있음</p> <p>○ 어항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정촌(市町村), 어협의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을 마련한 다음 시행함</p> <p>- 어항시설 이용 방법을 지자체의 조례로 제도화하여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관련 조례는 농림수산성의 기본 안을 바탕으로 2000년에 제정)</p> <p>○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이용료·사용료·점용료를 징수하여 어항시설 유지·관리 예산에 충당하고 있음</p> <p>- 지역마다 징수형태는 차이가 있으나 징수액은 홋카이도청이 징수하여 각 어항에 분배하고 있는 방식이며 현재 연간 4억 엔 정도가 징수됨</p> <p>- 1950년대부터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에 대한 저항은 거의 없으나 인상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음</p> <p>- 새 어항시설을 만들기 전에 징수 협조 여부를 조사하여 이에 우호적이면 개발하는 방식도 택하고 있음</p> <p>○ 현재 홋카이도 어항 관리의 과제는 다음과 같음</p> <p>- 어항을 이용하는 어선 수, 유어보트 수가 감소하여 어항의 수입이 줄고 있고 부수적으로 방치 폐선이 늘어나 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p> <p>- 위생관리형 어항의 도입, 어항시설의 노후화 등에 따라 어항의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p>
--

라.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홍보체계 및 피드백 구축

-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사업의 이해나 명확성을 나타내는 인식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어항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인식도는 57.7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활동이 보다 강화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물론 현재 국가어항개발단계마다 어업인을 대상으로 공청회 또는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어업인들은 이에 대하여 이

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팜플렛 등 홍보지 발행, 인터넷을 통한 개발정보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홍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어업인들의 의견을 어항개발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피드백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 어항을 둘러싼 여건 변화를 향후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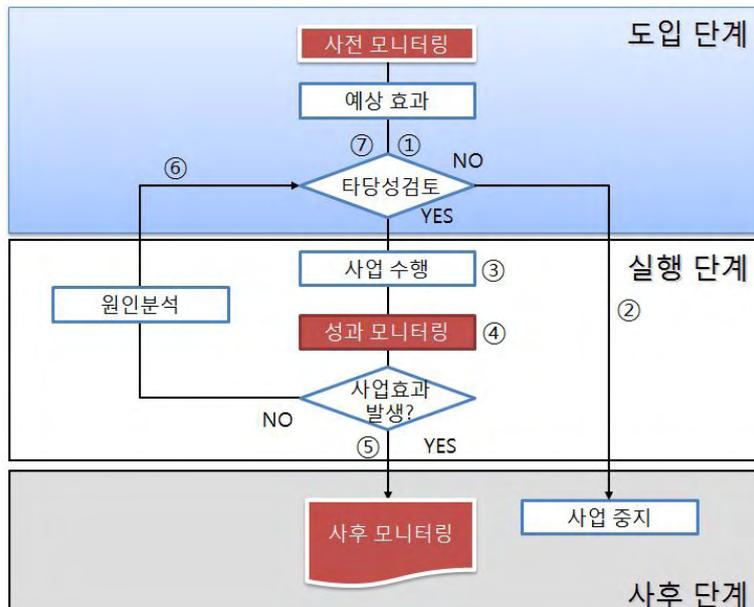
- 어항개발에 대한 비전과 종합적인 정책은 어촌·어항법에 의거하여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에서 수립하고 있다. 제1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은 2008년에 마련되어 고시되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되고 있다.
- 따라서 이번 용역에서 도출된 어항개발의 문제점과 어항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대하여 향후에 수립되는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 특히 예산당국은 어업이 쇠퇴하고 어업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추가적인 어항개발을 부정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지방어항의 경우 현재 정부의 예산이 80%임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도한 어항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만큼 어항을 둘러싼 여건 변화를 향후 수립될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어항개발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 향후 수립되어질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에서는 어항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사회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어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장 다기능어항개발사업의 앞으로 사업추진방향 및 발전방안

- 모니터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의 앞으로 사업 추진방향 및 발전방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다기능어항의 경우 대부분 국가어항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어항의 건설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부분 일치한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 강구와 사후 관리체계 구축,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홍보체계 및 피드백 구축 등에 대해서는 국가어항의 향후 발전방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가. 성과모니터링 체계 구축

- 다기능어항의 경우 국가어항이나 지방어항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건설된 항이기 때문에 적절한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다기능어항 특유의 올바른 평가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VII-1>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의 성과모니터링 수행 절차

- 다기능어항 개발 전·후의 경제적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3단계 성과평가의 방법론 정립이 필수적이다. 3단계 성과평가 방법론은 개별 세부 사업에 대한 성과측정을 위해 도입단계, 실행단계, 사후단계 등 3단계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방안이다.
 - ① 다기능어항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 및 어촌계에서는 사전 모니터링 양식에 기재된 지표에 대해 사업 시행 전 현재의 수준과 사업 후의 예상 수준을 조사 제출함
 - ② 필요성 검토 결과 사업의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을 기각하여 사후단계로 넘겨짐
 - ③ 필요성 검토 결과 사업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기간을 확정하여 지방어항 건설사업을 수행함
 - ④ 매 기간 사업 수행에 따른 실행단계의 성과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사업 효과의 발생 여부를 판단함
 - ⑤ 실행단계에서 사업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다음 기간까지 사업을 지속함
 - ⑥ 매 기간 사업 수행에 따른 실행단계 성과 모니터링에서 사업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원인분석을 수행하고 도입단계의 타당성 분석을 다시 수행함
 - ⑦ 판단결과 사업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②의 경우와 같이 기각하여 사후단계로 넘겨지고, 다른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사업 효과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③의 단계로 사업을 지속함

나. 다기능어항과 연결된 기반시설의 확충

- 다기능어항은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개발되어있다. 따라서 입지유형도 도시근교 또는 연안촌락에 있는 어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다기능어항과 연계한 주변 관광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는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로확장 등 사회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항도 더불어 활성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러나 일부 다기능어항의 경우에는 도로연장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어항을 정비하다 보니 주변의 관광지 등과 체계적인 조화가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다기능어항에서는 방문객이 적어 어항의 정화 수준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러한 어항의 경우 탐방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다기능어항의 대중교통 연결 및 편의시설 부족을 불만족 이유로 제시하고 있었다. 주민들 역시 대중교통 연결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다기능어항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따라서,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와 인근 어항지역의 어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과 주차장 마련 등 다기능어항과 연결된 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 다기능어항의 특성별 발전 정책 수립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조사를 통해 다기능어항은 「수산업 지원 기능」, 「관광·교통·문화·복지 등 복합기능」, 「어업인 소득 창출 기능」 등 3대 기능 가운데 공사의 진행상황, 지역 여건,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 정도 등에 의해 수산업 또는 관광기능 등 한·두가지 방향으로 특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다기능어항이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된 복합기능의 어항 건설 정책에서 진일보하여 이제는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는 다기능어항의 특성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 이와 함께 다기능어항의 기능을 보다 확대하여 지역별 어항 수요자들이 보다 넓은 범위의 어항 기능을 선택하여 특성화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즉, 다기능어항과 마리나, 해양·해중공원, 신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기능을 연계·포함될 수 있는 제도적·학술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를 위해서는 다기능어항의 법적·개념적 정의가 필요하며, 이는 다기능어항의 위치가 국가어항이나 지방어항 등과 같이 법에 의해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 이를 바탕으로 다기능어항의 목적이 어항의 규모만을 키우는 물리적인 투자에서 벗어나 다기능어항의 고유 목적을 정립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며, 다기능어항 고유의 기능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구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13개 다기능어항 개발 사업은 금번 조사 결과를 통해 기능의 다양성과 건설의 집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였다. 이는 다기능어항이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되, 한 지역에 대해 특정의 기능이 최적으로 판단될 경우 그 기능을 위주로 하는 다기능어항 건설이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4장 어항개발사업의 성과지표 제시

가. 새로운 성과지표 도입 필요성

-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2006년 국가어항개발사업의 심층평가 이후 효율적인 어항개발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하고 있다.
- 어항개발의 모니터링은 성과지표 모니터링으로 어항의 정주여건, 소득, 수산업의 발전정도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모니터링은 어항배후주민들에 대하여 어항의 인지도, 인식도, 사업의 유효도 등을 평가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 사업영역의 설정 : 어항개발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영역의 문제
 - 통계상의 문제 : 기본적으로 어촌계분류평정표의 통계를 이용하고 있으나 통계의 부정확에서 오는 문제
 - 성과지표의 문제 : 성과지표가 어항개발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문제
- 상기 문제 중 사업영역의 설정 문제는 별도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어항별로 개발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영역을 정해야 하며, 통계상의 문제는 "어촌계 분류평정"체계를 변경해야 하므로 사실상 기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에 봉착한다.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과모니터링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어항개발의 성과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나. 새로운 성과지표

(1) 국가(지방)어항 완공 지표

- 국가(지방)어항의 개발계획에 대한 누적완공율의 백분율을 완공율로 하여 성과지표로 하는 것이다.

$$\begin{aligned} & - \text{완공율} = (\text{누적완공시설}/\text{개발계획}) \times 100 \\ & - \text{연간 목표 완공율} = (\text{연간개발완공시설}/\text{연간목표개발시설}) \times 100 \end{aligned}$$

- 이 지표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개발계획상의 어항 시설과 실제 완공된 시설의 비율로써 어항개발척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개별어항은 물론 개별어항의 기본시설에 대하여 완공율을 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 그러나, 이 지표는 오로지 개발위주의 양적 지표라는 점에서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어항개발의 질적조사라고 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와 병행조사를 해야 한다.

(2) 위판판매실적 증가율

- 국가어항의 개발목적 중 하나는 어업인의 소득 창출이다. 그러나 어업인의 소득에 관한 data를 시의 적절하게 획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²⁾.
- 따라서, 국가어항내 위판장의 위판실적을 이용하여 대리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즉, 국가어항에 있는 위판장의 연간 위판실적을 집계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판의 경우 어획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연간 어획량의

2) 어촌지역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의 어가경제조사 또는 수협중앙회의 “어촌계분류평정 및 현황” 등이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표본상의 문제로 국가어항이 개발된 지역의 소득을 파악하기 곤란하며, 후자의 경우 통계집계와 발표가 1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므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증가율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ext{위판판매실적 증가율} = \frac{\sum_{i=1}^n X_{it}}{\sum_{i=1}^n X_{it-1}} \times \frac{Q_t}{Q_{t-1}}$$

단, X_{it} = i 어항의 t년도 위판판매실적
 X_{it-1} = i 어항의 t-1년도 위판판매실적
 Q_t = t년도 어획량
 Q_{t-1} = t-1년도의 어획량

(3) 국가어항당 평균어선 대피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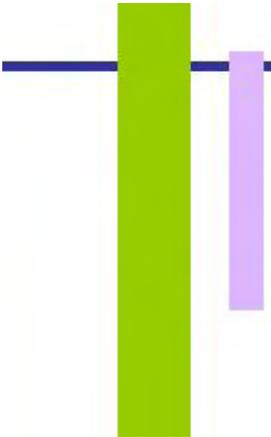
- 국가어항개발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방재인데 이러한 방재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던 안전수용율 지표가 있다.
- 그러나, 안전수용율은 실제 대피 어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점이 있다. 안전수용율은 대피가능 수역의 수용가능 어선 수를 세력권내의 총 어선 수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실제 대피하는 어선을 고려할 수 없게 된다. 즉 설계상의 수용율을 감안한 것이다.
-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실제 태풍이나 폭풍주의보 발효시 어선 대피율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국가어항당 평균어선대피율은 시도별 또는 전국 기준으로 하여 국가어항에 대피한 총 어선 수를 국가어항 수로 나누게 된다. 그런데 폭풍이나 태풍의 경우 매번 강도가 틀리고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으므로 어항별로 1년 중 어선이 가장 많이 대피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어선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이러한 감소율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ext{어항당 평균어선대피율} = \sum_{i=1}^n SFP_{imax} / n \times \delta$$

단 , SFP_{imax} : 년중 재해시 i 어항의 최대 대피 어선 수

n : 국가어항 수

δ : 전년대비 총 어선 수 감소(증가)율



부록-1. 시도별 어선안전수용율

부록 - 1. 시·도별 어선안전수용률

가. 부산광역시

(1) 2008년 말 시설기준

- 2008년 말 시설기준으로 어선안전수용률이 100%이상의 초과 어선안전수용률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부산광역시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3,910척,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1,888척이며, 어선안전수용률은 48%로 산정되었다.
- 시·군·구별로는 서구와 기장군에서는 100%이상의 어선안전수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어항 및 항만이 없는 강서구는 수용대상 어선척수 1,461척, 수용가능 어선척수 42척으로 어선안전수용률 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 - 1> 부산광역시 어선안전수용률 (2008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개발 실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부산광역시	3,910	2,834	72.5	1,888	48.3
해운대구	249	135	54.2	135	54.2
강서구	1,461	42	2.9	42	2.9
사하구	797	398	49.9	398	49.9
사상구	39	0	0	0	0
수영구	109	58	53.2	58	53.2
서 구	649	1,180	181.8	649	100.0
기장군	606	1,021	168.5	606	100.0

<부록 표 - 2> 부산광역시 수용어선 항종별 분담률 (2008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항 만	비 고
부산광역시	37.7%	20.7%	41.6%	100%
해운대구	0.0%	100.0%	0.0%	
강서구	7.1%	92.9%	0.0%	
사하구	100.0%	0.0%	0.0%	
사상구	0.0%	0.0%	0.0%	
수영구	0.0%	100.0%	0.0%	
서 구	0.0%	0.0%	100.0%	
기장군	65.2%	34.8%	0.0%	

(2) 2009년 말 시설기준

- 2009년 말 시설기준으로 어선안전수용률이 100%이상의 초과 어선안전수용률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부산광역시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3,850척,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1,844척이며 어선안전수용률은 48%로 산정됨
- 군·구별로는 서구와 기장군에서는 100%이상의 어선안전수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어항 및 항만이 없는 강서구는 수용대상 어선척수 1,472척, 수용가능 어선척수 42척으로 어선안전수용률 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 3> 부산광역시 어선안전수용률 (2009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개발 실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부산광역시	3,850	2,985	77.5	1,844	47.9
해운대구	249	135	54.2	135	54.2
강서구	1,472	42	2.9	42	2.9
사하구	775	398	51.4	398	51.4
사상구	35	0	0	0	0
수영구	108	58	53.7	58	53.7
서 구	607	1,180	194.4	607	100.0
기장군	604	1,172	194.0	604	100.0

<부록 표 - 4> 부산광역시 수용어선 항종별 분담률 (2009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항 만	비 고
부산광역시	40.8%	19.7%	39.5%	100%
해운대구	0.0%	100%	0.0%	
강서구	7.1%	92.9%	0.0%	
사하구	100.0%	0.0%	0.0%	
사상구	0.0%	0.0%	0.0%	
수영구	0.0%	100.0%	0.0%	
서 구	0.0%	0.0%	100.0%	
기장군	69.6%	30.4%	0.0%	

(3) 2010년 말 시설기준

- 2010년 말 시설기준으로 어선안전수용률이 100%이상의 초과 어선안전수용률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부산광역시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3,829척,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1,834척이며 어선안전수용률은 48%로 산정됨
- 군·구별로는 서구와 기장군에서는 100%이상의 어선안전수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어항 및 항만이 없는 강서구는 수용대상 어선척수 1,477척, 수용가능 어선척수 42척으로 어선안전수용률 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 5> 부산광역시 어선안전수용률 (2010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개발 실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부산광역시	3,829	2,990	78.1%	1,834	47.9%
해운대구	243	135	55.6%	135	55.6%
강서구	1,477	42	2.8%	42	2.8%
사하구	773	398	51.5%	398	51.5%
사상구	25	0	0.0%	0	0.0%
수영구	110	58	52.7%	58	52.7%
서 구	609	1,133	186.0%	609	100.0%
기장군	592	1,224	206.8%	592	100.0%

<부록 표 - 6> 부산광역시 수용어선 항종별 분담률 (2010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항 만	비 고
부산광역시	42.4%	19.7%	37.9%	100%
해운대구	0.0%	100.0%	0.0%	
강서구	7.1%	92.9%	0.0%	
사하구	100.0%	0.0%	0.0%	
사상구	0.0%	0.0%	0.0%	
수영구	0.0%	100.0%	0.0%	
서 구	0.0%	0.0%	100.0%	
기장군	70.9%	29.1%	0.0%	

나. 울산광역시

(1) 2008년 말 시설기준

- 2008년 말 시설기준으로 어선안전수용률이 100%이상의 초과 어선안전수용률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울산광역시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929척,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562척이며 수용률 60%로 산정됨
- 군·구별로는 동구와 북구는 100%이상의 어선안전수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국가어항 및 항만이 없는 울주군은 수용대상 어선척수 460척, 수용가능 어선척수 93척으로 수용률 20%로 어선안전수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 7> 울산광역시 어선안전수용률 (2008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개발 실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울산광역시	929	1,110	119.5	562	60.5
북 구	180	502	278.9	180	100.0
동 구	289	515	178.2	289	100.0
울주군	460	93	20.2	93	20.2

<부록 표 - 8> 울산광역시 수용어선 항종별 분담률 (2008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항 만	비 고
울산광역시	87.2%	12.8%	0.0%	100%
북 구	94.4%	5.6%	0.0%	
동 구	95.9%	4.1%	0.0%	
울주군	0.0%	100.0%	0.0%	

(2) 2009년 말 시설기준

- 2009년 말 시설기준으로 어선안전수용률이 100%이상의 초과 어선안전수용률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울산광역시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1,212척,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568척이며 수용률 47%로 산정됨
- 시·군·구별로는 동구와 북구는 100%이상의 어선안전수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국가어항 및 항만이 없는 울주군은 수용대상 어선척수 737척, 수용가능 어선척수 93척으로 수용률 13%로 어선안전수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 9> 울산광역시 어선안전수용률 (2009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개발 실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울산광역시	1,212	1,110	91.6	568	46.9
북 구	190	502	264.2	190	100.0
동 구	285	515	180.7	285	100.0
울주군	737	93	12.6	93	12.6

<부록 표 - 10> 울산광역시 수용어선 항종별 분담률 (2009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항 만	비 고
울산광역시	87.2%	12.8%	0.0%	100%
북 구	94.4%	5.6%	0.0%	
동 구	95.9%	4.1%	0.0%	
울주군	0.0%	100.0%	0.0%	

(3) 2010년 말 시설기준

- 2010년 말 시설기준으로 어선안전수용률이 100%이상의 초과 어선안전수용률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울산광역시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1,212척,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568척이며 수용률 47%로 산정됨
- 시·군·구별로는 동구와 북구는 100%이상의 어선안전수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국가어항 및 항만이 없는 울주군은 수용대상 어선척수 737척, 수용가능 어선척수 93척으로 수용률 13%로 어선안전수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 11> 울산광역시 어선안전수용률 (2010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개발 실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울산광역시	1,212	1,167	96.3%	568	46.9%
북 구	190	502	264.2%	190	100.0%
동 구	285	572	200.7%	285	100.0%
울주군	737	93	12.6%	93	12.6%

<부록 표 - 12> 울산광역시 수용어선 항종별 분담률 (2010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항 만	비 고
울산광역시	87.6%	12.4%	0.0%	100%
북 구	94.4%	5.6%	0.0%	
동 구	95.8%	4.2%	0.0%	
울주군	0.0%	100.0%	0.0%	

다. 인천광역시

(1) 2008년 말 시설기준

- 2008년 말 시설기준으로 어선안전수용률이 100%이상의 초과 어선안전수용률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인천광역시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2,083척,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1,470척이며 어선안전수용률 71%로 산정됨
- 군·구별로는 옹진군 100%이상의 어선안전수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인천항이 위치한 중구는 수용대상 어선척수 1,067척, 수용가능 어선척수 614척으로 어선안전수용률 58%로 어선안전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 13> 인천광역시 안전수용률 (2008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개발 실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수용률(%)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수용률(%)
인천광역시	2,083	1,891	90.8	1,470	70.6
중 구	1,067	614	57.5	614	57.5
서 구	22	0	0.0	0	0.0
강화군	439	301	68.6	301	68.6
옹진군	555	976	175.9	555	100.0

<부록 표 - 14> 인천광역시 수용어선 항종별 분담률 (2008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항 만	비 고
인천광역시	25.2%	29.9%	44.9%	100%
중 구	0.0%	4.9%	95.1%	
서 구	0.0%	0.0%	0.0%	
강화군	4.0%	96.0%	0.0%	
옹진군	47.6%	25.3%	27.1%	

(2) 2009년 말 시설기준

- 2009년 말 시설기준으로 어선안전수용률이 100%이상의 초과 어선안전수용률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인천광역시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1,985척,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1,464척이며 어선안전수용률 74%로 산정됨
- 시·군·구별로는 옹진군 100%이상의 어선안전수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인천항이 위치한 중구는 수용대상 어선척수 1,011척, 수용가능 어선척수 614척으로 어선안전수용률 61%로 어선안전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 15> 인천광역시 안전수용률 (2009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개발 실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수용률(%)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수용률(%)
인천광역시	1,985	1,910	96.2	1,464	73.8
중 구	1,011	614	60.7	614	60.7
서 구	24	0	0.0	0	0.0
강화군	419	319	76.1	319	76.1
옹진군	531	977	184.0	531	100.0

<부록 표 - 16> 인천광역시 수용어선 항종별 분담률 (2009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항 만	비 고
인천광역시	25.9%	29.7%	44.4%	100%
중 구	0.0%	4.9%	95.1%	
서 구	0.0%	0.0%	0.0%	
강화군	9.4%	90.6%	0.0%	
옹진군	47.6%	25.4%	27.0%	

(3) 2010년 말 시설기준

- 2010년 말 시설기준으로 어선안전수용률이 100%이상의 초과 어선안전수용률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인천광역시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1,960척,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1,425척이며 어선안전수용률 73%로 산정됨
- 시·군·구별로는 옹진군 100%이상의 어선안전수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인천항이 위치한 중구는 수용대상 어선척수 1,026척, 수용가능 어선척수 614척으로 어선안전수용률 61%로 어선안전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 17> 인천광역시 안전수용률 (2010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개발 실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인천광역시	1,960	1,888	96.3%	1,425	72.7%
중 구	1,026	614	59.8%	614	59.8%
서 구	26	0	0.0%	0	0.0%
강화군	416	319	76.7%	319	76.7%
옹진군	492	955	194.1%	492	100.0%

<부록 표 - 18> 인천광역시 수용어선 항종별 분담률 (2010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항 만	비 고
인천광역시	26.2%	28.9%	44.9%	100%
중 구	0.0%	4.9%	95.1%	
서 구	0.0%	0.0%	0.0%	
강화군	9.4%	90.6%	0.0%	
옹진군	48.7%	23.7%	27.6%	

라. 경기도

(1) 2008년 말 시설기준

- 2008년 말 시설기준으로 어선안전수용률이 100%이상의 초과 어선안전수용률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경기도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1,137척,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397척이며 어선안전수용률 35%로 산정됨
- 안산시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351척이며,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92척으로 어선안전수용률 26%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 19> 경기도 어선안전수용률 (2008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개발 실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경기도	1,137	397	34.9	397	34.9
안산시	351	92	26.2	92	26.2
평택시	69	0	0.0	0	0.0
화성시	600	251	41.8	251	41.8
김포시	117	54	46.2	54	46.2

<부록 표 - 20> 경기도 수용어선 항종별 분담률 (2008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항 만	비 고
경기도	55.7%	44.3%	0.0%	100%
안산시	0.0%	100.0%	0.0%	
평택시	0.0%	0.0%	0.0%	
화성시	88.0%	12.0%	0.0%	
김포시	0.0%	100.0%	0.0%	

(2) 2009년 말 시설기준

- 2009년 말 시설기준으로 어선안전수용률이 100%이상의 초과 어선안전수용률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경기도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1,203척,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397척이며 어선안전수용률 30%로 산정됨
- 안산시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371척이며,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92척으로 어선안전수용률 25%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 21> 경기도 어선안전수용률 (2009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개발 실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수용률(%)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수용률(%)
경기도	1,203	397	33.0	397	33.0
안산시	371	92	24.8	92	24.8
평택시	83	0	0.0	0	0.0
화성시	613	251	40.9	251	40.9
김포시	136	54	39.7	54	39.7

<부록 표 - 22> 경기도 수용어선 항종별 분담률 (2009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항 만	비 고
경기도	55.7%	44.3%	0.0%	100%
안산시	0.0%	100.0%	0.0%	
평택시	0.0%	0.0%	0.0%	
화성시	88.0%	12.0%	0.0%	
김포시	0.0%	100.0%	0.0%	

(3) 2010년 말 시설기준

- 2010년 말 시설기준으로 어선안전수용률이 100%이상의 초과 어선안전수용률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경기도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1,011척,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441척이며 어선안전수용률 44%로 산정됨
- 안산시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371척이며,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92척으로 어선안전수용률 25%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 23> 경기도 어선안전수용률 (2010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개발 실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수용률(%)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수용률(%)
경기도	1,011	441	43.6%	441	43.6%
안산시	348	92	26.4%	92	26.4%
평택시	17	0	0.0%	0	0.0%
화성시	562	301	53.6%	301	53.6%
김포시	84	48	57.1%	48	57.1%

<부록 표 - 24> 경기도 수용어선 항종별 분담률 (2010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항 만	비 고
경기도	50.1%	49.9%	0.0%	100%
안산시	0.0%	100.0%	0.0%	
평택시	0.0%	0.0%	0.0%	
화성시	73.4%	26.6%	0.0%	
김포시	0.0%	100.0%	0.0%	

마. 강원도

(1) 2008년 말 시설기준

- 2008년 말 시설기준으로 어선안전수용률이 100%이상의 초과 어선안전수용률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강원도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2,998척,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2,998척이며 어선안전수용률 100%로 산정됨
- 시·군·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180%이상의 어선안전수용률을 보이고 있음

<부록 표 - 25> 강원도 어선안전수용률 (2008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개발 실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강원도	2,998	6,741	224.8	2,998	100.0
강릉시	618	1,281	207.3	618	100.0
삼척시	823	1,497	181.9	823	100.0
속초시	463	975	210.6	463	100.0
양양군	320	812	253.8	320	100.0
고성군	774	2,176	281.1	774	100.0

<부록 표 - 26> 강원도 수용어선 항종별 분담률 (2008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항 만	비 고
강원도	59.8%	12.9%	27.3%	100%
강릉시	56.2%	5.3%	38.5%	
삼척시	53.2%	10.6%	36.1%	
속초시	17.2%	0%	82.8%	
양양군	86.2%	13.8%	0%	
고성군	75.7%	24.3%	0%	

(2) 2009년 말 시설기준

- 2009년 말 시설기준으로 어선안전수용률이 100%이상의 초과 어선안전수용률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강원도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2,913척,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2,913척이며 어선안전수용률 100%로 산정됨
- 시·군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180%이상의 어선안전수용률을 보이고 있음

<부록 표 - 27> 강원도 어선안전수용률 (2009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개발 실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강원도	2,913	7,087	243.3	2,913	100.0
강릉시	595	1,373	230.8	595	100.0
삼척시	816	1,500	183.8	816	100.0
속초시	431	1,224	284.0	431	100.0
양양군	313	812	259.4	313	100.0
고성군	758	2,178	287.3	758	100.0

<부록 표 - 28> 강원도 수용어선 항종별 분담률 (2009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항 만	비 고
강원도	59.6%	12.2%	28.2%	100%
강릉시	52.4%	5.0%	42.6%	
삼척시	53.3%	10.6%	36.1%	
속초시	28.8%	0.0%	71.2%	
양양군	86.2%	13.8%	0.0%	
고성군	75.8%	24.2%	0.0%	

(3) 2010년 말 시설기준

- 2010년 말 시설기준으로 어선안전수용률이 100%이상의 초과 어선안전수용률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강원도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2,842척,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2,842척이며 어선안전수용률 100%로 산정됨
- 시·군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190%이상의 어선안전수용률을 보이고 있음

<부록 표 - 29> 강원도 어선안전수용률 (2010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개발 실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강원도	2,842	7,165	252.1%	2,842	100.0%
강릉시	577	1,378	238.8%	577	100.0%
삼척시	799	1,516	189.7%	799	100.0%
속초시	413	1,214	293.9%	413	100.0%
양양군	313	876	279.9%	313	100.0%
고성군	740	2,181	294.7%	740	100.0%

<부록 표 - 30> 강원도 수용어선 항종별 분담률 (2010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항 만	비 고
강원도	64.6%	7.5%	27.9%	100%
강릉시	54.4%	3.1%	42.5%	
삼척시	55.3%	9.0%	35.7%	
속초시	28.3%	0.0%	71.7%	
양양군	85.8%	14.2%	0.0%	
고성군	89.4%	10.6%	0.0%	

바. 충청남도

(1) 2008년 말 시설기준

- 2008년 말 시설기준으로 어선안전수용률이 100%이상의 초과 어선안전수용률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충청남도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6,134척,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4,926척으로 어선안전수용률 80%로 산정됨
- 시·군·구별로는 보령시, 태안군, 홍성군이 100%이상의 어선안전수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당진군과 서산시의 어선안전수용률이 각각 44%, 2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 31> 충청남도 어선안전수용률 (2008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개발 실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수용률(%)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수용률(%)
충청남도	6,134	5,368	87.5	4,926	80.3
서천군	1,524	1,155	75.8	1,155	75.8
서산시	631	139	22.0	139	22.0
보령시	1,318	1,385	105.1	1,318	100.0
태안군	1,854	1,963	105.9	1,854	100.0
당진군	617	270	43.8	270	43.8
홍성군	190	456	240.0	190	100.0

<부록 표 - 32> 충청남도 수용어선 항종별 분담률 (2008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항 만	비 고
충청남도	57.4%	15.1%	27.5%	100%
서천군	33.8%	0.0%	66.2%	
서산시	74.1%	25.9%	0.0%	
보령시	33.9%	14.9%	51.2%	
태안군	76.5%	23.5%	0.0%	
당진군	96.3%	3.7%	0.0%	
홍성군	78.1%	21.9%	0.0%	

(2) 2009년 말 시설기준

- 2009년 말 시설기준으로 어선안전수용률이 100%이상의 초과 어선안전수용률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충청남도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5,880척,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4,875척으로 어선안전수용률 83%로 산정됨
- 시·군·구별로는 보령시, 태안군, 홍성군이 100%이상의 어선안전수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당진군과 서산시의 어선안전수용률이 각각 46%, 4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 33> 충청남도 어선안전수용률 (2009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개발 실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수용률(%)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수용률(%)
충청남도	5,880	5,506	93.6	4,875	82.9
서천군	1,469	1,155	78.6	1,155	78.6
서산시	641	268	41.8	268	41.8
보령시	1,207	1,385	114.7	1,207	100.0
태안군	1,799	1,970	109.5	1,799	100.0
당진군	590	272	46.1	272	46.1
홍성군	174	456	262.1	174	100.0

<부록 표 - 34> 충청남도 수용어선 항종별 분담률 (2009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항만	비 고
충청남도	58.2%	15.0%	26.8%	100%
서천군	33.8%	0.0%	66.2%	
서산시	84.7%	15.3%	0.0%	
보령시	33.9%	14.9%	51.2%	
태안군	76.2%	23.8%	0.0%	
당진군	95.6%	4.4%	0.0%	
홍성군	78.1%	21.9%	0.0%	

(3) 2010년 말 시설기준

- 2010년 말 시설기준으로 어선안전수용률이 100%이상의 초과 어선안전수용률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충청남도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5,952척,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5,081척으로 어선안전수용률 85%로 산정됨
- 시·군·구별로는 보령시, 태안군, 홍성군이 100%이상의 어선안전수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당진군과 서산시의 어선안전수용률이 각각 39%, 5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 35> 충청남도 어선안전수용률 (2010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개발 실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수용률(%)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수용률(%)
충청남도	5,952	5,740	96.4%	5,081	85.4%
서천군	1,462	1,288	88.1%	1,288	88.1%
서산시	635	365	57.5%	365	57.5%
보령시	1,203	1,391	115.6%	1,203	100.0%
태안군	1,778	1,968	110.7%	1,778	100.0%
당진군	699	272	38.9%	272	38.9%
홍성군	175	456	260.6%	175	100.0%

<부록 표 - 36> 충청남도 수용어선 항종별 분담률 (2010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항만	비 고
충청남도	59.9%	14.4%	25.7%	100%
서천군	40.6%	0.0%	59.4%	
서산시	89.9%	10.1%	0.0%	
보령시	33.7%	15.2%	51.0%	
태안군	76.3%	23.7%	0.0%	
당진군	95.6%	4.4%	0.0%	
홍성군	78.1%	21.9%	0.0%	

사. 전라북도

(1) 2008년 말 시설기준

- 2008년 말 시설기준으로 어선안전수용률이 100%이상의 초과 어선안전수용률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전라북도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3,686척,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2,919척으로 어선안전수용률 79%로 산정됨
- 시·군·구별로는 모든 지역이 어선안전수용률이 100%이하이고 군산시가 91%로 가장 높은 어선안전수용률을 보이고 있음

<부록 표 - 37> 전라북도 어선안전수용률 (2008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개발 실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수용률(%)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수용률(%)
전라북도	3,686	2,919	79.2	2,919	79.2
군산시	1,766	1,610	91.2	1,610	91.2
부안군	1,647	1,246	75.7	1,246	75.7
고창군	269	63	23.4	63	23.4
김제시	4	0	0.0	0	0.0

<부록 표 - 38> 전라북도 수용어선 항종별 분담률 (2008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항 만	비 고
전라북도	58.1%	16.4%	25.5%	100%
군산시	43.0%	10.7%	46.3%	
부안군	76.0%	24.0%	0.0%	
고창군	87.3%	12.7%	0.0%	
김제시	0.0%	0.0%	0.0%	

(2) 2009년 말 시설기준

- 2009년 말 시설기준으로 어선안전수용률이 100%이상의 초과 어선안전수용률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전라북도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3,642척,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2,936척으로 어선안전수용률 81%로 산정됨
- 시·군·구별로는 모든 지역이 어선안전수용률이 100%이하이고 군산시가 92%로 가장 높은 어선안전수용률을 보이고 있음

<부록 표 - 39> 전라북도 어선안전수용률 (2009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개발 실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전라북도	3,642	2,936	80.6	2,936	80.6
군산시	1,756	1,611	91.7	1,611	91.7
부안군	1,620	1,259	77.7	1,259	77.7
고창군	262	66	25.2	66	25.2
김제시	4	0	0.0	0	0.0

<부록 표 - 40> 전라북도 수용어선 항종별 분담률 (2009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항 만	비 고
전라북도	57.8%	16.8%	25.4%	100%
군산시	43.0%	10.8%	46.2%	
부안군	75.2%	24.8%	0.0%	
고창군	87.9%	12.1%	0.0%	
김제시	0.0%	0.0%	0.0%	

(3) 2010년 말 시설기준

- 2010년 말 시설기준으로 어선안전수용률이 100%이상의 초과 어선안전수용률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전라북도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3,505척,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2,944척으로 어선안전수용률 84%로 산정됨
- 시·군·구별로는 모든 지역이 어선안전수용률이 100%이하이고 군산시가 95%로 가장 높은 어선안전수용률을 보이고 있음

<부록 표 - 41> 전라북도 어선안전수용률 (2010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개발 실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전라북도	3,505	2,944	84.0%	2,944	84.0%
군산시	1,705	1,624	95.2%	1,624	95.2%
부안군	1,554	1,254	80.7%	1,254	80.7%
고창군	243	66	27.2%	66	27.2%
김제시	3	0	0.0%	0	0.0%

<부록 표 - 42> 전라북도 수용어선 항종별 분담률 (2010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항 만	비 고
전라북도	57.7%	17.1%	25.3%	100%
군산시	42.7%	11.5%	45.8%	
부안군	75.5%	24.5%	0.0%	
고창군	87.9%	12.1%	0.0%	
김제시	0.0%	0.0%	0.0%	

아. 전라남도

(1) 2008년 말 시설기준

- 2008년 말 시설기준으로 어선안전수용률이 100%이상의 초과 어선안전수용률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전라남도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32,411척,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20,158척으로 어선안전수용률 62%로 산정됨
- 시·군·구별로는 영광군과 고흥군, 목포시가 100%이상의 어선안전수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완도군의 경우는 전라남도 어선의 1/3정도의 어선이 재적하고 있으나 어선안전수용률이 39%로 상대적으로 낮은 어선안전수용률을 나타내고 있고, 무안군은 지방어항만이 소재하고 있어 6%로 매우 낮은 어선안전수용률을 보이고 있음

<부록 표 - 43> 전라남도 안전수용률 (2008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개발 실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전라남도	32,411	21,183	65.4	20,158	62.2
여수시	5,619	4,938	87.9	4,938	87.9
순천시	245	30	12.2	30	12.2
고흥군	2,913	3,640	125.0	2,913	100.0
보성군	452	126	27.9	126	27.9
장흥군	1,085	274	25.3	274	25.3
강진군	760	424	55.8	424	55.8
해남군	1,876	795	42.4	795	42.4
무안군	1,150	68	5.9	68	5.9
영광군	857	935	109.1	857	100.0
완도군	10,504	4,056	38.6	4,056	38.6
진도군	2,065	1,641	79.5	1,641	79.5
목포시	1,007	1,227	121.8	1,007	100.0
신안군	3,878	3,029	78.1	3,029	78.1

<부록 표 - 44> 전라남도 수용어선 항종별 분담률 (2008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항 만	비 고
전라남도	60.5%	14.4%	25.1%	100%
여수시	77.2%	5.2%	17.6%	
순천시	0.0%	100.0%	0.0%	
고흥군	72.6%	16.9%	10.5%	
보성군	0.0%	100.0%	0.0%	
장흥군	33.6%	66.4%	0.0%	
강진군	92.2%	7.8%	0.0%	
해남군	71.2%	24.0%	4.8%	
무안군	0.0%	100.0%	0.0%	
영광군	92.2%	7.8%	0.0%	
완도군	44.9%	16.9%	38.2%	
진도군	79.6%	20.4%	0.0%	
목포시	0.0%	0.0%	100.0%	
신안군	43.6%	15.3%	41.1%	

(2) 2009년 말 시설기준

- 2009년 말 시설기준으로 어선안전수용률이 100%이상의 초과 어선안전수용률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전라남도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32,055척,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20,573척으로 어선안전수용률 64%로 산정됨
- 시·군·구별로는 영광군과 고흥군, 목포시가 100%이상의 어선안전수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완도군의 경우는 전라남도 어선의 1/3정도의 어선이 재적하고 있으나 어선안전수용률이 42%로 상대적으로 낮은 어선안전수용률을 나타내고 있고, 무안군은 지방어항만이 소재하고 있

어촌·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용역

어 6%로 매우 낮은 어선안전수용률을 보이고 있음

<부록 표 - 45> 전라남도 안전수용률 (2009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개발 실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전라남도	32,055	21,653	67.5	20,573	64.2
여수시	5,418	4,967	91.7	4,967	91.7
순천시	261	30	11.5	30	11.5
고흥군	2,888	3,640	126.0	2,888	100.0
보성군	481	126	26.2	126	26.2
장흥군	1,109	285	25.7	285	25.7
강진군	755	425	56.3	425	56.3
해남군	1,967	795	40.4	795	40.4
무안군	1,154	68	5.9	68	5.9
영광군	844	950	112.6	844	100.0
완도군	10,196	4,313	42.3	4,313	42.3
진도군	2,139	1,659	77.6	1,659	77.6
목포시	1,005	1,227	122.1	1,005	100.0
신안군	3,838	3,168	82.5	3,168	82.5

<부록 표 - 46> 전라남도 수용어선 항종별 분담률 (2009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항 만	비 고
전라남도	60.8%	14.4%	24.8%	100%
여수시	77.4%	5.2%	17.4%	
순천시	0.0%	100.0%	0.0%	
고흥군	72.6%	16.9%	10.5%	
보성군	0.0%	100.0%	0.0%	
장흥군	32.3%	67.7%	0.0%	
강진군	92.0%	8.0%	0.0%	
해남군	71.2%	24.0%	4.8%	
무안군	0.0%	100.0%	0.0%	
영광군	90.7%	9.3%	0.0%	
완도군	47.9%	16.2%	35.9%	
진도군	78.7%	21.3%	0.0%	
목포시	0.0%	0.0%	100.0%	
신안군	43.8%	14.7%	41.5%	

(3) 2010년 말 시설기준

- 2010년 말 시설기준으로 어선안전수용률이 100%이상의 초과 어선안전수용률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전라남도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31,850척,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20,864척으로 어선안전수용률 65%로 산정됨
- 시·군·구별로는 영광군과 고흥군, 목포시가 100%이상의 어선안전수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완도군의 경우는 전라남도 어선의 1/3정도의 어선이 재적하고 있으나 어선안전수용률이 41%로 상대적으로 낮은 어선안전수용률을 나타내고 있고, 무안군은 지방어항만이 소재하고 있어 5%로 매우 낮은 어선안전수용률을 보이고 있음

<부록 표 - 47> 전라남도 안전수용률 (2010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개발 실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수용률(%)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수용률(%)
전라남도	31,850	21,988	69.0%	20,684	64.9%
여수시	5,211	4,971	95.4%	4,971	95.4%
순천시	231	30	13.0%	30	13.0%
고흥군	2,941	3,839	130.5%	2,941	100.0%
보성군	466	153	32.8%	153	32.8%
장흥군	1,060	392	37.0%	392	37.0%
강진군	753	442	58.7%	442	58.7%
해남군	1,901	795	41.8%	795	41.8%
무안군	1,134	53	4.7%	53	4.7%
영광군	783	972	124.1%	783	100.0%
완도군	10,504	4,304	41.0%	4,304	41.0%
진도군	2,076	1,641	79.0%	1,641	79.0%
목포시	1,010	1,227	121.5%	1,010	100.0%
신안군	3,780	3,169	83.8%	3,169	83.8%

어촌·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용역

<부록 표 - 48> 전라남도 수용어선 항종별 분담률 (2010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항 만	비 고
전라남도	61.3%	14.3%	24.5%	100%
여수시	77.3%	5.3%	17.4%	
순천시	0.0%	100.0%	0.0%	
고흥군	74.0%	16.0%	10.0%	
보성군	0.0%	100.0%	0.0%	
장흥군	54.6%	45.4%	0.0%	
강진군	88.5%	11.5%	0.0%	
해남군	71.2%	24.0%	4.8%	
무안군	0.0%	100.0%	0.0%	
영광군	88.7%	11.3%	0.0%	
완도군	48.0%	16.0%	36.0%	
진도군	79.6%	20.4%	0.0%	
목포시	0.0%	0.0%	100.0%	
신안군	43.8%	14.7%	41.5%	

자. 경상북도

(1) 2008년 말 시설기준

- 2008년 말 시설기준으로 어선안전수용률이 100%이상의 초과 어선안전수용률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경상북도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3,986척,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3,986척으로 어선안전수용률 100%로 산정됨
 - 시군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100%이상의 안전수용률을 보이고 있음
- <부록 표 - 49> 경상북도 어선안전수용률 (2008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개발 실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경상북도	3,986	8,170	205.0	3,986	100.0
경주시	610	613	100.5	610	100.0
포항시	1,667	3,300	198.0	1,667	100.0
영덕군	756	1,477	195.4	756	100.0
울진군	644	1,886	292.9	644	100.0
울릉군	309	894	289.3	309	100.0

<부록 표 - 50> 경상북도 수용어선 항종별 분담률 (2008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항 만	비 고
경상북도	53.5%	10.4%	36.1%	100%
경주시	87.6%	12.4%	0.0%	
포항시	26.4%	3.9%	69.7%	
영덕군	82.2%	17.8%	0.0%	
울진군	53.1%	14.8%	32.0%	
울릉군	83.8%	11.2%	5.0%	

(2) 2009년 말 시설기준

- 2009년 말 시설기준으로 어선안전수용률이 100%이상의 초과 어선안전수용률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경상북도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3,951척,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3,951척으로 어선안전수용률 100%로 산정됨
- 시군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100%이상의 안전수용률을 보이고 있음

<부록 표 - 51> 경상북도 어선안전수용률 (2009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개발 실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수용률(%)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수용률(%)
경상북도	3,951	8,295	209.9	3,951	100.0
경주시	602	696	115.6	602	100.0
포항시	1,637	3,300	201.6	1,637	100.0
영덕군	797	1,513	189.8	797	100.0
울진군	633	1,891	298.7	633	100.0
울릉군	282	895	317.4	282	100.0

<부록 표 - 52> 경상북도 수용어선 항종별 분담률 (2009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항 만	비 고
경상북도	54.2%	10.2%	35.6%	100%
경주시	89.1%	10.9%	0.0%	
포항시	26.4%	3.9%	69.7%	
영덕군	82.6%	17.4%	0.0%	
울진군	53.3%	14.8%	31.9%	
울릉군	83.8%	11.2%	5.0%	

(3) 2010년 말 시설기준

- 2010년 말 시설기준으로 어선안전수용률이 100%이상의 초과 어선안전수용률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경상북도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3,748척,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3,748척으로 어선안전수용률 100%로 산정됨
- 시군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100%이상의 안전수용률을 보이고 있음

<부록 표 - 53> 경상북도 어선안전수용률 (2010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개발 실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경상북도	3,748	8,767	233.9%	3,748	100.0%
경주시	581	754	129.8%	581	100.0%
포항시	1,566	3,606	230.3%	1,566	100.0%
영덕군	716	1,501	209.6%	716	100.0%
울진군	604	1,891	313.1%	604	100.0%
울릉군	281	1,015	361.2%	281	100.0%

<부록 표 - 54> 경상북도 수용어선 항종별 분담률 (2010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항 만	비 고
경상북도	59.4%	5.6%	35.1%	100%
경주시	91.5%	8.5%	0.0%	
포항시	26.8%	4.4%	68.8%	
영덕군	90.9%	9.1%	0.0%	
울진군	67.5%	2.5%	30.0%	
울릉군	89.3%	8.2%	2.6%	

차. 경상남도

(1) 2008년 말 시설기준

- 2008년 말 시설기준으로 어선안전수용률이 100%이상의 초과 어선안전수용률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경상남도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15,514척,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12,343척으로 어선안전수용률 80%로 산정됨
- 시·군·구별로는 통영시, 거제시만 100% 이상의 어선안전수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하동군은 어선안전수용률이 2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 55> 경상남도 어선안전수용률 (2008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개발 실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수용률(%)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수용률(%)
경상남도	15,514	13,993	90.2	12,343	79.6
진해시	1,128	447	39.6	447	39.6
마산시	2,185	1,336	61.1	1,336	61.1
사천시	1,463	967	66.1	967	66.1
통영시	3,614	3,676	101.7	3,614	100.0
거제시	2,818	4,406	156.4	2,818	100.0
고성군	1,127	842	74.7	842	74.7
남해군	2,343	2,150	91.8	2,150	91.8
하동군	836	169	20.2	169	20.2

<부록 표 - 56> 경상남도 수용어선 항종별 분담률 (2008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항 만	비 고
경상남도	59.6%	16.9%	23.5%	100%
진해시	0.0%	5.8%	94.2%	
마산시	60.5%	8.5%	31.0%	
사천시	32.5%	11.6%	55.9%	
통영시	46.8%	10.5%	42.7%	
거제시	75.0%	17.2%	7.8%	
고성군	79.5%	20.5%	0.0%	
남해군	66.4%	33.6%	0.0%	
하동군	56.8%	43.2%	0.0%	

(2) 2009년 말 시설기준

- 2009년 말 시설기준으로 어선안전수용률이 100%이상의 초과 어선안전수용률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경상남도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15,289척,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12,261척으로 어선안전수용률 80%로 산정됨
- 시·군·구별로는 통영시, 거제시만 100% 이상의 어선안전수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하동군은 어선안전수용률이 1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 57> 경상남도 어선안전수용률 (2009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개발 실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경상남도	15,289	14,138	92.5	12,261	80.2
진해시	1,153	548	47.5	548	47.5
마산시	2,234	1,336	59.8	1,336	59.8
사천시	1,390	967	69.6	967	69.6
통영시	3,451	3,713	107.6	3,451	100.0
거제시	2,798	4,413	157.7	2,798	100.0
고성군	1,096	842	76.8	842	76.8
남해군	2,282	2,150	94.2	2,150	94.2
하동군	885	169	19.1	167	19.1

<부록 표 - 58> 경상남도 수용어선 항종별 분담률 (2009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항 만	비 고
경상남도	59.1%	16.7%	24.2%	100%
진해시	0.0%	4.7%	95.3%	
마산시	60.5%	8.5%	31.0%	
사천시	32.5%	11.6%	55.9%	
통영시	46.5%	10.4%	43.1%	
거제시	75.0%	17.2%	7.8%	
고성군	79.5%	20.5%	0.0%	
남해군	66.4%	33.6%	0.0%	
하동군	56.8%	43.2%	0.0%	

(3) 2010년 말 시설기준

- 2010년 말 시설기준으로 어선안전수용률이 100%이상의 초과 어선안전수용률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경상남도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14,832척,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12,416척으로 어선안전수용률 84%로 산정됨
- 시·군·구별로는 통영시, 거제시만 100% 이상의 어선안전수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하동군은 어선안전수용률이 3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 59> 경상남도 어선안전수용률 (2010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개발 실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경상남도	14,832	13,908	93.8%	12,416	83.7%
창원시	3,273	2,125	64.9%	2,125	64.9%
사천시	1,375	967	70.3%	967	70.3%
통영시	3,376	3,697	109.5%	3,376	100.0%
거제시	2,680	3,851	143.7%	2,680	100.0%
고성군	1,058	842	79.6%	842	79.6%
남해군	2,234	2,146	96.1%	2,146	96.1%
하동군	836	280	33.5%	280	33.5%

<부록 표 - 60> 경상남도 수용어선 항종별 분담률 (2010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항 만	비 고
경상남도	57.7%	17.2%	25.1%	100%
창원시	45.1%	7.5%	47.3%	
사천시	32.5%	11.6%	55.9%	
통영시	46.2%	10.5%	43.3%	
거제시	71.4%	19.7%	8.9%	
고성군	79.5%	20.5%	0.0%	
남해군	66.4%	33.6%	0.0%	
하동군	73.9%	26.1%	0.0%	

카. 제주도

(1) 2008년 말 시설기준

- 2008년 말 시설기준으로 어선안전수용률이 100%이상의 초과 어선안전수용률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제주도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2,629척,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2,629척으로 어선안전수용률 100%로 산정됨
- 시·군·구별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100%이상의 어선안전수용률을 나타내고 있음

<부록 표 - 61> 제주도 어선안전수용률 (2008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개발 실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제 주 도	2,629	4,884	185.8	2,629	100.0
제 주 시	1,385	3,052	220.4	1,385	100.0
서귀포시	1,244	1,832	147.3	1,244	100.0

<부록 표 - 62> 제주도 수용어선 항종별 분담률 (2008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항 만	비 고
제 주 도	35.0%	13.9%	51.1%	100%
제 주 시	24.2%	10.8%	64.9%	
서귀포시	53.0%	19.1%	27.9%	

(2) 2009년 말 시설기준

- 2009년 말 시설기준으로 어선안전수용률이 100%이상의 초과 어선안전수용률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제주도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2,382척,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2,382척으로 어선안전수용률 100%로 산정됨
- 시·군·구별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100%이상의 어선안전수용률을 나타내고 있음

<부록 표 - 63> 제주도 어선안전수용률 (2009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개발 실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수용률(%)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수용률(%)
제 주 도	2,382	4,913	206.3	2,382	100.0
제 주 시	1,245	3,052	245.1	1,245	100.0
서귀포시	1,137	1,861	163.7	1,137	100.0

<부록 표 - 64> 제주도 수용어선 항종별 분담률 (2009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항 만	비 고
제 주 도	31.4%	13.8%	50.8%	100%
제 주 시	24.2%	10.8%	65.0%	
서귀포시	53.7%	18.8%	27.5%	

(3) 2010년 말 시설기준

- 2009년 말 시설기준으로 어선안전수용률이 100%이상의 초과 어선안전수용률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제주도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2,376척,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2,376척으로 어선안전수용률 100%로 산정됨
- 시·군·구별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100%이상의 어선안전수용률을 나타내고 있음

<부록 표 - 65> 제주도 어선안전수용률 (2010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개발 실태			실제 이용 상황 감안 시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어선안전 수용률(%)
제 주 도	2,376	4,935	207.7%	2,376	100.0%
제 주 시	1,253	3,062	244.4%	1,253	100.0%
서귀포시	1,123	1,873	166.8%	1,123	100.0%

<부록 표 - 66> 제주도 수용어선 항종별 분담률 (2010년 말 시설기준)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항 만	비 고
제 주 도	36.3%	14.2%	49.5%	100%
제 주 시	25.1%	11.0%	63.9%	
서귀포시	54.6%	19.5%	25.9%	

어촌·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용역

타. 년차별 어선안전수용률

<부록 표 - 67> 연도별 어선안전수용률

구 분	2008년			2009년			2009년			
	수용대상 어선척수	수용가능 어선척수	어선안전 수용률	수용대상 어선척수	수용가능 어선척수	어선안전 수용률	수용대상 어선척수	수용가능 어선척수	어선안전 수용률	
전 국	75,417	54,276	72.0	74,362	54,164	72.8	73,117	54,359	74.3%	
부산 광역시	소 계	3,910	1,888	48.3	3,850	1,844	47.9	3,829	1,834	47.9%
	해운대구	249	135	54.2	249	135	54.2	243	135	55.6%
	강서구	1,461	42	2.9	1,472	42	2.9	1,477	42	2.8%
	사하구	797	398	49.9	775	398	51.4	773	398	51.5%
	사상구	39	0	0.0	35	0	0.0	25	0	0.0%
	수영구	109	58	53.2	108	58	53.7	110	58	52.7%
	서구	649	1,180	181.8	607	1,180	194.4	609	609	100.0%
기장군	606	1,021	168.5	604	1,172	194.0	592	592	100.0%	
인천 광역시	소 계	2,083	1,470	70.6	1,985	1,464	73.8	1,960	1,425	72.7%
	중구	1,067	614	57.5	1,011	614	60.7	1,026	614	59.8%
	서구	22	0	0.0	24	0	0.0	26	0	0.0%
	강화군	439	301	68.6	419	319	76.1	416	319	76.7%
옹진군	555	976	175.9	531	977	184.0	492	492	100.0%	
울산 광역시	소 계	929	562	60.5	1,212	568	46.9	1,212	568	46.9%
	북구	180	502	278.9	190	502	264.2	190	190	100.0%
	동구	289	515	178.2	285	515	180.7	285	285	100.0%
울주군	460	93	20.2	737	93	12.6	737	93	12.6%	
경기도	소 계	1,137	397	34.9	1,203	397	33.0	1,011	441	43.6%
	안산시	351	92	26.2	371	92	24.8	348	92	26.4%
	평택시	69	0	0.0	83	0	0.0	17	0	0.0%
	화성시	600	251	41.8	613	251	40.9	562	301	53.6%
	김포시	117	54	46.2	136	54	39.7	84	48	57.1%
강원도	소 계	2,998	2,998	100.0	2,913	2,913	100.0	2,842	2,842	100.0%
	강릉시	618	1,281	207.3	595	1,373	230.8	577	577	100.0%
	삼척시	823	1,497	181.9	816	1,500	183.8	799	799	100.0%
	속초시	463	975	210.6	431	1,224	284.0	413	413	100.0%
	양양군	320	812	253.8	313	812	259.4	313	313	100.0%
	고성군	774	2,176	281.1	758	2,178	287.3	740	740	100.0%
충청 남도	소 계	6,134	4,926	80.3	5,880	4,875	82.9	5,952	5,081	85.4%
	서천군	1,524	1,155	75.8	1,469	1,155	78.6	1,462	1,288	88.1%
	서산시	631	139	22.0	641	268	41.8	635	365	57.5%
	보령시	1,318	1,385	105.1	1,207	1,330	110.2	1,203	1,203	100.0%
	태안군	1,854	1,963	105.9	1,799	1,970	109.5	1,778	1,778	100.0%
	당진군	617	270	43.8	590	272	46.1	699	272	38.9%
	홍성군	190	456	240.0	174	456	262.1	175	175	100.0%

부록-1 시·도별 어선안전수용률

구 분	2008년			2009년			2009년			
	수용대상 어선척수	수용가능 어선척수	어선안전 수용률	수용대상 어선척수	수용가능 어선척수	어선안전 수용률	수용대상 어선척수	수용가능 어선척수	어선안전 수용률	
전라 북도	소 계	3,686	2,919	79.2	3,642	2,936	80.6	3,505	2,944	84.0%
	군산시	1,766	1,610	91.2	1,756	1,611	91.7	1,705	1,624	95.2%
	부안군	1,647	1,246	75.7	1,620	1,259	77.7	1,554	1,254	80.7%
	고창군	269	63	23.4	262	66	25.2	243	66	27.2%
	김제시	4	0	0.0	4	0	0.0	3	0	0.0%
전라 남도	소 계	32,411	20,158	62.2	32,055	20,573	64.2	31,850	20,684	64.9%
	여수시	5,619	4,938	87.9	5,418	4,967	91.7	5,211	4,971	95.4%
	순천시	245	30	12.2	261	30	11.5	231	30	13.0%
	고흥군	2,913	3,640	125.0	2,888	3,640	126.0	2,941	2,941	100.0%
	보성군	452	126	27.9	481	126	26.2	466	153	32.8%
	장흥군	1,085	274	25.3	1,109	285	25.7	1,060	392	37.0%
	강진군	760	424	55.8	755	425	56.3	753	442	58.7%
	해남군	1,876	795	42.4	1,967	795	40.4	1,901	795	41.8%
	무안군	1,150	68	5.9	1,154	68	5.9	1,134	53	4.7%
	영광군	857	935	109.1	844	950	112.6	783	783	100.0%
	완도군	10,504	4,056	38.6	10,196	4,313	42.3	10,504	4,304	41.0%
	진도군	2,065	1,641	79.5	2,139	1,659	77.6	2,076	1,641	79.0%
	목포시	1,007	1,227	121.8	1,005	1,227	122.1	1,010	1,010	100.0%
	신안군	3,878	3,029	78.1	3,838	3,168	82.5	3,780	3,169	83.8%
경상 북도	소 계	3,986	3,986	100.0	3,951	3,951	100.0	3,748	3,748	100.0%
	경주시	610	613	100.5	602	696	115.6	581	581	100.0%
	포항시	1,667	3,300	198.0	1,637	3,300	201.6	1,566	1,566	100.0%
	영덕군	756	1,477	195.4	797	1,513	189.8	716	716	100.0%
	울진군	644	1,886	292.9	633	1,891	298.7	604	604	100.0%
	울릉군	309	894	289.3	282	895	317.4	281	281	100.0%
경상 남도	소 계	15,514	12,343	79.6	15,289	12,261	80.2	14,832	12,416	83.7%
	진해시	1,128	447	39.6	1,153	548	47.5	3,273	2,125	64.9%
	마산시	2,185	1,336	61.1	2,234	1,336	58.8			
	사천시	1,463	967	66.1	1,390	967	69.6	1,375	967	70.3%
	통영시	3,614	3,676	101.7	3,451	3,713	107.6	3,376	3,376	100.0%
	거제시	2,818	4,406	156.4	2,798	4,413	157.7	2,680	2,680	100.0%
	고성군	1,127	842	74.7	1,096	842	76.8	1,058	842	79.6%
	남해군	2,343	2,150	91.8	2,282	2,150	94.2	2,234	2,146	96.1%
제주도	소 계	2,629	2,629	100.0	2,382	2,382	100.0	2,376	2,376	100.0%
	제주시	1,385	3,052	220.4	1,245	3,052	245.1	1,253	1,253	100.0%
	서귀포시	1,244	1,832	147.3	1,137	1,861	163.7	1,123	1,123	100.0%

어촌·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용역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용대상 어선척수	수용가능 어선척수	어선안전 수용률	수용대상 어선척수	수용가능 어선척수	어선안전 수용률	수용대상 어선척수	수용가능 어선척수	어선안전 수용률
전 국	75,417	54,276	72.0	74,362	54,164	72.8	73,117	54,359	74.3%
동 해	8,519	8,152	95.7	8,680	8,036	92.6	8,394	7,750	92.3%
서 해	21,997	16,314	74.2	21,690	16,416	75.7	21,211	16,547	78.0%
남 해	44,901	29,810	66.4	43,992	29,712	67.5	43,512	30,062	69.1%



부록-2. 만족도 조사 설문지

부록 - 2. 어촌어항개발사업 만족도 조사 설문지

▣ 어촌개발사업 관련 설문지

가. 어촌종합개발사업 이용자(공무원) 만족도 설문조사

어촌종합개발사업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공	무	원	ID	
-----------------------	---	---	---	----	--

안녕하십니까?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의뢰를 받아 “어촌·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여러분의 거주하고 계신 어촌지역에 이미 실시되었던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어촌지역개발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에 반영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관련 계획수립의 참고자료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이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에 관한 사항은 절대로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어촌지역개발사업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잠시 시간을 할애하셔서 설문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0. 12.

한국어촌어항협회 (02-6098-0773)

KFAA 한국어촌어항협회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질문

◎ 사업 인지도에 관한 질문

1.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전혀 모른다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방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전혀 모른다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질문

※ 사업이 추진 중이라면, 현재 진행 중인 단계까지 답변해주십시오.

3.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투자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적당하다	많다	매우 많다
①	②	③	④	⑤

4.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각 단계별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대상지 선정 단계	①	②	③	④	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	①	②	③	④	⑤
시공단계	①	②	③	④	⑤
운영단계	①	②	③	④	⑤

4-1. 만일 추진 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를 적으십시오.

단계	대상지 선정 단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	시공 단계	운영단계
이유				

◎ 사업 내용에 관한 질문

5.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어촌지역의 관광기반시설이 확충되었다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어촌관광 활동 시설 (낚시, 체험, 해양레저 등)	①	②	③	④	⑤
관광편의시설 (숙박, 식사, 휴게실 등)	①	②	③	④	⑤
교통시설 (도로, 주차장 등)	①	②	③	④	⑤

6.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어촌지역 정주환경 및 수산업기반시설이 개선되었다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경관 개선	①	②	③	④	⑤
생활기반시설 확충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	①	②	③	④	⑤
생활편의시설 확충 (도소매점, 문화복지시설 등)	①	②	③	④	⑤
수산업개반시설 (선착장, 물양장, 인양기 등)	①	②	③	④	⑤

7. 마지막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조언 또는 희망사항 등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_____시/도 _____시/군/구)

2.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투자계획 및 실적을 적어주십시오.

구 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연도 기입					
계 획					
실 적					

나. 어촌종합개발사업 이용자(지역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어촌종합개발사업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ID	R			
-----------------------	----	---	--	--	--

안녕하십니까?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의뢰를 받아 “어촌·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여러분의 거주하고 계신 어촌지역에 이미 실시되었던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어촌지역개발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에 반영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관련 계획수립의 참고자료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이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에 관한 사항은 절대로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어촌지역개발사업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잠시 시간을 할애하셔서 설문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0. 12.

한국어촌어항협회 (02-6098-0773)

KFAA 한국어촌어항협회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질문

1.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도입되는 시설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른다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	---	---	---

3.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예산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역별 30~50억)

매우 부족하다 매우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	---	---	---	---

4.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선정 및 집행(착공에서 준공까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비효율적이다 매우 효율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	---	---	---	---

5.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촌계를 포함한 지역 주민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 충분한 역할을 수행함

①	②	③	④	⑤
---	---	---	---	---

6.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착공 및 준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업으로 인한 지역 주민 내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매우 많다

①	②	③	④	⑤
---	---	---	---	---

7.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현재의 어려운 어촌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크게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	---	---	---	---

8.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역 내 어업 생산성과 상관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이 있다면 생산성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생산성 향상과 밀접한 상관이 있음
- ② 생산성 향상과 상관이 없음()

8-1 ①에 해당되는 %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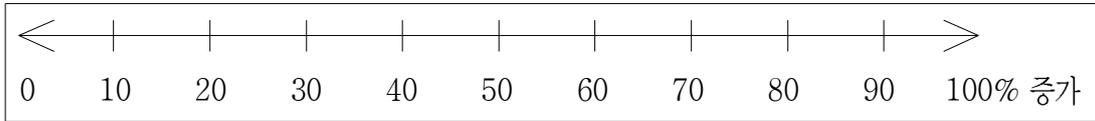
<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증가	

9.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지역 내 어업 외 소득 향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면 어업 외 소득 부분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어업 외 소득 향상과 밀접한 상관이 있음
- ② 어업 외 소득 향상과 상관이 없음()

어촌·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용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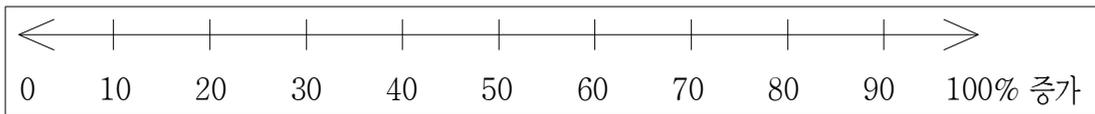
9-1 ①에 해당되는 %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외부 방문객(관광객)이 증가할 것인지, 증가한다면 어느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방문객/관광객 증가와 밀접한 상관이 있음
- ② 방문객/관광객 증가와 상관이 있음()

10-1 ①에 해당되는 %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어촌 지역의 자연재해(해일, 침식, 퇴적 등) 방지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기여하지 못함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음

①	②	③	④	⑤
---	---	---	---	---

12. 어촌종합개발사업 조성사업의 사회·문화·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5	4	3	2	1
2. 지역의 이미지가 향상될 것이다.	5	4	3	2	1
3.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5	4	3	2	1
4. 마을의 전통문화를 발굴·보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5	4	3	2	1
5. 마을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5	4	3	2	1

13.마지막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조언 또는 희망사항 등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남 ②여
2. 귀하의 연령은? 만()세
3. 귀하가 본 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년
4. 귀하는 어촌계원입니까? ①예 ②아니오

면접원 사후 기록사항 (응답자의 선택사항)			
면접 장소			
면접원 성명		면접일시	2010년 ____월 ____일

다.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이용자(공무원) 만족도 설문조사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공	무	원	ID	

안녕하십니까?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의뢰를 받아 “어촌·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여러분의 거주하고 계신 어촌지역에 이미 실시되었던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어촌지역개발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에 반영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관련 계획수립의 참고자료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이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에 관한 사항은 절대로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어촌지역개발사업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잠시 시간을 할애하셔서 설문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0. 12.

한국어촌어항협회 (02-6098-0773)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

◎ **사업 인지도에 관한 질문**

1. 귀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전혀 모른다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방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전혀 모른다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질문**

※ 사업이 추진 중이라면, 현재 진행 중인 단계까지 답변해주십시오.

3. 귀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투자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적당하다	많다	매우 많다
①	②	③	④	⑤

4. 귀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각 단계별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대상지 선정 단계	①	②	③	④	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	①	②	③	④	⑤
시공단계	①	②	③	④	⑤
운영단계	①	②	③	④	⑤

4-1. 만일 추진 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를 적으십시오.

단계	대상지 선정 단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	시공 단계	운영단계
이유				

◎ 사업 내용에 관한 질문

5. 귀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어촌지역의 관광기반시설이 확충되었다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촌관광 활동 시설(낚시, 체험, 해양레저 등)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관광편의시설(숙박, 식사, 휴게실 등)	①	②	③	④	⑤
교통시설(도로, 주차장 등)	①	②	③	④	⑤

6. 귀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어촌지역의 정주환경이 개선되었다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관 개선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생활기반시설 확충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	①	②	③	④	⑤
생활편의시설 확충 (도소매점, 문화복지시설 등)	①	②	③	④	⑤

◎ 사업 운영실태에 관한 질문

7. “어촌관광단지”사업으로 도입된(될) 시설의 관리운영 주체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향후 지정할 예정이다.

8. 귀하의 지방자치단체에는 구성된 “어촌관광단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조직 및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향후 지정할 예정이다.

9. 마지막으로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조언 또는 희망사항 등의 견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2.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투자계획 및 실적을 적어주십시오.

구 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연도를 적어주세요.					
계 획					
실 적					

라.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이용자(지역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ID				

안녕하십니까?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의뢰를 받아 “어촌·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여러분의 거주하고 계신 어촌지역에 이미 실시되었던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어촌지역개발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에 반영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관련 계획수립의 참고자료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이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에 관한 사항은 절대로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어촌지역개발사업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잠시 시간을 할애하셔서 설문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0. 12.

한국어촌어항협회 (02-6098-0773)

KFAA 한국어촌어항협회

6. 귀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개발 컨셉트가 지역특성을 잘 반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잘 반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귀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에서 구상하는 시설계획이 관광객 유치에 효과적이라 생각하십니까?

매우 효과적이지 못하다.			매우 효과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7_1 효과적이지 못하다면, 추가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시설은 무엇인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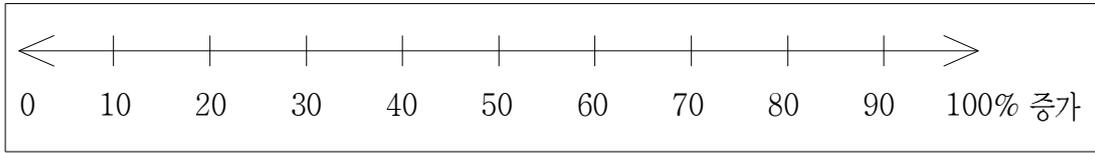
8. 귀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착공 및 준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업으로 인한 지역 주민 내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매우 많다	
①	②	③	④	⑤

9. 귀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지역 내 어업의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어업외 소득을 증가시킬 것임
- ② 어업외 소득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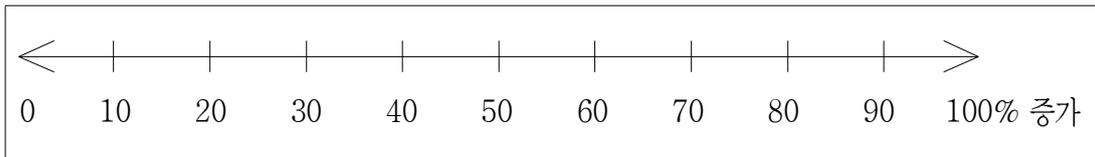
9_1 ①에 해당되는 %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귀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지역 내 방문객(관광객)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방문객(관광객)을 증가시킬 것임
- ② 방문객(관광객)의 증가시키지 않을 것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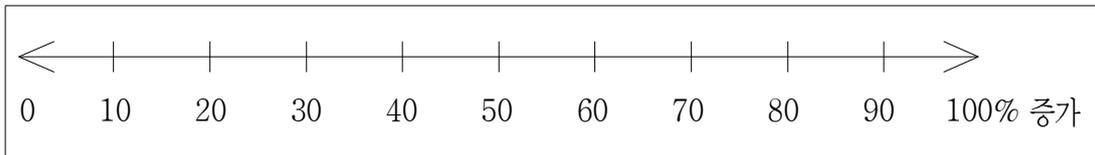
10-1 ①에 해당되는 %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귀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지역 수산물 판매(현장 또는 택배)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① 수산물의 판매를 증가시킬 것임
- ② 수산물의 판매를 증가시키지 않을 것임 ()

11-1 ①에 해당되는 %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사회·문화·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5	4	3	2	1
2. 지역의 이미지가 향상될 것이다.	5	4	3	2	1
3.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5	4	3	2	1
4. 마을의 전통문화를 발굴·보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5	4	3	2	1
5. 마을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5	4	3	2	1

13. 마지막으로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조언 또는 희망사항 등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성별은? ①남 ②여
- 귀하의 연령은? 만()세
- 귀하가 본 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년
- 귀하는 어촌계원입니까? ①예 ②아니오

면접원 사후 기록사항 (응답자의 선택사항)			
면접 장소			
면접원 성명		면접일시	2010년 ____월 ____일

마.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이용자(공무원) 만족도 설문조사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공 무 원	ID
-----------------------------	-------------	----

안녕하십니까?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의뢰를 받아 “어촌·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조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여러분의 거주하고 계신 어촌지역에 이미 실시되었던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어촌지역개발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에 반영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관련 계획수립의 참고자료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이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에 관한 사항은 절대로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어촌지역개발사업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잠시 시간을 할애하셔서 설문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0. 12.

한국어촌어항협회 (02-6098-0773)

KFAA 한국어촌어항협회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

◎ 사업 인지도에 관한 질문

1.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전혀 모른다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추진방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전혀 모른다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질문

※ 사업이 추진 중이라면, 현재 진행 중인 단계까지 답변해주시시오.

3.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투자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적당하다	많다	매우 많다
①	②	③	④	⑤

4.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각 단계별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대상지 선정 단계	①	②	③	④	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	①	②	③	④	⑤
시공단계	①	②	③	④	⑤
운영단계	①	②	③	④	⑤

4-1. 만일 추진 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를 적으십시오.

단계	대상지 선정 단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	시공 단계	운영단계
이유				

◎ 사업 내용에 관한 질문

5.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어촌지역의 관광기반시설이 확충되었다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어촌관광 활동 시설 (낚시, 체험, 해양레저 등)	①	②	③	④	⑤
관광편의시설 (숙박, 식사, 휴게실 등)	①	②	③	④	⑤
교통시설 (도로, 주차장 등)	①	②	③	④	⑤

6.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어촌지역의 정주환경이 개선되었다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경관 개선	①	②	③	④	⑤
생활기반시설 확충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	①	②	③	④	⑤
생활편의시설 확충 (도소매점, 문화복지시설 등)	①	②	③	④	⑤

11-1.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12. 마지막으로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조언 또는 희망사항 등의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_____시/도 _____시/군/구)

2.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투자계획 및 실적을 적어주십시오.

구 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연도 기입					
계 획					
실 적					

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이용자(지역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ID				

안녕하십니까?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의뢰를 받아 “어촌·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여러분의 거주하고 계신 어촌지역에 이미 실시되었던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어촌지역개발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에 반영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관련 계획수립의 참고자료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이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에 관한 사항은 절대로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어촌지역개발사업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잠시 시간을 할애하셔서 설문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0. 12.

한국어촌어항협회 (02-6098-0773)

KFAA 한국어촌어항협회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성과 내용에 대한 질문

1.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도입되는 시설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른다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예산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어촌계 5억~10억)

	매우 부족하다		매우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4.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선정 및 집행

(착공에서 준공까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비효율적이다		매우 효율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5.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투자가 끝나거나 투자 중인 현실점에서 어촌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매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6.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촌계를 포함한 지역 주민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			충분한 역할을 수행함	
①	②	③	④	⑤

7.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착공 및 준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업으로 인한 지역 주민 내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매우 많다	
①	②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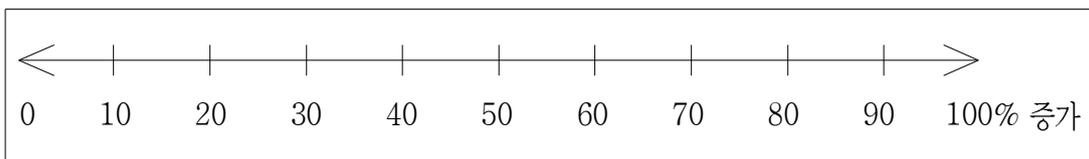
8.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현재의 어려운 어촌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크게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9.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지역 내 어업의 소득증가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어업 외 소득 증가와 밀접한 상관이 있음
- ② 어업 외 소득 증가와 상관이 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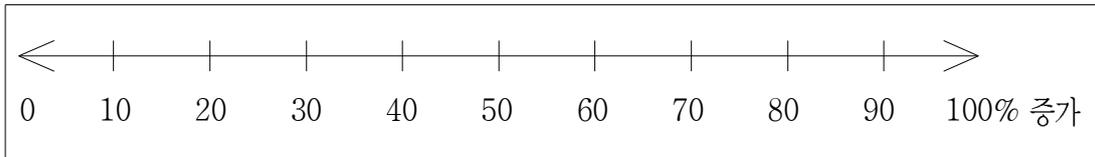
9_1 ①에 해당되는 %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지역 내 방문객(관광객)의 증가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방문객(관광객)의 증가와 밀접한 상관이 있음
- ② 방문객(관광객)의 증가 상관이 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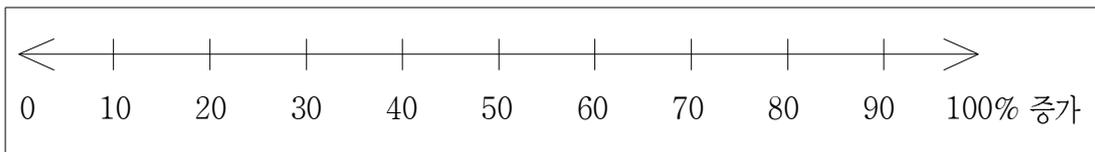
10-1 ①에 해당되는 %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지역 수산물 판매(현장 또는 택배)의 증가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 ① 수산물 판매증가와 밀접한 상관이 있음
- ② 수산물 판매증가와 상관이 없음 ()

11-1 ①에 해당되는 %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사회·문화·환경** 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5	4	3	2	1
2. 지역의 이미지가 향상될 것이다.	5	4	3	2	1
3.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5	4	3	2	1
4. 마을의 전통문화를 발굴·보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5	4	3	2	1
5. 마을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5	4	3	2	1

13. 마지막으로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조언 또는 희망사항 등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남 ②여
2. 귀하의 연령은? 만()세
3. 귀하가 본 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년
4. 귀하는 어촌계원입니까? ①예 ②아니오

면접원 사후 기록사항 (응답자의 선택사항)			
면접 장소			
면접원 성명		면접일시	2008년 ____월 ____일

■ 어항개발사업 관련 설문지

가. 국가어항 관리자(공무원) 만족도 조사 설문지

접근문	공무원 대상 만족 조사 2010. 12.			
<p>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46-3에 위치한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서 일하고 있는 조사원 000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의뢰로 국가어항 개발사업 관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국가 어항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필요사항 및 수요자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p> <p>본 조사에 대한 응답내용은 수치화되어 통계처리 되기 때문에 응답자 분에 관한 사항 등이 노출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귀하의 협조는 우리나라 국가어항 건설정책에 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 다음 사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보통이다’를 4점, ‘매우 그렇다’를 7점으로 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 선생님께서는 국가어항 개발사업 내용을 대체로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 |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② |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 보통이다
④ | 그런
편이다
⑤ | 대체로
그렇다
⑥ | 매우
그렇다
⑦ | 모름/
무응답
⑧ |
|----------------------|-----------------------|-----------------------|-----------|----------------|-----------------|----------------|-----------------|

2. 선생님께서는 국가어항 개발사업 내용이 어업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② |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 보통이다
④ | 그런
편이다
⑤ | 대체로
그렇다
⑥ | 매우
그렇다
⑦ | 모름/
무응답
⑧ |
|----------------------|-----------------------|-----------------------|-----------|----------------|-----------------|----------------|-----------------|

3. 선생님께서는 어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국가어항 개발사업이 어촌의 활성화 방향에 꼭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② |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 보통이다
④ | 그런
편이다
⑤ | 대체로
그렇다
⑥ | 매우
그렇다
⑦ | 모름/
무응답
⑧ |
|----------------------|-----------------------|-----------------------|-----------|----------------|-----------------|----------------|-----------------|

4. 선생님께서는 국가어항 개발사업 현재 진행 수준은 어촌계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② |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 보통이다
④ | 그런
편이다
⑤ | 대체로
그렇다
⑥ | 매우
그렇다
⑦ | 모름/
무응답
⑧ |
|----------------------|-----------------------|-----------------------|-----------|----------------|-----------------|----------------|-----------------|

5. 선생님께서는 국가어항 개발사업이 완공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될 경우 선생님이 사시는 어촌 뿐 아니라 우리나라 어촌 개발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② |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 보통이다
④ | 그런
편이다
⑤ | 대체로
그렇다
⑥ | 매우
그렇다
⑦ | 모름/
무응답
⑧ |
|----------------------|-----------------------|-----------------------|-----------|----------------|-----------------|----------------|-----------------|

6. 선생님께서는 국가어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충분히 지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② |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 보통이다
④ | 그런
편이다
⑤ | 대체로
그렇다
⑥ | 매우
그렇다
⑦ | 모름/무응
답
⑧ |
|----------------------|-----------------------|-----------------------|-----------|----------------|-----------------|----------------|-----------------|

7. 선생님께서는 국가어항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② |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 보통이다
④ | 그런
편이다
⑤ | 대체로
그렇다
⑥ | 매우
그렇다
⑦ | 모름/
무응답
⑧ |
|----------------------|-----------------------|-----------------------|-----------|----------------|-----------------|----------------|-----------------|

8. 선생님께서는 국가어항 개발사업을 통해 현재 선생님이 속한 어촌 및 어항 활성화를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② |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 보통이다
④ | 그런
편이다
⑤ | 대체로
그렇다
⑥ | 매우
그렇다
⑦ | 모름/
무응답
⑧ |
|----------------------|-----------------------|-----------------------|-----------|----------------|-----------------|----------------|-----------------|

9. 선생님께서는 국가어항 개발사업을 통해 어업활동이 편리하게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② |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 보통이다
④ | 그런
편이다
⑤ | 대체로
그렇다
⑥ | 매우
그렇다
⑦ | 모름/
무응답
⑧ |
|----------------------|-----------------------|-----------------------|-----------|----------------|-----------------|----------------|-----------------|

10. 선생님께서는 국가어항 개발사업을 통해 어업활동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② |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 보통이다
④ | 그런
편이다
⑤ | 대체로
그렇다
⑥ | 매우
그렇다
⑦ | 모름/
무응답
⑧ |
|----------------------|-----------------------|-----------------------|-----------|----------------|-----------------|----------------|-----------------|

11. 선생님께서는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국가어항개발 사업은 향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② |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 보통이다
④ | 그런
편이다
⑤ | 대체로
그렇다
⑥ | 매우
그렇다
⑦ | 모름/
무응답
⑧ |
|----------------------|-----------------------|-----------------------|-----------|----------------|-----------------|----------------|-----------------|

12.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 측면에서 앞으로 추가되거나 고쳐나가야 할 점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 끝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국가어항 이용자(지역주민) 만족도 조사 설문지

접근문	국가어항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2010. 12.			
<p>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46-3에 위치한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서 일하고 있는 조사원 000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의뢰로 국가어항의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국가 어항 이용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필요사항 및 수요자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p> <p>본 조사에 대한 응답내용은 수치화되어 통계처리 되기 때문에 응답자 분에 관한 사항 등이 노출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귀하의 협조는 우리나라 다기능 어항 건설정책에 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SQ1. 선생님 본인이나, 가족 중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조사 실시) ② 없다 (☞ 조사 중단)

SQ2. 선생님께서는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 (1) 강화군 (2) 용진군 (3) 보령시 (4) 서산시 (5) 서천군 (6) 태안군
 (7) 홍성군 (8) 고창군 (9) 군산시 (10) 부안군 (11) 강진군 (12) 고흥군
 (13) 신안군 (14) 여수시 (15) 영광군 (16) 완도군 (17) 장흥군 (18) 진도군
 (19) 해남군 (20) 거제시 (21) 경남 고성군 (22) 남해군 (23) 마산 합포구
 (24) 사천시 (25) 통영시 (26) 기장군 (27) 부산 사하구 (28) 울산 동구
 (29) 울산 북구 (30) 경주시 (31) 영덕군 (32) 울릉군 (33) 울진군
 (34) 포항시 (35) 강릉시 (36) 강원도 고성군 (37) 삼척시 (38) 속초시
 (39) 양양군 (40) 서귀포시 (41) 제주도

SQ3. 선생님께서 주로 이용하는 항구는 어디입니까?

- (1) 강화군 거주자 ① 어유정
 (2) 용진군 거주자 ① 장봉 ② 선진포 ③ 덕적도 ④ 울포

- (3) 보령시 거주자 ①오천 ② 외연도
- (4) 서산시 거주자 ① 삼길포
- (5) 서천군 거주자 ① 홍원
- (6) 태안군 거주자 ① 안흥 ② 모항
- (7) 홍성군 거주자 ① 남당
- (8) 고창군 거주자 ① 구시포
- (9) 군산시 거주자 ① 말도 ② 어청도 ③ 연도
- (10) 부안군 거주자 ① 격포 ② 위도
- (11) 강진군 거주자 ① 마량
- (12) 고흥군 거주자 ① 녹동 ② 풍남 ③ 시산 ④ 발포 ⑤ 여호
- (13) 신안군 거주자 ① 우이도 ② 원평 ③ 전장포 ④ 소흑산도
- (14) 여수시 거주자 ① 국동 ② 안도 ③ 연도 ④ 돌산 ⑤ 초도 ⑥ 낭도
- (15) 영광군 거주자 ① 안마 ② 계마
- (16) 완도군 거주자 ① 사동 ② 도장 ③ 보옥 ④ 소안 ⑤ 득암 ⑥ 청산도
⑦ 여서
- (17) 장흥군 거주자 ① 회진
- (18) 진도군 거주자 ① 수품 ② 서망 ③ 서거차
- (19) 해남군 거주자 ① 어란진
- (20) 거제시 거주자 ① 다대다포 ② 대포 ③ 능포 ④ 구조라 ⑤ 지세포
⑥ 외포
- (21) 경남 고성군 거주자 ① 맥전포
- (22) 남해군 거주자 ① 미조 ② 물건
- (23) 마산 합포구 거주자 ① 원전 ② 광암
- (24) 사천시 거주자 ① 신수
- (25) 통영시 거주자 ① 능양 ② 삼덕 ③ 옥지 ④ 매물도 ⑤ 호두
- (26) 기장군 거주자 ① 대변
- (27) 부산 사하구 거주자 ① 다대포
- (28) 울산 동구 거주자 ① 방어진

- (29) 울산 북구 거주자 ① 정자
- (30) 경주시 거주자 ① 감포 ② 읍천
- (31) 영덕군 거주자 ① 강구 ② 구계 ③ 대진 ④ 축산
- (32) 울릉군 거주자 ① 현포 ② 남양 ③ 저동
- (33) 울진군 거주자 ① 구산 ② 사동 ③ 오산 ④ 죽변
- (34) 포항시 거주자 ① 대포 ② 양포
- (35) 강릉시 거주자 ① 안목 ② 사천진 ③ 금진
- (36) 강원도 고성군 거주자 ① 거진 ② 공현진 ③ 아야진 ④ 대진
- (37) 삼척시 거주자 ① 궁촌 ② 덕산 ③ 장호 ④ 임원
- (38) 속초시 거주자 ① 대포
- (39) 양양군 거주자 ① 수산 ② 남애
- (40) 서귀포시 거주자 ① 위미 ② 모슬포 ③ 하효
- (41) 제주시 거주자 ① 김녕 ② 도두 ③ 신양

1.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이 사시는 지역에서 000항이 개발되고 있다(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 다음 사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보통이다’를 4점, ‘매우 그렇다’를 7점으로 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2. 선생님께서는 선생님 사시는 지역에서 수행중인 000항 개발사업 내용을 대체로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주로 이용하는 어항 이름을 불러줄 것)

- |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그런
편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모름/
무응답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3. 선생님께서는 선생님 사시는 지역에서 수행중인 000항 개발사업의 내용이 어업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② |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 보통이다
④ | 그런
편이다
⑤ | 대체로
그렇다
⑥ | 매우
그렇다
⑦ | 모름/
무응답
⑧ |
|----------------------|-----------------------|-----------------------|-----------|----------------|-----------------|----------------|-----------------|

4.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이 사시는 어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000항 개발사업이 어촌의 활성화 방향에 꼭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② |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 보통이다
④ | 그런
편이다
⑤ | 대체로
그렇다
⑥ | 매우
그렇다
⑦ | 모름/
무응답
⑧ |
|----------------------|-----------------------|-----------------------|-----------|----------------|-----------------|----------------|-----------------|

5. 선생님께서는 선생님께서 사시는 어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000항 개발사업의 현재 진행 수준은 어촌계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② |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 보통이다
④ | 그런
편이다
⑤ | 대체로
그렇다
⑥ | 매우
그렇다
⑦ | 모름/
무응답
⑧ |
|----------------------|-----------------------|-----------------------|-----------|----------------|-----------------|----------------|-----------------|

6. 선생님께서는 000항 개발사업이 완공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될 경우 선생님이 사시는 어촌 뿐 아니라 우리나라 어촌 개발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② |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 보통이다
④ | 그런
편이다
⑤ | 대체로
그렇다
⑥ | 매우
그렇다
⑦ | 모름/
무응답
⑧ |
|----------------------|-----------------------|-----------------------|-----------|----------------|-----------------|----------------|-----------------|

7. 선생님께서 사시는 어촌의 경우 000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충분히 지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② |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 보통이다
④ | 그런
편이다
⑤ | 대체로
그렇다
⑥ | 매우
그렇다
⑦ | 모름/
무응답
⑧ |
|----------------------|-----------------------|-----------------------|-----------|----------------|-----------------|----------------|-----------------|

8. 선생님께서는 000항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② |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 보통이다
④ | 그런
편이다
⑤ | 대체로
그렇다
⑥ | 매우
그렇다
⑦ | 모름/
무응답
⑧ |
|----------------------|-----------------------|-----------------------|-----------|----------------|-----------------|----------------|-----------------|

9. 선생님께서는 000항 개발사업을 통해 현재 선생님이 속한 어촌 및 어항 활성화를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② |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 보통이다
④ | 그런
편이다
⑤ | 대체로
그렇다
⑥ | 매우
그렇다
⑦ | 모름/
무응답
⑧ |
|----------------------|-----------------------|-----------------------|-----------|----------------|-----------------|----------------|-----------------|

10. 선생님께서는 국가어항 개발사업을 통해 어업활동이 편리하게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② |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 보통이다
④ | 그런
편이다
⑤ | 대체로
그렇다
⑥ | 매우
그렇다
⑦ | 모름/
무응답
⑧ |
|----------------------|-----------------------|-----------------------|-----------|----------------|-----------------|----------------|-----------------|

11. 선생님께서는 국가어항 개발사업을 통해 어업활동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대체로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⑦ 모름/무응답 ⑧

12. 선생님께서는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국가어항개발 사업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대체로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⑦ 모름/무응답 ⑧

※ 선생님께서 이용하시는 국가어항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선생님께서 느끼신 만족도를 ‘매우 불만족한다’를 1점, ‘보통이다’를 4점, ‘매우 만족한다’를 7점으로 하여 평가해주시시오.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불만족	보통이다	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모름/무응답
13. 거주하시는 지역의 국가어항 건설관련 예산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4. 방파제, 선착장, 어구보전시설, 보급시설, 수산물 유통판매/처리/가공 시설 등 어항시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5. 어항건설 공사기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6. 국가어항 및 어항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작업의 효율성이 높아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7. 000항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 측면에서 앞으로 추가되거나 고쳐나가야 할 점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 끝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다기능어항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설문지

접근문	다기능 어항 이용자 만족도 조사 2010. 12.			
<p>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46-3에 위치한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서 일하고 있는 조사원 000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의뢰로 다기능어항건설사업의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다기능어항 정책고객인 방문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필요사항 및 수요자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p> <p>본 조사에 대한 응답내용은 수치화되어 통계처리 되기 때문에 응답자 분에 관한 사항 등이 노출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귀하의 협조는 우리나라 다기능 어항 건설정책에 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SQ1. 선생님 지역에서는 현재 다기능어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기능어항이 개발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p>1. '예'라고 대답한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설문에 들어간다.</p> <p>2.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을 설명한 후 설문에 들어간다.</p> <p><사업의 내용></p> <p>정부에서는 어촌지역의 소득 다양화 및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목적으로 다기능어항을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기능 어항개발 대상은 전국에 13개항이 선정되어 개발되었거나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선생님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p>
--

SQ2. 선생님은 ○○항과 관련된 지역에 거주하십니까? 아니면 ○○항과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십니까?

- ① ○○항과 관련된 지역에 거주한다. (⇨ 본격적인 질문 1번으로 이동)
- ② ○○항과 떨어진 지역에 거주한다. (⇨ 본격적인 질문 10번으로 이동)

- ① 강화군(어유정항)
- ② 서천군(홍원항)
- ③ 부안군(격포항)
- ④ 강진군(마량항)
- ⑤ 여수시(국동항)
- ⑥ 거제시(지세포항)
- ⑦ 고성군(맥전포항)
- ⑧ 기장군(대변항)
- ⑨ 울산 북구(정자항)
- ⑩ 포항시(양포항)
- ⑪ 강릉시(안목항)
- ⑫ 속초시(대포항)
- ⑬ 서귀포시(모슬포항)

< 본격적인 질문 >

1. 선생님 지역에서는 현재 다기능어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기능어항개발 사업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자세히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대체로 알지 못하고 있다.
- ⑤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

2. 선생님 지역은 다기능어항 개발 전(2004년)과 후를 비교할 때 인구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증가 ② 대체로 증가 ③ 불변 ④ 대체로 감소 ⑤ 매우 감소

3. 선생님 지역은 다기능어항 개발 전(2004년)과 후를 비교할 때 어업 소득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증가 ② 대체로 증가 ③ 불변 ④ 대체로 감소 ⑤ 매우 감소

4. 선생님 지역은 다기능어항 개발 전(2004년)과 후를 비교할 때 관광 소득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증가 ② 대체로 증가 ③ 불변 ④ 대체로 감소 ⑤ 매우 감소
5. 선생님 지역은 다기능어항 개발 전(2004년)과 후를 비교할 때 관광객 수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증가 ② 대체로 증가 ③ 불변 ④ 대체로 감소 ⑤ 매우감소
6. 선생님 지역은 다기능어항 개발 전(2004년)과 후를 비교할 때 생활 시설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개선 ② 대체로 개선 ③ 불변 ④ 대체로 악화 ⑤ 매우 악화
7. ○○항의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충분히 지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충분하였다.
② 다소 충분하였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다소 부족하였다.
⑤ 매우 부족하였다.
8.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의 행정력은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②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9.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을 통해 현재 선생님이 속한 지역의 소득증대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다.
- ② 대체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그다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⑤ 소기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였다.

☞ 본격적인 질문 20번으로 이동

10. 앞에서 설명해 드린 다기능어항 개발 사업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매우 많이 들어보았다.
- ② 자세히는 아니지만 들어보았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설문 끝)
- 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설문 끝)

11. 선생님은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중이나 완료된 후(2004년 이후)에 ○○항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자주 방문해 보았다.
- ② 한 두 번 방문해 보았다.
- ③ 기억이 없다. (⇨ 20번으로 이동)
- ④ 전혀 방문한 사실이 없다. (⇨ 20번으로 이동)

12. 방문하셨다면 ○○항까지 오시는 교통 편의은 어떠하엿습니까?
① 매우 편리 ② 대체로 편리 ③ 보통 ④ 대체로 불편 ⑤ 매우 불편
13. 방문하셨다면 ○○항에 대해 느끼신 주차장/안내센터 등 방문객 편의시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4. 방문하셨다면 ○○항에 대해 느끼신 화장실/광장/오락시설 등 휴게시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5. 방문하셨다면 ○○항에 대해 느끼신 특산품 판매장/음식점 등 관광시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6. 방문하셨다면 ○○항에서 휴양 및 여가행위를 즐기신 경험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7. 선생님께서는 ○○항 인근에서 숙박을 하셨습니까? 숙박을 하셨다면 숙박시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⑥ 숙박해 본 경험이 없다.

18. 선생님께서 ○○항을 방문하시어 지출하신 액수를 다음 항목에 따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식사 및 주류비를 포함한 식비 ()만원
- ② 숙박비 ()만원
- ③ 유람선 승선요금/주차료 등 기타요금 ()만원

19. 다음에 다시 방문하시고 싶거나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0.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이 어촌지역의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22번으로 이동)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22번으로 이동)

21. 다기능어촌 개발사업이 어촌지역의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한 수준이다.
- ② 대체로 적절한 수준이다.
- ③ 보통 수준이다.
- ④ 대체로 부족한 수준이다.
- ⑤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22.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이 다른 항에 지속적으로 수행될 경우 우리나라 어촌의 소득증대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은 기여할 것이다.
- ② 조금은 기여할 것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그다지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 ⑤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23. 다기능어항 활성화를 위해 정책 측면에서 앞으로 추가되거나 고쳐나가야 할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끝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 지방어항 이용자(지역주민) 만족도 조사 설문지

접근문	지방어항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2010. 12.			
<p>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46-3에 위치한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리서치엔 리서치에서 일하고 있는 조사원 000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의뢰로 <u>지방어항의 수요자 만족도 조사</u>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지방어항 이용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필요사항 및 수요자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p> <p>본 조사에 대한 응답내용은 수치화되어 통계처리 되기 때문에 응답자 분에 관한 사항 등이 노출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귀하의 협조는 우리나라 다기능 어항 건설정책에 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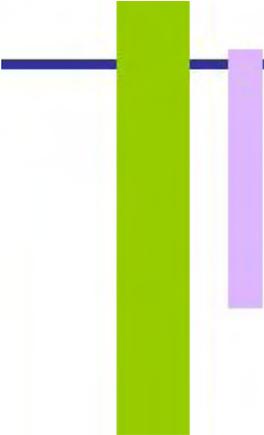
1.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이 사시는 지역에서 000항이 개발되고 있다(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2. 선생님께서는 선생님 사시는 지역에서 수행중인 000항 개발사업 내용을 대체로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 | | | |
|---------------------|----------------------------|--------|
| 내용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 | 자세히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 그저 그렇다 |
| ① | ② | ③ |

- | | | |
|----------------------------|---------------------------|--------|
| 어떤 내용인지 대체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어떤 내용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모름/무응답 |
| ④ | ⑤ | ⑥ |



**부록-3. 다기능어항개발 성과 모니터링 및
성과지표 개발 조사표**

3. 선생님께서는 선생님 사시는 지역에서 수행중인 000항 개발사업의 내용이 어업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이해하기 쉽고 명확했다
① | 대체로 쉽고 명확한
편이었다
② | 그저 그렇다
③ |
| 그다지 쉽거나 명확하지
않았다
④ | 전혀 쉽거나 명확하지
않았다
⑤ | 모름/무응답
⑥ |

4.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이 사시는 어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선생님 어촌의 활성화 방향에 꼭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선생님 사시는 어촌에는 그다지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우리 어촌의 활성화 방향에
매우 적합하다
① | 우리 어촌의 활성화 방향에
어느 정도 적합하다
② | 그저 그렇다
③ |
| 우리 어촌의 활성화 방향과는
다소 적합하지 않다
④ | 우리 어촌의 활성화 방향과
거리가 매우 멀다
⑤ | 모름/무응답
⑥ |

5. 선생님께서는 선생님께서 사시는 어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000항 개발사업의 현재 진행 수준은 어촌계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매우 적절
① | 대체로
적절
② | 보통
③ | 대체로
부족
④ | 매우 부족
⑤ | 모름/무응답
⑥ |
|------------|----------------|---------|----------------|------------|-------------|

6. 선생님께서는 000항 개발사업이 완공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될 경우 선생님이 사시는 어촌 뿐 아니라 우리나라 어촌 개발 및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많이 | 조금 | 그저
그렇게 | 그다지
않되 | 전혀
않되 | 모름/무응답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7. 선생님께서 사시는 어촌의 경우 000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충분히 지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매우 충분 | 다소 충분 | 그저
그렇다 | 다소 부족 | 매우 부족 | 모름/무응답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8. 선생님께서는 000항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업인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매우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편이다 | 대체로 반영하는 편이다 | 그저
그렇다 |
| ① | ② | ③ |
| 그다지 반영하지 못했다 |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 모름/무응답 |
| ④ | ⑤ | ⑥ |

9. 000항 개발사업을 통해 현재 선생님이 속한 어촌 및 어항 활성화를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다 | 대체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 그저
그렇다 |
| ① | ② | ③ |
| 그다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소기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였다 | 모름/무응답 |
| ④ | ⑤ | ⑥ |

10. 선생님께서는 00항 개발사업을 통해 어업활동이 편리하게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매우 편리하게 개선되었다. | 대체로 편리하게 개선되었다. | 그저 그렇다 |
| ① | ② | ③ |
| 그다지 편리하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편리하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 모름/무응답 |
| ④ | ⑤ | ⑥ |

11. 선생님께서는 00항 개발사업을 통해 어업활동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매우 향상되었다. | 대체로 향상 되었다. | 그저 그렇다 |
| ① | ② | ③ |
| 그다지 향상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향상되지 못하였다 | 모름/무응답 |
| ④ | ⑤ | ⑥ |

12. 선생님께서는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방어항개발 사업은 향후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크게 강화 | 조금 강화 | 현재 수준 유지 | 조금 완화 | 크게 완화 | 모름/무응답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17. 000항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 측면에서 앞으로 추가되거나 고쳐나가야 할 점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 끝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 3 다기능어항개발 성과 모니터링 및
성과지표 개발 조사표**

**다기능어항개발 성과 모니터링 및
성과지표 개발 조사표**

2011. 2

수행기관 : 한국어촌어항협회, 전남대학교

제 1 장. 조사 개요

I.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지역주민, 지자체 공무원 및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의 신축 품질, 신축 결과, 비용효율성, 비용효과성 등에 근거하여 사업의 수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성과도너터링조사로써,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이 지향하는 목적을 보다 더 훌륭히 성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II. 주요 조사 내용

추진목표	추진과제	세부과제	지표	단위	공간단위	시간단위	자료출처	비고
수산업 지원기능	어업생산기반시설확충	어촌계 발전잠재력						
		수산업 잠재력 제고						
관광 복합공간	기반시설계획 관광프로그램	관광객 여가·휴식공간						
		체험관광프로그램						
어업인 소득향상	어업 소득 향상 어업의 소득 향상	새로운 관광부트 확립						
		수산업 소득						
		관광 소득						

○ 해당 시·군 전체 통계와 어촌어항개발사업 대상 권역어촌계 또는 면 단위로 기술

제 2 장. 지표별 세부 조사내용

I. 수산업 지원 기능

추진과제	세부과제	용도별	지표	단위	공간단위	시간단위	비고
어업생산기반시설확충	어촌계 발전잠재력 (권역, 중심어촌계)	수혜대상	총인구	명	권역	1년	주민등록자료
			어촌계원/비율	명%	권역	1년	자체 통계연보
		성장성	창강년 인구/비율	명%	권역	1년	주민등록자료(20~49세)
			인구증감률	%	권역	1년	주민등록자료

추진과제	세부과제	용도별	지표	단위	공간단위	시간단위	비고
어업생산기반시설확충	수산업 잠재력	자원 잠재력	어업생산량	톤/년	권역	1년	해양수산과
			어업생산액	백만원	권역	1년	해양수산과
		시설 소요	어업권수	건	권역	1년	해당 지자체
			어선수	척	권역	1년	
		어항 시설	어항인수	인	권역	1년	
			어항수	개소	권역	현재	국가/지방/소규모
			어항개발	%	권역	1년	어항개발-실적/계획
			유통 가공시설	수산물 유통시설	개소	권역	1년
수산물 가공시설	개소	권역		1년	수협		
	공동시설 보유수	개소	권역	1년			

추진과제	세부과제	지표	단위	공간단위	시간단위	비고
원활한 어업활동	육상기능시설 설치	위판장 및 창고시설의 규모	m'	권역	1년	
		보급시설/아작장의 규모	m'	권역	1년	
		낚시 등 관광복지시설/주차장	m'	권역	현재	
안전한 어업활동	어선대피	어선입출항 척수	척	권역	1년	연간 입출항 총 척수
		황천시 대피 선박수	척	권역	1년	

II. 해양관광·유통·문화복지 등 복합적 기능 수행

추진과제	세부과제	응도별	지표	단위	공간단위	시간단위	비고
관광 기반시설 확충	어촌 체험 잠재력	여가 휴식시설	숙박업소의 수	개소	권역	1년	
			음식점의 수	개소	권역	1년	
			관광객용 근린시설	개소	권역	1년	1종근린시설/2종근린시설
		공동시설	유통시설의 수	개소	권역	1년	
			공중 편의시설	개소	권역	1년	주차장, 화장실 등
			관광·레저공간	m'	권역	1년	
	기존관광시설		탈방안내소	개,㎡	권역	1년	
			관광시설의 수	개소	권역	1년	
	교통/교육 문화시설		자정 관광자원 수	%	권역	1년	국가지정/지방지정
			도로연장	km	권역	1년	고속도로/국도/지방도/
			문화시설의 수	개소	권역	1년	
			교통편 회수	개소	권역	1년	

-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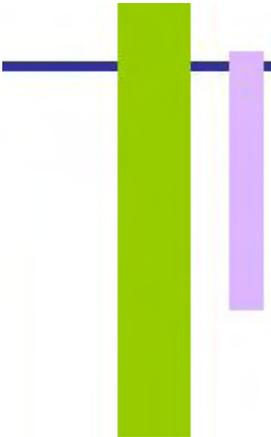
추진과제	세부과제	지표	단위	공간단위	시간단위	비고	
관광시설 및 이용객	체험관광 시설의 개발	어업 체험시설의 수	개소	권역	1년	바다낚시/김양식/어선어업	
		휴양·건강 체험시설의 수	개소	권역	1년	해수욕/모래찜질/캠핑	
		생태관광 체험시설의 수	개소	권역	1년	모래 갯벌 체험	
		전통문화 체험시설의 수	개소	권역	1년	지역의 명소	
		자연감상 체험시설의 수	개소	권역	1년	자연경관	
	관광객의 수		어업체험 관광객의 수	명	권역	1년	바다낚시/김양식/어선어업
			휴양·건강체험 관광객의 수	명	권역	1년	해수욕/모래찜질/캠핑
			생태관광체험 관광객의 수	명	권역	1년	모래 갯벌 체험
			전통문화체험 관광객의 수	명	권역	1년	지역의 명소
			자연감상체험 관광객의 수	명	권역	1년	자연경관

III. 어업인 소득 창출 기회 제공

추진과제	세부과제	지표	단위	공간단위	시간단위	비고
어업소득향상	어업소득	어가구	호	권역	1년	
		호당 어가소득	백만원	권역	1년	
		어업 유형	-	권역	현재	어선3, 복합2, 양식1
어업의 소득 향상	관광 이용률	관광시설 이용 수준	-	권역	1년	당일/1박
		지역 관광소득	백만원	권역	1년	

- 4 -

- 총 지표수: 46개(다기능어항 관련 지표만 고려)
 - 지표의 수는 너무 적거나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음
 - 지표의 수가 너무 적으면 올바른 평가를 내리기에 불충분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반면 그 수가 너무 많으면 서로 상충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지표의 발생으로 인해 혼돈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음
 - 외국 사례: 통상 미국에서는 50개, 캐나다에서는 90개의 지표를 채택하고 있음
- 조사 방법: 해당 지자체에 대한 직접 조사 수행
- 작성 연도: 최근 5년간 혹은 3년간



부록-4. 만족도 조사 통계표

어촌 · 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용역 만족도 조사 통계표



2010. 12

■■■■■ 목 차 ■■■■■

1. 국가어항 이용자	1
2. 다기능어항 이용자	46
3. 국가어항 관리 공무원	61
4. 지방어항 이용자	68
5. 어촌종합개발사업 이용자	78
6. 어촌종합개발사업 관리 공무원	101
7.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이용자	106
8.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리 공무원	118
9.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이용자	124
10.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관리 공무원	145

1. 국가어항 이용자

【 응 답 자 특 성 표 】

	X	
	사례수	%
■ 전 체 ■	1166	100.0%
■ 권역별 ■		
■ 수도권	355	30.4%
■ 충청권	575	49.3%
■ 남부권	236	20.2%
■ 도시/시군구별 ■		
■ 서울	60	5.1%
■ 인천	113	9.7%
■ 경기	118	10.1%
■ 충청	412	35.3%
■ 남부	172	14.8%
■ 부산	17	1.5%
■ 경남	10	.9%
■ 제주	131	11.2%
■ 강원	95	8.1%
■ 경북	38	3.3%
■ 거주지역 ■		
■ 지역내	1128	96.7%
■ 지역외	38	3.3%
■ 어항별 ■		
■ 어항1	8	.7%
■ 어항2	12	1.0%
■ 어항3	14	1.2%
■ 어항4	15	1.3%
■ 어항5	4	.3%
■ 어항6	20	1.7%
■ 어항7	5	.4%
■ 어항8	7	.6%
■ 어항9	22	1.9%
■ 어항10	22	1.9%
■ 어항11	23	2.0%
■ 어항12	10	.9%
■ 어항13	11	.9%
■ 어항14	34	2.9%
■ 어항15	14	1.2%
■ 어항16	16	1.4%
■ 어항17	27	2.3%
■ 어항18	16	1.4%
■ 어항19	20	1.7%
■ 어항20	40	3.4%
■ 어항21	10	.9%
■ 어항22	6	.5%
■ 어항23	5	.4%
■ 어항24	4	.3%
■ 어항25	10	.9%
■ 어항26	14	1.2%
■ 어항27	15	1.3%
■ 어항28	9	.8%
■ 어항29	14	1.2%
■ 어항30	10	.9%
■ 어항31	3	.3%
■ 어항32	35	3.0%
■ 어항33	6	.5%
■ 어항34	8	.7%
■ 어항35	6	.5%
■ 어항36	10	.9%
■ 어항37	15	1.3%
■ 어항38	12	1.0%
■ 어항39	5	.4%
■ 어항40	21	1.8%
■ 어항41	10	.9%
■ 어항42	30	2.6%
■ 어항43	3	.3%
■ 어항44	21	1.8%
■ 어항45	12	1.0%
■ 어항46	12	1.0%
■ 어항47	28	2.4%
■ 어항48	4	.3%
■ 어항49	14	1.2%

	X	
	사례수	%
■ 전 체 ■	1166	100.0%
다	11	.9%
대	4	.3%
다	12	1.0%
포	18	1.5%
포	17	1.5%
포	17	1.5%
포	8	.7%
포	7	.6%
조	18	1.5%
전	6	.5%
전	7	.6%
양	6	.5%
수	5	.4%
영	5	.4%
덕	4	.3%
지	17	1.5%
부	3	.3%
두	3	.3%
별	4	.3%
보	6	.5%
진	4	.3%
자	6	.5%
포	8	.7%
침	6	.5%
구	11	.9%
계	6	.5%
진	6	.5%
산	6	.5%
포	19	1.6%
양	6	.5%
동	21	1.8%
산	5	.4%
동	4	.3%
산	6	.5%
면	11	.9%
포	9	.8%
목	7	.6%
진	6	.5%
진	5	.4%
진	5	.4%
진	11	.9%
진	4	.3%
진	6	.5%
진	9	.8%
진	4	.3%
진	8	.7%
출	7	.6%
산	9	.8%
회	4	.3%
원	7	.6%
포	7	.6%
산	10	.9%
애	7	.6%
미	7	.6%
포	3	.3%
회	7	.6%
부	11	.9%
부	4	.3%
양	7	.6%
양	4	.3%
양	7	.6%
양	4	.3%
양	7	.6%
양	4	.3%

【 표 1 】 거주지 국가어항 개발 인지

[문 1]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이 사시는 지역에서 000항이 개발되고 있다(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 무응답	X
		%	%	%	계
다대포대교	(11)	54.5	36.4	9.1	100.0
	(4)	75.0	25.0	.0	100.0
	(12)	33.3	66.7	.0	100.0
	(18)	83.3	16.7	.0	100.0
	(17)	94.1	.0	5.9	100.0
	(17)	29.4	58.8	11.8	100.0
	(8)	50.0	37.5	12.5	100.0
	(7)	42.9	57.1	.0	100.0
	(18)	77.8	22.2	.0	100.0
	(6)	33.3	66.7	.0	100.0
	(7)	100.0	.0	.0	100.0
	(6)	66.7	33.3	.0	100.0
	(5)	40.0	60.0	.0	100.0
	(5)	100.0	.0	.0	100.0
	(4)	75.0	.0	25.0	100.0
	(17)	58.8	35.3	5.9	100.0
	(3)	33.3	66.7	.0	100.0
	(3)	66.7	33.3	.0	100.0
	(4)	100.0	.0	.0	100.0
	대여	(6)	100.0	.0	.0
(4)		100.0	.0	.0	100.0
(6)		100.0	.0	.0	100.0
(8)		75.0	12.5	12.5	100.0
(6)		33.3	66.7	.0	100.0
(11)		90.9	9.1	.0	100.0
(6)		33.3	66.7	.0	100.0
(6)		83.3	16.7	.0	100.0
(6)		50.0	50.0	.0	100.0
(19)		89.5	10.5	.0	100.0
전	(6)	83.3	16.7	.0	100.0
	(21)	71.4	28.6	.0	100.0
	(5)	40.0	60.0	.0	100.0
	(4)	100.0	.0	.0	100.0
	(6)	100.0	.0	.0	100.0
	(11)	90.9	.0	9.1	100.0
	(9)	55.6	33.3	11.1	100.0
	(7)	100.0	.0	.0	100.0
	(6)	100.0	.0	.0	100.0
	(5)	.0	100.0	.0	100.0
현야	(5)	40.0	40.0	20.0	100.0
	(11)	45.5	18.2	36.4	100.0
	(4)	75.0	.0	25.0	100.0
	(6)	83.3	16.7	.0	100.0
	(9)	55.6	44.4	.0	100.0
	(4)	100.0	.0	.0	100.0
	(8)	50.0	50.0	.0	100.0
	(7)	28.6	57.1	14.3	100.0
	(9)	55.6	44.4	.0	100.0
	(4)	100.0	.0	.0	100.0
수	(7)	71.4	28.6	.0	100.0
	(10)	50.0	50.0	.0	100.0
	(7)	57.1	28.6	14.3	100.0
	(6)	66.7	33.3	.0	100.0
	(3)	33.3	.0	66.7	100.0
	(7)	57.1	42.9	.0	100.0
	(11)	63.6	36.4	.0	100.0
	(4)	75.0	25.0	.0	100.0
	(7)	85.7	14.3	.0	100.0
	(4)	75.0	25.0	.0	100.0
기	(7)	71.4	28.6	.0	100.0
	(4)	100.0	.0	.0	100.0

【 표 2 】 어항 개발사업 내용 이해 정도

[문 2] 선생님께서는 선생님 사시는 지역에서 수행중인 000항 개발사업 내용을 대체로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 반드시 주로 이용하는 어항 이름을 불러줄 것)

Table with 16 columns: Item, Sample Size, and 14 Likert Scale categories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무응답, *부정*, *보통*, *긍정*, X, MQ02). Rows include categories like '전체', '권해별', '인견/시경도', '제주지역', and various '어항' types.

[계 속]

【 표 2 】 어항 개발사업 내용 이해 정도

[문 2] 선생님께서는 선생님 사시는 지역에서 수행중인 000항 개발사업 내용을 대체로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 반드시 주로 이용하는 어항 이름을 불러줄 것)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부정*	*보통*	*긍정*	X	MQ02
		%	%	%	%	%	%	%	%	%	%	%	계	*평균*
다대포대	(11)	18.2	18.2	9.1	18.2	.0	.0	9.1	27.3	45.5	18.2	9.1	100.0	33.33
	(4)	.0	.0	25.0	.0	.0	25.0	25.0	25.0	25.0	.0	50.0	100.0	72.22
	(12)	41.7	.0	16.7	8.3	16.7	8.3	.0	8.3	58.3	8.3	25.0	100.0	30.30
	(18)	11.1	11.1	11.1	22.2	5.6	16.7	16.7	5.6	33.3	22.2	38.9	100.0	53.92
	(17)	.0	.0	5.9	35.3	5.9	23.5	17.6	11.8	5.9	35.3	47.1	100.0	68.89
	(17)	5.9	5.9	.0	11.8	5.9	17.6	11.8	41.2	11.8	11.8	35.3	100.0	63.33
	(8)	12.5	37.5	.0	25.0	.0	.0	.0	25.0	50.0	25.0	.0	100.0	25.00
	(7)	14.3	.0	.0	28.6	14.3	.0	14.3	.0	28.6	14.3	28.6	100.0	53.33
	(18)	11.1	.0	5.6	22.2	5.6	.0	33.3	22.2	16.7	22.2	38.9	100.0	64.29
	(6)	33.3	16.7	.0	16.7	.0	16.7	.0	16.7	50.0	16.7	16.7	100.0	30.00
조세전	(7)	14.3	.0	.0	28.6	14.3	28.6	.0	14.3	14.3	28.6	42.9	100.0	55.56
	(6)	.0	.0	.0	50.0	16.7	16.7	.0	16.7	.0	50.0	33.3	100.0	60.00
	(5)	60.0	20.0	.0	.0	.0	.0	20.0	.0	80.0	.0	20.0	100.0	23.33
	(5)	.0	.0	.0	40.0	.0	20.0	40.0	.0	.0	40.0	60.0	100.0	76.67
	(4)	.0	.0	.0	25.0	.0	.0	25.0	50.0	.0	25.0	25.0	100.0	75.00
	(17)	11.8	5.9	17.6	35.3	.0	11.8	5.9	11.8	35.3	35.3	17.6	100.0	45.55
	(3)	33.3	.0	.0	33.3	.0	.0	.0	33.3	33.3	33.3	.0	100.0	25.00
	(3)	33.3	.0	.0	.0	.0	.0	33.3	.0	33.3	33.3	.0	100.0	41.67
	(4)	.0	.0	.0	50.0	.0	.0	50.0	.0	.0	50.0	50.0	100.0	66.66
	(6)	33.3	16.7	.0	16.7	.0	.0	.0	33.3	50.0	16.7	.0	100.0	16.67
대어	(4)	.0	.0	25.0	25.0	.0	.0	25.0	25.0	25.0	25.0	25.0	100.0	61.11
	(6)	.0	.0	16.7	16.7	16.7	.0	33.3	16.7	16.7	16.7	50.0	100.0	70.00
	(8)	.0	.0	.0	50.0	12.5	25.0	12.5	.0	.0	50.0	50.0	100.0	66.67
	(6)	16.7	.0	.0	33.3	.0	.0	.0	50.0	16.7	33.3	.0	100.0	33.33
	(11)	9.1	.0	.0	9.1	36.4	18.2	27.3	.0	9.1	9.1	81.8	100.0	71.21
	(6)	33.3	.0	.0	33.3	16.7	.0	.0	16.7	33.3	33.3	16.7	100.0	33.33
	(6)	.0	.0	16.7	16.7	16.7	16.7	33.3	.0	16.7	16.7	66.7	100.0	72.22
	(6)	16.7	.0	16.7	16.7	.0	16.7	16.7	16.7	33.3	16.7	33.3	100.0	53.33
	(19)	5.3	5.3	.0	26.3	5.3	15.8	21.1	10.5	26.3	42.1	100.0	65.56	
	(6)	33.3	.0	.0	.0	.0	.0	.0	66.7	33.3	.0	.0	100.0	.00
천	(21)	4.8	9.5	.0	14.3	19.0	.0	23.8	28.6	14.3	14.3	42.9	100.0	63.33
	(5)	.0	20.0	.0	40.0	.0	20.0	.0	20.0	40.0	20.0	20.0	100.0	50.00
	(4)	25.0	.0	.0	.0	.0	.0	75.0	.0	25.0	.0	75.0	100.0	75.00
	(6)	.0	16.7	.0	16.7	33.3	16.7	16.7	.0	16.7	16.7	66.7	100.0	63.89
	(11)	.0	.0	.0	9.1	18.2	18.2	36.4	18.2	.0	9.1	72.7	100.0	83.33
	(9)	22.2	11.1	.0	11.1	22.2	.0	11.1	22.2	33.3	11.1	33.3	100.0	42.86
	(7)	.0	.0	42.9	.0	28.6	28.6	.0	.0	42.9	.0	57.1	100.0	57.14
	(6)	.0	.0	.0	50.0	.0	.0	50.0	.0	.0	50.0	50.0	100.0	75.00
	(5)	60.0	.0	.0	.0	.0	.0	20.0	20.0	60.0	.0	20.0	100.0	25.00
	(5)	20.0	.0	.0	.0	20.0	20.0	.0	40.0	20.0	.0	40.0	100.0	50.00
항	(11)	18.2	9.1	18.2	9.1	9.1	.0	27.3	45.5	9.1	18.2	100.0	35.42	
	(4)	.0	.0	.0	25.0	.0	.0	25.0	50.0	.0	25.0	25.0	100.0	75.00
	(6)	.0	.0	.0	50.0	.0	.0	16.7	33.3	.0	50.0	16.7	100.0	62.50
	(9)	11.1	11.1	.0	.0	44.4	.0	11.1	22.2	22.2	.0	55.6	100.0	54.76
	(4)	.0	.0	25.0	25.0	25.0	25.0	.0	.0	25.0	25.0	50.0	100.0	58.33
	(8)	12.5	12.5	.0	12.5	.0	.0	25.0	37.5	25.0	12.5	25.0	100.0	53.33
	(7)	28.6	.0	14.3	57.1	.0	.0	.0	.0	42.9	57.1	.0	100.0	33.33
	(9)	22.2	.0	11.1	22.2	11.1	.0	11.1	22.2	33.3	22.2	22.2	100.0	42.86
	(4)	.0	.0	.0	.0	.0	.0	50.0	.0	50.0	.0	50.0	100.0	83.33
	(7)	42.9	.0	14.3	.0	.0	.0	.0	28.6	14.3	57.1	.0	100.0	38.89
수	(10)	20.0	.0	.0	30.0	20.0	10.0	.0	20.0	20.0	30.0	30.0	100.0	45.83
	(7)	14.3	14.3	.0	14.3	.0	14.3	14.3	28.6	28.6	14.3	28.6	100.0	50.00
	(6)	.0	.0	.0	33.3	.0	.0	33.3	33.3	.0	33.3	33.3	100.0	75.00
	(3)	33.3	.0	.0	.0	33.3	.0	.0	33.3	33.3	.0	33.3	100.0	33.34
	(7)	14.3	.0	.0	28.6	.0	.0	28.6	28.6	14.3	28.6	28.6	100.0	60.00
	(11)	27.3	.0	.0	9.1	.0	18.2	27.3	18.2	27.3	9.1	45.5	100.0	57.41
	(4)	50.0	.0	.0	.0	.0	.0	.0	25.0	50.0	.0	25.0	100.0	33.33
	(7)	14.3	28.6	.0	14.3	.0	14.3	.0	28.6	42.9	14.3	14.3	100.0	33.33
	(4)	.0	.0	25.0	.0	.0	25.0	25.0	25.0	25.0	.0	50.0	100.0	72.22
	(7)	14.3	14.3	.0	14.3	28.6	.0	14.3	14.3	28.6	14.3	42.9	100.0	50.00
(4)	.0	.0	.0	50.0	25.0	25.0	.0	.0	50.0	50.0	50.0	100.0	62.50	

【 표 3 】 어항 개발사업 내용의 어업인 이해하기 쉬운 정도

[문 3] 선생님께서는 선생님 사시는 지역에서 수행중인 000항 개발사업의 내용이 어업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무응답	*부정*	*보통*	*긍정*	X	MQ03	
		%	%	%	%	%	%	%	%	%	%	%	계	*평균*	
다대포대	(11)	9.1	9.1	.0	27.3	9.1	.0	18.2	27.3	18.2	27.3	27.3	100.0	54.17	
	(4)	.0	.0	.0	25.0	25.0	25.0	25.0	.0	.0	25.0	75.0	100.0	75.00	
	(12)	.0	.0	16.7	8.3	.0	.0	8.3	66.7	16.7	8.3	8.3	100.0	54.17	
	(18)	.0	11.1	16.7	33.3	.0	22.2	16.7	.0	27.8	33.3	38.9	100.0	59.26	
	(17)	.0	5.9	.0	23.5	17.6	5.9	17.6	29.4	5.9	23.5	41.2	100.0	66.67	
	(17)	.0	.0	.0	17.6	.0	5.9	35.3	41.2	.0	17.6	41.2	100.0	83.33	
	(8)	25.0	.0	12.5	25.0	.0	.0	.0	37.5	37.5	25.0	.0	100.0	26.67	
	(7)	.0	14.3	14.3	14.3	14.3	.0	14.3	28.6	28.6	14.3	28.6	100.0	53.33	
	(18)	.0	11.1	5.6	33.3	5.6	11.1	11.1	22.2	16.7	33.3	27.8	100.0	57.14	
	(6)	16.7	.0	16.7	.0	.0	.0	.0	16.7	50.0	33.3	.0	100.0	44.44	
조천	(7)	14.3	.0	14.3	28.6	14.3	.0	14.3	14.3	28.6	28.6	28.6	100.0	47.22	
	(6)	.0	.0	.0	33.3	.0	33.3	16.7	16.7	.0	33.3	50.0	100.0	73.33	
	(5)	20.0	.0	20.0	.0	.0	.0	.0	60.0	40.0	.0	.0	100.0	16.67	
	(5)	.0	.0	.0	40.0	20.0	.0	20.0	20.0	.0	40.0	40.0	100.0	66.67	
	(4)	.0	.0	.0	25.0	50.0	.0	.0	25.0	.0	25.0	50.0	100.0	61.11	
	(17)	11.8	5.9	5.9	29.4	11.8	11.8	11.8	11.8	23.5	29.4	35.3	100.0	53.33	
	(3)	33.3	.0	.0	.0	.0	.0	.0	33.3	33.3	33.3	.0	33.3	100.0	50.00
	(3)	.0	.0	.0	.0	.0	.0	.0	.0	100.0	.0	.0	100.0	.0	
	(4)	.0	.0	25.0	25.0	.0	.0	.0	.0	50.0	25.0	.0	100.0	41.67	
	(6)	16.7	.0	.0	16.7	.0	.0	.0	.0	66.7	16.7	.0	100.0	25.00	
대어	(4)	.0	.0	.0	50.0	25.0	25.0	.0	.0	.0	50.0	50.0	100.0	62.50	
	(6)	.0	.0	.0	50.0	16.7	.0	16.7	16.7	.0	50.0	33.3	100.0	63.33	
	(8)	12.5	.0	.0	37.5	25.0	12.5	.0	12.5	12.5	37.5	37.5	100.0	52.38	
	(6)	.0	.0	.0	.0	.0	16.7	16.7	66.7	.0	.0	33.3	100.0	91.67	
	(11)	.0	.0	.0	9.1	9.1	18.2	45.5	18.2	.0	9.1	72.7	100.0	87.04	
	(6)	16.7	.0	.0	.0	16.7	.0	33.3	33.3	16.7	.0	50.0	100.0	66.67	
	(6)	.0	.0	16.7	16.7	.0	16.7	33.3	16.7	16.7	16.7	50.0	100.0	73.33	
	(6)	16.7	16.7	.0	16.7	.0	.0	.0	50.0	33.3	16.7	.0	100.0	22.22	
	(19)	.0	.0	21.1	15.8	.0	10.5	21.1	31.6	21.1	15.8	31.6	100.0	65.38	
	(6)	16.7	.0	.0	.0	.0	16.7	16.7	50.0	16.7	.0	33.3	100.0	61.11	
천	(21)	4.8	4.8	9.5	23.8	.0	4.8	23.8	28.6	19.0	23.8	28.6	100.0	61.11	
	(5)	.0	.0	20.0	40.0	.0	.0	20.0	20.0	40.0	20.0	20.0	100.0	58.33	
	(4)	.0	25.0	25.0	.0	.0	.0	50.0	.0	50.0	.0	50.0	100.0	62.50	
	(6)	.0	16.7	.0	.0	.0	50.0	16.7	16.7	.0	66.7	100.0	73.33		
	(11)	.0	9.1	.0	36.4	9.1	.0	27.3	18.2	9.1	36.4	36.4	100.0	64.82	
	(9)	11.1	.0	.0	44.4	11.1	11.1	.0	22.2	11.1	44.4	22.2	100.0	50.00	
	(7)	.0	14.3	.0	28.6	.0	28.6	14.3	14.3	14.3	28.6	42.9	100.0	63.89	
	(6)	.0	.0	.0	16.7	.0	16.7	16.7	50.0	.0	16.7	33.3	100.0	77.78	
	(5)	.0	.0	.0	20.0	.0	.0	.0	80.0	.0	20.0	.0	100.0	50.00	
	(5)	.0	.0	.0	20.0	.0	20.0	20.0	40.0	.0	20.0	40.0	100.0	77.78	
천	(11)	.0	9.1	18.2	9.1	18.2	9.1	27.3	27.3	9.1	36.4	36.4	100.0	56.25	
	(4)	.0	.0	.0	.0	.0	.0	25.0	75.0	.0	.0	25.0	100.0	100.00	
	(6)	.0	.0	16.7	33.3	.0	.0	16.7	33.3	16.7	33.3	16.7	100.0	58.33	
	(9)	11.1	.0	.0	55.6	11.1	.0	.0	22.2	11.1	55.6	11.1	100.0	45.24	
	(4)	.0	.0	.0	25.0	.0	25.0	25.0	25.0	.0	25.0	50.0	100.0	77.78	
	(8)	.0	.0	.0	25.0	.0	.0	25.0	25.0	.0	25.0	25.0	100.0	60.00	
	(7)	14.3	14.3	14.3	28.6	.0	.0	14.3	14.3	42.9	28.6	14.3	100.0	41.67	
	(9)	11.1	11.1	.0	11.1	33.3	.0	.0	33.3	22.2	11.1	33.3	100.0	44.45	
	(4)	.0	.0	25.0	.0	.0	.0	25.0	50.0	25.0	.0	25.0	100.0	66.66	
	수	(7)	14.3	.0	.0	.0	14.3	.0	42.9	28.6	14.3	.0	57.1	100.0	73.33
(10)		.0	20.0	10.0	30.0	10.0	.0	.0	30.0	30.0	30.0	10.0	100.0	40.48	
(7)		14.3	14.3	.0	.0	.0	28.6	14.3	28.6	28.6	.0	42.9	100.0	56.67	
(6)		.0	.0	.0	.0	16.7	.0	16.7	66.7	.0	.0	33.3	100.0	83.34	
(3)		33.3	.0	.0	.0	.0	.0	.0	66.7	33.3	.0	.0	100.0	.00	
(7)		.0	14.3	.0	28.6	.0	14.3	14.3	28.6	14.3	28.6	28.6	100.0	60.00	
(11)		9.1	.0	.0	27.3	.0	.0	36.4	27.3	9.1	27.3	36.4	100.0	68.75	
(4)		.0	.0	.0	.0	50.0	.0	25.0	25.0	.0	.0	75.0	100.0	77.78	
(7)		28.6	14.3	.0	.0	.0	.0	14.3	42.9	42.9	.0	14.3	100.0	29.17	
(4)		.0	25.0	.0	25.0	.0	.0	25.0	25.0	25.0	25.0	25.0	100.0	55.56	
어항	(7)	.0	.0	14.3	.0	28.6	28.6	14.3	14.3	14.3	.0	71.4	100.0	72.22	
	(4)	.0	.0	.0	75.0	.0	.0	.0	25.0	.0	75.0	.0	100.0	50.00	

【 표 4 】 어항 개발사업의 어촌 활성화 방향 적합도

[문 4]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이 사시는 어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000항 개발사업이 어촌의 활성화 방향에 꼭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무응답	*부정*	*보통*	*긍정*	X	MQ04
		%	%	%	%	%	%	%	%	%	%	%	계	*평균*
다	(11)	.0	.0	.0	36.4	.0	18.2	36.4	9.1	.0	36.4	54.5	100.0	76.67
	(4)	.0	.0	.0	25.0	.0	.0	50.0	25.0	.0	25.0	50.0	100.0	83.33
	(12)	.0	8.3	.0	25.0	8.3	8.3	25.0	25.0	8.3	25.0	41.7	100.0	68.52
	(18)	.0	11.1	5.6	11.1	16.7	33.3	22.2	.0	16.7	11.1	72.2	100.0	70.37
대	(17)	.0	5.9	5.9	29.4	11.8	17.6	17.6	11.8	11.8	29.4	47.1	100.0	65.56
	(17)	.0	.0	.0	11.8	17.6	5.9	52.9	11.8	.0	11.8	76.5	100.0	85.56
	(8)	.0	12.5	.0	62.5	25.0	.0	.0	.0	12.5	62.5	25.0	100.0	50.00
	(7)	.0	.0	14.3	.0	28.6	28.6	14.3	14.3	14.3	.0	71.4	100.0	72.22
조	(18)	.0	.0	.0	22.2	11.1	16.7	38.9	11.1	.0	22.2	66.7	100.0	80.21
	(6)	.0	.0	.0	33.3	.0	16.7	16.7	33.3	.0	33.3	33.3	100.0	70.83
	(7)	.0	.0	.0	28.6	28.6	14.3	.0	28.6	.0	28.6	42.9	100.0	63.33
	(6)	.0	.0	.0	50.0	.0	33.3	16.7	.0	.0	50.0	50.0	100.0	69.44
세	(5)	.0	.0	.0	20.0	20.0	.0	20.0	40.0	.0	20.0	40.0	100.0	72.22
	(5)	.0	.0	.0	20.0	20.0	.0	20.0	40.0	20.0	20.0	20.0	100.0	61.11
	(4)	.0	.0	.0	25.0	50.0	.0	.0	25.0	.0	25.0	50.0	100.0	61.11
	(17)	11.8	.0	11.8	47.1	17.6	.0	11.8	.0	23.5	47.1	29.4	100.0	50.98
전	(3)	.0	.0	.0	33.3	.0	33.3	33.3	.0	.0	33.3	66.7	100.0	77.78
	(3)	.0	.0	33.3	.0	.0	33.3	.0	33.3	33.3	.0	33.3	100.0	58.33
	(4)	.0	.0	25.0	25.0	.0	25.0	25.0	.0	25.0	25.0	50.0	100.0	66.66
	(6)	.0	.0	16.7	33.3	.0	16.7	16.7	16.7	16.7	33.3	33.3	100.0	63.33
물	(4)	.0	.0	.0	50.0	.0	.0	50.0	.0	.0	50.0	50.0	100.0	75.00
	(6)	.0	.0	.0	50.0	.0	.0	33.3	16.7	.0	50.0	33.3	100.0	70.00
	(8)	12.5	.0	12.5	50.0	.0	25.0	.0	.0	25.0	50.0	25.0	100.0	50.00
	(6)	.0	.0	.0	.0	16.7	16.7	50.0	16.7	.0	.0	83.3	100.0	90.00
대	(11)	.0	.0	9.1	9.1	27.3	9.1	36.4	9.1	9.1	9.1	72.7	100.0	76.67
	(6)	.0	.0	.0	16.7	.0	16.7	50.0	16.7	.0	16.7	66.7	100.0	86.67
	(6)	.0	.0	16.7	16.7	.0	16.7	50.0	.0	16.7	16.7	66.7	100.0	77.78
	(6)	.0	.0	.0	50.0	.0	16.7	16.7	16.7	.0	50.0	33.3	100.0	66.67
어	(19)	5.3	5.3	.0	21.1	.0	5.3	52.6	10.5	10.5	21.1	57.9	100.0	76.47
	(6)	.0	16.7	.0	.0	16.7	33.3	16.7	16.7	16.7	.0	66.7	100.0	70.00
	(21)	.0	.0	.0	14.3	9.5	14.3	52.4	9.5	.0	14.3	76.2	100.0	85.96
	(5)	.0	.0	.0	20.0	20.0	20.0	40.0	.0	.0	20.0	80.0	100.0	80.00
항	(4)	.0	.0	.0	.0	25.0	25.0	50.0	.0	.0	.0	100.0	100.0	87.50
	(6)	.0	.0	.0	.0	.0	66.7	33.3	.0	.0	.0	100.0	100.0	88.89
	(11)	.0	.0	.0	9.1	18.2	9.1	45.5	18.2	.0	9.1	72.7	100.0	85.19
	(9)	11.1	11.1	11.1	33.3	.0	11.1	22.2	.0	33.3	33.3	33.3	100.0	53.70
개발	(7)	14.3	14.3	.0	42.9	14.3	14.3	.0	.0	28.6	42.9	28.6	100.0	45.24
	(6)	.0	.0	.0	16.7	.0	.0	83.3	.0	.0	16.7	83.3	100.0	91.67
	(5)	.0	.0	.0	.0	20.0	20.0	20.0	40.0	.0	.0	60.0	100.0	83.33
	(5)	.0	.0	.0	20.0	.0	20.0	40.0	20.0	.0	20.0	60.0	100.0	83.33
사업	(11)	.0	.0	9.1	.0	36.4	9.1	18.2	27.3	9.1	.0	63.6	100.0	72.92
	(4)	.0	.0	.0	25.0	.0	.0	25.0	50.0	.0	25.0	25.0	100.0	75.00
	(6)	.0	.0	.0	33.3	16.7	.0	16.7	33.3	.0	33.3	33.3	100.0	66.67
	(9)	11.1	22.2	.0	22.2	.0	.0	22.2	22.2	33.3	22.2	22.2	100.0	47.62
항	(4)	.0	.0	.0	50.0	.0	.0	25.0	25.0	.0	50.0	25.0	100.0	66.67
	(8)	.0	.0	12.5	.0	12.5	12.5	37.5	25.0	12.5	.0	62.5	100.0	80.55
	(7)	14.3	.0	.0	42.9	.0	.0	28.6	14.3	14.3	42.9	28.6	100.0	58.33
	(9)	11.1	.0	11.1	22.2	11.1	11.1	11.1	22.2	22.2	22.2	33.3	100.0	54.76
활	(4)	25.0	25.0	.0	.0	.0	25.0	.0	25.0	.0	.0	25.0	100.0	33.33
	(7)	14.3	.0	.0	14.3	.0	28.6	42.9	.0	14.3	14.3	71.4	100.0	73.81
	(10)	.0	.0	10.0	30.0	10.0	20.0	20.0	10.0	10.0	30.0	50.0	100.0	68.52
	(7)	.0	14.3	.0	28.6	14.3	.0	.0	42.9	14.3	28.6	14.3	100.0	45.84
화	(6)	.0	.0	.0	33.3	16.7	.0	16.7	33.3	.0	33.3	33.3	100.0	66.67
	(3)	.0	.0	.0	33.3	33.3	33.3	.0	.0	.0	33.3	66.7	100.0	66.67
	(7)	.0	.0	.0	57.1	14.3	14.3	14.3	.0	.0	57.1	42.9	100.0	64.29
	(11)	.0	18.2	.0	18.2	.0	.0	45.5	18.2	18.2	18.2	45.5	100.0	70.37
방	(7)	.0	.0	.0	.0	25.0	.0	50.0	25.0	.0	.0	75.0	100.0	88.89
	(7)	14.3	.0	.0	14.3	.0	14.3	42.9	14.3	14.3	14.3	57.1	100.0	72.22
	(4)	25.0	.0	.0	.0	.0	25.0	25.0	25.0	.0	50.0	100.0	61.11	
	(7)	.0	14.3	.0	.0	.0	14.3	.0	14.3	.0	.0	71.4	100.0	80.56
향	(4)	.0	.0	.0	50.0	.0	.0	25.0	25.0	.0	50.0	25.0	100.0	66.67

【 표 5 】 어촌계 발전 위한 어항 개발사업 현재 진행 수준의 적정성

[문 5] 선생님께서는 선생님께서 사시는 어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000항 개발사업의 현재 진행 수준은 어촌계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무응답	*부정*	*보통*	*긍정*	X	MQ05
		%	%	%	%	%	%	%	%	%	%	%	계	*평균*
다대포대	(11)	9.1	.0	9.1	9.1	9.1	.0	36.4	27.3	18.2	9.1	45.5	100.0	68.75
	(4)	.0	.0	.0	25.0	25.0	.0	50.0	.0	.0	25.0	75.0	100.0	79.17
	(12)	.0	16.7	16.7	16.7	8.3	.0	8.3	33.3	33.3	16.7	16.7	100.0	45.83
	(18)	.0	.0	16.7	27.8	16.7	16.7	22.2	.0	16.7	27.8	55.6	100.0	66.67
	(17)	5.9	5.9	5.9	17.6	5.9	17.6	17.6	23.5	17.6	17.6	41.2	100.0	62.82
	(17)	.0	17.6	.0	17.6	.0	17.6	23.5	17.6	23.5	17.6	41.2	100.0	65.38
	(8)	.0	12.5	.0	12.5	25.0	12.5	.0	37.5	12.5	12.5	37.5	100.0	56.67
	(7)	.0	14.3	42.9	.0	.0	.0	.0	42.9	57.1	.0	.0	100.0	29.17
	(18)	5.6	5.6	5.6	27.8	22.2	5.6	16.7	11.1	16.7	27.8	44.4	100.0	59.38
	(6)	16.7	.0	.0	.0	.0	16.7	50.0	16.7	16.7	.0	66.7	100.0	76.67
조세전	(7)	.0	.0	.0	28.6	28.6	14.3	.0	28.6	.0	28.6	42.9	100.0	63.33
	(6)	.0	16.7	.0	33.3	.0	.0	50.0	.0	16.7	33.3	50.0	100.0	69.45
	(5)	20.0	.0	.0	20.0	20.0	20.0	.0	20.0	20.0	20.0	40.0	100.0	50.00
	(5)	.0	20.0	20.0	20.0	.0	.0	40.0	.0	40.0	20.0	40.0	100.0	60.00
	(4)	.0	.0	25.0	.0	50.0	.0	25.0	.0	25.0	.0	75.0	100.0	66.67
	(17)	5.9	5.9	23.5	11.8	23.5	5.9	11.8	11.8	35.3	11.8	41.2	100.0	53.33
	(3)	33.3	.0	.0	.0	.0	33.3	33.3	.0	33.3	.0	66.7	100.0	61.11
	(3)	.0	.0	.0	.0	.0	66.7	.0	33.3	.0	.0	66.7	100.0	83.33
	(4)	.0	.0	.0	25.0	.0	.0	25.0	50.0	.0	25.0	25.0	100.0	75.00
	(6)	16.7	.0	16.7	33.3	.0	16.7	.0	16.7	33.3	33.3	16.7	100.0	43.33
불대어	(4)	.0	.0	.0	50.0	.0	.0	50.0	.0	.0	50.0	50.0	100.0	75.00
	(6)	.0	.0	.0	16.7	.0	33.3	16.7	33.3	.0	16.7	50.0	100.0	79.16
	(8)	12.5	.0	12.5	37.5	.0	12.5	12.5	12.5	25.0	37.5	25.0	100.0	52.38
	(6)	.0	.0	.0	.0	.0	16.7	50.0	33.3	.0	.0	66.7	100.0	95.83
	(11)	.0	.0	18.2	36.4	18.2	.0	27.3	.0	18.2	36.4	45.5	100.0	63.64
	(6)	.0	.0	.0	.0	16.7	.0	66.7	16.7	.0	.0	83.3	100.0	93.33
	(6)	.0	.0	16.7	33.3	.0	16.7	33.3	.0	16.7	33.3	50.0	100.0	69.44
	(6)	.0	.0	.0	33.3	16.7	.0	33.3	16.7	.0	33.3	50.0	100.0	73.33
	(19)	10.5	5.3	15.8	10.5	10.5	.0	26.3	21.1	31.6	10.5	36.8	100.0	56.67
	(6)	16.7	.0	.0	16.7	.0	33.3	16.7	16.7	16.7	16.7	50.0	100.0	63.33
천안	(21)	4.8	.0	4.8	28.6	9.5	14.3	19.0	19.0	9.5	28.6	42.9	100.0	65.69
	(5)	.0	.0	.0	40.0	.0	.0	40.0	20.0	.0	40.0	40.0	100.0	75.00
	(4)	.0	.0	.0	.0	50.0	.0	50.0	.0	.0	.0	100.0	100.0	83.34
	(6)	.0	.0	.0	50.0	33.3	.0	16.7	.0	.0	50.0	50.0	100.0	63.89
	(11)	.0	.0	9.1	18.2	9.1	.0	36.4	18.2	9.1	18.2	54.5	100.0	75.93
	(9)	22.2	.0	11.1	22.2	.0	22.2	11.1	11.1	33.3	22.2	33.3	100.0	50.00
	(7)	14.3	.0	14.3	28.6	14.3	.0	28.6	.0	28.6	28.6	42.9	100.0	57.14
	(6)	.0	.0	16.7	.0	.0	33.3	50.0	.0	16.7	.0	83.3	100.0	83.33
	(5)	.0	20.0	.0	20.0	.0	.0	40.0	20.0	20.0	20.0	40.0	100.0	66.67
	(5)	.0	.0	.0	.0	.0	20.0	60.0	20.0	.0	.0	80.0	100.0	95.83
현안	(11)	.0	9.1	9.1	18.2	9.1	.0	18.2	27.3	18.2	18.2	36.4	100.0	62.50
	(4)	.0	.0	.0	.0	.0	25.0	25.0	50.0	.0	.0	50.0	100.0	91.67
	(6)	16.7	16.7	16.7	.0	33.3	.0	16.7	.0	50.0	.0	50.0	100.0	47.22
	(9)	11.1	.0	11.1	22.2	11.1	.0	11.1	33.3	22.2	22.2	22.2	100.0	50.00
	(4)	.0	.0	.0	75.0	25.0	.0	.0	.0	.0	75.0	25.0	100.0	54.17
	(8)	.0	.0	12.5	.0	12.5	12.5	37.5	25.0	12.5	.0	62.5	100.0	80.55
	(7)	14.3	14.3	.0	42.9	14.3	.0	14.3	.0	28.6	42.9	28.6	100.0	47.62
	(9)	22.2	.0	.0	22.2	11.1	11.1	22.2	11.1	22.2	22.2	44.4	100.0	56.25
	(4)	.0	.0	.0	25.0	25.0	.0	50.0	.0	.0	25.0	75.0	100.0	70.83
	(7)	.0	.0	42.9	.0	.0	.0	14.3	42.9	42.9	.0	14.3	100.0	50.00
수안	(10)	10.0	10.0	10.0	10.0	.0	10.0	10.0	40.0	30.0	10.0	20.0	100.0	47.22
	(7)	.0	.0	.0	14.3	14.3	.0	14.3	57.1	.0	14.3	28.6	100.0	72.22
	(6)	.0	.0	.0	33.3	16.7	.0	16.7	33.3	.0	33.3	33.3	100.0	66.67
	(3)	33.3	.0	.0	33.3	.0	33.3	.0	.0	33.3	33.3	33.3	100.0	44.44
	(7)	.0	.0	.0	28.6	14.3	14.3	28.6	14.3	.0	28.6	57.1	100.0	75.00
	(11)	9.1	.0	.0	27.3	.0	.0	45.5	18.2	9.1	27.3	45.5	100.0	72.22
	(4)	.0	25.0	.0	.0	25.0	.0	50.0	.0	25.0	.0	75.0	100.0	70.84
	(7)	14.3	.0	.0	85.7	.0	.0	.0	.0	14.3	85.7	.0	100.0	42.86
	(4)	25.0	25.0	.0	.0	25.0	.0	25.0	.0	50.0	.0	50.0	100.0	45.84
	(7)	.0	14.3	.0	28.6	.0	28.6	14.3	14.3	28.6	28.6	42.9	100.0	63.89
(4)	.0	50.0	.0	25.0	.0	.0	.0	25.0	50.0	25.0	.0	100.0	27.78	

【 표 6 】 여항 개발사업의 여촌 개발 및 활성화에 도움 정도

[문 6] 선생님께서는 000항 개발사업이 완공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될 경우 선생님이 사시는 여촌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여촌 개발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부정*	*보통*	*긍정*	X	MQ06	
		%	%	%	%	%	%	%	%	%	%	%	계	*평균*	
다 대 다 포 포 포 포 조 세 전	(11)	.0	.0	9.1	27.3	18.2	9.1	36.4	.0	9.1	27.3	63.6	100.0	72.73	
	(4)	.0	.0	.0	.0	25.0	25.0	50.0	.0	.0	.0	100.0	100.0	87.50	
	(12)	.0	.0	.0	25.0	50.0	16.7	8.3	.0	.0	25.0	75.0	100.0	68.06	
	(18)	.0	5.6	.0	22.2	5.6	11.1	44.4	11.1	5.6	22.2	61.1	100.0	78.13	
	(17)	5.9	.0	.0	17.6	17.6	17.6	35.3	5.9	5.9	17.6	70.6	100.0	75.00	
	(17)	.0	.0	.0	17.6	11.8	17.6	47.1	5.9	.0	17.6	76.5	100.0	83.33	
	(8)	12.5	.0	.0	.0	50.0	12.5	.0	25.0	.0	12.5	.0	62.5	100.0	58.34
	(7)	.0	.0	28.6	.0	28.6	28.6	14.3	.0	28.6	.0	.0	71.4	100.0	66.67
	(18)	.0	.0	.0	5.6	16.7	11.1	55.6	11.1	.0	5.6	.0	83.3	100.0	88.54
	(6)	.0	16.7	.0	16.7	.0	.0	50.0	16.7	16.7	16.7	50.0	100.0	73.33	
불 대 어	(7)	.0	.0	.0	14.3	28.6	42.9	.0	14.3	.0	14.3	71.4	100.0	72.22	
	(6)	.0	.0	.0	33.3	.0	50.0	.0	16.7	.0	33.3	50.0	100.0	70.00	
	(5)	.0	.0	.0	20.0	60.0	.0	.0	20.0	.0	20.0	60.0	100.0	62.50	
	(5)	.0	.0	.0	40.0	20.0	.0	20.0	20.0	.0	40.0	40.0	100.0	66.67	
	(4)	.0	.0	.0	25.0	25.0	25.0	25.0	.0	25.0	.0	75.0	100.0	75.00	
	(17)	.0	.0	.0	35.3	17.6	23.5	23.5	.0	.0	35.3	64.7	100.0	72.55	
	(3)	33.3	.0	.0	.0	.0	33.3	33.3	.0	33.3	.0	66.7	100.0	61.11	
	(3)	.0	.0	.0	.0	.0	66.7	.0	33.3	.0	.0	66.7	100.0	83.33	
	(4)	.0	.0	.0	25.0	50.0	.0	.0	25.0	.0	25.0	50.0	100.0	61.11	
	(6)	.0	16.7	.0	.0	16.7	33.3	16.7	16.7	16.7	.0	66.7	100.0	70.00	
천	(4)	.0	.0	.0	25.0	25.0	25.0	25.0	.0	25.0	75.0	100.0	75.00		
	(6)	.0	.0	.0	16.7	.0	33.3	50.0	.0	.0	16.7	83.3	100.0	86.11	
	(8)	12.5	.0	.0	25.0	12.5	25.0	25.0	.0	12.5	25.0	62.5	100.0	66.67	
	(6)	.0	.0	16.7	.0	.0	33.3	16.7	33.3	16.7	.0	50.0	100.0	75.00	
	(11)	.0	.0	.0	.0	36.4	27.3	36.4	.0	.0	.0	100.0	100.0	83.33	
	(6)	.0	.0	.0	16.7	.0	16.7	66.7	.0	.0	16.7	83.3	100.0	88.89	
	(6)	16.7	.0	.0	16.7	.0	16.7	33.3	16.7	16.7	16.7	50.0	100.0	66.67	
	(19)	.0	.0	.0	21.1	15.8	15.8	47.4	.0	.0	21.1	78.9	100.0	81.58	
	(6)	.0	.0	.0	.0	.0	50.0	16.7	33.3	.0	.0	66.7	100.0	87.50	
	(21)	.0	4.8	4.8	9.5	4.8	28.6	47.6	.0	9.5	9.5	81.0	100.0	81.75	
천 야	(5)	.0	.0	.0	.0	40.0	.0	60.0	.0	.0	.0	100.0	100.0	86.67	
	(4)	.0	.0	.0	25.0	.0	50.0	25.0	.0	.0	25.0	75.0	100.0	79.16	
	(6)	.0	.0	.0	.0	16.7	50.0	33.3	.0	.0	.0	100.0	100.0	86.11	
	(11)	.0	.0	.0	9.1	9.1	27.3	27.3	27.3	.0	9.1	63.6	100.0	83.33	
	(9)	11.1	.0	.0	11.1	33.3	.0	33.3	11.1	11.1	11.1	66.7	100.0	68.75	
	(7)	.0	14.3	.0	28.6	14.3	.0	42.9	.0	14.3	28.6	57.1	100.0	69.05	
	(6)	.0	.0	.0	.0	33.3	16.7	50.0	.0	.0	.0	100.0	100.0	86.11	
	(5)	.0	.0	.0	.0	.0	20.0	20.0	60.0	.0	.0	40.0	100.0	91.67	
	(5)	.0	.0	.0	.0	.0	.0	100.0	.0	.0	.0	100.0	100.0	100.00	
	(11)	.0	.0	.0	9.1	9.1	18.2	45.5	18.2	.0	9.1	72.7	100.0	87.04	
불 수	(4)	.0	.0	.0	25.0	25.0	.0	25.0	25.0	.0	25.0	50.0	100.0	72.22	
	(6)	.0	.0	.0	.0	33.3	33.3	33.3	.0	.0	.0	100.0	100.0	83.33	
	(9)	.0	.0	.0	33.3	11.1	11.1	33.3	11.1	.0	33.3	55.6	100.0	75.00	
	(4)	.0	.0	.0	.0	25.0	50.0	.0	25.0	.0	.0	75.0	100.0	77.78	
	(7)	12.5	.0	.0	.0	.0	25.0	50.0	12.5	12.5	.0	75.0	100.0	80.95	
	(7)	.0	.0	.0	14.3	14.3	57.1	14.3	.0	.0	14.3	85.7	100.0	78.57	
	(9)	11.1	.0	.0	11.1	33.3	11.1	11.1	22.2	11.1	11.1	55.6	100.0	61.91	
	(4)	25.0	.0	.0	25.0	.0	25.0	.0	25.0	25.0	25.0	25.0	100.0	44.44	
	(7)	.0	.0	.0	14.3	14.3	.0	57.1	14.3	.0	14.3	71.4	100.0	86.11	
	(10)	10.0	.0	.0	10.0	20.0	20.0	20.0	20.0	10.0	10.0	60.0	100.0	68.75	
불 수	(7)	14.3	.0	.0	14.3	42.9	28.6	.0	.0	14.3	14.3	71.4	100.0	59.52	
	(6)	.0	.0	.0	16.7	50.0	.0	33.3	.0	.0	16.7	83.3	100.0	75.00	
	(3)	.0	.0	.0	33.3	66.7	.0	.0	.0	.0	33.3	66.7	100.0	61.11	
	(7)	.0	.0	.0	28.6	14.3	14.3	42.9	.0	.0	28.6	71.4	100.0	78.57	
	(11)	9.1	.0	.0	27.3	.0	9.1	36.4	18.2	9.1	27.3	45.5	100.0	70.37	
	(7)	.0	.0	.0	.0	25.0	25.0	50.0	.0	.0	.0	100.0	100.0	87.50	
	(4)	.0	14.3	14.3	14.3	.0	28.6	14.3	14.3	28.6	14.3	42.9	100.0	61.11	
	(4)	25.0	.0	.0	.0	.0	.0	25.0	50.0	25.0	.0	25.0	100.0	50.00	
	(7)	.0	.0	.0	28.6	14.3	28.6	28.6	.0	.0	28.6	71.4	100.0	76.19	
	(4)	.0	.0	.0	25.0	25.0	.0	25.0	25.0	.0	25.0	50.0	100.0	72.22	

【 표 7 】 여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의 충분함

[문 7] 선생님께서 사시는 어촌의 경우 000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충분히 지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무응답	*부정*	*보통*	*긍정*	X	MQ07
		%	%	%	%	%	%	%	%	%	%	%	계	*평균*
■ 전 체 ■	(1166)	6.3	8.0	11.0	13.8	5.0	2.6	5.1	48.4	25.2	13.8	12.6	100.0	43.41
■ 권리해방권 해방권 ■	(355)	7.3	6.2	11.8	13.0	7.9	2.8	4.2	46.8	25.4	13.0	14.9	100.0	43.74
	(575)	5.7	9.6	12.2	14.4	2.8	2.4	5.4	47.5	27.5	14.4	10.6	100.0	42.16
	(236)	5.9	6.8	6.8	13.6	5.9	2.5	5.5	53.0	19.5	13.6	14.0	100.0	46.25
■ 권역 / 시정도 ■	(60)	3.3	6.7	8.3	8.3	11.7	5.0	1.7	55.0	18.3	8.3	18.3	100.0	48.15
	(113)	6.2	2.7	6.2	22.1	6.2	1.8	2.7	52.2	15.0	22.1	10.6	100.0	45.68
	(118)	9.3	6.8	21.2	11.9	5.1	2.5	5.1	38.1	37.3	11.9	12.7	100.0	39.95
	(412)	7.5	11.7	13.1	11.9	3.9	2.7	5.8	43.4	32.3	11.9	12.4	100.0	40.49
	(172)	4.1	6.4	11.0	17.4	3.5	2.9	5.2	49.4	21.5	17.4	11.6	100.0	46.36
	(17)	5.9	5.9	.0	5.9	.0	.0	.0	82.4	11.8	5.9	.0	100.0	22.22
	(10)	.0	.0	.0	50.0	.0	10.0	.0	40.0	.0	50.0	10.0	100.0	55.56
	(131)	5.3	8.4	7.6	10.7	8.4	2.3	7.6	49.6	21.4	10.7	18.3	100.0	48.49
	(95)	7.4	5.3	6.3	13.7	3.2	2.1	3.2	58.9	18.9	13.7	8.4	100.0	41.03
	(38)	.0	5.3	5.3	13.2	5.3	.0	7.9	63.2	10.5	13.2	13.2	100.0	55.95
■ 제주지역 주 제외 ■	(1128)	6.5	8.1	11.2	13.8	5.0	2.7	5.0	47.9	25.7	13.8	12.6	100.0	43.11
	(38)	.0	5.3	5.3	13.2	5.3	.0	7.9	63.2	10.5	13.2	13.2	100.0	55.95
■ 여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의 충분함 ■	(8)	.0	.0	.0	.0	12.5	12.5	.0	75.0	.0	.0	25.0	100.0	75.00
	(12)	8.3	8.3	8.3	.0	.0	.0	.0	75.0	25.0	.0	.0	100.0	16.67
	(14)	7.1	7.1	14.3	7.1	21.4	7.1	7.1	28.6	28.6	7.1	35.7	100.0	51.67
	(15)	.0	13.3	6.7	20.0	6.7	.0	.0	53.3	20.0	20.0	6.7	100.0	40.48
	(4)	.0	.0	.0	.0	.0	25.0	.0	75.0	.0	.0	25.0	100.0	83.33
	(20)	10.0	.0	5.0	20.0	10.0	5.0	.0	50.0	15.0	20.0	15.0	100.0	45.00
	(5)	20.0	.0	.0	20.0	.0	20.0	.0	40.0	20.0	20.0	20.0	100.0	44.44
	(7)	.0	.0	.0	57.1	.0	.0	.0	42.9	.0	57.1	.0	100.0	50.00
	(22)	.0	.0	4.5	45.5	13.6	.0	9.1	27.3	4.5	45.5	22.7	100.0	58.33
	(22)	9.1	4.5	13.6	.0	4.5	.0	.0	68.2	27.3	.0	4.5	100.0	26.19
	(23)	4.3	4.3	4.3	17.4	.0	.0	4.3	65.2	13.0	17.4	4.3	100.0	43.75
	(10)	10.0	10.0	10.0	10.0	10.0	.0	.0	50.0	30.0	10.0	10.0	100.0	33.33
	(11)	.0	18.2	9.1	.0	27.3	.0	9.1	36.4	27.3	.0	36.4	100.0	52.38
	(34)	8.8	5.9	29.4	14.7	.0	2.9	5.9	32.4	44.1	14.7	8.8	100.0	39.13
	(14)	21.4	7.1	28.6	21.4	.0	.0	7.1	14.3	57.1	21.4	7.1	100.0	33.33
	(16)	.0	6.3	18.8	18.8	6.3	.0	6.3	43.8	25.0	18.8	12.5	100.0	48.15
	(27)	11.1	7.4	11.1	11.1	7.4	3.7	3.7	44.4	29.6	11.1	14.8	100.0	40.00
	(16)	12.5	.0	25.0	.0	.0	6.3	.0	56.3	37.5	.0	6.3	100.0	30.95
	(20)	5.0	20.0	20.0	10.0	.0	5.0	5.0	35.0	45.0	10.0	10.0	100.0	37.18
	(40)	5.0	10.0	25.0	10.0	.0	2.5	2.5	45.0	40.0	10.0	5.0	100.0	35.61
	(10)	.0	10.0	.0	40.0	.0	.0	20.0	30.0	10.0	40.0	20.0	100.0	59.52
	(6)	50.0	.0	33.3	.0	.0	.0	.0	16.7	83.3	.0	.0	100.0	13.33
	(5)	.0	20.0	20.0	20.0	.0	.0	.0	40.0	40.0	20.0	.0	100.0	33.33
	(4)	.0	.0	25.0	25.0	.0	.0	25.0	25.0	25.0	25.0	25.0	100.0	61.11
	(10)	.0	20.0	20.0	10.0	20.0	.0	.0	30.0	40.0	10.0	20.0	100.0	40.48
	(14)	21.4	7.1	7.1	.0	21.4	.0	.0	42.9	35.7	.0	21.4	100.0	31.25
	(15)	6.7	13.3	.0	6.7	.0	.0	13.3	60.0	20.0	6.7	13.3	100.0	47.22
	(9)	.0	.0	11.1	.0	22.2	22.2	11.1	33.3	11.1	.0	55.6	100.0	72.22
	(14)	.0	21.4	35.7	14.3	.0	.0	.0	28.6	57.1	14.3	.0	100.0	31.67
	(10)	10.0	.0	10.0	10.0	10.0	.0	.0	60.0	20.0	10.0	10.0	100.0	37.50
	(3)	.0	.0	.0	.0	.0	.0	.0	100.0	.0	.0	.0	100.0	.00
	(35)	5.7	22.9	8.6	20.0	2.9	.0	.0	40.0	37.1	20.0	2.9	100.0	30.95
	(6)	.0	.0	16.7	16.7	.0	16.7	33.3	16.7	16.7	16.7	50.0	100.0	73.33
	(8)	12.5	12.5	12.5	.0	12.5	.0	12.5	37.5	37.5	.0	25.0	100.0	43.33
	(6)	16.7	33.3	.0	.0	.0	.0	16.7	33.3	50.0	.0	16.7	100.0	33.34
	(10)	10.0	.0	10.0	.0	10.0	.0	10.0	60.0	20.0	.0	20.0	100.0	50.00
	(15)	6.7	13.3	6.7	6.7	6.7	.0	.0	60.0	26.7	6.7	6.7	100.0	30.56
	(12)	16.7	8.3	33.3	8.3	8.3	.0	8.3	16.7	58.3	8.3	16.7	100.0	36.67
	(5)	20.0	.0	.0	.0	.0	.0	20.0	60.0	20.0	.0	20.0	100.0	41.67
	(21)	14.3	4.8	4.8	4.8	.0	4.8	4.8	61.9	23.8	4.8	9.5	100.0	35.42
	(10)	.0	.0	10.0	40.0	.0	.0	20.0	30.0	10.0	40.0	20.0	100.0	61.90
	(30)	10.0	23.3	16.7	6.7	.0	6.7	16.7	20.0	50.0	6.7	23.3	100.0	43.75
	(3)	.0	.0	.0	.0	.0	.0	66.7	33.3	.0	.0	66.7	100.0	100.00
	(21)	.0	4.8	19.0	23.8	.0	4.8	.0	47.6	23.8	23.8	4.8	100.0	43.94
	(12)	16.7	.0	8.3	8.3	8.3	.0	.0	58.3	25.0	8.3	8.3	100.0	30.00
	(12)	.0	.0	8.3	25.0	.0	.0	.0	66.7	8.3	25.0	.0	100.0	45.83
	(28)	10.7	14.3	7.1	10.7	3.6	.0	.0	53.6	32.1	10.7	3.6	100.0	26.92
	(4)	.0	.0	.0	.0	.0	.0	25.0	75.0	.0	.0	25.0	100.0	83.33
	(14)	.0	21.4	.0	21.4	7.1	.0	.0	50.0	21.4	21.4	7.1	100.0	38.10

[계 속]

【 표 7 】 어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의 충분함

[문 7] 선생님께서 사시는 어촌의 경우 000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충분히 지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부정*	*보통*	*긍정*	X	MQ07	
		%	%	%	%	%	%	%	%	%	%	%	계	*평균*	
다 대 대	(11)	.0	9.1	.0	27.3	9.1	9.1	.0	45.5	9.1	27.3	18.2	100.0	52.78	
	(4)	.0	25.0	.0	25.0	.0	25.0	.0	25.0	25.0	25.0	25.0	100.0	50.00	
	(12)	8.3	.0	.0	.0	.0	8.3	.0	83.3	8.3	.0	8.3	100.0	33.34	
	(18)	.0	5.6	5.6	11.1	.0	5.6	22.2	50.0	11.1	11.1	27.8	100.0	70.37	
	(17)	.0	.0	23.5	29.4	11.8	.0	.0	35.3	23.5	29.4	11.8	100.0	46.97	
	(17)	.0	11.8	.0	.0	.0	5.9	.0	82.4	11.8	.0	5.9	100.0	33.34	
	(8)	.0	.0	.0	12.5	.0	.0	.0	87.5	.0	12.5	.0	100.0	50.00	
	(7)	.0	14.3	.0	14.3	.0	.0	.0	71.4	14.3	14.3	.0	100.0	33.34	
	(18)	.0	16.7	11.1	16.7	.0	.0	5.6	50.0	27.8	16.7	5.6	100.0	40.74	
	(6)	16.7	16.7	16.7	16.7	.0	.0	.0	33.3	50.0	16.7	.0	100.0	25.00	
조 세 전	(7)	.0	.0	14.3	28.6	.0	14.3	.0	42.9	14.3	28.6	14.3	100.0	54.16	
	(6)	.0	.0	33.3	16.7	.0	16.7	16.7	16.7	33.3	16.7	33.3	100.0	60.00	
	(5)	20.0	20.0	20.0	20.0	.0	.0	.0	20.0	60.0	20.0	.0	100.0	25.00	
	(5)	.0	.0	20.0	20.0	.0	.0	.0	60.0	20.0	20.0	.0	100.0	41.67	
	(4)	.0	.0	.0	25.0	.0	25.0	.0	50.0	.0	25.0	25.0	100.0	58.34	
	(17)	17.6	.0	29.4	29.4	.0	.0	5.9	17.6	47.1	29.4	5.9	100.0	36.90	
	(3)	.0	.0	.0	.0	.0	.0	.0	33.3	66.7	.0	.0	33.3	100.0	100.00
	(3)	.0	.0	33.3	33.3	.0	.0	.0	33.3	33.3	33.3	.0	100.0	41.67	
	(4)	.0	.0	.0	.0	.0	.0	.0	100.0	.0	.0	.0	100.0	.00	
	(6)	.0	.0	.0	.0	.0	.0	.0	100.0	.0	.0	.0	100.0	.00	
별 대 어	(4)	.0	.0	.0	100.0	.0	.0	.0	.0	.0	100.0	.0	100.0	50.00	
	(6)	.0	.0	.0	16.7	.0	16.7	.0	66.7	.0	16.7	16.7	100.0	66.66	
	(8)	12.5	.0	.0	25.0	.0	.0	.0	62.5	12.5	25.0	.0	100.0	33.33	
	(6)	.0	.0	.0	.0	.0	16.7	.0	83.3	.0	.0	16.7	100.0	83.33	
	(11)	.0	18.2	9.1	9.1	18.2	.0	.0	45.5	27.3	9.1	18.2	100.0	41.67	
	(6)	.0	.0	.0	.0	16.7	.0	16.7	50.0	.0	.0	50.0	100.0	83.33	
	(6)	.0	16.7	.0	16.7	.0	16.7	16.7	33.3	16.7	16.7	33.3	100.0	62.50	
	(6)	16.7	.0	16.7	16.7	.0	16.7	.0	50.0	33.3	.0	16.7	100.0	33.33	
	(19)	10.5	15.8	10.5	10.5	.0	.0	5.3	47.4	36.8	10.5	5.3	100.0	31.67	
	(6)	.0	16.7	.0	.0	.0	.0	.0	83.3	16.7	.0	.0	100.0	16.67	
전 사 자	(21)	.0	9.5	14.3	19.0	.0	.0	9.5	47.6	23.8	19.0	9.5	100.0	48.48	
	(5)	.0	.0	.0	.0	20.0	.0	.0	60.0	20.0	.0	20.0	100.0	50.00	
	(4)	.0	.0	25.0	.0	25.0	.0	50.0	.0	25.0	.0	75.0	100.0	75.00	
	(6)	.0	.0	.0	16.7	50.0	.0	16.7	16.7	.0	16.7	66.7	100.0	70.00	
	(11)	.0	9.1	.0	9.1	9.1	.0	.0	72.7	9.1	9.1	9.1	100.0	44.45	
	(9)	33.3	11.1	.0	11.1	11.1	.0	.0	33.3	44.4	11.1	11.1	100.0	22.22	
	(7)	.0	.0	14.3	14.3	.0	.0	28.6	42.9	14.3	14.3	28.6	100.0	70.83	
	(6)	.0	.0	16.7	33.3	.0	.0	16.7	33.3	16.7	33.3	16.7	100.0	58.33	
	(5)	.0	.0	.0	.0	.0	.0	.0	100.0	.0	.0	.0	100.0	.00	
	(11)	20.0	.0	.0	40.0	.0	.0	.0	40.0	20.0	40.0	.0	100.0	33.33	
현 야 현	(11)	.0	.0	9.1	9.1	9.1	9.1	.0	63.6	9.1	9.1	18.2	100.0	58.33	
	(4)	.0	.0	.0	.0	.0	.0	.0	100.0	.0	.0	.0	100.0	.00	
	(6)	.0	.0	16.7	.0	.0	.0	16.7	66.7	16.7	.0	16.7	100.0	66.66	
	(9)	22.2	.0	.0	11.1	.0	.0	.0	66.7	22.2	11.1	.0	100.0	16.67	
	(4)	.0	25.0	.0	.0	25.0	.0	.0	50.0	25.0	.0	25.0	100.0	41.67	
	(8)	25.0	12.5	.0	12.5	.0	.0	.0	50.0	37.5	12.5	.0	100.0	16.67	
	(7)	.0	14.3	14.3	42.9	.0	14.3	.0	14.3	28.6	42.9	14.3	100.0	47.22	
	(9)	.0	.0	.0	22.2	11.1	.0	.0	66.7	.0	22.2	11.1	100.0	55.56	
	(4)	25.0	.0	25.0	.0	.0	.0	.0	50.0	50.0	.0	.0	100.0	16.67	
	(7)	14.3	14.3	14.3	14.3	.0	.0	.0	42.9	42.9	14.3	.0	100.0	25.00	
수 미 미	(10)	.0	10.0	.0	.0	.0	.0	10.0	80.0	10.0	.0	10.0	100.0	58.34	
	(7)	.0	.0	.0	.0	.0	.0	.0	100.0	.0	.0	.0	100.0	.00	
	(6)	.0	.0	16.7	.0	.0	.0	.0	66.7	16.7	.0	.0	100.0	41.67	
	(3)	.0	.0	.0	33.3	.0	.0	.0	66.7	.0	33.3	.0	100.0	50.00	
	(7)	.0	.0	.0	28.6	14.3	.0	.0	57.1	.0	28.6	14.3	100.0	55.56	
	(11)	.0	9.1	.0	9.1	.0	.0	.0	63.6	9.1	9.1	18.2	100.0	66.67	
	(4)	.0	25.0	25.0	.0	25.0	.0	25.0	.0	50.0	.0	50.0	100.0	54.17	
	(7)	14.3	14.3	.0	14.3	.0	.0	.0	57.1	28.6	14.3	.0	100.0	22.22	
	(4)	25.0	.0	.0	25.0	.0	.0	25.0	.0	25.0	25.0	25.0	100.0	50.00	
	(7)	.0	.0	14.3	14.3	28.6	.0	.0	42.9	14.3	14.3	28.6	100.0	54.17	
(4)	.0	.0	.0	25.0	.0	.0	.0	75.0	.0	25.0	.0	100.0	50.00		

【 표 8 】 어항 개발사업 수행 과정의 어업인 의견 반영 정도

[문 8] 선생님께서는 000항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부정*	*보통*	*긍정*	X	MQ08	
		%	%	%	%	%	%	%	%	%	%	%	계	*평균*	
다 대 다 포 포 포 조 세 전	(11)	18.2	.0	.0	45.5	9.1	18.2	.0	9.1	18.2	45.5	27.3	100.0	48.33	
	(4)	25.0	.0	.0	.0	.0	25.0	50.0	.0	25.0	.0	75.0	100.0	70.83	
	(12)	.0	8.3	8.3	.0	16.7	8.3	16.7	41.7	16.7	.0	41.7	100.0	66.67	
	(18)	.0	.0	11.1	22.2	16.7	11.1	16.7	22.2	11.1	22.2	44.4	100.0	66.67	
	(17)	.0	.0	11.8	35.3	35.3	.0	5.9	11.8	11.8	35.3	41.2	100.0	57.78	
	(17)	.0	.0	.0	11.8	5.9	11.8	23.5	47.1	.0	11.8	41.2	100.0	81.48	
	(8)	25.0	12.5	.0	.0	25.0	.0	.0	37.5	37.5	.0	25.0	100.0	30.00	
	(7)	.0	.0	28.6	14.3	.0	14.3	14.3	28.6	28.6	14.3	28.6	100.0	60.00	
	(18)	5.6	.0	11.1	11.1	11.1	11.1	22.2	11.1	27.8	16.7	11.1	44.4	100.0	64.10
	(6)	16.7	16.7	.0	33.3	16.7	.0	.0	16.7	33.3	33.3	16.7	100.0	36.67	
	(7)	.0	14.3	14.3	14.3	28.6	14.3	.0	14.3	28.6	14.3	42.9	100.0	52.78	
	물	(6)	.0	16.7	.0	33.3	16.7	33.3	.0	.0	16.7	33.3	50.0	100.0	58.33
(5)		.0	20.0	20.0	20.0	20.0	.0	.0	20.0	40.0	20.0	20.0	100.0	41.67	
(5)		.0	.0	.0	20.0	.0	.0	.0	40.0	40.0	20.0	40.0	100.0	83.33	
(4)		.0	.0	25.0	.0	50.0	.0	.0	25.0	25.0	.0	50.0	100.0	55.56	
(17)		5.9	.0	11.8	29.4	23.5	5.9	11.8	11.8	17.6	29.4	41.2	100.0	57.78	
(3)		33.3	.0	.0	.0	.0	.0	33.3	.0	33.3	.0	33.3	100.0	41.67	
(3)		.0	.0	.0	33.3	.0	66.7	.0	.0	.0	33.3	66.7	100.0	72.22	
(4)		.0	25.0	25.0	.0	.0	25.0	.0	25.0	50.0	.0	25.0	100.0	44.44	
(6)		16.7	.0	.0	.0	33.3	.0	.0	50.0	16.7	.0	33.3	100.0	44.45	
(4)		.0	.0	.0	50.0	.0	25.0	.0	25.0	.0	50.0	25.0	100.0	61.11	
(6)		.0	16.7	.0	33.3	16.7	16.7	.0	16.7	16.7	33.3	33.3	100.0	53.33	
대 어		(8)	.0	.0	12.5	.0	12.5	25.0	25.0	25.0	12.5	.0	62.5	100.0	77.78
	(6)	.0	.0	.0	.0	.0	.0	33.3	66.7	.0	.0	33.3	100.0	100.00	
	(11)	.0	.0	.0	9.1	18.2	18.2	36.4	18.2	.0	9.1	72.7	100.0	83.33	
	(6)	.0	.0	.0	.0	.0	33.3	33.3	33.3	.0	.0	66.7	100.0	91.67	
	(6)	.0	.0	33.3	16.7	.0	16.7	16.7	33.3	16.7	33.3	33.3	100.0	60.00	
	(6)	33.3	.0	.0	.0	.0	.0	16.7	50.0	33.3	.0	16.7	100.0	33.33	
	(19)	.0	5.3	15.8	5.3	5.3	21.1	21.1	26.3	21.1	5.3	47.4	100.0	69.05	
	(6)	16.7	.0	.0	.0	16.7	.0	.0	66.7	16.7	.0	16.7	100.0	33.34	
	(21)	9.5	4.8	.0	19.0	19.0	4.8	9.5	33.3	14.3	19.0	33.3	100.0	54.76	
	(5)	.0	.0	.0	.0	40.0	.0	40.0	20.0	.0	.0	80.0	100.0	83.34	
	(4)	.0	25.0	.0	.0	25.0	.0	50.0	.0	25.0	.0	75.0	100.0	70.84	
	(6)	.0	.0	.0	16.7	33.3	16.7	33.3	.0	.0	16.7	83.3	100.0	77.78	
천	(11)	.0	9.1	9.1	9.1	18.2	.0	18.2	36.4	18.2	9.1	36.4	100.0	61.91	
	(9)	.0	.0	.0	22.2	33.3	33.3	.0	11.1	.0	22.2	66.7	100.0	68.75	
	(7)	14.3	.0	14.3	14.3	.0	.0	14.3	42.9	28.6	14.3	14.3	100.0	45.83	
	(6)	.0	.0	.0	33.3	16.7	16.7	33.3	.0	33.3	66.7	100.0	75.00		
	(5)	20.0	.0	.0	.0	.0	.0	.0	80.0	20.0	.0	.0	100.0	.00	
	(5)	20.0	.0	.0	40.0	.0	.0	.0	40.0	20.0	40.0	.0	100.0	33.33	
	(11)	18.2	9.1	.0	9.1	9.1	18.2	18.2	27.3	9.1	45.5	100.0	55.56		
	(4)	.0	.0	25.0	.0	.0	25.0	.0	50.0	25.0	.0	25.0	100.0	58.33	
	(6)	16.7	.0	.0	33.3	.0	.0	16.7	33.3	16.7	33.3	16.7	100.0	50.00	
	(9)	11.1	.0	.0	55.6	11.1	.0	11.1	11.1	11.1	55.6	22.2	100.0	52.08	
	(4)	.0	.0	25.0	.0	.0	25.0	.0	50.0	25.0	.0	25.0	100.0	58.33	
	(8)	12.5	.0	.0	25.0	12.5	.0	12.5	37.5	12.5	25.0	25.0	100.0	50.00	
물 천	(7)	.0	.0	14.3	28.6	14.3	14.3	14.3	14.3	28.6	42.9	28.6	100.0	63.89	
	(9)	11.1	.0	.0	11.1	22.2	11.1	.0	44.4	11.1	11.1	33.3	100.0	53.33	
	(4)	25.0	.0	25.0	.0	.0	25.0	.0	25.0	50.0	.0	25.0	100.0	38.89	
	(7)	14.3	.0	14.3	14.3	.0	14.3	42.9	.0	28.6	14.3	57.1	100.0	66.67	
	(10)	.0	.0	.0	20.0	20.0	.0	20.0	40.0	.0	20.0	40.0	100.0	72.22	
	(7)	.0	.0	.0	14.3	.0	.0	.0	85.7	.0	14.3	.0	100.0	50.00	
	(6)	16.7	.0	.0	.0	16.7	.0	16.7	50.0	16.7	.0	33.3	100.0	55.56	
	(3)	.0	.0	.0	33.3	.0	.0	.0	66.7	.0	33.3	.0	100.0	50.00	
	(7)	.0	.0	.0	28.6	28.6	.0	28.6	14.3	.0	28.6	57.1	100.0	72.22	
	(11)	.0	9.1	.0	36.4	.0	18.2	18.2	18.2	9.1	36.4	36.4	100.0	64.81	
	(7)	.0	.0	.0	.0	75.0	.0	25.0	.0	.0	.0	100.0	100.0	75.00	
	(4)	14.3	28.6	.0	28.6	.0	14.3	.0	14.3	42.9	28.6	14.3	100.0	36.11	
어 항 발 달 사 업 수 행 과 정 의 어 업 인 의 의 견 반 영 정 도	(4)	.0	25.0	.0	25.0	.0	.0	.0	50.0	25.0	25.0	.0	100.0	33.34	
	(7)	.0	.0	.0	57.1	14.3	.0	.0	28.6	.0	57.1	14.3	100.0	53.33	
	(4)	.0	25.0	.0	50.0	.0	.0	.0	25.0	25.0	50.0	.0	100.0	38.89	

【 표 9 】 어항 개발사업을 통한 어촌 및 어항 활성화 목적 달성 여부

[문 9] 선생님께서는 000항 개발사업을 통해 현재 선생님이 속한 어촌 및 어항 활성화를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무응답	*부정*	*보통*	*긍정*	X	MQ09
		%	%	%	%	%	%	%	%	%	%	%	계	*평균*
다대포대교	(11)	9.1	.0	18.2	36.4	18.2	.0	.0	18.2	27.3	36.4	18.2	100.0	44.44
	(4)	.0	25.0	.0	50.0	.0	.0	25.0	.0	25.0	50.0	25.0	100.0	54.17
	(12)	.0	.0	8.3	41.7	16.7	.0	8.3	25.0	8.3	41.7	25.0	100.0	57.41
	(18)	.0	11.1	5.6	33.3	16.7	5.6	11.1	16.7	16.7	33.3	33.3	100.0	56.67
	(17)	11.8	5.9	17.6	11.8	29.4	5.9	.0	17.6	35.3	11.8	35.3	100.0	45.24
	(17)	.0	.0	11.8	.0	.0	.0	17.6	70.6	11.8	.0	17.6	100.0	73.33
	(8)	12.5	.0	.0	37.5	12.5	.0	.0	37.5	12.5	37.5	12.5	100.0	43.33
	(7)	14.3	.0	28.6	14.3	.0	14.3	.0	28.6	42.9	14.3	14.3	100.0	40.00
	(18)	5.6	5.6	16.7	11.1	11.1	5.6	22.2	22.2	27.8	11.1	38.9	100.0	59.52
	(6)	16.7	16.7	16.7	33.3	.0	16.7	.0	.0	50.0	33.3	16.7	100.0	38.89
대포포구	(7)	.0	14.3	14.3	14.3	14.3	.0	.0	28.6	14.3	28.6	100.0	50.00	
	(6)	.0	16.7	.0	66.7	16.7	.0	.0	.0	16.7	66.7	16.7	100.0	47.22
	(5)	.0	20.0	20.0	20.0	40.0	.0	.0	.0	40.0	20.0	40.0	100.0	46.67
	(5)	.0	.0	60.0	20.0	20.0	.0	.0	.0	60.0	20.0	20.0	100.0	43.33
	(4)	.0	.0	.0	75.0	25.0	.0	.0	.0	.0	75.0	25.0	100.0	54.17
	(17)	5.9	5.9	17.6	41.2	17.6	.0	5.9	5.9	29.4	41.2	23.5	100.0	47.92
	(3)	33.3	33.3	.0	33.3	.0	.0	.0	.0	66.7	33.3	.0	100.0	22.22
	(3)	.0	33.3	.0	.0	.0	.0	66.7	.0	.0	33.3	.0	100.0	61.11
	(4)	25.0	.0	.0	25.0	25.0	.0	.0	25.0	25.0	25.0	25.0	100.0	38.89
	(6)	16.7	.0	.0	16.7	.0	.0	.0	66.7	16.7	16.7	.0	100.0	25.00
대포포구	(4)	.0	.0	.0	75.0	.0	25.0	.0	.0	75.0	25.0	100.0	58.33	
	(6)	.0	.0	.0	50.0	.0	16.7	16.7	16.7	.0	50.0	33.3	100.0	66.67
	(8)	12.5	.0	.0	37.5	25.0	12.5	12.5	.0	12.5	37.5	50.0	100.0	58.33
	(6)	.0	.0	.0	.0	16.7	16.7	16.7	50.0	.0	.0	50.0	100.0	83.33
	(11)	9.1	.0	.0	.0	9.1	45.5	27.3	9.1	9.1	.0	81.8	100.0	78.33
	(6)	16.7	.0	16.7	.0	.0	33.3	33.3	.0	33.3	.0	66.7	100.0	66.66
	(6)	.0	.0	16.7	.0	.0	.0	16.7	16.7	16.7	50.0	16.7	100.0	56.67
	(6)	.0	.0	.0	66.7	.0	16.7	16.7	.0	.0	66.7	33.3	100.0	63.89
	(19)	10.5	10.5	5.3	15.8	5.3	21.1	5.3	26.3	26.3	15.8	31.6	100.0	51.19
	(6)	.0	16.7	.0	.0	.0	16.7	.0	66.7	16.7	.0	16.7	100.0	50.00
대포포구	(21)	.0	9.5	14.3	19.0	14.3	9.5	14.3	19.0	23.8	19.0	38.1	100.0	58.82
	(5)	.0	.0	20.0	.0	.0	20.0	20.0	40.0	20.0	.0	40.0	100.0	72.22
	(4)	.0	.0	25.0	.0	25.0	.0	50.0	.0	25.0	.0	75.0	100.0	75.00
	(6)	.0	.0	.0	.0	16.7	50.0	33.3	.0	.0	.0	100.0	100.0	86.11
	(11)	.0	9.1	9.1	18.2	9.1	9.1	27.3	18.2	18.2	36.4	100.0	58.33	
	(9)	.0	11.1	.0	22.2	33.3	11.1	11.1	11.1	22.2	55.6	100.0	62.50	
	(7)	14.3	.0	14.3	28.6	.0	14.3	28.6	.0	28.6	28.6	42.9	100.0	59.52
	(6)	.0	.0	16.7	50.0	.0	.0	33.3	.0	16.7	50.0	33.3	100.0	63.89
	(5)	.0	.0	40.0	.0	20.0	.0	.0	40.0	40.0	.0	20.0	100.0	44.44
	(5)	.0	.0	.0	40.0	.0	20.0	40.0	.0	.0	40.0	60.0	100.0	76.67
대포포구	(11)	18.2	.0	.0	27.3	27.3	.0	.0	27.3	18.2	27.3	27.3	100.0	43.75
	(4)	.0	.0	.0	25.0	.0	.0	.0	75.0	.0	25.0	.0	100.0	50.00
	(6)	16.7	16.7	.0	.0	33.3	.0	33.3	.0	33.3	.0	66.7	100.0	58.34
	(9)	11.1	11.1	.0	22.2	11.1	11.1	22.2	22.2	22.2	33.3	33.3	100.0	52.38
	(4)	.0	.0	.0	25.0	25.0	.0	.0	50.0	.0	25.0	25.0	100.0	58.34
	(8)	.0	12.5	25.0	.0	25.0	.0	.0	37.5	37.5	.0	25.0	100.0	43.33
	(7)	.0	.0	.0	57.1	.0	14.3	14.3	14.3	.0	57.1	28.6	100.0	63.89
	(9)	11.1	11.1	.0	33.3	.0	11.1	.0	33.3	22.2	33.3	11.1	100.0	41.67
	(4)	25.0	.0	.0	75.0	.0	.0	.0	.0	25.0	75.0	.0	100.0	37.50
	(7)	.0	.0	14.3	28.6	14.3	.0	28.6	14.3	14.3	28.6	42.9	100.0	66.67
대포포구	(10)	.0	10.0	.0	20.0	20.0	.0	.0	30.0	10.0	20.0	40.0	100.0	59.52
	(7)	.0	14.3	.0	14.3	14.3	14.3	14.3	28.6	14.3	14.3	42.9	100.0	63.33
	(6)	16.7	.0	.0	.0	16.7	.0	.0	66.7	16.7	.0	16.7	100.0	33.34
	(3)	33.3	.0	.0	33.3	.0	33.3	.0	.0	33.3	33.3	33.3	100.0	44.44
	(7)	.0	.0	.0	57.1	.0	.0	28.6	14.3	.0	57.1	28.6	100.0	66.67
	(11)	9.1	.0	.0	36.4	.0	.0	27.3	27.3	9.1	36.4	27.3	100.0	62.50
	(4)	.0	.0	.0	.0	.0	25.0	25.0	50.0	.0	.0	50.0	100.0	91.67
	(7)	14.3	28.6	28.6	14.3	.0	.0	14.3	.0	71.4	14.3	14.3	100.0	35.71
	(4)	50.0	.0	25.0	25.0	.0	.0	.0	.0	75.0	25.0	.0	100.0	20.83
	(7)	.0	.0	.0	42.9	28.6	14.3	.0	14.3	.0	42.9	42.9	100.0	61.11
(4)	25.0	.0	.0	.0	25.0	.0	.0	50.0	25.0	.0	25.0	100.0	33.34	

[표 10] 어항 개발사업을 통한 어업활동 편리성 개선

[문 10] 선생님께서는 국가어항 개발사업을 통해 어업활동이 편리하게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 체 ■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무응답	*부정*	*보통*	*긍정*	X	MQ10
		%	%	%	%	%	%	%	%	%	%	%	계	*평균*
■ 전 체 ■	(1166)	6.7	6.6	8.6	21.5	13.0	15.3	17.0	11.3	21.9	21.5	45.3	100.0	59.90
■ 권 해 해 면 권 권 권 권 권 ■	(355) (575) (236)	9.0 6.8 3.0	7.6 6.1 6.4	11.5 8.0 5.5	20.3 23.5 18.6	13.8 13.6 10.6	13.8 15.0 18.2	12.7 16.5 24.6	11.3 10.6 13.1	28.2 20.9 14.8	20.3 23.5 18.6	40.3 45.0 53.4	100.0 100.0 100.0	54.81 59.79 67.97
■ 권 권 권 권 권 권 권 권 권 권 권 ■	(60) (113) (118) (412) (172) (17) (10) (131) (95) (38)	11.7 9.7 8.5 7.8 4.7 11.8 .0 1.5 5.3 2.6	5.0 8.0 8.5 7.5 3.5 5.9 .0 6.1 7.4 5.3	6.7 9.7 17.8 8.3 9.9 .0 .0 5.3 6.3 .0	13.3 23.9 20.3 22.1 25.0 29.4 40.0 17.6 17.9 23.7	21.7 9.7 11.9 13.1 15.7 11.8 10.0 7.6 14.7 15.8	11.7 15.9 12.7 17.0 12.8 .0 40.0 20.6 12.6 7.9	8.3 12.4 13.6 16.3 15.1 5.9 10.0 28.2 21.1 28.9	21.7 10.6 6.8 8.0 13.4 35.3 .0 13.0 14.7 15.8	23.3 27.4 34.7 23.5 18.0 17.6 .0 13.0 18.9 7.9	13.3 23.9 20.3 22.1 25.0 29.4 40.0 17.6 17.9 23.7	41.7 38.1 38.1 46.4 43.6 17.6 60.0 56.5 48.4 52.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3.90 54.46 53.18 58.93 60.74 45.46 70.00 71.34 62.96 69.79
■ 제 주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	(1128) (38)	6.8 2.6	6.6 5.3	8.9 .0	21.5 23.7	12.9 15.8	15.5 7.9	16.6 28.9	11.2 15.8	22.3 7.9	21.5 23.7	45.0 52.6	100.0 100.0	59.58 69.79
■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	(8) (12) (14) (15) (4) (20) (5) (7) (22) (22) (23) (10) (11) (34) (14) (16) (27) (16) (20) (40) (10) (6) (5) (4) (10) (14) (15) (9) (14) (10) (3) (35) (6) (8) (6) (10) (15) (12) (5) (21) (10) (30) (3) (21) (12) (12) (28) (4) (14)	.0 25.0 .0 20.0 25.0 15.0 .0 .0 4.5 9.1 13.0 20.0 .0 .0 12.5 11.1 6.3 10.0 12.5 6.3 .0 16.7 .0 .0 10.0 14.3 6.7 .0 .0 .0 8.6 .0 12.5 .0 20.0 .0 .0 8.3 .0 19.0 10.0 6.7 .0 8.3 8.3 10.7 25.0 7.1	.0 .0 7.1 .0 25.0 5.0 20.0 .0 .0 13.6 4.3 20.0 .0 14.3 12.5 7.4 .0 11.1 7.4 5.0 16.7 .0 .0 10.0 14.3 6.7 11.1 21.4 .0 8.6 .0 .0 13.3 8.3 20.0 .0 14.3 8.3 7.1 25.0 7.1 .0	.0 25.0 7.1 .0 .0 10.0 20.0 57.1 4.5 9.1 4.3 .0 27.3 17.6 28.6 18.8 18.5 18.8 5.0 7.5 .0 33.3 .0 .0 10.0 14.3 6.7 11.1 14.3 .0 8.6 .0 .0 13.3 8.3 14.3 8.3 14.3 25.0 7.1 14.3 14.3	12.5 16.7 14.3 6.7 25.0 25.0 20.0 .0 22.7 27.3 30.4 10.0 27.3 14.7 28.6 25.0 11.1 31.3 10.0 30.0 30.0 30.0 20.0 25.0 21.4 6.7 33.3 21.4 40.0 14.3 22.9 16.7 33.3 16.7 10.0 13.3 6.7 13.3 16.7 4.8 13.3 33.3 25.0 14.3 25.0 14.3	25.0 .0 35.7 26.7 .0 15.0 20.0 .0 4.5 9.1 13.0 10.0 18.2 11.8 14.3 18.8 14.8 6.3 14.8 6.3 10.0 20.0 20.0 60.0 25.0 21.4 6.7 .0 14.3 22.2 14.3 20.0 33.3 8.6 12.5 33.3 22.2 14.3 10.0 33.3 11.1 22.9 50.0 25.0 20.0 13.3 6.7 25.0 7.1 14.3 14.3	25.0 8.3 7.1 6.7 .0 10.0 .0 14.3 18.2 13.6 4.3 21.7 20.0 14.7 14.3 7.1 6.3 22.2 22.2 31.3 2.5 10.0 16.7 20.0 .0 25.0 21.4 20.0 14.3 13.3 22.2 14.3 33.3 5.7 12.5 16.7 40.0 13.3 20.0 6.7 16.7 20.0 4.8 14.3 40.0 13.3 14.3 7.1 14.3 14.3	12.5 8.3 14.3 6.7 6.7 10.0 28.6 18.8 14.8 6.3 6.3 0 7.1 42.9 43.8 37.0 31.3 20.0 27.5 20.0 50.0 20.0 50.0 40.0 40.0 28.6 20.0 33.3 22.2 35.7 10.0 33.3 5.7 12.5 16.7 40.0 13.3 20.0 6.7 16.7 20.0 4.8 14.3 40.0 13.3 20.0 7.1 14.3 14.3	.0 50.0 14.3 20.0 50.0 30.0 40.0 .0 9.1 31.8 21.7 8.7 40.0 .0 41.2 42.9 43.8 37.0 	12.5 16.7 14.3 6.7 40.0 25.0 20.0 .0 22.7 27.3 30.4 10.0 27.3 17.6 28.6 18.8 18.5 18.8 5.0 7.5 .0 33.3 .0 .0 10.0 14.3 6.7 11.1 14.3 .0 8.6 .0 .0 13.3 8.3 14.3 8.3 14.3 25.0 7.1 14.3 14.3	62.5 16.7 57.1 40.0 .0 35.0 20.0 14.3 63.6 31.8 39.1 40.0 63.6 41.2 21.4 31.3 51.9 12.5 70.0 45.0 60.0 16.7 80.0 50.0 60.0 40.0 33.3 22.2 42.9 50.0 33.3 22.2 42.9 50.0 42.9 66.7 20.0 25.0 25.0 16.7 40.0 40.0 19.0 33.3 28.6 33.3 14.3 25.0 46.4 25.0 64.3	100.0 100.0	75.00 38.33 63.89 50.00 22.22 50.00 41.67 43.33 71.43 50.00 56.35 46.30 75.00 51.51 48.72 44.79 57.41 45.45 66.67 54.27 72.22 44.44 80.00 66.67 55.00 58.33 57.78 57.14 54.76 63.33 66.66 54.54 80.55 59.52 76.67 61.11 50.00 68.18 70.83 41.67 72.92 58.05 77.78 54.63 51.67 68.18 53.85 54.16 69.05	

[계 속]

【 표 10 】 어항 개발사업을 통한 어업활동 편리성 개선

[문 10] 선생님께서는 국가어항 개발사업을 통해 어업활동이 편리하게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무응답	*부정*	*보통*	*긍정*	X	MQ10
		%	%	%	%	%	%	%	%	%	%	%	계	*평균*
연평노출양어항	(11)	9.1	.0	18.2	36.4	.0	36.4	.0	.0	27.3	36.4	36.4	100.0	54.54
	(4)	.0	25.0	.0	50.0	.0	.0	25.0	.0	25.0	50.0	25.0	100.0	54.17
	(12)	.0	8.3	16.7	33.3	.0	8.3	16.7	16.7	25.0	33.3	25.0	100.0	56.67
	(18)	.0	5.6	.0	33.3	22.2	11.1	27.8	.0	5.6	33.3	61.1	100.0	69.44
	(17)	.0	5.9	17.6	11.8	23.5	5.9	11.8	23.5	23.5	11.8	41.2	100.0	58.97
	(17)	5.9	.0	5.9	29.4	5.9	5.9	23.5	23.5	11.8	29.4	35.3	100.0	64.10
	(8)	.0	12.5	.0	12.5	37.5	.0	12.5	25.0	12.5	25.0	50.0	100.0	61.11
	(7)	14.3	.0	28.6	.0	14.3	28.6	.0	14.3	42.9	.0	42.9	100.0	50.00
	(18)	.0	5.6	16.7	27.8	5.6	11.1	16.7	33.3	22.2	27.8	33.3	100.0	60.00
	(6)	.0	.0	.0	.0	33.3	16.7	16.7	33.3	.0	.0	66.7	100.0	79.17
대포포구	(7)	.0	.0	.0	28.6	42.9	14.3	.0	14.3	.0	28.6	57.1	100.0	63.89
	(6)	.0	.0	.0	66.7	.0	16.7	.0	16.7	.0	66.7	16.7	100.0	56.67
	(5)	20.0	.0	.0	.0	60.0	20.0	.0	.0	20.0	.0	80.0	100.0	56.67
	(5)	.0	.0	20.0	40.0	.0	20.0	.0	20.0	20.0	40.0	40.0	100.0	63.33
	(4)	.0	.0	25.0	25.0	25.0	.0	25.0	.0	25.0	25.0	50.0	100.0	62.50
	(17)	5.9	.0	11.8	29.4	23.5	5.9	17.6	5.9	17.6	29.4	47.1	100.0	60.42
	(3)	33.3	.0	.0	.0	.0	33.3	33.3	.0	33.3	.0	66.7	100.0	61.11
	(3)	33.3	.0	.0	.0	.0	33.3	.0	33.3	33.3	.0	33.3	100.0	41.67
	(4)	25.0	.0	.0	25.0	.0	.0	.0	50.0	25.0	25.0	.0	100.0	25.00
	(6)	.0	.0	.0	16.7	16.7	.0	16.7	50.0	.0	16.7	33.3	100.0	72.22
대포포구	(4)	.0	.0	.0	50.0	25.0	25.0	.0	.0	.0	50.0	50.0	100.0	62.50
	(6)	.0	.0	.0	33.3	.0	50.0	16.7	.0	.0	33.3	66.7	100.0	75.00
	(8)	.0	.0	.0	37.5	12.5	50.0	.0	.0	.0	37.5	62.5	100.0	68.75
	(6)	.0	16.7	.0	.0	16.7	33.3	16.7	16.7	16.7	.0	66.7	100.0	70.00
	(11)	.0	.0	.0	.0	27.3	18.2	45.5	9.1	.0	.0	90.9	100.0	86.67
	(6)	.0	.0	.0	.0	.0	33.3	50.0	16.7	.0	.0	83.3	100.0	93.33
	(6)	.0	.0	33.3	.0	16.7	16.7	16.7	33.3	.0	50.0	100.0	63.33	
	(6)	.0	.0	.0	50.0	.0	.0	33.3	16.7	.0	50.0	33.3	100.0	70.00
	(19)	5.3	10.5	10.5	15.8	5.3	10.5	31.6	10.5	26.3	15.8	47.4	100.0	63.73
	(6)	.0	16.7	.0	.0	.0	33.3	.0	50.0	16.7	.0	33.3	100.0	61.11
대포포구	(21)	.0	.0	.0	42.9	.0	14.3	23.8	19.0	.0	42.9	38.1	100.0	70.59
	(5)	.0	.0	20.0	20.0	.0	20.0	20.0	20.0	20.0	20.0	40.0	100.0	66.66
	(4)	.0	.0	.0	.0	25.0	25.0	50.0	.0	.0	.0	100.0	100.0	87.50
	(6)	.0	.0	.0	.0	.0	33.3	66.7	.0	.0	.0	100.0	100.0	94.44
	(11)	.0	18.2	.0	18.2	.0	9.1	36.4	18.2	18.2	18.2	45.5	100.0	68.52
	(9)	.0	22.2	11.1	22.2	11.1	22.2	11.1	.0	33.3	22.2	44.4	100.0	55.56
	(7)	14.3	.0	14.3	.0	14.3	28.6	28.6	.0	28.6	.0	71.4	100.0	66.67
	(6)	.0	16.7	16.7	16.7	.0	16.7	33.3	.0	33.3	16.7	50.0	100.0	63.89
	(5)	.0	.0	20.0	20.0	20.0	.0	.0	40.0	20.0	20.0	20.0	100.0	50.00
	(5)	.0	.0	.0	20.0	.0	20.0	60.0	.0	.0	20.0	80.0	100.0	86.67
대포포구	(11)	.0	.0	9.1	9.1	18.2	18.2	27.3	18.2	9.1	9.1	63.6	100.0	75.93
	(4)	.0	.0	.0	.0	25.0	25.0	.0	50.0	.0	50.0	100.0	75.00	
	(6)	16.7	.0	.0	16.7	16.7	.0	50.0	.0	16.7	16.7	66.7	100.0	69.45
	(9)	11.1	11.1	11.1	11.1	11.1	11.1	22.2	11.1	33.3	11.1	44.4	100.0	56.25
	(4)	.0	.0	.0	.0	25.0	25.0	25.0	.0	.0	.0	75.0	100.0	83.33
	(8)	.0	25.0	12.5	12.5	25.0	.0	.0	25.0	37.5	12.5	25.0	100.0	41.67
	(7)	.0	.0	.0	42.9	14.3	28.6	14.3	.0	.0	42.9	57.1	100.0	69.05
	(9)	11.1	.0	.0	22.2	11.1	22.2	11.1	22.2	11.1	22.2	44.4	100.0	61.90
	(4)	.0	25.0	.0	25.0	25.0	.0	.0	25.0	25.0	25.0	25.0	100.0	44.45
	(7)	14.3	.0	.0	14.3	14.3	14.3	28.6	14.3	14.3	14.3	57.1	100.0	66.67
대포포구	(10)	10.0	20.0	10.0	30.0	10.0	.0	20.0	.0	40.0	30.0	30.0	100.0	48.33
	(7)	.0	14.3	.0	14.3	14.3	14.3	14.3	28.6	14.3	14.3	42.9	100.0	63.33
	(6)	.0	.0	.0	16.7	16.7	.0	33.3	33.3	.0	16.7	50.0	100.0	79.17
	(3)	.0	.0	.0	33.3	33.3	.0	.0	33.3	.0	33.3	33.3	100.0	58.34
	(7)	.0	.0	.0	57.1	14.3	.0	28.6	.0	.0	57.1	42.9	100.0	66.67
	(11)	9.1	9.1	.0	18.2	.0	9.1	45.5	9.1	18.2	18.2	54.5	100.0	70.00
	(4)	.0	.0	.0	.0	50.0	25.0	25.0	.0	.0	.0	100.0	100.0	79.17
	(7)	14.3	14.3	.0	42.9	14.3	.0	.0	14.3	28.6	42.9	14.3	100.0	38.89
	(4)	25.0	.0	.0	.0	.0	25.0	25.0	25.0	25.0	.0	50.0	100.0	61.11
	(7)	.0	14.3	.0	14.3	28.6	28.6	.0	14.3	14.3	14.3	57.1	100.0	61.11
(4)	.0	25.0	.0	50.0	.0	.0	.0	25.0	25.0	50.0	.0	100.0	38.89	

【 표 11 】 어항 개발사업을 통한 어업활동 효율성 향상

[문 11] 선생님께서는 국가어항 개발사업을 통해 어업활동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무응답	*부정*	*보통*	*긍정*	X	MQ11	
		%	%	%	%	%	%	%	%	%	%	%	계	*평균*	
다대포대교	(11)	18.2	.0	9.1	18.2	9.1	18.2	9.1	18.2	27.3	18.2	36.4	100.0	51.85	
	(4)	25.0	.0	.0	25.0	.0	.0	25.0	25.0	25.0	25.0	25.0	100.0	50.00	
	대다포	(12)	.0	8.3	16.7	33.3	16.7	8.3	8.3	25.0	33.3	33.3	100.0	54.55	
		(18)	.0	16.7	.0	11.1	27.8	22.2	16.7	5.6	16.7	11.1	66.7	100.0	65.69
	조세포	(17)	.0	11.8	17.6	5.9	23.5	11.8	.0	29.4	29.4	5.9	35.3	100.0	51.39
		(17)	.0	.0	.0	23.5	11.8	5.9	23.5	35.3	.0	23.5	41.2	100.0	74.24
	전포	(8)	.0	12.5	.0	50.0	12.5	.0	12.5	12.5	12.5	50.0	25.0	100.0	54.76
		(7)	14.3	14.3	.0	.0	14.3	.0	14.3	42.9	28.6	.0	28.6	100.0	45.84
	메포	(18)	.0	5.6	11.1	38.9	11.1	5.6	16.7	11.1	16.7	38.9	33.3	100.0	59.38
		(6)	.0	16.7	16.7	33.3	.0	.0	16.7	16.7	33.3	33.3	16.7	100.0	50.00
	연포	(7)	.0	.0	14.3	28.6	.0	14.3	14.3	28.6	14.3	28.6	28.6	100.0	63.33
		(6)	.0	16.7	.0	16.7	.0	16.7	33.3	16.7	16.7	16.7	50.0	100.0	70.00
	수포	(5)	20.0	.0	.0	.0	80.0	.0	.0	.0	20.0	.0	80.0	100.0	53.34
		(5)	.0	20.0	20.0	20.0	20.0	.0	20.0	.0	40.0	20.0	40.0	100.0	53.33
	영포	(4)	.0	.0	.0	25.0	50.0	.0	25.0	.0	.0	25.0	75.0	100.0	70.84
		(17)	5.9	5.9	11.8	35.3	17.6	11.8	5.9	5.9	23.5	35.3	35.3	100.0	53.13
	대포	(3)	33.3	.0	.0	.0	.0	33.3	.0	33.3	33.3	.0	33.3	100.0	41.67
		(3)	.0	33.3	.0	.0	33.3	33.3	.0	.0	33.3	.0	66.7	100.0	55.56
	연포	(4)	.0	.0	.0	25.0	25.0	.0	25.0	25.0	.0	25.0	50.0	100.0	72.22
		(6)	.0	.0	.0	16.7	16.7	.0	.0	66.7	.0	16.7	16.7	100.0	58.34
전포	(4)	.0	.0	.0	75.0	.0	25.0	.0	.0	.0	75.0	25.0	100.0	58.33	
	(6)	.0	.0	.0	16.7	33.3	33.3	16.7	.0	.0	16.7	83.3	100.0	75.00	
대포	(8)	.0	.0	.0	37.5	.0	37.5	25.0	.0	.0	37.5	62.5	100.0	75.00	
	(6)	.0	16.7	.0	16.7	16.7	16.7	16.7	16.7	16.7	16.7	50.0	100.0	63.33	
연포	(11)	.0	9.1	.0	18.2	36.4	9.1	27.3	.0	9.1	18.2	72.7	100.0	69.70	
	(6)	.0	.0	.0	16.7	.0	16.7	50.0	16.7	.0	16.7	66.7	100.0	86.67	
수포	(6)	.0	.0	.0	16.7	16.7	33.3	16.7	16.7	.0	16.7	66.7	100.0	76.67	
	(19)	5.3	.0	15.8	5.3	21.1	15.8	31.6	5.3	21.1	5.3	68.4	100.0	70.37	
연포	(6)	.0	.0	.0	.0	16.7	16.7	16.7	50.0	.0	.0	50.0	100.0	83.33	
	(21)	.0	.0	9.5	19.0	19.0	19.0	14.3	19.0	9.5	19.0	52.4	100.0	68.63	
수포	(5)	.0	.0	.0	.0	20.0	.0	20.0	60.0	.0	.0	40.0	100.0	83.34	
	(4)	.0	.0	.0	25.0	25.0	.0	50.0	.0	.0	25.0	75.0	100.0	79.17	
연포	(6)	.0	.0	.0	.0	33.3	50.0	16.7	.0	.0	.0	100.0	100.0	80.55	
	(11)	.0	9.1	.0	27.3	.0	.0	36.4	27.3	9.1	27.3	36.4	100.0	70.83	
수포	(9)	.0	.0	.0	33.3	44.4	.0	11.1	11.1	.0	33.3	55.6	100.0	64.59	
	(7)	14.3	.0	.0	42.9	.0	14.3	14.3	14.3	14.3	42.9	28.6	100.0	55.56	
연포	(6)	.0	.0	16.7	16.7	.0	16.7	50.0	.0	16.7	16.7	66.7	100.0	77.78	
	(5)	.0	.0	20.0	.0	20.0	.0	20.0	40.0	20.0	.0	40.0	100.0	66.67	
수포	(11)	9.1	.0	.0	.0	45.5	9.1	18.2	18.2	9.1	.0	72.7	100.0	68.52	
	(4)	.0	.0	25.0	25.0	.0	.0	25.0	.0	25.0	50.0	100.0	100.0	62.50	
연포	(6)	16.7	.0	.0	33.3	.0	.0	16.7	33.3	16.7	33.3	16.7	100.0	50.00	
	(9)	11.1	.0	11.1	33.3	11.1	22.2	.0	11.1	22.2	33.3	33.3	100.0	52.08	
수포	(4)	.0	.0	.0	.0	50.0	.0	25.0	25.0	.0	.0	75.0	100.0	77.78	
	(8)	12.5	.0	25.0	12.5	12.5	.0	12.5	25.0	37.5	12.5	25.0	100.0	47.22	
연포	(7)	.0	.0	.0	28.6	28.6	14.3	28.6	.0	.0	28.6	71.4	100.0	73.81	
	(9)	.0	11.1	.0	11.1	11.1	33.3	11.1	22.2	11.1	11.1	55.6	100.0	69.05	
수포	(4)	.0	.0	.0	.0	25.0	.0	.0	75.0	.0	.0	25.0	100.0	66.67	
	(7)	14.3	.0	.0	14.3	14.3	14.3	42.9	.0	14.3	14.3	71.4	100.0	71.43	
연포	(10)	.0	20.0	.0	30.0	20.0	20.0	.0	10.0	20.0	30.0	40.0	100.0	53.70	
	(7)	.0	14.3	.0	14.3	14.3	14.3	14.3	28.6	14.3	14.3	42.9	100.0	63.33	
수포	(6)	.0	.0	.0	16.7	16.7	.0	33.3	33.3	.0	16.7	50.0	100.0	79.17	
	(3)	.0	.0	.0	100.0	.0	.0	.0	.0	.0	100.0	.0	100.0	50.00	
연포	(7)	.0	.0	14.3	28.6	28.6	.0	14.3	14.3	14.3	28.6	42.9	100.0	61.11	
	(11)	.0	.0	.0	27.3	18.2	.0	36.4	18.2	.0	27.3	54.5	100.0	75.93	
수포	(4)	.0	.0	.0	.0	75.0	.0	25.0	.0	.0	.0	100.0	100.0	75.00	
	(7)	14.3	.0	.0	.0	.0	.0	.0	14.3	85.7	.0	.0	100.0	19.45	
연포	(4)	25.0	.0	25.0	25.0	.0	.0	25.0	.0	50.0	25.0	25.0	100.0	45.83	
	(7)	.0	.0	.0	28.6	14.3	28.6	.0	28.6	.0	28.6	42.9	100.0	66.67	
수포	(4)	25.0	.0	.0	50.0	.0	25.0	.0	.0	25.0	50.0	25.0	100.0	45.83	

【 표 12 】 어항 개발사업의 강화 여부

[문 12] 선생님께서 현재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국가어항개발 사업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부정*	*보통*	*긍정*	X	MQ12
		%	%	%	%	%	%	%	%	%	%	%	계	*평균*
■ 전 체 ■	(1166)	2.2	1.4	1.9	11.7	11.7	18.4	43.7	9.1	5.5	11.7	73.8	100.0	80.83
■ 권역별 해안권 개발사업 ■	(355)	3.9	.3	.8	9.6	11.3	18.3	47.6	8.2	5.1	9.6	77.2	100.0	82.21
(575)	1.6	1.7	2.8	12.5	11.0	19.7	41.7	9.0	6.1	12.5	72.3	100.0	80.15	
(236)	1.3	2.1	1.3	12.7	14.0	15.7	42.4	10.6	4.7	12.7	72.0	100.0	80.41	
■ 권역별 관광자원개발사업 ■	(60)	1.7	.0	.0	15.0	11.7	20.0	43.3	8.3	1.7	15.0	75.0	100.0	82.12
(113)	4.4	.9	.9	12.4	9.7	19.5	44.2	8.0	6.2	12.4	73.5	100.0	79.97	
(118)	5.1	.0	.0	5.1	12.7	19.5	48.3	8.5	5.9	5.1	80.5	100.0	82.87	
(412)	1.7	1.2	2.4	12.1	10.2	19.2	44.9	8.3	5.3	12.1	74.3	100.0	81.48	
(172)	1.2	2.9	2.9	11.6	12.2	20.3	40.1	8.7	7.0	11.6	72.7	100.0	79.41	
(17)	11.8	.0	.0	5.9	5.9	17.6	29.4	29.4	11.8	5.9	52.9	100.0	72.22	
(10)	.0	.0	.0	10.0	.0	50.0	40.0	.0	.0	10.0	90.0	100.0	86.67	
(131)	.0	2.3	.0	11.5	15.3	19.8	40.5	10.7	2.3	11.5	75.6	100.0	82.05	
(95)	3.2	2.1	3.2	14.7	13.7	6.3	45.3	11.6	8.4	14.7	65.3	100.0	77.38	
(38)	.0	.0	5.3	15.8	15.8	10.5	44.7	7.9	5.3	15.8	71.1	100.0	80.00	
■ 제주지역 어항 정비사업 ■	(1128)	2.3	1.4	1.8	11.5	11.5	18.7	43.6	9.1	5.5	11.5	73.8	100.0	80.86
(38)	.0	.0	5.3	15.8	15.8	10.5	44.7	7.9	5.3	15.8	71.1	100.0	80.00	
■ 어항 주변 정비사업 ■	(8)	.0	.0	.0	12.5	37.5	37.5	12.5	.0	.0	12.5	87.5	100.0	75.00
(12)	8.3	.0	.0	25.0	.0	16.7	41.7	8.3	8.3	25.0	58.3	100.0	74.24	
(14)	.0	.0	.0	21.4	7.1	21.4	42.9	7.1	.0	21.4	71.4	100.0	82.05	
(15)	.0	.0	.0	6.7	6.7	13.3	53.3	20.0	.0	6.7	73.3	100.0	90.28	
(4)	.0	.0	.0	.0	.0	25.0	75.0	.0	.0	.0	100.0	100.0	95.83	
(20)	5.0	.0	.0	20.0	15.0	15.0	35.0	10.0	5.0	20.0	65.0	100.0	75.00	
(5)	20.0	.0	.0	.0	20.0	20.0	40.0	.0	20.0	.0	80.0	100.0	70.00	
(7)	.0	.0	.0	.0	14.3	28.6	42.9	14.3	.0	.0	85.7	100.0	88.89	
(22)	4.5	.0	4.5	13.6	4.5	27.3	45.5	.0	9.1	13.6	77.3	100.0	79.54	
(22)	4.5	.0	.0	9.1	9.1	18.2	50.0	9.1	4.5	9.1	77.3	100.0	83.33	
(23)	.0	4.3	.0	17.4	4.3	13.0	47.8	13.0	4.3	17.4	65.2	100.0	81.67	
(10)	.0	.0	.0	.0	20.0	20.0	50.0	10.0	.0	.0	90.0	100.0	88.89	
(11)	9.1	.0	9.1	.0	18.2	.0	27.3	36.4	18.2	.0	45.5	100.0	66.67	
(34)	5.9	.0	.0	2.9	11.8	26.5	52.9	.0	5.9	2.9	91.2	100.0	84.31	
(14)	7.1	.0	.0	.0	14.3	35.7	42.9	.0	7.1	.0	92.9	100.0	82.14	
(16)	12.5	.0	.0	6.3	18.8	.0	56.3	6.3	12.5	6.3	75.0	100.0	76.67	
(27)	.0	.0	.0	11.1	11.1	22.2	48.1	7.4	.0	11.1	81.5	100.0	86.00	
(16)	.0	.0	.0	6.3	6.3	18.8	50.0	18.8	.0	6.3	75.0	100.0	89.74	
(20)	.0	.0	.0	10.0	.0	25.0	55.0	10.0	.0	10.0	80.0	100.0	89.81	
(40)	5.0	.0	2.5	20.0	20.0	20.0	27.5	5.0	7.5	20.0	67.5	100.0	71.93	
(10)	.0	.0	.0	10.0	10.0	.0	70.0	10.0	.0	10.0	80.0	100.0	90.74	
(6)	.0	.0	.0	16.7	16.7	.0	66.7	.0	.0	16.7	83.3	100.0	86.11	
(5)	.0	.0	.0	.0	20.0	.0	60.0	20.0	.0	.0	80.0	100.0	91.67	
(4)	25.0	.0	25.0	25.0	.0	25.0	.0	.0	50.0	25.0	25.0	100.0	41.67	
(10)	.0	.0	.0	20.0	30.0	.0	40.0	10.0	.0	20.0	70.0	100.0	77.78	
(14)	7.1	.0	.0	7.1	7.1	21.4	50.0	7.1	7.1	7.1	78.6	100.0	82.05	
(15)	6.7	.0	.0	.0	13.3	13.3	66.7	.0	6.7	.0	93.3	100.0	86.67	
(9)	.0	.0	11.1	22.2	.0	.0	66.7	.0	11.1	22.2	66.7	100.0	81.48	
(14)	.0	.0	.0	28.6	21.4	7.1	21.4	21.4	.0	28.6	50.0	100.0	71.21	
(10)	.0	.0	30.0	.0	.0	20.0	40.0	10.0	30.0	.0	60.0	100.0	74.07	
(3)	.0	.0	.0	.0	33.3	.0	33.3	33.3	.0	.0	66.7	100.0	83.34	
(35)	.0	5.7	2.9	8.6	5.7	20.0	51.4	5.7	8.6	8.6	77.1	100.0	82.83	
(6)	.0	.0	.0	16.7	.0	33.3	33.3	16.7	.0	16.7	66.7	100.0	83.33	
(8)	12.5	.0	.0	25.0	25.0	25.0	12.5	.0	12.5	25.0	62.5	100.0	62.50	
(6)	.0	.0	.0	.0	16.7	.0	66.7	16.7	.0	.0	83.3	100.0	93.33	
(10)	.0	.0	.0	.0	.0	30.0	50.0	20.0	.0	.0	80.0	100.0	93.75	
(15)	.0	6.7	6.7	20.0	13.3	13.3	40.0	.0	13.3	20.0	66.7	100.0	73.33	
(12)	.0	.0	8.3	25.0	.0	16.7	50.0	.0	8.3	25.0	66.7	100.0	79.17	
(5)	.0	.0	.0	.0	40.0	.0	40.0	20.0	.0	.0	80.0	100.0	83.34	
(21)	.0	9.5	.0	9.5	4.8	23.8	38.1	14.3	9.5	9.5	66.7	100.0	78.70	
(10)	.0	.0	.0	20.0	.0	10.0	50.0	20.0	.0	20.0	60.0	100.0	85.42	
(30)	3.3	.0	.0	16.7	3.3	16.7	50.0	10.0	3.3	16.7	70.0	100.0	82.72	
(3)	.0	.0	.0	.0	.0	66.7	.0	33.3	.0	.0	66.7	100.0	83.33	
(21)	.0	.0	.0	.0	14.3	33.3	47.6	4.8	.0	.0	95.2	100.0	89.17	
(12)	.0	.0	.0	8.3	25.0	41.7	16.7	8.3	.0	8.3	83.3	100.0	78.79	
(12)	.0	.0	.0	25.0	8.3	33.3	25.0	8.3	.0	25.0	66.7	100.0	77.27	
(28)	.0	.0	3.6	3.6	10.7	17.9	57.1	7.1	3.6	3.6	85.7	100.0	88.46	
(4)	.0	.0	.0	25.0	.0	75.0	.0	.0	.0	25.0	75.0	100.0	75.00	
(14)	.0	.0	.0	7.1	.0	14.3	78.6	.0	.0	7.1	92.9	100.0	94.05	

[계 속]

【 표 12 】 여항 개발사업의 강화 여부

[문 12] 선생님께서는 현재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국가여항개발 사업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무응답	*부정*	*보통*	*긍정*	X	MQ12
		%	%	%	%	%	%	%	%	%	%	%	계	*평균*
다	(11)	.0	.0	.0	36.4	.0	.0	45.5	18.2	.0	36.4	45.5	100.0	77.78
	(4)	.0	.0	.0	.0	.0	25.0	75.0	.0	.0	.0	100.0	100.0	95.83
	(12)	.0	.0	.0	16.7	16.7	25.0	33.3	8.3	.0	16.7	75.0	100.0	80.30
	(18)	.0	11.1	.0	5.6	11.1	38.9	22.2	11.1	11.1	5.6	72.2	100.0	75.00
	(17)	.0	.0	5.9	5.9	29.4	23.5	23.5	11.8	5.9	5.9	76.5	100.0	76.67
	(17)	.0	.0	.0	.0	5.9	17.6	52.9	23.5	.0	.0	76.5	100.0	93.59
	(8)	.0	.0	.0	25.0	.0	50.0	25.0	.0	.0	25.0	75.0	100.0	79.16
	(7)	.0	.0	.0	.0	14.3	42.9	42.9	.0	.0	.0	100.0	100.0	88.09
	(18)	.0	5.6	11.1	5.6	11.1	11.1	55.6	.0	16.7	5.6	77.8	100.0	79.63
	(6)	.0	33.3	.0	.0	.0	16.7	50.0	.0	33.3	.0	66.7	100.0	69.45
대	(7)	.0	.0	14.3	28.6	28.6	.0	28.6	.0	14.3	28.6	57.1	100.0	66.67
	(6)	.0	.0	16.7	16.7	.0	33.3	33.3	.0	16.7	16.7	66.7	100.0	75.00
	(5)	20.0	.0	.0	20.0	40.0	.0	20.0	.0	20.0	20.0	60.0	100.0	56.67
	(5)	.0	.0	.0	20.0	20.0	20.0	20.0	20.0	.0	20.0	60.0	100.0	75.00
	(4)	.0	.0	.0	25.0	.0	.0	50.0	25.0	.0	25.0	50.0	100.0	83.33
	(17)	.0	.0	.0	5.9	17.6	5.9	70.6	.0	.0	5.9	94.1	100.0	90.20
	(3)	.0	.0	.0	33.3	.0	33.3	33.3	.0	.0	33.3	66.7	100.0	77.78
	(3)	.0	.0	.0	33.3	.0	33.3	.0	33.3	.0	33.3	33.3	100.0	66.66
	(4)	.0	.0	.0	25.0	.0	50.0	.0	25.0	.0	25.0	50.0	100.0	72.22
	(6)	16.7	.0	.0	.0	16.7	.0	16.7	50.0	16.7	.0	33.3	100.0	55.56
어	(4)	.0	.0	.0	25.0	.0	50.0	25.0	.0	.0	25.0	75.0	100.0	79.16
	(6)	.0	.0	.0	.0	.0	50.0	50.0	.0	.0	100.0	100.0	91.67	
	(8)	.0	12.5	.0	25.0	12.5	12.5	25.0	12.5	12.5	25.0	50.0	100.0	66.67
	(6)	.0	.0	.0	.0	33.3	16.7	33.3	16.7	.0	.0	83.3	100.0	83.33
	(11)	.0	.0	.0	9.1	18.2	9.1	54.5	9.1	.0	9.1	81.8	100.0	86.67
	(6)	.0	.0	.0	.0	.0	16.7	50.0	33.3	.0	.0	66.7	100.0	95.83
	(6)	.0	.0	.0	33.3	16.7	16.7	33.3	.0	.0	33.3	66.7	100.0	75.00
	(6)	.0	.0	.0	16.7	33.3	.0	50.0	.0	.0	16.7	83.3	100.0	80.56
	(19)	.0	5.3	.0	.0	5.3	26.3	57.9	5.3	5.3	.0	89.5	100.0	88.89
	(6)	.0	.0	.0	.0	.0	50.0	16.7	33.3	.0	.0	66.7	100.0	87.50
대	(21)	.0	.0	.0	19.0	23.8	28.6	23.8	4.8	.0	19.0	76.2	100.0	76.67
	(5)	.0	.0	.0	.0	20.0	40.0	40.0	.0	.0	.0	100.0	100.0	86.67
	(4)	.0	.0	.0	25.0	25.0	.0	50.0	.0	.0	25.0	75.0	100.0	79.17
	(6)	.0	.0	.0	.0	.0	50.0	50.0	.0	.0	.0	100.0	100.0	91.67
	(11)	.0	.0	.0	.0	18.2	.0	54.5	27.3	.0	.0	72.7	100.0	91.67
	(9)	.0	.0	.0	33.3	11.1	11.1	33.3	11.1	.0	33.3	55.6	100.0	75.00
	(7)	.0	14.3	.0	14.3	14.3	14.3	28.6	14.3	14.3	14.3	57.1	100.0	69.45
	(6)	.0	.0	.0	.0	16.7	16.7	66.7	.0	.0	.0	100.0	100.0	91.67
	(5)	.0	.0	.0	20.0	.0	20.0	40.0	20.0	.0	20.0	60.0	100.0	83.33
	(5)	20.0	.0	.0	20.0	20.0	.0	40.0	.0	20.0	20.0	60.0	100.0	63.33
현	(11)	.0	.0	.0	27.3	9.1	9.1	54.5	.0	.0	27.3	72.7	100.0	81.82
	(4)	.0	.0	.0	.0	25.0	.0	50.0	25.0	.0	.0	75.0	100.0	88.89
	(6)	16.7	.0	.0	16.7	16.7	.0	50.0	.0	16.7	16.7	66.7	100.0	69.45
	(9)	11.1	.0	.0	11.1	.0	.0	55.6	22.2	11.1	11.1	55.6	100.0	78.57
	(4)	.0	.0	.0	.0	.0	.0	75.0	25.0	.0	.0	75.0	100.0	100.00
	(8)	.0	.0	37.5	25.0	.0	.0	25.0	12.5	37.5	25.0	25.0	100.0	57.14
	(7)	.0	.0	.0	28.6	28.6	.0	42.9	.0	.0	28.6	71.4	100.0	76.19
	(9)	.0	.0	.0	.0	22.2	11.1	44.4	22.2	.0	.0	77.8	100.0	88.10
	(4)	.0	.0	.0	.0	50.0	25.0	25.0	.0	.0	.0	100.0	100.0	79.17
	(7)	.0	.0	.0	14.3	.0	14.3	57.1	14.3	.0	14.3	71.4	100.0	88.89
수	(10)	.0	20.0	.0	20.0	20.0	.0	20.0	20.0	20.0	20.0	40.0	100.0	58.34
	(7)	.0	.0	.0	14.3	.0	14.3	57.1	14.3	.0	14.3	71.4	100.0	88.89
	(6)	.0	.0	.0	16.7	33.3	16.7	33.3	.0	.0	16.7	83.3	100.0	77.78
	(3)	.0	.0	33.3	.0	33.3	.0	33.3	.0	33.3	.0	66.7	100.0	66.67
	(7)	.0	.0	.0	28.6	14.3	.0	42.9	14.3	.0	28.6	57.1	100.0	77.78
	(11)	.0	.0	9.1	9.1	9.1	9.1	54.5	9.1	9.1	9.1	72.7	100.0	83.33
	(4)	.0	.0	.0	25.0	25.0	.0	25.0	.0	.0	25.0	75.0	100.0	75.00
	(7)	14.3	.0	.0	.0	.0	14.3	57.1	14.3	14.3	.0	71.4	100.0	80.55
	(4)	25.0	.0	.0	.0	.0	25.0	25.0	25.0	25.0	.0	50.0	100.0	61.11
	(7)	.0	.0	.0	14.3	28.6	14.3	42.9	.0	.0	14.3	85.7	100.0	80.95
(4)	25.0	.0	.0	25.0	.0	25.0	25.0	.0	25.0	25.0	50.0	100.0	58.33	

【 표 13 】 여항 건설관련 예산지원 만족도

[문 13] 거주하시는 지역의 국가여항 건설관련 예산지원

	사례수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불만족	보통이다	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모름/무응답	*불만족*	*보통*	*만족*	X	MQ13
		%	%	%	%	%	%	%	%	%	%	%	계	*평균*
다대포포구지하차도	(11)	9.1	.0	9.1	36.4	27.3	.0	.0	18.2	18.2	36.4	27.3	100.0	48.15
	(4)	.0	.0	50.0	25.0	.0	.0	.0	25.0	50.0	25.0	.0	100.0	38.89
	(12)	8.3	.0	16.7	16.7	8.3	.0	.0	50.0	25.0	16.7	8.3	100.0	38.89
	(18)	5.6	.0	.0	27.8	11.1	5.6	11.1	38.9	5.6	27.8	27.8	100.0	60.61
	(17)	5.9	.0	11.8	35.3	5.9	11.8	.0	29.4	17.6	35.3	17.6	100.0	50.00
	(17)	.0	.0	11.8	11.8	11.8	.0	.0	64.7	11.8	11.8	11.8	100.0	50.00
	(8)	12.5	.0	12.5	25.0	.0	.0	12.5	37.5	25.0	25.0	12.5	100.0	46.67
	(7)	14.3	.0	.0	.0	.0	.0	.0	85.7	14.3	.0	.0	100.0	.00
	(18)	5.6	11.1	11.1	22.2	11.1	11.1	11.1	16.7	27.8	22.2	33.3	100.0	53.33
	(6)	16.7	.0	16.7	33.3	.0	.0	.0	33.3	33.3	33.3	.0	100.0	33.33
대포포구지하차도	(7)	.0	14.3	.0	28.6	14.3	14.3	.0	28.6	14.3	28.6	28.6	100.0	53.33
	(6)	33.3	.0	.0	16.7	.0	33.3	.0	16.7	33.3	16.7	33.3	100.0	43.33
	(5)	.0	.0	20.0	40.0	20.0	20.0	.0	.0	20.0	40.0	40.0	100.0	56.67
	(5)	.0	.0	.0	40.0	.0	.0	.0	60.0	.0	40.0	.0	100.0	50.00
	(4)	.0	.0	.0	.0	25.0	.0	.0	75.0	.0	.0	25.0	100.0	66.67
	(17)	5.9	5.9	23.5	35.3	5.9	.0	.0	23.5	35.3	35.3	5.9	100.0	39.74
	(3)	33.3	.0	.0	.0	.0	.0	33.3	33.3	33.3	.0	33.3	100.0	50.00
	(3)	.0	.0	33.3	.0	66.7	.0	.0	.0	33.3	.0	66.7	100.0	55.56
	(4)	.0	.0	.0	25.0	.0	.0	.0	75.0	.0	25.0	.0	100.0	50.00
	(6)	.0	.0	.0	16.7	.0	.0	.0	83.3	.0	16.7	.0	100.0	50.00
대포포구지하차도	(4)	.0	.0	25.0	50.0	.0	.0	25.0	.0	25.0	50.0	25.0	100.0	58.33
	(6)	.0	.0	.0	16.7	16.7	16.7	.0	50.0	.0	16.7	33.3	100.0	66.67
	(8)	.0	.0	.0	50.0	.0	12.5	.0	37.5	.0	50.0	12.5	100.0	56.67
	(6)	16.7	.0	16.7	33.3	16.7	.0	.0	16.7	33.3	33.3	16.7	100.0	40.00
	(11)	9.1	9.1	9.1	9.1	18.2	9.1	18.2	18.2	27.3	9.1	45.5	100.0	57.41
	(6)	16.7	.0	.0	.0	16.7	16.7	50.0	.0	16.7	.0	83.3	100.0	75.00
	(6)	.0	.0	16.7	33.3	16.7	.0	16.7	16.7	33.3	33.3	100.0	60.00	
	(6)	16.7	.0	.0	16.7	.0	.0	16.7	50.0	16.7	16.7	16.7	100.0	50.00
	(19)	10.5	5.3	5.3	47.4	10.5	.0	.0	21.1	21.1	47.4	10.5	100.0	42.22
	(6)	16.7	.0	16.7	.0	.0	.0	.0	66.7	33.3	.0	.0	100.0	16.67
대포포구지하차도	(21)	14.3	9.5	4.8	9.5	4.8	9.5	4.8	42.9	28.6	9.5	19.0	100.0	41.67
	(5)	.0	.0	.0	20.0	20.0	.0	.0	60.0	.0	20.0	20.0	100.0	58.34
	(4)	.0	.0	25.0	25.0	.0	.0	50.0	.0	25.0	25.0	50.0	100.0	70.83
	(6)	16.7	.0	.0	33.3	.0	.0	16.7	33.3	16.7	33.3	16.7	100.0	50.00
	(11)	.0	.0	.0	27.3	18.2	.0	9.1	45.5	.0	27.3	27.3	100.0	63.89
	(9)	.0	.0	22.2	22.2	11.1	.0	.0	44.4	22.2	22.2	11.1	100.0	46.67
	(7)	14.3	.0	14.3	14.3	.0	.0	.0	57.1	28.6	14.3	.0	100.0	27.78
	(5)	.0	.0	16.7	33.3	16.7	16.7	16.7	.0	16.7	33.3	50.0	100.0	63.89
	(5)	.0	.0	20.0	.0	.0	.0	.0	80.0	20.0	.0	.0	100.0	33.33
	(11)	27.3	.0	.0	18.2	9.1	36.4	.0	20.0	20.0	40.0	20.0	100.0	50.00
대포포구지하차도	(4)	.0	.0	25.0	.0	.0	.0	25.0	50.0	25.0	.0	25.0	100.0	66.66
	(6)	.0	.0	.0	50.0	.0	16.7	.0	33.3	.0	50.0	16.7	100.0	58.33
	(9)	11.1	.0	11.1	22.2	.0	.0	11.1	44.4	22.2	22.2	11.1	100.0	46.67
	(4)	.0	.0	.0	25.0	25.0	.0	.0	50.0	.0	25.0	25.0	100.0	58.34
	(8)	12.5	.0	12.5	25.0	.0	.0	.0	50.0	25.0	25.0	.0	100.0	33.33
	(7)	.0	.0	28.6	.0	.0	28.6	.0	42.9	28.6	.0	28.6	100.0	58.33
	(9)	11.1	.0	.0	22.2	.0	.0	11.1	55.6	11.1	22.2	11.1	100.0	50.00
	(4)	50.0	.0	25.0	.0	.0	.0	.0	25.0	75.0	.0	.0	100.0	11.11
	(7)	14.3	.0	14.3	14.3	.0	.0	14.3	42.9	28.6	14.3	14.3	100.0	45.83
	(10)	.0	10.0	.0	40.0	10.0	.0	.0	40.0	10.0	40.0	10.0	100.0	47.22
대포포구지하차도	(7)	.0	14.3	.0	.0	14.3	.0	.0	71.4	14.3	.0	14.3	100.0	41.67
	(6)	.0	.0	16.7	33.3	16.7	16.7	.0	16.7	16.7	33.3	33.3	100.0	56.67
	(3)	.0	.0	.0	33.3	.0	.0	.0	66.7	.0	33.3	.0	100.0	50.00
	(7)	.0	.0	14.3	14.3	14.3	.0	14.3	42.9	14.3	14.3	28.6	100.0	62.50
	(11)	9.1	9.1	.0	27.3	.0	.0	18.2	36.4	18.2	27.3	18.2	100.0	52.38
	(4)	.0	.0	.0	75.0	.0	.0	25.0	.0	.0	75.0	25.0	100.0	62.50
	(7)	28.6	.0	.0	28.6	14.3	.0	.0	28.6	28.6	28.6	14.3	100.0	33.33
	(4)	.0	.0	.0	25.0	.0	.0	25.0	50.0	.0	25.0	25.0	100.0	75.00
	(7)	.0	14.3	14.3	.0	28.6	.0	.0	42.9	28.6	.0	28.6	100.0	45.84
	(4)	.0	25.0	.0	.0	.0	.0	.0	75.0	25.0	.0	.0	100.0	16.67

【 표 14 】 어항시설 만족도

[문 14] 방파제, 선착장, 어구보전시설, 보급시설, 수산물 유통판매/처리/가공 시설 등 어항시설

	사례수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불만족	보통이다	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모름/무응답	*불만족*	*보통*	*만족*	X	MQ14
		%	%	%	%	%	%	%	%	%	%	%	계	*평균*
다대포대교	(11)	18.2	.0	27.3	27.3	9.1	9.1	.0	9.1	45.5	27.3	18.2	100.0	40.00
	(4)	25.0	.0	.0	25.0	.0	25.0	.0	25.0	25.0	25.0	25.0	100.0	44.44
	(12)	8.3	.0	16.7	41.7	.0	8.3	25.0	.0	25.0	41.7	33.3	100.0	58.33
	(18)	5.6	5.6	22.2	22.2	16.7	.0	16.7	11.1	33.3	22.2	33.3	100.0	53.12
	(17)	5.9	5.9	23.5	17.6	5.9	23.5	.0	17.6	35.3	17.6	29.4	100.0	50.00
	(17)	.0	.0	11.8	35.3	11.8	5.9	11.8	23.5	11.8	35.3	29.4	100.0	60.26
	(8)	12.5	.0	25.0	25.0	.0	12.5	12.5	12.5	37.5	25.0	25.0	100.0	50.00
	(7)	14.3	.0	14.3	42.9	14.3	.0	.0	.0	28.6	42.9	28.6	100.0	47.62
	(18)	11.1	5.6	16.7	44.4	.0	5.6	5.6	11.1	33.3	44.4	11.1	100.0	43.75
	(6)	16.7	.0	.0	33.3	33.3	.0	.0	16.7	16.7	33.3	33.3	100.0	46.67
(7)	14.3	14.3	14.3	14.3	28.6	.0	14.3	.0	42.9	14.3	42.9	100.0	47.62	
(6)	16.7	.0	.0	33.3	33.3	.0	16.7	.0	16.7	33.3	50.0	100.0	52.78	
(5)	.0	.0	40.0	20.0	.0	40.0	.0	.0	40.0	20.0	40.0	100.0	56.66	
(5)	.0	.0	20.0	20.0	40.0	.0	.0	20.0	20.0	20.0	40.0	100.0	54.17	
(4)	.0	.0	.0	25.0	50.0	.0	.0	25.0	.0	25.0	50.0	100.0	61.11	
(17)	5.9	11.8	23.5	29.4	11.8	5.9	11.8	.0	41.2	29.4	29.4	100.0	49.02	
(3)	33.3	33.3	.0	.0	.0	.0	33.3	.0	66.7	.0	33.3	100.0	38.89	
(3)	.0	.0	.0	33.3	33.3	.0	.0	33.3	.0	33.3	33.3	100.0	58.34	
(4)	25.0	.0	25.0	25.0	.0	.0	25.0	.0	50.0	25.0	25.0	100.0	45.83	
(6)	16.7	.0	33.3	16.7	33.3	.0	.0	.0	50.0	16.7	33.3	100.0	41.67	
(4)	.0	.0	25.0	25.0	25.0	.0	25.0	.0	25.0	25.0	50.0	100.0	58.33	
(6)	16.7	.0	16.7	50.0	.0	.0	16.7	.0	33.3	50.0	16.7	100.0	47.22	
(8)	.0	12.5	12.5	50.0	12.5	12.5	.0	.0	25.0	50.0	25.0	100.0	50.00	
(6)	33.3	.0	16.7	16.7	16.7	.0	.0	16.7	50.0	16.7	16.7	100.0	30.00	
(11)	9.1	9.1	18.2	.0	9.1	9.1	36.4	9.1	36.4	.0	54.5	100.0	63.33	
(6)	.0	16.7	16.7	16.7	16.7	16.7	16.7	.0	33.3	16.7	50.0	100.0	58.33	
(6)	.0	16.7	16.7	16.7	16.7	.0	33.3	.0	33.3	16.7	50.0	100.0	61.11	
(6)	.0	.0	16.7	50.0	16.7	.0	.0	16.7	16.7	50.0	16.7	100.0	50.00	
(19)	10.5	.0	10.5	36.8	15.8	5.3	.0	.0	21.1	36.8	21.1	100.0	46.67	
(6)	.0	16.7	16.7	33.3	16.7	.0	.0	16.7	33.3	33.3	16.7	100.0	43.33	
(21)	14.3	4.8	.0	28.6	19.0	14.3	14.3	4.8	19.0	28.6	47.6	100.0	56.67	
(5)	.0	20.0	20.0	20.0	.0	20.0	.0	20.0	40.0	20.0	20.0	100.0	45.83	
(4)	25.0	50.0	.0	.0	.0	.0	25.0	.0	75.0	.0	25.0	100.0	33.34	
(6)	16.7	.0	.0	33.3	33.3	16.7	.0	.0	16.7	33.3	50.0	100.0	52.78	
(11)	.0	.0	18.2	36.4	9.1	.0	27.3	9.1	18.2	36.4	36.4	100.0	63.33	
(9)	11.1	22.2	.0	44.4	11.1	11.1	.0	.0	33.3	44.4	22.2	100.0	42.59	
(7)	28.6	.0	14.3	14.3	.0	.0	42.9	.0	42.9	14.3	42.9	100.0	54.76	
(6)	.0	.0	.0	50.0	.0	16.7	.0	33.3	.0	50.0	16.7	100.0	58.33	
(5)	.0	20.0	20.0	20.0	.0	.0	.0	40.0	40.0	20.0	.0	100.0	33.33	
(5)	.0	40.0	40.0	20.0	.0	.0	.0	.0	80.0	20.0	.0	100.0	30.00	
(11)	18.2	18.2	.0	27.3	.0	18.2	18.2	.0	36.4	27.3	36.4	100.0	50.00	
(4)	.0	.0	50.0	25.0	.0	.0	25.0	.0	50.0	25.0	25.0	100.0	54.17	
(6)	33.3	.0	.0	33.3	16.7	.0	16.7	.0	33.3	33.3	33.3	100.0	44.45	
(9)	.0	.0	.0	33.3	33.3	.0	22.2	11.1	.0	33.3	55.6	100.0	68.75	
(4)	.0	.0	.0	50.0	.0	.0	.0	50.0	.0	50.0	.0	100.0	50.00	
(8)	.0	.0	25.0	37.5	12.5	12.5	.0	12.5	25.0	37.5	25.0	100.0	52.38	
(7)	.0	.0	.0	42.9	14.3	14.3	14.3	14.3	.0	42.9	42.9	100.0	66.67	
(9)	11.1	.0	11.1	33.3	.0	.0	11.1	33.3	22.2	33.3	11.1	100.0	47.22	
(4)	.0	.0	25.0	50.0	.0	25.0	.0	.0	25.0	50.0	25.0	100.0	54.17	
(7)	.0	.0	28.6	42.9	14.3	.0	14.3	.0	28.6	42.9	28.6	100.0	54.76	
(10)	10.0	.0	10.0	50.0	10.0	10.0	10.0	.0	20.0	50.0	30.0	100.0	53.33	
(7)	.0	.0	14.3	42.9	14.3	.0	14.3	14.3	14.3	42.9	28.6	100.0	58.33	
(6)	16.7	.0	.0	16.7	16.7	.0	16.7	33.3	16.7	16.7	33.3	100.0	54.17	
(3)	.0	33.3	.0	33.3	.0	.0	33.3	.0	33.3	33.3	33.3	100.0	55.56	
(7)	.0	.0	14.3	28.6	14.3	.0	28.6	14.3	14.3	28.6	42.9	100.0	66.67	
(11)	.0	9.1	.0	36.4	.0	9.1	36.4	9.1	9.1	36.4	45.5	100.0	70.00	
(4)	.0	25.0	.0	25.0	.0	50.0	.0	.0	25.0	25.0	50.0	100.0	58.33	
(7)	.0	42.9	.0	.0	.0	.0	28.6	14.3	57.1	.0	28.6	100.0	36.11	
(4)	.0	.0	.0	25.0	.0	.0	50.0	.0	25.0	25.0	50.0	100.0	83.33	
(7)	.0	.0	28.6	42.9	14.3	.0	14.3	.0	28.6	42.9	28.6	100.0	54.76	
(4)	.0	.0	25.0	25.0	.0	25.0	.0	25.0	25.0	25.0	25.0	100.0	55.55	

【 표 15 】 어항건설 공사기간 만족도

[문 15] 어항건설 공사기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불만족	보통이다	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모름/무응답	*불만족*	*보통*	*만족*	X	MQ15
		%	%	%	%	%	%	%	%	%	%	%	계	*평균*
다대포포구지점 어항건설공사기간 만족도	(11)	.0	.0	.0	27.3	18.2	9.1	9.1	36.4	.0	27.3	36.4	100.0	66.67
	(4)	25.0	.0	25.0	25.0	.0	.0	.0	25.0	50.0	25.0	.0	100.0	27.78
	(12)	.0	.0	25.0	25.0	.0	8.3	8.3	33.3	25.0	25.0	16.7	100.0	54.17
	(18)	5.6	5.6	22.2	16.7	16.7	11.1	5.6	16.7	33.3	16.7	33.3	100.0	51.11
	(17)	.0	.0	23.5	29.4	11.8	5.9	5.9	23.5	23.5	29.4	23.5	100.0	53.85
	(17)	.0	.0	11.8	17.6	17.6	5.9	.0	47.1	11.8	17.6	23.5	100.0	55.56
	(8)	.0	12.5	.0	25.0	.0	.0	12.5	50.0	12.5	25.0	12.5	100.0	54.17
	(7)	.0	.0	14.3	14.3	.0	14.3	.0	57.1	14.3	14.3	14.3	100.0	55.55
	(18)	16.7	11.1	5.6	38.9	5.6	.0	.0	22.2	33.3	38.9	5.6	100.0	34.52
	(6)	33.3	.0	16.7	.0	16.7	16.7	.0	16.7	50.0	.0	33.3	100.0	36.67
	(7)	14.3	14.3	.0	14.3	28.6	.0	14.3	14.3	28.6	14.3	42.9	100.0	50.00
	(6)	16.7	.0	.0	.0	33.3	16.7	16.7	16.7	16.7	.0	66.7	100.0	63.33
	(5)	60.0	.0	.0	40.0	.0	.0	.0	.0	60.0	40.0	.0	100.0	20.00
	(5)	.0	20.0	.0	40.0	20.0	.0	.0	20.0	20.0	40.0	20.0	100.0	45.84
	(4)	.0	.0	.0	25.0	25.0	.0	.0	25.0	.0	25.0	50.0	100.0	66.67
	(17)	.0	.0	23.5	35.3	23.5	.0	.0	17.6	23.5	35.3	23.5	100.0	50.00
	(3)	.0	.0	.0	33.3	.0	.0	33.3	33.3	.0	33.3	33.3	100.0	75.00
	(3)	.0	33.3	33.3	33.3	.0	.0	.0	.0	66.7	33.3	.0	100.0	33.33
	(4)	25.0	.0	.0	25.0	.0	.0	.0	50.0	25.0	25.0	.0	100.0	25.00
	(6)	.0	.0	.0	16.7	.0	.0	.0	83.3	.0	16.7	.0	100.0	50.00
	(4)	.0	.0	.0	75.0	.0	.0	.0	.0	75.0	.0	25.0	100.0	62.50
	(6)	.0	.0	33.3	33.3	16.7	.0	.0	16.7	33.3	33.3	16.7	100.0	46.67
	(8)	12.5	.0	12.5	37.5	.0	.0	.0	37.5	25.0	37.5	.0	100.0	36.67
	(6)	16.7	.0	16.7	16.7	16.7	.0	16.7	16.7	33.3	16.7	33.3	100.0	50.00
	(11)	9.1	18.2	27.3	9.1	27.3	.0	9.1	.0	54.5	9.1	36.4	100.0	43.94
	(6)	.0	16.7	.0	16.7	.0	.0	50.0	16.7	16.7	16.7	50.0	100.0	73.33
	(6)	.0	.0	.0	33.3	.0	16.7	16.7	33.3	.0	33.3	33.3	100.0	70.83
	(6)	.0	.0	.0	33.3	.0	.0	.0	66.7	.0	33.3	.0	100.0	50.00
	(19)	5.3	10.5	.0	52.6	10.5	.0	.0	21.1	15.8	52.6	10.5	100.0	44.45
	(6)	16.7	.0	.0	16.7	16.7	.0	.0	50.0	16.7	16.7	16.7	100.0	38.89
	(21)	14.3	9.5	4.8	28.6	.0	4.8	.0	38.1	28.6	28.6	4.8	100.0	34.62
	(5)	.0	.0	.0	40.0	20.0	.0	.0	40.0	.0	40.0	20.0	100.0	55.56
	(4)	25.0	.0	25.0	.0	.0	.0	50.0	.0	50.0	.0	50.0	100.0	58.33
	(6)	16.7	.0	16.7	16.7	16.7	16.7	16.7	.0	33.3	16.7	50.0	100.0	55.56
	(11)	9.1	18.2	9.1	9.1	.0	18.2	9.1	27.3	36.4	9.1	27.3	100.0	47.92
	(9)	11.1	22.2	.0	33.3	.0	.0	11.1	22.2	33.3	33.3	11.1	100.0	40.48
	(7)	.0	.0	.0	14.3	.0	.0	.0	85.7	.0	14.3	.0	100.0	50.00
	(6)	16.7	.0	.0	33.3	.0	.0	.0	50.0	16.7	33.3	.0	100.0	33.33
	(5)	.0	.0	.0	.0	.0	.0	20.0	80.0	.0	.0	20.0	100.0	100.00
	(5)	.0	.0	.0	40.0	.0	.0	20.0	40.0	.0	40.0	20.0	100.0	66.67
(11)	9.1	.0	.0	18.2	9.1	9.1	18.2	36.4	9.1	18.2	36.4	100.0	64.29	
(4)	.0	.0	.0	25.0	.0	.0	.0	75.0	.0	25.0	.0	100.0	50.00	
(6)	.0	.0	.0	33.3	16.7	16.7	.0	33.3	.0	33.3	33.3	100.0	62.50	
(9)	.0	.0	.0	11.1	33.3	11.1	.0	44.4	.0	11.1	44.4	100.0	66.67	
(4)	.0	.0	.0	.0	50.0	.0	.0	50.0	.0	.0	50.0	100.0	66.67	
(8)	12.5	.0	.0	.0	37.5	.0	.0	50.0	12.5	.0	37.5	100.0	50.00	
(7)	.0	.0	.0	28.6	.0	14.3	14.3	42.9	.0	28.6	28.6	100.0	70.83	
(9)	.0	.0	.0	.0	.0	.0	.0	100.0	.0	.0	.0	100.0	.00	
(4)	50.0	.0	25.0	.0	.0	.0	.0	25.0	75.0	.0	.0	100.0	11.11	
(7)	.0	.0	14.3	14.3	28.6	.0	.0	42.9	14.3	14.3	28.6	100.0	54.17	
(10)	.0	20.0	10.0	20.0	.0	10.0	.0	40.0	30.0	20.0	10.0	100.0	41.67	
(7)	.0	.0	.0	14.3	.0	.0	.0	85.7	.0	14.3	.0	100.0	50.00	
(6)	16.7	.0	.0	.0	.0	.0	.0	83.3	16.7	.0	.0	100.0	.00	
(3)	.0	.0	.0	100.0	.0	.0	.0	.0	.0	100.0	.0	100.0	50.00	
(7)	.0	.0	.0	42.9	28.6	.0	.0	28.6	.0	42.9	28.6	100.0	56.67	
(11)	9.1	.0	.0	18.2	9.1	9.1	9.1	45.5	9.1	18.2	27.3	100.0	58.33	
(4)	.0	25.0	.0	50.0	.0	.0	25.0	.0	25.0	50.0	25.0	100.0	54.17	
(7)	.0	14.3	14.3	.0	.0	14.3	.0	57.1	28.6	.0	14.3	100.0	44.44	
(4)	.0	.0	.0	25.0	.0	.0	.0	75.0	.0	25.0	.0	100.0	50.00	
(7)	.0	14.3	14.3	.0	14.3	28.6	.0	28.6	28.6	.0	42.9	100.0	56.67	
(4)	.0	.0	.0	.0	.0	.0	.0	100.0	.0	.0	.0	100.0	.00	

【 표 16 】 어항 및 어항시설 이용을 통한 작업 효율성 만족도

[문 16] 국가어항 및 어항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작업의 효율성이 높아짐

	사례수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불만족	보통이다	만족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모름/무응답	*불만족*	*보통*	*만족*	X	MQ16	
		%	%	%	%	%	%	%	%	%	%	%	계	*평균*	
다대포대	(11)	.0	9.1	.0	36.4	9.1	9.1	18.2	18.2	9.1	36.4	36.4	100.0	62.96	
	(4)	.0	.0	.0	.0	25.0	25.0	25.0	25.0	.0	.0	75.0	100.0	83.33	
	조세전	(12)	.0	8.3	8.3	16.7	16.7	16.7	25.0	8.3	16.7	16.7	58.3	100.0	68.18
		(18)	5.6	5.6	5.6	22.2	16.7	11.1	16.7	16.7	16.7	22.2	44.4	100.0	61.11
		(17)	5.9	5.9	11.8	23.5	17.6	11.8	11.8	11.8	23.5	23.5	41.2	100.0	56.67
		(17)	.0	.0	11.8	23.5	11.8	11.8	23.5	17.6	11.8	23.5	47.1	100.0	69.05
		(8)	.0	.0	.0	37.5	12.5	12.5	12.5	25.0	.0	37.5	37.5	100.0	66.67
		(7)	.0	.0	.0	28.6	28.6	.0	.0	42.9	.0	28.6	28.6	100.0	58.34
		(18)	5.6	11.1	5.6	33.3	5.6	11.1	11.1	16.7	22.2	33.3	27.8	100.0	53.33
		(6)	.0	33.3	.0	33.3	16.7	.0	16.7	.0	33.3	33.3	33.3	100.0	50.00
		(7)	14.3	14.3	.0	28.6	14.3	14.3	14.3	.0	28.6	28.6	42.9	100.0	52.38
		(6)	.0	.0	.0	50.0	.0	16.7	33.3	.0	.0	50.0	50.0	100.0	72.22
		(5)	20.0	.0	.0	60.0	.0	20.0	.0	.0	20.0	60.0	20.0	100.0	46.67
		(5)	.0	.0	.0	20.0	20.0	20.0	.0	40.0	.0	20.0	40.0	100.0	66.67
		(4)	.0	.0	.0	.0	25.0	25.0	50.0	.0	.0	.0	100.0	100.0	87.50
		(17)	.0	5.9	5.9	35.3	17.6	.0	17.6	17.6	11.8	35.3	35.3	100.0	60.71
		(3)	.0	.0	33.3	.0	.0	33.3	33.3	.0	33.3	.0	66.7	100.0	72.22
		(3)	.0	.0	.0	33.3	33.3	.0	.0	33.3	.0	33.3	33.3	100.0	58.34
		(4)	25.0	.0	.0	25.0	.0	25.0	.0	25.0	25.0	25.0	25.0	100.0	44.44
		(6)	16.7	.0	.0	16.7	.0	.0	16.7	50.0	16.7	16.7	16.7	100.0	50.00
매우		(4)	.0	.0	.0	50.0	.0	25.0	25.0	.0	50.0	50.0	100.0	100.0	70.83
		(6)	.0	.0	.0	.0	.0	66.7	16.7	16.7	.0	.0	83.3	100.0	86.66
	(8)	.0	.0	.0	62.5	.0	.0	12.5	25.0	.0	62.5	12.5	100.0	58.33	
	(6)	.0	.0	.0	16.7	33.3	16.7	16.7	16.7	.0	16.7	66.7	100.0	73.33	
	(11)	.0	.0	.0	27.3	45.5	9.1	18.2	.0	.0	27.3	72.7	100.0	69.70	
	(6)	.0	16.7	.0	.0	.0	.0	66.7	16.7	16.7	.0	66.7	100.0	83.33	
	(6)	.0	.0	16.7	33.3	.0	33.3	16.7	.0	16.7	33.3	50.0	100.0	66.66	
	(6)	.0	.0	.0	16.7	.0	16.7	33.3	33.3	.0	16.7	50.0	100.0	83.33	
	(19)	5.3	.0	.0	26.3	26.3	10.5	26.3	5.3	5.3	26.3	63.2	100.0	69.44	
	(6)	.0	.0	.0	16.7	.0	33.3	16.7	33.3	.0	16.7	50.0	100.0	79.16	
	(21)	.0	4.8	.0	38.1	9.5	28.6	4.8	14.3	4.8	38.1	42.9	100.0	63.89	
	(5)	.0	.0	.0	.0	20.0	20.0	40.0	20.0	.0	.0	80.0	100.0	87.50	
	(4)	.0	.0	25.0	25.0	.0	.0	50.0	.0	25.0	25.0	50.0	100.0	70.83	
	(6)	.0	.0	.0	.0	33.3	33.3	33.3	.0	.0	100.0	100.0	100.0	83.33	
	(11)	.0	.0	9.1	36.4	.0	18.2	18.2	18.2	9.1	36.4	36.4	100.0	66.67	
	(9)	.0	11.1	22.2	11.1	22.2	22.2	.0	11.1	33.3	11.1	44.4	100.0	54.17	
	(7)	.0	.0	.0	42.9	28.6	14.3	14.3	.0	.0	42.9	57.1	100.0	66.67	
	(6)	.0	.0	.0	33.3	16.7	16.7	16.7	16.7	.0	33.3	50.0	100.0	70.00	
	천	(5)	.0	.0	20.0	20.0	.0	20.0	.0	40.0	20.0	20.0	20.0	100.0	55.55
		(5)	.0	.0	20.0	20.0	.0	.0	40.0	20.0	20.0	20.0	40.0	100.0	70.83
(11)		9.1	9.1	.0	9.1	27.3	9.1	36.4	.0	18.2	9.1	72.7	100.0	68.18	
(4)		.0	.0	.0	.0	75.0	25.0	.0	.0	.0	.0	100.0	100.0	70.84	
(6)		.0	.0	.0	66.7	.0	16.7	.0	16.7	.0	66.7	16.7	100.0	56.67	
(9)		.0	.0	.0	33.3	11.1	11.1	33.3	11.1	.0	33.3	55.6	100.0	75.00	
(4)		.0	.0	.0	25.0	.0	50.0	.0	25.0	.0	25.0	50.0	100.0	72.22	
(7)		12.5	.0	.0	12.5	12.5	25.0	12.5	25.0	12.5	12.5	50.0	100.0	63.89	
(9)		.0	.0	.0	28.6	14.3	14.3	28.6	14.3	.0	28.6	57.1	100.0	75.00	
(9)		.0	.0	.0	22.2	11.1	.0	22.2	44.4	.0	22.2	33.3	100.0	73.33	
수		(4)	.0	.0	25.0	25.0	.0	50.0	.0	.0	25.0	25.0	50.0	100.0	62.50
		(7)	.0	.0	.0	.0	28.6	.0	57.1	14.3	.0	.0	85.7	100.0	88.89
		(10)	10.0	10.0	.0	10.0	10.0	30.0	10.0	20.0	20.0	10.0	50.0	100.0	60.42
		(7)	.0	.0	.0	42.9	.0	.0	28.6	28.6	.0	42.9	28.6	100.0	70.00
		(6)	.0	.0	.0	16.7	.0	.0	16.7	66.7	.0	16.7	16.7	100.0	75.00
		(3)	.0	.0	.0	66.7	.0	33.3	.0	.0	.0	66.7	33.3	100.0	61.11
		(7)	.0	.0	.0	42.9	14.3	.0	14.3	28.6	.0	42.9	28.6	100.0	63.33
		(11)	9.1	9.1	.0	18.2	.0	9.1	27.3	27.3	18.2	18.2	36.4	100.0	62.50
		(4)	.0	.0	.0	.0	50.0	.0	25.0	25.0	.0	.0	75.0	100.0	77.78
		(7)	.0	.0	.0	14.3	14.3	.0	.0	28.6	28.6	14.3	28.6	100.0	46.67
	(4)	.0	25.0	.0	75.0	.0	.0	.0	.0	25.0	75.0	.0	100.0	41.67	
	(7)	.0	.0	.0	28.6	28.6	28.6	.0	14.3	.0	28.6	57.1	100.0	66.67	
	(4)	.0	.0	.0	75.0	.0	.0	.0	.0	.0	75.0	.0	100.0	50.00	

외지에서 서양까지 원활한 교통도로를 건설했음한다..
깨끗이손질할수있는 물량장의시설을 갖추어주었음한다 (어민들이 불편하다)
2중항을위한시설도요
가공시설공장필요
가공시설이부족함
간만에차가심해서큰배가못들어온다. 장소협소해서 방파제가바깥으로빠져나가야한다. 넓어야한다. 어민소통해야
간만에차로어선이제대로활용하지못하고있다. 방파제를밖으로만들어달라
감독을철저히해라
강구4동금진2동산을터널을건설해서수로를만들면좋겠다
강구항 진입로 개선 필요함.
개발강화
개발사업에충분한예산지원필요.
개발사업이빨리끝났으면
개발전보다 살기편하게 해줄 것
개발전혀 안되고 있다
개발제한이 높다
개발하는중이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못느낀다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어민의 불편함이 더 많다. 잘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콘테이너해놓고사업하는사업을단속해주었으면어업활동하는데지장이있음
갯벌이 차올라서 청소 국가어항도 좋지만 지역어항에도 예산지원이 효율적이다
거문도 서도리가 큰 마을 이면서 너무 낙후됨 선착장이 없는데 했으면함
건물이 더 들어서지 말아야 한다
격포항구시설낙후되었다가이드라인부분이부족하다
격포항을더넓게공사해주세요
경정항구를넓혀달라
계마항침수로불편함이많음
계획성이공사하는것같아불만[중간에문제정해결안된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한다
고기를 잡아서판로가 없어서
고기를 키우느라 접근할 수 없어 불만이다
고기배고기배들이정박할수있게워치자세하게검토해야한다
고기양이적어양식업을할수있도록지원바람
고쳐가면서 어민보조필요하다
골고루 어민에게 혜택이 주어졌으면한다
공기단축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업체가 어항 개발시 공사를 수행하면 좋겠다.
공사 빨리 시작
공사가 늦어지는것 같고 배가 줄어들지않고 어촌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공사기간이 단축되었으면 좋겠다
공사기간이너무길고부실공사를하고있다. 동도다 너무부실공사다 금이가고있다
공사를신속히하도록예산지원바람
공사부실로항구밀이쇄골되어서항구역활이제대로활용안됨
공사신속하게
공사하는 모든것을 빠른시일내에 실천했으면 좋겠다
공수면을더파야된다
공청회를 하여 주민들의 의견들어 필불필요를 알아서 시행해야할 것임
공판장시설보강
공판장이나 어시장이 필요함
관광 유람선 어민등 문화사업과 어우러지게 개발
관광도시의활성화(고기도많이팔았음한다)
관광사업과장사하기편리하게.
관광지로 개발되었으면한다
관광지로 예쁘게 잘 단장 됐으면 좋겠다.
관광활성화할수있도록개발
광암항은1등항인데 방파제를 잘 만들어줘야한다....
교통불편함
교통편의 활성화
교통확충 인프라구축미비 시장활성화미비
구륙도에선착장필요하다
구름다리건설필요
구좌읍쪽에발전되게해달라
국가어항개발에대한홍보가필요하고소야도연결다리건설이필요하다
국가어항만 발전시키지 말고 기타 어항의 발전도 시켜 주었음 좋겠다.
국가어항이 개발되면 어업인들에 직접적 이익이 되기보다 오히려 양식업이라든지 생계에 위협이될수있다는 점에서문제
국가어항주변에 추가로어민복지시설이나 창고등이 들어서면 좋겠다
국가지원으로 빨리 완공되었음 좋겠다..
국가항이되어야한다 어민협조갈등없이 잘했으면함
굴조개채취를못해서생계에도움안된다

공존항개발사업을시작한이상잘개발해야한다

공존항건설때문에 우리집앞에 모래퍼가서 소나무파헤쳐서 바다물이 들어올수도있어서 무섭다

균형발전위해전지역골고루균등한예산집행을해서골고루발전할수있게해야함

그물에돌을많이넣고있지만크기전에올라오기때문에문제다즉그물이뜯긴다

기름유출사고로 어려운 환경에 있으니 좀더 활성화해서 개발을 빨리 진척해서 최선책을 찾아 해야한다.

기름을주었으면...(옛날에는주었다)

기름피해해결부터해야한다

기반시설을 빨리했으면함

길 좁다 외포항좁다

길을우선으로만들어야한다

깨끗하게유지되고 안내문설치와 현시대와맞게 시설이 되었으면함

나머지공바람

낙후된어촌에좀더발전시켜주면좋겠다

남양항개발이 너무좁아서 넓게 개발해야한다

남쪽내항쪽개선필요하다

냉동시설위판시설부족으로보안필요

너무심한부실공사다

너무협소하다

다른어촌을 위해서 다른쪽있는 것을 이쪽으로해서 활성화 해주길

다른항에서하고정자항은직접어업을안하기때문에 잘모른다...

다시복원했으면 좋겠다.

당국의지원바람

당사동강동동전체적으로마을부락 19개부락세밀하게어려운점순선착장등활성동

대진항은 준설이 시급하다 (수심낮아서 정박하기가힘들다)(수심을 높여주길)

대진항이 불거리와 휴식처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해주길

대체어항보다도낙시터같은것을개발을해주었으면

대피시설부족하고어항시설부족하다계획을빠르게집행하라

대형공원이있으면 좋겠다. 테마공원

대형선박이접안을할수있도록항구시설이빨리개선되어야한다

더개발이되어야한다

더많은개발로 어촌활성화..

더발전이많이되어야한다

더활성화되어사업이잘이루어지면 좋겠다

도두항에는소형선박이많아서활성화가필요한항구가아니다

도로가 미흡해서 물자수송이 원활하게 이뤄지지않고있다

도로개선이 시급하다. 예산이부족해서 추진 못함.

도로개편 필요

도로도편리하도록해주고육어진망을풀어서잡도질수있도록해주었으면

도로망 좁는데 거가대교위주로 개발되어서 실질적 인도로는 불편하다

도로면 등 정비필요

도로시설 좁다

돌과천북쪽이너무알아깊으면 좋음

돌산항개발관련지원을많이원함

돌산항공사와관련해서 많은예산지원원함

돌산항방파제시급함

돌산항은 어민들을위해서는공사하면 안되고 조류가세져서 방파제도없고 태풍오면다른항으로피항을가야한다

돌산항의어항시설들을많이확충바람

땅부지가활용하지못하고있다.

마도와신진도를조기완공

마을마다틀리는데 우리마을의항은 혜택본게없다..너무뒤떨어진다.여러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많은투자로 어촌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많이정부부조가되어활성화되어야하나예산쪽에서충분치못한것같다

말만 들었지 어항개발에 대한계획을 주민들에게 알려 주었으면한다 전혀모르고 있다

매립자체를반대

멀치잡아서 그안에 들어가서안했음 좋겠다

모든것이부족

모든사업을활발하게..

모든수산물어판장필요 타지방사람이 어장을 많이사용해서 지역민이 힘들다

모든일이 다 잘되었으면 좋겠음

모래쌓인다

모슬포항은 장소가 협소하니 공사를 그만해도 될것이다

물건항이개발되기로돼있는데 예산지원이 빨리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물동량이많이들어올수있는방향으로중점을뒤야한다

물질을업으로하는해녀들에대한보상이이루어지지않는점이불만이다.꼭보상을해야한다

물항장 공사가 3분의1밖에 진행되어 있지않음 공사가 빨리 진행되었음 좋겠다

물항장건설요

물항장을 유료와해서 어민사용 못함 녹동과소록도를 개발하면 조류가 안맞아서 어류가 다죽어서 피해가 큼

물항장이 좁아서 남쪽으로 조금더 이어주면 배선착하기가 수월할것 같다

물항장이 항이 커지면서 대피항의 기능을 하려면 물항장이 확보가 중요 예산이 중요

물항정 설치

미래지향적으로개선을해서지속적인발전을시켜라

미량항에관광객이많이이용할수있도록시설보강필요
미비된부분빨리복구해주기를
미비하다
미조항도회센타를만들어 여행객이와서 직접회를먹어서 어민경제활성화와 매립을해서라도 항구공간이좁다
미조항으로 가기 때문에 물건항은 지역면에서 개발해도 도움이 안될것 같다
미조항이 빨리 진행되었으면
바다깊이가낮아서 수심이깊었음좋겠다...
바다물이알아서암반에부딪힌다
바다밑에돌이있어서파내야한다
바다바닥에 시멘트를 부어서 고기도 없고 양식장들도 엄청피해보고 있다
바닥을 파내주어야한다
바람불어도 배가 안전하게 정착할수있도록 해주길
바람이불때배가대파할곳이없다방파제가배를덜수있게만들어져있다
발전이 되서 우리마을도 좋아졌음 좋겠다
발전해나가야좋다
방파제가 밖으로 좀더 나가야한다 객선달는 곳이 앞으로 나가야한다
방파제를 밖에 삼발을 싸아서 튼튼하게 하고 방파제 안쪽을 공구리를체서 부드를 만들어서 들어올수있도록
방파제 강화
방파제 높이
방파제 보강이 좀 더 필요하다.
방파제 보수 빠른 완공
방파제 양쪽으로 막아놔 내항에는 물이 썩는다
방파제 잘 해주면 좋다
방파제 정리요
방파제 축이낮다
방파제가 미비보강을 하라
방파제가막아있어물이소통이안되어양식장이썩어가고있다
방파제가원래조소가빠져나가지않게되어있다. 물이썩는다현지방영.
방파제건설
방파제고쳐달라
방파제공사빠르게완공요망
방파제금이간다
방파제기반시설많이하고
방파제길을넓혀지고반사경더설치비람
방파제넘으로 산발로보강해놓은것이 내려앉았다.다시 보강해야한다
방파제더보수필요하다.
방파제때문에배들을많이못댄다안쪽중간부분으로선착장을만들어야한다
방파제를 조금막았으면
방파제를 해놓으면서 모래가없어지면서 빨이생겨 여객선이 못 들어온다
방파제보강 방파제안에 모래가 많아 항만청에 의뢰를 했으나 해결책에
방파제보강해야 삼각대가 2년전에내려앉아서 파도가넘어온다 얼음공장이 아예없어서북동항까지가야되는불편
방파제보강해주라
방파제보수를하라
방파제보수요망
방파제시설보강 항로파서어선다니기좋게 연락선
방파제시설-위판장활성화
방파제안고치고물이한류안된다
방파제안어선덜수있도록 매립할경우배를덜수있도록
방파제에 항만시설(접안할 수 있게)
방파제연장사업신속완공바람
방파제옆에시설예산공금 방파제양초에배가걸린다시급하게개선
방파제와 물항장이 들어와 개발되었으면한다
방파제유지보수를지속적으로계속해야한다
방파제쪽길폭을넓히고편의시설치필요
방파제해는거가 물이왔다갔다 안해서 고기가 죽는다... 신경써주길
방파제를 꼭넓혀야하는 곳을 해야하는데 필요없는곳만 해서 불편하고 가드레이는 하면 주민들이 불편한데도
방파제 새로만들어 주었으면한다
배 선착 방파제부족 바람으로불안 어민충분히활용편리
배 선착장이 많이 들어오게 활성화 되어야함
배가 자 주이용했으면 좋겠다.
배가 정착할때 배가 파괴되지 않는 시설을 해달라.
배가 출항하고 나갈때 북동풍이 부는 파도먹이가 들어오는것을 고쳐줬으면 좋겠다
배가먼데서들어와서대진항에서하차하면좋겠다
배가잘드나들수 있도록 정리가 잘되었으면 좋겠음
배들이 정착할때 애로사항이많아 고려해야 함
배들이많이들어가서 피신할수있었음좋겠다...
배를 대기에 좋게 해달라
배를 덜 때 사람들이 편안하게 내릴수있도록해주길
배를접안할수있는장소가너무좁아작업활성화어렵다
배에오르고 내리는 시설이 보완되어야함
버스가 들어오면한다

벌을 자주정리
 벌을파내서수심을높여야한다
 보길도 왜송리 선착장완성 안되어 불편
 보길도도 개발해 주라
 보수항구를완벽하게해야한다태풍대비에미비하다
 볼거리도없구 파는사람 사는사람도 없어서 불만이다.
 봉화봉하고달기봉사이에차브리카올나주었으면
 부두부터선착장쌍야함
 북서풍이불면 움직이지못하는지역이라서
 북한과도 가깝고 장봉항개발로 크게 주민에게 도움되는게 없어서 주민들은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비좁아 증축하면 좋음
 빠르게공사진행하라
 빠르게공사진행했으면
 빠른 시일에 완공
 빠른진행과 추진이 되었으면
 빠지선을위치변경
 빨리 완공되었으면
 빨리 준공해서 준설작업을 해야 간만차를 줄일수 있고 어업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될것이다
 빨리 진행되어 큰배가 들어와야 어촌활성화가 될것같다
 빨리 추진해야 할것임
 빨리공사완료요
 빨리시작하면좋겠음
 빨리완성되어야 안정된생활을할수있다
 빨리하고 지역민들이 편리 하게 이용할수 있도록해주시기를
 사동3리쪽암벽공사배가정박안됨서쪽저반시설요
 살기가어렵다
 상권 형성이 돼길 원함 부대시설 원함
 서귀포항보다예산지원이많아야한다
 석모도와 강화도 잇는 다리 빨리 놓기를
 선박 접안시설 확장 및 관광시설 건설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선진포항시작만하고진행을안했는데 빠른공사진행원함
 선착부족-주창장시설미비
 선착장 좀 더만들고 해서 활성화해야 한다
 선착장거리가짧아파도를막아주지못한다 .물안장시설만족하지못한다 .
 선착장과방파제시설을보강하라
 선착장등의시설이좀더개선되어야한다
 선착장미흡시설물관리물량장까지완벽하게시설해야한다
 선착장방파제가너무약해서큰배수용어렵다
 선착장부분이미흡 .보완해라동풍쪽바람에대해
 선착장시설확대 항구커져라
 선착장안에있는필요없는시설제거로배가순조롭게드나들수있도록
 선착장에 배가 바람불어도 안전하게해야함
 선착장이 배가선박하기 좋게 개발이 되었어야 하나 미향으로 개발되어 지역어업인들에게 실제적인도움이 못되 불만이다
 선착장이길었으면
 선착장이줄지않다
 선창장시설
 선창장에 벌을걸어내고 항구시설역할을 못하게 가로등 도로보수 허허벌판 화장실
 성이도 항에모래를 퍼내야 물이 썩지않음
 소규모어업인에게는오히려해가된다
 소득이 없다
 소하하고 노하하고 묵어졌으면한다
 소형선박 피난시설 보강.
 소형선박어항접할수있는선착장대로시설요
 소형선박정착지가필요하다
 소흑산항은 반듯이 완공해야한다
 수년간막대한예산을투자했는데큰태풍이오면손실파손부담을줄일방법모색필요
 수릴이안좋다 방파제구어늘냄
 수문여를빨리없애달라
 수산물값이너무비싸다 물가저렴했으면함
 수산물판매센타가는길목커브길이좁다
 수산으로들어오는길이좁다[집이있는쪽]
 수심양반이있어들어가기가불편하다
 수심이 낮아서 배들어 오는길이 잘못 되었고 공사진행 늦다
 수협위탁판매소도못짓고있다포항과분계지역이라분쟁때문에가격도체대로못받고있다
 시설개선필요
 시설미흡하다.
 시설신속 돌로마을까지방파제신속
 시설이 개선되었으면함
 시설자체가애매하다[목적에따라개발분명하게관광목적 .어민활성화분명]
 시설하다가 건설사가 부도나서 마무리를짓긴했는데체대로안되어있어서 불편하다
 신속기간길다

신속하게 해결
쌍인모래치워달라
썰물때는물이빠져나가배가가라앉으니까고충이 많다.
아직도말었다
안흥항이 국가항으로서 판매 유통 주차시설이 미흡함
앞으로더관심요
야포항 중앙방파제 넓혀 높혀주었으면한다
양식장이나낚시터가개발되었으면
여구보관창고가있었으면
여구시설 선박정착
어란진흥을4~5년주기로준설해야하고물길을선창쪽으로뚫어서소통이원활하도록해야한다
어망보수나 여구보관소를 내륙으로 이동해서 항구를 청결히 해야한다
어민 편의시설이 매우부족하다
어민들 위해서배돌곳 많이쌓아줘야한다
어민들을위하여건설되면좋음
어민들의 의견반영
어민들의 활성화에 맞게 개발되었으면
어민들이 안전하게 어업할수있도록 방파제나 선착장의 바람등으로부터 보호해주었으면한다
어민들이반대하는편인데주민들의생각이우선바뀌는게중요하다고본다그래야발전이될것같다
어민들이편리하게사용할수있게방파제를길게했으면
어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게돼야한다
어민복지향상
어민사용시설협소새로만들어주세요
어민생활과면개발사업을하고있다
어민소득과관광사업의연계로했음한다...
어민수령많이하라
어민에게편리하게해달라. 열음을차로이동할때 배에바로들어갈수있게...
어민을위해서발전해달라.
어민의 여론 수령
어민의 의견수령을 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해서 어민을 위한정책이 아니라 배가 드나드는데 불편함
어민의견반영
어민의견수령하라
어민한테혜택많이주라.
어선수가 많아서 어선수를 줄여야한다
어선항을어선필이차서빨리개발해야함
어업비종사를위한편이제공요
어업인들한테 혜택이없으니 보상처리라도 해주길바람
어업인들의 의견 수령
어업인승해보상대책속히 이루어졌으면.
어업인을위한개발필요
어업인의위주로해야한다수산업위주로했다
어업인이 원하는 방향으로(의견 수령)
어업인이잘살게 협조해달라
어업장비가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
어업허가제가 주민위주가 아니고 타지인위주로 되어있는데 현실에 맞게 현지주민에게 허가를내줄수있게정비
어업활동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제도가 시급하게 마련되기를원한다.
어업활동차량이동불편
어장 작업빨리완공할것
어청도항의어민들의의견을 수령해야한다.. 나와서상항파악을해서 정책을 펴기를 바란다..
어촌정화조사업 자동평핑되게 시설 빨리 되어야 함
어판시설 방파제
어판장 늘렸으면함
어판장넓어졌으면 좁아서
어판장을 넓혀주었으면한다
어판장을 전장포항으로 끌어오면 좋겠다
어판장이 넓었으면 좋겠다
어판장이 더 커지면 좋겠다
어판장확대 선착장시설확대
어항 개발은 효가가 없다
어항 항구활성화필요
어항건설 홍보강화. 도로 정비 필요.
어항건설을 빨리 건설
어항발전했으면 좋겠다.
어항시설에개선되어야함
어항시설의 점안의 범위가 넓었으면 좋겠다
어항시설이전혀개발되지않음
어항안물이썩는다앞으로고기살기가힘든다개선필요하다
어항으로써는아무혜택이없다.관광지개발하는것밖에없다
어항을 잘 관리했으면함
어항을보수를해야한다
어항을파내주었으면

어항의 수심을 높여야 겠다...
 어항의 접안시설의 모서리 부분을 수선해야한다. 파손된 나무 대신에 고무로 대체 수선 요망.
 어항의 지원부족
 어항의정화가되어야한다 물한장시설의개선이필요하다....
 어항이 막혀서 준설사업이 필요하다
 어항이 아주 작아서 크게 만들어야 한다 활성화하고 발전하게 크게 만들어야한다.
 어항이너무낙후됐다.충분한예산을지원해달라
 어항이용시어항관리자친절하다[안내원]
 어항이전혀개발이되지않고있다 불편함
 어항활성화를해서 국가어항을많이이용하게해주세요
 얼른 완성 되면한다
 예산확보
 여객선 다닐수있게 벌을깊게파면 좋겠다
 여객선만들어오고 다른시설은개발이안되고 현상태로유지되었으면함
 여객선을 위한 계류장 등 선착장 증설이 필요.
 여객선크루즈같은것도활용하면좋겠다
 여안초교앞길을 메꾸어서 차다니기에 위험하지 않았으면
 연장선크게하면 좋음
 예산많이투입요
 예산부족
 예산부족
 예산부족하다빨리처리해야한다
 예산안이나 개발상태의 내용도를 쉽게 지역주민에게 홍보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어야한다
 예산을많이주라
 예산을충분히지원해달라.
 예산이 많이 부족한것같다... (대변인이없어서 다른지역에 비해서 뒤떨어진것같다..예산두부족하다)
 예산이 신속하게처리되어야함
 예산지원바람
 예산지원을 충분하게
 예산지원잘되서지역민에게도움되면
 예산집행어민들께미리통보. 어민의견수렴바람
 예산충분히지원
 예산확보
 오물정리요--연육교시속히
 오전항기름 면세받기힘들다 수월해졌으면 바람
 완공이 빨리되면 좋겠음
 완벽하게 배들이 바람불을때 피할곳을해주길
 완성신속하게해결
 완성제도로되길바람
 완성하면좋을듯함
 완전한 항구부수개발로 젊은이들이 안정된소득으로 생활할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도와주어야한다
 외부관광객이 오는데 어구보관시설이 없어서 바닷가에 늘어 놓으니 지저분하다
 외지배가많이드나드니생계에도움되는것이아니라환경오염이느는것같다
 외포동편에 어항시설 보충해야함
 용항리선착장에방파제를건설하면 좋음
 우판장크게늘려주면 좋음
 울릉도여객직항로마련필요
 원어업인들을 배려 했으면함
 원자재수급안되고있다 예산지원부족인것같다
 원평항은 방파제의파도를 막아나서 배가 뜰수가없다 준설을 해서 배들이 아무때나 들어갈수있도록 해줘야
 원평항을 끝까지 공사해야하는데 국가에서 하는일은 그렇지 못할때가 있다
 위도주민살길이막막하다. 빠르게보상하라
 위미항은 수심이낮아서 높여주었음 좋겠다
 위판장지저분하다
 유료 낙시터 유치
 유류보급싸게
 유지보수만 잘되면 된다
 유통망을 간단하게 소비자 와 어민이 직거래식으로해서 외부인이 아닌 어민들의 직접참여할수 개발이있으면
 유통부분이 부족한데 더 확대되었으면함
 읍천항을 태풍시를대비해서방파제보수를꼭해야한다
 이목항도로가좁다
 이목항에서보길도가는배편을이용하는관광객도많고지역주민도많다보니길이협소하여교통이불편함도로확대필요
 이용하지않으니까 모른다
 이웃사람에게는 주차비를 받지 않으면 좋겠음
 일관성있게
 일자리창출발전됐으면함
 임자면의 다리 나누어야
 임포항도 개발 희망
 자연훼손하지말자
 자연훼손안되는범위에서개발

자원고갈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 양식장으로 수입을 만족 할 수밖에 없다
 작은항구에 막대한 공사는 무리라고 본다(현재로 만족)
 장봉항 선착장을 넓게 증설하고 방파제를 넓고 높게 공사해서 바닷물이 넘치지 않게 해주세요
 장터부족 매립해서 넓혀 주었으면
 저동은 이정도로 좋다
 저동항에 있는 선박을 보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봄
 저장고 있었음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어민들이 편리하게끔 해주는 것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 모색
 전국항 공사기간이 너무 길다
 전어축제 주체 쪽 너무 부적절하다 주차장 부족함
 전어방파제 공사 후 방파제의 수심이 낮아져서 물통수구멍을 만들어서 조류가 원만하게 해주시고 수심을 깊게 해주세요
 전장포항에서 설투자(상가)
 전체적인 주민들 혜택이 없다.
 점안 규모가 너무 작아서 늘려야 함
 정부 지원이 빨리 진행이 이루어져 조속한 시일에 이용할 수 있으면
 정부 지원 충분요망
 정책만 있고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진행을 빨리 해야 한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제대로 된 신속한 개발이 필요하다.
 제도상 인근 어업인 좌담회를 반영하면 좋음
 조기 완공
 조류가 안 통하는 곳이 있다
 조류 현상이 안 되어서 물고기가 작아져서 업황에 많이 힘들 저인망 사업의 활성화 미비로 수자원 고갈
 조사 철저 시행
 조속한 마무리
 조업시 간조 때 들어올 때 방파제 준설로 빨과 모래로 바닥이 얇아져서 들어올 수 없으니 모래 빨을 파주길
 좀더 발전될 수도 록 해야 함
 좀더 발전적으로 해야 한다
 좀더 지역 공평회를 통해서 투명하게 했으면
 좀더 활성화...
 주민진 항처럼 개발해 주어야 한다
 주민들의 생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길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달라. 잘 모르고 있다.
 주민 부담이 적으면 좋겠음
 주민의 수원의 사를 반영해야 한다
 주변 환경 정비 시설 관광 사업 활성화
 주차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주차 시설 환기 시설 보강.
 주차 시설과 대진항에서 팔십호까지 한 달만 더 연장해 주면 수확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다
 주차장 부족하다
 주차장 없어 불편 선착장이 불편 어민 위한 것이 아니다
 주차장이 복잡하다
 주차장이나 진입로 도로가 급한 것 같다
 주차장이 넓지만 주차 관리를 못해서 타이어를 빼가서 절도 당한 적 있다 야간에 주차장 조명 관리해 줄 것
 주차장 확대 실시 필요
 주택 지역과 어항이 분리 되었으면 함.
 준설 안 되었고 방파제도 좀 늘려야 하고 수산물 회센터 부족
 준설 작업이 필요하다... 도로 확충도 필요하다
 중국인들이 몰래 그물망 가져가므로 경비원 상주 바람
 중앙정부의 실질적 어업인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요한 어항이기에 연구소를 두어 연구를 계속했으면 함
 축적회를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지세 포항을 이용하기 위해 해안 도로 필요 버스 가안 들어옴
 지속적인 개발
 지속적인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지역민의 애로 사항 참작해야 한다
 지역민하고 국가와 의견 수렴해서 추진해야 한다
 지역 사회 국가 발전에 민한테 피해 없어야 함
 지역 어민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
 지역 주민의 원안 따라서 하면 좋겠다
 지원 선착장 시설 보충
 지원을 많이 해서 빨리 완공 되었으면
 직접 안 하기 때문에 모른다
 직접적으로 모름
 진입로 간선 도로를 예정보다 앞당겨 완공 바람
 진행이 빨리 되었으면 함
 진행이 빨리 되어서 지역 활성화에 도움 되었으면
 질적으로 판로 활성화
 차가 안 들어오면 좋겠다. 오염 땀에 쓰레기 땀에
 차도선이 급하게 필요하다. 방파제 미약하다

창유항 어류포항 개발

채석강이미지유지 주변식당정리 군항이나 비행기자연이미지안어울려서 치웠으면항 거주지를뒤로 이전

처음개발계획보다축소된점에서좋아쉽다는생각임

천부항을넓혀야큰배왕래요유람선도선착이안됨

천재지변어선이피양할수있는장소가부족하다

청산선창앞에 파파제를 설치해야한다

초소앞가이당이너무높아서사람들이불만이다.

추진중에 있는 사업을 우선 잘 마무리 하면 좋겠다.

축도성통합한다면좋겠다

축산항에 파도가 많이들어오니까 방파제를 바다 쪽으로 나가야되게...

취지를 몰라서

큰태풍시선착장을이중을싸서파도막아주었으면

큰항구 개발만하지 말고 소형선박이 드나드는 작은항구도 같이 개발해야한다

태풍이 오면 피난을 안갈수있도록 해주길

태풍시 어업인이 안전하게 들어가서 칠수 있는 시설임 좋겠다.

태풍시대피장소가미흡하다

태풍시위험 방파제 강화

태풍오면선착장이좁아서파손이된다빠른시일내에선착장확장바람

태풍이오면다른항으로피항하는데 태풍이와도안전하게정박할수있게개발해주세요

태풍이올경우울릉도에서피항할수있는시설필요

태풍이왔을때 피박을돌산항으로많이하는데 시설이많이부족한데 시설을늘려주셨으면항

태풍이치면물이올라옴방파제때문집앞으로온다

퇴적물이 쌓여서 5톤배도 드나들지 못하고 있는데 서쪽으로 터주어서 배가 마음놓고 드나들수 있게했으면

파도 심해도 배가 흔들리지않게 시설을 해야한다

파도가 세면 항구위로 파도가 넘어오는걸 막아줘야한다..항만기초를 보강해야하고 항을 좀더 높게 해야한다

파도가5미터정도일때배가전복되므로모래를파서수심을깊게해야한다.

파도디디피보강

판로개척 활성화

판매사업이 활성화 되고 예산을 충분이 지원해주어야한다

팬션이나 나라에서하는 놀이기구가있는것들을운영(관광)으로해서 활성화를 했음좋겠다..

폐류적극적으로지원부탁함

편의시설필요[목욕탕휴식공간등]

폭을 넓게해서 높은 파도도 막을 수 있게 내항도 정비 필요

피해보상이우선이다

하고있는사업이제대로잘중단없이진행되길바람

하리항방파제에서계단을완만하게개설되면좋은어파장에서개인사업하니까아무의미가없음

하효항은 쓸모없는 항구인데 많이 투자하는것같음

한곳만집중발전하지말아라

항 적다 유통불만족

항개발은 어민의 위주로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진행해야한다

항구 진입도로 확장 필요.

항구가 좁다

항구가 좁아서 증설요망

항구가작아서빨리시설을확대해야한다

항구는큰데쓸모가없다유료판매가없다외지인들이들어오지못함

항구를넓혀달라

항구발전위해 국가지원필요함

항구발전위해수질정화사업등에좀더치중하면좋겠다관광객으로외지차량이너무많다

항구안의모래준설작업시급필요하다

항구적어서불편

항구주변의 냉동창고지원바람

항구활성화부족

항내에오물이많이낀다청소필요

항만공사가 빨리추진되어서 끝내주었음한다...

항만내 부대공장 부대시설 부지 시설이 전혀없다

항만방파제가완벽해야하고친환경적으로개발해야하고우선오폐수처리장공사가완전히되어야바다오염이방지됨

항만소형선박정착지없다

항만시설 보수활점이 많다

항만이 비좁은데 더 넓혀야함

항만준설...

항만준설작업에대한 지원이있어야한다 (수심이낮아서 좀더 수심을 깊이해야된다)

항안에가양식시설물철거되어야한다.

항안에배들의작업장도안돼있음

항을 넓히고 밑에 빨도캐내야하고 하수도시설과 어패수 처리장치를 해주어야한다

항을깊이파서 건물이안되었다.

항을크게해야함

항이작고준설이안되어있어타선박들이이용어려움 유지보수와준설을해서이용이편리하도록

항이좁고판매센터좁아서공간활용어렵다

항이좁아서 넓혀져야 한다...

항자체가낮아서 준설을 해야하는데 어민들이 건의를하고 찾아가야지만 하는게 불편하다(알아서해주길)

해군기지빨리 옮겨주시기를

해녀들의 수집한 수산물은 가격이 안올라간다
 해놓고관리잘해야한다 방파제들을마구집어가는거단속해야한다
 해변도로 건설 필요.
 해변도로가되어야된다
 해석장이같이있어체계적으로설계해서개발을했다면 주민들과대화을해서했다면
 해수면상승으로인해무척어렵다높여달라
 해수욕장도 많이 알려지고 있으니까 진행이 신속해져야 한다
 해안도로 미흡
 해안도로가 있어서 관광객을 수용할수 있도록 하고 ..한쪽으로만 밀집해서 개발하지말고 포괄적으로했음함
 행정적으로 진행해서 어민들이 전혀모르고 있는데 실지이용하는 어민참여로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 바람
 현실성이있는가 마을주민에게 지역민들에게과연어디가다용이되고효율성이있는가를판단응제대로해라
 현실적인에맞고먼미래를보고일을하라. 탁상공론하지말고
 현재있는마량으로충분하지만좀더개발이된다면좀더활성화되고인구유입이될수있도록보충할수있으면좋겠다
 현재정도수준의 개발만족
 현지 어민의 여론을 들어서 어항개발에 반영하면 좋겠다.
 현지에맞게 어업 종사자의 의견 수렴했으면함
 현포항 빠른 개발과 항구 헛구덩이 항구안 위벌판에 흑구덩이나 쓰레기를 치워서 깨끗이 환경정리 요망
 현포항처음만들어진곳은 상판이많이 파열이 돼 서보수가 필요한데 아직 안되고있다
 현포항 북쪽쪽에 월파가 심하면 파도가 넘어와 많이 보수해주길
 홍보강화
 홍보필요 정책적이 뒷받침강화요
 홍원항과총장대해수욕장 해변도로연결안된지10년이나안되었다.우범지역되었다.
 화장실보안. 그늘막필요.짐나르기불편하고힘들다
 화장실에대한시설이 있어야하고 방파제두 미흡한것같아 시설두 강화되었음한다
 환경오염이되지않으면서개발하라
 활성화
 활어보관시설 경매시설 건설 요망.
 활어세타없어야십다 항구에아구리를넘혀서파도가세면물이드어온다
 회진항완공을 옆에시설들과 연계되어 비슷한시기에 완공되어야
 PT를 빨리 보강해주길 바람

2. 다기능어항 이용자

【 응답자 특성 표 】

	사례수		%	
	사	예	수	%
■ 전 체 ■	700		100.0%	
■ 어항별 유형별 ■ 어항별 유형별 흑곡포항 마곡포항 국산포항 지맥포항 전포항 대정포항 양안포항 대모슬포항	53		7.6%	
	60		8.6%	
	65		9.3%	
	61		8.7%	
	53		7.6%	
	47		6.7%	
	25		3.6%	
	54		7.7%	
	50		7.1%	
	63		9.0%	
	63		9.0%	
	65		9.3%	
41		5.9%		
■ 거주지역 ■ 근접지역거주 떨어진지역거주	392 308		56.0% 44.0%	
■ 다기능어항사업 ■ 인 지 비 인 지	410 290		58.6% 41.4%	
■ 제주지역여부 ■ 제 주 이 외 주	659 41		94.1% 5.9%	

【 표 1 】 다기능어항개발 사업 내용 인지도

[문 1] 선생님 지역에서는 현재 다기능어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기능어항개발 사업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사례수	매우 잘 알고 있다.	자세히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알지 못하고 있다.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	*인지*	*보통*	*비인지*	MOQ1	
		%	%	%	%	%	%	%	%		*평균*
■ 전 체 ■	(392)	7.9	33.4	10.5	17.9	30.4	41.3	10.5	48.2	100.0	42.67
■ 어항별 유형별 ■ 어항별 유형별 흑곡포항 마곡포항 국산포항 지맥포항 전포항 대정포항 양안포항 대모슬포항	(23)	4.3	21.7	17.4	13.0	43.5	26.1	17.4	56.5	100.0	32.61
	(30)	6.7	43.3	3.3	20.0	26.7	50.0	3.3	46.7	100.0	45.83
	(34)	20.6	32.4	8.8	8.8	29.4	52.9	8.8	38.2	100.0	51.47
	(31)	12.9	54.8	9.7	9.7	12.9	67.7	9.7	22.6	100.0	61.29
	(33)	9.1	24.2	9.1	12.1	45.5	33.3	9.1	57.6	100.0	34.85
	(34)	.0	47.1	11.8	14.7	26.5	47.1	11.8	41.2	100.0	44.85
	(18)	5.6	38.9	5.6	16.7	33.3	44.4	5.6	50.0	100.0	41.67
	(31)	3.2	12.9	12.9	19.4	51.6	16.1	12.9	71.0	100.0	24.19
	(28)	3.6	35.7	10.7	10.7	39.3	39.3	10.7	50.0	100.0	38.39
	(33)	6.1	30.3	9.1	30.3	24.2	36.4	9.1	54.5	100.0	40.91
	(35)	8.6	37.1	14.3	25.7	14.3	45.7	14.3	40.0	100.0	50.00
	(34)	14.7	35.3	11.8	23.5	14.7	50.0	11.8	38.2	100.0	52.94
(28)	3.6	17.9	10.7	25.0	42.9	21.4	10.7	67.9	100.0	28.57	
■ 거주지역 ■ 근접지역거주 떨어진지역거주	(392) (0)	7.9 .0	33.4 .0	10.5 .0	17.9 .0	30.4 .0	41.3 .0	10.5 .0	48.2 .0	100.0 100.0	42.67 .0
■ 다기능어항사업 ■ 인 지 비 인 지	(233) (159)	12.0 1.9	43.3 18.9	13.3 6.3	18.9 16.4	12.4 56.6	55.4 20.8	13.3 6.3	31.3 73.0	100.0 100.0	55.90 23.27
■ 제주지역여부 ■ 제 주 이 외 주	(364) (28)	8.2 3.6	34.6 17.9	10.4 10.7	17.3 25.0	29.4 42.9	42.9 21.4	10.4 10.7	46.7 67.9	100.0 100.0	43.75 28.57

【 표 2】 개발 전후 인구 변화

[문 2] 선생님 지역은 다기능어항 개발 전(2004년)과 후를 비교할 때 인구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사례수	매우 증가	대체로 증가	불변	대체로 감소	매우 감소	모름/무응답	*증가*	*불변*	*감소*	계	MQ02
		%	%	%	%	%	%	%	%	%		
		평균										
전체	(392)	7.9	26.8	35.2	11.7	2.0	16.3	34.7	35.2	13.8	100.0	58.00
어항유형별 1. 호수(23) 2. 대포(30) 3. 대포(34) 4. 대포(31) 5. 대포(33) 6. 대포(34) 7. 대포(18) 8. 대포(31) 9. 대포(28) 10. 대포(33) 11. 대포(35) 12. 대포(34) 13. 대포(28)	(23)	4.3	21.7	52.2	8.7	.0	13.0	26.1	52.2	8.7	100.0	56.25
	(30)	13.3	26.7	26.7	6.7	.0	20.0	40.0	26.7	13.3	100.0	60.42
	(34)	8.8	41.2	14.7	14.7	2.9	17.6	50.0	14.7	17.6	100.0	61.61
	(31)	3.2	25.8	48.4	12.9	3.2	6.5	29.0	48.4	16.1	100.0	53.45
	(33)	.0	9.1	30.3	24.2	3.0	33.3	9.1	30.3	27.3	100.0	42.05
	(34)	8.8	67.6	17.6	2.9	.0	2.9	76.5	17.6	2.9	100.0	71.21
	(18)	.0	16.7	38.9	22.2	5.6	16.7	16.7	38.9	27.8	100.0	45.00
	(31)	16.1	29.0	22.6	6.5	.0	25.8	45.2	22.6	6.5	100.0	68.48
	(28)	14.3	50.0	17.9	.0	.0	17.9	64.3	17.9	.0	100.0	73.91
	(33)	3.0	9.1	60.6	18.2	.0	9.1	12.1	60.6	18.2	100.0	49.17
	(35)	14.3	20.0	40.0	2.9	2.9	20.0	34.3	40.0	5.7	100.0	62.50
	(34)	2.9	8.8	55.9	17.6	.0	14.7	11.8	55.9	17.6	100.0	49.14
	(28)	10.7	17.9	35.7	17.9	3.6	14.3	28.6	35.7	21.4	100.0	54.17
	거주지역 떨어진지역	(392) (0)	7.9 .0	26.8 .0	35.2 .0	11.7 .0	2.0 .0	16.3 .0	34.7 .0	35.2 .0	13.8 .0	100.0 100.0
다기능어항사업 인비인	(233) (159)	9.0	29.6	36.5	11.6	2.6	10.7	38.6	36.5	14.2	100.0	58.65
		6.3	22.6	33.3	11.9	1.3	24.5	28.9	33.3	13.2	100.0	56.88
제주지역 제주외	(364) (28)	7.7 10.7	27.5 17.9	35.2 35.7	11.3 17.9	1.9 3.6	16.5 14.3	35.2 28.6	35.2 35.7	13.2 21.4	100.0 100.0	58.31 54.17

【 표 3】 개발 전후 어업 소득 변화

[문 3] 그렇다면, 어업 소득은 어떻습니까

	사례수	매우 증가	대체로 증가	불변	대체로 감소	매우 감소	모름/무응답	*증가*	*불변*	*감소*	계	MQ03
		%	%	%	%	%	%	%	%	%		
		평균										
전체	(392)	3.6	14.5	19.4	20.9	7.1	34.4	18.1	19.4	28.1	100.0	44.84
어항유형별 1. 호수(23) 2. 대포(30) 3. 대포(34) 4. 대포(31) 5. 대포(33) 6. 대포(34) 7. 대포(18) 8. 대포(31) 9. 대포(28) 10. 대포(33) 11. 대포(35) 12. 대포(34) 13. 대포(28)	(23)	.0	13.0	21.7	8.7	4.3	52.2	13.0	21.7	13.0	100.0	47.73
	(30)	13.3	20.0	16.7	23.3	6.7	20.0	33.3	16.7	30.0	100.0	53.13
	(34)	8.8	23.5	5.9	14.7	8.8	38.2	32.4	5.9	23.5	100.0	53.57
	(31)	6.5	22.6	22.6	25.8	9.7	12.9	29.0	22.6	35.5	100.0	47.22
	(33)	3.0	9.1	9.1	30.3	9.1	39.4	12.1	9.1	39.4	100.0	36.25
	(34)	.0	11.8	20.6	26.5	8.8	32.4	11.8	20.6	35.3	100.0	38.04
	(18)	.0	5.6	22.2	27.8	5.6	38.9	5.6	22.2	33.3	100.0	36.36
	(31)	.0	9.7	12.9	25.8	.0	51.6	9.7	12.9	25.8	100.0	41.67
	(28)	10.7	21.4	17.9	7.1	7.1	35.7	32.1	17.9	14.3	100.0	58.33
	(33)	.0	12.1	33.3	15.2	9.1	30.3	12.1	33.3	24.2	100.0	42.39
	(35)	.0	8.6	20.0	14.3	2.9	54.3	8.6	20.0	17.1	100.0	43.75
	(34)	.0	14.7	29.4	26.5	14.7	14.7	14.7	29.4	41.2	100.0	37.93
	(28)	3.6	14.3	21.4	25.0	3.6	32.1	17.9	21.4	28.6	100.0	46.05
	거주지역 떨어진지역	(392) (0)	3.6 .0	14.5 .0	19.4 .0	20.9 .0	7.1 .0	34.4 .0	18.1 .0	19.4 .0	28.1 .0	100.0 100.0
다기능어항사업 인비인	(233) (159)	4.7	14.2	20.6	22.7	9.0	28.8	18.9	20.6	31.8	100.0	43.98
		1.9	15.1	17.6	18.2	4.4	42.8	17.0	17.6	22.6	100.0	46.43
제주지역 제주외	(364) (28)	3.6 3.6	14.6 14.3	19.2 21.4	20.6 25.0	7.4 3.6	34.6 32.1	18.1 17.9	19.2 21.4	28.0 28.6	100.0 100.0	44.75 46.05

【 표 6】 개발 전후 생활시설 변화

[문 6] 생활시설은 어떻습니까

	사례수	매우 개선	대체로 개선	불변	대체로 악화	매우 악화	모름/ 무응답	*개선*	*불변*	*악화*	100.0	MQ06
		%	%	%	%	%	%	%	%	%		*평균*
											계	
■ 전 체 ■	(392)	15.1	34.2	33.2	5.6	3.3	8.7	49.2	33.2	8.9	100.0	64.25
■ 어 어 홀 크 마 푸 지 맥 대 정 양 안 대 모 (23) (30) (34) (31) (33) (34) (18) (31) (28) (33) (35) (34) (28)		17.4 23.3 23.5 25.8 3.0 14.7 11.1 12.9 17.9 9.1 28.6 .0 7.1	21.7 36.7 29.4 19.4 42.4 35.3 38.9 48.4 42.9 36.4 40.0 20.6 32.1	34.8 23.3 26.5 35.5 36.4 41.2 38.9 25.8 14.3 42.4 25.7 44.1 42.9	17.4 3.3 2.9 .0 3.0 2.9 .0 .0 7.1 6.1 .0 23.5 7.1	8.7 .0 5.9 6.5 6.1 .0 .0 .0 3.6 3.0 .0 .0 10.7	.0 13.3 11.8 12.9 9.1 5.9 11.1 12.9 14.3 3.0 5.7 11.8 .0	39.1 60.0 52.9 45.2 45.5 50.0 50.0 61.3 60.7 45.5 68.6 20.6 39.3	34.8 23.3 26.5 35.5 36.4 41.2 38.9 25.8 14.3 42.4 25.7 44.1 42.9	26.1 3.3 8.8 6.5 9.1 2.9 .0 .0 10.7 9.1 .0 23.5 17.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5.43 73.08 67.50 66.67 59.17 66.41 67.19 71.30 68.75 60.94 75.76 49.17 54.46
■ 거 주 지 역 근 접 지 역 거 주 (392) (0)		15.1 .0	34.2 .0	33.2 .0	5.6 .0	3.3 .0	8.7 .0	49.2 .0	33.2 .0	8.9 .0	100.0 100.0	64.25 .0
■ 다 기 능 어 향 사 업 인 비 인 지 (233) (159)		16.7 12.6	31.8 37.7	32.6 34.0	6.9 3.8	3.4 3.1	8.6 8.8	48.5 50.3	32.6 34.0	10.3 6.9	100.0 100.0	64.08 64.48
■ 제 주 지 역 여 부 제 주 이 외 주 (364) (28)		15.7 7.1	34.3 32.1	32.4 42.9	5.5 7.1	2.7 10.7	9.3 .0	50.0 39.3	32.4 42.9	8.2 17.9	100.0 100.0	65.08 54.46

【 표 7】 어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의 충분함

[문 7] [#SQ1#]의 다가능어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충분히 지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매우 충분하였다.	다소 충분하였다.	그저 그렇다.	다소 부족하였다.	매우 부족하였다.	모름/ 무응답	*충분*	*보통*	*불충분*	100.0	MQ07
		%	%	%	%	%	%	%	%	%		*평균*
											계	
■ 전 체 ■	(392)	2.6	5.9	14.8	13.5	13.0	50.3	8.4	14.8	26.5	100.0	35.64
■ 어 어 홀 크 마 푸 지 맥 대 정 양 안 대 모 (23) (30) (34) (31) (33) (34) (18) (31) (28) (33) (35) (34) (28)		.0 6.7 2.9 6.5 3.0 2.9 .0 3.2 .0 .0 2.9 .0 3.6	.0 10.0 11.8 16.1 .0 .0 5.6 6.5 7.1 3.0 5.7 5.9 3.6	21.7 20.0 14.7 16.1 9.1 17.6 11.1 9.7 10.7 18.2 11.4 14.7 17.9	8.7 13.3 20.6 9.7 6.1 23.5 11.1 12.9 21.4 21.2 11.4 5.9 7.1	.0 3.3 8.8 9.7 42.4 2.9 5.6 16.1 10.7 18.2 2.9 26.5 14.3	69.6 46.7 41.2 41.9 39.4 52.9 66.7 51.6 50.0 39.4 65.7 47.1 53.6	.0 16.7 14.7 22.6 3.0 2.9 5.6 9.7 7.1 3.0 8.6 5.9 7.1	21.7 20.0 14.7 16.1 9.1 17.6 11.1 9.7 10.7 18.2 11.4 14.7 17.9	8.7 16.7 29.4 19.4 48.5 26.5 16.7 29.0 32.1 39.4 14.3 32.4 21.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2.86 51.56 41.25 50.00 15.00 37.50 37.50 33.33 32.14 27.50 45.83 25.00 36.54
■ 거 주 지 역 근 접 지 역 거 주 (392) (0)		2.6 .0	5.9 .0	14.8 .0	13.5 .0	13.0 .0	50.3 .0	8.4 .0	14.8 .0	26.5 .0	100.0 100.0	35.64 .0
■ 다 기 능 어 향 사 업 인 비 인 지 (233) (159)		2.6 2.5	6.9 4.4	12.0 18.9	15.5 10.7	15.5 9.4	47.6 54.1	9.4 6.9	12.0 18.9	30.9 20.1	100.0 100.0	33.61 39.04
■ 제 주 지 역 여 부 제 주 이 외 주 (364) (28)		2.5 3.6	6.0 3.6	14.6 17.9	14.0 7.1	12.9 14.3	50.0 53.6	8.5 7.1	14.6 17.9	26.9 21.4	100.0 100.0	35.58 36.54

【 표 8 】 여항 개발사업 추진에 공무원의 행정력의 기여도

[문 8]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의 행정력은 다가능어항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그저 그렇다.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모름/무응답	*기여*	*보통*	*비기여*	MQ08	
		%	%	%	%	%	%	%	%	%		*평균*
											계	
■ 전 체 ■	(392)	9.7	25.0	20.7	11.7	6.1	26.8	34.7	20.7	17.9	100.0	56.97
■ 여항개발사업 ■	(23)	8.7	30.4	21.7	8.7	4.3	26.1	39.1	21.7	13.0	100.0	60.29
■ 여항개발사업 ■	(30)	20.0	23.3	10.0	3.3	.0	43.3	43.3	10.0	3.3	100.0	76.47
■ 여항개발사업 ■	(34)	20.6	23.5	14.7	17.6	2.9	20.6	44.1	14.7	20.6	100.0	62.96
■ 여항개발사업 ■	(31)	16.1	32.3	25.8	6.5	9.7	9.7	48.4	25.8	16.1	100.0	60.71
■ 여항개발사업 ■	(33)	3.0	15.2	27.3	21.2	15.2	18.2	18.2	27.3	36.4	100.0	40.74
■ 여항개발사업 ■	(34)	2.9	23.5	32.4	11.8	2.9	26.5	26.5	32.4	14.7	100.0	54.00
■ 여항개발사업 ■	(18)	5.6	33.3	5.6	11.1	.0	44.4	38.9	5.6	11.1	100.0	65.00
■ 여항개발사업 ■	(31)	3.2	16.1	29.0	16.1	6.5	29.0	19.4	29.0	22.6	100.0	47.73
■ 여항개발사업 ■	(28)	3.6	39.3	25.0	3.6	7.1	21.4	42.9	25.0	10.7	100.0	59.09
■ 여항개발사업 ■	(33)	18.2	15.2	9.1	.0	6.1	51.5	33.3	9.1	6.1	100.0	70.31
■ 여항개발사업 ■	(35)	5.7	45.7	20.0	5.7	.0	22.9	51.4	20.0	5.7	100.0	66.67
■ 여항개발사업 ■	(34)	11.8	17.6	17.6	23.5	17.6	11.8	29.4	17.6	41.2	100.0	45.00
■ 여항개발사업 ■	(28)	3.6	14.3	25.0	21.4	3.6	32.1	17.9	25.0	25.0	100.0	47.37
■ 거주지역거주 떨어진지역거주	(392)	9.7	25.0	20.7	11.7	6.1	26.8	34.7	20.7	17.9	100.0	56.97
	(0)	.0	.0	.0	.0	.0	.0	.0	.0	.0	100.0	.
■ 다가능어항사업 ■	(233)	10.7	27.5	17.2	14.6	5.6	24.5	38.2	17.2	20.2	100.0	57.67
■ 비 인 지 ■	(159)	8.2	21.4	25.8	7.5	6.9	30.2	29.6	25.8	14.5	100.0	55.86
■ 제주지역여부 ■	(364)	10.2	25.8	20.3	11.0	6.3	26.4	36.0	20.3	17.3	100.0	57.65
■ 제 주 이 외 주 ■	(28)	3.6	14.3	25.0	21.4	3.6	32.1	17.9	25.0	25.0	100.0	47.37

【 표 9 】 여항 개발사업이 소득증대 관광활성화에 기여도

[문 9] 다가능어항 개발사업을 통해 현재 선생님이 속한 지역의 소득증대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후 20번으로

	사례수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다.	대체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저 그렇다.	그다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기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였다.	모름/무응답	*달성*	*보통*	*미달성*	MQ09	
		%	%	%	%	%	%	%	%	%		*평균*
											계	
■ 전 체 ■	(392)	5.6	18.1	24.7	16.6	11.5	23.5	23.7	24.7	28.1	100.0	46.67
■ 여항개발사업 ■	(23)	13.0	13.0	21.7	13.0	13.0	26.1	26.1	21.7	26.1	100.0	50.00
■ 여항개발사업 ■	(30)	10.0	13.3	26.7	16.7	3.3	30.0	23.3	26.7	20.0	100.0	53.57
■ 여항개발사업 ■	(34)	8.8	29.4	23.5	8.8	8.8	20.6	38.2	23.5	17.6	100.0	56.48
■ 여항개발사업 ■	(31)	16.1	22.6	19.4	6.5	12.9	22.6	38.7	19.4	19.4	100.0	57.29
■ 여항개발사업 ■	(33)	3.0	9.1	21.2	12.1	24.2	30.3	12.1	21.2	36.4	100.0	33.70
■ 여항개발사업 ■	(34)	.0	35.3	26.5	23.5	2.9	11.8	35.3	26.5	26.5	100.0	51.67
■ 여항개발사업 ■	(18)	.0	5.6	27.8	16.7	16.7	33.3	5.6	27.8	33.3	100.0	33.33
■ 여항개발사업 ■	(31)	.0	19.4	25.8	12.9	6.5	35.5	19.4	25.8	19.4	100.0	47.50
■ 여항개발사업 ■	(28)	7.1	17.9	32.1	10.7	3.6	28.6	25.0	32.1	14.3	100.0	55.00
■ 여항개발사업 ■	(33)	.0	21.2	15.2	15.2	24.2	24.2	21.2	15.2	39.4	100.0	36.00
■ 여항개발사업 ■	(35)	8.6	22.9	37.1	14.3	2.9	14.3	31.4	37.1	17.1	100.0	55.83
■ 여항개발사업 ■	(34)	5.9	2.9	17.6	32.4	17.6	23.5	8.8	17.6	50.0	100.0	32.69
■ 여항개발사업 ■	(28)	.0	14.3	28.6	32.1	14.3	10.7	14.3	28.6	46.4	100.0	37.00
■ 거주지역거주 떨어진지역거주	(392)	5.6	18.1	24.7	16.6	11.5	23.5	23.7	24.7	28.1	100.0	46.67
	(0)	.0	.0	.0	.0	.0	.0	.0	.0	.0	100.0	.
■ 다가능어항사업 ■	(233)	6.9	21.5	21.5	14.6	14.2	21.5	28.3	21.5	28.8	100.0	47.54
■ 비 인 지 ■	(159)	3.8	13.2	29.6	19.5	7.5	26.4	17.0	29.6	27.0	100.0	45.30
■ 제주지역여부 ■	(364)	6.0	18.4	24.5	15.4	11.3	24.5	24.5	24.5	26.6	100.0	47.55
■ 제 주 이 외 주 ■	(28)	.0	14.3	28.6	32.1	14.3	10.7	14.3	28.6	46.4	100.0	37.00

【 표 10 】 다기능어항 개발 사업 인지도

[문 10] 앞에서 설명해 드린 다기능어항 개발 사업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례수	매우 많이 들어보았다.	자세히 알아보았다.	그저 그렇다.	*인지*	*보통*		MQ10
		%	%	%	%	%		*평균*
							계	
■ 전 체 ■	(308)	12.0	56.5	31.5	68.5	31.5	100.0	70.13
■ 어항정비사업 ■	(30)	16.7	50.0	33.3	66.7	33.3	100.0	70.83
어항정비사업	(30)	.0	80.0	20.0	80.0	20.0	100.0	70.00
홍격마포항	(31)	9.7	74.2	16.1	83.9	16.1	100.0	73.39
마포항	(30)	20.0	43.3	36.7	63.3	36.7	100.0	70.83
국영항	(20)	.0	65.0	35.0	65.0	35.0	100.0	66.25
지맥천포	(13)	15.4	46.2	38.5	61.5	38.5	100.0	69.23
대정변자포	(7)	14.3	57.1	28.6	71.4	28.6	100.0	71.43
정양자포	(23)	.0	52.2	47.8	52.2	47.8	100.0	63.04
양안대모슬포	(22)	9.1	63.6	27.3	72.7	27.3	100.0	70.45
양안대모슬포	(30)	16.7	56.7	26.7	73.3	26.7	100.0	72.50
양안대모슬포	(28)	17.9	46.4	35.7	64.3	35.7	100.0	70.54
양안대모슬포	(31)	22.6	38.7	38.7	61.3	38.7	100.0	70.97
양안대모슬포	(13)	7.7	61.5	30.8	69.2	30.8	100.0	69.23
■ 거주지역 ■	(0)	.0	.0	.0	.0	.0	100.0	.0
거주지역	(308)	12.0	56.5	31.5	68.5	31.5	100.0	70.13
■ 다기능어항사업 ■	(177)	16.4	61.6	22.0	78.0	22.0	100.0	73.59
인지	(131)	6.1	49.6	44.3	55.7	44.3	100.0	65.46
■ 제주지역 ■	(295)	12.2	56.3	31.5	68.5	31.5	100.0	70.17
제주	(13)	7.7	61.5	30.8	69.2	30.8	100.0	69.23

【 표 11 】 어항 방문 경험

[문 11] 선생님은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중이나 완료된 후(2004년 이후)에 [#SQ1#]에 방문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례수	자주 방문해 보았다.	한 두 번 방문해 보았다.	기억이 없다	전혀 방문한 사실이 없다	*긍정*	*부정*	
		%	%	%	%	%	%	
								계
■ 전 체 ■	(308)	34.7	37.0	3.2	25.0	71.8	28.2	100.0
■ 어항정비사업 ■	(30)	33.3	30.0	10.0	26.7	63.3	36.7	100.0
어항정비사업	(30)	36.7	33.3	3.3	26.7	70.0	30.0	100.0
홍격마포항	(31)	35.5	51.6	3.2	9.7	87.1	12.9	100.0
마포항	(30)	36.7	53.3	3.3	6.7	90.0	10.0	100.0
국영항	(20)	20.0	30.0	.0	50.0	50.0	50.0	100.0
지맥천포	(13)	38.5	53.8	.0	7.7	92.3	7.7	100.0
대정변자포	(7)	.0	85.7	.0	14.3	85.7	14.3	100.0
정양자포	(23)	43.5	13.0	4.3	39.1	56.5	43.5	100.0
양안대모슬포	(22)	36.4	36.4	.0	27.3	72.7	27.3	100.0
양안대모슬포	(30)	33.3	40.0	3.3	23.3	73.3	26.7	100.0
양안대모슬포	(28)	46.4	28.6	.0	25.0	75.0	25.0	100.0
양안대모슬포	(31)	25.8	38.7	.0	35.5	64.5	35.5	100.0
양안대모슬포	(13)	46.2	7.7	15.4	30.8	53.8	46.2	100.0
■ 거주지역 ■	(0)	.0	.0	.0	.0	.0	.0	100.0
거주지역	(308)	34.7	37.0	3.2	25.0	71.8	28.2	100.0
■ 다기능어항사업 ■	(177)	42.9	35.0	1.7	20.3	78.0	22.0	100.0
인지	(131)	23.7	39.7	5.3	31.3	63.4	36.6	100.0
■ 제주지역 ■	(295)	34.2	38.3	2.7	24.7	72.5	27.5	100.0
제주	(13)	46.2	7.7	15.4	30.8	53.8	46.2	100.0

【 표 12 】 교통 편의 만족도

[문 12] 방문하셨다면 [#SQ1#]까지 오시는 교통 편의는 어떠하였습니까

	사례수	매우 편리	대체로 편리	보통	대체로 불편	매우 불편	모름/무응답	*편리*	*보통*	*불편*	MQ12	
		%	%	%	%	%	%	%	%	%		*평균*
											계	
■ 전 체 ■	(221)	13.6	24.9	24.0	20.8	14.9	1.8	38.5	24.0	35.7	100.0	50.35
■ 어 어항 권 전 편편안안 ■	(19)	5.3	10.5	15.8	52.6	15.8	.0	15.8	15.8	68.4	100.0	34.21
어항 권 전 편편안안	(21)	9.5	14.3	28.6	14.3	28.6	4.8	23.8	28.6	42.9	100.0	40.00
어항 권 전 편편안안	(27)	18.5	33.3	18.5	11.1	18.5	.0	51.9	18.5	29.6	100.0	55.56
어항 권 전 편편안안	(27)	18.5	29.6	18.5	18.5	11.1	3.7	48.1	18.5	29.6	100.0	56.73
어항 권 전 편편안안	(10)	10.0	10.0	50.0	30.0	.0	.0	20.0	50.0	30.0	100.0	50.00
어항 권 전 편편안안	(12)	.0	33.3	33.3	25.0	8.3	.0	33.3	33.3	33.3	100.0	47.92
어항 권 전 편편안안	(6)	.0	33.3	33.3	16.7	16.7	.0	33.3	33.3	33.3	100.0	45.83
어항 권 전 편편안안	(13)	.0	46.2	23.1	23.1	7.7	.0	46.2	23.1	30.8	100.0	51.92
어항 권 전 편편안안	(16)	12.5	37.5	18.8	18.8	6.3	6.3	50.0	18.8	25.0	100.0	58.33
어항 권 전 편편안안	(22)	9.1	27.3	18.2	9.1	36.4	.0	36.4	18.2	45.5	100.0	40.91
어항 권 전 편편안안	(21)	38.1	9.5	23.8	28.6	.0	.0	47.6	23.8	28.6	100.0	64.29
어항 권 전 편편안안	(20)	.0	30.0	30.0	15.0	20.0	5.0	30.0	30.0	35.0	100.0	43.42
어항 권 전 편편안안	(7)	57.1	.0	28.6	14.3	.0	.0	57.1	28.6	14.3	100.0	75.00
■ 거 주 지 역 ■	(0)	.0	.0	.0	.0	.0	.0	.0	.0	.0	100.0	.
■ 거 주 지 역 ■	(221)	13.6	24.9	24.0	20.8	14.9	1.8	38.5	24.0	35.7	100.0	50.35
■ 다 기 능 어 항 사 업 ■	(138)	14.5	22.5	20.3	21.7	18.1	2.9	37.0	20.3	39.9	100.0	48.32
■ 다 기 능 어 항 사 업 ■	(83)	12.0	28.9	30.1	19.3	9.6	.0	41.0	30.1	28.9	100.0	53.61
■ 제 주 지 역 어 부 ■	(214)	12.1	25.7	23.8	21.0	15.4	1.9	37.9	23.8	36.4	100.0	49.52
■ 제 주 지 역 어 부 ■	(7)	57.1	.0	28.6	14.3	.0	.0	57.1	28.6	14.3	100.0	75.00

【 표 13 】 방문객 편의시설 만족도

[문 13] [#SQ1#]에 대해 느끼신 주차장/안내센터 등 방문객 편의시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사례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모름/무응답	*만족*	*보통*	*불만족*	MQ13	
		%	%	%	%	%	%	%	%	%		*평균*
											계	
■ 전 체 ■	(221)	9.0	20.8	29.0	19.9	9.0	12.2	29.9	29.0	29.0	100.0	50.26
■ 어 어항 권 전 편편안안 ■	(19)	10.5	10.5	26.3	36.8	10.5	5.3	21.1	26.3	47.4	100.0	43.06
어항 권 전 편편안안	(21)	9.5	19.0	19.0	28.6	19.0	4.8	28.6	19.0	47.6	100.0	42.50
어항 권 전 편편안안	(27)	14.8	18.5	22.2	29.6	3.7	11.1	33.3	22.2	33.3	100.0	53.13
어항 권 전 편편안안	(27)	3.7	29.6	33.3	14.8	.0	18.5	33.3	33.3	14.8	100.0	56.82
어항 권 전 편편안안	(10)	.0	20.0	30.0	10.0	10.0	30.0	20.0	30.0	20.0	100.0	46.43
어항 권 전 편편안안	(12)	.0	33.3	33.3	16.7	8.3	8.3	33.3	33.3	25.0	100.0	50.00
어항 권 전 편편안안	(6)	.0	.0	50.0	16.7	.0	33.3	.0	50.0	16.7	100.0	43.75
어항 권 전 편편안안	(13)	7.7	23.1	23.1	23.1	15.4	7.7	30.8	23.1	38.5	100.0	45.83
어항 권 전 편편안안	(16)	6.3	18.8	50.0	18.8	6.3	.0	25.0	50.0	25.0	100.0	50.00
어항 권 전 편편안안	(22)	13.6	27.3	18.2	13.6	18.2	9.1	40.9	18.2	31.8	100.0	51.25
어항 권 전 편편안안	(21)	14.3	38.1	23.8	9.5	9.5	4.8	52.4	23.8	19.0	100.0	60.00
어항 권 전 편편안안	(20)	5.0	5.0	40.0	15.0	5.0	30.0	10.0	40.0	20.0	100.0	46.43
어항 권 전 편편안안	(7)	28.6	.0	28.6	14.3	14.3	14.3	28.6	28.6	28.6	100.0	54.17
■ 거 주 지 역 ■	(0)	.0	.0	.0	.0	.0	.0	.0	.0	.0	100.0	.
■ 거 주 지 역 ■	(221)	9.0	20.8	29.0	19.9	9.0	12.2	29.9	29.0	29.0	100.0	50.26
■ 다 기 능 어 항 사 업 ■	(138)	10.1	19.6	31.2	19.6	8.7	10.9	29.7	31.2	28.3	100.0	50.81
■ 다 기 능 어 항 사 업 ■	(83)	7.2	22.9	25.3	20.5	9.6	14.5	30.1	25.3	30.1	100.0	49.30
■ 제 주 지 역 어 부 ■	(214)	8.4	21.5	29.0	20.1	8.9	12.1	29.9	29.0	29.0	100.0	50.13
■ 제 주 지 역 어 부 ■	(7)	28.6	.0	28.6	14.3	14.3	14.3	28.6	28.6	28.6	100.0	54.17

【 표 16】 휴양/여가 경험 만족도

[문 16] 휴양 및 여가행위를 즐기신 경험은 어떠습니까

사례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모름/ 무응답	*만족*	*보통*	*불만족*	MQ16		
										%	%	%
■ 전 체 ■	(221)	5.0	18.6	42.1	5.9	5.0	23.5	23.5	42.1	10.9	100.0	54.14
■ 어 어 호 경 과 크 마 누 지 맥 대 정 양 안 대 모 슬 포 항 ■	(19)	.0	15.8	52.6	5.3	15.8	10.5	15.8	52.6	21.1	100.0	44.12
(21)	4.8	9.5	47.6	9.5	9.5	19.0	14.3	47.6	19.0	100.0	47.06	
(27)	7.4	25.9	44.4	3.7	3.7	14.8	33.3	44.4	7.4	100.0	58.70	
(27)	.0	25.9	25.9	.0	3.7	44.4	25.9	25.9	3.7	100.0	58.33	
(10)	.0	20.0	20.0	10.0	20.0	30.0	20.0	20.0	30.0	100.0	39.29	
(12)	.0	25.0	33.3	16.7	.0	25.0	25.0	33.3	16.7	100.0	52.78	
(6)	.0	16.7	33.3	.0	.0	50.0	16.7	33.3	.0	100.0	58.33	
(13)	7.7	.0	69.2	7.7	.0	15.4	7.7	69.2	7.7	100.0	52.27	
(16)	6.3	18.8	56.3	6.3	.0	12.5	25.0	56.3	6.3	100.0	57.14	
(22)	4.5	9.1	54.5	.0	4.5	27.3	13.6	54.5	4.5	100.0	53.13	
(21)	14.3	42.9	23.8	4.8	.0	14.3	57.1	23.8	4.8	100.0	69.44	
(20)	.0	10.0	35.0	15.0	5.0	35.0	10.0	35.0	20.0	100.0	44.23	
(7)	28.6	.0	57.1	.0	.0	14.3	28.6	57.1	.0	100.0	66.67	
■ 거 주 지 역 거 주 ■	(0)	.0	.0	.0	.0	.0	.0	.0	.0	.0	100.0	.
■ 떨어진 지역 거주	(221)	5.0	18.6	42.1	5.9	5.0	23.5	23.5	42.1	10.9	100.0	54.14
■ 다 기 능 여 향 사 업	(138)	5.8	20.3	39.1	6.5	4.3	23.9	26.1	39.1	10.9	100.0	55.48
인 비 인 지	(83)	3.6	15.7	47.0	4.8	6.0	22.9	19.3	47.0	10.8	100.0	51.95
■ 제 주 지 역 여 부 ■	(214)	4.2	19.2	41.6	6.1	5.1	23.8	23.4	41.6	11.2	100.0	53.68
제 주 이 외 주	(7)	28.6	.0	57.1	.0	.0	14.3	28.6	57.1	.0	100.0	66.67

【 표 17】 숙박시설 만족도

[문 17] 선생님께서는 [#SQ1#]항 인근에서 숙박을 하셨습니다. 숙박을 하셨다면 숙박시설의 만족도는 어떠습니까

사례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모름/ 무응답	*만족*	*보통*	*불만족*	MQ17		
										%	%	%
■ 전 체 ■	(34)	2.9	14.7	55.9	8.8	5.9	11.8	17.6	55.9	14.7	100.0	50.00
■ 어 어 호 경 과 크 마 누 지 맥 대 정 양 안 대 모 슬 포 항 ■	(3)	.0	33.3	33.3	.0	33.3	.0	33.3	33.3	33.3	100.0	41.67
(3)	.0	.0	33.3	33.3	.0	33.3	.0	33.3	33.3	100.0	37.50	
(11)	9.1	18.2	45.5	9.1	.0	18.2	27.3	45.5	9.1	100.0	58.33	
(2)	.0	50.0	50.0	.0	.0	.0	50.0	50.0	.0	100.0	62.50	
(0)	.0	.0	.0	.0	.0	.0	.0	.0	.0	100.0	.	
(1)	.0	.0	.0	100.0	.0	.0	.0	.0	100.0	100.0	25.00	
(0)	.0	.0	.0	.0	.0	.0	.0	.0	.0	100.0	.	
(3)	.0	.0	100.0	.0	.0	.0	.0	100.0	.0	100.0	50.00	
(2)	.0	.0	100.0	.0	.0	.0	.0	100.0	.0	100.0	50.00	
(1)	.0	.0	100.0	.0	.0	.0	.0	100.0	.0	100.0	50.00	
(2)	.0	.0	50.0	.0	50.0	.0	.0	50.0	50.0	100.0	25.00	
(3)	.0	.0	66.7	.0	.0	33.3	.0	66.7	.0	100.0	50.00	
(3)	.0	33.3	66.7	.0	.0	.0	33.3	66.7	.0	100.0	58.33	
■ 거 주 지 역 거 주 ■	(0)	.0	.0	.0	.0	.0	.0	.0	.0	.0	100.0	.
■ 떨어진 지역 거주	(34)	2.9	14.7	55.9	8.8	5.9	11.8	17.6	55.9	14.7	100.0	50.00
■ 다 기 능 여 향 사 업	(22)	4.5	9.1	63.6	9.1	4.5	9.1	13.6	63.6	13.6	100.0	50.00
인 비 인 지	(12)	.0	25.0	41.7	8.3	8.3	16.7	25.0	41.7	16.7	100.0	50.00
■ 제 주 지 역 여 부 ■	(31)	3.2	12.9	54.8	9.7	6.5	12.9	16.1	54.8	16.1	100.0	49.07
제 주 이 외 주	(3)	.0	33.3	66.7	.0	.0	.0	33.3	66.7	.0	100.0	58.33

【 표 18-3 】 기타요금 지출 액수

[문 18-3] 유람선 승선요금/주차료 등 기타요금 ()만원

	사례수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계	MQ183
		%	%	%	%	%		*평균*
■ 전 체 ■	(221)	79.6	.5	2.7	4.5	12.7	100.0	5.30
■ 어항유류료 ■	(19)	78.9	.0	.0	10.5	10.5	100.0	10.47
어항유류료	(21)	61.9	.0	.0	.0	38.1	100.0	.00
보통	(27)	85.2	.0	.0	3.7	11.1	100.0	4.33
마포	(27)	74.1	.0	.0	.0	25.9	100.0	.20
국지	(10)	80.0	10.0	.0	10.0	.0	100.0	10.70
지맥	(12)	66.7	.0	8.3	8.3	16.7	100.0	12.10
대정	(6)	83.3	.0	.0	.0	16.7	100.0	.20
양양	(13)	69.2	.0	.0	7.7	23.1	100.0	9.90
안대	(16)	93.8	.0	.0	.0	6.3	100.0	.40
모슬포	(22)	90.9	.0	.0	4.5	4.5	100.0	4.71
안대	(21)	85.7	.0	4.8	9.5	.0	100.0	10.43
모슬포	(20)	90.0	.0	10.0	.0	.0	100.0	1.05
안대	(7)	57.1	.0	28.6	14.3	.0	100.0	9.00
■ 거주지역 ■	(0)	.0	.0	.0	.0	.0	100.0	.0
거주지역	(221)	79.6	.5	2.7	4.5	12.7	100.0	5.30
■ 다가능어항사업 ■	(138)	79.0	.0	4.3	3.6	13.0	100.0	4.78
인 지	(83)	80.7	1.2	.0	6.0	12.0	100.0	6.15
■ 제주지역여부 ■	(214)	80.4	.5	1.9	4.2	13.1	100.0	5.16
제주 이 외	(7)	57.1	.0	28.6	14.3	.0	100.0	9.00

【 표 19 】 향후 다가능어항 방문계획

[문 19] 선생님께서 [SQ1#]을 다음에 다시 방문하시고 싶거나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모름/무응답	*긍정*	*보통*	*부정*	계	MQ19
		%	%	%	%	%	%	%	%	%		*평균*
■ 전 체 ■	(221)	25.8	28.5	30.3	8.6	2.7	4.1	54.3	30.3	11.3	100.0	67.22
■ 어항유류료 ■	(19)	10.5	31.6	26.3	21.1	10.5	.0	42.1	26.3	31.6	100.0	52.63
어항유류료	(21)	28.6	38.1	28.6	.0	.0	4.8	66.7	28.6	.0	100.0	75.00
보통	(27)	25.9	25.9	29.6	.0	11.1	7.4	51.9	29.6	11.1	100.0	65.00
마포	(27)	18.5	22.2	40.7	7.4	.0	11.1	40.7	40.7	7.4	100.0	64.58
국지	(10)	40.0	30.0	30.0	.0	.0	.0	70.0	30.0	.0	100.0	77.50
지맥	(12)	33.3	16.7	33.3	8.3	8.3	.0	50.0	33.3	16.7	100.0	64.58
대정	(6)	16.7	33.3	33.3	16.7	.0	.0	50.0	33.3	16.7	100.0	62.50
양양	(13)	15.4	23.1	61.5	.0	.0	.0	38.5	61.5	.0	100.0	63.46
안대	(16)	25.0	43.8	25.0	6.3	.0	.0	68.8	25.0	6.3	100.0	71.88
모슬포	(22)	31.8	40.9	18.2	9.1	.0	.0	72.7	18.2	9.1	100.0	73.86
안대	(21)	33.3	19.0	28.6	9.5	.0	9.5	52.4	28.6	9.5	100.0	71.05
모슬포	(20)	20.0	20.0	25.0	30.0	.0	5.0	40.0	25.0	30.0	100.0	57.89
안대	(7)	57.1	28.6	14.3	.0	.0	.0	85.7	14.3	.0	100.0	85.71
■ 거주지역 ■	(0)	.0	.0	.0	.0	.0	.0	.0	.0	.0	100.0	.0
거주지역	(221)	25.8	28.5	30.3	8.6	2.7	4.1	54.3	30.3	11.3	100.0	67.22
■ 다가능어항사업 ■	(138)	28.3	25.4	29.0	11.6	1.4	4.3	53.6	29.0	13.0	100.0	67.61
인 지	(83)	21.7	33.7	32.5	3.6	4.8	3.6	55.4	32.5	8.4	100.0	66.56
■ 제주지역여부 ■	(214)	24.8	28.5	30.8	8.9	2.8	4.2	53.3	30.8	11.7	100.0	66.59
제주 이 외	(7)	57.1	28.6	14.3	.0	.0	.0	85.7	14.3	.0	100.0	85.71

【 표 20 】 여항 개발사업이 소득증대 관광활성화에 필요성

[문 20] 선생님께서는 다가능여항 개발사업이 어촌지역의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모름/ 무응답	*긍정*	*보통*	*부정*	MQ20	
		%	%	%	%	%	%	%	%	%		*평균*
											계	
■ 전 체 ■	(700)	38.0	25.6	14.9	5.6	1.7	14.3	63.6	14.9	7.3	100.0	77.00
■ 어항개발사업필요성 ■	(53)	39.6	15.1	20.8	15.1	.0	9.4	54.7	20.8	15.1	100.0	71.88
어항개발사업필요성	(60)	43.3	26.7	11.7	5.0	1.7	11.7	70.0	11.7	6.7	100.0	79.72
어항개발사업필요성	(65)	43.1	26.2	13.8	1.5	1.5	13.8	69.2	13.8	3.1	100.0	81.25
어항개발사업필요성	(61)	41.0	26.2	19.7	.0	3.3	9.8	67.2	19.7	3.3	100.0	78.18
어항개발사업필요성	(53)	41.5	24.5	9.4	3.8	1.9	18.9	66.0	9.4	5.7	100.0	80.81
어항개발사업필요성	(47)	42.6	29.8	12.8	6.4	.0	8.5	72.3	12.8	6.4	100.0	79.65
어항개발사업필요성	(25)	28.0	36.0	20.0	4.0	.0	12.0	64.0	20.0	4.0	100.0	75.00
어항개발사업필요성	(54)	29.6	24.1	13.0	9.3	1.9	22.2	53.7	13.0	11.1	100.0	72.62
어항개발사업필요성	(50)	30.0	30.0	20.0	.0	.0	20.0	60.0	20.0	.0	100.0	78.13
어항개발사업필요성	(63)	39.7	30.2	11.1	3.2	1.6	14.3	69.8	11.1	4.8	100.0	80.09
어항개발사업필요성	(63)	46.0	23.8	7.9	4.8	1.6	15.9	69.8	7.9	6.3	100.0	82.08
어항개발사업필요성	(65)	24.6	21.5	12.3	16.9	6.2	18.5	46.2	12.3	23.1	100.0	62.74
어항개발사업필요성	(41)	39.0	24.4	29.3	.0	.0	7.3	63.4	29.3	.0	100.0	77.63
■ 거주지역거주필요성 ■	(392)	38.3	27.0	14.5	5.4	2.8	12.0	65.3	14.5	8.2	100.0	76.30
거주지역거주필요성	(308)	37.7	23.7	15.3	5.8	.3	17.2	61.4	15.3	6.2	100.0	77.94
■ 다가능여항사업인비인지 ■	(410)	40.0	26.1	13.9	6.1	2.0	12.0	66.1	13.9	8.0	100.0	77.29
다가능여항사업인비인지	(290)	35.2	24.8	16.2	4.8	1.4	17.6	60.0	16.2	6.2	100.0	76.57
■ 제주지역여부 ■	(659)	37.9	25.6	14.0	5.9	1.8	14.7	63.6	14.0	7.7	100.0	76.96
제주지역여부	(41)	39.0	24.4	29.3	.0	.0	7.3	63.4	29.3	.0	100.0	77.63

【 표 21 】 여항 개발사업 수준의 소득증대 관광활성화에 적절성

[문 21] 선생님께서는 다가능어촌 개발사업이 어촌지역의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매우 적절한 수준이다	대체로 적절한 수준이다	보통 수준이다	대체로 부족한 수준이다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모름/ 무응답	*적절*	*보통*	*부족*	MQ21	
		%	%	%	%	%	%	%	%	%		*평균*
											계	
■ 전 체 ■	(649)	15.4	26.2	23.4	9.2	5.9	19.9	41.6	23.4	15.1	100.0	61.25
■ 어항개발사업필요성 ■	(45)	20.0	22.2	17.8	8.9	8.9	22.2	42.2	17.8	17.8	100.0	61.43
어항개발사업필요성	(56)	8.9	33.9	26.8	8.9	3.6	17.9	42.9	26.8	12.5	100.0	60.87
어항개발사업필요성	(63)	20.6	28.6	15.9	9.5	3.2	22.2	49.2	15.9	12.7	100.0	67.35
어항개발사업필요성	(59)	13.6	25.4	23.7	13.6	6.8	16.9	39.0	23.7	20.3	100.0	57.65
어항개발사업필요성	(50)	18.0	16.0	18.0	14.0	14.0	20.0	34.0	18.0	28.0	100.0	53.13
어항개발사업필요성	(44)	9.1	31.8	29.5	11.4	.0	18.2	40.9	29.5	11.4	100.0	61.81
어항개발사업필요성	(24)	16.7	16.7	33.3	4.2	4.2	25.0	33.3	33.3	8.3	100.0	62.50
어항개발사업필요성	(48)	10.4	25.0	27.1	4.2	2.1	31.3	35.4	27.1	6.3	100.0	63.64
어항개발사업필요성	(50)	16.0	38.0	22.0	12.0	4.0	8.0	54.0	22.0	16.0	100.0	63.59
어항개발사업필요성	(60)	16.7	16.7	28.3	10.0	6.7	21.7	33.3	28.3	16.7	100.0	58.51
어항개발사업필요성	(59)	20.3	33.9	18.6	3.4	1.7	22.0	54.2	18.6	5.1	100.0	71.74
어항개발사업필요성	(50)	14.0	20.0	24.0	10.0	12.0	20.0	34.0	24.0	22.0	100.0	54.38
어항개발사업필요성	(41)	14.6	26.8	26.8	7.3	9.8	14.6	41.5	26.8	17.1	100.0	58.57
■ 거주지역거주필요성 ■	(360)	14.7	24.7	24.4	9.7	7.5	18.9	39.4	24.4	17.2	100.0	59.08
거주지역거주필요성	(289)	16.3	28.0	22.1	8.7	3.8	21.1	44.3	22.1	12.5	100.0	64.04
■ 다가능여항사업인비인지 ■	(377)	18.0	24.7	23.1	9.5	6.6	18.0	42.7	23.1	16.2	100.0	61.57
다가능여항사업인비인지	(272)	11.8	28.3	23.9	8.8	4.8	22.4	40.1	23.9	13.6	100.0	60.78
■ 제주지역여부 ■	(608)	15.5	26.2	23.2	9.4	5.6	20.2	41.6	23.2	15.0	100.0	61.44
제주지역여부	(41)	14.6	26.8	26.8	7.3	9.8	14.6	41.5	26.8	17.1	100.0	58.57

【 표 22 】 다른 항에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추진 시 기여도

[문 22]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이 다른 항에 지속적으로 수행될 경우 우리나라 어촌의 소득증대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많은 기여할 것이다.	조금은 기여할 것이다.	그저 그렇다.	그다지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모름/ 무응답	*기여*	*보통*	*비기여*	MQ22	
		%	%	%	%	%	%	%	%	%		*평균*
											계	
■ 전 체 ■	(700)	35.0	29.4	14.9	3.3	1.7	15.7	64.4	14.9	5.0	100.0	77.50
■ 어항개발사업 유형별	(53)	30.2	37.7	9.4	5.7	.0	17.0	67.9	9.4	5.7	100.0	77.84
(60)	(60)	45.0	20.0	16.7	3.3	1.7	13.3	65.0	16.7	5.0	100.0	79.81
(65)	(65)	36.9	24.6	12.3	1.5	1.5	23.1	61.5	12.3	3.1	100.0	80.50
(61)	(61)	44.3	24.6	13.1	3.3	1.6	13.1	68.9	13.1	4.9	100.0	80.66
(53)	(53)	32.1	32.1	13.2	3.8	1.9	17.0	64.2	13.2	5.7	100.0	76.70
(47)	(47)	29.8	38.3	21.3	4.3	.0	6.4	68.1	21.3	4.3	100.0	75.00
(25)	(25)	20.0	40.0	8.0	8.0	4.0	20.0	60.0	8.0	12.0	100.0	70.00
(54)	(54)	29.6	29.6	20.4	3.7	1.9	14.8	59.3	20.4	5.6	100.0	73.91
(50)	(50)	40.0	32.0	14.0	2.0	.0	12.0	72.0	14.0	2.0	100.0	81.25
(63)	(63)	41.3	23.8	15.9	3.2	.0	15.9	65.1	15.9	3.2	100.0	80.66
(63)	(63)	39.7	38.1	11.1	.0	1.6	9.5	77.8	11.1	1.6	100.0	81.58
(65)	(65)	18.5	21.5	24.6	6.2	7.7	21.5	40.0	24.6	13.8	100.0	61.76
(41)	(41)	39.0	31.7	7.3	.0	.0	22.0	70.7	7.3	.0	100.0	85.16
■ 거주지역 근접지역거주 떨어진지역거주	(392)	34.7	32.1	14.0	4.1	2.8	12.2	66.8	14.0	6.9	100.0	76.16
	(308)	35.4	26.0	15.9	2.3	.3	20.1	61.4	15.9	2.6	100.0	79.37
■ 다기능어항사업 인 지	(410)	38.3	29.8	11.0	4.6	2.4	13.9	68.0	11.0	7.1	100.0	78.12
비 인 지	(290)	30.3	29.0	20.3	1.4	.7	18.3	59.3	20.3	2.1	100.0	76.58
■ 제주지역외부 제 주 이 외 주	(659)	34.7	29.3	15.3	3.5	1.8	15.3	64.0	15.3	5.3	100.0	77.06
제 제	(41)	39.0	31.7	7.3	.0	.0	22.0	70.7	7.3	.0	100.0	85.16

[문 23] 다기능어항 활성화를 위해 정책 측면에서 앞으로 추가되거나 고쳐나가야 할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자연을 훼손을 안하는 한도에서 개발을 해주세요
자연을훼손시키지말았으면
장기적으로 배가 잘드나 들수있록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한다
장사하는어민이더손해다
적극적으로추진해서시에서도움받았음좋겠다
적극적인 예산 지원
적극적인지원바람
전철도 들어오고 가구도 많이 늘어나야한다
전체적으로부락모두가혜택이돌아가야하나혜택이적다
정부에서 재정 지원 더 요구-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길 바란다.
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 활성화 되게
정책상전반적으로만족못함 지역현실고려안하고 일방적인 정부시책에불만
제대로사업이진행되면좋겠다
조수간만의차이가많아서 수심이악해서매몰이되는점
좀더 개발이 되었음 좋음
좀더생각하고청책을추진요
좀더어업인들편하게해달라
좀더활성화시켜라
주변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어야지 인이적인것으로 하면 소득에 도움이안됨
주민들이 필요한대로 해주면 좋겠다(물이 빠졌을때 배에 사람이 오르고 내리는데 미끄러워서 불편하다)
주민들하구 소통이안된다.
주민의 편리성과 관광효율성면에서 주민의의견청취하길바람 주차장이없어졌다
주위에상점지저분개선주차개선 모든것다
주차공간을주말에많이붐비는점
주차시설
주차시설과 음료판매시설도 있었으면
주차시설이 더 많아야한다
주차장 문제 해결
주차장 협소 공사 진행 이 빨리
주차장시설과 도시설이 나쁘다.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
주차장이 없고 그늘지게 큰 나무를 심어야 한다
중단된상태인데빨리완공해야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어 협력이 잘 되길 바란다.
지금현재그대로면 된다
지방활성화개발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 바람.
지역민을위한정책인데 타지역사람들이사업을해서 지역민에게실질적인도움이없다
지역이청결했으면
지역주민들이 사는데 (취업등) 우선권을 주었음
지역주민은 실제적으로 도움이안된다(자연상태를 그대로 보존상태에서 개발했음)
지역특성잘살려개발하라
지원을많이해주었으면한다
지원이더많아야한다
지자체에 맡기지말고 국고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
집중적인투자(분산되지않게)
체계적으로
최대한신속하게 공사마무리지을것
축제나 음악회등을 개최하면 좋겠다
큰배가 못들어와 효과가 없다
큰배도들어와야한다
탁상공론이 아닌 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발이 되길 바란다.
터미널편의시설
편의시설 위락시설

편의시설확충
편의시설먹거리가많이부족하다
편의시설을많이확충
편의시설이 좀 더 필요하다.
폭리를 취하지말아야한다
필요부문에돈써라
한쪽에치우치지말고골고루하라.균형되게골고루개발하라
항구 주변환경 깨끗이 할 것
항구가늘어났으면좋겠다
항구를 큰배를 다닐수있도록해줄길
항구를막아놓아서어민이피해가많다
항구쪽의 도로에 주차를 하여 차의 통행이 어렵다.
항내잘만들었는데 지지분하다
항이 깨끗하면 좋겠다
해수로때문에갈등이있다
행정공무원이 더 열심히 홍보하고 자금 많이 내려 보내라
홍보
홍보
홍보가 부족하다
홍보가 부족하다. 해당지역사람들밖에 모른다 활용방향에대해서도 홍보가 부족하다 .
홍보가전혀안되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보다 나은 개발이 되길 바란다.
홍보부족
홍원항에서춘장대해수욕장까지연결되는도로필요
화장실 식당을 고쳐야 한다
화장실등 시설개선
화장실스수산물판매센터를좀더청결필요
화장실이적다
환경측의고려하라.다양한콘텐츠를가져라
활성화...
활어직판장 같은 오래된 시설을 다시 지었음 좋겠다.
회센터를 세웠으면함
횃집이 많은데 주변보다 비싸고 화장실도 지지분하다
휴식공간이 부족했다. 음식점이 횃집중심으로 뒀. 다양했으면...식사비가 너무 비싸다.
TV 통한 홍보

3. 국가어항 관리 공무원

【 응 답 자 특 성 표 】

	사례수	%
■ 전 체 ■	90	100.0%
■ 지인간행우매정전전제 주주이인주	5	5.6%
	18	20.0%
	7	7.8%
	3	3.3%
	2	2.2%
	13	14.4%
	10	11.1%
	20	22.2%
	9	10.0%
	3	3.3%
■ 제주지역여부 제 주 이 인 주	87 3	96.7% 3.3%
■ 사업이해정도 비 인 지 보 인 통 지	4	4.4%
	18	20.0%
	68	75.6%

【 표 1 】 어항 개발사업 내용 이해 정도

[문 1] 선생님께서는 국가어항 개발사업 내용을 대체로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례수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		
■ 전 체 ■	(90)	2.2	2.2	20.0	15.6	21.1	38.9	4.4	20.0	75.6	100.0	77.96
■ 지인간행우매정전전제 주주이인주	(5)	20.0	.0	20.0	40.0	.0	20.0	20.0	20.0	60.0	100.0	60.00
	(18)	5.6	5.6	27.8	16.7	22.2	22.2	11.1	27.8	61.1	100.0	68.52
	(7)	.0	.0	28.6	14.3	28.6	28.6	.0	28.6	71.4	100.0	76.19
	(3)	.0	.0	.0	33.3	33.3	33.3	.0	.0	100.0	100.0	83.33
	(2)	.0	.0	.0	.0	50.0	50.0	.0	.0	100.0	100.0	91.67
	(13)	.0	7.7	7.7	23.1	15.4	46.2	7.7	7.7	84.6	100.0	80.77
	(10)	.0	.0	10.0	10.0	30.0	50.0	.0	10.0	90.0	100.0	86.67
	(20)	.0	.0	25.0	10.0	20.0	45.0	.0	25.0	75.0	100.0	80.83
	(9)	.0	.0	33.3	11.1	11.1	44.4	.0	33.3	66.7	100.0	77.78
	(3)	.0	.0	.0	.0	33.3	66.7	.0	.0	100.0	100.0	94.44
■ 제주지역여부 제 주 이 인 주	(87) (3)	2.3 .0	2.3 .0	20.7 .0	16.1 .0	20.7 33.3	37.9 66.7	4.6 .0	20.7 .0	74.7 100.0	100.0 100.0	77.39 94.44
■ 사업이해정도 비 인 지 보 인 통 지	(4)	50.0	50.0	.0	.0	.0	.0	100.0	.0	.0	100.0	25.00
	(18)	.0	.0	100.0	.0	.0	.0	.0	100.0	.0	100.0	50.00
	(68)	.0	.0	.0	20.6	27.9	51.5	.0	.0	100.0	100.0	88.48

【 표 2 】 어항 개발사업 내용의 어업인 이해하기 쉬운 정도

[문 2] 선생님께서는 국가어항 개발사업 내용이 어업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	%	%			
■ 전 체 ■	(90)	1.1	3.3	11.1	28.9	25.6	10.0	16.7	3.3	15.6	28.9	52.2	100.0	62.84	
■ 지인인 별 제 구역 산주 ■ 의 인 권 관 이 주 이 산 주 별 권 관 산 주 관 관 관 관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5)	.0	20.0	40.0	20.0	20.0	.0	.0	.0	60.0	20.0	20.0	100.0	40.00	
	(18)	.0	11.1	.0	44.4	16.7	16.7	.0	11.1	11.1	44.4	33.3	100.0	55.21	
	(7)	.0	.0	28.6	42.9	14.3	.0	.0	14.3	28.6	42.9	14.3	100.0	47.22	
	(3)	.0	.0	.0	.0	100.0	.0	.0	.0	.0	.0	100.0	100.0	66.67	
	(2)	.0	.0	.0	50.0	.0	50.0	.0	.0	.0	.0	50.0	50.0	100.0	66.66
	(13)	.0	.0	15.4	38.5	30.8	7.7	7.7	.0	15.4	38.5	46.2	100.0	58.97	
	(10)	10.0	.0	10.0	20.0	10.0	20.0	30.0	.0	20.0	20.0	60.0	100.0	66.67	
	(20)	.0	.0	5.0	20.0	45.0	.0	30.0	.0	5.0	20.0	75.0	100.0	71.67	
	(9)	.0	.0	22.2	22.2	11.1	11.1	33.3	.0	22.2	22.2	55.6	100.0	68.52	
	(3)	.0	.0	.0	.0	.0	33.3	66.7	.0	.0	.0	100.0	100.0	94.44	
■ 제주지역어부외주 제 주 이 외 주 ■	(87)	1.1	3.4	11.5	29.9	26.4	9.2	14.9	3.4	16.1	29.9	50.6	100.0	61.71	
(3)	.0	.0	.0	.0	.0	33.3	66.7	.0	.0	.0	100.0	100.0	94.44		
■ 사업이해정도 비인 지 동 지 ■	(4)	.0	50.0	.0	.0	25.0	.0	.0	25.0	50.0	.0	25.0	100.0	33.34	
(18)	5.6	.0	22.2	44.4	5.6	11.1	5.6	5.6	27.8	44.4	22.2	100.0	50.98		
(68)	.0	1.5	8.8	26.5	30.9	10.3	20.6	1.5	10.3	26.5	61.8	100.0	67.16		

【 표 3 】 어항 개발사업의 어촌 활성화 방향 적합도

[문 3] 선생님께서는 어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국가어항 개발사업이 어촌의 활성화 방향에 꼭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	%	%		
■ 전 체 ■	(90)	1.1	5.6	7.8	22.2	12.2	15.6	34.4	1.1	14.4	22.2	62.2	100.0	70.97
■ 지인인 별 제 구역 산주 ■ 의 인 권 관 이 주 이 산 주 별 권 관 산 주 관 관 관 관 제 제 제 제	(5)	.0	20.0	.0	60.0	.0	20.0	.0	.0	20.0	60.0	20.0	100.0	50.00
	(18)	5.6	16.7	11.1	22.2	11.1	16.7	16.7	.0	33.3	22.2	44.4	100.0	55.56
	(7)	.0	.0	14.3	14.3	28.6	28.6	.0	14.3	14.3	14.3	57.1	100.0	63.89
	(3)	.0	.0	.0	.0	.0	.0	100.0	.0	.0	.0	100.0	100.0	100.00
	(2)	.0	.0	50.0	.0	50.0	.0	.0	.0	50.0	.0	50.0	100.0	50.00
	(13)	.0	.0	7.7	15.4	23.1	30.8	23.1	.0	7.7	15.4	76.9	100.0	74.36
	(10)	.0	.0	.0	20.0	.0	20.0	60.0	.0	.0	20.0	80.0	100.0	86.67
	(20)	.0	.0	10.0	25.0	5.0	10.0	50.0	.0	10.0	25.0	65.0	100.0	77.50
	(9)	.0	11.1	.0	33.3	11.1	.0	44.4	.0	11.1	33.3	55.6	100.0	70.37
	(3)	.0	.0	.0	.0	33.3	.0	66.7	.0	.0	.0	100.0	100.0	88.89
■ 제주지역어부외주 제 주 이 외 주 ■	(87)	1.1	5.7	8.0	23.0	11.5	16.1	33.3	1.1	14.9	23.0	60.9	100.0	70.35
(3)	.0	.0	.0	.0	33.3	66.7	.0	.0	.0	.0	100.0	100.0	88.89	
■ 사업이해정도 비인 지 동 지 ■	(4)	25.0	50.0	.0	.0	.0	25.0	.0	.0	75.0	.0	25.0	100.0	29.17
(18)	.0	5.6	5.6	38.9	16.7	5.6	27.8	.0	11.1	38.9	50.0	100.0	65.74	
(68)	.0	2.9	8.8	19.1	11.8	17.6	38.2	1.5	11.8	19.1	67.6	100.0	74.88	

【 표 4 】 어촌계 발전 위한 어항 개발사업 현재 진행 수준의 적정성

[문 4] 선생님께서는 국가어항 개발사업 현재 진행 수준은 어촌계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무응답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	%	%		
■ 전 체 ■	(90)	3.3	3.3	8.9	38.9	12.2	14.4	17.8	1.1	15.6	38.9	44.4	100.0	61.61
■ 지인인양해영영전전제	(5)	.0	20.0	.0	60.0	20.0	.0	.0	.0	20.0	60.0	20.0	100.0	46.67
	(18)	5.6	5.6	11.1	38.9	16.7	5.6	16.7	.0	22.2	38.9	38.9	100.0	56.48
	(7)	.0	.0	14.3	57.1	14.3	.0	.0	14.3	14.3	57.1	14.3	100.0	50.00
	(3)	.0	.0	.0	33.3	.0	33.3	33.3	.0	.0	33.3	66.7	100.0	77.78
	(2)	.0	.0	50.0	50.0	.0	.0	.0	.0	50.0	50.0	.0	100.0	41.67
	(13)	7.7	.0	7.7	38.5	.0	30.8	15.4	.0	15.4	38.5	46.2	100.0	62.82
	(10)	.0	10.0	.0	20.0	10.0	20.0	40.0	.0	10.0	20.0	70.0	100.0	75.00
	(20)	.0	.0	10.0	45.0	5.0	25.0	15.0	.0	10.0	45.0	45.0	100.0	65.00
	(9)	11.1	.0	11.1	33.3	33.3	.0	11.1	.0	22.2	33.3	44.4	100.0	53.70
	(3)	.0	.0	.0	.0	33.3	.0	66.7	.0	.0	.0	100.0	100.0	88.89
■ 제주지역어부제	(87)	3.4	3.4	9.2	40.2	11.5	14.9	16.1	1.1	16.1	40.2	42.5	100.0	60.66
(3)	.0	.0	.0	.0	33.3	.0	.0	66.7	.0	.0	.0	100.0	100.0	88.89
■ 사업이해정도	(4)	25.0	50.0	.0	.0	.0	25.0	.0	.0	75.0	.0	25.0	100.0	29.17
	(18)	5.6	.0	16.7	50.0	16.7	5.6	5.6	.0	22.2	50.0	27.8	100.0	51.85
	(68)	1.5	1.5	7.4	38.2	11.8	16.2	22.1	1.5	10.3	38.2	50.0	100.0	66.17

【 표 5 】 어항 개발사업의 어촌 개발 및 활성화에 도움 정도

[문 5] 선생님께서는 국가어항 개발사업이 완공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될 경우 선생님이 사시는 어촌 뿐 아니라 우리나라 어촌 개발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	%		
■ 전 체 ■	(90)	1.1	1.1	2.2	11.1	13.3	25.6	45.6	4.4	11.1	84.4	100.0	82.22
■ 지인인양해영영전전제	(5)	.0	.0	.0	.0	.0	80.0	20.0	.0	.0	100.0	100.0	86.66
	(18)	5.6	5.6	.0	16.7	16.7	16.7	38.9	11.1	16.7	72.2	100.0	73.15
	(7)	.0	.0	14.3	.0	28.6	42.9	14.3	14.3	.0	85.7	100.0	73.81
	(3)	.0	.0	.0	.0	.0	.0	100.0	.0	.0	100.0	100.0	100.00
	(2)	.0	.0	.0	.0	.0	50.0	50.0	.0	.0	100.0	100.0	91.67
	(13)	.0	.0	7.7	15.4	15.4	23.1	38.5	7.7	15.4	76.9	100.0	78.20
	(10)	.0	.0	.0	20.0	.0	10.0	70.0	.0	20.0	80.0	100.0	88.33
	(20)	.0	.0	.0	10.0	15.0	30.0	45.0	.0	10.0	90.0	100.0	85.00
	(9)	.0	.0	.0	11.1	22.2	11.1	55.6	.0	11.1	88.9	100.0	85.19
	(3)	.0	.0	.0	.0	.0	33.3	66.7	.0	.0	100.0	100.0	94.44
■ 제주지역어부제	(87)	1.1	1.1	2.3	11.5	13.8	25.3	44.8	4.6	11.5	83.9	100.0	81.80
(3)	.0	.0	.0	.0	.0	33.3	66.7	.0	.0	100.0	100.0	100.0	94.44
■ 사업이해정도	(4)	25.0	25.0	.0	.0	.0	25.0	25.0	50.0	.0	50.0	100.0	50.00
	(18)	.0	.0	.0	27.8	16.7	16.7	38.9	.0	27.8	72.2	100.0	77.78
	(68)	.0	.0	2.9	7.4	13.2	27.9	48.5	2.9	7.4	89.7	100.0	85.29

【 표 6 】 어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의 충분함

【 문 6 】 선생님께서는 국가어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충분히 지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	%			
■ 전 체 ■	(90)	6.7	7.8	30.0	32.2	7.8	4.4	10.0	1.1	44.4	32.2	22.2	100.0	46.82
■ 지역별 ■	(5)	.0	20.0	20.0	60.0	.0	.0	.0	.0	40.0	60.0	.0	100.0	40.00
■ 지역별 ■	(18)	.0	22.2	38.9	27.8	5.6	.0	5.6	.0	61.1	27.8	11.1	100.0	39.81
■ 지역별 ■	(7)	14.3	.0	42.9	28.6	.0	14.3	.0	.0	57.1	28.6	14.3	100.0	40.47
■ 지역별 ■	(3)	.0	.0	66.7	33.3	.0	.0	.0	.0	66.7	33.3	.0	100.0	38.89
■ 지역별 ■	(2)	.0	.0	50.0	.0	50.0	.0	.0	.0	50.0	.0	50.0	100.0	50.00
■ 지역별 ■	(13)	23.1	7.7	15.4	30.8	15.4	7.7	.0	.0	46.2	30.8	23.1	100.0	38.46
■ 지역별 ■	(10)	10.0	.0	.0	60.0	.0	10.0	20.0	.0	10.0	60.0	30.0	100.0	58.33
■ 지역별 ■	(20)	5.0	5.0	40.0	35.0	5.0	.0	10.0	.0	50.0	35.0	15.0	100.0	45.00
■ 지역별 ■	(9)	.0	.0	33.3	11.1	22.2	.0	22.2	11.1	33.3	11.1	44.4	100.0	60.42
■ 지역별 ■	(3)	.0	.0	.0	.0	.0	33.3	66.7	.0	.0	.0	100.0	100.0	94.44
■ 제주지역외주 ■	(87)	6.9	8.0	31.0	33.3	8.0	3.4	8.0	1.1	46.0	33.3	19.5	100.0	45.15
■ 제주지역외주 ■	(3)	.0	.0	.0	.0	.0	33.3	66.7	.0	.0	.0	100.0	100.0	94.44
■ 사업이해정도 ■	(4)	.0	25.0	25.0	25.0	.0	25.0	.0	.0	50.0	25.0	25.0	100.0	45.83
■ 사업이해정도 ■	(18)	11.1	11.1	27.8	38.9	5.6	.0	.0	5.6	50.0	38.9	5.6	100.0	36.27
■ 사업이해정도 ■	(68)	5.9	5.9	30.9	30.9	8.8	4.4	13.2	.0	42.6	30.9	26.5	100.0	49.51

【 표 7 】 어항 개발사업 수행 과정의 어업인 의견 반영 정도

【 문 7 】 선생님께서는 국가어항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90)	2.2	10.0	22.2	24.4	24.4	16.7	12.2	22.2	65.6	100.0	67.78
■ 지역별 ■	(5)	.0	20.0	40.0	.0	40.0	.0	20.0	40.0	40.0	100.0	60.00
■ 지역별 ■	(18)	5.6	11.1	22.2	33.3	27.8	.0	16.7	22.2	61.1	100.0	60.19
■ 지역별 ■	(7)	.0	14.3	42.9	14.3	28.6	.0	14.3	42.9	42.9	100.0	59.52
■ 지역별 ■	(3)	.0	.0	.0	66.7	33.3	.0	.0	.0	100.0	100.0	72.22
■ 지역별 ■	(2)	.0	50.0	.0	50.0	.0	.0	50.0	.0	50.0	100.0	50.00
■ 지역별 ■	(13)	.0	.0	23.1	23.1	38.5	15.4	.0	23.1	76.9	100.0	74.36
■ 지역별 ■	(10)	10.0	.0	20.0	20.0	10.0	40.0	10.0	20.0	70.0	100.0	71.67
■ 지역별 ■	(20)	.0	5.0	20.0	20.0	30.0	25.0	5.0	20.0	75.0	100.0	75.00
■ 지역별 ■	(9)	.0	33.3	22.2	33.3	.0	11.1	33.3	22.2	44.4	100.0	55.56
■ 지역별 ■	(3)	.0	.0	.0	.0	.0	100.0	.0	.0	100.0	100.0	100.00
■ 제주지역외주 ■	(87)	2.3	10.3	23.0	25.3	25.3	13.8	12.6	23.0	64.4	100.0	66.67
■ 제주지역외주 ■	(3)	.0	.0	.0	.0	.0	100.0	.0	.0	100.0	100.0	100.00
■ 사업이해정도 ■	(4)	25.0	.0	.0	25.0	50.0	.0	25.0	.0	75.0	100.0	58.33
■ 사업이해정도 ■	(18)	5.6	5.6	44.4	11.1	27.8	5.6	11.1	44.4	44.4	100.0	60.18
■ 사업이해정도 ■	(68)	.0	11.8	17.6	27.9	22.1	20.6	11.8	17.6	70.6	100.0	70.34

【 표 8 】 어항 개발사업을 통한 어촌 및 어항 활성화 목적 달성 여부

[문 8] 선생님께서는 국가어항 개발사업을 통해 현재 선생님이 속한 어촌 및 어항 활성화를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무응답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			
■ 전 체 ■	(90)	2.2	5.6	23.3	32.2	17.8	17.8	1.1	7.8	23.3	67.8	100.0	68.35
■ 지인어항개발사업전제	(5) (18) (7) (3) (2) (13) (10) (20) (9) (3)	.0 5.6 .0 .0 .0 .0 10.0 .0 .0 .0	.0 11.1 .0 .0 .0 7.7 .0 5.0 11.1 .0	60.0 22.2 14.3 33.3 .0 7.7 20.0 30.0 33.3 .0	20.0 22.2 57.1 66.7 100.0 46.2 10.0 35.0 22.2 .0	20.0 16.7 28.6 .0 .0 7.7 30.0 25.0 11.1 .0	.0 16.7 .0 .0 .0 30.8 30.0 5.0 22.2 100.0	.0 5.6 .0 .0 .0 .0 .0 .0 .0 .0	.0 16.7 .0 .0 .0 7.7 10.0 5.0 11.1 .0	60.0 22.2 14.3 33.3 .0 7.7 20.0 30.0 33.3 .0	40.0 55.6 85.7 66.7 100.0 84.6 70.0 65.0 55.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0.00 63.73 69.05 61.11 66.67 74.36 71.67 65.83 66.67 100.00
■ 제주지역어항개발사업전제	(87) (3)	2.3 .0	5.7 .0	24.1 .0	33.3 .0	18.4 .0	14.9 100.0	1.1 .0	8.0 .0	24.1 .0	66.7 100.0	100.0 100.0	67.25 100.00
■ 사업이해정도 비인 지 인 지	(4) (18) (68)	25.0 5.6 .0	25.0 11.1 2.9	.0 38.9 20.6	.0 22.2 36.8	25.0 11.1 19.1	25.0 5.6 20.6	.0 5.6 .0	50.0 16.7 2.9	.0 38.9 20.6	50.0 38.9 76.5	100.0 100.0 100.0	54.17 55.88 72.30

【 표 9 】 어항 개발사업을 통한 어업활동의 편리성 개선

[문 9] 선생님께서는 국가어항 개발사업을 통해 어업활동이 편리하게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무응답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	%			
■ 전 체 ■	(90)	1.1	1.1	1.1	20.0	27.8	23.3	24.4	1.1	3.3	20.0	75.6	100.0	73.78
■ 지인어항개발사업전제	(5) (18) (7) (3) (2) (13) (10) (20) (9) (3)	.0 5.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1 .0	.0 .0 .0 .0 .0 .0 10.0 .0 .0 .0	20.0 16.7 57.1 .0 50.0 15.4 10.0 20.0 22.2 .0	40.0 44.4 28.6 33.3 .0 38.5 10.0 25.0 11.1 .0	40.0 5.6 14.3 66.7 .0 23.1 20.0 30.0 22.2 33.3	.0 22.2 .0 .0 .0 23.1 50.0 25.0 33.3 66.7	.0 5.6 .0 .0 .0 .0 .0 .0 .0 .0	.0 5.6 .0 .0 .0 15.4 10.0 20.0 11.1 .0	20.0 16.7 57.1 .0 50.0 84.6 80.0 80.0 22.2 .0	80.0 72.2 42.9 100.0 50.0 84.6 80.0 80.0 66.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0.00 68.63 59.52 77.78 66.66 75.64 81.67 76.67 72.22 94.44
■ 제주지역어항개발사업전제	(87) (3)	1.1 .0	1.1 .0	1.1 .0	20.7 .0	28.7 .0	23.0 33.3	23.0 66.7	1.1 .0	3.4 .0	20.7 .0	74.7 100.0	100.0 100.0	73.06 94.44
■ 사업이해정도 비인 지 인 지	(4) (18) (68)	25.0 .0 .0	.0 .0 1.5	.0 .0 1.5	25.0 50.0 11.8	25.0 5.6 33.8	.0 33.3 22.1	25.0 5.6 29.4	.0 5.6 .0	25.0 .0 2.9	25.0 50.0 11.8	50.0 44.4 85.3	100.0 100.0 100.0	54.17 65.69 76.96

【 표 10 】 어항 개발사업을 통한 어업활동의 효율성 향상

[문 10] 선생님께서는 국가어항 개발사업을 통해 어업활동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무응답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	%		
■ 전 체 ■	(90)	1.1	1.1	17.8	28.9	27.8	22.2	1.1	2.2	17.8	78.9	100.0	74.91
■ 지 인 어 항 개발 사업에 참여했는지 여부 ■	(5)	.0	.0	40.0	20.0	40.0	.0	.0	.0	40.0	60.0	100.0	66.67
	(18)	5.6	.0	5.6	44.4	16.7	22.2	5.6	5.6	83.3	100.0	100.0	73.53
	(7)	.0	.0	57.1	14.3	28.6	.0	.0	.0	57.1	42.9	100.0	61.90
	(3)	.0	.0	.0	33.3	66.7	.0	.0	.0	100.0	100.0	100.0	77.78
	(2)	.0	.0	50.0	.0	50.0	.0	.0	.0	50.0	50.0	100.0	66.66
	(13)	.0	.0	7.7	38.5	30.8	23.1	.0	7.7	92.3	100.0	100.0	78.21
	(10)	.0	10.0	20.0	.0	40.0	30.0	.0	10.0	20.0	70.0	100.0	76.66
	(20)	.0	.0	15.0	40.0	20.0	25.0	.0	.0	15.0	85.0	100.0	75.83
	(9)	.0	.0	22.2	22.2	22.2	33.3	.0	.0	22.2	77.8	100.0	77.78
	(3)	.0	.0	.0	.0	33.3	66.7	.0	.0	.0	100.0	100.0	94.44
■ 제주지역 어부인지 여부 ■	(87)	1.1	1.1	18.4	29.9	27.6	20.7	1.1	2.3	18.4	78.2	100.0	74.22
	(3)	.0	.0	.0	.0	33.3	66.7	.0	.0	.0	100.0	100.0	94.44
■ 사업 이해 정도 인지 ■	(4)	25.0	.0	25.0	25.0	.0	25.0	.0	25.0	25.0	50.0	100.0	58.34
	(18)	.0	.0	38.9	22.2	27.8	5.6	5.6	.0	38.9	55.6	100.0	66.67
	(68)	.0	1.5	11.8	30.9	29.4	26.5	.0	1.5	11.8	86.8	100.0	77.94

【 표 11 】 어항 개발사업의 강화 여부

[문 11] 선생님께서는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국가어항개발 사업은 향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	%		
■ 전 체 ■	(90)	1.1	1.1	4.4	8.9	12.2	20.0	52.2	6.7	8.9	84.4	100.0	83.15
■ 지 인 어 항 개발 사업에 참여했는지 여부 ■	(5)	.0	.0	.0	.0	40.0	40.0	20.0	.0	.0	100.0	100.0	80.00
	(18)	5.6	5.6	5.6	16.7	16.7	16.7	33.3	16.7	16.7	66.7	100.0	69.44
	(7)	.0	.0	28.6	.0	14.3	28.6	28.6	28.6	.0	71.4	100.0	71.43
	(3)	.0	.0	.0	.0	.0	.0	100.0	.0	.0	100.0	100.0	100.00
	(2)	.0	.0	.0	.0	.0	.0	100.0	.0	.0	100.0	100.0	100.00
	(13)	.0	.0	.0	7.7	7.7	23.1	61.5	.0	7.7	92.3	100.0	89.74
	(10)	.0	.0	10.0	20.0	.0	20.0	50.0	10.0	20.0	70.0	100.0	80.00
	(20)	.0	.0	.0	5.0	10.0	25.0	60.0	.0	5.0	95.0	100.0	90.00
	(9)	.0	.0	.0	11.1	22.2	.0	66.7	.0	11.1	88.9	100.0	87.04
	(3)	.0	.0	.0	.0	.0	33.3	66.7	.0	.0	100.0	100.0	94.44
■ 제주지역 어부인지 여부 ■	(87)	1.1	1.1	4.6	9.2	12.6	19.5	51.7	6.9	9.2	83.9	100.0	82.76
	(3)	.0	.0	.0	.0	.0	33.3	66.7	.0	.0	100.0	100.0	94.44
■ 사업 이해 정도 인지 ■	(4)	25.0	.0	.0	.0	50.0	.0	25.0	25.0	.0	75.0	100.0	58.34
	(18)	.0	.0	5.6	16.7	27.8	16.7	33.3	5.6	16.7	77.8	100.0	75.93
	(68)	.0	1.5	4.4	7.4	5.9	22.1	58.8	5.9	7.4	86.8	100.0	86.52

개발 자금의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개발시 친환경적인 공법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공사 기간을 단축해서 조기 완공이 필요하다. 당초 계획변경 요구 있을 때 부흥해 주었으면 한다
공사 시기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공사 기간이 너무 길다
공사가 빨리 끝났으면 한다
관광 어항개발사업으로 점목해야 한다. 레저산업과 실질적 어업인을 위한 시설이 점목되어야 한다
관광기능 활성화, 어항 환경 개선을 수요에 그치지 말고 장래 수요를 예측해서 획기적 개발을 해야 한다
관광지 개발 사업으로 다양화된 어항 개발이 필요하다
국가 어항 관리 사무를 국가 사무로 하지 말고 지방 사무를 원한다
국가어항 안의 부가적인 시설을 지원했으면 한다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 지원을 원한다
국가항보다는 정주어항 지방어항이 개발되었으면 한다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기존 개발 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고, 증설이 꼭 필요하다
기존의 시설을 유지 보수, 리모델링 기능 강화
다가능 어항 개발을 함으로써 인도나 차도에 대해 어업인이나 인근 상인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다
법이 이원화 되어서 지역 어민들에게 필요한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적제한이 있어 법이 일원화 되었으면 좋겠다
보상 없이 사업을 추진해 2구역이 사업구간에서 빠지므로 효율적 사업이 되지않는다
사업 기간이 너무 길다
사업비 지원을 많이 해서 완공 조기 달성이 필요하다
사업비가 부족해 기간내 사업 완성이 어렵다.시설유지 관리보수를 제때에 할수 없다
사후 관리가 부족하다, 수리 시설 관리가 즉시 안된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
어민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어선 안을 수용하는 어항이 아닌 관광 등 다목적 어항으로 방향을 바꾸면 좋겠다
어항 개발과 관련하여 실질적 이용자인 어업인이나 어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한다
어항 기공시설에서만 투자가 되고 있는데 관광시설도 투자될 수 있도록 검토했으면 한다
어항 기능보다 다가능 어항 등 거점 어항으로 폭넓게 투자했으면 한다
어항 발전도 중요하지만 부대적으로 복지 시설이나 어업인 후계자의 교육이나 여건이 필요하다
여건이 수시로 변하는데 적절한 유지 보수비 지원을 해주었으면 한다
여론수렴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기 바람
예산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예산 부족하고, 관련 법규가 타법에 저촉되어 시행되지 못하는 게 많다. 공사 기간이 너무 길다
예산 지원을 증액했으면
예산 지원이 다소 필요하다
예산 지원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예산 투입이 좀 더 되어야 한다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예산을 많이 지원했으면 한다
예산을 적기에 반영해 빠른 공사를 원한다
예산을 증액했으면 한다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예산이 부족하고, (조류소통을 위해)공사 공법을 바꿔야 한다
예산이 분산되어 나오고 한 지역에 편중되며, 20년 된 계획 내용이 변화가 거의 없다
예산지원이 미약하다.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유지 관리비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
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일중항이란 이름만 있지 어업인을 위한 이용시설 등의 혜택이 없는 편이다
정책을 의견 수렴해서 하항쪽에서 상항쪽으로 했으면 한다
좀 더 유지 보수가 지원되었으면 한다
주민의 의견 수렴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주변상황이나 어업인의 여건을 충분히 파악해서 반영했으면 한다'
준공 이후에 유지 보수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어서 추가로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경우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게 했으면 한다
지속적 개발 및 유지 보수, 어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으면 한다
지역 실정과 개발 여건을 충분히 알고 있는 지자체로 이관되어야 한다
지자체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
직접시행보다 국가에서 지자체로 예산을 주었으면 한다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충분히 예산을 지원했으면 한다
큰 자금이 들더라도 기존 시설이 이전이 되어 개발사업이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
편의 시설이 다른 시군에 비해 부족하다
현재의 소규모 지방 어항을 국가 어항으로 귀속시켜 재정을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 어민 위주로 사업을 하되 어업의 소득창출을 했으면

4. 지방어항 이용자

【 응답자 특성 표 】

	사례수	%
■ 전 체 ■	103	100.0%
■ 지역 별 ■		
지인양귀예정전제	3	2.9%
인양귀예정전제	6	5.8%
양귀예정전제	15	14.6%
귀예정전제	3	2.9%
예정전제	3	2.9%
정전제	8	7.8%
전제	25	24.3%
제	32	31.1%
주	8	7.8%
■ 제주지역 여부 ■		
제주이	95	92.2%
제	8	7.8%
■ 어항개발이해 정도 ■		
이해	76	75.2%
정도	7	6.9%
정	18	17.8%

【 표 1 】 거주지 국가어항 개발 인지

[문 1]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이 사시는 지역에서 000항이 개발되고 있다(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무응답?	계
		%	%	%	
■ 전 체 ■	(103)	83.5	15.5	1.0	100.0
■ 지역 별 ■					
지인양귀예정전제	(3)	66.7	33.3	.0	100.0
인양귀예정전제	(6)	83.3	16.7	.0	100.0
양귀예정전제	(15)	80.0	20.0	.0	100.0
귀예정전제	(3)	66.7	.0	33.3	100.0
예정전제	(3)	100.0	.0	.0	100.0
정전제	(8)	100.0	.0	.0	100.0
전제	(25)	88.0	12.0	.0	100.0
제	(32)	75.0	25.0	.0	100.0
주	(8)	100.0	.0	.0	100.0
■ 제주지역 여부 ■					
제주이	(95)	82.1	16.8	1.1	100.0
제	(8)	100.0	.0	.0	100.0
■ 어항개발이해 정도 ■					
이해	(76)	94.7	5.3	.0	100.0
정도	(7)	85.7	14.3	.0	100.0
정	(18)	38.9	61.1	.0	100.0

【 표 2 】 어항 개발사업 내용 이해 정도

[문 2] 선생님께서는 선생님 사시는 지역에서 수행중인 000항 개발사업 내용을 대체로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례수	내용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	자세히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저 그렇다	어떤 내용인지 대체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모름/무응답	*긍정*	*보통*	*부정*	계	*평균*
		%	%	%	%	%	%	%	%	%		
■ 전 체 ■	(103)	49.5	24.3	6.8	7.8	9.7	1.9	73.8	6.8	17.5	100.0	74.50
■ 지역별 ■												
■ 전라북도 ■	(3)	.0	66.7	.0	33.3	.0	.0	66.7	.0	33.3	100.0	58.33
■ 전북 ■	(6)	66.7	16.7	.0	.0	16.7	.0	83.3	.0	16.7	100.0	79.17
■ 충청남도 ■	(15)	60.0	26.7	6.7	6.7	.0	.0	86.7	6.7	6.7	100.0	85.00
■ 충청북도 ■	(3)	66.7	.0	.0	.0	.0	33.3	66.7	.0	.0	100.0	100.00
■ 강원도 ■	(3)	33.3	66.7	.0	.0	.0	.0	100.0	.0	.0	100.0	83.33
■ 충청북도 ■	(8)	62.5	12.5	.0	12.5	12.5	.0	75.0	.0	25.0	100.0	75.00
■ 충청남도 ■	(25)	40.0	24.0	12.0	8.0	16.0	.0	64.0	12.0	24.0	100.0	66.00
■ 충청북도 ■	(32)	46.9	25.0	6.3	9.4	12.5	.0	71.9	6.3	21.9	100.0	71.09
■ 충청남도 ■	(8)	62.5	12.5	12.5	.0	.0	12.5	75.0	12.5	.0	100.0	89.29
■ 제주지역 ■	(95)	48.4	25.3	6.3	8.4	10.5	1.1	73.7	6.3	18.9	100.0	73.40
■ 제주 ■	(8)	62.5	12.5	12.5	.0	.0	12.5	75.0	12.5	.0	100.0	89.29
■ 어항개발이해 정도 ■												
■ 매우 잘 이해함 ■	(76)	67.1	32.9	.0	.0	.0	.0	100.0	.0	.0	100.0	91.78
■ 잘 이해함 ■	(7)	.0	.0	100.0	.0	.0	.0	.0	100.0	.0	100.0	50.00
■ 보통 ■	(18)	.0	.0	.0	44.4	55.6	.0	.0	.0	100.0	100.0	11.11

【 표 3 】 어항 개발사업 내용의 어업인 이해하기 쉬운 정도

[문 3] 선생님께서는 선생님 사시는 지역에서 수행중인 000항 개발사업의 내용이 어업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이해하기 쉽고 명확했다	대체로 쉽고 명확한 편이었다	그저 그렇다	그다지 쉽거나 명확하지 않았다	전혀 쉽거나 명확하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긍정*	*보통*	*부정*	계	*평균*
		%	%	%	%	%	%	%	%	%		
■ 전 체 ■	(103)	37.9	22.3	11.7	12.6	11.7	3.9	60.2	11.7	24.3	100.0	66.16
■ 지역별 ■												
■ 전라북도 ■	(3)	33.3	66.7	.0	.0	.0	.0	100.0	.0	.0	100.0	83.33
■ 전북 ■	(6)	50.0	16.7	.0	16.7	16.7	.0	66.7	.0	33.3	100.0	66.67
■ 충청남도 ■	(15)	40.0	6.7	13.3	13.3	26.7	.0	46.7	13.3	40.0	100.0	55.00
■ 충청북도 ■	(3)	.0	.0	33.3	33.3	33.3	.0	.0	33.3	66.7	100.0	25.00
■ 강원도 ■	(3)	.0	100.0	.0	.0	.0	.0	100.0	.0	.0	100.0	75.00
■ 충청북도 ■	(8)	37.5	25.0	12.5	12.5	.0	12.5	62.5	12.5	12.5	100.0	75.00
■ 충청남도 ■	(25)	48.0	24.0	8.0	12.0	4.0	4.0	72.0	8.0	16.0	100.0	76.04
■ 충청북도 ■	(32)	31.3	21.9	15.6	12.5	12.5	6.3	53.1	15.6	25.0	100.0	62.50
■ 충청남도 ■	(8)	50.0	12.5	12.5	12.5	12.5	.0	62.5	12.5	25.0	100.0	68.75
■ 제주지역 ■	(95)	36.8	23.2	11.6	12.6	11.6	4.2	60.0	11.6	24.2	100.0	65.93
■ 제주 ■	(8)	50.0	12.5	12.5	12.5	12.5	.0	62.5	12.5	25.0	100.0	68.75
■ 어항개발이해 정도 ■												
■ 매우 잘 이해함 ■	(76)	47.4	19.7	9.2	13.2	9.2	1.3	67.1	9.2	22.4	100.0	71.00
■ 잘 이해함 ■	(7)	14.3	42.9	14.3	.0	28.6	.0	57.1	14.3	28.6	100.0	53.57
■ 보통 ■	(18)	5.6	27.8	16.7	16.7	16.7	16.7	33.3	16.7	33.3	100.0	46.67

【 표 4 】 어항 개발사업의 어촌 활성화 방향 적합도

[문 4]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이 사시는 어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선생님 어촌의 활성화 방향에 꼭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선생님 사시는 어촌에는 그다지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우리 어촌의 활성화 방향에 매우 적합하다	우리 어촌의 활성화 방향에 어느정도 적합하다	그저 그렇다	우리 어촌의 활성화 방향과는 다소 적합하지 않다	우리 어촌의 활성화 방향과 거리가 매우 멀다	모름/무응답	*긍정*	*보통*	*부정*	계	*평균*
		%	%	%	%	%	%	%	%	%		
■ 전 체 ■	(103)	50.5	21.4	8.7	3.9	10.7	4.9	71.8	8.7	14.6	100.0	75.51
■ 지인강해부평정전제	(3)	66.7	.0	.0	33.3	.0	.0	66.7	.0	33.3	100.0	75.00
	(6)	50.0	16.7	16.7	.0	16.7	.0	66.7	16.7	16.7	100.0	70.83
	(15)	40.0	26.7	13.3	.0	20.0	.0	66.7	13.3	20.0	100.0	66.67
	(3)	66.7	.0	.0	.0	33.3	.0	66.7	.0	33.3	100.0	66.67
	(3)	.0	100.0	.0	.0	.0	.0	100.0	.0	.0	100.0	75.00
	(8)	37.5	37.5	12.5	12.5	.0	.0	75.0	12.5	12.5	100.0	75.00
	(25)	60.0	16.0	4.0	.0	8.0	12.0	76.0	4.0	8.0	100.0	84.09
	(32)	46.9	21.9	6.3	6.3	12.5	6.3	68.8	6.3	18.8	100.0	72.50
	(8)	75.0	.0	25.0	.0	.0	.0	75.0	25.0	.0	100.0	87.50
■ 제주지역어부제	(95)	48.4	23.2	7.4	4.2	11.6	5.3	71.6	7.4	15.8	100.0	74.44
	(8)	75.0	.0	25.0	.0	.0	.0	75.0	25.0	.0	100.0	87.50
■ 어항개발이해	(76)	56.6	19.7	11.8	1.3	10.5	.0	76.3	11.8	11.8	100.0	77.63
	(7)	71.4	14.3	.0	14.3	.0	.0	85.7	.0	14.3	100.0	85.71
	(18)	16.7	33.3	.0	11.1	11.1	27.8	50.0	.0	22.2	100.0	61.54

【 표 5 】 어촌계 발전 위한 어항 개발사업 현재 진행 수준의 적정성

[문 5] 선생님께서는 선생님께서 사시는 어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000항 개발사업의 현재 진행 수준은 어촌계의 발전을 위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매우 적절한 수준이다	대체로 적절한 수준이다	보통 수준이다	대체로 부족한 수준이다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모름/무응답	*긍정*	*보통*	*부정*	계	*평균*
		%	%	%	%	%	%	%	%	%		
■ 전 체 ■	(103)	32.0	20.4	11.7	11.7	21.4	2.9	52.4	11.7	33.0	100.0	57.75
■ 지인강해부평정전제	(3)	.0	33.3	.0	66.7	.0	.0	33.3	.0	66.7	100.0	41.67
	(6)	50.0	.0	.0	33.3	16.7	.0	50.0	.0	50.0	100.0	58.33
	(15)	26.7	6.7	20.0	13.3	33.3	.0	33.3	20.0	46.7	100.0	45.00
	(3)	66.7	.0	.0	.0	33.3	.0	66.7	.0	33.3	100.0	66.67
	(3)	33.3	.0	66.7	.0	.0	.0	33.3	66.7	.0	100.0	66.67
	(8)	37.5	37.5	.0	12.5	12.5	.0	75.0	.0	25.0	100.0	68.75
	(25)	40.0	28.0	12.0	4.0	8.0	8.0	68.0	12.0	12.0	100.0	73.91
	(32)	18.8	21.9	9.4	12.5	37.5	.0	40.6	9.4	50.0	100.0	42.97
	(8)	50.0	25.0	12.5	.0	.0	12.5	75.0	12.5	.0	100.0	85.71
■ 제주지역어부제	(95)	30.5	20.0	11.6	12.6	23.2	2.1	50.5	11.6	35.8	100.0	55.65
	(8)	50.0	25.0	12.5	.0	.0	12.5	75.0	12.5	.0	100.0	85.71
■ 어항개발이해	(76)	32.9	21.1	13.2	11.8	19.7	1.3	53.9	13.2	31.6	100.0	59.00
	(7)	57.1	28.6	.0	.0	14.3	.0	85.7	.0	14.3	100.0	78.57
	(18)	16.7	16.7	11.1	16.7	27.8	11.1	33.3	11.1	44.4	100.0	43.75

【 표 6 】 어항 개발사업의 어촌 개발 및 활성화에 도움 정도

[문 6] 선생님께서는 000항 개발사업이 완공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될 경우 선생님이 사시는 어촌 뿐 아니라 우리나라 어촌 개발 및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많은 도움이 된다	조금은 도움이 된다	그저 그렇다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름/무응답	*긍정*	*보통*	*부정*	계	*평균*
		%	%	%	%	%	%	%	%	%		
■ 전 체 ■	(103)	62.1	23.3	6.8	2.9	2.9	1.9	85.4	6.8	5.8	100.0	85.40
■ 지역별 ■												
■ 지인인양평면전제	(3)	33.3	33.3	.0	33.3	.0	.0	66.7	.0	33.3	100.0	66.67
■ 양평면전제	(6)	50.0	33.3	.0	.0	16.7	.0	83.3	.0	16.7	100.0	75.00
■ 양평면전제	(15)	73.3	6.7	13.3	.0	6.7	.0	80.0	13.3	6.7	100.0	85.00
■ 양평면전제	(3)	66.7	.0	.0	.0	33.3	.0	66.7	.0	33.3	100.0	66.67
■ 양평면전제	(3)	66.7	33.3	.0	.0	.0	.0	100.0	.0	.0	100.0	91.67
■ 양평면전제	(8)	50.0	37.5	12.5	.0	.0	.0	87.5	12.5	.0	100.0	84.38
■ 양평면전제	(25)	48.0	40.0	4.0	4.0	.0	4.0	88.0	4.0	4.0	100.0	84.38
■ 양평면전제	(32)	71.9	15.6	6.3	3.1	.0	3.1	87.5	6.3	3.1	100.0	90.32
■ 양평면전제	(8)	75.0	12.5	12.5	.0	.0	.0	87.5	12.5	.0	100.0	90.63
■ 제주지역여부												
■ 제주지역	(95)	61.1	24.2	6.3	3.2	3.2	2.1	85.3	6.3	6.3	100.0	84.95
■ 제주지역	(8)	75.0	12.5	12.5	.0	.0	.0	87.5	12.5	.0	100.0	90.63
■ 어항개발이해												
■ 어항개발이해	(76)	68.4	22.4	6.6	1.3	1.3	.0	90.8	6.6	2.6	100.0	88.82
■ 어항개발이해	(7)	57.1	42.9	.0	.0	.0	.0	100.0	.0	.0	100.0	89.29
■ 어항개발이해	(18)	38.9	22.2	11.1	11.1	5.6	11.1	61.1	11.1	16.7	100.0	71.88

【 표 7 】 어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의 충분함

[문 7] 선생님께서 사시는 어촌의 경우 000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충분히 지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매우 충분하였다	다소 충분하였다	그저 그렇다	다소 부족하였다	매우 부족하였다	모름/무응답	*긍정*	*보통*	*부정*	계	*평균*
		%	%	%	%	%	%	%	%	%		
■ 전 체 ■	(103)	8.7	9.7	9.7	18.4	37.9	15.5	18.4	9.7	56.3	100.0	30.17
■ 지역별 ■												
■ 지인인양평면전제	(3)	.0	.0	33.3	.0	.0	66.7	.0	33.3	.0	100.0	50.00
■ 양평면전제	(6)	.0	16.7	16.7	16.7	33.3	16.7	16.7	16.7	50.0	100.0	30.00
■ 양평면전제	(15)	20.0	13.3	.0	.0	53.3	13.3	33.3	.0	53.3	100.0	34.62
■ 양평면전제	(3)	.0	.0	.0	.0	33.3	66.7	.0	.0	33.3	100.0	.00
■ 양평면전제	(3)	.0	33.3	33.3	33.3	.0	.0	33.3	33.3	33.3	100.0	50.00
■ 양평면전제	(8)	12.5	12.5	12.5	12.5	37.5	12.5	25.0	12.5	50.0	100.0	35.71
■ 양평면전제	(25)	12.0	16.0	8.0	28.0	24.0	12.0	28.0	8.0	52.0	100.0	39.77
■ 양평면전제	(32)	3.1	3.1	9.4	21.9	50.0	12.5	6.3	9.4	71.9	100.0	17.86
■ 양평면전제	(8)	12.5	.0	12.5	25.0	37.5	12.5	12.5	12.5	62.5	100.0	28.57
■ 제주지역여부												
■ 제주지역	(95)	8.4	10.5	9.5	17.9	37.9	15.8	18.9	9.5	55.8	100.0	30.31
■ 제주지역	(8)	12.5	.0	12.5	25.0	37.5	12.5	12.5	12.5	62.5	100.0	28.57
■ 어항개발이해												
■ 어항개발이해	(76)	7.9	10.5	9.2	25.0	38.2	9.2	18.4	9.2	63.2	100.0	29.35
■ 어항개발이해	(7)	14.3	14.3	14.3	.0	42.9	14.3	28.6	14.3	42.9	100.0	37.50
■ 어항개발이해	(18)	11.1	5.6	11.1	.0	38.9	33.3	16.7	11.1	38.9	100.0	31.25

【 표 8 】 어항 개발사업 수행 과정의 어업인 의견 반영 정도

[문 8] 선생님께서 000항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업인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매우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편이다	대체로 반영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다지 반영하지 못했다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모름/무응답	*긍정*	*보통*	*부정*	계	*평균*
		%	%	%	%	%	%	%	%	%		
■ 전 체 ■	(103)	29.1	21.4	18.4	9.7	13.6	7.8	50.5	18.4	23.3	100.0	61.58
■ 지역별 ■												
■ 지인강해부포항개발사업 ■	(3)	.0	.0	33.3	.0	.0	66.7	.0	33.3	.0	100.0	50.00
■ 지인강해부포항개발사업 ■	(6)	33.3	33.3	.0	.0	16.7	16.7	66.7	.0	16.7	100.0	70.00
■ 지인강해부포항개발사업 ■	(15)	20.0	26.7	13.3	26.7	13.3	.0	46.7	13.3	40.0	100.0	53.33
■ 지인강해부포항개발사업 ■	(3)	33.3	.0	.0	.0	66.7	.0	33.3	.0	66.7	100.0	33.33
■ 지인강해부포항개발사업 ■	(3)	.0	100.0	.0	.0	.0	.0	100.0	.0	.0	100.0	75.00
■ 지인강해부포항개발사업 ■	(8)	37.5	25.0	25.0	.0	12.5	.0	62.5	25.0	12.5	100.0	68.75
■ 지인강해부포항개발사업 ■	(25)	44.0	20.0	12.0	4.0	4.0	16.0	64.0	12.0	8.0	100.0	78.57
■ 지인강해부포항개발사업 ■	(32)	21.9	18.8	25.0	9.4	21.9	3.1	40.6	25.0	31.3	100.0	52.42
■ 지인강해부포항개발사업 ■	(8)	37.5	.0	37.5	25.0	.0	.0	37.5	37.5	25.0	100.0	62.50
■ 제주지역어부제 주 이 주 ■	(95)	28.4	23.2	16.8	8.4	14.7	8.4	51.6	16.8	23.2	100.0	61.49
■ 제주지역어부제 주 이 주 ■	(8)	37.5	.0	37.5	25.0	.0	.0	37.5	37.5	25.0	100.0	62.50
■ 어항개발이해 정도에 대해 어부 ■	(76)	35.5	21.1	19.7	7.9	10.5	5.3	56.6	19.7	18.4	100.0	66.67
■ 어항개발이해 정도에 대해 어부 ■	(7)	.0	42.9	14.3	42.9	.0	.0	42.9	14.3	42.9	100.0	50.00
■ 어항개발이해 정도에 대해 어부 ■	(18)	11.1	16.7	16.7	5.6	27.8	22.2	27.8	16.7	33.3	100.0	42.86

【 표 9 】 어항 개발사업을 통한 어촌 및 어항 활성화 목적 달성 여부

[문 9] 000항 개발사업을 통해 현재 선생님이 속한 어촌 및 어항 활성화를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다	대체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저 그렇다	그다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기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였다	모름/무응답	*긍정*	*보통*	*부정*	계	*평균*
		%	%	%	%	%	%	%	%	%		
■ 전 체 ■	(103)	16.5	30.1	20.4	12.6	10.7	9.7	46.6	20.4	23.3	100.0	58.06
■ 지역별 ■												
■ 지인강해부포항개발사업 ■	(3)	.0	.0	33.3	33.3	.0	33.3	.0	33.3	33.3	100.0	37.50
■ 지인강해부포항개발사업 ■	(6)	33.3	50.0	.0	.0	16.7	.0	83.3	.0	16.7	100.0	70.83
■ 지인강해부포항개발사업 ■	(15)	20.0	40.0	6.7	6.7	26.7	.0	60.0	6.7	33.3	100.0	55.00
■ 지인강해부포항개발사업 ■	(3)	66.7	.0	.0	.0	.0	33.3	66.7	.0	.0	100.0	100.00
■ 지인강해부포항개발사업 ■	(3)	.0	33.3	33.3	.0	.0	33.3	33.3	33.3	.0	100.0	62.50
■ 지인강해부포항개발사업 ■	(8)	.0	37.5	37.5	12.5	12.5	.0	37.5	37.5	25.0	100.0	50.00
■ 지인강해부포항개발사업 ■	(25)	24.0	20.0	32.0	4.0	4.0	16.0	44.0	32.0	8.0	100.0	66.67
■ 지인강해부포항개발사업 ■	(32)	12.5	28.1	21.9	18.8	12.5	6.3	40.6	21.9	31.3	100.0	52.50
■ 지인강해부포항개발사업 ■	(8)	.0	50.0	.0	37.5	.0	12.5	50.0	.0	37.5	100.0	53.57
■ 제주지역어부제 주 이 주 ■	(95)	17.9	28.4	22.1	10.5	11.6	9.5	46.3	22.1	22.1	100.0	58.43
■ 제주지역어부제 주 이 주 ■	(8)	.0	50.0	.0	37.5	.0	12.5	50.0	.0	37.5	100.0	53.57
■ 어항개발이해 정도에 대해 어부 ■	(76)	18.4	30.3	19.7	13.2	10.5	7.9	48.7	19.7	23.7	100.0	58.93
■ 어항개발이해 정도에 대해 어부 ■	(7)	28.6	42.9	28.6	.0	.0	.0	71.4	28.6	.0	100.0	75.00
■ 어항개발이해 정도에 대해 어부 ■	(18)	5.6	27.8	22.2	16.7	16.7	11.1	33.3	22.2	33.3	100.0	46.88

【 표 10 】 어항 개발사업을 통한 어업활동 편리성 개선

[문 10] 선생님께서는 00항 개발사업을 통해 어업활동이 편리하게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매우 편리하게 개선되었다.	대체로 편리하게 개선되었다.	그저 그렇다	그다지 편리하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편리하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모름/무응답	*긍정*	*보통*	*부정*	계	*평균*
		%	%	%	%	%						
■ 전 체 ■	(103)	31.1	32.0	16.5	7.8	7.8	4.9	63.1	16.5	15.5	100.0	68.62
■ 지역별												
■ 지인어항개발사업	(3)	.0	33.3	33.3	33.3	.0	.0	33.3	33.3	33.3	100.0	50.00
■ 어항개발사업	(6)	33.3	33.3	33.3	.0	.0	.0	66.7	33.3	.0	100.0	75.00
■ 어항개발사업	(15)	40.0	26.7	6.7	.0	20.0	6.7	66.7	6.7	20.0	100.0	67.86
■ 어항개발사업	(3)	66.7	.0	.0	.0	.0	33.3	66.7	.0	.0	100.0	100.00
■ 어항개발사업	(3)	.0	100.0	.0	.0	.0	.0	100.0	.0	.0	100.0	75.00
■ 어항개발사업	(8)	50.0	25.0	12.5	12.5	.0	.0	75.0	12.5	12.5	100.0	78.13
■ 어항개발사업	(25)	28.0	40.0	8.0	8.0	4.0	12.0	68.0	8.0	12.0	100.0	72.73
■ 어항개발사업	(32)	21.9	31.3	25.0	12.5	9.4	.0	53.1	25.0	21.9	100.0	60.94
■ 어항개발사업	(8)	50.0	12.5	25.0	.0	12.5	.0	62.5	25.0	12.5	100.0	71.88
■ 제주지역어항개발사업	(95)	29.5	33.7	15.8	8.4	7.4	5.3	63.2	15.8	15.8	100.0	68.33
■ 제주지역어항개발사업	(8)	50.0	12.5	25.0	.0	12.5	.0	62.5	25.0	12.5	100.0	71.88
■ 어항개발이해조사	(76)	31.6	36.8	13.2	7.9	7.9	2.6	68.4	13.2	15.8	100.0	69.59
■ 어항개발이해조사	(7)	57.1	14.3	28.6	.0	.0	.0	71.4	28.6	.0	100.0	82.14
■ 어항개발이해조사	(18)	16.7	22.2	27.8	11.1	11.1	11.1	38.9	27.8	22.2	100.0	56.25

【 표 11 】 어항 개발사업을 통한 어업활동 효율성 향상

[문 11] 선생님께서는 00항 개발사업을 통해 어업활동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매우 향상되었다.	대체로 향상되었다.	그저 그렇다	그다지 향상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상되지 못하였다	모름/무응답	*긍정*	*보통*	*부정*	계	*평균*
		%	%	%	%	%						
■ 전 체 ■	(103)	30.1	35.9	17.5	6.8	5.8	3.9	66.0	17.5	12.6	100.0	70.20
■ 지역별												
■ 지인어항개발사업	(3)	.0	.0	33.3	33.3	33.3	.0	.0	33.3	66.7	100.0	25.00
■ 어항개발사업	(6)	50.0	33.3	16.7	.0	.0	.0	83.3	16.7	.0	100.0	83.33
■ 어항개발사업	(15)	26.7	46.7	.0	6.7	13.3	6.7	73.3	.0	20.0	100.0	67.86
■ 어항개발사업	(3)	66.7	33.3	.0	.0	.0	.0	100.0	.0	.0	100.0	91.67
■ 어항개발사업	(3)	33.3	33.3	33.3	.0	.0	.0	66.7	33.3	.0	100.0	75.00
■ 어항개발사업	(8)	12.5	62.5	25.0	.0	.0	.0	75.0	25.0	.0	100.0	71.88
■ 어항개발사업	(25)	32.0	36.0	20.0	4.0	.0	8.0	68.0	20.0	4.0	100.0	76.09
■ 어항개발사업	(32)	25.0	31.3	21.9	12.5	6.3	3.1	56.3	21.9	18.8	100.0	64.52
■ 어항개발사업	(8)	50.0	25.0	12.5	.0	12.5	.0	75.0	12.5	12.5	100.0	75.00
■ 제주지역어항개발사업	(95)	28.4	36.8	17.9	7.4	5.3	4.2	65.3	17.9	12.6	100.0	69.78
■ 제주지역어항개발사업	(8)	50.0	25.0	12.5	.0	12.5	.0	75.0	12.5	12.5	100.0	75.00
■ 어항개발이해조사	(76)	31.6	39.5	15.8	6.6	5.3	1.3	71.1	15.8	11.8	100.0	71.67
■ 어항개발이해조사	(7)	57.1	28.6	.0	14.3	.0	.0	85.7	.0	14.3	100.0	82.14
■ 어항개발이해조사	(18)	11.1	22.2	33.3	5.6	11.1	16.7	33.3	33.3	16.7	100.0	55.00

【 표 12 】 어항 개발사업의 강화 여부

[문 12] 선생님께서는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방어항개발 사업은 향후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크게 강화	조금 강화	현재 수준 유지	조금 완화	크게 완화	모름/무응답	*긍정*	*보통*	*부정*	계	*평균*
		%	%	%	%	%	%	%	%	%		
■ 전 체 ■	(103)	66.0	14.6	8.7	4.9	1.9	3.9	80.6	8.7	6.8	100.0	85.86
■ 지역별 ■	(3)	66.7	.0	33.3	.0	.0	.0	66.7	33.3	.0	100.0	83.33
■ 제주지역 ■	(6)	66.7	16.7	.0	.0	.0	16.7	83.3	.0	.0	100.0	95.00
■ 제주지역외 ■	(15)	80.0	6.7	13.3	.0	.0	.0	86.7	13.3	.0	100.0	91.67
■ 어항개발이해정답 ■	(3)	66.7	.0	.0	.0	33.3	.0	66.7	.0	33.3	100.0	66.67
■ 어항개발이해정답 ■	(3)	66.7	.0	.0	33.3	.0	.0	66.7	.0	33.3	100.0	75.00
■ 어항개발이해정답 ■	(8)	50.0	12.5	12.5	12.5	12.5	.0	62.5	12.5	25.0	100.0	68.75
■ 어항개발이해정답 ■	(25)	64.0	20.0	4.0	8.0	.0	4.0	84.0	4.0	8.0	100.0	86.46
■ 어항개발이해정답 ■	(32)	65.6	15.6	12.5	3.1	.0	3.1	81.3	12.5	3.1	100.0	87.10
■ 어항개발이해정답 ■	(8)	62.5	25.0	.0	.0	.0	12.5	87.5	.0	.0	100.0	92.86
■ 제주지역외 ■	(95)	66.3	13.7	9.5	5.3	2.1	3.2	80.0	9.5	7.4	100.0	85.33
■ 제주지역 ■	(8)	62.5	25.0	.0	.0	.0	12.5	87.5	.0	.0	100.0	92.86
■ 어항개발이해정답 ■	(76)	68.4	17.1	9.2	2.6	1.3	1.3	85.5	9.2	3.9	100.0	87.67
■ 어항개발이해정답 ■	(7)	71.4	28.6	.0	.0	.0	.0	100.0	.0	.0	100.0	92.86
■ 어항개발이해정답 ■	(18)	55.6	.0	11.1	16.7	.0	16.7	55.6	11.1	16.7	100.0	78.33

【 표 13 】 어항 건설관련 예산지원 만족도

[문 13] 선생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방어항 건설관련 예산지원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수	불만족	2)	3)	4)	5)	6)	7)	8)	만족	*불만족*	*만족*	무응답	계	*평균*
		%	%	%	%	%	%	%	%	%	%	%	%		
■ 전 체 ■	(103)	12.6	3.9	8.7	4.9	25.2	18.4	7.8	8.7	8.7	55.3	43.7	1.0	100.0	46.60
■ 지역별 ■	(3)	.0	.0	.0	.0	66.7	.0	.0	.0	.0	66.7	.0	33.3	100.0	44.40
■ 제주지역 ■	(6)	33.3	.0	.0	.0	.0	33.3	.0	16.7	16.7	33.3	66.7	.0	100.0	48.13
■ 제주지역외 ■	(15)	6.7	.0	13.3	.0	40.0	20.0	6.7	6.7	6.7	60.0	40.0	.0	100.0	48.12
■ 어항개발이해정답 ■	(3)	33.3	33.3	33.3	.0	.0	.0	.0	.0	.0	100.0	.0	.0	100.0	11.10
■ 어항개발이해정답 ■	(3)	.0	.0	.0	.0	.0	66.7	33.3	.0	.0	.0	100.0	.0	100.0	59.23
■ 어항개발이해정답 ■	(8)	.0	12.5	.0	.0	25.0	25.0	12.5	.0	25.0	37.5	62.5	.0	100.0	59.70
■ 어항개발이해정답 ■	(25)	8.0	4.0	4.0	.0	24.0	24.0	12.0	16.0	8.0	40.0	60.0	.0	100.0	53.76
■ 어항개발이해정답 ■	(32)	15.6	3.1	15.6	15.6	25.0	6.3	6.3	3.1	9.4	75.0	25.0	.0	100.0	39.56
■ 어항개발이해정답 ■	(8)	25.0	.0	.0	.0	25.0	25.0	.0	25.0	.0	50.0	50.0	.0	100.0	44.43
■ 제주지역외 ■	(95)	11.6	4.2	9.5	5.3	25.3	17.9	8.4	7.4	9.5	55.8	43.2	1.1	100.0	46.79
■ 제주지역 ■	(8)	25.0	.0	.0	.0	25.0	25.0	.0	25.0	.0	50.0	50.0	.0	100.0	44.43
■ 어항개발이해정답 ■	(76)	13.2	2.6	10.5	3.9	21.1	21.1	7.9	7.9	10.5	51.3	47.4	1.3	100.0	47.53
■ 어항개발이해정답 ■	(7)	.0	14.3	.0	.0	28.6	.0	14.3	42.9	.0	42.9	57.1	.0	100.0	57.14
■ 어항개발이해정답 ■	(18)	16.7	.0	5.6	11.1	38.9	16.7	5.6	.0	5.6	72.2	27.8	.0	100.0	40.71

[계 속]

【 표 14 】 여항시설 만족도

【 문 14 】 귀하께서 이용하시는 지방어항의 방파제, 선착장, 어구보전시설, 보급시설, 수산물 유통/판매/처리/가공 시설 등 여항시설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수	불만족	2)	3)	4)	5)	6)	7)	8)	9)	만족	*불만족*	*만족*	계	*평균*
		%	%	%	%	%	%	%	%	%	%	%			
■ 전 체 ■	(103)	16.5	1.9	4.9	6.8	23.3	15.5	12.6	8.7	1.0	8.7	53.4	46.6	100.0	47.34
■ 지역별 ■															
■ 지인인양해부북포항정전제	(3)	.0	.0	33.3	.0	66.7	.0	.0	.0	.0	.0	100.0	.0	100.0	37.00
■ 인양해부북포항정전제	(6)	33.3	.0	.0	.0	.0	33.3	16.7	.0	.0	16.7	33.3	66.7	100.0	46.28
■ 양해부북포항정전제	(15)	20.0	.0	.0	6.7	33.3	20.0	6.7	6.7	.0	6.7	60.0	40.0	100.0	44.42
■ 해부북포항정전제	(3)	66.7	.0	.0	33.3	.0	.0	.0	.0	.0	.0	100.0	.0	100.0	11.10
■ 부북포항정전제	(3)	.0	.0	.0	33.3	.0	33.3	33.3	.0	.0	.0	33.3	66.7	100.0	51.83
■ 북포항정전제	(8)	12.5	.0	.0	.0	12.5	25.0	25.0	12.5	.0	12.5	25.0	75.0	100.0	58.33
■ 포항정전제	(25)	8.0	.0	4.0	8.0	16.0	16.0	20.0	20.0	4.0	4.0	36.0	64.0	100.0	55.99
■ 항정전제	(32)	15.6	6.3	6.3	6.3	34.4	6.3	6.3	3.1	.0	15.6	68.8	31.3	100.0	45.12
■ 정전제	(8)	25.0	.0	12.5	.0	12.5	25.0	12.5	12.5	.0	.0	50.0	50.0	100.0	40.26
■ 제주지역어부제주이외주	(95)	15.8	2.1	4.2	7.4	24.2	14.7	12.6	8.4	1.1	9.5	53.7	46.3	100.0	47.94
■ 어항개발이해부	(8)	25.0	.0	12.5	.0	12.5	25.0	12.5	12.5	.0	.0	50.0	50.0	100.0	40.26
■ 어항개발이해부	(76)	17.1	2.6	3.9	5.3	23.7	17.1	13.2	6.6	.0	10.5	52.6	47.4	100.0	47.35
■ 어항개발이해부	(7)	14.3	.0	.0	14.3	14.3	14.3	.0	42.9	.0	.0	42.9	57.1	100.0	52.37
■ 어항개발이해부	(18)	16.7	.0	11.1	5.6	27.8	11.1	11.1	5.6	5.6	5.6	61.1	38.9	100.0	45.04

【 표 15 】 여항건설 공사기간 만족도

【 문 15 】 귀하께서 이용하시는 지방어항의 여항건설 공사기간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수	불만족	2)	3)	4)	5)	6)	7)	8)	9)	만족	*불만족*	*만족*	계	*평균*
		%	%	%	%	%	%	%	%	%	%	%			
■ 전 체 ■	(103)	8.7	2.9	7.8	4.9	38.8	4.9	14.6	8.7	2.9	5.8	63.1	36.9	100.0	48.53
■ 지역별 ■															
■ 지인인양해부북포항정전제	(3)	.0	.0	.0	33.3	66.7	.0	.0	.0	.0	.0	100.0	.0	100.0	40.70
■ 인양해부북포항정전제	(6)	16.7	.0	.0	.0	16.7	.0	33.3	.0	16.7	16.7	33.3	66.7	100.0	61.12
■ 양해부북포항정전제	(15)	6.7	6.7	13.3	.0	53.3	.0	6.7	.0	.0	13.3	80.0	20.0	100.0	45.16
■ 해부북포항정전제	(3)	33.3	.0	33.3	.0	33.3	.0	.0	.0	.0	.0	100.0	.0	100.0	22.20
■ 부북포항정전제	(3)	.0	.0	.0	.0	100.0	.0	.0	.0	.0	.0	100.0	.0	100.0	44.40
■ 북포항정전제	(8)	.0	.0	12.5	.0	12.5	12.5	25.0	25.0	12.5	.0	25.0	75.0	100.0	62.50
■ 포항정전제	(25)	8.0	.0	8.0	4.0	40.0	4.0	20.0	8.0	4.0	4.0	60.0	40.0	100.0	50.21
■ 항정전제	(32)	6.3	6.3	6.3	9.4	34.4	6.3	9.4	15.6	.0	6.3	62.5	37.5	100.0	48.59
■ 정전제	(8)	25.0	.0	.0	.0	37.5	12.5	25.0	.0	.0	.0	62.5	37.5	100.0	40.26
■ 제주지역어부제주이외주	(95)	7.4	3.2	8.4	5.3	38.9	4.2	13.7	9.5	3.2	6.3	63.2	36.8	100.0	49.22
■ 어항개발이해부	(8)	25.0	.0	.0	.0	37.5	12.5	25.0	.0	.0	.0	62.5	37.5	100.0	40.26
■ 어항개발이해부	(76)	7.9	3.9	9.2	3.9	38.2	5.3	11.8	9.2	3.9	6.6	63.2	36.8	100.0	48.81
■ 어항개발이해부	(7)	.0	.0	.0	14.3	28.6	.0	28.6	14.3	.0	14.3	42.9	57.1	100.0	61.90
■ 어항개발이해부	(18)	16.7	.0	5.6	5.6	44.4	5.6	16.7	5.6	.0	.0	72.2	27.8	100.0	41.34

【 표 16 】 어항 및 어항시설 이용을 통한 작업 효율성 만족도

[문 16] 귀하께서는 지방어항 및 어항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작업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수	불만족	2)	3)	4)	5)	6)	7)	8)	9)	만족	*불만족*	*만족*	계	*평균*
		%	%	%	%	%	%	%	%	%	%	%			
■ 전 체 ■	(103)	9.7	1.9	1.0	2.9	29.1	7.8	11.7	21.4	2.9	11.7	44.7	55.3	100.0	57.27
■ 지역 별 ■															
■ 인공어항 ■	(3)	.0	.0	.0	.0	66.7	.0	33.3	.0	.0	.0	66.7	33.3	100.0	51.83
■ 인공어항 ■	(6)	.0	.0	.0	.0	50.0	.0	16.7	.0	16.7	16.7	50.0	50.0	100.0	64.80
■ 인공어항 ■	(15)	6.7	.0	.0	.0	40.0	.0	26.7	13.3	.0	13.3	46.7	53.3	100.0	59.25
■ 인공어항 ■	(3)	66.7	.0	.0	.0	.0	.0	.0	33.3	.0	.0	66.7	33.3	100.0	25.93
■ 인공어항 ■	(3)	.0	.0	.0	.0	.0	66.7	.0	33.3	.0	.0	.0	100.0	100.0	62.93
■ 인공어항 ■	(8)	.0	.0	.0	.0	.0	.0	12.5	50.0	.0	37.5	.0	100.0	100.0	84.74
■ 인공어항 ■	(25)	12.0	.0	.0	.0	28.0	12.0	12.0	28.0	.0	8.0	40.0	60.0	100.0	56.88
■ 인공어항 ■	(32)	6.3	6.3	3.1	9.4	31.3	6.3	6.3	15.6	6.3	9.4	56.3	43.8	100.0	53.11
■ 인공어항 ■	(8)	25.0	.0	.0	.0	25.0	12.5	.0	25.0	.0	12.5	50.0	50.0	100.0	49.99
■ 제주지역어항 ■															
■ 제주지역어항 ■	(95)	8.4	2.1	1.1	3.2	29.5	7.4	12.6	21.1	3.2	11.6	44.2	55.8	100.0	57.89
■ 제주지역어항 ■	(8)	25.0	.0	.0	.0	25.0	12.5	.0	25.0	.0	12.5	50.0	50.0	100.0	49.99
■ 어항개발이해 ■															
■ 어항개발이해 ■	(76)	10.5	1.3	.0	2.6	28.9	7.9	15.8	18.4	2.6	11.8	43.4	56.6	100.0	57.30
■ 어항개발이해 ■	(7)	.0	.0	.0	.0	28.6	.0	.0	42.9	14.3	28.6	28.6	71.4	100.0	73.01
■ 어항개발이해 ■	(18)	11.1	5.6	5.6	5.6	33.3	11.1	.0	16.7	.0	11.1	61.1	38.9	100.0	48.74

【 표 17 】 개선 사항

[문 17] 개선 사항

4대강 공사로 인해 공사가 추진중인데 2012년 정도 되어야 어느정도 알 수 있을 듯. 빨리 추진되길 원하고 현재는 너무 열악함.
계획 수립만 하고 시행을 안 한다. 접안시설과 하역시설 부족.
공사를 신속하게 했으면
관광지와 접해 있으므로 배를 대기에 좋게 해 달라.
국가 어항 건설을 빠르게 해주었으면. 국토 해양부의 매립에 대한 규제가 강해 어항건설에 차질이 있을 까 걱정인데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길
귀농인의 증가로 선착장이 많이 부족.
너무 방파제 위주의 개발은 지양 되었으면.
당동항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도나 중앙정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사업추진이 되면 한다.
등대가 필요하고, 준설작업 통해서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많은 지원 바람.
멀리 떨어진 섬인데 방파제를 멀리까지 건설하여 큰배들이 정박. 피항 할 수 있었으면
바다사업을 확장해서 어민들이 살 수 있도록 회센터 내주길...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
바람이 불면 배가 정박을 못 한다.
방파제 공사 우선해 달라.
방파제 상발이 완전 주저 앉아 내렸다. 보강해 주길 바란다.
방파제 시설이 보완 되거나 건설 되었으면. 공사기간이 너무 늦다.
방파제 연장 바람.
방파제가 짧다.
방파제를 다른 곳으로 해 달라.
방파제를 빨리 완공 바람.
방파제를 앞으로 더 나아가라.
방파제를 양쪽으로 막아놔서 내항의 물이 썩어간다. 항구가 작다.
배 운행에 있어 별 지장이 없고 특별한 의견 없다.
배가 출입항할 때, 좁아서 불편하다
배를 대기 좋게 해 주어야 된다.
빨리 건설해 달라.
빨리 사업이 시행되길 원함.
선착장 건설 바람.
선착장 시설의 물량장 만들어 주고, 준설작업 필요.
선착장과 매립지. 어촌계의 조개 맨손 어업의 보상 문제 등에 대해 좀 더 신경 써줘야 할 듯.
선착장부터 도로 등 개발 완료 부탁. (시설물 개선, 방파제 넓혀주길)
선착장을 건설해 달라.
선착장을 막아서 불편하다.
선착장이 여름이면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간다.(개발요) 어업의 기계들이 도난을 당하는데 cctv 설치해주길
설계할 때 어민의 의견이 반영 안됨.
성포 선착장 방파제를 만들었는데 터널을 만들지 않아 물이 갇혀 빠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어 물이 오염이 되어 좋지 않다.. 물 소통통로를 방파제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소규모라 확대되었으면 한다
수산물을 잡아왔을 때, 위탁 판매소가 30m 떨어져 있어서 너무 멀다. *판매 시설이 안되고 있다.
수심이 얕아서 배가 파손되는 것 방지하는 준설 작업이 필요하고, 지역민 이주할 경우 반대 많은데 항과 같이 이주가 이루어 지든지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다.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해서 개발이 필요 없는 곳은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지역에 개발이 이루어져서 예산 낭비하지 않았으면 시설 많이 건설했으면
아직도 진행중이므로 많은 연구 노력 필요.
어구 적재 시설이 많이 부족하여 이런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이나 답이 없다.
어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사에 참조해야 되나 재정이 부족한 점이 있어 어느 정도 반영될지 걱정이다. 2톤 미만 소형 선박들이 선착장 접안 시 조류간만의 차로 힘든 부분이 있다. 장목항에도 소형 선박 계류장 시설을 만들면 좀 더 편리하겠다.
어민의 파부에 와 달는 사업 바람.
어업 어선 위주의 개발 보다는 레저 시설 등 미래 지향적 개발이 필요하다.
어항을 만들어 놓고 방파제나 수심, 준설작업 등 추가로, 보수작업을 빨리 해주길 바란다
어항을 완공했는데 조금 비좁다. 남 방파제 DDP를 보완했는데 배가 더 접안할 수 있도록 확장공사 해 주었음 한다.
어항이 많이 축소되었다.
어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마을 방파제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불만. 큰 마을의 경우 많은 지원이 있고 작은 지역은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다.
예산 지원 바람.
예산을 투입해 달라.
오작교 시설 해달라. 가로등이 없다. 물건을 싣고 내리는 장치가 없다.
오호항 현재 개발 계획만 완성되어도 만족한다
재정이 부족하다.
재정이 풍부하면 좀 더 크게 만족하게끔 완전하게 개발이 되길 원함.
전체적으로 해안정비, 외관 조성과 진입도로 확충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한 지역인데 피항을 많이 오는 항구이다. 거기에 적합한 항구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항구 시설이 개발 되길 바람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항을 갖추면 좋겠다.
준설 사업해야 하고 파도를 대비하여 방파제 보강도 좀 더 해야함.
준설 작업을 더 해달라.
중리항이 정부에서 준비는 하고 있으나 진행이 안되는 상황. 도심의 항구인데 항구는 너무 정리가 환경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 미관상 안좋은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해 달라.
지역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호응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타당한 사업을 투자했음 한다)
지역 특성에 맞게 설계했으면. (바람이 많은 지역이라 바람 막을 수 있게 설계 건설 필요)
지역에 맞게 개발 되었으면.
처음 설계보다 변경해서 고쳐야 한다. 물항상만 크게 만들어 놓고 효율적이지 않다. 다방면으로 지원과 개발을 해야 된다.
태풍 대비 시설 보완.
태풍이 불면 방파제에 삼발이 없어 불안하다. 바닥이 알아 배가 달는다.
파도가 치면 물이 넘친다.
파도가 항만에 높게 쳐 배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보조 어항을 2개 정도 더 만들 필요성이 있다.
피항할 곳이 부족하여 방파제 건설 바람.
항구에 바람막이 (도제) 시설이 안되어 있어 여름에 이용 불가.
항은 개선되었지만, 방파제도 넓혀야 되고, 어항시설등 정부차원에서 지원 개발해 주어야 한다.
항을 더 늘려달라.
항이 좁다. 진입로 상태가 안 좋다.
호산항 앞에 선박 출입하는 바로 바다 밑에 암석이 많아 위험하다. 암석을 파석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화죽항에는 선착장이 없어서 배를 대신해 빨치선을 대야 하는 상황이나 그런 지원이 없어 불편하다.
후안도로를 내서 방파제를 보호하면 좋겠다.

5. 어촌종합개발 사업 지역주민 만족도

【 응답자 특성 표 】

	사례수	%
■ 전 체 ■	500	100.0%
■ 지역 ■ 시 25 군 15 시 30 군 41 면 30 도 35 면 25 면 31 면 5 면 21 면 20 면 30 면 20 시 30 시 40 면 5 면 60 면 25 면 12		5.0% 3.0% 6.0% 8.2% 6.0% 7.0% 5.0% 6.2% 1.0% 4.2% 4.0% 6.0% 4.0% 6.0% 8.0% 1.0% 12.0% 5.0% 2.4%
■ 성 별 ■ 남 349 여 151		69.8% 30.2%
■ 연 령 별 ■ 19 - 29 세 15 30 대 21 40 대 48 50 대 이상 416		3.0% 4.2% 9.6% 83.2%
■ 거 주 기 간 ■ 5 년 미 만 17 5 ~ 10 년 20 10 ~ 20 년 43 20 년 이상 420		3.4% 4.0% 8.6% 84.0%
■ 어촌계원여부 ■ 어촌계원 243 비어촌계원 257		48.6% 51.4%

【 표 1】 사업수행 인지 여부

[문 1]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	
■ 전 체 ■	(500)	39.2	60.8	100.0
■ 지역 ■				
지 기 상 태	(25)	40.0	60.0	100.0
상 특	(15)	66.7	33.3	100.0
태 안 수	(30)	30.0	70.0	100.0
여 과	(41)	36.6	63.4	100.0
고 흥	(30)	40.0	60.0	100.0
고 흥	(35)	31.4	68.6	100.0
원 도	(25)	56.0	44.0	100.0
원 도	(31)	48.4	51.6	100.0
신 안	(5)	40.0	60.0	100.0
신 안	(21)	9.5	90.5	100.0
진 장	(20)	25.0	75.0	100.0
을 도	(30)	26.7	73.3	100.0
을 도	(20)	35.0	65.0	100.0
마 산	(30)	26.7	73.3	100.0
사 전	(40)	62.5	37.5	100.0
를 영	(5)	.0	100.0	100.0
남 해	(60)	35.0	65.0	100.0
남 해	(25)	48.0	52.0	100.0
제 주	(12)	83.3	16.7	100.0
■ 성 남 여 ■				
성 남	(349)	40.4	59.6	100.0
여 자	(151)	36.4	63.6	100.0
■ 연 령 ■				
1 9 - 2 9 세	(15)	20.0	80.0	100.0
3 0 대	(21)	4.8	95.2	100.0
4 0 대	(48)	31.3	68.8	100.0
5 0 대 이 상	(416)	42.5	57.5	100.0
■ 거 주 기 간 ■				
5 년 미 만	(17)	23.5	76.5	100.0
5 ~ 1 0 년	(20)	30.0	70.0	100.0
1 0 ~ 2 0 년	(43)	34.9	65.1	100.0
2 0 년 이 상	(420)	40.7	59.3	100.0
■ 어 촌 계 원 여 부 ■				
어 촌 계 원	(243)	46.5	53.5	100.0
비 어 촌 계 원	(257)	32.3	67.7	100.0

【 표 2 】 사업수행으로 도입되는 시설 인지

[문 2]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도입되는 시설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사례수	전혀모르	2)	3)	4)	잘알고있	*비인지*	*보통*	*인지*	계	*평균*
		다				다					
		%	%	%	%	%	%	%	%		
■ 전 체 ■	(500)	55.0	17.2	9.8	13.8	4.2	72.2	9.8	18.0	100.0	23.75
■ 지역별 ■											
지상태역	(25)	48.0	20.0	4.0	20.0	8.0	68.0	4.0	28.0	100.0	30.00
상촌시	(15)	46.7	13.3	20.0	13.3	6.7	60.0	20.0	20.0	100.0	30.00
태안군	(30)	66.7	20.0	.0	13.3	.0	86.7	.0	13.3	100.0	15.00
여수시	(41)	53.7	24.4	14.6	4.9	2.4	78.0	14.6	7.3	100.0	19.51
고흥군	(30)	53.3	23.3	6.7	13.3	3.3	76.7	6.7	16.7	100.0	22.50
함평군	(35)	57.1	11.4	11.4	17.1	2.9	68.6	11.4	20.0	100.0	24.29
완도군	(25)	40.0	24.0	.0	20.0	16.0	64.0	.0	36.0	100.0	37.00
신안군	(31)	54.8	12.9	3.2	22.6	6.5	67.7	3.2	29.0	100.0	28.23
진안군	(5)	60.0	20.0	20.0	.0	.0	80.0	20.0	.0	100.0	15.00
장흥군	(21)	76.2	9.5	9.5	4.8	.0	85.7	9.5	4.8	100.0	10.71
진남군	(20)	35.0	35.0	.0	25.0	5.0	70.0	.0	30.0	100.0	32.50
울진군	(30)	53.3	16.7	20.0	6.7	3.3	70.0	20.0	10.0	100.0	22.50
돌산읍	(20)	50.0	15.0	20.0	10.0	5.0	65.0	20.0	15.0	100.0	26.25
마산시	(30)	66.7	13.3	6.7	10.0	3.3	80.0	6.7	13.3	100.0	17.50
사천읍	(40)	47.5	12.5	12.5	20.0	7.5	60.0	12.5	27.5	100.0	31.88
통영시	(5)	80.0	20.0	.0	.0	.0	100.0	.0	.0	100.0	5.00
남해군	(60)	58.3	15.0	13.3	10.0	3.3	73.3	13.3	13.3	100.0	21.25
남해읍	(25)	68.0	12.0	4.0	16.0	.0	80.0	4.0	16.0	100.0	17.00
제주시	(12)	33.3	16.7	25.0	25.0	.0	50.0	25.0	25.0	100.0	35.42
■ 성별 ■											
남자	(349)	51.9	16.9	10.3	16.0	4.9	68.8	10.3	20.9	100.0	26.29
여자	(151)	62.3	17.9	8.6	8.6	2.6	80.1	8.6	11.3	100.0	17.88
■ 연령별 ■											
19-29세	(15)	60.0	13.3	13.3	13.3	.0	73.3	13.3	13.3	100.0	20.00
30-40대	(21)	81.0	9.5	4.8	4.8	.0	90.5	4.8	4.8	100.0	8.33
40-50대	(48)	58.3	14.6	12.5	6.3	8.3	72.9	12.5	14.6	100.0	22.92
50대 이상	(416)	53.1	18.0	9.6	15.1	4.1	71.2	9.6	19.2	100.0	24.76
■ 거주기간 ■											
5년 미만	(17)	70.6	5.9	11.8	5.9	5.9	76.5	11.8	11.8	100.0	17.65
5~10년	(20)	60.0	20.0	5.0	10.0	5.0	80.0	5.0	15.0	100.0	20.00
10~20년	(43)	53.5	30.2	9.3	7.0	.0	83.7	9.3	7.0	100.0	17.44
20년 이상	(420)	54.3	16.2	10.0	15.0	4.5	70.5	10.0	19.5	100.0	24.82
■ 어촌계원여부 ■											
어촌계원	(243)	48.1	18.1	11.1	16.9	5.8	66.3	11.1	22.6	100.0	28.50
비어촌계원	(257)	61.5	16.3	8.6	10.9	2.7	77.8	8.6	13.6	100.0	19.26

【 표 3 】 사업예산규모 적정성

[문 3]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예산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권역별 30~50억)

	사례수	매우부족하다	2)	3)	4)	매우충분하다	*부족*	*보통*	*충분*	계	*평균*
		%	%	%	%	%	%	%			
■ 전 체 ■	(500)	16.0	19.8	52.4	8.2	3.6	35.8	52.4	11.8	100.0	40.90
■ 지역 ■											
지상태고	(25)	8.0	16.0	64.0	12.0	.0	24.0	64.0	12.0	100.0	45.00
기상태고	(15)	20.0	33.3	33.3	13.3	.0	53.3	33.3	13.3	100.0	35.00
태안수안수	(30)	33.3	16.7	33.3	13.3	3.3	50.0	33.3	16.7	100.0	34.17
여수시	(41)	14.6	9.8	61.0	9.8	4.9	24.4	61.0	14.6	100.0	45.12
고흥군	(30)	10.0	16.7	66.7	.0	6.7	26.7	66.7	6.7	100.0	44.17
곡성군	(35)	22.9	20.0	42.9	14.3	.0	42.9	42.9	14.3	100.0	37.14
함평군	(25)	12.0	32.0	52.0	.0	4.0	44.0	52.0	4.0	100.0	38.00
완도군	(31)	16.1	35.5	32.3	9.7	6.5	51.6	32.3	16.1	100.0	38.71
신안군	(5)	20.0	.0	40.0	20.0	20.0	20.0	40.0	40.0	100.0	55.00
진안군	(21)	28.6	9.5	47.6	14.3	.0	38.1	47.6	14.3	100.0	36.90
진안군	(20)	5.0	40.0	50.0	5.0	.0	45.0	50.0	5.0	100.0	38.75
장흥군	(30)	13.3	23.3	50.0	13.3	.0	36.7	50.0	13.3	100.0	40.83
울진군	(20)	30.0	5.0	45.0	15.0	5.0	35.0	45.0	20.0	100.0	40.00
마산시	(30)	.0	20.0	73.3	3.3	3.3	20.0	73.3	6.7	100.0	47.50
사천시	(40)	22.5	20.0	50.0	5.0	2.5	42.5	50.0	7.5	100.0	36.25
통영시	(5)	20.0	.0	60.0	.0	20.0	20.0	60.0	20.0	100.0	50.00
남해군	(60)	18.3	13.3	53.3	8.3	6.7	31.7	53.3	15.0	100.0	42.92
남해군	(25)	4.0	24.0	68.0	.0	4.0	28.0	68.0	4.0	100.0	44.00
제주시	(12)	.0	33.3	66.7	.0	.0	33.3	66.7	.0	100.0	41.67
■ 성별 ■											
남자	(349)	19.8	21.2	46.7	9.2	3.2	41.0	46.7	12.3	100.0	38.68
여자	(151)	7.3	16.6	65.6	6.0	4.6	23.8	65.6	10.6	100.0	46.03
■ 연령 ■											
19-29세	(15)	.0	20.0	60.0	13.3	6.7	20.0	60.0	20.0	100.0	51.67
30-39세	(21)	14.3	19.0	57.1	9.5	.0	33.3	57.1	9.5	100.0	40.48
40-49세	(48)	14.6	10.4	54.2	14.6	6.3	25.0	54.2	20.8	100.0	46.88
50대 이상	(416)	16.8	20.9	51.7	7.2	3.4	37.7	51.7	10.6	100.0	39.84
■ 거주기간 ■											
5년 미만	(17)	11.8	5.9	70.6	11.8	.0	17.6	70.6	11.8	100.0	45.59
5~10년	(20)	5.0	20.0	65.0	10.0	.0	25.0	65.0	10.0	100.0	45.00
10~20년	(43)	16.3	4.7	65.1	9.3	4.7	20.9	65.1	14.0	100.0	45.35
20년 이상	(420)	16.7	21.9	49.8	7.9	3.8	38.6	49.8	11.7	100.0	40.06
■ 어촌계원여부 ■											
어촌계원	(243)	19.8	22.2	47.7	7.0	3.3	42.0	47.7	10.3	100.0	37.96
비어촌계원	(257)	12.5	17.5	56.8	9.3	3.9	30.0	56.8	13.2	100.0	43.68

【 표 4 】 사업 집행과정의 효율성

[문 4]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선정 및 집행(착공에서 준공까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매우비효율적이다	2)	3)	4)	매우효율적이다	*비효율*	*보통*	*효율*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500)	6.8	13.2	47.8	20.4	11.8	20.0	47.8	32.2	100.0	54.30
■ 지역별											
지상역 (25)	4.0	20.0	56.0	20.0	.0	24.0	56.0	20.0	100.0	48.00	
상조시 (15)	.0	6.7	60.0	33.3	.0	6.7	60.0	33.3	100.0	56.67	
태안시 (30)	6.7	13.3	46.7	13.3	20.0	20.0	46.7	33.3	100.0	56.67	
여수시 (41)	12.2	2.4	46.3	22.0	17.1	14.6	46.3	39.0	100.0	57.32	
고흥군 (30)	10.0	10.0	43.3	26.7	10.0	20.0	43.3	36.7	100.0	54.17	
고흥군 (35)	14.3	11.4	40.0	31.4	2.9	25.7	40.0	34.3	100.0	49.29	
완도군 (25)	8.0	8.0	56.0	20.0	8.0	16.0	56.0	28.0	100.0	53.00	
완도군 (31)	6.5	12.9	51.6	19.4	9.7	19.4	51.6	29.0	100.0	53.23	
신안군 (5)	.0	.0	40.0	20.0	40.0	.0	40.0	60.0	100.0	75.00	
신안군 (21)	23.8	4.8	52.4	4.8	14.3	28.6	52.4	19.0	100.0	45.24	
진도군 (20)	.0	40.0	30.0	30.0	.0	40.0	30.0	30.0	100.0	47.50	
장흥군 (30)	.0	26.7	40.0	23.3	10.0	26.7	40.0	33.3	100.0	54.17	
돌매시 (20)	.0	10.0	55.0	25.0	10.0	10.0	55.0	35.0	100.0	58.75	
마산시 (30)	.0	10.0	56.7	3.3	30.0	10.0	56.7	33.3	100.0	63.33	
사통시 (40)	7.5	17.5	32.5	27.5	15.0	25.0	32.5	42.5	100.0	56.25	
사통군 (5)	40.0	.0	60.0	.0	.0	40.0	60.0	.0	100.0	30.00	
남해군 (60)	3.3	13.3	55.0	16.7	11.7	16.7	55.0	28.3	100.0	55.00	
남해군 (25)	8.0	4.0	44.0	24.0	20.0	12.0	44.0	44.0	100.0	61.00	
남해군 (12)	.0	33.3	58.3	8.3	.0	33.3	58.3	8.3	100.0	43.75	
■ 성별											
성남 (349)	7.7	14.6	43.3	22.1	12.3	22.3	43.3	34.4	100.0	54.15	
여자 (151)	4.6	9.9	58.3	16.6	10.6	14.6	58.3	27.2	100.0	54.64	
■ 연령											
19-29세 (15)	13.3	33.3	53.3	.0	.0	46.7	53.3	.0	100.0	35.00	
30대 (21)	4.8	19.0	66.7	9.5	.0	23.8	66.7	9.5	100.0	45.24	
40대 (48)	8.3	14.6	50.0	16.7	10.4	22.9	50.0	27.1	100.0	51.56	
50대 이상 (416)	6.5	12.0	46.4	22.1	13.0	18.5	46.4	35.1	100.0	55.77	
■ 거주기간											
5년 미만 (17)	11.8	11.8	47.1	29.4	.0	23.5	47.1	29.4	100.0	48.53	
5~10년 (20)	.0	25.0	50.0	10.0	15.0	25.0	50.0	25.0	100.0	53.75	
10~20년 (43)	4.7	11.6	62.8	9.3	11.6	16.3	62.8	20.9	100.0	52.91	
20년 이상 (420)	7.1	12.9	46.2	21.7	12.1	20.0	46.2	33.8	100.0	54.70	
■ 어촌계원											
어촌계원 (243)	8.2	12.3	46.1	20.6	12.8	20.6	46.1	33.3	100.0	54.32	
비어촌계원 (257)	5.4	14.0	49.4	20.2	10.9	19.5	49.4	31.1	100.0	54.28	

【 표 5 】 사업 시행과정의 지역주민 역할 수행

[문 5]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촌계를 포함한 지역 주민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	2)	3)	4)	충분한 역할을 수행함	*수행못함*	*보통*	*수행함*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500)	8.4	21.2	43.6	14.6	12.2	29.6	43.6	26.8	100.0	50.25
■ 지역별 ■											
지상태역	(25)	12.0	20.0	64.0	.0	4.0	32.0	64.0	4.0	100.0	41.00
장척안수	(15)	6.7	13.3	53.3	26.7	.0	20.0	53.3	26.7	100.0	50.00
고흥읍	(30)	3.3	20.0	53.3	6.7	16.7	23.3	53.3	23.3	100.0	53.33
고흥읍	(41)	7.3	17.1	34.1	24.4	17.1	24.4	34.1	41.5	100.0	56.71
고흥읍	(30)	6.7	20.0	50.0	16.7	6.7	26.7	50.0	23.3	100.0	49.17
고흥읍	(35)	14.3	25.7	45.7	.0	14.3	40.0	45.7	14.3	100.0	43.57
고흥읍	(25)	4.0	20.0	16.0	32.0	28.0	24.0	16.0	60.0	100.0	65.00
고흥읍	(31)	12.9	29.0	22.6	9.7	25.8	41.9	22.6	35.5	100.0	51.61
고흥읍	(5)	.0	20.0	.0	60.0	20.0	.0	80.0	.0	100.0	70.00
고흥읍	(21)	9.5	38.1	38.1	9.5	4.8	47.6	38.1	14.3	100.0	40.48
고흥읍	(20)	5.0	45.0	30.0	20.0	.0	50.0	30.0	20.0	100.0	41.25
고흥읍	(30)	.0	16.7	60.0	13.3	10.0	16.7	60.0	23.3	100.0	54.17
고흥읍	(20)	5.0	30.0	40.0	10.0	15.0	35.0	40.0	25.0	100.0	50.00
고흥읍	(30)	3.3	16.7	56.7	16.7	6.7	20.0	56.7	23.3	100.0	51.67
고흥읍	(40)	20.0	17.5	27.5	20.0	15.0	37.5	27.5	35.0	100.0	48.13
고흥읍	(5)	40.0	20.0	40.0	.0	.0	60.0	40.0	.0	100.0	25.00
고흥읍	(60)	6.7	18.3	53.3	11.7	10.0	25.0	53.3	21.7	100.0	50.00
고흥읍	(25)	8.0	8.0	56.0	16.0	12.0	16.0	56.0	28.0	100.0	54.00
고흥읍	(12)	8.3	16.7	50.0	16.7	8.3	25.0	50.0	25.0	100.0	50.00
■ 성별 ■											
남자	(349)	9.5	20.6	41.0	15.5	13.5	30.1	41.0	28.9	100.0	50.72
여자	(151)	6.0	22.5	49.7	12.6	9.3	28.5	49.7	21.9	100.0	49.17
■ 연령 ■											
19-29세	(15)	13.3	13.3	66.7	6.7	.0	26.7	66.7	6.7	100.0	41.67
30-40세	(21)	19.0	23.8	52.4	4.8	.0	42.9	52.4	4.8	100.0	35.71
40-50세	(48)	8.3	25.0	52.1	10.4	4.2	33.3	52.1	14.6	100.0	44.27
50대 이상	(416)	7.7	20.9	41.3	15.9	14.2	28.6	41.3	30.0	100.0	51.98
■ 거주기간 ■											
5년 미만	(17)	11.8	23.5	41.2	23.5	.0	35.3	41.2	23.5	100.0	44.12
5~10년	(20)	.0	25.0	60.0	10.0	5.0	25.0	60.0	15.0	100.0	48.75
10~20년	(43)	9.3	20.9	58.1	4.7	7.0	30.2	58.1	11.6	100.0	44.77
20년 이상	(420)	8.6	21.0	41.4	15.5	13.6	29.5	41.4	29.0	100.0	51.13
■ 어촌계원여부 ■											
어촌계원	(243)	9.1	21.8	36.2	16.9	16.0	30.9	36.2	32.9	100.0	52.26
비어촌계원	(257)	7.8	20.6	50.6	12.5	8.6	28.4	50.6	21.0	100.0	48.35

【 표 6 】 사업으로 인한 지역 주민 내 갈등 정도

[문 6]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착공 및 준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업으로 인한 지역 주민 내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없다	2)	3)	4)	매우많다	*없다*	*보통*	*있다*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500)	20.4	13.4	41.2	18.2	6.8	33.8	41.2	25.0	100.0	44.40
■ 지역 ■											
지 기 상 태	(25)	8.0	4.0	56.0	24.0	8.0	12.0	56.0	32.0	100.0	55.00
장 계 시 군	(15)	.0	26.7	33.3	33.3	6.7	26.7	33.3	40.0	100.0	55.00
안 수 시 군	(30)	10.0	10.0	53.3	23.3	3.3	20.0	53.3	26.7	100.0	50.00
고흥군	(41)	19.5	7.3	46.3	19.5	7.3	26.8	46.3	26.8	100.0	46.95
고흥군과	(30)	30.0	13.3	43.3	13.3	.0	43.3	43.3	13.3	100.0	35.00
고흥군화	(35)	45.7	8.6	22.9	20.0	2.9	54.3	22.9	22.9	100.0	31.43
고흥군안	(25)	36.0	32.0	20.0	4.0	8.0	68.0	20.0	12.0	100.0	29.00
고흥군안	(31)	35.5	9.7	29.0	16.1	9.7	45.2	29.0	25.8	100.0	38.71
고흥군안	(5)	20.0	.0	60.0	.0	20.0	20.0	60.0	20.0	100.0	50.00
고흥군안	(21)	14.3	19.0	52.4	14.3	.0	33.3	52.4	14.3	100.0	41.67
고흥군안	(20)	15.0	30.0	35.0	20.0	.0	45.0	35.0	20.0	100.0	40.00
고흥군안	(30)	23.3	6.7	56.7	6.7	6.7	30.0	56.7	13.3	100.0	41.67
고흥군안	(20)	20.0	15.0	20.0	30.0	15.0	35.0	20.0	45.0	100.0	51.25
고흥군안	(30)	10.0	13.3	56.7	13.3	6.7	23.3	56.7	20.0	100.0	48.33
고흥군안	(40)	12.5	30.0	35.0	10.0	12.5	42.5	35.0	22.5	100.0	45.00
고흥군안	(5)	20.0	.0	40.0	.0	40.0	20.0	40.0	40.0	100.0	60.00
고흥군안	(60)	18.3	8.3	43.3	25.0	5.0	26.7	43.3	30.0	100.0	47.50
고흥군안	(25)	16.0	4.0	48.0	20.0	12.0	20.0	48.0	32.0	100.0	52.00
고흥군안	(12)	16.7	8.3	33.3	41.7	.0	25.0	33.3	41.7	100.0	50.00
■ 성 남 여 ■											
성 남	(349)	23.2	14.9	37.2	15.8	8.9	38.1	37.2	24.6	100.0	43.05
성 여	(151)	13.9	9.9	50.3	23.8	2.0	23.8	50.3	25.8	100.0	47.52
■ 연 령 ■											
19-29세	(15)	.0	.0	73.3	13.3	13.3	.0	73.3	26.7	100.0	60.00
30-39세	(21)	.0	14.3	52.4	28.6	4.8	14.3	52.4	33.3	100.0	55.95
40-49세	(48)	8.3	8.3	41.7	31.3	10.4	16.7	41.7	41.7	100.0	56.77
50대 이상	(416)	23.6	14.4	39.4	16.3	6.3	38.0	39.4	22.6	100.0	41.83
■ 거 주 기 간 ■											
5년 미만	(17)	5.9	5.9	52.9	29.4	5.9	11.8	52.9	35.3	100.0	55.88
5~10년	(20)	10.0	10.0	60.0	15.0	5.0	20.0	60.0	20.0	100.0	48.75
10~20년	(43)	4.7	9.3	51.2	23.3	11.6	14.0	51.2	34.9	100.0	56.98
20년 이상	(420)	23.1	14.3	38.8	17.4	6.4	37.4	38.8	23.8	100.0	42.44
■ 어촌계원여부 ■											
어촌계원	(243)	26.7	14.8	35.8	18.1	4.5	41.6	35.8	22.6	100.0	39.71
비어촌계원	(257)	14.4	12.1	46.3	18.3	8.9	26.5	46.3	27.2	100.0	48.83

【 표 7 】 사업의 어려운 어촌 현실 해결에 기여도

[문 7]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현재의 어려운 어촌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기여 하지못한 다	2)	3)	4)	크게기여 한다	*비기여*	*보통*	*기여*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500)	5.2	13.0	34.8	29.2	17.8	18.2	34.8	47.0	100.0	60.35
■ 지 기 상 태 ■	(25)	4.0	8.0	28.0	44.0	16.0	12.0	28.0	60.0	100.0	65.00
장 적 안 수	(15)	6.7	13.3	26.7	40.0	13.3	20.0	26.7	53.3	100.0	60.00
여 고 용 환	(30)	3.3	13.3	30.0	23.3	30.0	16.7	30.0	53.3	100.0	65.83
고 용 환	(41)	4.9	9.8	36.6	29.3	19.5	14.6	36.6	48.8	100.0	62.20
고 용 환	(30)	6.7	10.0	30.0	40.0	13.3	16.7	30.0	53.3	100.0	60.83
고 용 환	(35)	.0	17.1	48.6	28.6	5.7	17.1	48.6	34.3	100.0	55.71
고 용 환	(25)	.0	24.0	28.0	20.0	28.0	24.0	28.0	48.0	100.0	63.00
고 용 환	(31)	12.9	12.9	29.0	19.4	25.8	25.8	29.0	45.2	100.0	58.06
고 용 환	(5)	.0	20.0	20.0	20.0	40.0	20.0	20.0	60.0	100.0	70.00
고 용 환	(21)	4.8	9.5	57.1	19.0	9.5	14.3	57.1	28.6	100.0	54.76
고 용 환	(20)	.0	30.0	20.0	40.0	10.0	30.0	20.0	50.0	100.0	57.50
고 용 환	(30)	.0	13.3	40.0	30.0	16.7	13.3	40.0	46.7	100.0	62.50
고 용 환	(20)	5.0	5.0	45.0	20.0	25.0	10.0	45.0	45.0	100.0	63.75
고 용 환	(30)	6.7	6.7	20.0	43.3	23.3	13.3	20.0	66.7	100.0	67.50
고 용 환	(40)	15.0	15.0	27.5	20.0	22.5	30.0	27.5	42.5	100.0	55.00
고 용 환	(5)	60.0	20.0	20.0	.0	.0	80.0	20.0	.0	100.0	15.00
고 용 환	(60)	3.3	8.3	48.3	25.0	15.0	11.7	48.3	40.0	100.0	60.00
고 용 환	(25)	.0	8.0	32.0	48.0	12.0	8.0	32.0	60.0	100.0	66.00
고 용 환	(12)	.0	33.3	33.3	25.0	8.3	33.3	33.3	33.3	100.0	52.08
■ 상 남 여 ■	(349)	5.2	12.0	34.1	28.1	20.6	17.2	34.1	48.7	100.0	61.75
여 자	(151)	5.3	15.2	36.4	31.8	11.3	20.5	36.4	43.0	100.0	57.12
■ 연 령 ■	(15)	13.3	6.7	46.7	20.0	13.3	20.0	46.7	33.3	100.0	53.33
19-29세	(21)	4.8	23.8	19.0	47.6	4.8	28.6	19.0	52.4	100.0	55.95
30-40세	(48)	8.3	16.7	25.0	33.3	16.7	25.0	25.0	50.0	100.0	58.33
40-50세 이상	(416)	4.6	12.3	36.3	28.1	18.8	16.8	36.3	46.9	100.0	61.06
■ 거주기간 ■	(17)	11.8	23.5	35.3	23.5	5.9	35.3	35.3	29.4	100.0	47.06
5년 미만	(20)	.0	15.0	40.0	20.0	25.0	15.0	40.0	45.0	100.0	63.75
5~10년	(43)	4.7	16.3	25.6	34.9	18.6	20.9	25.6	53.5	100.0	61.63
10~20년	(420)	5.2	12.1	35.5	29.3	17.9	17.4	35.5	47.1	100.0	60.60
20년 이상											
■ 어촌계원여부 ■	(243)	5.8	12.3	34.6	27.6	19.8	18.1	34.6	47.3	100.0	60.80
어촌계원	(257)	4.7	13.6	35.0	30.7	16.0	18.3	35.0	46.7	100.0	59.92

【 표 8 】 사업의 지역 내 어업 생산성 향상과 상관 여부

[문 8]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역 내 어업 생산성과 상관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이 있다면 생산성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생산성향 상과밀접 한상관이 있음	생산성향 상과상관 이없음	계
		%	%	
■ 전 체 ■	(500)	68.2	31.8	100.0
■ 지 기 상 태 ■	(25)	56.0	44.0	100.0
장 적 안 수 고 흥 원	(15)	53.3	46.7	100.0
군 시 군 시 면	(30)	70.0	30.0	100.0
고 흥 원	(41)	70.7	29.3	100.0
고 흥 원	(30)	73.3	26.7	100.0
고 흥 원	(35)	77.1	22.9	100.0
고 흥 원	(25)	72.0	28.0	100.0
고 흥 원	(31)	74.2	25.8	100.0
고 흥 원	(5)	100.0	.0	100.0
고 흥 원	(21)	61.9	38.1	100.0
고 흥 원	(20)	60.0	40.0	100.0
고 흥 원	(30)	63.3	36.7	100.0
고 흥 원	(20)	60.0	40.0	100.0
고 흥 원	(30)	56.7	43.3	100.0
고 흥 원	(40)	72.5	27.5	100.0
고 흥 원	(5)	60.0	40.0	100.0
고 흥 원	(60)	71.7	28.3	100.0
고 흥 원	(25)	68.0	32.0	100.0
고 흥 원	(12)	75.0	25.0	100.0
■ 성 남 여 ■	(349)	71.6	28.4	100.0
남 자	(151)	60.3	39.7	100.0
■ 연 령 ■	(15)	73.3	26.7	100.0
19 - 29 세	(21)	66.7	33.3	100.0
30 대	(48)	68.8	31.3	100.0
40 대	(416)	68.0	32.0	100.0
50 대 이상				
■ 거 주 기 간 ■	(17)	70.6	29.4	100.0
5 년 미 만	(20)	70.0	30.0	100.0
5 ~ 10 년	(43)	69.8	30.2	100.0
10 ~ 20 년	(420)	67.9	32.1	100.0
20 년 이상				
■ 어 촌 계 원 여 부 ■	(243)	74.5	25.5	100.0
어 촌 계 원	(257)	62.3	37.7	100.0
비 어 촌 계 원				

【 표 8-1 】 생산성 향상과 상관 정도

[문 8-1] ①에 해당되는 %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수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계	*평균*
		%	%	%	%	%	%	%	%	%	%	%		
■ 전 체 ■	(341)	3.8	7.6	7.0	16.1	6.2	26.1	8.5	10.3	8.2	1.5	4.7	100.0	47.39
■ 지 기 상 태 ■	(14)	.0	14.3	.0	21.4	7.1	14.3	35.7	7.1	.0	.0	.0	100.0	44.29
■ 장 소 ■	(8)	.0	.0	25.0	12.5	37.5	.0	.0	12.5	12.5	.0	.0	100.0	42.50
■ 연 구 기 간 ■	(21)	.0	9.5	4.8	14.3	9.5	28.6	9.5	9.5	4.8	.0	9.5	100.0	50.00
■ 여 수 ■	(29)	17.2	.0	10.3	13.8	3.4	24.1	6.9	6.9	10.3	.0	6.9	100.0	43.79
■ 고 용 ■	(22)	.0	9.1	9.1	18.2	9.1	22.7	9.1	13.6	4.5	.0	4.5	100.0	46.36
■ 노 동 ■	(27)	.0	7.4	3.7	7.4	.0	40.7	11.1	11.1	7.4	3.7	7.4	100.0	55.19
■ 노 동 ■	(18)	.0	.0	.0	27.8	.0	33.3	5.6	5.6	5.6	5.6	16.7	100.0	58.33
■ 노 동 ■	(23)	.0	4.3	.0	8.7	4.3	30.4	13.0	4.3	30.4	.0	4.3	100.0	59.57
■ 노 동 ■	(5)	.0	.0	20.0	20.0	.0	20.0	.0	20.0	.0	20.0	.0	100.0	52.00
■ 노 동 ■	(13)	15.4	.0	.0	.0	15.4	23.1	7.7	7.7	7.7	7.7	15.4	100.0	56.15
■ 노 동 ■	(12)	.0	25.0	8.3	8.3	.0	8.3	.0	33.3	8.3	.0	8.3	100.0	49.17
■ 노 동 ■	(19)	15.8	5.3	5.3	15.8	10.5	26.3	.0	10.5	10.5	.0	.0	100.0	39.47
■ 노 동 ■	(12)	.0	8.3	8.3	8.3	25.0	33.3	8.3	8.3	.0	.0	.0	100.0	42.50
■ 노 동 ■	(17)	11.8	11.8	5.9	29.4	.0	35.3	5.9	.0	.0	.0	.0	100.0	32.35
■ 노 동 ■	(29)	.0	10.3	6.9	24.1	3.4	10.3	13.8	6.9	13.8	3.4	6.9	100.0	50.34
■ 노 동 ■	(3)	.0	.0	.0	33.3	.0	66.7	.0	.0	.0	.0	.0	100.0	43.33
■ 노 동 ■	(43)	2.3	14.0	9.3	18.6	2.3	27.9	2.3	14.0	9.3	.0	.0	100.0	42.33
■ 노 동 ■	(17)	.0	5.9	11.8	17.6	.0	29.4	17.6	17.6	.0	.0	.0	100.0	45.88
■ 노 동 ■	(9)	.0	.0	22.2	11.1	22.2	33.3	.0	11.1	.0	.0	.0	100.0	41.11
■ 성 남 ■	(250)	4.0	8.4	7.6	17.2	5.6	24.4	7.2	9.2	10.0	1.2	5.2	100.0	47.00
■ 성 여 ■	(91)	3.3	5.5	5.5	13.2	7.7	30.8	12.1	13.2	3.3	2.2	3.3	100.0	48.46
■ 연 령 ■	(11)	.0	9.1	9.1	36.4	18.2	18.2	9.1	.0	.0	.0	.0	100.0	35.45
■ 연 령 ■	(14)	7.1	7.1	7.1	21.4	14.3	28.6	7.1	7.1	.0	.0	.0	100.0	37.86
■ 연 령 ■	(33)	3.0	6.1	6.1	15.2	12.1	30.3	21.2	6.1	.0	.0	.0	100.0	43.33
■ 연 령 ■	(283)	3.9	7.8	7.1	15.2	4.6	25.8	7.1	11.3	9.9	1.8	5.7	100.0	48.80
■ 거 주 기 간 ■	(12)	.0	.0	.0	33.3	8.3	33.3	8.3	16.7	.0	.0	.0	100.0	46.67
■ 거 주 기 간 ■	(14)	7.1	14.3	.0	.0	21.4	21.4	21.4	14.3	.0	.0	.0	100.0	43.57
■ 거 주 기 간 ■	(30)	.0	10.0	10.0	16.7	13.3	30.0	10.0	3.3	3.3	.0	3.3	100.0	42.67
■ 거 주 기 간 ■	(285)	4.2	7.4	7.4	16.1	4.6	25.6	7.7	10.5	9.5	1.8	5.3	100.0	48.11
■ 어 촌 계 원 ■	(181)	3.3	6.1	6.6	16.0	3.9	25.4	8.8	10.5	11.0	2.2	6.1	100.0	50.55
■ 어 촌 계 원 ■	(160)	4.4	9.4	7.5	16.3	8.8	26.9	8.1	10.0	5.0	.6	3.1	100.0	43.81

【 표 9 】 사업의 지역 내 어업 소득증가와 상관 여부

[문 9]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지역 내 어업 외 소득 향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면 어업 외 소득 부분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어업외 소득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어업외 소득향상과 관련이 없음	계
		%	%	
■ 전 체 ■	(500)	66.0	34.0	100.0
■ 지역별 ■				
지상태여고원원신신진진장릉마사릉남남제	(25)	68.0	32.0	100.0
기상태여고원원신신진진장릉마사릉남남제	(15)	73.3	26.7	100.0
장척안수고원원신신진진장릉마사릉남남제	(30)	63.3	36.7	100.0
안수고원원신신진진장릉마사릉남남제	(41)	58.5	41.5	100.0
수고원원신신진진장릉마사릉남남제	(30)	76.7	23.3	100.0
고원원신신진진장릉마사릉남남제	(35)	74.3	25.7	100.0
원원신신진진장릉마사릉남남제	(25)	48.0	52.0	100.0
신신진진장릉마사릉남남제	(31)	58.1	41.9	100.0
신진진장릉마사릉남남제	(5)	100.0	.0	100.0
진진장릉마사릉남남제	(21)	66.7	33.3	100.0
진장릉마사릉남남제	(20)	70.0	30.0	100.0
장릉마사릉남남제	(30)	73.3	26.7	100.0
릉마사릉남남제	(20)	70.0	30.0	100.0
마사릉남남제	(30)	53.3	46.7	100.0
사릉남남제	(40)	77.5	22.5	100.0
릉남남제	(5)	40.0	60.0	100.0
남남제	(60)	66.7	33.3	100.0
남제	(25)	68.0	32.0	100.0
제	(12)	41.7	58.3	100.0
■ 성별 ■				
성남여	(349)	67.3	32.7	100.0
남여	(151)	62.9	37.1	100.0
■ 연령별 ■				
19-29세	(15)	73.3	26.7	100.0
30대	(21)	81.0	19.0	100.0
40대	(48)	79.2	20.8	100.0
50대 이상	(416)	63.5	36.5	100.0
■ 거주기간 ■				
5년 미만	(17)	76.5	23.5	100.0
5 ~ 10년	(20)	70.0	30.0	100.0
10 ~ 20년	(43)	76.7	23.3	100.0
20년 이상	(420)	64.3	35.7	100.0
■ 어촌계원여부 ■				
어촌계원	(243)	68.3	31.7	100.0
비어촌계원	(257)	63.8	36.2	100.0

【 표 9-1 】 소득 증가와 상관 정도

[문 9-1] ①에 해당되는 %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수	.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계	*평균*
		%	%	%	%	%	%	%	%	%	%	%		
■ 전 체 ■	(330)	3.3	8.8	9.4	18.2	6.7	23.3	9.4	8.5	7.6	1.2	3.6	100.0	44.91
■ 지 기 상 태 ■	(17)	5.9	11.8	5.9	11.8	11.8	23.5	11.8	5.9	11.8	.0	.0	100.0	42.94
■ 장 소 ■	(11)	.0	.0	9.1	36.4	9.1	27.3	.0	18.2	.0	.0	.0	100.0	42.73
■ 안 전 ■	(19)	5.3	5.3	10.5	15.8	5.3	31.6	10.5	5.3	5.3	.0	5.3	100.0	44.74
■ 여 수 ■	(24)	4.2	.0	4.2	20.8	.0	41.7	12.5	4.2	8.3	.0	4.2	100.0	49.17
■ 고 려 ■	(23)	.0	21.7	8.7	21.7	4.3	8.7	13.0	8.7	4.3	.0	8.7	100.0	42.61
■ 노 동 ■	(26)	.0	7.7	11.5	15.4	.0	26.9	7.7	15.4	3.8	3.8	7.7	100.0	50.77
■ 노 동 ■	(12)	8.3	.0	.0	16.7	16.7	25.0	.0	8.3	8.3	.0	16.7	100.0	53.33
■ 노 동 ■	(18)	.0	.0	11.1	5.6	5.6	22.2	5.6	16.7	33.3	.0	.0	100.0	58.89
■ 노 동 ■	(5)	.0	20.0	.0	20.0	.0	20.0	20.0	.0	.0	20.0	.0	100.0	48.00
■ 노 동 ■	(14)	7.1	7.1	.0	7.1	14.3	28.6	14.3	7.1	14.3	.0	.0	100.0	47.86
■ 노 동 ■	(14)	14.3	21.4	7.1	7.1	7.1	7.1	.0	7.1	21.4	.0	7.1	100.0	41.43
■ 노 동 ■	(22)	4.5	9.1	13.6	13.6	13.6	22.7	9.1	4.5	4.5	.0	4.5	100.0	41.36
■ 노 동 ■	(14)	.0	14.3	7.1	21.4	14.3	21.4	21.4	.0	.0	.0	.0	100.0	38.57
■ 노 동 ■	(16)	6.3	12.5	12.5	12.5	12.5	31.3	.0	12.5	.0	.0	.0	100.0	36.88
■ 노 동 ■	(31)	.0	12.9	9.7	29.0	3.2	12.9	9.7	3.2	6.5	6.5	6.5	100.0	45.16
■ 노 동 ■	(2)	.0	.0	.0	.0	.0	100.0	.0	.0	.0	.0	.0	100.0	50.00
■ 노 동 ■	(40)	2.5	7.5	17.5	20.0	2.5	17.5	10.0	17.5	5.0	.0	.0	100.0	42.25
■ 노 동 ■	(17)	5.9	5.9	11.8	23.5	5.9	29.4	11.8	.0	5.9	.0	.0	100.0	38.82
■ 노 동 ■	(5)	.0	.0	.0	40.0	20.0	20.0	20.0	.0	.0	.0	.0	100.0	42.00
■ 성 남 ■	(235)	3.0	9.4	8.5	19.6	7.7	19.6	9.8	7.7	9.4	1.3	4.3	100.0	45.49
■ 성 여 ■	(95)	4.2	7.4	11.6	14.7	4.2	32.6	8.4	10.5	3.2	1.1	2.1	100.0	43.47
■ 연 령 ■	(11)	.0	.0	36.4	27.3	9.1	18.2	.0	9.1	.0	.0	.0	100.0	34.55
■ 연 령 ■	(17)	5.9	5.9	5.9	23.5	17.6	23.5	5.9	11.8	.0	.0	.0	100.0	39.41
■ 연 령 ■	(38)	.0	15.8	13.2	15.8	10.5	28.9	10.5	2.6	.0	2.6	.0	100.0	38.16
■ 연 령 ■	(264)	3.8	8.3	8.0	17.8	5.3	22.7	9.8	9.1	9.5	1.1	4.5	100.0	46.67
■ 거 주 기 간 ■	(13)	.0	7.7	.0	30.8	.0	38.5	23.1	.0	.0	.0	.0	100.0	43.08
■ 거 주 기 간 ■	(14)	.0	.0	7.1	7.1	21.4	14.3	21.4	14.3	14.3	.0	.0	100.0	53.57
■ 거 주 기 간 ■	(33)	.0	9.1	12.1	24.2	12.1	27.3	3.0	3.0	3.0	3.0	3.0	100.0	41.21
■ 거 주 기 간 ■	(270)	4.1	9.3	9.6	17.4	5.6	22.6	8.9	9.3	8.1	1.1	4.1	100.0	45.00
■ 어 촌 계 원 ■	(166)	2.4	9.0	8.4	19.3	5.4	21.7	8.4	7.8	11.4	1.2	4.8	100.0	46.99
■ 어 촌 계 원 ■	(164)	4.3	8.5	10.4	17.1	7.9	25.0	10.4	9.1	3.7	1.2	2.4	100.0	42.80

【 표 10 】 사업의 지역 내 관광객 증가와 상관 여부

[문 10]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외부 방문객(관광객)이 증가할 것인지, 증가한다면 어느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방문객/ 관광객 가와의 상관이 있음	방문객/ 관광객 증가 있음	계
		%	%	
■ 전 체 ■	(500)	77.6	22.4	100.0
■ 지 역 ■				
기상	(25)	88.0	12.0	100.0
상태	(15)	73.3	26.7	100.0
여수	(30)	83.3	16.7	100.0
고흥	(41)	95.1	4.9	100.0
고흥	(30)	73.3	26.7	100.0
고흥	(35)	74.3	25.7	100.0
고흥	(25)	76.0	24.0	100.0
고흥	(31)	67.7	32.3	100.0
고흥	(5)	60.0	40.0	100.0
고흥	(21)	71.4	28.6	100.0
고흥	(20)	70.0	30.0	100.0
고흥	(30)	83.3	16.7	100.0
고흥	(20)	80.0	20.0	100.0
고흥	(30)	63.3	36.7	100.0
고흥	(40)	90.0	10.0	100.0
고흥	(5)	60.0	40.0	100.0
고흥	(60)	75.0	25.0	100.0
고흥	(25)	80.0	20.0	100.0
고흥	(12)	58.3	41.7	100.0
■ 성 남 여 ■				
남	(349)	78.5	21.5	100.0
여	(151)	75.5	24.5	100.0
■ 연 령 ■				
19 - 29 세	(15)	86.7	13.3	100.0
30 대	(21)	71.4	28.6	100.0
40 대	(48)	83.3	16.7	100.0
50 대 이상	(416)	76.9	23.1	100.0
■ 거 주 기 간 ■				
5년 미만	(17)	70.6	29.4	100.0
5 ~ 10년	(20)	90.0	10.0	100.0
10 ~ 20년	(43)	83.7	16.3	100.0
20년 이상	(420)	76.7	23.3	100.0
■ 어 촌 계 원 여 부 ■				
어 촌 계 원	(243)	77.4	22.6	100.0
비 어 촌 계 원	(257)	77.8	22.2	100.0

【 표 10-1 】 관광객 증가와 상관 정도

[문 10-1] ①에 해당되는 %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사례수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계	*평균*
		%	%	%	%	%	%	%	%	%	%	%		
■ 전 체 ■	(388)	3.6	9.5	10.8	21.9	3.6	21.9	8.0	9.0	5.7	1.3	4.6	100.0	43.53
■ 지기상태여고고원신진장올마사해남제	(22)	.0	9.1	4.5	36.4	4.5	22.7	18.2	.0	4.5	.0	.0	100.0	40.45
■ 시군시면읍면초면	(11)	.0	.0	18.2	18.2	9.1	45.5	9.1	.0	.0	.0	.0	100.0	40.91
■ 관광수수관양화	(25)	.0	12.0	20.0	16.0	4.0	12.0	8.0	8.0	12.0	.0	8.0	100.0	45.60
■ 시설면적	(39)	15.4	7.7	2.6	20.5	2.6	23.1	7.7	10.3	5.1	2.6	2.6	100.0	40.77
■ 인력	(22)	.0	18.2	31.8	13.6	4.5	13.6	9.1	.0	4.5	.0	4.5	100.0	34.55
■ 예산	(26)	.0	3.8	3.8	11.5	.0	42.3	15.4	7.7	3.8	3.8	7.7	100.0	54.62
■ 운영	(19)	.0	10.5	.0	31.6	.0	26.3	.0	5.3	5.3	5.3	15.8	100.0	52.11
■ 시설	(21)	.0	9.5	.0	33.3	4.8	23.8	4.8	19.0	4.8	.0	.0	100.0	44.76
■ 인력	(3)	.0	.0	.0	.0	33.3	.0	.0	.0	66.7	.0	.0	100.0	66.67
■ 예산	(15)	.0	6.7	13.3	26.7	.0	13.3	6.7	13.3	6.7	6.7	6.7	100.0	49.33
■ 시설	(14)	21.4	7.1	.0	14.3	.0	21.4	14.3	.0	7.1	.0	14.3	100.0	44.29
■ 운영	(25)	4.0	16.0	16.0	20.0	8.0	12.0	4.0	12.0	4.0	.0	4.0	100.0	38.00
■ 시설	(16)	.0	6.3	12.5	25.0	12.5	18.8	12.5	6.3	.0	.0	6.3	100.0	43.13
■ 인력	(19)	5.3	15.8	31.6	15.8	.0	15.8	.0	15.8	.0	.0	.0	100.0	31.58
■ 예산	(36)	.0	5.6	11.1	33.3	2.8	13.9	2.8	8.3	11.1	2.8	8.3	100.0	48.06
■ 시설	(3)	.0	33.3	.0	33.3	.0	33.3	.0	.0	.0	.0	.0	100.0	30.00
■ 인력	(45)	4.4	8.9	6.7	20.0	2.2	28.9	11.1	8.9	6.7	.0	2.2	100.0	44.00
■ 예산	(20)	5.0	10.0	10.0	10.0	5.0	20.0	10.0	30.0	.0	.0	.0	100.0	45.00
■ 운영	(7)	.0	14.3	28.6	28.6	.0	28.6	.0	.0	.0	.0	.0	100.0	30.00
■ 성남여	(274)	3.6	9.9	9.5	23.4	3.3	20.8	8.0	9.5	5.8	1.5	4.7	100.0	43.80
■ 별자	(114)	3.5	8.8	14.0	18.4	4.4	24.6	7.9	7.9	5.3	.9	4.4	100.0	42.89
■ 연령	(13)	.0	15.4	15.4	30.8	15.4	15.4	.0	7.7	.0	.0	.0	100.0	33.08
■ 19-29세	(15)	.0	6.7	20.0	33.3	6.7	13.3	13.3	6.7	.0	.0	.0	100.0	36.67
■ 30-40대	(40)	.0	10.0	10.0	27.5	5.0	20.0	10.0	12.5	2.5	2.5	.0	100.0	42.25
■ 50대 이상	(320)	4.4	9.4	10.3	20.3	2.8	22.8	7.8	8.8	6.6	1.3	5.6	100.0	44.44
■ 거주기간	(12)	.0	8.3	16.7	16.7	16.7	8.3	8.3	8.3	8.3	.0	8.3	100.0	45.83
■ 5년 미만	(18)	.0	16.7	22.2	11.1	.0	22.2	5.6	16.7	5.6	.0	.0	100.0	40.00
■ 5~10년	(36)	.0	11.1	13.9	38.9	5.6	13.9	11.1	.0	.0	2.8	2.8	100.0	36.67
■ 10~20년	(322)	4.3	9.0	9.6	20.8	3.1	23.3	7.8	9.6	6.2	1.2	5.0	100.0	44.41
■ 20년 이상														
■ 어촌계원여부	(188)	4.3	7.4	9.6	21.8	3.7	22.9	6.9	11.2	5.9	1.1	5.3	100.0	45.05
■ 어촌계원비	(200)	3.0	11.5	12.0	22.0	3.5	21.0	9.0	7.0	5.5	1.5	4.0	100.0	42.10

【 표 11 】 사업의 지역 자연재해 방지에 기여도

[문 11]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어촌 지역의 자연재해(해일, 침식, 퇴적 등) 방지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별로기여 하지못함	2)	3)	4)	매우크게 기여하고 있음	*비기여*	*보통*	*기여*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500)	4.6	8.4	35.8	31.6	19.6	13.0	35.8	51.2	100.0	63.30
■ 지 역 ■											
기 장 군 시	(25)	.0	4.0	44.0	36.0	16.0	4.0	44.0	52.0	100.0	66.00
상 적 안 시	(15)	.0	.0	13.3	60.0	26.7	.0	13.3	86.7	100.0	78.33
태 안 수 시	(30)	13.3	10.0	40.0	26.7	10.0	23.3	40.0	36.7	100.0	52.50
여 수 시	(41)	4.9	7.3	48.8	22.0	17.1	12.2	48.8	39.0	100.0	59.76
고 흥 과 면	(30)	3.3	6.7	36.7	33.3	20.0	10.0	36.7	53.3	100.0	65.00
고 흥 리 안 화 면	(35)	.0	11.4	28.6	37.1	22.9	11.4	28.6	60.0	100.0	67.86
고 흥 리 안 화 면	(25)	8.0	12.0	32.0	20.0	28.0	20.0	32.0	48.0	100.0	62.00
완 도 리 안 화 면	(31)	.0	16.1	22.6	35.5	25.8	16.1	22.6	61.3	100.0	67.74
신 안 리 안 화 면	(5)	.0	20.0	20.0	40.0	20.0	20.0	20.0	60.0	100.0	65.00
신 안 리 안 화 면	(21)	4.8	4.8	52.4	19.0	19.0	9.5	52.4	38.1	100.0	60.71
신 안 리 안 화 면	(20)	.0	25.0	25.0	40.0	10.0	25.0	25.0	50.0	100.0	58.75
장 흥 리 안 화 면	(30)	.0	20.0	30.0	30.0	20.0	20.0	30.0	50.0	100.0	62.50
물 흥 리 안 화 면	(20)	5.0	5.0	55.0	25.0	10.0	10.0	55.0	35.0	100.0	57.50
마 산 시	(30)	10.0	6.7	33.3	36.7	13.3	16.7	33.3	50.0	100.0	59.17
사 천 시	(40)	7.5	2.5	30.0	30.0	30.0	10.0	30.0	60.0	100.0	68.13
통 영 군	(5)	20.0	.0	40.0	20.0	20.0	20.0	40.0	40.0	100.0	55.00
남 해 리 안 화 면	(60)	3.3	.0	36.7	38.3	21.7	3.3	36.7	60.0	100.0	68.75
남 해 리 안 화 면	(25)	8.0	12.0	32.0	24.0	24.0	20.0	32.0	48.0	100.0	61.00
남 해 주 시	(12)	8.3	8.3	58.3	25.0	.0	16.7	58.3	25.0	100.0	50.00
■ 성 별 ■											
남 자	(349)	3.7	8.9	31.2	33.5	22.6	12.6	31.2	56.2	100.0	65.62
여 자	(151)	6.6	7.3	46.4	27.2	12.6	13.9	46.4	39.7	100.0	57.95
■ 연 령 ■											
19 - 29 세	(15)	6.7	20.0	53.3	13.3	6.7	26.7	53.3	20.0	100.0	48.33
30 대	(21)	9.5	9.5	42.9	23.8	14.3	19.0	42.9	38.1	100.0	55.95
40 대	(48)	4.2	14.6	29.2	41.7	10.4	18.8	29.2	52.1	100.0	59.90
50 대 이상	(416)	4.3	7.2	35.6	31.5	21.4	11.5	35.6	52.9	100.0	64.60
■ 거 주 기 간 ■											
5 년 미만	(17)	.0	23.5	52.9	23.5	.0	23.5	52.9	23.5	100.0	50.00
5 ~ 10 년	(20)	.0	10.0	45.0	20.0	25.0	10.0	45.0	45.0	100.0	65.00
10 ~ 20 년	(43)	9.3	4.7	32.6	41.9	11.6	14.0	32.6	53.5	100.0	60.47
20 년 이상	(420)	4.5	8.1	35.0	31.4	21.0	12.6	35.0	52.4	100.0	64.05
■ 어 촌 계 원 ■											
어 촌 계 원	(243)	4.5	8.2	33.7	32.5	21.0	12.8	33.7	53.5	100.0	64.30
비 어 촌 계 원	(257)	4.7	8.6	37.7	30.7	18.3	13.2	37.7	49.0	100.0	62.35

【 표 12-1 】 사업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

[문 12-1]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사회·문화·환경 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례수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500)	1.8	7.2	30.4	37.6	23.0	9.0	30.4	60.6	100.0	68.20
■ 지역 ■											
지시군	(25)	.0	.0	28.0	52.0	20.0	.0	28.0	72.0	100.0	73.00
자치군	(15)	.0	13.3	13.3	53.3	20.0	13.3	13.3	73.3	100.0	70.00
태안군	(30)	3.3	6.7	43.3	30.0	16.7	10.0	43.3	46.7	100.0	62.50
여수시	(41)	.0	2.4	36.6	34.1	26.8	2.4	36.6	61.0	100.0	71.34
고흥군	(30)	10.0	3.3	23.3	46.7	16.7	13.3	23.3	63.3	100.0	64.17
고흥군	(35)	.0	2.9	42.9	31.4	22.9	2.9	42.9	54.3	100.0	68.57
완도군	(25)	.0	20.0	24.0	24.0	32.0	20.0	24.0	56.0	100.0	67.00
완도군	(31)	.0	6.5	29.0	19.4	45.2	6.5	29.0	64.5	100.0	75.81
신안군	(5)	.0	.0	.0	60.0	40.0	.0	.0	100.0	100.0	85.00
신안군	(21)	4.8	14.3	23.8	38.1	19.0	19.0	23.8	57.1	100.0	63.10
진안군	(20)	.0	5.0	10.0	65.0	20.0	5.0	10.0	85.0	100.0	75.00
장흥군	(30)	.0	6.7	33.3	33.3	26.7	6.7	33.3	60.0	100.0	70.00
홍도군	(20)	.0	5.0	35.0	35.0	25.0	5.0	35.0	60.0	100.0	70.00
마산시	(30)	3.3	13.3	26.7	33.3	23.3	16.7	26.7	56.7	100.0	65.00
사동면	(40)	2.5	7.5	27.5	40.0	22.5	10.0	27.5	62.5	100.0	68.13
남해군	(5)	20.0	.0	40.0	.0	40.0	20.0	40.0	40.0	100.0	60.00
남해군	(60)	.0	5.0	35.0	40.0	20.0	5.0	35.0	60.0	100.0	68.75
해남시	(25)	4.0	12.0	28.0	44.0	12.0	16.0	28.0	56.0	100.0	62.00
제주시	(12)	.0	16.7	41.7	41.7	.0	16.7	41.7	41.7	100.0	56.25
■ 성별 ■											
남자	(349)	1.7	5.7	30.1	37.8	24.6	7.4	30.1	62.5	100.0	69.48
여자	(151)	2.0	10.6	31.1	37.1	19.2	12.6	31.1	56.3	100.0	65.23
■ 연령 ■											
19-29세	(15)	6.7	.0	60.0	33.3	.0	6.7	60.0	33.3	100.0	55.00
30-39세	(21)	.0	9.5	52.4	28.6	9.5	9.5	52.4	38.1	100.0	59.52
40-49세	(48)	.0	4.2	29.2	39.6	27.1	4.2	29.2	66.7	100.0	72.40
50대 이상	(416)	1.9	7.7	28.4	38.0	24.0	9.6	28.4	62.0	100.0	68.63
■ 거주기간 ■											
5년 미만	(17)	.0	17.6	23.5	23.5	35.3	17.6	23.5	58.8	100.0	69.12
5~10년	(20)	.0	5.0	35.0	25.0	35.0	5.0	35.0	60.0	100.0	72.50
10~20년	(43)	4.7	4.7	44.2	32.6	14.0	9.3	44.2	46.5	100.0	61.63
20년 이상	(420)	1.7	7.1	29.0	39.3	22.9	8.8	29.0	62.1	100.0	68.63
■ 어촌계원여부 ■											
어촌계원	(243)	1.6	6.6	29.6	37.4	24.7	8.2	29.6	62.1	100.0	69.24
비어촌계원	(257)	1.9	7.8	31.1	37.7	21.4	9.7	31.1	59.1	100.0	67.22

【 표 12-2 】 사업으로 인한 지역 이미지 향상

[문 12-2]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사회·문화·환경 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례수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전 체 ■	(500)	1.8	4.6	27.6	42.0	24.0	6.4	27.6	66.0	100.0	70.45
■ 지역 ■											
지 기	(25)	.0	.0	28.0	44.0	28.0	.0	28.0	72.0	100.0	75.00
상 적	(15)	.0	6.7	20.0	66.7	6.7	6.7	20.0	73.3	100.0	68.33
태 안	(30)	.0	6.7	33.3	26.7	33.3	6.7	33.3	60.0	100.0	71.67
여 수	(41)	2.4	4.9	19.5	48.8	24.4	7.3	19.5	73.2	100.0	71.95
고 흥	(30)	3.3	10.0	20.0	50.0	16.7	13.3	20.0	66.7	100.0	66.67
고 흥	(35)	.0	.0	31.4	31.4	37.1	.0	31.4	68.6	100.0	76.43
완 도	(25)	4.0	.0	24.0	36.0	36.0	4.0	24.0	72.0	100.0	75.00
완 도	(31)	.0	6.5	35.5	16.1	41.9	6.5	35.5	58.1	100.0	73.39
신 안	(5)	.0	.0	20.0	60.0	20.0	.0	20.0	80.0	100.0	75.00
신 안	(21)	.0	9.5	19.0	52.4	19.0	9.5	19.0	71.4	100.0	70.24
진 안	(20)	.0	.0	20.0	60.0	20.0	.0	20.0	80.0	100.0	75.00
장 울	(30)	.0	6.7	16.7	53.3	23.3	6.7	16.7	76.7	100.0	73.33
장 울	(20)	.0	5.0	45.0	30.0	20.0	5.0	45.0	50.0	100.0	66.25
마 사	(30)	.0	6.7	36.7	43.3	13.3	6.7	36.7	56.7	100.0	65.83
사 통	(40)	.0	5.0	27.5	42.5	25.0	5.0	27.5	67.5	100.0	71.88
남 해	(5)	20.0	20.0	20.0	20.0	20.0	40.0	20.0	40.0	100.0	50.00
남 해	(60)	3.3	1.7	30.0	46.7	18.3	5.0	30.0	65.0	100.0	68.75
제 주	(25)	4.0	4.0	32.0	44.0	16.0	8.0	32.0	60.0	100.0	66.00
제 주	(12)	16.7	8.3	33.3	25.0	16.7	25.0	33.3	41.7	100.0	54.17
■ 성 별 ■											
남 자	(349)	1.7	3.7	26.4	41.8	26.4	5.4	26.4	68.2	100.0	71.85
여 자	(151)	2.0	6.6	30.5	42.4	18.5	8.6	30.5	60.9	100.0	67.22
■ 연 령 ■											
1 9 - 2 9 세	(15)	6.7	.0	26.7	53.3	13.3	6.7	26.7	66.7	100.0	66.67
3 0 대	(21)	4.8	.0	28.6	47.6	19.0	4.8	28.6	66.7	100.0	69.05
4 0 대	(48)	.0	.0	29.2	52.1	18.8	.0	29.2	70.8	100.0	72.40
5 0 대 이 상	(416)	1.7	5.5	27.4	40.1	25.2	7.2	27.4	65.4	100.0	70.43
■ 거 주 기 간 ■											
5 년 미 만	(17)	.0	.0	29.4	47.1	23.5	.0	29.4	70.6	100.0	73.53
5 ~ 1 0 년	(20)	.0	.0	30.0	30.0	40.0	.0	30.0	70.0	100.0	77.50
1 0 ~ 2 0 년	(43)	4.7	2.3	34.9	44.2	14.0	7.0	34.9	58.1	100.0	65.12
2 0 년 이 상	(420)	1.7	5.2	26.7	42.1	24.3	6.9	26.7	66.4	100.0	70.54
■ 어 촌 계 원 ■											
어 촌 계 원	(243)	1.6	5.8	26.7	39.9	25.9	7.4	26.7	65.8	100.0	70.68
비 어 촌 계 원	(257)	1.9	3.5	28.4	44.0	22.2	5.4	28.4	66.1	100.0	70.23

【 표 12-3 】 사업의 지역주민의 자긍심 향상에 기여

[문 12-3]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사회·문화·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례수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전 체 ■	(500)	1.6	5.2	33.8	35.0	24.4	6.8	33.8	59.4	100.0	68.85
■ 지역 ■											
지시군	(25)	.0	4.0	36.0	40.0	20.0	4.0	36.0	60.0	100.0	69.00
자치군	(15)	.0	13.3	26.7	46.7	13.3	13.3	26.7	60.0	100.0	65.00
태안군	(30)	.0	3.3	43.3	36.7	16.7	3.3	43.3	53.3	100.0	66.67
여수시	(41)	.0	4.9	51.2	19.5	24.4	4.9	51.2	43.9	100.0	65.85
고흥군	(30)	3.3	6.7	36.7	33.3	20.0	10.0	36.7	53.3	100.0	65.00
고흥군	(35)	2.9	.0	31.4	31.4	34.3	2.9	31.4	65.7	100.0	73.57
완도군	(25)	.0	4.0	36.0	24.0	36.0	4.0	36.0	60.0	100.0	73.00
완도군	(31)	.0	9.7	22.6	29.0	38.7	9.7	22.6	67.7	100.0	74.19
신안군	(5)	.0	.0	20.0	40.0	40.0	.0	20.0	80.0	100.0	80.00
진안군	(21)	.0	9.5	38.1	28.6	23.8	9.5	38.1	52.4	100.0	66.67
진안군	(20)	.0	5.0	25.0	55.0	15.0	5.0	25.0	70.0	100.0	70.00
장흥군	(30)	.0	3.3	23.3	53.3	20.0	3.3	23.3	73.3	100.0	72.50
장흥군	(20)	.0	5.0	35.0	40.0	20.0	5.0	35.0	60.0	100.0	68.75
마산시	(30)	.0	13.3	36.7	33.3	16.7	13.3	36.7	50.0	100.0	63.33
사통군	(40)	5.0	.0	27.5	40.0	27.5	5.0	27.5	67.5	100.0	71.25
남해군	(5)	20.0	20.0	40.0	.0	20.0	40.0	20.0	100.0	100.0	45.00
남해군	(60)	3.3	3.3	33.3	31.7	28.3	6.7	33.3	60.0	100.0	69.58
해남시	(25)	.0	8.0	16.0	52.0	24.0	8.0	16.0	76.0	100.0	73.00
해남시	(12)	8.3	.0	66.7	16.7	8.3	8.3	66.7	25.0	100.0	54.17
■ 성별 ■											
남자	(349)	1.7	3.7	31.8	36.1	26.6	5.4	31.8	62.8	100.0	70.56
여자	(151)	1.3	8.6	38.4	32.5	19.2	9.9	38.4	51.7	100.0	64.90
■ 연령 ■											
19-29세	(15)	6.7	6.7	40.0	33.3	13.3	13.3	40.0	46.7	100.0	60.00
30-39세	(21)	4.8	14.3	42.9	28.6	9.5	19.0	42.9	38.1	100.0	55.95
40-49세	(48)	2.1	2.1	27.1	47.9	20.8	4.2	27.1	68.8	100.0	70.83
50대 이상	(416)	1.2	5.0	33.9	33.9	26.0	6.3	33.9	59.9	100.0	69.59
■ 거주기간 ■											
5년 미만	(17)	.0	5.9	29.4	47.1	17.6	5.9	29.4	64.7	100.0	69.12
5~10년	(20)	.0	.0	40.0	30.0	30.0	.0	40.0	60.0	100.0	72.50
10~20년	(43)	4.7	4.7	39.5	37.2	14.0	9.3	39.5	51.2	100.0	62.79
20년 이상	(420)	1.4	5.5	33.1	34.5	25.5	6.9	33.1	60.0	100.0	69.29
■ 어촌계원여부 ■											
어촌계원	(243)	1.6	3.7	32.9	36.2	25.5	5.3	32.9	61.7	100.0	70.06
비어촌계원	(257)	1.6	6.6	34.6	33.9	23.3	8.2	34.6	57.2	100.0	67.70

【 표 12-4 】 사업의 마을 전통문화 발굴 보전에 기여

[문 12-4]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사회·문화·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례수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500)	5.0	9.6	30.0	33.2	22.2	14.6	30.0	55.4	100.0	64.50
■ 지역 ■											
자치사무장	(25)	8.0	.0	32.0	40.0	20.0	8.0	32.0	60.0	100.0	66.00
사무장	(15)	.0	20.0	26.7	33.3	20.0	20.0	26.7	53.3	100.0	63.33
사무장	(30)	6.7	6.7	46.7	23.3	16.7	13.3	46.7	40.0	100.0	59.17
사무장	(41)	4.9	9.8	24.4	34.1	26.8	14.6	24.4	61.0	100.0	67.07
사무장	(30)	6.7	3.3	36.7	33.3	20.0	10.0	36.7	53.3	100.0	64.17
사무장	(35)	2.9	11.4	31.4	22.9	31.4	14.3	31.4	54.3	100.0	67.14
사무장	(25)	12.0	.0	16.0	40.0	32.0	12.0	16.0	72.0	100.0	70.00
사무장	(31)	3.2	9.7	25.8	19.4	41.9	12.9	25.8	61.3	100.0	71.77
사무장	(5)	.0	.0	20.0	40.0	40.0	.0	20.0	80.0	100.0	80.00
사무장	(21)	.0	19.0	28.6	28.6	23.8	19.0	28.6	52.4	100.0	64.29
사무장	(20)	.0	10.0	20.0	60.0	10.0	10.0	20.0	70.0	100.0	67.50
사무장	(30)	.0	10.0	30.0	30.0	30.0	10.0	30.0	60.0	100.0	70.00
사무장	(20)	5.0	15.0	40.0	30.0	10.0	20.0	40.0	40.0	100.0	56.25
사무장	(30)	10.0	16.7	20.0	40.0	13.3	26.7	20.0	53.3	100.0	57.50
사무장	(40)	7.5	7.5	25.0	35.0	25.0	15.0	25.0	60.0	100.0	65.63
사무장	(5)	20.0	.0	60.0	.0	20.0	20.0	60.0	20.0	100.0	50.00
사무장	(60)	5.0	8.3	31.7	38.3	16.7	13.3	31.7	55.0	100.0	63.33
사무장	(25)	.0	20.0	40.0	28.0	12.0	20.0	40.0	40.0	100.0	58.00
사무장	(12)	8.3	8.3	33.3	41.7	8.3	16.7	33.3	50.0	100.0	58.33
■ 성 별 ■											
성남여	(349)	3.7	8.6	28.4	34.7	24.6	12.3	28.4	59.3	100.0	66.98
성남여	(151)	7.9	11.9	33.8	29.8	16.6	19.9	33.8	46.4	100.0	58.77
■ 연 령 ■											
19-29세	(15)	20.0	26.7	33.3	20.0	.0	46.7	33.3	20.0	100.0	38.33
30-40대	(21)	9.5	23.8	38.1	28.6	.0	33.3	38.1	28.6	100.0	46.43
40-50대	(48)	6.3	4.2	31.3	41.7	16.7	10.4	31.3	58.3	100.0	64.58
50대 이상	(416)	4.1	8.9	29.3	32.9	24.8	13.0	29.3	57.7	100.0	66.35
■ 거 주 기 간 ■											
5년 미만	(17)	.0	17.6	29.4	47.1	5.9	17.6	29.4	52.9	100.0	60.29
5~10년	(20)	.0	15.0	30.0	40.0	15.0	15.0	30.0	55.0	100.0	63.75
10~20년	(43)	14.0	11.6	39.5	20.9	14.0	25.6	39.5	34.9	100.0	52.33
20년 이상	(420)	4.5	8.8	29.0	33.6	24.0	13.3	29.0	57.6	100.0	65.95
■ 어촌계원여부 ■											
어촌계원	(243)	5.3	8.6	30.0	31.7	24.3	14.0	30.0	56.0	100.0	65.23
비어촌계원	(257)	4.7	10.5	30.0	34.6	20.2	15.2	30.0	54.9	100.0	63.81

【 표 12-5 】 사업으로 인한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

[문 12-5]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사회·문화·환경 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례수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전 체 ■	(500)	3.0	5.2	25.8	39.0	27.0	8.2	25.8	66.0	100.0	70.45
■ 지역 ■											
자치시군면	(25)	4.0	4.0	12.0	48.0	32.0	8.0	12.0	80.0	100.0	75.00
상장척안수과도안면	(15)	.0	13.3	26.7	40.0	20.0	13.3	26.7	60.0	100.0	66.67
태안군시면	(30)	3.3	6.7	40.0	26.7	23.3	10.0	40.0	50.0	100.0	65.00
여수시면	(41)	2.4	9.8	34.1	26.8	26.8	12.2	34.1	53.7	100.0	66.46
고흥군과도안면	(30)	3.3	3.3	20.0	53.3	20.0	6.7	20.0	73.3	100.0	70.83
고흥군화면	(35)	2.9	8.6	28.6	22.9	37.1	11.4	28.6	60.0	100.0	70.71
함평군안남면	(25)	4.0	20.0	12.0	24.0	40.0	24.0	12.0	64.0	100.0	69.00
완도군보길면	(31)	.0	.0	38.7	22.6	38.7	.0	38.7	61.3	100.0	75.00
신안군안남면	(5)	.0	.0	20.0	40.0	40.0	.0	20.0	80.0	100.0	80.00
진안군안남면	(21)	.0	4.8	28.6	47.6	19.0	4.8	28.6	66.7	100.0	70.24
진안군노곡면	(20)	.0	.0	15.0	65.0	20.0	.0	15.0	85.0	100.0	76.25
장흥군진안면	(30)	.0	10.0	13.3	43.3	33.3	10.0	13.3	76.7	100.0	75.00
함평군진안면	(20)	10.0	.0	35.0	40.0	15.0	10.0	35.0	55.0	100.0	62.50
마산시시면	(30)	3.3	3.3	20.0	46.7	26.7	6.7	20.0	73.3	100.0	72.50
사통군영선면	(40)	5.0	2.5	27.5	35.0	30.0	7.5	27.5	65.0	100.0	70.63
남해군장선면	(5)	20.0	.0	20.0	40.0	20.0	20.0	20.0	60.0	100.0	60.00
남해군장선면	(60)	.0	.0	31.7	43.3	25.0	.0	31.7	68.3	100.0	73.33
해남군장선면	(25)	8.0	8.0	16.0	48.0	20.0	16.0	16.0	68.0	100.0	66.00
제주시	(12)	8.3	.0	25.0	58.3	8.3	8.3	25.0	66.7	100.0	64.58
■ 성별 ■											
남자	(349)	2.0	4.0	23.8	40.1	30.1	6.0	23.8	70.2	100.0	73.07
여자	(151)	5.3	7.9	30.5	36.4	19.9	13.2	30.5	56.3	100.0	64.40
■ 연령 ■											
19-29세	(15)	6.7	6.7	40.0	40.0	6.7	13.3	40.0	46.7	100.0	58.33
30-39세	(21)	9.5	4.8	38.1	33.3	14.3	14.3	38.1	47.6	100.0	59.52
40-49세	(48)	.0	6.3	16.7	52.1	25.0	6.3	16.7	77.1	100.0	73.96
50대 이상	(416)	2.9	5.0	25.7	37.7	28.6	7.9	25.7	66.3	100.0	71.03
■ 거주기간 ■											
5년 미만	(17)	5.9	5.9	29.4	52.9	5.9	11.8	29.4	58.8	100.0	61.76
5~10년	(20)	.0	5.0	35.0	25.0	35.0	5.0	35.0	60.0	100.0	72.50
10~20년	(43)	2.3	7.0	32.6	37.2	20.9	9.3	32.6	58.1	100.0	66.86
20년 이상	(420)	3.1	5.0	24.5	39.3	28.1	8.1	24.5	67.4	100.0	71.07
■ 어촌계원여부 ■											
어촌계원	(243)	2.9	4.1	26.3	38.7	28.0	7.0	26.3	66.7	100.0	71.19
비어촌계원	(257)	3.1	6.2	25.3	39.3	26.1	9.3	25.3	65.4	100.0	69.75

개발사업을 하고 호보를 해주어야한다
개발을빨리완공해야한다
개발이 제일 안 되서 개발이 많이 필요하다.
개발하고나면 좋은면이 더 많을것이다
개통이 빨리되어야 한다
갯벌사업을했으면
계획대로 잘진행되면 좋겠음
계획된사항이빨리진행되는게중요하다
계획보아직일이않다
골골루 분배되어야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친다
공장등을 세우는데 생태계가 파괴되고 쓰레기방치를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어야한다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
관광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주민이 잘살았으면한다
관광지로 활성화가 되어야한다
굴 양식 등을 할수 있게 해서 어민들 소득 증가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
굴양식하게개발바람
그마을에맞는것을주어야한다
그쪽지역에는거주주민들도많지않은지역이라낚시관광사업으로조성하기엔효율적인사업이못된다고본다
기계화
같이흰하게푼린점에선좋다
꼭개발해야한다
꾸준히지원해야한다
끈임없이노력필요하다
나무를관광객들에머물수있도록하면좋겠다
노력해야한다 주어진일
농어민에게많은지원바람
다리를 노아주었으면한다
대대적으로개발사업해서소득향상했으면
도로 상수도
도로건설했으면
도로를 제대로 완고하게 해야된다
도로를먼저만들어야한다
마우리를 잘해주고 구름다리를 놓아주면 관광객이나 낚시꾼이 많이 올것같다
마을에 젊은 사람들아 많이 들어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면이많이도움을될것이다
모든주민이함께참가할수있게모두에게개방하라
물양장에서 진림로를 확장해야한다
미래를위해서충분한개발지원필요
바다에 어초를 많이 넣어 주었으면
반지락을 하는데 자연적으로 씨앗이난는데 기름유출로 다른데서 씨앗을 가져와야 하기에 자금이 많이필요하다
반지락 교막사업 신경써줄것
발전이많이되면
방파재를 안전하게 해주어야한다
방파제 높이를 높이면 좋겠다.
방파제 시설을 다시 건설해야 한다.
방파제를넓혀달라
방파재와 물항장을 해주길
배도 없고 관심없다
부분적으로하는사업말하기가곤란하다
부실공사로 업자만 배부르게하지 말고 고기가 잘살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올수 있게
분리수거안된다 공공질서인식부족
빠른완공
사업개발빨리했으면함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사업비를 증액했으면 좋겠다
사업비를 더해주어야한다
사업시행을 홍보를 해서 지역민이 갈등이 없도록 해주길
사업으로 인한 개선의 효과가 조금 미흡하다. 가시적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사업을지역개발에만써라
사업자가 자기이익만 챙기지말고 어촌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사업추진되서제대로되야한다
사업하다보면부정적인문제도발생되나문제없이잘진행이되면좋겠다
사전에미리지역민과모든사람의 의견을듣고했으면...
생산신경요
생활에많은도움된다

서민위해서
선지리에서건문까지해안도로개발필요하다
선착장 해안도로를 늘려달라
선착장건설
선착장과 후안도로를 해주길
선착장의 확장 개선이 필요하다.
선창을 만들어 주어야한다
소규모 마을의 민원(방파제 등 어항시설 개선)도 잘 살펴서 해결해 주면 좋겠다.
소득사업이 있어야한다
소원면전체개발을해라.
수도 사업빨리 와공해주기를
수심이얕으니 선착장을길게늘려달라
시도비지원으로부족하고국비가 지원되어야충분히사업진행이가능할걸로 본다
시작은 있는데 관리가 안된다 그래서 투자효과가 감소된다.
신속하게 착수하길 바란다.
실질적개발사업해야함
알차게 했으면함
애로사항:원75세로 노동력부족 출자금이 회수되었으면...
어갓판매가격상승하면좋겠다낙지등뉴스때문에
어민들위해서예산을충분해서미비한점개선하면좋겠다
어민들이 살아가는데 도움과 지도와 기술문제와 생산성이 이루어져야한다 투자과정에서 오염과 미연의 방지
어민들이활용할수있는길 조성시급필요[
어민의견이 반영이 적다
어민의판로가잘되면좋겠다소득증대
어장에 모래투입할수있는 자금지원 필요
어촌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개발사업이 필요하다.
어촌 발전하기를바란다
어촌 복지에 좀더 협조를 해주었음 좋겠고 예산을 좀더 늘려 주었음 좋겠다.
어촌개발에더힘써주었으면
어촌개발에 대한 홍보를 많이하라.
어촌계원들의의견반영꼭필요하다
어촌계장 면장 정부등모두토론해서해야한다
어촌계통합에도움
어촌도 잘살게 국가가 더 힘써달라
어촌발전
어촌에서는문화복지시설들특히목욕탕들이용하려면5킬로떨어진서포면까지가야함주민들의숙원사항임
어촌은너무낙후되도선진화되도안되고환경을우선중요시해서개발되는것이가장중요하다
어항을 크게 발전시켜야한다.
연중지속적으로행사요
예산부족
예산을집중투자해서 쓸모있게 집행했으면
예산이 좀 더 늘었으면 좋겠다.
예산이더많았으면함
예산부터 말만하고 시행되지않고 있다
완도는70%는미역다시마주로생산하는데생산가에도움이되면좋겠다
외곽만개발해서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는데 회진면을 개발해야 관광객이 들어와 머물고 가서 어촌활성화될것
외부 방문객으로 인한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요망.
요양원과 학교시설이 잘되었으면한다
유류피해로 굴 조개로 생계유지하는 서민이 70%인데 대기업과 정부가 대책을 외면하면서 누구를위한개발인
의견수렴필요
의견없다
자금을늘려라
자금지원필요
자금충분지원바람
자본만들이면관광지로개발되면좋겠다
자연보호로해안도로못내게해서 불편
자연을 훼손하지않고 개발이되어야한다
자연을보존하는방향에서자연을위한개발을했으면바람
자연재해때 피해보상액을 충분하게 지원
잘되었으면
잘해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게 개발사업이 많이 도움되었으면
저부지원이충분하면
전북매매지를많이주면..
전철이 들어와서 교통이 편리하면 관광객이 늘어날것이다
정부가 백프로 지원해주시기를
정부에서예산을충분히
정부에서자금이중단되지않고지속적으로지원되어사업충만없이빨리완공되길바란다
정부에 특수한 지원대책이필요함

정부예산부족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바란다.
정부지원요
정부지원을 더해주면 도로를 좋게해야한다
정확개발을해서어민에게도움주면좋겠다
제대로 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제해대비중점
조합원지원해야한다
좁은길에 낚시꾼들이 주차하고 쓰레기투기등 전혀도움이 안된다
종합개발계획시전체주민의의견반영희망예전예일부의견반영하여실패한적있다
종합개발도좋지만여객선의교통수단이10년전보다줄었다면의불일보기가어렵다
종합개발사업에 주민참여의 기회가 많으면 좋겠다.
주민공청회필요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해서 사업실행을 해야겠다
주민들이 서로 양보해서 개발을 잘 해야된다.
주민들이살기편하게사업을하면좋겠다
축성리는방파제준설공사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많아야 한다
지방현지답사해야한다 지방에맞는위치지리등도움이안됨
지역 발전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지역균형개발
지역민에게서로호응해서부가가치를올려야한다
지역민중어촌계등사람의불평이있고지역주민들은대다수빨리사업이진행되기를희망하고있다
지역서민이개방적이면좋겠다
지역에 발생돼야
지역여론수렴 특성사업 특산물소득증대
지역주민과 소통을 잘하면 좋겠음
지역주민참여하는프로그램
지원규모을조금확대해주었으면
지원금 부족함
집행과정이나의견수렴하는데 소수의견보다 전체지역민의견수렴이안됨
처음계획대로안되고 변경되거나 중단하지말것
친환경쪽으로개발필요하다지역민들의견을받아들이고의견을말할기회줘야하나전혀그렇지못함개발에대해부정적 큰배들 때문에 어업에 방해를 받는다.
큰틀에서개발을하라 신안중도짱둥이다리처럼.거처가는관광지보다쉬어가는관광지를만들라.관광농업으로전환 타당성을조사해서해야하는데 어장을황폐화시킨다
대풍예방책
특정지역민의 의견수렴하에 진행해야하는데 행정적으로 진행하려한다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균일한 지원
폐자제 요임시건물이 천막등 널부러져있어 아주보기싫다. 존 돼있는것 잘활용해야한다.철저히 감시철거해야 필요없는 도로포장과 팔각정과 복지회관이있어서 예산 낭비가많다
하동군인접지역이라상당히오지인데지역사업을많이하면마을이많이발전될수있을걸로기대를많이한다
한곳에 치우치지말고 골골로 개발해주길
항구에 주민보호시설을 설치하면 좋겠다.
해녀들육성시급하다
해안도로가 공사에서 여수까지 공사가 불투명하다
해양과 생태계사업 관심갖게할것 인재양성
해일대비항만건립쓰레기처리기관필요회관건립필요
행정구역이 단축되어야한다
해안도로를마져연결해달라
현실에맞는행정이필요
홍보부족
홍보부족이다
홍보와 사업활성화필요
확고부동하게해야한다
환경문제
환경이 깨끗하면 좋겠다
활성화되었으면

6. 어촌종합개발사업 관리 공무원

【 응답자 특성 표 】

	사례수	%
■ 전 체 ■	20	100.0%
■ 지 서 역 별 ■ ■ 해 해 권 ■ ■ 남 동 해 권 ■	5 11 4	25.0% 55.0% 20.0%
■ 제 주 지 역 여 부 ■ ■ 제 주 이 외 주 ■	18 2	90.0% 10.0%
■ 사 업 내 용 이 해 ■ ■ 잘 이 해 ■	20	100.0%
■ 투 자 비 적 절 성 ■ ■ 부 통 ■ ■ 과 통 다 ■	3 15 1	15.8% 78.9% 5.3%

【 표 1 】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

[문 1]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례수	이해하고 있다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	*잘이해*	계	*평균*
		%	%	%		
■ 전 체 ■	(20)	30.0	70.0	100.0	100.0	92.50
■ 지 서 역 별 ■ ■ 해 해 권 ■ ■ 남 동 해 권 ■	(5) (11) (4)	40.0 27.3 25.0	60.0 72.7 75.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0.00 93.18 93.75
■ 제 주 지 역 여 부 ■ ■ 제 주 이 외 주 ■	(18) (2)	33.3 .0	66.7 100.0	100.0 100.0	100.0 100.0	91.67 100.00
■ 사 업 내 용 이 해 ■ ■ 잘 이 해 ■	(20)	30.0	70.0	100.0	100.0	92.50
■ 투 자 비 적 절 성 ■ ■ 부 통 ■ ■ 과 통 다 ■	(3) (15) (1)	33.3 26.7 .0	66.7 73.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1.67 93.33 100.00

【 표 2 】 사업 추진방법에 대한 이해

[문 2]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방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사례수	보통	이해하고 있다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	*보통*	*잘이해*	계	*평균*
		%	%	%	%	%		
■ 전 체 ■	(20)	10.0	35.0	55.0	10.0	90.0	100.0	86.25
■ 지 서 역 별 ■ ■ 해 해 권 ■ ■ 남 동 해 권 ■	(5) (11) (4)	20.0 9.1 .0	40.0 36.4 25.0	40.0 54.5 75.0	20.0 9.1 .0	80.0 90.9 100.0	100.0 100.0 100.0	80.00 86.36 93.75
■ 제 주 지 역 여 부 ■ ■ 제 주 이 외 주 ■	(18) (2)	11.1 .0	33.3 50.0	55.6 50.0	11.1 .0	88.9 100.0	100.0 100.0	86.11 87.50
■ 사 업 내 용 이 해 ■ ■ 잘 이 해 ■	(20)	10.0	35.0	55.0	10.0	90.0	100.0	86.25
■ 투 자 비 적 절 성 ■ ■ 부 통 ■ ■ 과 통 다 ■	(3) (15) (1)	.0 6.7 .0	66.7 26.7 100.0	33.3 66.7 .0	.0 6.7 .0	100.0 93.3 100.0	100.0 100.0 100.0	83.33 90.00 75.00

【 표 3 】 사업 투자비의 적절성

[문 3]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투자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적당하다	많다	모름/ 무응답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전 체 ■	(20)	5.0	10.0	75.0	5.0	5.0	15.0	75.0	5.0	100.0	46.05
■ 지 서 역 별 ■ ■ 해 해 권 ■ ■ 단 단 권 ■	(5) (11) (4)	20.0 .0 .0	.0 18.2 .0	60.0 72.7 100.0	.0 9.1 .0	20.0 .0 .0	20.0 18.2 .0	60.0 72.7 100.0	.0 9.1 .0	100.0 100.0 100.0	37.50 47.73 50.00
■ 제 주 지 역 여 부 ■ ■ 제 주 이 외 주 ■	(18) (2)	5.6 .0	11.1 .0	72.2 100.0	5.6 .0	5.6 .0	16.7 .0	72.2 100.0	5.6 .0	100.0 100.0	45.59 50.00
■ 사 업 내 용 이 해 ■ ■ 잘 이 해 ■	(20)	5.0	10.0	75.0	5.0	5.0	15.0	75.0	5.0	100.0	46.05
■ 투 자 비 적 적 절 성 ■ ■ 부 보 통 ■ ■ 과 다 ■	(3) (15) (1)	33.3 .0 .0	66.7 .0 .0	.0 100.0 .0	.0 .0 100.0	.0 .0 .0	100.0 .0 .0	.0 100.0 .0	.0 .0 100.0	100.0 100.0 100.0	16.67 50.00 75.00

【 표 4 】 대상지 선정 단계의 진행 정도

[문 4]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각 단계별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되었습니까)?

	사례수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전 체 ■	(20)	25.0	30.0	40.0	5.0	25.0	70.0	100.0	78.95
■ 지 서 역 별 ■ ■ 남 해 권 ■ ■ 동 해 권 ■	(5) (11) (4)	20.0 36.4 .0	20.0 45.5 .0	40.0 18.2 100.0	20.0 .0 .0	20.0 36.4 .0	60.0 63.6 100.0	100.0 100.0 100.0	81.25 70.45 100.00
■ 제 주 지 역 여 부 ■ ■ 제 주 이 외 주 ■	(18) (2)	22.2 50.0	27.8 50.0	44.4 .0	5.6 .0	22.2 50.0	72.2 50.0	100.0 100.0	80.88 62.50
■ 사 업 내 용 이 해 ■ ■ 잘 이 해 ■	(20)	25.0	30.0	40.0	5.0	25.0	70.0	100.0	78.95
■ 투 자 비 적 적 절 성 ■ ■ 부 보 통 ■ ■ 과 다 ■	(3) (15) (1)	.0 26.7 100.0	100.0 20.0 .0	.0 53.3 .0	.0 .0 .0	.0 26.7 100.0	100.0 73.3 .0	100.0 100.0 100.0	75.00 81.67 50.00

【 표 4-1 】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단계의 진행 정도

[문 4-1]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각 단계별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되었습니까)?

	사례수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전 체 ■	(20)	10.0	30.0	55.0	5.0	10.0	85.0	100.0	86.84
■ 지 서 역 별 ■ ■ 남 해 권 ■ ■ 동 해 권 ■	(5) (11) (4)	.0 18.2 .0	40.0 36.4 .0	40.0 45.5 100.0	20.0 .0 .0	.0 18.2 .0	80.0 81.8 100.0	100.0 100.0 100.0	87.50 81.82 100.00
■ 제 주 지 역 여 부 ■ ■ 제 주 이 외 주 ■	(18) (2)	5.6 50.0	27.8 50.0	61.1 .0	5.6 .0	5.6 50.0	88.9 50.0	100.0 100.0	89.71 62.50
■ 사 업 내 용 이 해 ■ ■ 잘 이 해 ■	(20)	10.0	30.0	55.0	5.0	10.0	85.0	100.0	86.84
■ 투 자 비 적 적 절 성 ■ ■ 부 보 통 ■ ■ 과 다 ■	(3) (15) (1)	.0 13.3 .0	66.7 20.0 100.0	33.3 66.7 .0	.0 .0 .0	.0 13.3 .0	100.0 86.7 100.0	100.0 100.0 100.0	83.33 88.33 75.00

【 표 4-2 】 시공단계 진행 정도

[문 4-2]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이 각 단계별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되었습니까)?

	사례수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전 체 ■	(20)	10.0	15.0	70.0	5.0	10.0	85.0	100.0	90.79
■ 지 서 역 별 ■ ■ 해 해 권 권 ■ ■ 동 해 권 권 ■	(5) (11) (4)	.0 18.2 .0	20.0 18.2 .0	60.0 63.6 100.0	20.0 .0 .0	.0 18.2 .0	80.0 81.8 100.0	100.0 100.0 100.0	93.75 86.36 100.00
■ 제 주 지 역 여 부 ■ ■ 제 주 이 외 주 ■	(18) (2)	11.1 .0	16.7 .0	66.7 100.0	5.6 .0	11.1 .0	83.3 100.0	100.0 100.0	89.71 100.00
■ 사 업 내 용 이 해 ■ ■ 잘 이 해 ■	(20)	10.0	15.0	70.0	5.0	10.0	85.0	100.0	90.79
■ 투 자 비 적 절 성 ■ ■ 부 보 동 ■ ■ 과 동 다 ■	(3) (15) (1)	.0 13.3 .0	33.3 6.7 100.0	66.7 80.0 .0	.0 .0 .0	.0 13.3 .0	100.0 86.7 100.0	100.0 100.0 100.0	91.67 91.67 75.00

【 표 4-3 】 운영단계 진행 정도

[문 4-3]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이 각 단계별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되었습니까)?

	사례수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전 체 ■	(20)	15.0	35.0	45.0	5.0	15.0	80.0	100.0	82.89
■ 지 서 역 별 ■ ■ 해 해 권 권 ■ ■ 동 해 권 권 ■	(5) (11) (4)	.0 27.3 .0	40.0 27.3 50.0	40.0 45.5 50.0	20.0 .0 .0	.0 27.3 .0	80.0 72.7 100.0	100.0 100.0 100.0	87.50 79.55 87.50
■ 제 주 지 역 여 부 ■ ■ 제 주 이 외 주 ■	(18) (2)	11.1 50.0	33.3 50.0	50.0 .0	5.6 .0	11.1 50.0	83.3 50.0	100.0 100.0	85.29 62.50
■ 사 업 내 용 이 해 ■ ■ 잘 이 해 ■	(20)	15.0	35.0	45.0	5.0	15.0	80.0	100.0	82.89
■ 투 자 비 적 절 성 ■ ■ 부 보 동 ■ ■ 과 동 다 ■	(3) (15) (1)	.0 20.0 .0	66.7 26.7 100.0	33.3 53.3 .0	.0 .0 .0	.0 20.0 .0	100.0 80.0 100.0	100.0 100.0 100.0	83.33 83.33 75.00

【 표 5 】 어촌관광 활동 시설 확충 효과

[문 5]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을 통해 어촌지역의 관광기반시설이 확충되었다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20)	10.0	50.0	25.0	10.0	5.0	10.0	50.0	35.0	100.0	59.21
■ 지 서 역 별 ■ ■ 해 해 권 권 ■ ■ 동 해 권 권 ■	(5) (11) (4)	.0 18.2 .0	40.0 54.5 50.0	40.0 18.2 25.0	20.0 .0 25.0	.0 9.1 .0	.0 18.2 .0	40.0 54.5 50.0	60.0 18.2 50.0	100.0 100.0 100.0	70.00 50.00 68.75
■ 제 주 지 역 여 부 ■ ■ 제 주 이 외 주 ■	(18) (2)	11.1 .0	44.4 100.0	27.8 .0	11.1 .0	5.6 .0	11.1 .0	44.4 100.0	38.9 .0	100.0 100.0	60.29 50.00
■ 사 업 내 용 이 해 ■ ■ 잘 이 해 ■	(20)	10.0	50.0	25.0	10.0	5.0	10.0	50.0	35.0	100.0	59.21
■ 투 자 비 적 절 성 ■ ■ 부 보 동 ■ ■ 과 동 다 ■	(3) (15) (1)	33.3 6.7 .0	66.7 46.7 100.0	.0 26.7 .0	.0 13.3 .0	.0 6.7 .0	33.3 6.7 .0	66.7 46.7 100.0	.0 40.0 .0	100.0 100.0 100.0	41.67 62.50 50.00

【 표 5-1 】 관광편의시설 확충 효과

[문 5-1]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을 통해 어촌지역의 관광기반시설이 확충되었다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전 체 ■	(20)	15.0	45.0	20.0	15.0	5.0	15.0	45.0	35.0	100.0	59.21
■ 지 서 역 별 해 해 권 ■ 남 해 권 동 해 권	(5)	20.0	20.0	40.0	20.0	.0	20.0	20.0	60.0	100.0	65.00
	(11)	18.2	54.5	9.1	9.1	9.1	18.2	54.5	18.2	100.0	52.50
	(4)	.0	50.0	25.0	25.0	.0	.0	50.0	50.0	100.0	68.75
■ 제 주 지 역 여 부 제 주 이 외 주	(18)	16.7	38.9	22.2	16.7	5.6	16.7	38.9	38.9	100.0	60.29
(2)	.0	100.0	.0	.0	.0	.0	.0	100.0	.0	100.0	50.00
■ 사 업 내 용 이 해 잘 이 해	(20)	15.0	45.0	20.0	15.0	5.0	15.0	45.0	35.0	100.0	59.21
■ 투 자 비 적 절 설 부 보 동 과 동 다	(3)	66.7	33.3	.0	.0	.0	66.7	33.3	.0	100.0	33.33
	(15)	6.7	46.7	20.0	20.0	6.7	6.7	46.7	40.0	100.0	64.29
	(1)	.0	100.0	.0	.0	.0	.0	100.0	.0	100.0	50.00

【 표 5-2 】 교통시설 확충 효과

[문 5-2]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을 통해 어촌지역의 관광기반시설이 확충되었다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전 체 ■	(20)	5.0	35.0	30.0	25.0	5.0	5.0	35.0	55.0	100.0	69.74
■ 지 서 역 별 해 해 권 ■ 남 해 권 동 해 권	(5)	.0	40.0	40.0	20.0	.0	.0	40.0	60.0	100.0	70.00
	(11)	9.1	36.4	27.3	18.2	9.1	9.1	36.4	45.5	100.0	65.00
	(4)	.0	25.0	25.0	50.0	.0	.0	25.0	75.0	100.0	81.25
■ 제 주 지 역 여 부 제 주 이 외 주	(18)	5.6	33.3	33.3	22.2	5.6	5.6	33.3	55.6	100.0	69.12
(2)	.0	50.0	.0	50.0	.0	.0	.0	50.0	50.0	100.0	75.00
■ 사 업 내 용 이 해 잘 이 해	(20)	5.0	35.0	30.0	25.0	5.0	5.0	35.0	55.0	100.0	69.74
■ 투 자 비 적 절 설 부 보 동 과 동 다	(3)	33.3	33.3	.0	33.3	.0	33.3	33.3	33.3	100.0	58.33
	(15)	.0	33.3	33.3	26.7	6.7	.0	33.3	60.0	100.0	73.21
	(1)	.0	100.0	.0	.0	.0	.0	100.0	.0	100.0	50.00

【 표 6 】 경관 개선 효과

[문 6]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이 어촌지역의 정주환경이 개선되었다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전 체 ■	(20)	30.0	35.0	35.0	30.0	70.0	100.0	76.25
■ 지 서 역 별 해 해 권 ■ 남 해 권 동 해 권	(5)	60.0	.0	40.0	60.0	40.0	100.0	70.00
	(11)	27.3	45.5	27.3	27.3	72.7	100.0	75.00
	(4)	.0	50.0	50.0	.0	100.0	100.0	87.50
■ 제 주 지 역 여 부 제 주 이 외 주	(18)	33.3	33.3	33.3	33.3	66.7	100.0	75.00
(2)	.0	50.0	50.0	.0	100.0	100.0	100.0	87.50
■ 사 업 내 용 이 해 잘 이 해	(20)	30.0	35.0	35.0	30.0	70.0	100.0	76.25
■ 투 자 비 적 절 설 부 보 동 과 동 다	(3)	66.7	33.3	.0	66.7	33.3	100.0	58.33
	(15)	20.0	33.3	46.7	20.0	80.0	100.0	81.67
	(1)	.0	100.0	.0	.0	100.0	100.0	75.00

【 표 6-1 】 생산기반시설 확충 효과

[문 6-1]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이 어촌지역의 정주환경이 개선되었다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전 체 ■	(20)	30.0	25.0	45.0	30.0	70.0	100.0	78.75
■ 지 서 역 해 해 권 권 ■ ■ 남 동 해 해 권 권 ■	(5) (11) (4)	40.0 27.3 25.0	.0 27.3 25.0	40.0 45.5 50.0	40.0 27.3 25.0	60.0 72.7 75.0	100.0 100.0 100.0	75.00 79.55 81.25
■ 제 주 지 역 여 부 ■ ■ 제 주 이 외 주 ■	(18) (2)	27.8 50.0	27.8 .0	44.4 50.0	27.8 50.0	72.2 50.0	100.0 100.0	79.17 75.00
■ 사 업 내 용 이 해 ■ ■ 잘 이 해 ■	(20)	30.0	25.0	45.0	30.0	70.0	100.0	78.75
■ 투 자 비 적 절 성 ■ ■ 부 보 과 ■ ■ 증 강 ■ ■ 예 방 ■ ■ 다 ■	(3) (15) (1)	66.7 20.0 .0	.0 26.7 100.0	33.3 53.3 .0	66.7 20.0 .0	33.3 80.0 100.0	100.0 100.0 100.0	66.67 83.33 75.00

【 표 6-2 】 생활편의시설 확충 효과

[문 6-2]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이 어촌지역의 정주환경이 개선되었다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전 체 ■	(20)	40.0	10.0	50.0	40.0	60.0	100.0	77.50
■ 지 서 역 해 해 권 권 ■ ■ 남 동 해 해 권 권 ■	(5) (11) (4)	60.0 36.4 25.0	.0 9.1 25.0	40.0 54.5 50.0	60.0 36.4 25.0	40.0 63.6 75.0	100.0 100.0 100.0	70.00 79.55 81.25
■ 제 주 지 역 여 부 ■ ■ 제 주 이 외 주 ■	(18) (2)	38.9 50.0	11.1 .0	50.0 50.0	38.9 50.0	61.1 50.0	100.0 100.0	77.78 75.00
■ 사 업 내 용 이 해 ■ ■ 잘 이 해 ■	(20)	40.0	10.0	50.0	40.0	60.0	100.0	77.50
■ 투 자 비 적 절 성 ■ ■ 부 보 과 ■ ■ 증 강 ■ ■ 예 방 ■ ■ 다 ■	(3) (15) (1)	66.7 26.7 100.0	.0 13.3 .0	33.3 60.0 .0	66.7 26.7 100.0	33.3 73.3 .0	100.0 100.0 100.0	66.67 83.33 50.00

【 표 6-3 】 수산업개반시설 개선 효과

[문 6-3] 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이 어촌지역의 정주환경이 개선되었다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전 체 ■	(20)	25.0	25.0	50.0	25.0	75.0	100.0	81.25
■ 지 서 역 해 해 권 권 ■ ■ 남 동 해 해 권 권 ■	(5) (11) (4)	60.0 18.2 .0	.0 27.3 50.0	40.0 54.5 50.0	60.0 18.2 .0	40.0 81.8 100.0	100.0 100.0 100.0	70.00 84.09 87.50
■ 제 주 지 역 여 부 ■ ■ 제 주 이 외 주 ■	(18) (2)	27.8 .0	22.2 50.0	50.0 50.0	27.8 .0	72.2 100.0	100.0 100.0	80.56 87.50
■ 사 업 내 용 이 해 ■ ■ 잘 이 해 ■	(20)	25.0	25.0	50.0	25.0	75.0	100.0	81.25
■ 투 자 비 적 절 성 ■ ■ 부 보 과 ■ ■ 증 강 ■ ■ 예 방 ■ ■ 다 ■	(3) (15) (1)	33.3 20.0 .0	.0 26.7 100.0	66.7 53.3 .0	33.3 20.0 .0	66.7 80.0 100.0	100.0 100.0 100.0	83.33 83.33 75.00

7.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역주민

【응답자 특성표】

	사례수	%
■ 전체 ■	209	100.0%
■ 지정안원양하대추대대야양전학법 1, 2구리민모향지승업포미축촌민영 마 포암 진향 한	5 18 16 13 8 8 10 12 8 15 11 19 32 9 15 10	2.4% 8.6% 7.7% 6.2% 3.8% 3.8% 4.8% 5.7% 3.8% 7.2% 5.3% 9.1% 15.3% 4.3% 7.2% 4.8%
■ 성년여 ■ 별자자	125 84	59.8% 40.2%
■ 연령 ■ 별		
19 - 29세	11	5.3%
30 대	14	6.7%
40 대	18	8.6%
50 대 이상	166	79.4%
■ 거주기간 ■		
5년 미만	7	3.3%
5 ~ 10년	8	3.8%
10 ~ 20년	13	6.2%
20년 이상	181	86.6%
■ 어촌계원여부 ■		
어촌계원	83	39.7%
비어촌계원	126	60.3%

【표 1】 사업수행 인지 여부

[문 1] 귀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례수	예		계
		예	아니오	
		%	%	
■ 전체 ■	(209)	42.1	57.9	100.0
■ 지정안원양하대추대대야양전학법 1, 2구리민모향지승업포미축촌민영 마 포암 진향 한	(5) (18) (16) (13) (8) (8) (10) (12) (8) (15) (11) (19) (32) (9) (15) (10)	80.0 38.9 56.3 30.8 75.0 50.0 50.0 25.0 37.5 26.7 36.4 42.1 40.6 55.6 33.3 40.0	20.0 61.1 43.8 69.2 25.0 50.0 50.0 75.0 62.5 73.3 63.6 57.9 59.4 44.4 66.7 6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성년여 ■ 별자자	(125) (84)	44.0 39.3	56.0 60.7	100.0 100.0
■ 연령 ■ 별				
19 - 29세	(11)	45.5	54.5	100.0
30 대	(14)	21.4	78.6	100.0
40 대	(18)	33.3	66.7	100.0
50 대 이상	(166)	44.6	55.4	100.0
■ 거주기간 ■				
5년 미만	(7)	28.6	71.4	100.0
5 ~ 10년	(8)	12.5	87.5	100.0
10 ~ 20년	(13)	46.2	53.8	100.0
20년 이상	(181)	43.6	56.4	100.0
■ 어촌계원여부 ■	(83) (126)	53.0 34.9	47.0 65.1	100.0 100.0

【 표 2 】 사업수행으로 도입되는 시설 인지

[문 2] 귀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도입되는 시설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사례수	전혀모른다	2)	3)	4)	잘알고있다	*비인지*	*보통*	*인지*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209)	46.9	11.5	12.9	21.1	7.7	58.4	12.9	28.7	100.0	32.78	
■ 지정인원만 1, 2구 리 모 함	(5) (18) (16) (13) (8) (8)	40.0 72.2 25.0 38.5 25.0 12.5	.0 .0 12.5 23.1 .0 12.5	.0 .0 25.0 15.4 25.0 25.0	.0 16.7 37.5 .0 37.5 25.0	20.0 11.1 .0 23.1 12.5 25.0	20.0 11.1 .0 23.1 12.5 25.0	40.0 72.2 37.5 61.5 25.0 25.0	.0 .0 25.0 15.4 25.0 25.0	60.0 27.8 37.5 23.1 50.0 5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23.61 43.75 36.54 53.13 59.38
■ 대 초 대 대 무 야 방 전 화 환	(10) (12) (8) (15) (11) (19) (32) (9) (15) (10)	30.0 50.0 50.0 73.3 63.6 47.4 46.9 33.3 53.3 50.0	10.0 16.7 25.0 .0 .0 26.3 15.6 11.1 13.3 .0	20.0 8.3 .0 .0 18.2 15.8 18.8 .0 13.3 10.0	40.0 25.0 12.5 13.3 18.2 10.5 12.5 55.6 6.7 40.0	.0 .0 12.5 13.3 .0 .0 6.3 .0 13.3 .0	40.0 66.7 75.0 73.3 63.6 73.7 62.5 44.4 66.7 	20.0 8.3 .0 .0 18.2 15.8 18.8 .0 13.3 10.0	40.0 25.0 25.0 26.7 28.2 10.5 18.8 55.6 20.0 4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2.50 27.08 28.13 23.33 22.73 22.37 28.91 44.44 28.33 35.00	
■ 성 남 여	(125) (84)	48.0 45.2	12.0 10.7	11.2 15.5	20.8 21.4	8.0 7.1	60.0 56.0	11.2 15.5	28.8 28.6	100.0 100.0	32.20 33.63	
■ 연 령	19-29세 30대 40대 50대 이상	(11) (14) (18) (166)	63.6 64.3 55.6 43.4	9.1 7.1 5.6 12.7	18.2 14.3 5.6 13.3	9.1 14.3 22.2 22.3	.0 .0 11.1 8.4	72.7 71.4 61.1 56.0	18.2 14.3 5.6 13.3	9.1 14.3 33.3 30.7	100.0 100.0 100.0 100.0	18.18 19.64 31.94 34.94
■ 거 주 기 간	5년 미만 5~10년 10~20년 20년 이상	(7) (8) (13) (181)	71.4 62.5 46.2 45.3	14.3 12.5 7.7 11.6	14.3 12.5 15.4 12.7	.0 12.5 30.8 21.5	.0 .0 .0 8.8	85.7 75.0 53.8 56.9	14.3 12.5 15.4 12.7	.0 12.5 30.8 30.4	100.0 100.0 100.0 100.0	10.71 18.75 32.69 34.25
■ 어촌계원 여부	어촌계원 비어촌계원	(83) (126)	36.1 54.0	15.7 8.7	18.1 9.5	18.1 23.0	12.0 4.8	51.8 62.7	18.1 9.5	30.1 27.8	100.0 100.0	38.55 28.97

【 표 3 】 사업예산규모 적정성

[문 3] 귀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예산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어촌계 5억~10억)

	사례수	매우부족하다	2)	3)	4)	매우충분하다	*부족*	*보통*	*충분*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209)	11.5	22.5	53.1	11.0	1.9	34.0	53.1	12.9	100.0	42.34	
■ 지정인원만 1, 2구 리 모 함	(5) (18) (16) (13) (8) (8)	40.0 5.6 6.3 15.4 .0 12.5	.0 22.2 31.3 7.7 12.5 .0	60.0 72.2 50.0 61.5 25.0 75.0	.0 .0 12.5 7.7 50.0 .0	.0 .0 .0 7.7 12.5 	40.0 27.8 37.5 23.1 12.5 12.5	60.0 72.2 50.0 61.5 25.0 75.0	.0 .0 12.5 15.4 62.5 12.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0.00 41.67 42.19 46.15 65.63 50.00	
■ 대 초 대 대 무 야 방 전 화 환	(10) (12) (8) (15) (11) (19) (32) (9) (15) (10)	30.0 .0 25.0 25.0 13.3 .0 21.9 11.1 6.7 10.0	20.0 20.0 25.0 12.5 26.7 36.4 25.0 11.1 40.0 20.0	40.0 66.7 50.0 46.7 45.5 63.2 50.0 55.6 40.0 40.0	10.0 8.3 12.5 13.3 18.2 10.5 3.1 22.2 13.3 20.0	.0 .0 .0 .0 .0 .0 .0 .0 .0 .0	50.0 25.0 37.5 40.0 36.4 26.3 46.9 22.2 46.7 30.0	40.0 66.7 50.0 46.7 45.5 63.2 50.0 55.6 40.0 40.0	10.0 8.3 12.5 13.3 18.2 10.5 3.1 22.2 13.3 3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2.50 45.83 37.50 40.00 45.45 46.05 33.59 47.22 40.00 50.00	
■ 성 남 여	(125) (84)	14.4 7.1	28.0 14.3	42.4 69.0	14.4 6.0	.8 3.6	42.4 21.4	42.4 69.0	15.2 9.5	100.0 100.0	39.80 46.13	
■ 연 령	19-29세 30대 40대 50대 이상	(11) (14) (18) (166)	9.1 14.3 11.1 11.4	45.5 7.1 33.3 21.1	36.4 57.1 55.6 53.6	9.1 21.4 .0 11.4	.0 .0 .0 2.4	54.5 21.4 44.4 32.5	36.4 57.1 55.6 53.6	9.1 21.4 .0 13.9	100.0 100.0 100.0 100.0	36.36 46.43 36.11 43.07
■ 거 주 기 간	5년 미만 5~10년 10~20년 20년 이상	(7) (8) (13) (181)	.0 .0 .0 13.3	14.3 50.0 30.8 21.0	71.4 50.0 69.2 51.4	14.3 .0 .0 12.2	.0 .0 .0 2.2	14.3 50.0 30.8 34.3	71.4 50.0 69.2 51.4	14.3 .0 .0 14.4	100.0 100.0 100.0 100.0	50.00 37.50 42.31 42.27
■ 어촌계원 여부	어촌계원 비어촌계원	(83) (126)	12.0 11.1	26.5 19.8	47.0 57.1	12.0 10.3	2.4 1.6	38.6 31.0	47.0 57.1	14.5 11.9	100.0 100.0	41.57 42.86

【 표 4 】 사업 집행과정의 효율성

[문 4] 귀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선정 및 집행 (착공에서 준공까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매우비효율적이다	2)	3)	4)	매우효율적이다	*비효율*	*보통*	*효율*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209)	4.8	13.4	52.6	22.5	6.7	18.2	52.6	29.2	100.0	53.23
■ 지정인원 마포암 1, 2구 리모호항 대초대대우야방전환 ■	(5)	.0	40.0	60.0	.0	.0	40.0	60.0	.0	100.0	40.00
	(18)	.0	11.1	55.6	27.8	5.6	11.1	55.6	33.3	100.0	56.94
	(16)	.0	18.8	50.0	43.8	12.5	18.8	25.0	56.3	100.0	62.50
	(13)	.0	.0	61.5	30.8	7.7	.0	61.5	38.5	100.0	61.54
	(8)	12.5	12.5	37.5	37.5	.0	25.0	37.5	37.5	100.0	50.00
	(8)	12.5	.0	62.5	25.0	.0	12.5	62.5	25.0	100.0	50.00
	(10)	.0	20.0	60.0	20.0	.0	20.0	60.0	20.0	100.0	50.00
	(12)	8.3	16.7	58.3	8.3	8.3	25.0	58.3	16.7	100.0	47.92
	(8)	12.5	25.0	12.5	50.0	.0	37.5	12.5	50.0	100.0	50.00
	(15)	.0	13.3	53.3	26.7	6.7	13.3	53.3	33.3	100.0	56.67
	(11)	.0	18.2	54.5	18.2	9.1	18.2	54.5	27.3	100.0	54.55
	(19)	5.3	10.5	68.4	15.8	.0	15.8	68.4	15.8	100.0	48.68
	(32)	3.1	6.3	50.0	18.8	21.9	9.4	50.0	40.6	100.0	62.50
	(9)	22.2	11.1	55.6	11.1	.0	33.3	55.6	11.1	100.0	38.89
	(15)	6.7	13.3	73.3	6.7	.0	20.0	73.3	6.7	100.0	45.00
	(10)	10.0	30.0	40.0	20.0	.0	40.0	40.0	20.0	100.0	42.50
■ 성남여 별자자	(125)	4.0	10.4	48.0	28.0	9.6	14.4	48.0	37.6	100.0	57.20
	(84)	6.0	17.9	59.5	14.3	2.4	23.8	59.5	16.7	100.0	47.32
■ 연령 별 19-29세 30대 40대 50대 이상	(11)	9.1	36.4	45.5	9.1	.0	45.5	45.5	9.1	100.0	38.64
	(14)	14.3	21.4	35.7	21.4	7.1	35.7	35.7	28.6	100.0	46.43
	(18)	11.1	11.1	61.1	16.7	.0	22.2	61.1	16.7	100.0	45.83
	(166)	3.0	11.4	53.6	24.1	7.8	14.5	53.6	31.9	100.0	55.57
■ 거주 기간 5년 미만 5~10년 10~20년 20년 이상	(7)	.0	.0	57.1	.0	42.9	.0	57.1	42.9	100.0	71.43
	(8)	.0	12.5	62.5	25.0	.0	12.5	62.5	25.0	100.0	53.13
	(13)	15.4	38.5	38.5	7.7	.0	53.8	38.5	7.7	100.0	34.62
	(181)	4.4	12.2	53.0	24.3	6.1	16.6	53.0	30.4	100.0	53.87
■ 어촌계원 여부 어촌계원 비어촌계원	(83)	4.8	12.0	50.6	22.9	9.6	16.9	50.6	32.5	100.0	55.12
	(126)	4.8	14.3	54.0	22.2	4.8	19.0	54.0	27.0	100.0	51.98

【 표 5 】 사업 시행과정의 지역주민 역할 수행

[문 5] 귀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촌계를 포함한 지역 주민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도움이 되지 않는다	2)	3)	4)	매우도움이 된다	*수행못함*	*보통*	*수행함*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209)	6.7	20.6	47.4	16.3	9.1	27.3	47.4	25.4	100.0	50.12
■ 지정인원 마포암 1, 2구 리모호항 대초대대우야방전환 ■	(5)	.0	20.0	80.0	.0	.0	20.0	80.0	.0	100.0	45.00
	(18)	11.1	22.2	50.0	16.7	.0	33.3	50.0	16.7	100.0	43.06
	(16)	.0	18.8	50.0	18.8	12.5	18.8	50.0	31.3	100.0	56.25
	(13)	7.7	15.4	38.5	30.8	7.7	23.1	38.5	38.5	100.0	53.85
	(8)	.0	37.5	50.0	12.5	.0	37.5	50.0	12.5	100.0	43.75
	(8)	12.5	12.5	62.5	.0	12.5	25.0	62.5	12.5	100.0	46.88
	(10)	10.0	30.0	30.0	30.0	.0	40.0	30.0	30.0	100.0	45.00
	(12)	8.3	25.0	58.3	8.3	.0	33.3	58.3	8.3	100.0	41.67
	(8)	12.5	37.5	25.0	12.5	12.5	50.0	25.0	25.0	100.0	43.75
	(15)	.0	20.0	33.3	13.3	33.3	20.0	33.3	46.7	100.0	65.00
	(11)	.0	18.2	63.6	18.2	.0	18.2	63.6	18.2	100.0	50.00
	(19)	.0	21.1	52.6	21.1	5.3	21.1	52.6	26.3	100.0	52.63
	(32)	6.3	18.8	43.8	15.6	15.6	25.0	43.8	31.3	100.0	53.91
	(9)	22.2	11.1	44.4	22.2	.0	33.3	44.4	22.2	100.0	41.67
	(15)	6.7	6.7	46.7	20.0	20.0	13.3	46.7	40.0	100.0	60.00
	(10)	20.0	30.0	50.0	.0	.0	50.0	50.0	.0	100.0	32.50
■ 성남여 별자자	(125)	7.2	19.2	44.8	20.0	8.8	26.4	44.8	28.8	100.0	51.00
	(84)	6.0	22.6	51.2	10.7	9.5	28.6	51.2	20.2	100.0	48.81
■ 연령 별 19-29세 30대 40대 50대 이상	(11)	18.2	36.4	45.5	.0	.0	54.5	45.5	.0	100.0	31.82
	(14)	7.1	42.9	42.9	7.1	.0	50.0	42.9	7.1	100.0	37.50
	(18)	16.7	27.8	44.4	5.6	5.6	44.4	44.4	11.1	100.0	38.89
	(166)	4.8	16.9	48.2	19.3	10.8	21.7	48.2	30.1	100.0	53.61
■ 거주 기간 5년 미만 5~10년 10~20년 20년 이상	(7)	.0	28.6	71.4	.0	.0	28.6	71.4	.0	100.0	42.86
	(8)	12.5	25.0	37.5	.0	25.0	37.5	37.5	25.0	100.0	50.00
	(13)	15.4	23.1	61.5	.0	.0	38.5	61.5	.0	100.0	36.54
	(181)	6.1	19.9	45.9	18.8	9.4	26.0	45.9	28.2	100.0	51.38
■ 어촌계원 여부 어촌계원 비어촌계원	(83)	7.2	10.8	45.8	21.7	14.5	18.1	45.8	36.1	100.0	56.33
	(126)	6.3	27.0	48.4	12.7	5.6	33.3	48.4	18.3	100.0	46.03

【 표 6 】 사업의 개발 컨셉의 지역특성 반영

[문 6] 귀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개발 컨셉이 지역특성을 잘 반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충분한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2)	3)	4)	충분한 지역특성을 반영함	*미반영*	*보통*	*반영*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209)	7.2	16.7	41.6	23.4	11.0	23.9	41.6	34.4	100.0	53.59
■ 지정인원양육추진사업(1, 2구) ■	(5)	.0	.0	60.0	40.0	.0	.0	60.0	40.0	100.0	60.00
■ 지역인원양육추진사업(1, 2구) ■	(18)	5.6	11.1	33.3	27.8	22.2	16.7	33.3	50.0	100.0	62.50
■ 지역인원양육추진사업(1, 2구) ■	(16)	6.3	6.3	31.3	31.3	25.0	12.5	31.3	56.3	100.0	65.63
■ 지역인원양육추진사업(1, 2구) ■	(13)	.0	23.1	46.2	23.1	7.7	23.1	46.2	30.8	100.0	53.85
■ 지역인원양육추진사업(1, 2구) ■	(8)	12.5	.0	50.0	25.0	12.5	12.5	50.0	37.5	100.0	56.25
■ 지역인원양육추진사업(1, 2구) ■	(8)	25.0	.0	37.5	25.0	12.5	25.0	37.5	37.5	100.0	50.00
■ 지역인원양육추진사업(1, 2구) ■	(10)	10.0	40.0	30.0	20.0	.0	50.0	30.0	20.0	100.0	40.00
■ 지역인원양육추진사업(1, 2구) ■	(12)	16.7	16.7	41.7	16.7	8.3	33.3	41.7	25.0	100.0	45.83
■ 지역인원양육추진사업(1, 2구) ■	(8)	12.5	37.5	37.5	.0	12.5	50.0	37.5	12.5	100.0	40.63
■ 지역인원양육추진사업(1, 2구) ■	(15)	.0	20.0	33.3	33.3	13.3	20.0	33.3	46.7	100.0	60.00
■ 지역인원양육추진사업(1, 2구) ■	(11)	.0	27.3	27.3	45.5	.0	27.3	27.3	45.5	100.0	54.55
■ 지역인원양육추진사업(1, 2구) ■	(19)	5.3	21.1	47.4	26.3	.0	26.3	47.4	26.3	100.0	48.68
■ 지역인원양육추진사업(1, 2구) ■	(32)	6.3	18.8	31.3	18.8	25.0	25.0	31.3	43.8	100.0	59.38
■ 지역인원양육추진사업(1, 2구) ■	(9)	22.2	22.2	44.4	11.1	.0	44.4	44.4	11.1	100.0	36.11
■ 지역인원양육추진사업(1, 2구) ■	(15)	6.7	6.7	66.7	20.0	.0	13.3	66.7	20.0	100.0	50.00
■ 지역인원양육추진사업(1, 2구) ■	(10)	.0	10.0	80.0	10.0	.0	10.0	80.0	10.0	100.0	50.00
■ 상담자 ■	(125)	8.0	16.0	36.8	27.2	12.0	24.0	36.8	39.2	100.0	54.80
■ 상담자 ■	(84)	6.0	17.9	48.8	17.9	9.5	23.8	48.8	27.4	100.0	51.79
■ 연령별 ■	(11)	18.2	36.4	36.4	9.1	.0	54.5	36.4	9.1	100.0	34.09
■ 연령별 ■	(14)	.0	14.3	57.1	28.6	.0	14.3	57.1	28.6	100.0	53.57
■ 연령별 ■	(18)	22.2	11.1	44.4	22.2	.0	33.3	44.4	22.2	100.0	41.67
■ 연령별 ■	(166)	5.4	16.3	40.4	24.1	13.9	21.7	40.4	38.0	100.0	56.17
■ 거주기간별 ■	(7)	.0	.0	85.7	14.3	.0	.0	85.7	14.3	100.0	53.57
■ 거주기간별 ■	(8)	25.0	25.0	25.0	12.5	12.5	50.0	25.0	25.0	100.0	40.63
■ 거주기간별 ■	(13)	15.4	7.7	61.5	15.4	.0	23.1	61.5	15.4	100.0	44.23
■ 거주기간별 ■	(181)	6.1	17.7	39.2	24.9	12.2	23.8	39.2	37.0	100.0	54.83
■ 어촌계원여부 ■	(83)	7.2	18.1	33.7	26.5	14.5	25.3	33.7	41.0	100.0	55.72
■ 어촌계원여부 ■	(126)	7.1	15.9	46.8	21.4	8.7	23.0	46.8	30.2	100.0	52.18

【 표 7 】 사업의 시설계획의 관광객 유치에 효과성

[문 7] 귀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에서 구상하는 시설계획이 관광객 유치에 효과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없다	2)	3)	4)	매우많다	*비효과적*	*보통*	*효과적*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209)	2.9	13.4	26.3	34.9	22.5	16.3	26.3	57.4	100.0	65.19
■ 지정인원양육추진사업(1, 2구) ■	(5)	.0	.0	60.0	40.0	.0	.0	60.0	40.0	100.0	60.00
■ 지정인원양육추진사업(1, 2구) ■	(18)	.0	11.1	33.3	33.3	22.2	11.1	33.3	55.6	100.0	66.67
■ 지정인원양육추진사업(1, 2구) ■	(16)	.0	12.5	18.8	43.8	25.0	12.5	18.8	68.8	100.0	70.31
■ 지정인원양육추진사업(1, 2구) ■	(13)	.0	7.7	30.8	30.8	30.8	7.7	30.8	61.5	100.0	71.15
■ 지정인원양육추진사업(1, 2구) ■	(8)	12.5	12.5	50.0	12.5	12.5	25.0	50.0	25.0	100.0	50.00
■ 지정인원양육추진사업(1, 2구) ■	(8)	.0	.0	62.5	25.0	12.5	.0	62.5	37.5	100.0	62.50
■ 지정인원양육추진사업(1, 2구) ■	(10)	20.0	.0	.0	60.0	20.0	20.0	.0	80.0	100.0	65.00
■ 지정인원양육추진사업(1, 2구) ■	(12)	.0	8.3	33.3	33.3	25.0	8.3	33.3	58.3	100.0	68.75
■ 지정인원양육추진사업(1, 2구) ■	(8)	.0	37.5	50.0	.0	12.5	37.5	50.0	12.5	100.0	46.88
■ 지정인원양육추진사업(1, 2구) ■	(15)	.0	26.7	20.0	33.3	20.0	26.7	20.0	53.3	100.0	61.67
■ 지정인원양육추진사업(1, 2구) ■	(11)	.0	18.2	9.1	54.5	18.2	18.2	9.1	72.7	100.0	68.18
■ 지정인원양육추진사업(1, 2구) ■	(19)	5.3	5.3	26.3	47.4	15.8	10.5	26.3	63.2	100.0	65.79
■ 지정인원양육추진사업(1, 2구) ■	(32)	3.1	12.5	12.5	28.1	43.8	15.6	12.5	71.9	100.0	74.22
■ 지정인원양육추진사업(1, 2구) ■	(9)	11.1	22.2	22.2	44.4	.0	33.3	22.2	44.4	100.0	50.00
■ 지정인원양육추진사업(1, 2구) ■	(15)	.0	6.7	33.3	33.3	26.7	6.7	33.3	60.0	100.0	70.00
■ 지정인원양육추진사업(1, 2구) ■	(10)	.0	40.0	20.0	30.0	10.0	40.0	20.0	40.0	100.0	52.50
■ 상담자 ■	(125)	.8	15.2	20.8	36.8	26.4	16.0	20.8	63.2	100.0	68.20
■ 상담자 ■	(84)	6.0	10.7	34.5	32.1	16.7	16.7	34.5	48.8	100.0	60.71
■ 연령별 ■	(11)	.0	18.2	36.4	36.4	9.1	18.2	36.4	45.5	100.0	59.09
■ 연령별 ■	(14)	7.1	21.4	7.1	42.9	21.4	28.6	7.1	64.3	100.0	62.50
■ 연령별 ■	(18)	.0	22.2	27.8	38.9	11.1	22.2	27.8	50.0	100.0	59.72
■ 연령별 ■	(166)	3.0	11.4	27.1	33.7	24.7	14.5	27.1	58.4	100.0	66.42
■ 거주기간별 ■	(7)	.0	.0	28.6	42.9	28.6	.0	28.6	71.4	100.0	75.00
■ 거주기간별 ■	(8)	.0	25.0	25.0	25.0	25.0	25.0	25.0	50.0	100.0	62.50
■ 거주기간별 ■	(13)	.0	15.4	30.8	53.8	.0	15.4	30.8	53.8	100.0	59.62
■ 거주기간별 ■	(181)	3.3	13.3	26.0	33.7	23.8	16.6	26.0	57.5	100.0	65.33
■ 어촌계원여부 ■	(83)	4.8	8.4	25.3	31.3	30.1	13.3	25.3	61.4	100.0	68.37
■ 어촌계원여부 ■	(126)	1.6	16.7	27.0	37.3	17.5	18.3	27.0	54.8	100.0	63.10

【 표 8 】 사업으로 인한 지역 주민 내 갈등 정도

[문 8] 귀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착공 및 준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업으로 인한 지역 주민 내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기여하지못한다	2)	3)	4)	크게기여한다	*없다*	*보통*	*있다*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209)	17.7	15.3	39.7	16.3	11.0	33.0	39.7	27.3	100.0	46.89
■ 지정인원양육지역 마 1, 2구 리리모항지속농포미축 양육사업 진행 상황	(5) (18) (16) (13) (8) (8) (10) (12) (8) (15) (11) (19) (32) (9) (15) (10)	.0 22.2 18.8 38.5 .0 .0 10.0 .0 12.5 20.0 36.4 10.5 28.1 11.1 20.0 10.0	.0 .0 37.5 23.1 25.0 .0 20.0 16.7 12.5 13.3 18.2 5.3 25.0 11.1 6.7 10.0	80.0 27.8 25.0 30.8 37.5 75.0 30.0 58.3 75.0 46.7 36.4 52.6 21.9 22.2 60.0 20.0	20.0 38.9 12.5 7.7 25.0 25.0 .0 16.7 .0 6.7 9.1 15.8 12.5 22.2 13.3 40.0	.0 11.1 6.3 .0 12.5 .0 40.0 8.3 .0 13.3 	.0 22.2 56.3 61.5 25.0 .0 30.0 16.7 25.0 33.3 	80.0 27.8 25.0 30.8 37.5 75.0 30.0 58.3 75.0 46.7 36.4 52.6 21.9 22.2 60.0 20.0	20.0 50.0 18.8 7.7 37.5 25.0 40.0 25.0 .0 20.0 9.1 31.6 25.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5.00 54.17 37.50 26.92 56.25 56.25 60.00 54.17 40.63 45.00 29.55 55.26 39.06 63.89 41.67 62.50
■ 성 남 여	(125) (84)	24.0 8.3	20.0 8.3	34.4 47.6	12.0 22.6	9.6 13.1	44.0 16.7	34.4 47.6	21.6 35.7	100.0 100.0	40.80 55.95
■ 연 령 별	(11) (14) (18) (166)	18.2 .0 11.1 19.9	9.1 .0 16.7 16.9	54.5 28.6 27.8 41.0	9.1 35.7 38.9 12.7	9.1 35.7 5.6 9.6	27.3 .0 27.8 36.7	54.5 28.6 27.8 41.0	18.2 71.4 44.4 22.3	100.0 100.0 100.0 100.0	45.45 76.79 52.78 43.83
■ 거 주 기 간	(7) (8) (13) (181)	14.3 25.0 .0 18.8	14.3 .0 15.4 16.0	28.6 37.5 53.8 39.2	28.6 12.5 30.8 14.9	14.3 25.0 .0 11.0	28.6 37.5 53.8 34.8	28.6 37.5 53.8 39.2	42.9 37.5 30.8 26.0	100.0 100.0 100.0 100.0	53.57 53.13 53.85 45.86
■ 어촌계원여부	(83) (126)	21.7 15.1	20.5 11.9	38.6 40.5	7.2 22.2	12.0 10.3	42.2 27.0	38.6 40.5	19.3 32.5	100.0 100.0	41.87 50.20

【 표 9 】 사업의 지역 내 어업 소득증가와 상관 여부

[문 9] 귀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지역 내 어업의 소득증가와 상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어업외소득을증가시킬것임	어업외소득을증가시키지않을것임	계
		%	%	
■ 전 체 ■	(209)	63.6	36.4	100.0
■ 지정인원양육지역 마 1, 2구 리리모항지속농포미축 양육사업 진행 상황	(5) (18) (16) (13) (8) (8) (10) (12) (8) (15) (11) (19) (32) (9) (15) (10)	80.0 83.3 68.8 46.2 62.5 75.0 40.0 58.3 87.5 53.3 54.5 57.9 62.5 55.6 80.0 60.0	20.0 16.7 31.3 53.8 37.5 25.0 60.0 41.7 12.5 46.7 45.5 42.1 37.5 44.4 20.0 4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성 남 여	(125) (84)	68.0 57.1	32.0 42.9	100.0 100.0
■ 연 령 별	(11) (14) (18) (166)	72.7 71.4 83.3 60.2	27.3 28.6 16.7 39.8	100.0 100.0 100.0 100.0
■ 거 주 기 간	(7) (8) (13) (181)	57.1 87.5 69.2 62.4	42.9 12.5 30.8 37.6	100.0 100.0 100.0 100.0
■ 어촌계원여부	(83) (126)	60.2 65.9	39.8 34.1	100.0 100.0

【 표 9-1 】 소득 증가와 상관 정도

[문 9-1] ①에 해당되는 %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수	.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계	*평균*
		%	%	%	%	%	%	%	%	%	%	%		
■ 전 체 ■	(133)	8.3	12.0	7.5	21.8	7.5	22.6	5.3	5.3	3.8	1.5	4.5	100.0	39.25
■ 지정안원양종하대추대대무야방전화평 안 1, 2구리리모포미축촌민협 회	(4) (15) (11) (6) (5) (6) (4) (7) (7) (8) (6) (11) (20) (5) (12) (6)	25.0 40.0 .0 .0 20.0 .0 .0 .0 .0 .0 18.2 .0 20.0 .0	25.0 13.3 .0 .0 40.0 .0 .0 .0 .0 25.0 .0 10.0 60.0 16.7 .0	25.0 .0 .0 50.0 .0 .0 14.3 14.3 .0 .0 .0 15.0 .0 8.3 .0	25.0 6.7 18.2 .0 20.0 66.7 25.0 14.3 42.9 37.5 33.3 18.2 10.0 25.0 50.0	.0 .0 9.1 33.3 .0 .0 .0 .0 12.5 16.7 18.2 5.0 .0 8.3 16.7	.0 26.7 45.5 16.7 .0 .0 42.9 25.0 16.7 25.0 36.4 25.0 .0 25.0 .0	.0 .0 9.1 .0 20.0 .0 25.0 .0 .0 16.7 .0 20.0 5.0 20.0 .0 16.7	.0 .0 .0 .0 .0 16.7 25.0 14.3 .0 .0 .0 10.0 .0 8.3 16.7	.0 6.7 9.1 .0 .0 .0 14.3 .0 .0 .0 .0 5.0 .0 8.3 .0	.0 .0 .0 .0 .0 16.7 .0 .0 .0 .0 .0 5.0 .0 .0 .0	.0 6.7 9.1 .0 .0 .0 25.0 .0 .0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00 28.67 53.64 31.67 22.00 46.67 65.00 50.00 31.43 31.25 36.67 40.00 50.00 18.00 39.17 43.33
■ 성남 여	(85) (48)	10.6 4.2	10.6 14.6	8.2 6.3	22.4 20.8	4.7 12.5	22.4 22.9	5.9 4.2	3.5 8.3	5.9 .0	1.2 2.1	4.7 4.2	100.0 100.0	38.94 39.79
■ 연 령 별 19-29 세 대 30 대 40 대 50 대 이상	(8) (10) (15) (100)	.0 .0 .0 11.0	12.5 30.0 20.0 9.0	.0 .0 6.7 9.0	25.0 10.0 33.3 21.0	12.5 .0 6.7 8.0	.0 50.0 20.0 22.0	37.5 .0 6.7 3.0	12.5 10.0 .0 5.0	.0 .0 6.7 4.0	.0 .0 .0 2.0	.0 .0 .0 6.0	100.0 100.0 100.0 100.0	45.00 38.00 35.33 39.50
■ 거 주 기 간 5년 미만 5~10년 10~20년 20년 이상	(4) (7) (9) (113)	25.0 14.3 .0 8.0	25.0 14.3 11.1 11.5	.0 .0 11.1 8.0	.0 14.3 11.1 23.9	25.0 .0 22.2 6.2	.0 28.6 11.1 23.9	.0 14.3 22.2 3.5	25.0 .0 11.1 4.4	.0 14.3 .0 3.5	.0 .0 .0 1.8	.0 .0 .0 5.3	100.0 100.0 100.0 100.0	30.00 40.00 42.22 39.29
■ 어촌계원여부 비어촌계원	(50) (83)	6.0 9.6	8.0 14.5	6.0 8.4	18.0 24.1	6.0 8.4	30.0 18.1	6.0 4.8	6.0 4.8	4.0 3.6	4.0 .0	6.0 3.6	100.0 100.0	45.40 35.54

【 표 10 】 사업의 지역 내 관광객 증가와 상관 여부

[문 10] 귀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지역 내 방문객(관광객)의 증가와 상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방문객(관광객) 의증가 시킬것임	방문객(관광객) 의증가 키지않을 것임	계
		%	%	
■ 전 체 ■	(209)	82.8	17.2	100.0
■ 지정안원양종하대추대대무야방전화평 안 1, 2구리리모포미축촌민협 회	(5) (18) (16) (13) (8) (8) (10) (12) (8) (15) (11) (19) (32) (9) (15) (10)	80.0 88.9 75.0 46.2 87.5 100.0 90.0 91.7 87.5 80.0 72.7 89.5 93.8 66.7 86.7 70.0	20.0 11.1 25.0 53.8 12.5 .0 10.0 8.3 12.5 20.0 27.3 10.5 6.3 33.3 13.3 3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성남 여	(125) (84)	83.2 82.1	16.8 17.9	100.0 100.0
■ 연 령 별 19-29 세 대 30 대 40 대 50 대 이상	(11) (14) (18) (166)	100.0 71.4 83.3 82.5	.0 28.6 16.7 17.5	100.0 100.0 100.0 100.0
■ 거 주 기 간 5년 미만 5~10년 10~20년 20년 이상	(7) (8) (13) (181)	100.0 100.0 84.6 81.2	.0 .0 15.4 18.8	100.0 100.0 100.0 100.0
■ 어촌계원여부 비어촌계원	(83) (126)	84.3 81.7	15.7 18.3	100.0 100.0

【 표 10-1 】 관광객 증가와 상관 정도

[문 10-1] ①에 해당되는 %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수	.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100.00	계	*평균*
		%	%	%	%	%	%	%	%	%	%		
■ 전 체 ■	(173)	6.9	9.2	15.6	17.9	4.6	19.1	6.9	9.2	6.9	3.5	100.0	40.46
■ 지정안원양촌하대추대대무야방전화평 마 1, 2구리리도향지순애포미축촌민 포안 진장	(4)	25.0	25.0	25.0	25.0	.0	.0	.0	.0	.0	.0	100.0	15.00
	(16)	25.0	12.5	12.5	6.3	12.5	18.8	.0	6.3	.0	6.3	100.0	30.63
	(12)	.0	.0	16.7	8.3	8.3	16.7	25.0	8.3	8.3	8.3	100.0	53.33
	(6)	16.7	16.7	33.3	16.7	.0	16.7	.0	.0	.0	.0	100.0	21.67
	(7)	.0	14.3	14.3	57.1	.0	.0	.0	14.3	.0	.0	100.0	31.43
	(8)	.0	.0	37.5	25.0	.0	12.5	25.0	.0	.0	.0	100.0	36.25
	(9)	.0	.0	11.1	.0	11.1	55.6	.0	11.1	11.1	.0	100.0	51.11
	(11)	.0	.0	18.2	27.3	.0	18.2	.0	18.2	18.2	.0	100.0	48.18
	(7)	.0	.0	28.6	14.3	.0	28.6	14.3	14.3	.0	.0	100.0	42.86
	(12)	.0	8.3	25.0	33.3	8.3	25.0	.0	.0	.0	.0	100.0	31.67
	(8)	12.5	.0	12.5	37.5	12.5	12.5	12.5	.0	.0	.0	100.0	32.50
	(17)	23.5	.0	11.8	17.6	.0	11.8	5.9	17.6	5.9	5.9	100.0	40.00
	(30)	3.3	16.7	3.3	16.7	3.3	13.3	.0	13.3	20.0	10.0	100.0	50.67
(6)	.0	33.3	50.0	.0	.0	16.7	.0	.0	.0	.0	100.0	21.67	
(13)	.0	7.7	7.7	7.7	.0	38.5	30.8	.0	7.7	.0	100.0	48.46	
(7)	.0	28.6	.0	14.3	14.3	14.3	.0	28.6	.0	.0	100.0	40.00	
■ 성남 여	(104)	4.8	12.5	12.5	17.3	4.8	18.3	7.7	8.7	8.7	4.8	100.0	42.40
(69)	10.1	4.3	20.3	18.8	4.3	20.3	5.8	10.1	4.3	1.4	100.0	37.54	
■ 연령 별	(11)	.0	9.1	9.1	18.2	.0	36.4	.0	9.1	18.2	.0	100.0	47.27
19 - 29 세 대	(10)	.0	10.0	40.0	30.0	.0	.0	.0	20.0	.0	.0	100.0	32.00
40 대	(15)	.0	6.7	33.3	13.3	20.0	20.0	6.7	.0	.0	.0	100.0	33.33
50 대 이상	(137)	8.8	9.5	12.4	17.5	3.6	19.0	8.0	9.5	7.3	4.4	100.0	41.31
■ 거주 기간	(7)	14.3	.0	14.3	42.9	14.3	.0	.0	14.3	.0	.0	100.0	31.43
5년 미만	(8)	12.5	.0	25.0	12.5	12.5	37.5	.0	.0	.0	.0	100.0	32.50
5 ~ 10년	(11)	.0	.0	27.3	18.2	.0	18.2	9.1	9.1	18.2	.0	100.0	46.36
10 ~ 20년	(147)	6.8	10.9	14.3	17.0	4.1	19.0	7.5	9.5	6.8	4.1	100.0	40.88
■ 어촌계원 여부	(70)	5.7	8.6	10.0	10.0	2.9	28.6	11.4	10.0	10.0	2.9	100.0	46.00
어촌계원	(103)	7.8	9.7	19.4	23.3	5.8	12.6	3.9	8.7	4.9	3.9	100.0	36.70

【 표 11 】 사업의 지역 수산물 판매 증가와 상관 여부

[문 11] 귀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지역 수산물 판매(현장 또는 택배)의 증가와 상관 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사례수	수산물의 판매를 가시 킬 것 임	수산물의 판매를 증 가 시키 지 않 을 것 임	계
		%	%	
■ 전 체 ■	(209)	77.0	23.0	100.0
■ 지정안원양촌하대추대대무야방전화평 마 1, 2구리리도향지순애포미축촌민 포안 진장	(5)	80.0	20.0	100.0
	(18)	83.3	16.7	100.0
	(16)	81.3	18.8	100.0
	(13)	61.5	38.5	100.0
	(8)	62.5	37.5	100.0
	(8)	100.0	.0	100.0
	(10)	90.0	10.0	100.0
	(12)	83.3	16.7	100.0
	(8)	87.5	12.5	100.0
	(15)	73.3	26.7	100.0
	(11)	81.8	18.2	100.0
	(19)	78.9	21.1	100.0
	(32)	68.8	31.3	100.0
(9)	55.6	44.4	100.0	
(15)	80.0	20.0	100.0	
(10)	80.0	20.0	100.0	
■ 성남 여	(125)	80.8	19.2	100.0
(84)	71.4	28.6	100.0	
■ 연령 별	(11)	100.0	.0	100.0
19 - 29 세 대	(14)	85.7	14.3	100.0
40 대	(18)	66.7	33.3	100.0
50 대 이상	(166)	75.9	24.1	100.0
■ 거주 기간	(7)	71.4	28.6	100.0
5년 미만	(8)	87.5	12.5	100.0
5 ~ 10년	(13)	76.9	23.1	100.0
10 ~ 20년	(181)	76.8	23.2	100.0
■ 어촌계원 여부	(83)	80.7	19.3	100.0
어촌계원	(126)	74.6	25.4	100.0

【 표 11-1 】 수산물 판매 증가와 상관 정도

[문 11-1] ①에 해당되는 %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수	.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100.00	계	*평균*
		%	%	%	%	%	%	%	%	%	%		
■ 전 체 ■	(161)	8.1	6.2	15.5	16.1	3.7	24.8	6.8	6.8	6.8	5.0	100.0	41.80
■ 지정인원양출하대추대대무야방전환	(4) (15) (13) (8) (5) (8) (9) (10) (7) (11) (9) (15) (22) (5) (12) (8)	25.0 33.3 .0 .0 20.0 .0 .0 .0 .0 .0 11.1 20.0 .0 40.0 .0	25.0 6.7 7.7 12.5 20.0 .0 .0 .0 9.1 .0 .0 4.5 20.0 8.3 12.5	.0 .0 15.4 .0 .0 50.0 11.1 10.0 42.9 27.3 11.1 20.0 18.2 8.3 25.0	25.0 20.0 7.7 37.5 40.0 25.0 .0 20.0 .0 18.2 44.4 6.7 .0 25.0 25.0	.0 6.7 .0 12.5 .0 .0 .0 .0 .0 9.1 .0 4.5 .0 .0 12.5	25.0 20.0 15.4 25.0 20.0 .0 44.4 40.0 28.6 36.4 11.1 13.3 27.3 40.0 41.7	.0 .0 15.4 .0 .0 12.5 .0 11.1 14.3 .0 .0 .0 22.7 9.1 6.7 8.3	.0 6.7 7.7 12.5 .0 .0 11.1 10.0 14.3 .0 	.0 .0 15.4 .0 .0 12.5 .0 11.1 14.3 .0 .0 	.0 6.7 15.4 .0 .0 .0 .0 20.0 .0 33.3 22.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2.50 30.67 56.15 38.75 24.00 35.00 58.89 51.00 41.43 33.64 38.89 42.67 53.18 22.00 41.67 33.75
■ 상담여	(101) (60)	7.9 8.3	6.9 5.0	15.8 15.0	14.9 18.3	3.0 5.0	23.8 26.7	6.9 6.7	6.9 6.7	6.9 6.7	6.9 1.7	100.0 100.0	42.87 40.00
■ 연령	(11) (12) (12) (126)	.0 8.3 .0 9.5	9.1 .0 8.3 6.3	9.1 8.3 41.7 14.3	27.3 16.7 16.7 15.1	.0 8.3 .0 4.0	27.3 33.3 25.0 23.8	.0 .0 .0 8.7	18.2 8.3 .0 6.3	9.1 8.3 8.3 6.3	.0 8.3 .0 5.6	100.0 100.0 100.0 100.0	44.55 47.50 33.33 41.83
■ 거주기간	(5) (7) (10) (139)	20.0 14.3 .0 7.9	.0 .0 .0 7.2	40.0 14.3 30.0 13.7	20.0 28.6 20.0 15.1	.0 .0 .0 4.3	.0 42.9 20.0 25.2	.0 .0 .0 7.9	.0 .0 20.0 6.5	20.0 .0 10.0 6.5	.0 .0 .0 5.8	100.0 100.0 100.0 100.0	30.00 32.86 44.00 42.52
■ 어촌계원여부	(67) (94)	6.0 9.6	6.0 6.4	13.4 17.0	10.4 20.2	1.5 5.3	28.4 22.3	11.9 3.2	9.0 5.3	7.5 6.4	6.0 4.3	100.0 100.0	46.57 38.40

【 표 12-1 】 사업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

[문 12-1]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사회·문화·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209)	3.3	9.6	25.4	41.6	20.1	12.9	25.4	61.7	100.0	66.39
■ 지정인원양출하대추대대무야방전환	(5) (18) (16) (13) (8) (8) (10) (12) (8) (15) (11) (19) (32) (9) (15) (10)	.0 .0 .0 .0 .0 10.0 8.3 .0 .0 .0 10.5 6.3 11.1 .0 .0	20.0 5.6 6.3 .0 12.5 .0 8.3 12.5 .0 9.1 	60.0 5.6 25.0 50.0 37.5 .0 0.0 25.0 40.0 27.3 	20.0 55.6 31.3 69.2 25.0 37.5 60.0 25.0 46.7 54.5 52.6 21.9 22.2 46.7 50.0	.0 33.3 37.5 7.7 12.5 25.0 30.0 16.7 12.5 13.3 9.1 15.8 34.4 11.1 6.7 10.0	20.0 5.6 6.3 .0 .0 10.0 16.7 12.5 .0 9.1 21.1 	60.0 5.6 25.0 50.0 37.5 .0 16.7 25.0 40.0 27.3 	20.0 88.9 68.8 76.9 37.5 62.5 90.0 41.7 62.5 60.0 63.6 68.4 56.3 33.3 53.3 6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79.17 75.00 71.15 59.38 71.88 75.00 58.33 65.63 68.33 65.91 63.16 65.63 55.56 60.00 60.00
■ 상담여	(125) (84)	2.4 4.8	9.6 9.5	20.8 32.1	44.8 36.9	22.4 16.7	12.0 14.3	20.8 32.1	67.2 53.6	100.0 100.0	68.80 62.80
■ 연령	(11) (14) (18) (166)	.0 .0 .0 4.2	27.3 7.1 11.1 8.4	36.4 28.6 22.2 24.7	36.4 50.0 50.0 40.4	.0 14.3 16.7 22.3	27.3 7.1 11.1 12.7	36.4 28.6 22.2 24.7	36.4 64.3 66.7 62.7	100.0 100.0 100.0 100.0	52.27 67.86 68.06 67.02
■ 거주기간	(7) (8) (13) (181)	.0 .0 .0 3.9	.0 .0 38.5 8.3	57.1 12.5 30.8 24.3	28.6 75.0 15.4 42.5	14.3 12.5 15.4 21.0	.0 .0 38.5 12.2	57.1 12.5 30.8 24.3	42.9 87.5 30.8 63.5	100.0 100.0 100.0 100.0	64.29 75.00 51.92 67.13
■ 어촌계원여부	(83) (126)	6.0 1.6	8.4 10.3	15.7 31.7	43.4 40.5	26.5 15.9	14.5 11.9	15.7 31.7	69.9 56.3	100.0 100.0	68.98 64.68

【 표 12-2 】 사업으로 인한 지역 이미지 향상

[문 12-2]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사회·문화·환경 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례수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209)	1.4	5.3	24.9	43.5	24.9	6.7	24.9	68.4	100.0	71.29
■ 지정인원만	(5)	.0	.0	40.0	60.0	.0	.0	40.0	60.0	100.0	65.00
■ 지역자목	(18)	.0	.0	11.1	33.3	55.6	.0	11.1	88.9	100.0	86.11
■ 마포암	(16)	6.3	6.3	25.0	31.3	31.3	12.5	25.0	62.5	100.0	68.75
■ 양촌하대	(13)	.0	.0	30.8	46.2	23.1	.0	30.8	69.2	100.0	73.08
■ 하대	(8)	12.5	12.5	25.0	37.5	12.5	25.0	50.0	100.0	100.0	56.25
■ 하대	(8)	.0	.0	25.0	37.5	37.5	.0	25.0	75.0	100.0	78.13
■ 하대	(10)	.0	.0	20.0	50.0	30.0	.0	20.0	80.0	100.0	77.50
■ 하대	(12)	.0	8.3	25.0	50.0	16.7	8.3	25.0	66.7	100.0	68.75
■ 하대	(8)	.0	.0	12.5	62.5	25.0	.0	12.5	87.5	100.0	78.13
■ 하대	(15)	.0	6.7	33.3	46.7	13.3	6.7	33.3	60.0	100.0	66.67
■ 하대	(11)	.0	.0	36.4	54.5	9.1	.0	36.4	63.6	100.0	68.18
■ 하대	(19)	.0	5.3	21.1	57.9	15.8	5.3	21.1	73.7	100.0	71.05
■ 하대	(32)	3.1	6.3	18.8	34.4	37.5	9.4	18.8	71.9	100.0	74.22
■ 하대	(9)	.0	22.2	33.3	33.3	11.1	22.2	33.3	44.4	100.0	58.33
■ 하대	(15)	.0	6.7	26.7	46.7	20.0	6.7	26.7	66.7	100.0	70.00
■ 하대	(10)	.0	10.0	40.0	40.0	10.0	10.0	40.0	50.0	100.0	62.50
■ 성남여	(125)	1.6	4.0	20.8	44.8	28.8	5.6	20.8	73.6	100.0	73.80
■ 별자	(84)	1.2	7.1	31.0	41.7	19.0	8.3	31.0	60.7	100.0	67.56
■ 연령	(11)	.0	9.1	18.2	72.7	.0	9.1	18.2	72.7	100.0	65.91
■ 19-29	(14)	7.1	14.3	35.7	28.6	14.3	21.4	35.7	42.9	100.0	57.14
■ 30대	(18)	.0	.0	27.8	44.4	27.8	.0	27.8	72.2	100.0	75.00
■ 40대	(166)	1.2	4.8	24.1	42.8	27.1	6.0	24.1	69.9	100.0	72.44
■ 거주기간	(7)	.0	.0	14.3	71.4	14.3	.0	14.3	85.7	100.0	75.00
■ 5년미만	(8)	.0	.0	12.5	62.5	25.0	.0	12.5	87.5	100.0	78.13
■ 5~10년	(13)	.0	7.7	23.1	46.2	23.1	7.7	23.1	69.2	100.0	71.15
■ 10~20년	(181)	1.7	5.5	26.0	41.4	25.4	7.2	26.0	66.9	100.0	70.86
■ 어촌계원	(83)	1.2	4.8	22.9	41.0	30.1	6.0	22.9	71.1	100.0	73.49
■ 비어촌계원	(126)	1.6	5.6	26.2	45.2	21.4	7.1	26.2	66.7	100.0	69.84

【 표 12-3 】 사업의 지역주민의 자긍심 향상에 기여

[문 12-3]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사회·문화·환경 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례수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209)	1.9	6.2	28.7	39.2	23.9	8.1	28.7	63.2	100.0	69.26
■ 지정인원만	(5)	.0	.0	60.0	40.0	.0	.0	60.0	40.0	100.0	60.00
■ 지역자목	(18)	.0	.0	22.2	27.8	50.0	.0	22.2	77.8	100.0	81.94
■ 마포암	(16)	.0	12.5	31.3	12.5	43.8	12.5	31.3	56.3	100.0	71.88
■ 양촌하대	(13)	.0	.0	30.8	61.5	7.7	.0	30.8	69.2	100.0	69.23
■ 하대	(8)	.0	12.5	37.5	37.5	12.5	12.5	37.5	50.0	100.0	62.50
■ 하대	(8)	.0	.0	25.0	50.0	25.0	.0	25.0	75.0	100.0	75.00
■ 하대	(10)	.0	.0	40.0	40.0	20.0	.0	40.0	60.0	100.0	70.00
■ 하대	(12)	.0	8.3	50.0	25.0	16.7	8.3	50.0	41.7	100.0	62.50
■ 하대	(8)	.0	.0	25.0	37.5	37.5	.0	25.0	75.0	100.0	78.13
■ 하대	(15)	.0	6.7	20.0	46.7	26.7	6.7	20.0	73.3	100.0	73.33
■ 하대	(11)	.0	.0	27.3	54.5	18.2	.0	27.3	72.7	100.0	72.73
■ 하대	(19)	.0	5.3	21.1	57.9	15.8	5.3	21.1	73.7	100.0	71.05
■ 하대	(32)	6.3	15.6	15.6	28.1	34.4	21.9	15.6	62.5	100.0	67.19
■ 하대	(9)	11.1	11.1	33.3	33.3	11.1	22.2	33.3	44.4	100.0	55.56
■ 하대	(15)	.0	.0	40.0	53.3	6.7	.0	40.0	60.0	100.0	66.67
■ 하대	(10)	10.0	10.0	30.0	40.0	10.0	20.0	30.0	50.0	100.0	57.50
■ 성남여	(125)	2.4	6.4	24.8	41.6	24.8	8.8	24.8	66.4	100.0	70.00
■ 별자	(84)	1.2	6.0	34.5	35.7	22.6	7.1	34.5	58.3	100.0	68.15
■ 연령	(11)	.0	9.1	45.5	36.4	9.1	9.1	45.5	45.5	100.0	61.36
■ 19-29	(14)	.0	14.3	7.1	42.9	35.7	14.3	7.1	78.6	100.0	75.00
■ 30대	(18)	.0	11.1	33.3	38.9	16.7	11.1	33.3	55.6	100.0	65.28
■ 40대	(166)	2.4	4.8	28.9	39.2	24.7	7.2	28.9	63.9	100.0	69.73
■ 거주기간	(7)	.0	14.3	28.6	28.6	28.6	14.3	28.6	57.1	100.0	67.86
■ 5년미만	(8)	.0	.0	12.5	50.0	37.5	.0	12.5	87.5	100.0	81.25
■ 5~10년	(13)	.0	15.4	30.8	30.8	23.1	15.4	30.8	53.8	100.0	65.38
■ 10~20년	(181)	2.2	5.5	29.3	39.8	23.2	7.7	29.3	63.0	100.0	69.06
■ 어촌계원	(83)	2.4	3.6	28.9	38.6	26.5	6.0	28.9	65.1	100.0	70.78
■ 비어촌계원	(126)	1.6	7.9	28.6	39.7	22.2	9.5	28.6	61.9	100.0	68.25

【 표 12-4 】 사업의 마을 전통문화 발굴 보전에 기여

[문 12-4]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사회·문화·환경 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례수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209)	2.9	9.1	35.4	35.4	17.2	12.0	35.4	52.6	100.0	63.76
■ 지정인원마을 1, 2구 양촌향대초대대우야방전향평	(5)	.0	.0	80.0	20.0	.0	.0	80.0	20.0	100.0	55.00
■ 자 목 리 모 향 지 송 동 포 미 축 촌 립 동	(18)	5.6	11.1	27.8	33.3	22.2	16.7	27.8	55.6	100.0	63.89
■ 마 1, 2구 양촌향대초대대우야방전향평	(16)	.0	.0	62.5	25.0	12.5	.0	62.5	37.5	100.0	62.50
■ 양촌향대초대대우야방전향평	(13)	.0	7.7	30.8	53.8	7.7	7.7	30.8	61.5	100.0	65.38
■ 모향지송동포미축	(8)	12.5	.0	37.5	37.5	12.5	12.5	37.5	50.0	100.0	59.38
■ 촌립동	(8)	.0	12.5	12.5	37.5	37.5	12.5	12.5	75.0	100.0	75.00
■ 향지송동포미축	(10)	.0	10.0	30.0	40.0	20.0	10.0	30.0	60.0	100.0	67.50
■ 대초대대우야방전향평	(12)	.0	16.7	41.7	25.0	16.7	16.7	41.7	41.7	100.0	60.42
■ 양촌향대초대대우야방전향평	(8)	.0	12.5	25.0	62.5	.0	12.5	25.0	62.5	100.0	62.50
■ 양촌향대초대대우야방전향평	(15)	.0	.0	46.7	40.0	13.3	.0	46.7	53.3	100.0	66.67
■ 양촌향대초대대우야방전향평	(11)	9.1	18.2	45.5	9.1	18.2	27.3	45.5	27.3	100.0	52.27
■ 양촌향대초대대우야방전향평	(19)	5.3	10.5	21.1	57.9	5.3	15.8	21.1	63.2	100.0	61.84
■ 양촌향대초대대우야방전향평	(32)	6.3	9.4	25.0	21.9	37.5	15.6	25.0	59.4	100.0	68.75
■ 양촌향대초대대우야방전향평	(9)	.0	11.1	33.3	44.4	11.1	11.1	33.3	55.6	100.0	63.89
■ 양촌향대초대대우야방전향평	(15)	.0	13.3	46.7	26.7	13.3	13.3	46.7	40.0	100.0	60.00
■ 양촌향대초대대우야방전향평	(10)	.0	10.0	30.0	50.0	10.0	10.0	30.0	60.0	100.0	65.00
■ 상남여	(125)	1.6	8.8	32.8	36.8	20.0	10.4	32.8	56.8	100.0	66.20
■ 별자자	(84)	4.8	9.5	39.3	33.3	13.1	14.3	39.3	46.4	100.0	60.12
■ 연령별	(11)	.0	27.3	9.1	63.6	.0	27.3	9.1	63.6	100.0	59.09
■ 19-29세	(14)	7.1	7.1	42.9	21.4	21.4	14.3	42.9	42.9	100.0	60.71
■ 30-40대	(18)	5.6	16.7	33.3	27.8	16.7	22.2	33.3	44.4	100.0	58.33
■ 40-50대 이상	(166)	2.4	7.2	36.7	35.5	18.1	9.6	36.7	53.6	100.0	64.91
■ 거주기간	(7)	.0	14.3	57.1	.0	28.6	14.3	57.1	28.6	100.0	60.71
■ 5년 미만	(8)	12.5	.0	37.5	37.5	12.5	12.5	37.5	50.0	100.0	59.38
■ 5-10년	(13)	.0	23.1	30.8	38.5	7.7	23.1	30.8	46.2	100.0	57.69
■ 10-20년	(181)	2.8	8.3	34.8	36.5	17.7	11.0	34.8	54.1	100.0	64.50
■ 20년 이상	(181)	2.8	8.3	34.8	36.5	17.7	11.0	34.8	54.1	100.0	64.50
■ 어촌계원여부	(83)	2.4	9.6	28.9	34.9	24.1	12.0	28.9	59.0	100.0	67.17
■ 어촌계원비어촌계원	(126)	3.2	8.7	39.7	35.7	12.7	11.9	39.7	48.4	100.0	61.51

【 표 12-5 】 사업으로 인한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

[문 12-5]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사회·문화·환경 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례수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209)	.5	10.0	23.4	42.6	23.4	10.5	23.4	66.0	100.0	69.62
■ 지정인원마을 1, 2구 양촌향대초대대우야방전향평	(5)	.0	20.0	60.0	20.0	.0	20.0	60.0	20.0	100.0	50.00
■ 자 목 리 모 향 지 송 동 포 미 축 촌 립 동	(18)	.0	.0	5.6	72.2	22.2	.0	5.6	94.4	100.0	79.17
■ 마 1, 2구 양촌향대초대대우야방전향평	(16)	.0	.0	18.8	50.0	31.3	.0	18.8	81.3	100.0	78.13
■ 양촌향대초대대우야방전향평	(13)	.0	.0	15.4	61.5	23.1	.0	15.4	84.6	100.0	76.92
■ 모향지송동포미축	(8)	.0	.0	25.0	62.5	12.5	.0	25.0	75.0	100.0	71.88
■ 촌립동	(8)	.0	12.5	25.0	25.0	37.5	12.5	25.0	62.5	100.0	71.88
■ 향지송동포미축	(10)	.0	.0	40.0	40.0	20.0	.0	40.0	60.0	100.0	70.00
■ 대초대대우야방전향평	(12)	.0	25.0	41.7	25.0	8.3	25.0	41.7	33.3	100.0	54.17
■ 양촌향대초대대우야방전향평	(8)	.0	.0	62.5	25.0	12.5	.0	62.5	37.5	100.0	62.50
■ 양촌향대초대대우야방전향평	(15)	.0	6.7	20.0	40.0	33.3	6.7	20.0	73.3	100.0	75.00
■ 양촌향대초대대우야방전향평	(11)	.0	18.2	36.4	36.4	9.1	18.2	36.4	45.5	100.0	59.09
■ 양촌향대초대대우야방전향평	(19)	.0	5.3	21.1	52.6	21.1	5.3	21.1	73.7	100.0	72.37
■ 양촌향대초대대우야방전향평	(32)	3.1	9.4	15.6	25.0	46.9	12.5	15.6	71.9	100.0	75.78
■ 양촌향대초대대우야방전향평	(9)	.0	33.3	11.1	44.4	11.1	33.3	11.1	55.6	100.0	58.33
■ 양촌향대초대대우야방전향평	(15)	.0	20.0	33.3	40.0	6.7	20.0	33.3	46.7	100.0	58.33
■ 양촌향대초대대우야방전향평	(10)	.0	30.0	.0	50.0	20.0	30.0	.0	70.0	100.0	65.00
■ 상남여	(125)	.8	8.0	20.8	44.0	26.4	8.8	20.8	70.4	100.0	71.80
■ 별자자	(84)	.0	13.1	27.4	40.5	19.0	13.1	27.4	59.5	100.0	66.37
■ 연령별	(11)	.0	27.3	27.3	36.4	9.1	27.3	27.3	45.5	100.0	56.82
■ 19-29세	(14)	.0	.0	21.4	50.0	28.6	.0	21.4	78.6	100.0	76.79
■ 30-40대	(18)	.0	16.7	22.2	44.4	16.7	16.7	22.2	61.1	100.0	65.28
■ 40-50대 이상	(166)	.6	9.0	23.5	42.2	24.7	9.6	23.5	66.9	100.0	70.33
■ 거주기간	(7)	.0	28.6	14.3	28.6	28.6	28.6	14.3	57.1	100.0	64.29
■ 5년 미만	(8)	.0	.0	.0	75.0	25.0	.0	.0	100.0	100.0	81.25
■ 5-10년	(13)	.0	23.1	23.1	38.5	15.4	23.1	23.1	53.8	100.0	61.54
■ 10-20년	(181)	.6	8.8	24.9	42.0	23.8	9.4	24.9	65.7	100.0	69.89
■ 20년 이상	(181)	.6	8.8	24.9	42.0	23.8	9.4	24.9	65.7	100.0	69.89
■ 어촌계원여부	(83)	1.2	8.4	20.5	38.6	31.3	9.6	20.5	69.9	100.0	72.59
■ 어촌계원비어촌계원	(126)	.0	11.1	25.4	45.2	18.3	11.1	25.4	63.5	100.0	67.66

개발되면 잘해야 함
개발사업에계원아닌이들도 함께하면 좋겠음
개발이 빨리 이루어 졌으면함
개발이잘되는것
개발잘해서관광객이증가했으면
계획대로 진행잘되었으면함
계획하고 실천시행에 있어서 홍보및 지원을 해야함
관광객 많이왔으면함
관광객 유치될 수 있도록 충분한 개발지원 되어야 한다
관광객이와도당일로가버려별소득이없다
관광지로 발전시키면좋겠다
낙시공원조성
대규모투자가 안된다면실패할심상임
도로가협소한데 넓히고 주차 숙박시설 늘렸으면함
도로개설요
도로망건설필요확장
도로확장
마을마다 특색있게해 관광객 머물게해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있게해야한다
막연한기대지만 지금처럼 지지부지 하지말고 빨리진행해주길바랄뿐이다
먼저공청회를통하고지역주민의의견을수렴하라
물가가 싸야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마량은 안도보다 비싸다고 생각된다
바다가 보도블록등작업하는데 소용없고 시멘트도로가더좋다 트럭등대형특수차량더많이이용해서
바다개발로인해 어업종사자 생산감소로 불만스러울수도있다
바닷가 근처까지관광지로개발되므로 어업종사자는 할일이줄어들어서 반대함
방문객들이 깔끔하게 이용해주었음 좋겠다
방파제및 제반시설 보충
보다많은관광객증진에도움이되어주었으면
본래그래도가좋다.개발하지마라
빈부차이가지금보다 더 벌어질것이다
빨리 사업시행할 것
사무실 완공후 농 수산물 판매장 만들면 관광객 늘것같다
사업 제대로추진되는것
삶이좋아졌으면
생태환경조성바다가죽고있다
섬으로써태풍시움직이지못한다것을해결해주어야한다여객선운항을항시해야한다
신시도에새만금도로에수산물센터해주었으면
야미만 개발하지 말고 선유도도 같이 개발해야 같이 발전한다
양어장에서 나오는 폐수처리 잘해주기를
양포리어촌계가 좁아서 치어 방류량을 조금가져오는데 더 가져왔음 좋겠다.
어민복지사업및 지역경제 활성화
어민소득증대에힘썼으면
어촌 깨끗하고 편리하게 개선되었으면함
어촌개발이 어민에게만 이익이지 지역주민은 전혀 혜택이없다
어촌인구와주민과의조화가필요
여러주민의의견반영
예산따와 일 하는중 마구잡이로 하지 말고 아름답게 설계해아름다운 어촌 만들었으면함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행해주면좋겠다
예산이부족하다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많이 묶여있다풀어주어야한다
울릉도를 출항하는항구로 발전시켜주길 바랍니다

의견수렴
이웃어촌도지원요
이윤창출되면은 지역주민에게혜택이돌아가도록 해주길
자연환경을해치지말라
잘되면좋겠다
잘살게되길바란다
잡아온생선멀리시장까지가서팔지않도록어판장이형성되서관광객뿐만아니라지역주민들도이용하면더좋을것같다
정부에서 돈을 많이 투자에서 좋은 관광지로 해주길
정부에서 직원을 해서 발전을 시켜주길
정부예산지원
조명이 너무 밝다
조속한개발
좀더발전했으면
주민들삶의질향상이필요하다
주민들소득증가 질향상요
주민들에게 충분한의견전달필요함 어촌외 농촌 산촌 지역전체개발필요함
주민들의삶의질을향상될수있도록노력해주었으면
주민의견수렴
주차장과편의시설건설쓰레기처리시설부족
증도면을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주어야한다
지역 주민에게 100%의 판내정활당을 해 주어서 주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겠다.
지역민 전체가 이익 창출될수 있도록 했으면함
지역민들 안전하게 살수있는 터전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발전에많은도움이되는것
지역에특성맞추어했으면
지역예산때문에어렵다
지역주민의견을최대한고려하면..
직접주민들에게와달지않는다
충분히주민과의의논이없다
취약 지역인 소약도도 개발해주어으면한다
케이블카...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아닌 지역개발을 해야 한다
해변도로를깨끗하게
해상도로를 해주고 마을 장터를 부락이름을 적어서 해주어야한다
해안도로를 빨리 완공해주길
홍보를 했으면 함
활성화되어야한다

8.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리 공무원

【 응답자 특성 표 】

	사례수	%
■ 전 체 ■	13	100.0%
■ 지 서 남 동 해 해 권 권 ■	4 5 4	30.8% 38.5% 30.8%
■ 제 주 지 역 여 부 제 주 이 외 주 ■	12 1	92.3% 7.7%
■ 사 업 내 용 이 해 통 ■	2 11	15.4% 84.6%
■ 투 자 비 적 절 성 ■	6 6 1	46.2% 46.2% 7.7%

【 표 1 】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

[문 1] 귀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례수	보통	잘 이해하고 있다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	*보통*	*잘이해*	계	*평균*
		%	%	%	%	%		
■ 전 체 ■	(13)	15.4	7.7	76.9	15.4	84.6	100.0	90.38
■ 지 서 남 동 해 해 권 권 ■	(4) (5) (4)	.0 40.0 .0	.0 .0 25.0	100.0 60.0 75.0	.0 40.0 .0	100.0 60.0 100.0	100.0 100.0 100.0	100.00 80.00 93.75
■ 제 주 지 역 여 부 제 주 이 외 주 ■	(12) (1)	8.3 100.0	8.3 .0	83.3 .0	8.3 100.0	91.7 .0	100.0 100.0	93.75 50.00
■ 사 업 내 용 이 해 통 ■	(2) (11)	100.0 .0	.0 9.1	.0 90.9	100.0 .0	.0 100.0	100.0 100.0	50.00 97.73
■ 투 자 비 적 절 성 ■	(6) (6) (1)	33.3 .0 .0	16.7 .0 .0	50.0 100.0 100.0	33.3 .0 .0	66.7 100.0 100.0	100.0 100.0 100.0	79.17 100.00 100.00

【 표 2 】 사업 추진방법에 대한 이해

[문 2] 귀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방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사례수	보통	잘 이해하고 있다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	*보통*	*잘이해*	계	*평균*
		%	%	%	%	%		
■ 전 체 ■	(13)	23.1	15.4	61.5	23.1	76.9	100.0	84.62
■ 지 서 남 동 해 해 권 권 ■	(4) (5) (4)	25.0 20.0 25.0	.0 20.0 25.0	75.0 60.0 50.0	25.0 20.0 25.0	75.0 80.0 75.0	100.0 100.0 100.0	87.50 85.00 81.25
■ 제 주 지 역 여 부 제 주 이 외 주 ■	(12) (1)	25.0 .0	8.3 100.0	66.7 .0	25.0 .0	75.0 100.0	100.0 100.0	85.42 75.00
■ 사 업 내 용 이 해 통 ■	(2) (11)	50.0 18.2	50.0 9.1	.0 72.7	50.0 18.2	50.0 81.8	100.0 100.0	62.50 88.64
■ 투 자 비 적 절 성 ■	(6) (6) (1)	50.0 .0 .0	33.3 .0 .0	16.7 100.0 100.0	50.0 .0 .0	50.0 100.0 100.0	100.0 100.0 100.0	66.67 100.00 100.00

【 표 3 】 사업 투자비의 적절성

[문 3] 귀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투자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부족하다	적당하다	많다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전 체 ■	(13)	46.2	46.2	7.7	46.2	46.2	7.7	100.0	40.38
■ 지 서 역 별 ■ ■ 남 해 해 권 ■ ■ 동 해 해 권 ■	(4)	25.0	75.0	.0	25.0	75.0	.0	100.0	43.75
	(5)	40.0	40.0	20.0	40.0	40.0	20.0	100.0	45.00
	(4)	75.0	25.0	.0	75.0	25.0	.0	100.0	31.25
■ 제 주 지 역 여 부 ■ ■ 제 주 이 외 주 ■	(12)	41.7	50.0	8.3	41.7	50.0	8.3	100.0	41.67
	(1)	100.0	.0	.0	100.0	.0	.0	100.0	25.00
■ 사 업 내 용 이 해 ■ ■ 보 장 이 해 ■	(2)	100.0	.0	.0	100.0	.0	.0	100.0	25.00
	(11)	36.4	54.5	9.1	36.4	54.5	9.1	100.0	43.18
■ 투 자 비 적 절 성 ■ ■ 부 보 통 ■ ■ 과 다 ■	(6)	100.0	.0	.0	100.0	.0	.0	100.0	25.00
	(6)	.0	100.0	.0	.0	100.0	.0	100.0	50.00
	(6)	.0	.0	100.0	.0	.0	100.0	100.0	50.00
	(1)	.0	.0	100.0	.0	.0	100.0	100.0	75.00

【 표 4 】 대상지 선정 단계의 진행 정도

[문 4] 귀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각 단계별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되었습니까)?

	사례수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전 체 ■	(13)	23.1	15.4	61.5	23.1	76.9	100.0	84.62
■ 지 서 역 별 ■ ■ 남 해 해 권 ■ ■ 동 해 해 권 ■	(4)	25.0	.0	75.0	25.0	75.0	100.0	87.50
	(5)	40.0	.0	60.0	40.0	60.0	100.0	80.00
	(4)	.0	50.0	50.0	.0	100.0	100.0	87.50
■ 제 주 지 역 여 부 ■ ■ 제 주 이 외 주 ■	(12)	16.7	16.7	66.7	16.7	83.3	100.0	87.50
	(1)	100.0	.0	.0	100.0	.0	100.0	50.00
■ 사 업 내 용 이 해 ■ ■ 보 장 이 해 ■	(2)	100.0	.0	.0	100.0	.0	100.0	50.00
	(11)	9.1	18.2	72.7	9.1	90.9	100.0	90.91
■ 투 자 비 적 절 성 ■ ■ 부 보 통 ■ ■ 과 다 ■	(6)	50.0	33.3	16.7	50.0	50.0	100.0	66.67
	(6)	.0	.0	100.0	.0	100.0	100.0	100.00
	(6)	.0	.0	100.0	.0	100.0	100.0	100.00
	(1)	.0	.0	100.0	.0	100.0	100.0	100.00

【 표 4-1 】 기본계획 및 실시단계 단계의 진행 정도

[문 4-1] 귀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각 단계별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되었습니까)?

	사례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전 체 ■	(13)	15.4	15.4	15.4	53.8	15.4	15.4	69.2	100.0	76.92
■ 지 서 역 별 ■ ■ 남 해 해 권 ■ ■ 동 해 해 권 ■	(4)	50.0	.0	.0	50.0	50.0	.0	50.0	100.0	62.50
	(5)	.0	20.0	20.0	60.0	.0	20.0	80.0	100.0	85.00
	(4)	.0	25.0	25.0	50.0	.0	25.0	75.0	100.0	81.25
■ 제 주 지 역 여 부 ■ ■ 제 주 이 외 주 ■	(12)	16.7	8.3	16.7	58.3	16.7	8.3	75.0	100.0	79.17
	(1)	.0	100.0	.0	.0	.0	100.0	.0	100.0	50.00
■ 사 업 내 용 이 해 ■ ■ 보 장 이 해 ■	(2)	.0	50.0	50.0	.0	.0	50.0	50.0	100.0	62.50
	(11)	18.2	9.1	9.1	63.6	18.2	9.1	72.7	100.0	79.55
■ 투 자 비 적 절 성 ■ ■ 부 보 통 ■ ■ 과 다 ■	(6)	16.7	33.3	33.3	16.7	16.7	33.3	50.0	100.0	62.50
	(6)	16.7	.0	.0	83.3	16.7	.0	83.3	100.0	87.50
	(6)	.0	.0	.0	100.0	.0	.0	100.0	100.0	100.00
	(1)	.0	.0	.0	100.0	.0	.0	100.0	100.0	100.00

【 표 4-2 】 시공단계 진행 정도

[문 4-2] 귀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이 각 단계별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되었습니까)?

	사례수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전 체 ■	(13)	30.8	15.4	53.8	30.8	69.2	100.0	80.77
■ 지 서 역 별 ■ ■ 해 해 권 ■ ■ 해 해 권 ■	(4)	50.0	.0	50.0	50.0	50.0	100.0	75.00
	(5)	20.0	20.0	60.0	20.0	80.0	100.0	85.00
	(4)	25.0	25.0	50.0	25.0	75.0	100.0	81.25
■ 제 주 지 역 여 부 ■ ■ 제 주 이 외 주 ■	(12)	25.0	16.7	58.3	25.0	75.0	100.0	83.33
	(1)	100.0	.0	.0	100.0	.0	100.0	50.00
■ 사 업 내 용 이 해 ■ ■ 보 장 이 해 ■	(2)	50.0	50.0	.0	50.0	50.0	100.0	62.50
	(11)	27.3	9.1	63.6	27.3	72.7	100.0	84.09
■ 투 자 비 적 절 성 ■ ■ 부 보 ■ ■ 과 ■	(6)	50.0	33.3	16.7	50.0	50.0	100.0	66.67
	(6)	16.7	.0	83.3	16.7	83.3	100.0	91.67
	(1)	.0	.0	100.0	.0	100.0	100.0	100.00

【 표 4-3 】 운영단계 진행 정도

[문 4-3] 귀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이 각 단계별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되었습니까)?

	사례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전 체 ■	(13)	7.7	15.4	7.7	61.5	7.7	7.7	15.4	69.2	100.0	83.33
■ 지 서 역 별 ■ ■ 해 해 권 ■ ■ 해 해 권 ■	(4)	.0	.0	25.0	75.0	.0	.0	.0	100.0	100.0	93.75
	(5)	20.0	20.0	.0	40.0	20.0	20.0	20.0	40.0	100.0	68.75
	(4)	.0	25.0	.0	75.0	.0	.0	25.0	75.0	100.0	87.50
■ 제 주 지 역 여 부 ■ ■ 제 주 이 외 주 ■	(12)	.0	16.7	8.3	66.7	8.3	.0	16.7	75.0	100.0	88.64
	(1)	100.0	.0	.0	.0	.0	100.0	.0	.0	100.0	25.00
■ 사 업 내 용 이 해 ■ ■ 보 장 이 해 ■	(2)	50.0	50.0	.0	.0	.0	50.0	50.0	.0	100.0	37.50
	(11)	.0	9.1	9.1	72.7	9.1	.0	9.1	81.8	100.0	92.50
■ 투 자 비 적 절 성 ■ ■ 부 보 ■ ■ 과 ■	(6)	16.7	33.3	16.7	33.3	.0	16.7	33.3	50.0	100.0	66.67
	(6)	.0	.0	.0	83.3	16.7	.0	.0	83.3	100.0	100.00
	(1)	.0	.0	.0	100.0	.0	.0	.0	100.0	100.0	100.00

【 표 5 】 어촌관광 활동 시설 확충 효과

[문 5] 귀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을 통해 어촌지역의 관광기반시설이 확충되었다고(될 것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전 체 ■	(13)	7.7	23.1	38.5	30.8	7.7	23.1	69.2	100.0	73.08
■ 지 서 역 별 ■ ■ 해 해 권 ■ ■ 해 해 권 ■	(4)	.0	25.0	.0	75.0	.0	25.0	75.0	100.0	87.50
	(5)	.0	40.0	40.0	20.0	.0	40.0	60.0	100.0	70.00
	(4)	25.0	.0	75.0	.0	25.0	.0	75.0	100.0	62.50
■ 제 주 지 역 여 부 ■ ■ 제 주 이 외 주 ■	(12)	8.3	16.7	41.7	33.3	8.3	16.7	75.0	100.0	75.00
	(1)	.0	100.0	.0	.0	.0	100.0	.0	100.0	50.00
■ 사 업 내 용 이 해 ■ ■ 보 장 이 해 ■	(2)	.0	50.0	50.0	.0	.0	50.0	50.0	100.0	62.50
	(11)	9.1	18.2	36.4	36.4	9.1	18.2	72.7	100.0	75.00
■ 투 자 비 적 절 성 ■ ■ 부 보 ■ ■ 과 ■	(6)	16.7	33.3	50.0	.0	16.7	33.3	50.0	100.0	58.33
	(6)	.0	16.7	16.7	66.7	.0	16.7	83.3	100.0	87.50
	(1)	.0	.0	100.0	.0	.0	.0	100.0	100.0	75.00

【 표 5-1 】 관광편의시설 확충 효과

【 문 5-1 】 귀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을 통해 어촌지역의 관광기반시설이 확충되었다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전 체 ■	(13)	7.7	38.5	15.4	38.5	7.7	38.5	53.8	100.0	71.15
■ 지 서 역 별 남 해 권 동 해 권	(4)	.0	25.0	.0	75.0	.0	25.0	75.0	100.0	87.50
	(5)	.0	40.0	40.0	20.0	.0	40.0	60.0	100.0	70.00
	(4)	25.0	50.0	.0	25.0	25.0	50.0	25.0	100.0	56.25
■ 제 주 지 역 여 부 제 주 이 외 주	(12)	8.3	33.3	16.7	41.7	8.3	33.3	58.3	100.0	72.92
	(1)	.0	100.0	.0	.0	.0	100.0	.0	100.0	50.00
■ 사 업 내 용 이 해 보 조 이 해	(2)	.0	50.0	50.0	.0	.0	50.0	50.0	100.0	62.50
	(11)	9.1	36.4	9.1	45.5	9.1	36.4	54.5	100.0	72.73
■ 투 자 비 적 절 성 부 보 과	(6)	16.7	66.7	16.7	.0	16.7	66.7	16.7	100.0	50.00
	(6)	.0	16.7	.0	83.3	.0	16.7	83.3	100.0	91.67
	(1)	.0	.0	100.0	.0	.0	.0	100.0	100.0	75.00

【 표 5-2 】 교통시설 확충 효과

【 문 5-2 】 귀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을 통해 어촌지역의 관광기반시설이 확충되었다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13)	7.7	7.7	30.8	15.4	38.5	15.4	30.8	53.8	100.0	67.31
■ 지 서 역 별 남 해 권 동 해 권	(4)	.0	25.0	.0	.0	75.0	25.0	.0	75.0	100.0	81.25
	(5)	.0	.0	40.0	40.0	20.0	.0	40.0	60.0	100.0	70.00
	(4)	25.0	.0	50.0	.0	25.0	25.0	50.0	25.0	100.0	50.00
■ 제 주 지 역 여 부 제 주 이 외 주	(12)	8.3	8.3	33.3	8.3	41.7	16.7	33.3	50.0	100.0	66.67
	(1)	.0	.0	.0	100.0	.0	.0	.0	100.0	100.0	75.00
■ 사 업 내 용 이 해 보 조 이 해	(2)	.0	.0	50.0	50.0	.0	.0	50.0	50.0	100.0	62.50
	(11)	9.1	9.1	27.3	9.1	45.5	18.2	27.3	54.5	100.0	68.18
■ 투 자 비 적 절 성 부 보 과	(6)	16.7	16.7	50.0	16.7	.0	33.3	50.0	16.7	100.0	41.67
	(6)	.0	.0	16.7	.0	83.3	.0	16.7	83.3	100.0	91.67
	(1)	.0	.0	.0	100.0	.0	.0	.0	100.0	100.0	75.00

【 표 6 】 경관 개선 효과

【 문 6 】 귀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이 어촌지역의 정주환경이 개선되었다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계	*평균*
		%	%	%		
■ 전 체 ■	(13)	46.2	53.8	100.0	100.0	88.46
■ 지 서 역 별 남 해 권 동 해 권	(4)	25.0	75.0	100.0	100.0	93.75
	(5)	60.0	40.0	100.0	100.0	85.00
	(4)	50.0	50.0	100.0	100.0	87.50
■ 제 주 지 역 여 부 제 주 이 외 주	(12)	41.7	58.3	100.0	100.0	89.58
	(1)	100.0	.0	100.0	100.0	75.00
■ 사 업 내 용 이 해 보 조 이 해	(2)	100.0	.0	100.0	100.0	75.00
	(11)	36.4	63.6	100.0	100.0	90.91
■ 투 자 비 적 절 성 부 보 과	(6)	83.3	16.7	100.0	100.0	79.17
	(6)	16.7	83.3	100.0	100.0	95.83
	(1)	.0	100.0	100.0	100.0	100.00

【 표 6-1 】 생산기반시설 확충 효과

[문 6-1] 귀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이 어촌지역의 정주환경이 개선되었다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무응답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		
■ 전 체 ■	(13)	7.7	15.4	23.1	15.4	30.8	7.7	23.1	23.1	46.2	100.0	62.50
■ 지 서 남 동 해 해 권 권 ■	(4) (5) (4)	.0 .0 25.0	25.0 20.0 .0	.0 20.0 50.0	.0 40.0 .0	75.0 20.0 .0	.0 .0 25.0	25.0 20.0 25.0	.0 20.0 50.0	75.0 60.0 .0	100.0 100.0 100.0	81.25 65.00 33.33
■ 제 주 지 역 여 부 제 주 이 외 주 제	(12) (1)	8.3 .0	8.3 100.0	25.0 .0	16.7 .0	33.3 .0	8.3 .0	16.7 100.0	25.0 .0	50.0 .0	100.0 100.0	65.91 25.00
■ 사 업 내 용 이 해 보 잘 이 해 통 해	(2) (11)	.0 9.1	50.0 9.1	.0 27.3	50.0 9.1	.0 36.4	.0 9.1	50.0 18.2	.0 27.3	50.0 45.5	100.0 100.0	50.00 65.00
■ 투 자 비 적 절 성 부 보 통 과	(6) (6) (1)	16.7 .0 .0	33.3 .0 .0	33.3 16.7 .0	16.7 16.7 .0	.0 50.0 100.0	.0 16.7 .0	50.0 .0 .0	33.3 16.7 .0	16.7 66.7 100.0	100.0 100.0 100.0	37.50 85.00 100.00

【 표 6-2 】 생활편의시설 확충 효과

[문 6-2] 귀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이 어촌지역의 정주환경이 개선되었다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전 체 ■	(13)	7.7	38.5	23.1	30.8	7.7	38.5	53.8	100.0	67.31
■ 지 서 남 동 해 해 권 권 ■	(4) (5) (4)	.0 .0 25.0	25.0 20.0 75.0	.0 60.0 .0	75.0 20.0 .0	.0 .0 25.0	25.0 20.0 75.0	75.0 80.0 .0	100.0 100.0 100.0	87.50 75.00 37.50
■ 제 주 지 역 여 부 제 주 이 외 주 제	(12) (1)	8.3 .0	33.3 100.0	25.0 .0	33.3 .0	8.3 .0	33.3 100.0	58.3 .0	100.0 100.0	68.75 50.00
■ 사 업 내 용 이 해 보 잘 이 해 통 해	(2) (11)	.0 9.1	50.0 36.4	50.0 18.2	.0 36.4	.0 9.1	50.0 36.4	50.0 54.5	100.0 100.0	62.50 68.18
■ 투 자 비 적 절 성 부 보 통 과	(6) (6) (1)	.0 16.7 .0	83.3 .0 .0	16.7 16.7 100.0	.0 66.7 .0	.0 16.7 .0	83.3 .0 .0	16.7 83.3 100.0	100.0 100.0 100.0	54.17 79.17 75.00

【 표 7 】 도입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주체 지정

[문 7]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으로 도입된(될) 시설의 관리운영 주체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사례수	예	향후 지정할 예정이다	계
		%	%	
■ 전 체 ■	(13)	76.9	23.1	100.0
■ 지 서 남 동 해 해 권 권 ■	(4) (5) (4)	50.0 80.0 100.0	50.0 20.0 .0	100.0 100.0 100.0
■ 제 주 지 역 여 부 제 주 이 외 주 제	(12) (1)	75.0 100.0	25.0 .0	100.0 100.0
■ 사 업 내 용 이 해 보 잘 이 해 통 해	(2) (11)	50.0 81.8	50.0 18.2	100.0 100.0
■ 투 자 비 적 절 성 부 보 통 과	(6) (6) (1)	83.3 66.7 100.0	16.7 33.3 .0	100.0 100.0 100.0

【 표 8 】 사업 관리 조직 및 담당자 지정 유무

[문 8] 귀하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조성된 “어촌관광단지” 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조직 및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사례수	예	아니오	향후 지정할 예정이다	계
		%	%	%	
■ 전 체 ■	(13)	61.5	23.1	15.4	100.0
■ 지 서 역 분 ■ ■ 해 해 권 권 ■ ■ 동 해 권 ■	(4) (5) (4)	50.0 40.0 100.0	25.0 40.0 .0	25.0 20.0 .0	100.0 100.0 100.0
■ 제 주 지 역 여 부 ■ ■ 제 주 이 외 주 ■	(12) (1)	66.7 .0	16.7 100.0	16.7 .0	100.0 100.0
■ 사 업 내 용 이 해 ■ ■ 보 장 이 해 ■	(2) (11)	.0 72.7	100.0 9.1	.0 18.2	100.0 100.0
■ 투 자 비 적 절 성 ■ ■ 부 보 ■ ■ 과 다 ■	(6) (6) (1)	50.0 66.7 100.0	50.0 .0 .0	.0 33.3 .0	100.0 100.0 100.0

9.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지역주민

【 응답자 특성 표 】

	사례수	%
■ 전 체 ■	260	100.0%
■ 지역별 ■		
지정양남면	11	4.2%
양남면	10	3.8%
남면	11	4.2%
안면	14	5.4%
사면	10	3.8%
용포면	11	4.2%
대항면	11	4.2%
포내면	8	3.1%
대성면	10	3.8%
구포면	7	2.7%
포내면	10	3.8%
미리내면	10	3.8%
주포면	6	2.3%
적성면	11	4.2%
안남면	12	4.6%
태안면	14	5.4%
이수면	6	2.3%
항동면	13	5.0%
외포면	12	4.6%
공치면	11	4.2%
신서면	10	3.8%
전도면	10	3.8%
하구면	7	2.7%
구영면	6	2.3%
사계면	9	3.5%
■ 성별 ■		
남자	173	66.5%
여자	87	33.5%
■ 연령 ■		
19 - 29 세	9	3.5%
30 - 39 세	11	4.2%
40 - 49 세	26	10.0%
50 대 이상	214	82.3%
■ 거주기간 ■		
5년 미만	13	5.0%
5 ~ 10년	9	3.5%
10 ~ 20년	21	8.1%
20년 이상	217	83.5%
■ 어촌계원여부 ■		
어촌계원	104	40.0%
비어촌계원	156	60.0%

【 표 2 】 사업수행으로 도입되는 시설 인지

[문 2]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도입되는 시설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사례수	전혀모른다	2)	3)	4)	잘알고있다	*비인지*	*보통*	*인지*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260)	41.5	19.2	9.2	20.0	10.0	60.8	9.2	30.0	100.0	34.42
■ 지정안락유류백형추경대쌍유포내백초삼의수도향유신서접하구사	(11) (10) (11) (14) (10) (11) (11) (8) (10) (7) (10) (10) (6) (11) (12) (14) (6) (13) (12) (11) (10) (10) (7) (6)	27.3 30.0 9.1 50.0 30.0 54.5 54.5 37.5 60.0 14.3 30.0 50.0 50.0 54.5 16.7 50.0 33.3 23.1 33.3 45.5 90.0 40.0 57.1 50.0	36.4 50.0 72.7 14.3 20.0 9.1 18.2 12.5 .0 28.6 30.0 .0 10.0 18.2 8.3 14.3 16.7 23.1 8.3 9.1 10.0 20.0 .0 33.3 11.1	27.3 .0 9.1 14.3 10.0 9.1 9.1 25.0 10.0 .0 .0 30.0 20.0 9.1 16.7 .0 16.7 8.3 .0 .0 .0 14.3 16.7 .0	9.1 20.0 .0 7.1 30.0 27.3 9.1 25.0 20.0 28.6 40.0 10.0 10.0 18.2 25.0 14.3 33.3 46.2 33.3 18.2 .0 20.0 14.3 .0 44.4	.0 .0 9.1 14.3 10.0 .0 9.1 .0 10.0 28.6 .0 10.0 10.0 .0 33.3 21.4 .0 7.7 16.7 27.3 .0 20.0 14.3 .0 .0	63.6 80.0 81.8 64.3 50.0 63.6 72.7 50.0 60.0 42.9 60.0 50.0 60.0 72.7 25.0 64.3 83.3 46.2 41.7 54.5 100.0 60.0 57.1 83.3 55.6	27.3 .0 9.1 14.3 10.0 9.1 9.1 25.0 10.0 .0 .0 30.0 20.0 9.1 16.7 .0 16.7 8.3 .0 .0 .0 14.3 16.7 .0	100.0 100.0	29.55 27.50 31.82 30.36 42.50 27.27 25.00 34.38 30.00 57.14 37.50 32.50 30.00 22.73 62.50 35.71 37.50 48.08 47.92 43.18 2.50 40.00 32.14 16.67 36.11	
■ 성 남 여	(173) (87)	43.4 37.9	17.3 23.0	8.7 10.3	18.5 23.0	12.1 5.7	60.7 60.9	8.7 10.3	30.6 28.7	100.0 100.0	34.68 33.91
■ 연 령	(9) (11) (26) (214)	33.3 54.5 26.9 43.0	33.3 9.1 23.1 18.7	22.2 9.1 7.7 8.9	.0 27.3 34.6 18.7	11.1 .0 7.7 10.7	66.7 63.6 50.0 61.7	22.2 9.1 7.7 8.9	11.1 27.3 42.3 29.4	100.0 100.0 100.0 100.0	30.56 27.27 43.27 33.88
■ 거 주 기 간	(13) (9) (21) (217)	53.8 33.3 33.3 41.9	23.1 11.1 19.0 19.4	15.4 44.4 .0 8.3	7.7 11.1 33.3 19.8	.0 .0 14.3 10.6	76.9 44.4 52.4 61.3	15.4 44.4 .0 8.3	7.7 11.1 47.6 30.4	100.0 100.0 100.0 100.0	19.23 33.33 44.05 34.45
■ 어촌계원여부	(104) (156)	33.7 46.8	22.1 17.3	8.7 9.6	22.1 18.6	13.5 7.7	55.8 64.1	8.7 9.6	35.6 26.3	100.0 100.0	39.90 30.77

【 표 3 】 사업예산규모 적정성

[문 3]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예산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어촌계 5억~10억)

	사례수	매우부족하다	2)	3)	4)	매우충분하다	*부족*	*보통*	*충분*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260)	8.5	19.2	53.1	14.2	5.0	27.7	53.1	19.2	100.0	47.02
■ 지역별 ■											
지정안양읍	(11)	9.1	.0	81.8	.0	9.1	9.1	81.8	9.1	100.0	50.00
마마마	(10)	.0	30.0	60.0	10.0	.0	30.0	60.0	10.0	100.0	45.00
마마마	(11)	9.1	9.1	72.7	9.1	.0	18.2	72.7	9.1	100.0	45.45
마마마	(14)	14.3	57.1	21.4	7.1	.0	71.4	21.4	7.1	100.0	30.36
마마마	(10)	.0	10.0	50.0	10.0	30.0	10.0	50.0	40.0	100.0	65.00
마마마	(11)	9.1	.0	63.6	27.3	.0	9.1	63.6	27.3	100.0	52.27
마마마	(11)	.0	36.4	27.3	36.4	.0	36.4	27.3	36.4	100.0	50.00
마마마	(8)	.0	50.0	25.0	25.0	.0	50.0	25.0	25.0	100.0	43.75
마마마	(10)	10.0	10.0	40.0	30.0	10.0	20.0	40.0	40.0	100.0	55.00
마마마	(7)	.0	.0	71.4	14.3	14.3	.0	71.4	28.6	100.0	60.71
마마마	(10)	.0	20.0	70.0	10.0	.0	20.0	70.0	10.0	100.0	47.50
마마마	(10)	10.0	10.0	80.0	.0	.0	20.0	80.0	.0	100.0	42.50
마마마	(10)	.0	20.0	60.0	10.0	10.0	20.0	60.0	20.0	100.0	52.50
마마마	(6)	16.7	.0	33.3	16.7	33.3	16.7	33.3	50.0	100.0	62.50
마마마	(11)	.0	27.3	54.5	18.2	.0	27.3	54.5	18.2	100.0	47.73
마마마	(12)	16.7	25.0	50.0	8.3	.0	41.7	50.0	8.3	100.0	37.50
마마마	(14)	7.1	28.6	42.9	14.3	7.1	35.7	42.9	21.4	100.0	46.43
마마마	(6)	.0	.0	83.3	16.7	.0	.0	83.3	16.7	100.0	54.17
마마마	(13)	.0	23.1	53.8	23.1	.0	23.1	53.8	23.1	100.0	50.00
마마마	(12)	8.3	8.3	58.3	25.0	.0	16.7	58.3	25.0	100.0	50.00
마마마	(11)	.0	18.2	63.6	18.2	.0	18.2	63.6	18.2	100.0	50.00
마마마	(10)	30.0	40.0	30.0	.0	.0	70.0	30.0	.0	100.0	25.00
마마마	(10)	10.0	10.0	60.0	.0	20.0	20.0	60.0	20.0	100.0	52.50
마마마	(7)	42.9	14.3	28.6	14.3	.0	57.1	28.6	14.3	100.0	28.57
마마마	(6)	33.3	16.7	33.3	16.7	.0	50.0	33.3	16.7	100.0	33.33
마마마	(9)	11.1	.0	66.7	11.1	11.1	11.1	66.7	22.2	100.0	52.78
■ 성별 ■											
성남여	(173)	8.7	20.2	48.6	15.6	6.9	28.9	48.6	22.5	100.0	47.98
여	(87)	8.0	17.2	62.1	11.5	1.1	25.3	62.1	12.6	100.0	45.11
■ 연령 ■											
19-29세	(9)	.0	33.3	44.4	22.2	.0	33.3	44.4	22.2	100.0	47.22
30-40대	(11)	9.1	18.2	72.7	.0	.0	27.3	72.7	.0	100.0	40.91
40-50대	(26)	7.7	15.4	46.2	23.1	7.7	23.1	46.2	30.8	100.0	51.92
50대 이상	(214)	8.9	19.2	53.3	13.6	5.1	28.0	53.3	18.7	100.0	46.73
■ 거주기간 ■											
5년 미만	(13)	7.7	23.1	53.8	15.4	.0	30.8	53.8	15.4	100.0	44.23
5~10년	(9)	.0	22.2	55.6	11.1	11.1	22.2	55.6	22.2	100.0	52.78
10~20년	(21)	9.5	14.3	47.6	28.6	.0	23.8	47.6	28.6	100.0	48.81
20년 이상	(217)	8.8	19.4	53.5	12.9	5.5	28.1	53.5	18.4	100.0	46.77
■ 어촌계원여부 ■											
어촌계원	(104)	7.7	25.0	50.0	12.5	4.8	32.7	50.0	17.3	100.0	45.43
비어촌계원	(156)	9.0	15.4	55.1	15.4	5.1	24.4	55.1	20.5	100.0	48.08

【 표 4 】 사업 집행과정의 효율성

[문 4]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선정 및 집행 (착공에서 준공까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매우비효율적이다	2)	3)	4)	매우효율적이다	*비효율*	*보통*	*효율*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260)	3.1	13.8	43.8	28.8	10.4	16.9	43.8	39.2	100.0	57.40
■ 지역별 ■											
■ 서울특별시 ■	(11)	.0	9.1	27.3	54.5	9.1	9.1	27.3	63.6	100.0	65.91
■ 인천광역시 ■	(10)	.0	.0	60.0	10.0	30.0	.0	60.0	40.0	100.0	67.50
■ 경기도 ■	(11)	9.1	9.1	27.3	36.4	18.2	18.2	27.3	54.5	100.0	61.36
■ 충청남도 ■	(14)	.0	7.1	42.9	35.7	14.3	7.1	42.9	50.0	100.0	64.29
■ 충청북도 ■	(10)	10.0	30.0	50.0	10.0	.0	40.0	50.0	10.0	100.0	40.00
■ 강원도 ■	(11)	9.1	.0	36.4	54.5	.0	9.1	36.4	54.5	100.0	59.09
■ 경상남도 ■	(11)	.0	.0	72.7	27.3	.0	.0	72.7	27.3	100.0	56.82
■ 경상북도 ■	(8)	.0	12.5	50.0	25.0	12.5	12.5	50.0	37.5	100.0	59.38
■ 충청권 ■	(10)	10.0	20.0	30.0	30.0	10.0	30.0	30.0	40.0	100.0	52.50
■ 호남권 ■	(7)	.0	14.3	14.3	42.9	28.6	14.3	14.3	71.4	100.0	71.43
■ 수도권 ■	(10)	.0	20.0	70.0	10.0	.0	20.0	70.0	10.0	100.0	47.50
■ 강원도 ■	(10)	.0	.0	60.0	20.0	20.0	.0	60.0	40.0	100.0	65.00
■ 충청권 ■	(10)	10.0	.0	50.0	40.0	.0	10.0	50.0	40.0	100.0	55.00
■ 호남권 ■	(6)	16.7	33.3	16.7	16.7	16.7	50.0	16.7	33.3	100.0	45.83
■ 수도권 ■	(11)	.0	18.2	63.6	18.2	.0	18.2	63.6	18.2	100.0	50.00
■ 충청권 ■	(12)	.0	16.7	58.3	16.7	8.3	16.7	58.3	25.0	100.0	54.17
■ 호남권 ■	(14)	.0	14.3	28.6	42.9	14.3	14.3	28.6	57.1	100.0	64.29
■ 수도권 ■	(6)	.0	33.3	50.0	16.7	.0	33.3	50.0	16.7	100.0	45.83
■ 강원도 ■	(13)	.0	23.1	46.2	23.1	7.7	23.1	46.2	30.8	100.0	53.85
■ 충청권 ■	(12)	.0	8.3	58.3	16.7	16.7	8.3	58.3	33.3	100.0	60.42
■ 호남권 ■	(11)	.0	45.5	9.1	36.4	9.1	45.5	9.1	45.5	100.0	52.27
■ 수도권 ■	(10)	.0	20.0	50.0	20.0	10.0	20.0	50.0	30.0	100.0	55.00
■ 강원도 ■	(10)	.0	.0	40.0	40.0	20.0	.0	40.0	60.0	100.0	70.00
■ 충청권 ■	(7)	.0	42.9	14.3	42.9	.0	42.9	14.3	42.9	100.0	50.00
■ 호남권 ■	(6)	.0	.0	33.3	50.0	16.7	.0	33.3	66.7	100.0	70.83
■ 수도권 ■	(9)	22.2	.0	55.6	11.1	11.1	22.2	55.6	22.2	100.0	47.22
■ 성 별 ■											
■ 남 자 ■	(173)	3.5	13.9	41.0	30.1	11.6	17.3	41.0	41.6	100.0	58.09
■ 여 자 ■	(87)	2.3	13.8	49.4	26.4	8.0	16.1	49.4	34.5	100.0	56.03
■ 연 령 ■											
■ 19 - 29 세 ■	(9)	.0	11.1	55.6	22.2	11.1	11.1	55.6	33.3	100.0	58.33
■ 30 - 39 세 ■	(11)	.0	9.1	54.5	36.4	.0	9.1	54.5	36.4	100.0	56.82
■ 40 - 49 세 ■	(26)	7.7	11.5	34.6	42.3	3.8	19.2	34.6	46.2	100.0	55.77
■ 50 세 이상 ■	(214)	2.8	14.5	43.9	27.1	11.7	17.3	43.9	38.8	100.0	57.59
■ 거 주 기 간 ■											
■ 5 년 미만 ■	(13)	.0	7.7	53.8	30.8	7.7	7.7	53.8	38.5	100.0	59.62
■ 5 ~ 10 년 ■	(9)	11.1	22.2	22.2	33.3	11.1	33.3	22.2	44.4	100.0	52.78
■ 10 ~ 20 년 ■	(21)	4.8	28.6	33.3	23.8	9.5	33.3	33.3	33.3	100.0	51.19
■ 20 년 이상 ■	(217)	2.8	12.4	45.2	29.0	10.6	15.2	45.2	39.6	100.0	58.06
■ 어촌계원여부 ■											
■ 어촌계원 ■	(104)	3.8	14.4	45.2	23.1	13.5	18.3	45.2	36.5	100.0	56.97
■ 비어촌계원 ■	(156)	2.6	13.5	42.9	32.7	8.3	16.0	42.9	41.0	100.0	57.69

【 표 5 】 사업의 어촌 문제점 해결에 기여도

[문 5]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투자가 끝나거나 투자 중인 현 시점에서 어촌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 도움이 이되지 않 는다	2)	3)	4)	매우 도움이 이된다	*도움안 됨*	*보통*	*도움됨*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260)	4.6	8.5	30.4	42.3	14.2	13.1	30.4	56.5	100.0	63.27
■ 지역별 ■											
마포구	(11)	.0	9.1	27.3	45.5	18.2	9.1	27.3	63.6	100.0	68.18
마포구	(10)	.0	.0	20.0	60.0	20.0	.0	20.0	80.0	100.0	75.00
마포구	(11)	.0	9.1	27.3	63.6	.0	9.1	27.3	63.6	100.0	63.64
마포구	(14)	14.3	.0	42.9	35.7	7.1	14.3	42.9	42.9	100.0	55.36
마포구	(10)	20.0	10.0	50.0	20.0	.0	30.0	50.0	20.0	100.0	42.50
마포구	(11)	.0	27.3	.0	45.5	27.3	27.3	.0	72.7	100.0	68.18
마포구	(11)	.0	9.1	18.2	54.5	18.2	9.1	18.2	72.7	100.0	70.45
마포구	(8)	.0	.0	37.5	50.0	12.5	.0	37.5	62.5	100.0	68.75
마포구	(10)	.0	10.0	30.0	50.0	10.0	10.0	30.0	60.0	100.0	65.00
마포구	(7)	.0	.0	28.6	42.9	28.6	.0	28.6	71.4	100.0	75.00
마포구	(10)	10.0	10.0	40.0	40.0	.0	20.0	40.0	40.0	100.0	52.50
마포구	(10)	.0	10.0	30.0	40.0	20.0	10.0	30.0	60.0	100.0	67.50
마포구	(10)	10.0	.0	40.0	20.0	30.0	10.0	40.0	50.0	100.0	65.00
마포구	(6)	16.7	.0	33.3	50.0	.0	16.7	33.3	50.0	100.0	54.17
마포구	(11)	.0	9.1	36.4	45.5	9.1	9.1	36.4	54.5	100.0	63.64
마포구	(12)	8.3	8.3	41.7	16.7	25.0	16.7	41.7	41.7	100.0	60.42
마포구	(14)	.0	14.3	28.6	42.9	14.3	14.3	28.6	57.1	100.0	64.29
마포구	(6)	.0	.0	33.3	50.0	16.7	.0	33.3	66.7	100.0	70.83
마포구	(13)	.0	23.1	7.7	53.8	15.4	23.1	7.7	69.2	100.0	65.38
마포구	(12)	8.3	8.3	33.3	41.7	8.3	16.7	33.3	50.0	100.0	58.33
마포구	(11)	18.2	.0	27.3	45.5	9.1	18.2	27.3	54.5	100.0	56.82
마포구	(10)	10.0	20.0	20.0	50.0	.0	30.0	20.0	50.0	100.0	52.50
마포구	(10)	.0	.0	30.0	40.0	30.0	.0	30.0	70.0	100.0	75.00
마포구	(7)	.0	14.3	.0	57.1	28.6	14.3	.0	85.7	100.0	75.00
마포구	(6)	.0	.0	83.3	16.7	.0	.0	83.3	16.7	100.0	54.17
마포구	(9)	.0	11.1	44.4	22.2	22.2	11.1	44.4	44.4	100.0	63.89
■ 성별 ■											
남자	(173)	6.4	8.7	26.6	41.6	16.8	15.0	26.6	58.4	100.0	63.44
여성	(87)	1.1	8.0	37.9	43.7	9.2	9.2	37.9	52.9	100.0	62.93
■ 연령별 ■											
19-29세	(9)	11.1	11.1	22.2	44.4	11.1	22.2	22.2	55.6	100.0	58.33
30-40대	(11)	.0	9.1	54.5	27.3	9.1	9.1	54.5	36.4	100.0	59.09
40-50대	(26)	.0	19.2	34.6	42.3	3.8	19.2	34.6	46.2	100.0	57.69
50대 이상	(214)	5.1	7.0	29.0	43.0	15.9	12.1	29.0	58.9	100.0	64.37
■ 거주기간 ■											
5년 미만	(13)	.0	7.7	38.5	38.5	15.4	7.7	38.5	53.8	100.0	65.38
5~10년	(9)	11.1	11.1	11.1	55.6	11.1	22.2	11.1	66.7	100.0	61.11
10~20년	(21)	4.8	19.0	28.6	28.6	19.0	23.8	28.6	47.6	100.0	59.52
20년 이상	(217)	4.6	7.4	30.9	43.3	13.8	12.0	30.9	57.1	100.0	63.59
■ 어촌계원여부 ■											
어촌계원	(104)	2.9	8.7	28.8	42.3	17.3	11.5	28.8	59.6	100.0	65.63
비어촌계원	(156)	5.8	8.3	31.4	42.3	12.2	14.1	31.4	54.5	100.0	61.70

【 표 6 】 사업 시행과정의 지역주민 역할 수행

[문 6]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촌계를 포함한 지역 주민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	2)	3)	4)	충분한 역할을 수행함	*수행못함*	*보통*	*수행함*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260)	8.1	20.0	40.8	20.0	11.2	28.1	40.8	31.2	100.0	51.54
■ 지역별 ■											
지정양묘마을 (11)	(11)	.0	.0	63.6	27.3	9.1	.0	63.6	36.4	100.0	61.36
마미마을 (10)	(10)	.0	10.0	40.0	20.0	30.0	10.0	40.0	50.0	100.0	67.50
우유마을 (11)	(11)	.0	54.5	27.3	9.1	9.1	54.5	27.3	18.2	100.0	43.18
안암마을 (14)	(14)	.0	28.6	35.7	21.4	14.3	28.6	35.7	35.7	100.0	55.36
사마마을 (10)	(10)	30.0	20.0	30.0	10.0	10.0	50.0	30.0	20.0	100.0	37.50
북쪽마을 (11)	(11)	.0	27.3	54.5	18.2	.0	27.3	54.5	18.2	100.0	47.73
추곡마을 (11)	(11)	9.1	9.1	54.5	27.3	.0	18.2	54.5	27.3	100.0	50.00
강양마을 (8)	(8)	12.5	.0	25.0	50.0	12.5	12.5	25.0	62.5	100.0	62.50
대포마을 (10)	(10)	10.0	30.0	10.0	20.0	30.0	40.0	10.0	50.0	100.0	57.50
내포마을 (7)	(7)	.0	.0	57.1	28.6	14.3	.0	57.1	42.9	100.0	64.29
내포마을 (10)	(10)	10.0	.0	40.0	50.0	.0	10.0	40.0	50.0	100.0	57.50
내포마을 (10)	(10)	.0	50.0	40.0	.0	10.0	50.0	40.0	10.0	100.0	42.50
백미리마을 (10)	(10)	20.0	10.0	50.0	20.0	.0	30.0	50.0	20.0	100.0	42.50
초촌마을 (6)	(6)	50.0	16.7	33.3	.0	.0	66.7	33.3	.0	100.0	20.83
우도마을 (11)	(11)	.0	18.2	27.3	45.5	9.1	18.2	27.3	54.5	100.0	61.36
우도마을 (12)	(12)	.0	25.0	33.3	25.0	16.7	25.0	33.3	41.7	100.0	58.33
우도마을 (14)	(14)	7.1	21.4	42.9	21.4	7.1	28.6	42.9	28.6	100.0	50.00
이수마을 (6)	(6)	16.7	.0	66.7	16.7	.0	16.7	66.7	16.7	100.0	45.83
향동마을 (13)	(13)	7.7	23.1	46.2	7.7	15.4	30.8	46.2	23.1	100.0	50.00
웅치마을 (12)	(12)	.0	33.3	50.0	16.7	.0	33.3	50.0	16.7	100.0	45.83
신마을 (11)	(11)	18.2	18.2	27.3	27.3	9.1	36.4	27.3	36.4	100.0	47.73
서마을 (10)	(10)	40.0	.0	40.0	.0	20.0	40.0	40.0	20.0	100.0	40.00
도마을 (10)	(10)	.0	.0	60.0	10.0	30.0	.0	60.0	40.0	100.0	67.50
하마을 (7)	(7)	.0	57.1	.0	28.6	14.3	57.1	.0	42.9	100.0	50.00
구마을 (6)	(6)	.0	33.3	66.7	.0	.0	33.3	66.7	.0	100.0	41.67
사계마을 (9)	(9)	.0	22.2	44.4	11.1	22.2	22.2	44.4	33.3	100.0	58.33
■ 성별 ■											
남자 (173)	(173)	9.2	19.1	38.2	22.5	11.0	28.3	38.2	33.5	100.0	51.73
여성 (87)	(87)	5.7	21.8	46.0	14.9	11.5	27.6	46.0	26.4	100.0	51.15
■ 연령별 ■											
19-29세 (9)	(9)	11.1	11.1	22.2	55.6	.0	22.2	22.2	55.6	100.0	55.56
30대 (11)	(11)	.0	36.4	36.4	18.2	9.1	36.4	36.4	27.3	100.0	50.00
40대 (26)	(26)	7.7	38.5	26.9	26.9	.0	46.2	26.9	26.9	100.0	43.27
50대 이상 (214)	(214)	8.4	17.3	43.5	17.8	13.1	25.7	43.5	30.8	100.0	52.45
■ 거주기간 ■											
5년 미만 (13)	(13)	7.7	46.2	23.1	23.1	.0	53.8	23.1	23.1	100.0	40.38
5~10년 (9)	(9)	11.1	22.2	33.3	11.1	22.2	33.3	33.3	33.3	100.0	52.78
10~20년 (21)	(21)	9.5	38.1	33.3	14.3	4.8	47.6	33.3	19.0	100.0	41.67
20년 이상 (217)	(217)	7.8	16.6	42.9	20.7	12.0	24.4	42.9	32.7	100.0	53.11
■ 어촌계원여부 ■											
어촌계원 (104)	(104)	4.8	18.3	34.6	25.0	17.3	23.1	34.6	42.3	100.0	57.93
비어촌계원 (156)	(156)	10.3	21.2	44.9	16.7	7.1	31.4	44.9	23.7	100.0	47.28

【 표 7 】 사업으로 인한 지역 주민 내 갈등 정도

[문 7]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착공 및 준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업으로 인한 지역 주민 내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없다	2)	3)	4)	매우많다	*없다	*보통	*있다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260)	28.1	14.2	33.1	19.2	5.4	42.3	33.1	24.6	100.0	39.90
■ 지역주민여부 별 ■											
지역주민	(11)	18.2	18.2	45.5	18.2	.0	36.4	45.5	18.2	100.0	40.91
지역주민아님	(10)	20.0	40.0	30.0	10.0	.0	60.0	30.0	10.0	100.0	32.50
지역주민여부 미지	(11)	9.1	9.1	54.5	18.2	9.1	18.2	54.5	27.3	100.0	52.27
지역주민여부 미지	(14)	28.6	7.1	14.3	50.0	.0	35.7	14.3	50.0	100.0	46.43
지역주민여부 미지	(10)	40.0	.0	40.0	20.0	.0	40.0	40.0	20.0	100.0	35.00
지역주민여부 미지	(11)	27.3	18.2	54.5	.0	.0	45.5	54.5	.0	100.0	31.82
지역주민여부 미지	(11)	9.1	27.3	45.5	18.2	.0	36.4	45.5	18.2	100.0	43.18
지역주민여부 미지	(8)	37.5	12.5	25.0	12.5	12.5	50.0	25.0	25.0	100.0	37.50
지역주민여부 미지	(10)	20.0	20.0	30.0	30.0	.0	40.0	30.0	30.0	100.0	42.50
지역주민여부 미지	(7)	28.6	.0	28.6	14.3	28.6	28.6	28.6	42.9	100.0	53.57
지역주민여부 미지	(10)	20.0	40.0	30.0	.0	10.0	60.0	30.0	10.0	100.0	35.00
지역주민여부 미지	(10)	30.0	.0	40.0	10.0	20.0	30.0	40.0	30.0	100.0	47.50
지역주민여부 미지	(10)	.0	10.0	50.0	20.0	20.0	10.0	50.0	40.0	100.0	62.50
지역주민여부 미지	(6)	16.7	.0	16.7	50.0	16.7	16.7	16.7	66.7	100.0	62.50
지역주민여부 미지	(11)	27.3	18.2	45.5	9.1	.0	45.5	45.5	9.1	100.0	34.09
지역주민여부 미지	(12)	41.7	33.3	25.0	.0	.0	75.0	25.0	.0	100.0	20.83
지역주민여부 미지	(14)	35.7	14.3	35.7	14.3	.0	50.0	35.7	14.3	100.0	32.14
지역주민여부 미지	(6)	.0	16.7	50.0	33.3	.0	16.7	50.0	33.3	100.0	54.17
지역주민여부 미지	(13)	15.4	23.1	30.8	30.8	.0	38.5	30.8	30.8	100.0	44.23
지역주민여부 미지	(12)	25.0	8.3	33.3	25.0	8.3	33.3	33.3	33.3	100.0	45.83
지역주민여부 미지	(11)	27.3	9.1	36.4	27.3	.0	36.4	36.4	27.3	100.0	40.91
지역주민여부 미지	(10)	90.0	.0	.0	10.0	.0	90.0	.0	10.0	100.0	7.50
지역주민여부 미지	(10)	90.0	.0	10.0	.0	.0	90.0	10.0	.0	100.0	5.00
지역주민여부 미지	(7)	14.3	.0	14.3	42.9	28.6	14.3	14.3	71.4	100.0	67.86
지역주민여부 미지	(6)	16.7	16.7	50.0	16.7	.0	33.3	50.0	16.7	100.0	41.67
지역주민여부 미지	(9)	22.2	11.1	22.2	33.3	11.1	33.3	22.2	44.4	100.0	50.00
■ 성 별 ■											
성남	(173)	34.1	16.2	31.8	15.0	2.9	50.3	31.8	17.9	100.0	34.10
성여	(87)	16.1	10.3	35.6	27.6	10.3	26.4	35.6	37.9	100.0	51.44
■ 연 령 ■											
19-29세	(9)	.0	11.1	55.6	22.2	11.1	11.1	55.6	33.3	100.0	58.33
30-40대	(11)	18.2	18.2	36.4	18.2	9.1	36.4	36.4	27.3	100.0	45.45
40-50대	(26)	15.4	11.5	34.6	38.5	.0	26.9	34.6	38.5	100.0	49.04
50대 이상	(214)	31.3	14.5	31.8	16.8	5.6	45.8	31.8	22.4	100.0	37.73
■ 거 주 기 간 ■											
5년 미만	(13)	15.4	7.7	30.8	30.8	15.4	23.1	30.8	46.2	100.0	55.77
5~10년	(9)	11.1	11.1	33.3	44.4	.0	22.2	33.3	44.4	100.0	52.78
10~20년	(21)	14.3	19.0	47.6	14.3	4.8	33.3	47.6	19.0	100.0	44.05
20년 이상	(217)	30.9	14.3	31.8	18.0	5.1	45.2	31.8	23.0	100.0	38.02
■ 어촌계원여부 ■											
어촌계원	(104)	29.8	19.2	25.0	18.3	7.7	49.0	25.0	26.0	100.0	38.70
비어촌계원	(156)	26.9	10.9	38.5	19.9	3.8	37.8	38.5	23.7	100.0	40.71

【 표 8 】 사업의 어려운 어촌 현실 해결에 기여도

【 문 8 】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현재의 어려운 어촌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기여하지못한다	2)	3)	4)	크게기여한다	*비기여*	*보통*	*기여*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260)	4.2	7.7	31.9	37.7	18.5	11.9	31.9	56.2	100.0	64.62
■ 지역별 ■											
지정양양읍	(11)	.0	.0	45.5	45.5	9.1	.0	45.5	54.5	100.0	65.91
마미리읍	(10)	.0	.0	20.0	50.0	30.0	.0	20.0	80.0	100.0	77.50
유유읍	(11)	.0	.0	45.5	27.3	27.3	.0	45.5	54.5	100.0	70.45
양양읍	(14)	7.1	14.3	14.3	35.7	28.6	21.4	14.3	64.3	100.0	66.07
삼척읍	(10)	10.0	40.0	20.0	10.0	20.0	50.0	20.0	30.0	100.0	47.50
주천읍	(11)	.0	9.1	27.3	45.5	18.2	9.1	27.3	63.6	100.0	68.18
홍천읍	(11)	.0	.0	63.6	27.3	9.1	.0	63.6	36.4	100.0	61.36
강릉시	(8)	12.5	.0	62.5	25.0	.0	12.5	62.5	25.0	100.0	50.00
대천읍	(10)	.0	10.0	30.0	50.0	10.0	10.0	30.0	60.0	100.0	65.00
고성읍	(7)	.0	.0	71.4	.0	28.6	.0	71.4	28.6	100.0	64.29
포천읍	(10)	10.0	.0	10.0	60.0	20.0	10.0	10.0	80.0	100.0	70.00
내포읍	(10)	.0	20.0	20.0	30.0	30.0	20.0	20.0	60.0	100.0	67.50
백미리	(10)	10.0	.0	30.0	40.0	20.0	10.0	30.0	60.0	100.0	65.00
천안읍	(6)	16.7	16.7	33.3	.0	33.3	33.3	33.3	33.3	100.0	54.17
문성읍	(11)	.0	.0	18.2	63.6	18.2	.0	18.2	81.8	100.0	75.00
인동읍	(12)	8.3	16.7	41.7	16.7	16.7	25.0	41.7	33.3	100.0	54.17
문성읍	(14)	.0	.0	14.3	71.4	14.3	.0	14.3	85.7	100.0	75.00
이수읍	(6)	16.7	.0	.0	66.7	16.7	16.7	.0	83.3	100.0	66.67
향동읍	(13)	.0	7.7	38.5	23.1	30.8	7.7	38.5	53.8	100.0	69.23
웅치읍	(12)	.0	25.0	33.3	33.3	8.3	25.0	33.3	41.7	100.0	56.25
신서읍	(11)	9.1	9.1	36.4	36.4	9.1	18.2	36.4	45.5	100.0	56.82
전서읍	(10)	10.0	.0	.0	80.0	10.0	10.0	.0	90.0	100.0	70.00
도동읍	(10)	.0	.0	20.0	40.0	40.0	.0	20.0	80.0	100.0	80.00
하도읍	(7)	.0	14.3	57.1	14.3	14.3	14.3	57.1	28.6	100.0	57.14
구암읍	(6)	16.7	16.7	50.0	16.7	.0	33.3	50.0	16.7	100.0	41.67
사계읍	(9)	.0	.0	55.6	33.3	11.1	.0	55.6	44.4	100.0	63.89
■ 성별 ■											
남자	(173)	5.8	8.1	30.6	37.0	18.5	13.9	30.6	55.5	100.0	63.58
여성	(87)	1.1	6.9	34.5	39.1	18.4	8.0	34.5	57.5	100.0	66.67
■ 연령별 ■											
19-29세	(9)	.0	22.2	22.2	33.3	22.2	22.2	22.2	55.6	100.0	63.89
30-40대	(11)	9.1	.0	9.1	54.5	27.3	9.1	9.1	81.8	100.0	72.73
40-50대	(26)	3.8	7.7	38.5	34.6	15.4	11.5	38.5	50.0	100.0	62.50
50대 이상	(214)	4.2	7.5	32.7	37.4	18.2	11.7	32.7	55.6	100.0	64.49
■ 거주기간 ■											
5년 미만	(13)	.0	23.1	23.1	38.5	15.4	23.1	23.1	53.8	100.0	61.54
5~10년	(9)	.0	22.2	.0	44.4	33.3	22.2	.0	77.8	100.0	72.22
10~20년	(21)	14.3	9.5	33.3	28.6	14.3	23.8	33.3	42.9	100.0	54.76
20년 이상	(217)	3.7	6.0	33.6	38.2	18.4	9.7	33.6	56.7	100.0	65.44
■ 어촌계원여부 ■											
어촌계원	(104)	2.9	8.7	30.8	33.7	24.0	11.5	30.8	57.7	100.0	66.83
비어촌계원	(156)	5.1	7.1	32.7	40.4	14.7	12.2	32.7	55.1	100.0	63.14

【 표 9 】 사업의 지역 내 어업 소득증가와 상관 여부

[문 9]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지역 내 어업외 소득증가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어업외 소득증가와 상관이 있음	어업외 소득증가와 상관이 없음	계
		%	%	
■ 전 체 ■	(260)	57.7	42.3	100.0
■ 지정안마을 유무에 따른 구분 ■				
지정안마을 유무에 따른 구분	(11)	63.6	36.4	100.0
지정안마을 유무에 따른 구분	(10)	90.0	10.0	100.0
지정안마을 유무에 따른 구분	(11)	72.7	27.3	100.0
지정안마을 유무에 따른 구분	(14)	42.9	57.1	100.0
지정안마을 유무에 따른 구분	(10)	50.0	50.0	100.0
지정안마을 유무에 따른 구분	(11)	54.5	45.5	100.0
지정안마을 유무에 따른 구분	(11)	63.6	36.4	100.0
지정안마을 유무에 따른 구분	(8)	62.5	37.5	100.0
지정안마을 유무에 따른 구분	(10)	40.0	60.0	100.0
지정안마을 유무에 따른 구분	(7)	71.4	28.6	100.0
지정안마을 유무에 따른 구분	(10)	20.0	80.0	100.0
지정안마을 유무에 따른 구분	(10)	50.0	50.0	100.0
지정안마을 유무에 따른 구분	(10)	80.0	20.0	100.0
지정안마을 유무에 따른 구분	(6)	33.3	66.7	100.0
지정안마을 유무에 따른 구분	(11)	63.6	36.4	100.0
지정안마을 유무에 따른 구분	(12)	58.3	41.7	100.0
지정안마을 유무에 따른 구분	(14)	57.1	42.9	100.0
지정안마을 유무에 따른 구분	(6)	33.3	66.7	100.0
지정안마을 유무에 따른 구분	(13)	53.8	46.2	100.0
지정안마을 유무에 따른 구분	(12)	50.0	50.0	100.0
지정안마을 유무에 따른 구분	(11)	63.6	36.4	100.0
지정안마을 유무에 따른 구분	(10)	60.0	40.0	100.0
지정안마을 유무에 따른 구분	(10)	60.0	40.0	100.0
지정안마을 유무에 따른 구분	(7)	85.7	14.3	100.0
지정안마을 유무에 따른 구분	(6)	50.0	50.0	100.0
지정안마을 유무에 따른 구분	(9)	66.7	33.3	100.0
■ 성 남 여 ■	(173)	57.8	42.2	100.0
(87)	57.5	42.5	100.0	
■ 연 령 별 ■				
19 - 29 세	(9)	66.7	33.3	100.0
30 대	(11)	63.6	36.4	100.0
40 대	(26)	73.1	26.9	100.0
50 대 이상	(214)	55.1	44.9	100.0
■ 거 주 기 간 ■				
5 년 미만	(13)	61.5	38.5	100.0
5 ~ 10 년	(9)	77.8	22.2	100.0
10 ~ 20 년	(21)	47.6	52.4	100.0
20 년 이상	(217)	57.6	42.4	100.0
■ 어촌계원여부 ■				
어촌계원	(104)	58.7	41.3	100.0
비어촌계원	(156)	57.1	42.9	100.0

【 표 10 】 사업의 지역 내 관광객 증가와 상관 여부

[문 10]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지역 내 방문객(관광객)의 증가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방문객(관광객)의 증가와 밀접한 상관이 있음	방문객(관광객)의 증가와 상관이 없음	계
		%	%	
■ 전 체 ■	(260)	77.7	22.3	100.0
■ 지정안목별 마을 ■				
동마	(11)	90.9	9.1	100.0
유유	(10)	80.0	20.0	100.0
안마	(11)	72.7	27.3	100.0
사마	(14)	85.7	14.3	100.0
청주	(10)	60.0	40.0	100.0
포항	(11)	100.0	.0	100.0
대포	(11)	72.7	27.3	100.0
상곡	(8)	87.5	12.5	100.0
유곡	(10)	70.0	30.0	100.0
포내	(7)	85.7	14.3	100.0
미리	(10)	80.0	20.0	100.0
조남	(6)	66.7	33.3	100.0
안남	(11)	81.8	18.2	100.0
탄장	(12)	50.0	50.0	100.0
수도	(14)	92.9	7.1	100.0
의성	(6)	83.3	16.7	100.0
왕치	(13)	69.2	30.8	100.0
신서	(12)	58.3	41.7	100.0
도하	(11)	90.9	9.1	100.0
도하	(10)	80.0	20.0	100.0
도하	(10)	80.0	20.0	100.0
하구	(7)	100.0	.0	100.0
사계	(6)	83.3	16.7	100.0
사계	(9)	55.6	44.4	100.0
■ 성 남 여 ■				
남	(173)	76.3	23.7	100.0
여	(87)	80.5	19.5	100.0
■ 연 령 별 ■				
19 - 29 세	(9)	77.8	22.2	100.0
30 대	(11)	81.8	18.2	100.0
40 대	(26)	73.1	26.9	100.0
50 대 이상	(214)	78.0	22.0	100.0
■ 거 주 기 간 ■				
5 년 미만	(13)	76.9	23.1	100.0
5 ~ 10 년	(9)	77.8	22.2	100.0
10 ~ 20 년	(21)	52.4	47.6	100.0
20 년 이상	(217)	80.2	19.8	100.0
■ 어촌계원여부 ■				
어촌계원	(104)	80.8	19.2	100.0
비어촌계원	(156)	75.6	24.4	100.0

【 표 11 】 사업의 지역 수산물 판매 증가와 상관 여부

[문 11]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지역 수산물 판매(현장 또는 택배)의 증가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사례수	수산물판매증가와 밀접한 상관이 있음	수산물판매증가와 상관이 없음	계
		%	%	
■ 전 체 ■	(260)	72.3	27.7	100.0
■ 지역별 ■				
마포구	(11)	90.9	9.1	100.0
마포구	(10)	70.0	30.0	100.0
마포구	(11)	63.6	36.4	100.0
마포구	(14)	85.7	14.3	100.0
마포구	(10)	50.0	50.0	100.0
마포구	(11)	100.0	.0	100.0
마포구	(11)	54.5	45.5	100.0
마포구	(8)	87.5	12.5	100.0
마포구	(10)	60.0	40.0	100.0
마포구	(7)	85.7	14.3	100.0
마포구	(10)	60.0	40.0	100.0
마포구	(10)	70.0	30.0	100.0
마포구	(10)	80.0	20.0	100.0
마포구	(6)	66.7	33.3	100.0
마포구	(11)	72.7	27.3	100.0
마포구	(12)	58.3	41.7	100.0
마포구	(14)	78.6	21.4	100.0
마포구	(6)	66.7	33.3	100.0
마포구	(13)	61.5	38.5	100.0
마포구	(12)	75.0	25.0	100.0
마포구	(11)	72.7	27.3	100.0
마포구	(10)	100.0	.0	100.0
마포구	(10)	70.0	30.0	100.0
마포구	(7)	85.7	14.3	100.0
마포구	(6)	83.3	16.7	100.0
마포구	(9)	33.3	66.7	100.0
■ 성 별 ■				
남자	(173)	75.1	24.9	100.0
여자	(87)	66.7	33.3	100.0
■ 연 령 ■				
19 - 29 세	(9)	88.9	11.1	100.0
30 대	(11)	90.9	9.1	100.0
40 대	(26)	73.1	26.9	100.0
50 대 이상	(214)	70.6	29.4	100.0
■ 거 주 기 간 ■				
5 년 미만	(13)	76.9	23.1	100.0
5 ~ 10 년	(9)	77.8	22.2	100.0
10 ~ 20 년	(21)	66.7	33.3	100.0
20 년 이상	(217)	72.4	27.6	100.0
■ 어 촌 계 원 여 부 ■				
어촌계원	(104)	70.2	29.8	100.0
비어촌계원	(156)	73.7	26.3	100.0

【 표 12-1 】 사업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

[문 12-1]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사회·문화·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례수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260)	5.0	7.3	33.1	37.3	17.3	12.3	33.1	54.6	100.0	63.65
■ 지식만양마을 (11) ■	(11)	.0	.0	27.3	54.5	18.2	.0	27.3	72.7	100.0	72.73
■ 마포마을 (10) ■	(10)	.0	.0	50.0	40.0	10.0	.0	50.0	50.0	100.0	65.00
■ 마포마을 (11) ■	(11)	.0	9.1	45.5	36.4	9.1	9.1	45.5	45.5	100.0	61.36
■ 마포마을 (14) ■	(14)	.0	.0	35.7	28.6	35.7	.0	35.7	64.3	100.0	75.00
■ 마포마을 (10) ■	(10)	20.0	10.0	40.0	10.0	20.0	30.0	40.0	30.0	100.0	50.00
■ 마포마을 (11) ■	(11)	.0	9.1	18.2	45.5	27.3	9.1	18.2	72.7	100.0	72.73
■ 마포마을 (11) ■	(11)	9.1	.0	54.5	36.4	.0	9.1	54.5	36.4	100.0	54.55
■ 마포마을 (8) ■	(8)	12.5	.0	50.0	25.0	12.5	12.5	50.0	37.5	100.0	56.25
■ 마포마을 (10) ■	(10)	10.0	.0	30.0	50.0	10.0	10.0	30.0	60.0	100.0	62.50
■ 마포마을 (7) ■	(7)	.0	14.3	14.3	42.9	28.6	14.3	14.3	71.4	100.0	71.43
■ 마포마을 (10) ■	(10)	.0	.0	30.0	70.0	.0	.0	30.0	70.0	100.0	67.50
■ 마포마을 (10) ■	(10)	.0	30.0	20.0	20.0	30.0	30.0	20.0	50.0	100.0	62.50
■ 마포마을 (10) ■	(10)	10.0	.0	30.0	20.0	40.0	10.0	30.0	60.0	100.0	70.00
■ 마포마을 (6) ■	(6)	16.7	.0	66.7	16.7	.0	16.7	66.7	16.7	100.0	45.83
■ 마포마을 (11) ■	(11)	.0	9.1	36.4	27.3	27.3	9.1	36.4	54.5	100.0	68.18
■ 마포마을 (12) ■	(12)	.0	16.7	41.7	33.3	8.3	16.7	41.7	41.7	100.0	58.33
■ 마포마을 (14) ■	(14)	.0	14.3	.0	71.4	14.3	14.3	.0	85.7	100.0	71.43
■ 마포마을 (6) ■	(6)	.0	33.3	16.7	50.0	.0	33.3	16.7	50.0	100.0	54.17
■ 마포마을 (13) ■	(13)	.0	7.7	23.1	61.5	7.7	7.7	23.1	69.2	100.0	67.31
■ 마포마을 (12) ■	(12)	8.3	8.3	33.3	33.3	16.7	16.7	33.3	50.0	100.0	60.42
■ 마포마을 (11) ■	(11)	9.1	9.1	54.5	18.2	9.1	18.2	54.5	27.3	100.0	52.27
■ 마포마을 (10) ■	(10)	.0	.0	20.0	60.0	20.0	.0	20.0	80.0	100.0	75.00
■ 마포마을 (10) ■	(10)	10.0	.0	30.0	10.0	50.0	10.0	30.0	60.0	100.0	72.50
■ 마포마을 (7) ■	(7)	.0	14.3	14.3	42.9	28.6	14.3	14.3	71.4	100.0	71.43
■ 마포마을 (6) ■	(6)	33.3	16.7	50.0	.0	.0	50.0	50.0	.0	100.0	29.17
■ 마포마을 (9) ■	(9)	11.1	.0	44.4	33.3	11.1	11.1	44.4	44.4	100.0	58.33
■ 상남면 (173) ■	(173)	6.9	5.2	30.6	37.0	20.2	12.1	30.6	57.2	100.0	64.60
■ 상남면 (87) ■	(87)	1.1	11.5	37.9	37.9	11.5	12.6	37.9	49.4	100.0	61.78
■ 연령별 (9) ■	(9)	11.1	11.1	33.3	11.1	33.3	22.2	33.3	44.4	100.0	61.11
■ 19-29세 (11) ■	(11)	.0	9.1	63.6	27.3	.0	9.1	63.6	27.3	100.0	54.55
■ 30-40대 (26) ■	(26)	3.8	11.5	30.8	42.3	11.5	15.4	30.8	53.8	100.0	61.54
■ 50대 이상 (214) ■	(214)	5.1	6.5	31.8	38.3	18.2	11.7	31.8	56.5	100.0	64.49
■ 거주기간 (13) ■	(13)	.0	15.4	38.5	30.8	15.4	15.4	38.5	46.2	100.0	61.54
■ 5년 미만 (9) ■	(9)	11.1	.0	33.3	33.3	22.2	11.1	33.3	55.6	100.0	63.89
■ 5~10년 (21) ■	(21)	9.5	9.5	38.1	28.6	14.3	19.0	38.1	42.9	100.0	57.14
■ 20년 이상 (217) ■	(217)	4.6	6.9	32.3	38.7	17.5	11.5	32.3	56.2	100.0	64.40
■ 어촌계원 (104) ■	(104)	2.9	6.7	30.8	39.4	20.2	9.6	30.8	59.6	100.0	66.83
■ 비어촌계원 (156) ■	(156)	6.4	7.7	34.6	35.9	15.4	14.1	34.6	51.3	100.0	61.54

【 표 12-2 】 사업으로 인한 지역 이미지 향상

[문 12-2]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사회·문화·환경 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례수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260)	1.9	4.6	29.2	41.5	22.7	6.5	29.2	64.2	100.0	69.62
■ 지역 이미지 향상 정도 ■	(11)	.0	.0	45.5	45.5	9.1	.0	45.5	54.5	100.0	65.91
매우 향상	(10)	.0	.0	50.0	40.0	10.0	.0	50.0	50.0	100.0	65.00
상당히 향상	(11)	.0	.0	36.4	45.5	18.2	.0	36.4	63.6	100.0	70.45
보통	(14)	.0	.0	21.4	35.7	42.9	.0	21.4	78.6	100.0	80.36
조금 향상	(10)	10.0	10.0	30.0	40.0	10.0	20.0	30.0	50.0	100.0	57.50
조금 안 향상	(11)	.0	.0	9.1	72.7	18.2	.0	9.1	90.9	100.0	77.27
안 향상	(11)	.0	9.1	27.3	54.5	9.1	9.1	27.3	63.6	100.0	65.91
전혀 안 향상	(8)	.0	.0	50.0	25.0	25.0	.0	50.0	50.0	100.0	68.75
전혀 안 향상	(10)	.0	.0	20.0	50.0	30.0	.0	20.0	80.0	100.0	77.50
전혀 안 향상	(7)	.0	14.3	28.6	28.6	28.6	14.3	28.6	57.1	100.0	67.86
전혀 안 향상	(10)	.0	10.0	30.0	60.0	.0	10.0	30.0	60.0	100.0	62.50
전혀 안 향상	(10)	.0	10.0	20.0	30.0	40.0	10.0	20.0	70.0	100.0	75.00
전혀 안 향상	(10)	10.0	10.0	10.0	30.0	40.0	20.0	10.0	70.0	100.0	70.00
전혀 안 향상	(6)	16.7	.0	33.3	16.7	33.3	16.7	33.3	50.0	100.0	62.50
전혀 안 향상	(11)	.0	18.2	27.3	27.3	27.3	18.2	27.3	54.5	100.0	65.91
전혀 안 향상	(12)	.0	8.3	50.0	33.3	8.3	8.3	50.0	41.7	100.0	60.42
전혀 안 향상	(14)	.0	7.1	28.6	35.7	28.6	7.1	28.6	64.3	100.0	71.43
전혀 안 향상	(6)	.0	.0	16.7	66.7	16.7	.0	16.7	83.3	100.0	75.00
전혀 안 향상	(13)	.0	.0	30.8	46.2	23.1	.0	30.8	69.2	100.0	73.08
전혀 안 향상	(12)	.0	.0	41.7	41.7	16.7	.0	41.7	58.3	100.0	68.75
전혀 안 향상	(11)	.0	18.2	27.3	36.4	18.2	18.2	27.3	54.5	100.0	63.64
전혀 안 향상	(10)	.0	.0	30.0	50.0	20.0	.0	30.0	70.0	100.0	72.50
전혀 안 향상	(10)	.0	.0	.0	50.0	50.0	.0	.0	100.0	100.0	87.50
전혀 안 향상	(7)	.0	.0	14.3	57.1	28.6	.0	14.3	85.7	100.0	78.57
전혀 안 향상	(6)	16.7	.0	33.3	50.0	.0	16.7	33.3	50.0	100.0	54.17
전혀 안 향상	(9)	11.1	.0	44.4	11.1	33.3	11.1	44.4	44.4	100.0	63.89
■ 성 별 ■	(173)	2.9	3.5	24.9	43.4	25.4	6.4	24.9	68.8	100.0	71.24
남자	(87)	.0	6.9	37.9	37.9	17.2	6.9	37.9	55.2	100.0	66.38
■ 연 령 별 ■	(9)	11.1	11.1	22.2	22.2	33.3	22.2	22.2	55.6	100.0	63.89
19-29세	(11)	.0	.0	18.2	63.6	18.2	.0	18.2	81.8	100.0	75.00
30-40대	(26)	3.8	7.7	30.8	38.5	19.2	11.5	30.8	57.7	100.0	65.38
50대 이상	(214)	1.4	4.2	29.9	41.6	22.9	5.6	29.9	64.5	100.0	70.09
■ 거 주 기 간 ■	(13)	.0	.0	53.8	30.8	15.4	.0	53.8	46.2	100.0	65.38
5년 미만	(9)	.0	.0	44.4	22.2	33.3	.0	44.4	55.6	100.0	72.22
5~10년	(21)	4.8	14.3	14.3	42.9	23.8	19.0	14.3	66.7	100.0	66.67
10~20년	(217)	1.8	4.1	28.6	42.9	22.6	6.0	28.6	65.4	100.0	70.05
■ 어촌계원 여부 ■	(104)	1.0	4.8	30.8	39.4	24.0	5.8	30.8	63.5	100.0	70.19
어촌계원	(156)	2.6	4.5	28.2	42.9	21.8	7.1	28.2	64.7	100.0	69.23

【 표 12-3 】 사업의 지역주민의 자긍심 향상에 기여

[문 12-3]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사회·문화·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례수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260)	2.7	6.9	36.5	35.0	18.8	9.6	36.5	53.8	100.0	65.10
■ 지식안양마을 (11)	(11)	.0	.0	36.4	54.5	9.1	.0	36.4	63.6	100.0	68.18
■ 마포마을 (10)	(10)	.0	.0	30.0	60.0	10.0	.0	30.0	70.0	100.0	70.00
■ 마포마을 (11)	(11)	.0	18.2	63.6	9.1	9.1	18.2	63.6	18.2	100.0	52.27
■ 마포마을 (14)	(14)	.0	.0	35.7	35.7	28.6	.0	35.7	64.3	100.0	73.21
■ 마포마을 (10)	(10)	10.0	10.0	60.0	20.0	.0	20.0	60.0	20.0	100.0	47.50
■ 마포마을 (11)	(11)	.0	.0	9.1	54.5	36.4	.0	9.1	90.9	100.0	81.82
■ 마포마을 (11)	(11)	.0	18.2	45.5	36.4	.0	18.2	45.5	36.4	100.0	54.55
■ 마포마을 (8)	(8)	12.5	.0	12.5	37.5	37.5	12.5	12.5	75.0	100.0	71.88
■ 마포마을 (10)	(10)	.0	10.0	20.0	50.0	20.0	10.0	20.0	70.0	100.0	70.00
■ 마포마을 (7)	(7)	.0	.0	42.9	28.6	28.6	.0	42.9	57.1	100.0	71.43
■ 마포마을 (10)	(10)	.0	10.0	40.0	50.0	.0	10.0	40.0	50.0	100.0	60.00
■ 마포마을 (10)	(10)	.0	20.0	40.0	.0	40.0	20.0	40.0	40.0	100.0	65.00
■ 마포마을 (10)	(10)	10.0	.0	60.0	10.0	20.0	10.0	60.0	30.0	100.0	57.50
■ 마포마을 (6)	(6)	16.7	16.7	16.7	33.3	16.7	33.3	16.7	50.0	100.0	54.17
■ 마포마을 (11)	(11)	.0	.0	54.5	18.2	27.3	.0	54.5	45.5	100.0	68.18
■ 마포마을 (12)	(12)	.0	8.3	33.3	8.3	50.0	8.3	33.3	58.3	100.0	75.00
■ 마포마을 (14)	(14)	.0	.0	21.4	64.3	14.3	.0	21.4	78.6	100.0	73.21
■ 마포마을 (6)	(6)	.0	.0	33.3	50.0	16.7	.0	33.3	66.7	100.0	70.83
■ 마포마을 (13)	(13)	.0	15.4	23.1	38.5	23.1	15.4	23.1	61.5	100.0	67.31
■ 마포마을 (12)	(12)	.0	16.7	50.0	16.7	16.7	16.7	50.0	33.3	100.0	58.33
■ 마포마을 (11)	(11)	9.1	.0	54.5	36.4	.0	9.1	54.5	36.4	100.0	54.55
■ 마포마을 (10)	(10)	.0	10.0	30.0	50.0	10.0	10.0	30.0	60.0	100.0	65.00
■ 마포마을 (10)	(10)	.0	.0	.0	50.0	50.0	.0	.0	100.0	100.0	87.50
■ 마포마을 (7)	(7)	.0	14.3	28.6	57.1	.0	14.3	28.6	57.1	100.0	60.71
■ 마포마을 (6)	(6)	16.7	.0	33.3	50.0	.0	16.7	33.3	50.0	100.0	54.17
■ 마포마을 (9)	(9)	11.1	11.1	66.7	.0	11.1	22.2	66.7	11.1	100.0	47.22
■ 상 남 여 ■	(173)	3.5	6.9	35.3	34.1	20.2	10.4	35.3	54.3	100.0	65.17
■ 자 자 ■	(87)	1.1	6.9	39.1	36.8	16.1	8.0	39.1	52.9	100.0	64.94
■ 연 령 ■	(9)	.0	22.2	44.4	11.1	22.2	22.2	44.4	33.3	100.0	58.33
■ 19-29세 (11)	(11)	9.1	.0	36.4	36.4	18.2	9.1	36.4	54.5	100.0	63.64
■ 30대 (26)	(26)	.0	11.5	30.8	30.8	26.9	11.5	30.8	57.7	100.0	68.27
■ 40대 이상 (214)	(214)	2.8	6.1	36.9	36.4	17.8	8.9	36.9	54.2	100.0	65.07
■ 거 주 기 간 ■	(13)	.0	23.1	46.2	15.4	15.4	23.1	46.2	30.8	100.0	55.77
■ 5년 미만 (9)	(9)	.0	11.1	33.3	22.2	33.3	11.1	33.3	55.6	100.0	69.44
■ 5~10년 (21)	(21)	.0	23.8	38.1	14.3	23.8	23.8	38.1	38.1	100.0	59.52
■ 10~20년 이상 (217)	(217)	3.2	4.1	35.9	38.7	18.0	7.4	35.9	56.7	100.0	66.01
■ 어촌계원여부 ■	(104)	1.9	6.7	36.5	32.7	22.1	8.7	36.5	54.8	100.0	66.59
■ 비 어촌계원 ■	(156)	3.2	7.1	36.5	36.5	16.7	10.3	36.5	53.2	100.0	64.10

【 표 12-4 】 사업의 마을 전통문화 발굴 보전에 기여

[문 12-4]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사회·문화·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례수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260)	3.1	10.0	26.5	39.2	21.2	13.1	26.5	60.4	100.0	66.35
■ 지식·역량 분야 ■	(11)	.0	.0	9.1	81.8	9.1	.0	9.1	90.9	100.0	75.00
■ 마을공동체 ■	(10)	.0	.0	30.0	50.0	20.0	.0	30.0	70.0	100.0	72.50
■ 마을경제 ■	(11)	.0	27.3	18.2	36.4	18.2	27.3	18.2	54.5	100.0	61.36
■ 마을문화 ■	(14)	.0	.0	28.6	28.6	42.9	.0	28.6	71.4	100.0	78.57
■ 마을환경 ■	(10)	10.0	.0	50.0	30.0	10.0	10.0	50.0	40.0	100.0	57.50
■ 마을복지 ■	(11)	.0	.0	18.2	45.5	36.4	.0	18.2	81.8	100.0	79.55
■ 마을교육 ■	(11)	.0	27.3	27.3	27.3	18.2	27.3	27.3	45.5	100.0	59.09
■ 마을행정 ■	(8)	.0	12.5	12.5	62.5	12.5	12.5	12.5	75.0	100.0	68.75
■ 마을관광 ■	(10)	.0	10.0	10.0	50.0	30.0	10.0	10.0	80.0	100.0	75.00
■ 마을농업 ■	(7)	.0	28.6	28.6	14.3	28.6	28.6	28.6	42.9	100.0	60.71
■ 마을주거 ■	(10)	10.0	.0	20.0	60.0	10.0	10.0	20.0	70.0	100.0	65.00
■ 마을내부 ■	(10)	10.0	20.0	10.0	10.0	50.0	30.0	10.0	60.0	100.0	67.50
■ 마을관리 ■	(10)	10.0	.0	30.0	30.0	30.0	10.0	30.0	60.0	100.0	67.50
■ 마을조직 ■	(6)	16.7	33.3	33.3	.0	16.7	50.0	33.3	16.7	100.0	41.67
■ 마을인력 ■	(11)	.0	.0	45.5	27.3	27.3	.0	45.5	54.5	100.0	70.45
■ 마을인프라 ■	(12)	.0	.0	33.3	33.3	33.3	.0	33.3	66.7	100.0	75.00
■ 마을인구 ■	(14)	.0	.0	7.1	71.4	21.4	.0	7.1	92.9	100.0	78.57
■ 마을인사 ■	(6)	.0	.0	50.0	33.3	16.7	.0	50.0	50.0	100.0	66.67
■ 마을행위 ■	(13)	7.7	7.7	23.1	46.2	15.4	15.4	23.1	61.5	100.0	63.46
■ 마을행위 ■	(12)	.0	41.7	25.0	16.7	16.7	41.7	25.0	33.3	100.0	52.08
■ 마을행위 ■	(11)	9.1	18.2	54.5	18.2	.0	27.3	54.5	18.2	100.0	45.45
■ 마을행위 ■	(10)	.0	10.0	20.0	70.0	.0	10.0	20.0	70.0	100.0	65.00
■ 마을행위 ■	(10)	.0	10.0	30.0	40.0	20.0	10.0	30.0	60.0	100.0	67.50
■ 마을행위 ■	(7)	.0	.0	14.3	71.4	14.3	.0	14.3	85.7	100.0	75.00
■ 마을행위 ■	(6)	.0	.0	16.7	50.0	33.3	.0	16.7	83.3	100.0	79.17
■ 마을행위 ■	(9)	11.1	22.2	55.6	.0	11.1	33.3	55.6	11.1	100.0	44.44
■ 성별 ■	(173)	4.6	8.1	27.2	38.2	22.0	12.7	27.2	60.1	100.0	66.18
■ 연령 ■	(87)	.0	13.8	25.3	41.4	19.5	13.8	25.3	60.9	100.0	66.67
■ 연령 ■	(9)	.0	11.1	22.2	33.3	33.3	11.1	22.2	66.7	100.0	72.22
■ 연령 ■	(11)	.0	9.1	27.3	45.5	18.2	9.1	27.3	63.6	100.0	68.18
■ 연령 ■	(26)	3.8	23.1	19.2	34.6	19.2	26.9	19.2	53.8	100.0	60.58
■ 연령 ■	(214)	3.3	8.4	27.6	39.7	21.0	11.7	27.6	60.7	100.0	66.71
■ 거주기간 ■	(13)	.0	23.1	23.1	30.8	23.1	23.1	23.1	53.8	100.0	63.46
■ 거주기간 ■	(9)	11.1	11.1	11.1	33.3	33.3	22.2	11.1	66.7	100.0	66.67
■ 거주기간 ■	(21)	9.5	14.3	28.6	28.6	19.0	23.8	28.6	47.6	100.0	58.33
■ 거주기간 ■	(217)	2.3	8.8	27.2	41.0	20.7	11.1	27.2	61.8	100.0	67.28
■ 어촌계원여부 ■	(104)	2.9	6.7	29.8	34.6	26.0	9.6	29.8	60.6	100.0	68.51
■ 어촌계원여부 ■	(156)	3.2	12.2	24.4	42.3	17.9	15.4	24.4	60.3	100.0	64.90

사업을하면좋다
 사업의체계적으로갈수있게리더를잘하라.
 사업이잘되서어민들에혜택이가면좋겠다
 사후관리까지도 능력있는 사람이 해야할것임
 산양일주도로가개통되면관광등지역발전도움이된다
 소래못지않게조성하라
 숙박시설있었으면좋겠다.
 실정에 많은 많은 지원을 해주길
 어촌체험마을폐지
 옆부락도 같이 개발시켜서 더불어 잘살수 있도록해주었으면
 예산을 좀더 많이 지원해 주었음 좋겠다.
 외부인이많아서 체험마을과 상관없다
 운영을잘해야함
 잘되면좋겠다
 잘운영됐으면좋겠다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길 요망
 적극적으로빨리했으면
 적금납시터는 양반이 있어야하는데 지역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들었다
 전문성을갖고개발을하라.실효성있게하고조잡스럽지않게
 전체로 참여해야 한다 (어촌계끼리만해서문제다)_
 전체적으로어촌계의건을들어마을을조성했으면
 정부 지원사업을 해마다 해주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었음 좋겠다.
 정부에서 한꺼번에 지원해야지 진행을 매년 조금씩 지원하면 도움이 별로 되지않는다
 정부의 더 큰 도움이 있었음 좋겠다.
 정부지원필요하다
 정착필요한수산자원을보호하고육성하라.
 정확하게자료조사해야한다
 제부리개발요
 조성사업의규모가작다
 주민들의단합이우선시되어야함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해야한다
 주민의의견을수렴하라
 주변환경정리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도로에 차들을 세워두는데 주차시설을 조금확장하였으면
 주차장이 많이있어야하고 샤워장도 부족하다
 중앙정부에서지원해1년에한번씩감사정도방문했으면
 중앙정부적극지원필요
 지방개선됐으면
 지속적 운영 필요
 지역마다특색이있어야한다
 지역의특수성을고려해서개발하라
 지역주의견수렴요
 지역특성을맞추어서조성을했으면
 지역특성을잘살라라
 지원금이 국고 세금인만큼 집행시 공무원들 사업이맞게잘처리해주고 지역민에게만말기지말고 사후관리도해
 충분한홍보
 타의모범이되게해야된다
 투석사업을 많이 해주어야한다
 피해보상을빠르게해달라.도로공사보상도받지못하고있다.보상도차별해서주더라
 한군데 집중개발하지 말고 고루 개발해서켜서 같이 살게해주어야한다
 항도개발도 좋은데 조도는 순수 바닷가이고 경치도 좋고 낚시꾼들이 많이오는데 어초도 넣어주면 같이발전
 향이너무작아서힘들다
 형식적으로하지말고운동할경휴식공간많이만들어주었으면
 형식적이지 않고 실용적이었으면 좋겠다.
 홍보
 홍보가 잘되어야한다
 홍보를 해야할것이다
 확실한예산지원
 환경개선
 환경에관심요
 횃집다시짓기

10. 어촌체험마을 조성 사업 관리 공무원

【 응답자 특성 표 】

	사례수	%
■ 전 체 ■	17	100.0%
■ 지 서 남 동 역 해 해 별 권 권 민 민 권	6 6 5	35.3% 35.3% 29.4%
■ 제 주 지 역 여 부 제 주 이 제 인 주	16 1	94.1% 5.9%
■ 사 업 내 용 이 해 보 통 잘 이 해	1 16	5.9% 94.1%
■ 투 자 비 적 절 성 부 보 과	10 6 1	58.8% 35.3% 5.9%

【 표 1 】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

[문 1]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례수	보통	이해하고 있다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	*보통*	*잘이해*	계	*평균*
		%	%	%	%	%		
■ 전 체 ■	(17)	5.9	11.8	82.4	5.9	94.1	100.0	94.12
■ 지 서 남 동 역 해 해 별 권 권 민 민 권	(6) (6) (5)	16.7 .0 .0	16.7 16.7 .0	66.7 83.3 100.0	16.7 .0 .0	83.3 100.0 100.0	100.0 100.0 100.0	87.50 95.83 100.00
■ 제 주 지 역 여 부 제 주 이 제 인 주	(16) (1)	6.3 .0	6.3 100.0	87.5 .0	6.3 .0	93.8 100.0	100.0 100.0	95.31 75.00
■ 사 업 내 용 이 해 보 통 잘 이 해	(1) (16)	100.0 .0	.0 12.5	.0 87.5	100.0 .0	.0 100.0	100.0 100.0	50.00 96.88
■ 투 자 비 적 절 성 부 보 과	(10) (6) (1)	.0 16.7 .0	.0 33.3 .0	100.0 50.0 100.0	.0 16.7 .0	100.0 83.3 100.0	100.0 100.0 100.0	100.00 83.33 100.00

【 표 2 】 사업 추진방법에 대한 이해

[문 2]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추진방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사례수	보통	이해하고 있다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	*보통*	*잘이해*	계	*평균*
		%	%	%	%	%		
■ 전 체 ■	(17)	11.8	17.6	70.6	11.8	88.2	100.0	89.71
■ 지 서 남 동 역 해 해 별 권 권 민 민 권	(6) (6) (5)	33.3 .0 .0	.0 33.3 20.0	66.7 66.7 80.0	33.3 .0 .0	66.7 100.0 100.0	100.0 100.0 100.0	83.33 91.67 95.00
■ 제 주 지 역 여 부 제 주 이 제 인 주	(16) (1)	12.5 .0	12.5 100.0	75.0 .0	12.5 .0	87.5 100.0	100.0 100.0	90.63 75.00
■ 사 업 내 용 이 해 보 통 잘 이 해	(1) (16)	100.0 6.3	.0 18.8	.0 75.0	100.0 6.3	.0 93.8	100.0 100.0	50.00 92.19
■ 투 자 비 적 절 성 부 보 과	(10) (6) (1)	.0 33.3 .0	10.0 33.3 .0	90.0 33.3 100.0	.0 33.3 .0	100.0 66.7 100.0	100.0 100.0 100.0	97.50 75.00 100.00

【 표 3 】 사업 투자비의 적절성

[문 3]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투자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적당하다	매우 많다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전 체 ■	(17)	11.8	47.1	35.3	5.9	58.8	35.3	5.9	100.0	35.29
■ 지역별 권 해 해 권 ■	(6)	16.7	50.0	33.3	.0	66.7	33.3	.0	100.0	29.17
	(6)	.0	50.0	33.3	16.7	50.0	33.3	16.7	100.0	45.83
	(5)	20.0	40.0	40.0	.0	60.0	40.0	.0	100.0	30.00
■ 제주지역 여부 ■	(16)	12.5	50.0	31.3	6.3	62.5	31.3	6.3	100.0	34.38
	(1)	.0	.0	100.0	.0	.0	100.0	.0	100.0	50.00
■ 사업내용 이해 ■	(1)	.0	.0	100.0	.0	.0	100.0	.0	100.0	50.00
	(16)	12.5	50.0	31.3	6.3	62.5	31.3	6.3	100.0	34.38

【 표 4 】 대상지 선정 단계의 진행 정도

[문 4]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각 단계별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되었습니까)?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17)	5.9	5.9	11.8	29.4	47.1	11.8	11.8	76.5	100.0	76.47
■ 지역별 권 해 해 권 ■	(6)	.0	16.7	.0	33.3	50.0	16.7	.0	83.3	100.0	79.17
	(6)	.0	.0	.0	50.0	50.0	.0	.0	100.0	100.0	87.50
	(5)	20.0	.0	40.0	.0	40.0	20.0	40.0	40.0	100.0	60.00
■ 제주지역 여부 ■	(16)	6.3	6.3	12.5	31.3	43.8	12.5	12.5	75.0	100.0	75.00
	(1)	.0	.0	.0	.0	100.0	.0	.0	100.0	100.0	100.00
■ 사업내용 이해 ■	(1)	.0	.0	.0	.0	100.0	.0	.0	100.0	100.0	100.00
	(16)	6.3	6.3	12.5	31.3	43.8	12.5	12.5	75.0	100.0	75.00
■ 투자비적절성 ■	(10)	10.0	10.0	20.0	30.0	30.0	20.0	20.0	60.0	100.0	65.00
	(6)	.0	.0	.0	33.3	66.7	.0	.0	100.0	100.0	91.67
	(1)	.0	.0	.0	.0	100.0	.0	.0	100.0	100.0	100.00

【 표 4-1 】 기본계획 및 실시단계 단계의 진행 정도

[문 4-1]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각 단계별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되었습니까)?

	사례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전 체 ■	(17)	5.9	29.4	29.4	35.3	5.9	29.4	64.7	100.0	73.53
■ 지역별 권 해 해 권 ■	(6)	.0	50.0	16.7	33.3	.0	50.0	50.0	100.0	70.83
	(6)	.0	.0	33.3	66.7	.0	.0	100.0	100.0	91.67
	(5)	20.0	40.0	40.0	.0	20.0	40.0	40.0	100.0	55.00
■ 제주지역 여부 ■	(16)	6.3	31.3	25.0	37.5	6.3	31.3	62.5	100.0	73.44
	(1)	.0	.0	100.0	.0	.0	.0	100.0	100.0	75.00
■ 사업내용 이해 ■	(1)	.0	.0	.0	100.0	.0	.0	100.0	100.0	100.00
	(16)	6.3	31.3	31.3	31.3	6.3	31.3	62.5	100.0	71.88
■ 투자비적절성 ■	(10)	10.0	40.0	20.0	30.0	10.0	40.0	50.0	100.0	67.50
	(6)	.0	16.7	50.0	33.3	.0	16.7	83.3	100.0	79.17
	(1)	.0	.0	.0	100.0	.0	.0	100.0	100.0	100.00

【 표 4-2 】 시공단계 진행 정도

[문 4-2]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이 각 단계별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되었습니까)?

	사례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부정*	*보통*	*긍정*	*모름/ 무응답	계	*평균*
		%	%	%	%	%	%	%	%	%		
■ 전 체 ■	(17)	5.9	11.8	35.3	41.2	5.9	5.9	11.8	76.5	5.9	100.0	79.69
■ 지 서 역 별 ■ ■ 해 해 권 ■ ■ 동 해 권 ■	(6) (6) (5)	.0 .0 20.0	16.7 .0 20.0	50.0 16.7 40.0	16.7 83.3 20.0	16.7 .0 .0	.0 .0 20.0	16.7 .0 20.0	66.7 100.0 60.0	16.7 .0 .0	100.0 100.0 100.0	75.00 95.83 65.00
■ 제 주 지 역 여 부 ■ ■ 제 주 이 외 주 ■	(16) (1)	6.3 .0	12.5 .0	31.3 100.0	43.8 .0	6.3 .0	6.3 .0	12.5 .0	75.0 100.0	6.3 .0	100.0 100.0	80.00 75.00
■ 사 업 내 용 이 해 ■ ■ 보 찰 이 해 ■	(1) (16)	.0 6.3	.0 12.5	.0 37.5	100.0 37.5	.0 6.3	.0 6.3	.0 12.5	100.0 75.0	.0 6.3	100.0 100.0	100.00 78.33
■ 투 자 비 적 절 성 ■ ■ 부 보 통 ■ ■ 과 다 ■	(10) (6) (1)	.0 16.7 .0	20.0 .0 .0	40.0 33.3 .0	40.0 33.3 100.0	.0 16.7 .0	.0 16.7 .0	20.0 .0 .0	80.0 66.7 100.0	.0 16.7 .0	100.0 100.0 100.0	80.00 75.00 100.00

【 표 4-3 】 운영단계 진행 정도

[문 4-3]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이 각 단계별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되었습니까)?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17)	5.9	11.8	11.8	41.2	29.4	17.6	11.8	70.6	100.0	69.12
■ 지 서 역 별 ■ ■ 해 해 권 ■ ■ 동 해 권 ■	(6) (6) (5)	.0 .0 20.0	16.7 .0 20.0	16.7 .0 20.0	50.0 50.0 20.0	16.7 50.0 20.0	16.7 .0 40.0	16.7 .0 20.0	66.7 100.0 40.0	100.0 100.0 100.0	66.67 87.50 50.00
■ 제 주 지 역 여 부 ■ ■ 제 주 이 외 주 ■	(16) (1)	6.3 .0	12.5 .0	12.5 .0	37.5 100.0	31.3 .0	18.8 .0	12.5 .0	68.8 100.0	100.0 100.0	68.75 75.00
■ 사 업 내 용 이 해 ■ ■ 보 찰 이 해 ■	(1) (16)	.0 6.3	.0 12.5	.0 12.5	.0 43.8	100.0 25.0	.0 18.8	.0 12.5	100.0 68.8	100.0 100.0	100.00 67.19
■ 투 자 비 적 절 성 ■ ■ 부 보 통 ■ ■ 과 다 ■	(10) (6) (1)	10.0 .0 .0	20.0 .0 .0	20.0 .0 .0	40.0 50.0 .0	10.0 50.0 100.0	30.0 .0 .0	20.0 .0 .0	50.0 100.0 100.0	100.0 100.0 100.0	55.00 87.50 100.00

【 표 5 】 어촌관광 활동 시설 확충 효과

[문 5]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을 통해 어촌지역의 관광기반시설이 확충되었다고(될 것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전 체 ■	(17)	5.9	35.3	17.6	41.2	5.9	35.3	58.8	100.0	73.53
■ 지 서 역 별 ■ ■ 해 해 권 ■ ■ 동 해 권 ■	(6) (6) (5)	16.7 .0 .0	33.3 50.0 20.0	16.7 .0 40.0	33.3 50.0 40.0	16.7 .0 .0	33.3 50.0 20.0	50.0 50.0 80.0	100.0 100.0 100.0	66.67 75.00 80.00
■ 제 주 지 역 여 부 ■ ■ 제 주 이 외 주 ■	(16) (1)	6.3 .0	31.3 100.0	18.8 .0	43.8 .0	6.3 .0	31.3 100.0	62.5 .0	100.0 100.0	75.00 50.00
■ 사 업 내 용 이 해 ■ ■ 보 찰 이 해 ■	(1) (16)	.0 6.3	.0 37.5	.0 18.8	100.0 37.5	.0 6.3	.0 37.5	100.0 56.3	100.0 100.0	100.00 71.88
■ 투 자 비 적 절 성 ■ ■ 부 보 통 ■ ■ 과 다 ■	(10) (6) (1)	10.0 .0 .0	50.0 16.7 .0	10.0 33.3 .0	30.0 50.0 100.0	10.0 .0 .0	50.0 16.7 .0	40.0 83.3 100.0	100.0 100.0 100.0	65.00 83.33 100.00

【 표 5-1 】 관광편의시설 확충 효과

[문 5-1]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을 통해 어촌지역의 관광기반시설이 확충되었다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전 체 ■	(17)	17.6	41.2	17.6	23.5	17.6	41.2	41.2	100.0	57.35
■ 지 서 남 동 해 해 권 권 ■	(6)	16.7	33.3	33.3	16.7	16.7	33.3	50.0	100.0	58.33
	(6)	.0	66.7	.0	33.3	.0	66.7	33.3	100.0	66.67
	(5)	40.0	20.0	20.0	20.0	40.0	20.0	40.0	100.0	45.00
■ 제 주 지 역 여 부 제 주 이 외 주 ■	(16)	18.8	37.5	18.8	25.0	18.8	37.5	43.8	100.0	57.81
	(1)	.0	100.0	.0	.0	.0	100.0	.0	100.0	50.00
■ 사 업 내 용 이 해 보 잘 이 해 ■	(1)	.0	.0	100.0	.0	.0	.0	100.0	100.0	75.00
	(16)	18.8	43.8	12.5	25.0	18.8	43.8	37.5	100.0	56.25
■ 투 자 비 적 절 성 부 분 과 다 ■	(10)	30.0	40.0	.0	30.0	30.0	40.0	30.0	100.0	50.00
	(6)	.0	50.0	50.0	.0	.0	50.0	50.0	100.0	62.50
	(1)	.0	.0	.0	100.0	.0	.0	100.0	100.0	100.00

【 표 5-2 】 교통시설 확충 효과

[문 5-2]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을 통해 어촌지역의 관광기반시설이 확충되었다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전 체 ■	(17)	5.9	35.3	17.6	41.2	5.9	35.3	58.8	100.0	73.53
■ 지 서 남 동 해 해 권 권 ■	(6)	.0	50.0	33.3	16.7	.0	50.0	50.0	100.0	66.67
	(6)	.0	33.3	.0	66.7	.0	33.3	66.7	100.0	83.33
	(5)	20.0	20.0	20.0	40.0	20.0	20.0	60.0	100.0	70.00
■ 제 주 지 역 여 부 제 주 이 외 주 ■	(16)	6.3	31.3	18.8	43.8	6.3	31.3	62.5	100.0	75.00
	(1)	.0	100.0	.0	.0	.0	100.0	.0	100.0	50.00
■ 사 업 내 용 이 해 보 잘 이 해 ■	(1)	.0	100.0	.0	.0	.0	100.0	.0	100.0	50.00
	(16)	6.3	31.3	18.8	43.8	6.3	31.3	62.5	100.0	75.00
■ 투 자 비 적 절 성 부 분 과 다 ■	(10)	10.0	30.0	10.0	50.0	10.0	30.0	60.0	100.0	75.00
	(6)	.0	50.0	33.3	16.7	.0	50.0	50.0	100.0	66.67
	(1)	.0	.0	.0	100.0	.0	.0	100.0	100.0	100.00

【 표 6 】 경관 개선 효과

[문 6]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이 어촌지역의 정주환경이 개선되었다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전 체 ■	(17)	23.5	23.5	52.9	23.5	76.5	100.0	82.35
■ 지 서 남 동 해 해 권 권 ■	(6)	50.0	16.7	33.3	50.0	50.0	100.0	70.83
	(6)	16.7	33.3	50.0	16.7	83.3	100.0	83.33
	(5)	.0	20.0	80.0	.0	100.0	100.0	95.00
■ 제 주 지 역 여 부 제 주 이 외 주 ■	(16)	18.8	25.0	56.3	18.8	81.3	100.0	84.38
	(1)	100.0	.0	.0	100.0	.0	100.0	50.00
■ 사 업 내 용 이 해 보 잘 이 해 ■	(1)	.0	.0	100.0	.0	100.0	100.0	100.00
	(16)	25.0	25.0	50.0	25.0	75.0	100.0	81.25
■ 투 자 비 적 절 성 부 분 과 다 ■	(10)	30.0	20.0	50.0	30.0	70.0	100.0	80.00
	(6)	16.7	33.3	50.0	16.7	83.3	100.0	83.33
	(1)	.0	.0	100.0	.0	100.0	100.0	100.00

【 표 6-1 】 생산기반시설 확충 효과

[문 6-1]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이 어촌지역의 정주환경이 개선되었다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17)	5.9	5.9	35.3	17.6	35.3	11.8	35.3	52.9	100.0	67.65
■ 지 서 역 별 ■ ■ 해 해 권 ■ ■ 동 해 권 ■	(6) (6) (5)	.0 .0 20.0	16.7 .0 .0	33.3 50.0 20.0	16.7 .0 40.0	33.3 50.0 20.0	16.7 .0 20.0	33.3 50.0 20.0	50.0 50.0 60.0	100.0 100.0 100.0	66.67 75.00 60.00
■ 제 주 지 역 여 부 ■ ■ 제 주 이 외 주 ■	(16) (1)	6.3 .0	6.3 .0	31.3 100.0	18.8 .0	37.5 .0	12.5 .0	31.3 100.0	56.3 .0	100.0 100.0	68.75 50.00
■ 사 업 내 용 이 해 ■ ■ 보 조 이 해 ■	(1) (16)	.0 6.3	.0 6.3	.0 37.5	.0 18.8	100.0 31.3	.0 12.5	.0 37.5	100.0 50.0	100.0 100.0	100.00 65.63
■ 투 자 비 적 절 성 ■ ■ 부 분 증 축 ■ ■ 과 다 ■	(10) (6) (1)	10.0 .0 .0	10.0 .0 .0	30.0 50.0 .0	20.0 16.7 .0	30.0 33.3 100.0	20.0 .0 .0	30.0 50.0 .0	50.0 50.0 100.0	100.0 100.0 100.0	62.50 70.83 100.00

【 표 6-2 】 생활편의시설 확충 효과

[문 6-2] 귀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이 어촌지역의 정주환경이 개선되었다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17)	11.8	5.9	47.1	11.8	23.5	17.6	47.1	35.3	100.0	57.35
■ 지 서 역 별 ■ ■ 해 해 권 ■ ■ 동 해 권 ■	(6) (6) (5)	.0 .0 40.0	16.7 .0 .0	50.0 66.7 20.0	.0 .0 40.0	33.3 33.3 .0	16.7 .0 40.0	50.0 66.7 20.0	33.3 33.3 40.0	100.0 100.0 100.0	62.50 66.67 40.00
■ 제 주 지 역 여 부 ■ ■ 제 주 이 외 주 ■	(16) (1)	12.5 .0	6.3 .0	43.8 100.0	12.5 .0	25.0 .0	18.8 .0	43.8 100.0	37.5 .0	100.0 100.0	57.81 50.00
■ 사 업 내 용 이 해 ■ ■ 보 조 이 해 ■	(1) (16)	.0 12.5	.0 6.3	.0 50.0	.0 12.5	100.0 18.8	.0 18.8	.0 50.0	100.0 31.3	100.0 100.0	100.00 54.69
■ 투 자 비 적 절 성 ■ ■ 부 분 증 축 ■ ■ 과 다 ■	(10) (6) (1)	20.0 .0 .0	10.0 .0 .0	40.0 66.7 .0	10.0 16.7 .0	20.0 16.7 100.0	30.0 .0 .0	40.0 66.7 .0	30.0 33.3 100.0	100.0 100.0 100.0	50.00 62.50 100.00

【 표 7 】 도입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주체 지정

[문 7]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으로 도입된(될) 시설의 관리운영 주체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사례수	예	향후 지정할 예정이다	모름/무응답	계
		%	%	%	
■ 전 체 ■	(17)	88.2	5.9	5.9	100.0
■ 지 서 역 별 ■ ■ 해 해 권 ■ ■ 동 해 권 ■	(6) (6) (5)	83.3 83.3 100.0	.0 16.7 .0	16.7 .0 .0	100.0 100.0 100.0
■ 제 주 지 역 여 부 ■ ■ 제 주 이 외 주 ■	(16) (1)	87.5 100.0	6.3 .0	6.3 .0	100.0 100.0
■ 사 업 내 용 이 해 ■ ■ 보 조 이 해 ■	(1) (16)	100.0 87.5	.0 6.3	.0 6.3	100.0 100.0
■ 투 자 비 적 절 성 ■ ■ 부 분 증 축 ■ ■ 과 다 ■	(10) (6) (1)	100.0 83.3 .0	.0 .0 100.0	.0 16.7 .0	100.0 100.0 100.0

【 표 8 】 사업 관리 조직 및 담당자 지정 유무

[문 8] 귀하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조성된 “어촌체험마을” 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조직 및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사례수	예	계
		%	
■ 전 체 ■	(17)	100.0	100.0
■ 지 서 역 별 ■ ■ 해 해 권 ■ ■ 남 해 해 권 ■ ■ 동 해 해 권 ■	(6) (6) (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제 주 지 역 여 부 ■ ■ 제 주 이 외 주 ■	(16) (1)	100.0 100.0	100.0 100.0
■ 사 업 내 용 이 해 ■ ■ 보 잘 이 해 ■	(1) (16)	100.0 100.0	100.0 100.0
■ 투 자 비 적 절 성 ■ ■ 부 보 ■ ■ 과 통 ■ ■ 다 ■	(10) (6) (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표 9 】 연간 관광객 규모 정기 집계 계획 여부

[문 9] 연간 “어촌체험마을” 에 방문한(할) 관광객 규모를 정기적으로 집계할 계획이 있습니까?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	
■ 전 체 ■	(17)	82.4	17.6	100.0
■ 지 서 역 별 ■ ■ 해 해 권 ■ ■ 남 해 해 권 ■ ■ 동 해 해 권 ■	(6) (6) (5)	83.3 83.3 80.0	16.7 16.7 20.0	100.0 100.0 100.0
■ 제 주 지 역 여 부 ■ ■ 제 주 이 외 주 ■	(16) (1)	81.3 100.0	18.8 .0	100.0 100.0
■ 사 업 내 용 이 해 ■ ■ 보 잘 이 해 ■	(1) (16)	.0 87.5	100.0 12.5	100.0 100.0
■ 투 자 비 적 절 성 ■ ■ 부 보 ■ ■ 과 통 ■ ■ 다 ■	(10) (6) (1)	90.0 83.3 .0	10.0 16.7 100.0	100.0 100.0 100.0

【 표 10 】 관광객 만족도 및 불편사항 조사 계획 여부

[문 10] “어촌체험마을” 에 방문한(할) 관광객의 만족도 혹은 불편사항을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	
■ 전 체 ■	(17)	64.7	35.3	100.0
■ 지 서 역 별 ■ ■ 해 해 권 ■ ■ 남 해 해 권 ■ ■ 동 해 해 권 ■	(6) (6) (5)	83.3 66.7 40.0	16.7 33.3 60.0	100.0 100.0 100.0
■ 제 주 지 역 여 부 ■ ■ 제 주 이 외 주 ■	(16) (1)	68.8 .0	31.3 100.0	100.0 100.0
■ 사 업 내 용 이 해 ■ ■ 보 잘 이 해 ■	(1) (16)	.0 68.8	100.0 31.3	100.0 100.0
■ 투 자 비 적 절 성 ■ ■ 부 보 ■ ■ 과 통 ■ ■ 다 ■	(10) (6) (1)	70.0 66.7 .0	30.0 33.3 100.0	100.0 100.0 100.0

【 표 11 】 조성된 사업의 개선 실적 여부

[문 11] 조성된 “어촌체험마을”을 개선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	
■ 전 체 ■	(17)	58.8	41.2	100.0
■ 지 서 남 동 해 해 권 권 ■	(6)	50.0	50.0	100.0
	(6)	50.0	50.0	100.0
	(5)	80.0	20.0	100.0
■ 제 주 제 제 주 이 외 주 ■	(16)	62.5	37.5	100.0
	(1)	.0	100.0	100.0
■ 사 업 내 용 이 해 통 ■	(1)	.0	100.0	100.0
	(16)	62.5	37.5	100.0
■ 투 자 비 적 절 성 ■	(10)	80.0	20.0	100.0
	(6)	16.7	83.3	100.0
	(6)	100.0	.0	100.0
	(1)	100.0	.0	100.0